

2. 뷰 차

(광공업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 광공업 동태 조사 >

1.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
2. 광공업동태조사 지침
3. 지역별광공업지수 개발편제결과
4. 광공업 동태 조사표
5. 제조업 생산예측조사표
6. 제조업생산예측조사 지침서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

(개정판)

198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 | |
|------------------------|----|
| I. 조사개요 | 3 |
| 1. 조사목적 | 3 |
| 2. 조사의 법적 근거 | 3 |
| 3. 조사대상기간 | 3 |
| 4. 조사시기 | 3 |
| 5. 조사대상 | 3 |
| 6. 조사단위 | 3 |
| 7. 조사사항 | 4 |
| 8. 조사방법 | 5 |
| 9. 집계 및 공표 | 5 |
| II. 조사표 기입요령 | 6 |
|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6 |
| 2. 일반사항란 기재요령 | 7 |
| 3. 제품생산, 출하·재고란 기재요령 | 13 |
| 4. 품목수주·진척사항란 기재요령 | 25 |
| 5. 제품의 증감내용란 기재요령 | 26 |
| 6.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란 기재요령 | 27 |
| 7.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 30 |
| III.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36 |
| 1. 조사착오 유형 | 36 |

| | |
|-----------------------------|-----|
| 2. 중점검토사항 | 37 |
| 3. 수시확인 점검사항 | 38 |
| 4. 조사표 제출 | 38 |
| IV.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 40 |
| V. 사례연구 및 중점 강조사항 | 44 |
| VI. 사업체 관리요령 | 61 |
| VII.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77 |
| VIII. 지정원재료 분류표 | 346 |
| 부 록 | 358 |
| 1. 주요단위 해설 | 358 |
| 2. 도량형 환산표 | 360 |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산업 생산, 출하, 재고, 재고율 지수등 편제, 전국 및 지역별 경기동향 분석
- 국내총생산(GDP) 및 지역소득(GRP) 추계자료
- 품목별 물량통계 작성 이용
- 고용, 급여동향 파악으로 경기동향분석 및 노동생산성추계자료로 이용
- 원재료 사용 및 재고수준 파악으로 단기간의 경기전망 자료로 이용

2.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111-11-12)

3.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을 대상

4. 조사시기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전월실적분을 조사

5.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한 광업,제조업 및 전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광공업동태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체

6. 조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 단위로 조사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 본사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

7. 조사사항

가. 제품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

-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산업분류 382, 383 업종)
지정품목별 생산량·생산액, 구입량, 동일공장내 재투입량, 국내시판량·시판액, 수출량·수출액,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량, 월말재고량, 재고액
- 선박 및 철도차량 제조업(산업분류 384 중 일부)
지정품목별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진척량(국내용, 수출용),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당월 완성품 인도량(톤수, 척 또는 대)
- 일반업종(산업분류 2. 31 ~ 37, 381, 384 중 일부, 385, 39, 4)
지정품목별 생산량, 구입량(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공장), 동일공장내 재투입량, 국내시판량, 수출량,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나. 원재료 및 연료 사용, 재고에 관한 사항(공통)

- 원재료 및 연료별 생산지 구분(국산, 수입), 월중 사용량, 월말재고량

다. 고용·급여 및 조업사항(공통)

- 종업원 구분별 월말 종업원수,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월중 종업원 연근무시간수, 월중 입직자 및 이직자, 조업일수, 조업시간, 급여총액, 정액급여액, 특별급여액

8.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他計式) 방법과 자계식(自計式) 방법의 병행

9. 집계 및 공표

-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집계, 분석등을 거쳐 「생산·출하·재고동향」(월간), 「한국통계월보」(월간), 「산업생산연보」(연간), 「한국통계연감」(연간)에 게재·공표

Ⅱ.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한자나 영문병기)로 기재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위에 다시 기재
- 조사표상에 정해진 자리수 문자와 조사단위와의 차이에 유의

※ 잘못기입

| 품 목 부 호 | 품 목 명 | 유고 사항 | 단 위 | 생 산 |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2140500 | 자 수 직 물 | | 천 m ² | | | 3 | 1 | 0 | 0 | 0 |
| 9040100 | 인 형 및 장 난 감 | | 백만원 | 4 | 0 | 0 | 0 | 0 | 0 | 0 |
| 5220100 | 의 약 품 | | 백만원 | 5 | | | | | | |

※ 바른기입

| 품 목 번 호 | 품 목 명 | 유고 사항 | 단 위 | 생 산 |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2140500 | 자 수 직 물 | | 천 m ² | | | | | | 3 | 1 |
| 9040100 | 인 형 및 장 난 감 | | 백만원 | | | | | | | 4 |
| 5220100 | 의 약 품 | | 백만원 | | | | | | | 5 |

- 조사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는 각 항목별로 별도 주석이 없는 한 반올림함. 다만 생산·출하량(또는 액)에 있어 월별로는 반올림 규정에

따라 「 0 」이 될지라도 누계를 감안하여야 함.

※ 잘못기입 (천㎡로 지정된 어떤 품목의 생산이 극소한 경우)

| | 1 | 2 | 3 | 4 | 5 | 6 | 7 | 8 월 |
|----------|-----|-----|-----|-----|-----|-----|-----|-----|
| 실 생산 (㎡) | 380 | 290 | 430 | 420 | 480 | 350 | 400 | 350 |
| 조사표기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바른기입

| | 1 | 2 | 3 | 4 | 5 | 6 | 7 | 8 월 |
|--------------|-------|-------|-------|-------|-------|-------|-------|-------|
| 실 생산 (㎡) | 380 | 290 | 430 | 420 | 480 | 350 | 400 | 350 |
| 생산누계 (천㎡) | 0.380 | 0.670 | 1.100 | 1.520 | 2.000 | 2.350 | 2.750 | 3.100 |
| 조사표기재 | 0 | 1 | 0 | 1 | 0 | 0 | 1 | 0 |

2. 일반사항란 기재요령

가. 년월분 및 잠정, 확정자료 구분

- 년은 1 자리, 월은 2 자리 숫자로 기입하고, 잠정자료인지, 확정자료인지 ○표시

※ 기입예 :

(198 년 월분) 잠정자료 확정자료

- 전월 신고된 잠정자료를 확정자료로 다시 보고하는 경우는 위 요령에 따라 붉은 싸인펜으로 기재
- 과거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소급하여 수정보고하는 경우는 조사표 왼쪽 상단에 붉은 싸인펜으로 “소급조사표”라 기입하고, 품목별, 연별로 조사표를 달리하여 조사보고, 이때 조사표의 일련번호는 “월”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련번호 바로앞에 “년”(뒤 2 자리숫자만)을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함.

※ 기입예 : ('88년 3월부터 12월분까지를 소급조사 보고한다고 가정)

| | 일련번호 | 품 목 번 호 | | | | | | 품 목 명 | |
|----|------|---------|---|---|---|---|---|-------|-----------|
| | 88 | 01 | | | | | | | |
| | 02 | | | | | | | | |
| 88 | 03 | 1 | 1 | 2 | 0 | 3 | 0 | 0 | 아 이 스 크 림 |
| | ⋮ | | | | ⋮ | | | | ⋮ |
| 88 | 12 | 1 | 1 | 2 | 0 | 3 | 0 | 0 | 아 이 스 크 림 |

- 해당없는 달은 사선
- 해당되는 달부터는 연도를 명기하고 품목번호, 품목명등 필요사항을 기재
- 다만, 조사표Ⅲ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부호, 품목명, 단위를 원종이로 붙인후 위의 요령과 같이함

나. 사업체 고유번호

-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다. 산업분류

- 지정품목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가장 큰 품목이 해당하는 산업세세분류(5단위)기입
- 지정품목이 여러가지가 있어 조사표를 달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들의 연간 출하액 크기를 비교하여 조사표마다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세분류를 기입
-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새로이 어떤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 새로운 품목이 주종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신품목의 산업분류를 기입
- 위 기준은 전국 지수 지정품목과 지역특성품목을 함께 생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입예

① 동일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만 생산하는 경우

| 품목번호 | 품 목 명 | 연간출하액 (백만원) |
|---------|-------------|----------------|
| 2110600 | 합 성 섬 유 사 | 4,520 |
| 2120500 | 합 성 섬 유 직 물 | 9,850 |
| 2220100 | 남자용기성정장복 | 2,031 |
| 5140400 | 아 크 릴 릭 섬 유 | 1,060 |

- 지정품목이 모두 조사표 I 사용품목임
- 합성섬유직물이 주종품목임
→ 산업분류 32123

② 조사표를 달리하는 지정품목들을 생산하는 경우

| 품목부호 | 품 목 명 | 연간출하액 (백만원) |
|---------|---------|----------------|
| 8310100 | 전 동 기 | 420 |
| 8342400 | 소 형 모 터 | 1,130 |

- 조사표 II를 사용하는 품목
- 소형모터가 주종품목임
→ 산업분류 38349

| 품목부호 | 품 목 명 | 연간출하액 (백만원) |
|---------|---------|----------------|
| 8190800 | 나 사 제 품 | 250 |

- 나사제품은 조립금속제품으로 조사표 I 사용
- 별도로 조사표 I을 사용
→ 산업분류 38195

③ 기초사중인 품목외에 신규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동일 조사표 사용품목인 경우는 위 ①에 따라, 조사표를 달리하는 품목인 경우는 ②의 방법에 따라 산업분류를 기입 (이때는 월간출하액을 기준)
- 다만, 신규품목 생산이 6월이내의 일시적 생산에 그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부호를 바꾸지 않음.

※ 전수조사업체만 해당함. 표본업체(승수가 있는 업체)는 신규로 지정품목이 생산되더라도 별도지시가 없는 한 조사않음.

라. 행정구역번호

- 지정된 행정구역번호(시도, 구시군, 동읍면)를 기입
- 특별시, 직할시가 아니면 “구”가 있는 “시”는 “시”부호(00)는 생략하고 “도, 구, 동”부호만 기입

마. 조사구 번호

- 본부 또는 통계사무소에서 지정한 조사구 번호를 기입
- 시, 도자체에서 조사하는 사업체는 행정구역 분류부호중 시, 도 부호 다음에 A를 추가하고 그 이하는 공란으로 둬.

기입 예 :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경우

| | | | | | |
|---|---|---|---|--|--|
| 1 | 1 | A | - | | |
|---|---|---|---|--|--|

바. 사업체(본사)명 및 소재지

-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현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 예 :

| 사 업 체 명 | 소 재 지 |
|----------------|-------------------|
| 광동산업(주) 마산공장 | 경남 마산시 회성동 13-6 |
| 서울공업(주) 제 2 공장 | 서울 구로구 구로제 3 동 66 |

- 본사나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입

사.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실제대표자명 및 조사표 작성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아. 사업체 규모

-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 포함)를 기준으로 대규모업체, 중소기업체로 구분하여 ○표시 함.

- 사업체규모는 사업체별로 기지정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신규업체인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

중소규모업체 기준

| 산 업 분 류 | 중 소 규 모 업 체 |
|-----------------------------------|---------------|
| 2. 광 업 | |
| ○ 21 석 탄 광 업 | • 500 인 미 만 |
| ○ 23 금 속 광 업 | } • 300 인 미 만 |
| ○ 29 기 타 광 업 | |
| 3. 제 조 업 | |
| ○ 31 음 식 료 품 및 담 배 | |
| • 전 업 종 | • 300 인 미 만 |
| ○ 32 섬 유, 의 복, 가 죽, 신 발 | |
| • 322 의 복 | • 500 인 미 만 |
| • 기 타 업 종 | • 300 인 미 만 |
| ○ 33 나 무 및 나 무 제 품 | |
| • 전 업 종 | • 300 인 미 만 |
| ○ 34 종 이 · 인 쇄 · 출 판 | |
| • 전 업 종 | • 300 인 미 만 |
| ○ 35 화 합 물, 석 유, 석 탄, 고 무, 플 라 스틱 | |
| • 356 기 타 플 라 스틱 | • 500 인 미 만 |
| • 기 타 업 종 | • 300 인 미 만 |
| ○ 36 비 금 속 광 물 제 품 | |

| 산 업 분 류 | 중 소 규 모 업 체 |
|----------------------|-------------|
| • 361 도기, 자기, 토기 | • 500 인 미 만 |
| • 362 유리, 유리 제품 | |
| • 369 기타비금속광물제품 | |
| ○ 37 제 1 차 금 속 산 업 | • 300 인 미 만 |
| • 3713 주 조 업 | • 500 인 미 만 |
| • 기 타 업 종 | • 300 인 미 만 |
| ○ 38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 | |
| • 3811 날붙이, 수공구, 철물 | • 500 인 미 만 |
| • 3822 농 업 용 기 계 | |
| • 3825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 |
| • 383 전 기 · 전 자 기 기 | |
| • 38432 자 동 차 부 품 | |
| • 3852 사 진 및 광 학 용 품 | |
| • 3853 시 계 | |
| • 기 타 업 종 | |
| ○ 39 기 타 제 조 업 | |
| • 전 업 종 | |
| 4. 전 기 업 | • 500 인 미 만 |
| • 전 업 종 | • 300 인 미 만 |

자. 종업원 규모

-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란의 월말종업원수(임시 및 일고포함)를

기준으로 해당번호에 ○표시함.

차. 유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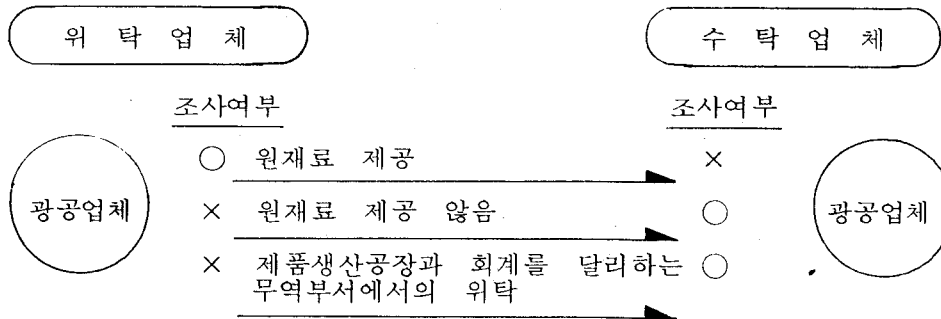
- 사업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번호에 ○표시함.
- 유고내용
 - 1. 전 입 : 타사무소 (또는 시·도) 관할이던 사업체가 이전 되어 온 경우
 - 2. 휴 업 : 사업체가 휴업중인 경우 (조사표는 계속 제출)
 - 3. 사업체 흡수 : 동일기업내 타공장 또는 다른기업체의 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 4. 사업체 분리 : 1개사업체가 경영 및 회계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사업체로 분할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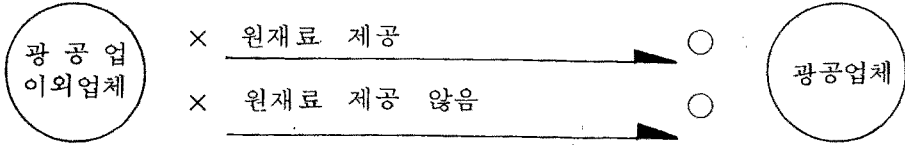
3. **제품생산·출하·재고**란 기재요령 [조사표 I, II]

가. 조사대상 제품

-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제품명칭이 다르더라도 품목 포괄범위에 해당되면 조사)
-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 생산한 제품은 위탁업체의 생산제품으로 간주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체의 생산제품으로 간주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이를 구입으로 처리)

※ 위·수탁 관련품목의 조사여부





-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이 출하 (외부출하, 동일기업내 공장간 출하)되고 있거나, 다른제품의 연료, 촉매,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때, 당해 중간제품이 지정품목이면 조사

나. 품목부호 및 품목명

- 「지정품목분류표」에 기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품목부호 체계 (7 단위부호)

| 품 목 명 | 품 목 부 호 | | | | | | | |
|-----------|---------|---|---|---|---|---|---|--|
| ○ 생 사 | 2 | 1 | 1 | 0 | 1 | 0 | 0 | |
| ○ 면 사 | 2 | 1 | 1 | 0 | 2 | 0 | 0 | |
| • 순 면 사 | 2 | 1 | 1 | 0 | 2 | 1 | 0 | |
| • 혼 방 면 사 | 2 | 1 | 1 | 0 | 2 | 2 | 0 | |
| ○ 남자용마춤양복 | 2 | 2 | 1 | 0 | 1 | 0 | 9 | |

- ↓ 산업세분류 (4 단위부호)를 의미하나 대분류부호는 생략하였음 (211은 3211분류를 나타냄. 단, 석탄광업은 010, 금속광업은 030, 기타광업은 090, 전기업은 999로 함)
- ↓ 산업세분류내에서 채택된 품목의 일련번호 (전기업은 99)
- ↓ 지수는 통합하여 편제하나 물량통계를 위하여 세분되는 품목의 일련번호, (지수는 면사 211020으로 하여 편제하나 물량통계는 순면사 211021과 혼방면사 211022로 구분하여 작성)
- ↓ 전국지수 품목으로 채택된 품목은 "0", 어느 특정 1개 시·도 또는 수개 시·도지수를 위하여 채택된 품목은 "9"로 함 (단, 전국품목은 반드시 1개 시·도이상에 포함됨)

- 물량통계를 위한 세분품목의 기입방법
- 지수품목의 품목부호, 품목명은 기입하지 않고, 세분품목으로만 기입

※ 기입 예 : 면사의 경우

- ① 순면사만 생산하는 사업체

| | | | | | | | | | |
|---|---|---|---|---|---|---|---|---|---|
| 2 | 1 | 1 | 0 | 2 | 1 | 0 | 순 | 면 | 사 |
|---|---|---|---|---|---|---|---|---|---|

- ② 혼방면사만 생산하는 사업체

| | | | | | | | | | | |
|---|---|---|---|---|---|---|---|---|---|---|
| 2 | 1 | 1 | 0 | 2 | 2 | 0 | 혼 | 방 | 면 | 사 |
|---|---|---|---|---|---|---|---|---|---|---|

- ③ 순면사, 혼방면사를 모두 생산하는 사업체

| | | | | | | | | | | |
|---|---|---|---|---|---|---|---|---|---|---|
| 2 | 1 | 1 | 0 | 2 | 1 | 0 | 순 | 면 | 사 | |
| 2 | 1 | 1 | 0 | 2 | 2 | 0 | 혼 | 방 | 면 | 사 |

다. 유고사항

- 품목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음 부호에 따라 기입
- 유고사항 부호
 - 품목 신규 생산 1
(전수조사업체에 한함)
 - 품목 생산중단(휴업포함) 2
 - 기보고해은 품목으로서 분류착오로 제외 3
 - 품목 조사 누락 4

라. 단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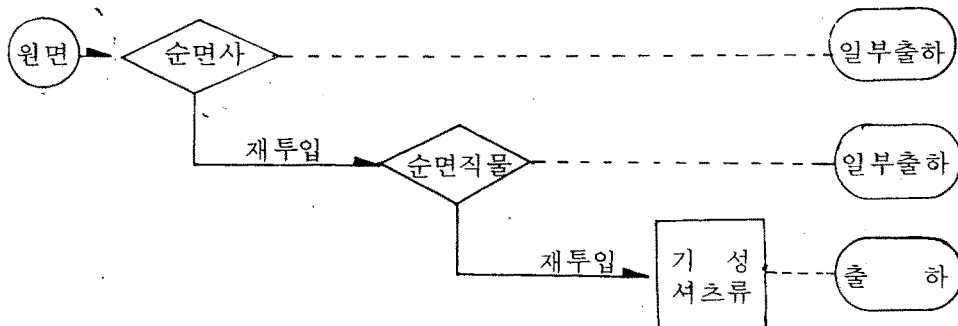
- 「지정품목분류표」에 게재된 지정단위를 사용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정확히 환산
- 조사표 I 대상품목중 금액조사 품목은 각 란을 금액으로 조사함

- 조사표Ⅱ 대상품목은 지정수량 단위에 의한 물량조사와 함께 금액 조사도 병행함
- 지수편제 단위는 금액기준이지만, 물량통계를 위하여 수량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물량조사를 병행함
- 수량 또는 금액중 어느 하나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불필요한 란은 사선

마. 생 산

- 조사대상월중 사업체에서 직접생산한 량 및 금액 (공정중에 있는 재공품은 제외)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량은 위탁업체의 생산량으로 간주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받지 않고 수탁생산한 량은 수탁업체의 생산량으로 간주 (OEM 방식 생산도 같음)
- 중간제품 (재공품이 아닌 제품원재료로서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재투입되거나, 기타 연료, 가공용 등으로 소비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지정품목일 경우 조사

※ 예 :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 단계를 거쳐 기성셔츠류를 생산할 경우



- 중간제품인 순면사(2110210), 순면직물(2120110) 및 최종제품인 기성셔츠류(2220200)가 모두 지정품목임으로 세가지를 제품으로 조사

- 생산액의 평가는 생산자 판매가격(간접세 포함가격)으로 함

바. 구입

- 일반업종은 「외부구입」과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기계, 전기·전자기기 업종은 이들을 합하여 기입
-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위탁생산분 포함) 지정품목과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구입에 한함
 -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연료, 가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제품은 당해 사업체에서 그러한 제품이 중간제품 또는 최종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면 포함되나, 생산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고, 「원재료 및 연료 사용·재고」 사항에서 파악함
- 「외부구입」
 - 타기업 또는 타상사로부터 구입한 것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지 않고 위탁생산한 제품으로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것
 - 외국에서 수입한 것
 - 이미 출고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재판매되거나 재고로 계상될 것(폐기될 것은 제외)
 - 타기업체로부터 빌려온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구입하거나, 내부거래로 받은 것

※ 〈주의사항〉

-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 또는 내부거래로 받는 경우에는 그 품목이 지정품목이라 하더라도 「구입」란에 계상할 수 없음

※ 금액조사 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사. 동일공장내 재투입 (자가소비)

- 당해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정품목중, 다른 제품(지정품목이 아닌 것도 포함) 생산을 위해 당해 사업체내에서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량(구입량 및 재고량의 재투입도 포함)
- 재투입유형
 - 제품 원재료로서 투입 (예:순면사를 순면직물 생산을 위해 사용)
 - 연료로 투입 (예:당해공장에서 생산된 코오크스를 연료로 사용)
 - 촉매제 또는 환원제로 투입
 - 다른제품의 가공을 위해 투입

※ 금액조사 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 〈주의사항〉

- 견본, 선물, 전시, 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사무실 및 공장사무용, 제품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자기사용)는 출하중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의 기타출하로 간주(다만, 외국으로 출하되는 것은 수출로 간주)

아. 제품출하

-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생산한 지정품목, 지정품목과 같은 제품의 구입분 및 위탁생산분중 그 사업체(자가창고, 타장소 보관 불문)에

서 출고된 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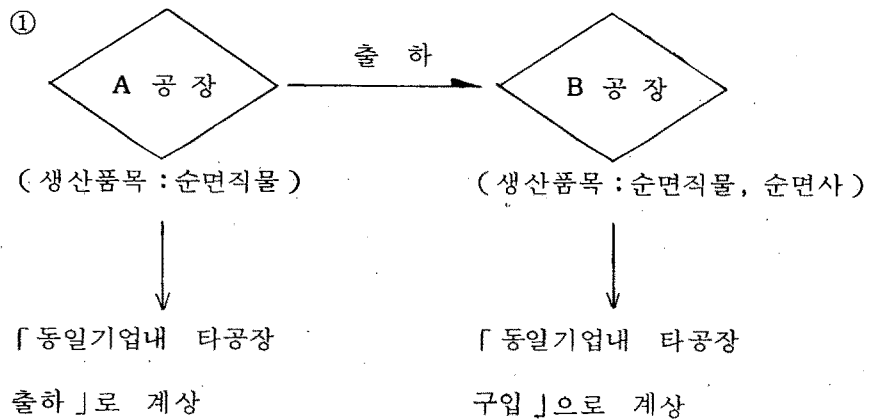
- 현금, 외상을 불문하고 사업체에서 출고된 시점에서 출하로 간주하며,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하로 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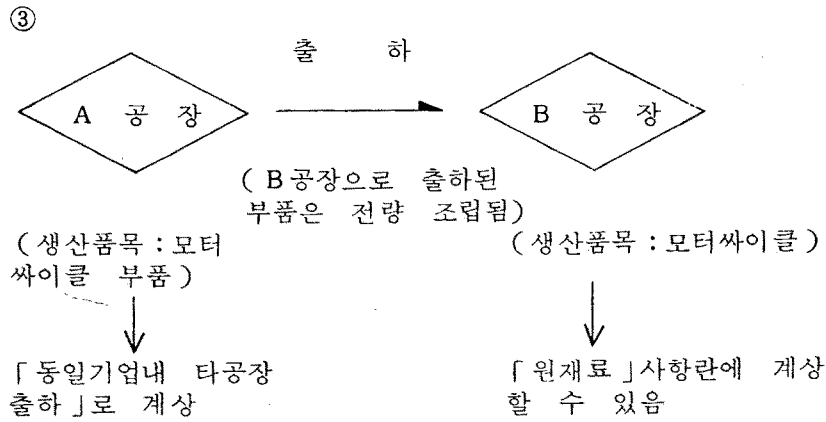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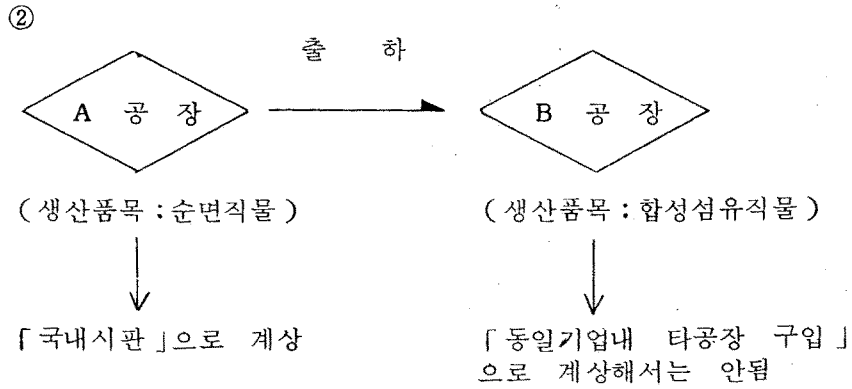
(다만,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국내시판」

- 국내판매업자,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게 판매
- 국군부대에 납품
- 판매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고있는 본사나 영업소등에 출하
- 수탁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에 위탁업체로의 납품
- 동일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 예 : 동일기업내 A, B 공장간에 거래하는 경우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어 인수받은 공장에서 전량이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될 경우는 보내는 공장에서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계상하고, 받는 공장에서는 받는 품목과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면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계상하지만, 동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원재료」관련 사항에 계상할 수 있을 뿐임

○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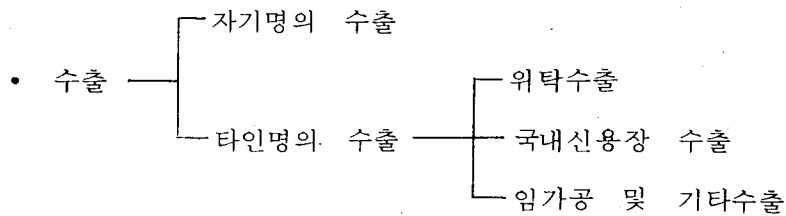
- 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출하
-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에 출하
- 주한 외국군에 납품

- 외국 또는 주한 외국군에 견본, 선물 등으로 증정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전시용으로 송부한 것
- SKD, CKD 방식에 의해 수출되는 품목도 완성품 수량 및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

※ <주의사항>

-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부품이 되는 제품을 동일기업이 아닌 타사업체에 출하할 경우 「국내시판」으로 봄

※ 수출의 구분



※ 수출은 무역거래법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또는 사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자기명의 수출과 타인명의 수출로 구분됨

i) 자기명의 수출

자기명의 수출이란 수출업체가 외국관계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로 광공업 동태조사에서는 광공업 사업체에서 직접 수출할 경우에 해당됨

ii) 타인명의 수출

타인명의 수출은 다시 위탁수출과 내국신용장수출, 임가공 및 기타로 나눌 수 있음.

- 위탁수출은 자기 또는 사업체가 직접 외국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 허가가 없거나, 수출입 허가가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타인(또는 타업체)에게 위탁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함. 광공업 사업체로 수출입 허가가 없는 사업체는 위탁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내국 신용장수출(Local 수출)은 국내의 비광공업체로부터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으로 자기 사업체가 직접 외국 구매자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수출업체(비광공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2, 제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로 원재료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출로 조사

- 임가공 및 기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임가공 및 기타 약정에 의해서 비광공업체에 출하되는 수출용 제품의 출하와 계약서상 수출품으로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체에서 수출용제품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때도 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 공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출로 조사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및 출하방식

※ SKD(Semi-Knock Down) : 제품을 반해체 상태로 수출

※ CKD(Complete Knock Down) : 제품을 완전해체상태로 수출

- 「국내시판금액」

- 국내시판금액의 평가는 생산자 판매가격(운임, 포장비, 보험료, 간접세 등을 포함하여 정한 경우는 이들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함

- 수탁업체에서 위탁업체로 납품(원재료를 제공받지 않은 위·수탁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와 가공임등을 포함하여 계약한 금액
- 「수출액」
 -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일자별 환율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월평균 환율을 적용
-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는 「국내시판」으로 계상하지만, 다만 그 제품이 인수받은 타공장에서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소비되는 경우는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계상
 - 국내에 견본, 선물, 전시용 등으로 출하하거나, 자기공장이나 사무실용(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제품 포장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 항목에 계상(「기타」에 해당)
 - 타사업체에서 빌려온 제품(조사지정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의 변제(「기타」에 해당)

※ 금액조사 품목은 국내시판 금액의 평가방법에 준함

자. 과부족 조정

- 과부족 조정사유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분실(-)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
 - 계산단위 미만의 사사오입에 따른 증감(+, -)

- 기타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고의 증감(+, -)
 - 생산, 출하, 재고와의 관계
 - 전월말재고(월초재고)+생산+구입-동일공장내 재투입-출하±과부족 조정 = 월말재고(조사표 I)
 - 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 $\begin{matrix} \geq \\ \leq \end{matrix}$ 월말재고(조사표 II의 경우)
(이때 월말재고의 증감차이가 많은 경우 재확인)
 - 과부족 조정량을 기입시 위 관계식을 참조 ⊕, ⊖ 기호를 적색으로 표시
-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준하여 가감
- 차. 월말재고
- 재고로 되는 경우
 - 당해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및 위탁생산 제품의 보관(자기창고, 타인창고 불문)
 - 현금 또는 외상판매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다만,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수탁업체에서 보관중인 것
 - 조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것
- ※ 1회사 1공장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본사창고는 공장창고로 봄
-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입(재고액 평가방법은 출하액 평가방법과 동일)

4. **품목수주·진척사항** 기재요령〔조사표Ⅲ〕

가. 품목부호, 품목명

- 조사표상에 인쇄된 부호, 명에 맞추어 해당란에 기입
- 지정된 품목이외에는 진척율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표 I, II를 사용하여야 함

나. 유고사항

- 3. 「제품생산,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다. 단 위

- 조사표상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함
- 선박해체업은 LDT(Light Displacement Ton: 輕化排水 톤수)를 사용

라. 당월수주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받은 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을 기입하되, 폐선박내의 물을 뺀 중량으로 함

마. 당월진척량

- 수주잔량에 조사월의 공정진척율을 승하여 환산하거나, 총수주량에 공정진척율 누계를 승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차감하여 환산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율에 따른 해체량을 환산

바. 수주잔량

- 총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누계를 차감한 잔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과의 관계
 - 전월말 수주잔량 + 당월수주량 - 당월진척량 = 당월말 수주잔량

사. 당월 완성품 인도량

- 진척율 조사품목은 당월 진척량을 생산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출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 (지수편제시)
- 그러나 실제 완성품의 출하는 상당한 시차가 있게 됨으로, 공정진척도(기성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통관 또는 납품한 량을 기입함
- 선박해체업은 조사하지 않으며 그외 품목은 중량과 척(대)수를 함께 조사

5. 제품의 증감내용 란 기재요령

가. 품목부호

- 사업체의 지정품목중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한 전월비가 큰 순으로 기입
- 진척율 조사품목은 「당월진척량」전월비를 기준으로 함.

나. 전월비(%)

- $\frac{\text{금월실적(생산, 출하, 재고)}}{\text{전월실적(생산, 출하, 재고)}} \times 100$ (소숫점이하 반올림)
- $\frac{\text{당월진척량}}{\text{전월진척량}} \times 100$ (소숫점이하 반올림)
- 수량, 금액 병행조사품목은 지수편제「지정단위」에 의거 계산.

다. 증감부호

- 예시된 부호중 주된 부호 하나만을 선택 기입(꼭 알맞은 부호가 없더라도 가장 유사한 부호를 선택)

라. 증감사유

- 증감부호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입.

- 기입예 :

| 품 목 부 호 | 전월비(%) | 증 감 부 호 | 증 감 사 유 |
|---------|--------|---------|----------|
| 2220300 | △ 32 | 11 | 미국 |
| 2220900 | 20 | 02 | 미도파백화점 |
| 2330200 | △ 10 | 14 | 3일간 |
| 2221100 | 8 | 04 | 전월 2 일휴업 |

- 사업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거나, 선박진척상황보고 등 특수자료는 별도 부전지를 사용.
- 진척율 조사품목은 증감부호없이 증감사유를 기재.

6.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란 기재요령

가. 원재료

-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원료(재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재료)를 말함.
- 원재료의 구분

| | | |
|-----|---|--|
| 원재료 | { | 국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
| | |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외국에서 직접 구입하였거나, 국내 다른 업체나 상사로부터 구입하였거나 불문) |
- 포함 또는 제외여부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서 조사
 -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탁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에서는 제외

나. 원재료번호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정한 번호를 정확히 기입

다. 원재료 및 연료명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해 기입
- 분류표상의 원재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증상에 보고
- 분류표상에 게재된 원재료들보다 비중이 크거나 주요 원재료라고 판단되는 것은 원재료 번호없이 원재료명과 다른 해당란을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 보고함.
- 연료에 대하여 조사표상에 인쇄된 연료만 조사

라. 유고사항

- 「제품,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마. 단 위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지정된 단위 사용
- 사업체 사용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라도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바. 구 분

- 부 호
 - 〔 • 국산원재료 1
 - 〔 • 수입원재료 2
- 동일 원재료를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 기입예 :

| 원재료 및 연료명 | 단 위 | 구 분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 소 맥 | % | 1 | 50 | 200 |
| 소 맥 | % | 2 | 20 | 150 |

사. 월중사용량

○ 원재료 사용량

- 조사대상기간중 대상사업체의 지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한 원재료 수량을 기입 (직접생산, 구입 원재료 불문)
-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창고로부터 공장의 제조공정에 출고된 원재료수량 기입.
지정제품과 비지정제품을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관된 공정에서 생산하는 경우 지정제품에 대한 원재료 사용량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량(또는 금액), 설비비율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해 배분계산하여 지정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량만을 파악.

○ 연료 및 전력사용량

지정·비지정제품에 관계없이 사업체에서 사용한 총연료 및 전력량을 조사

아. 월말재고량

- 사업체내에서 자체 생산한 원재료 및 연료와 외부에서 구입한 원재료 및 재료의 월말현재 재고수량.
- 기타 정의는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따름.

※

| |
|------|
| 잠정조치 |
|------|

-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신조사표에는 「지정원재료분류표」에 게재된 원재료를 무시하고 해당사업체에서 지정제품생산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원재료를 순차적으로 기입보고할 것.

(단, 원재료부호가 있는 것은

| | | | | | |
|---|---|---|---|---|---|
| 7 | 9 | 5 | - | 0 | 1 |
|---|---|---|---|---|---|

 과 같이 기입할 것)

7. 고용, 급여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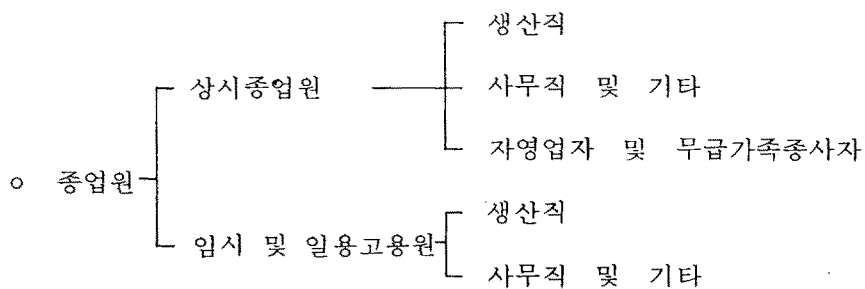
가. 조사대상

- 광공업 동태조사 대상업체로 지정된 사업체의 종업원(상시, 임시 및 일고포함)의 변동사항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조업현황.
- 회계나 경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본사의 종업원은 대상업체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고, 본사가 대상사업체(공장)와 결합되어 운영될 때는 대상업체의 종업원에 포함.
- 지정품목생산을 중단하고 비지수품목만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고용·급여 및 조업사항을 계속 조사.
 - 다만, 「연근무인원수」 「연근무시간수」란은 현지정품목생산 중단 이후분은 조사하지 않음.

※ 기입예 : '88년 1월 16일부터 현지정품목생산을 중단한 경우

- ① '88년 1월분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는 1일부터 15일분까지만 조사.
- ② '88년 2월에도 계속하여 지수품목생산이 없었다면 “ 0 ”

나. 종업원의 구분



○ 상시종업원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체에 고용된 자.

-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라도 지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을 대상사업체에 고용되었을 경우 상시종업원에 포함.

○ 생산직 종업원

생산직 종업원이란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과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함.

단,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檢査),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貯藏), 조작(操作), 포장(包裝),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공장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광업의 경우

채광(採鑛),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內支柱), 권양(捲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천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粉碎) 선광(選鑛), 검사(檢査), 저장(貯藏),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작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

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들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종업원

- 보수를 받는 지배인, 중역 등.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단, 주당 18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다. 월말 종업원수

- 해당 조사월 말일현재의 종업원수
- 월말 종업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수시로 종업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됨)

※ <주의사항>

- 급여계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는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퇴직한 종업원(상시, 임시·일고)은 월말 종업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휴업 및 기타 사유(폐업제외)로 일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계속조사 기입
 - 휴업은 되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 일시적 휴업(2개월까지)

- 휴업으로 처리, 종업원수 기입않음.

— 위 이외의 경우

라.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 조사월중에 실제 근무한 종업원의 연인원수(延人員數), 즉 매일별 인원수를 월간합계한 수.
- 급료가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수는 제외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는 연근무인원수에 포함.

마. 월중 종업원 연근무 시간수

- 조사월중에 실제 근무한 생산직 종업원(임시 및 일고 생산직 포함)의 매일별 근무시간수를 월간 합계한 시간수.

※ 기입예 :

종업원 10인(생산직)을 가진 업체가 시간외 근무없이 1일 8시간씩 30일간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 연근무인원수 : 10명 × 30일 = 300명
- 연근무시간수 : 10명 × 8시간 × 30일 = 2,400시간
- 휴식시간은 제외함(다만, 광공업체의 쟁내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은 포함)
- 본래 업무외로 근무한 일·숙직시간은 제외.
- 지각, 조퇴, 노동쟁의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

※ <주의사항>

- 휴업, 조업중단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 계산에서 제외.
- 신규채용 종업원이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훈련 또는 수습기간중에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는 연근무인원수 및 연근무시간수에서 제외(단, 월말 종업원수 및 급여란은 포함)

바. 전월말 상시 종업원

- 전월말 상시 종업원수를 기입.

사. 월중 상시 종업원 입직자

- 해당월중에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새로 사업체에 들어온 상시 종업원수.

아.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해당월중에 자진퇴직, 해고, 사망, 전출 등으로 사업체를 떠난 상시 종업원수.

자. 금월말 상시종업원

- 조사해당월말 상시종업원수를 기입.
- 「전월말 상시종업원 +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금월말 상시종업원」

차. 월중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하였더라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 사업체 사정 등으로 생산직종업원 일부가 조업을 하였더라도 조업일수에 포함(단,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카.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교대

-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frac{\text{해당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text{월 중 조업 일 수}}$

- 교대작업일 경우
교대작업이 몇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입.

타. 급여총액

- 해당월중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 봉급, 수당, 상여금, 각종수당 및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총액(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 현물급여의 경우는 그 평가액도 포함.

파. 정액급여

- 매월 정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
- 현물급여의 경우 그 평가액도 포함.

하. 특별급여

- 월중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기말상여금, 임금인상소급분, 기타수당, 연차수당.

거. 증감내용

- 항목별로 증감부호 및 증감사유를 기입.

※ 기입예 :

| | 증감부호 | 증 감 사 유 |
|---------|------|---------|
| ① 입 직 자 | - | - |
| ② 이 직 자 | 1 | 20명 감축 |
| ③ 조업일수 | 3 | 4일 단축 |
| ④ 정액급여 | 4 | 20명분 |
| ⑤ 특별급여 | - | - |

※ < 주의사항 >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2종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급여 사항은 사업체의 주산업이 속하는 조사표에만 기입하여야 하고, 조사표에 모두 기입하거나, 분할기입하여서는 아니됨.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1. 조사착오 유형

<유형 1> 대상업체 착오포함 및 조사지연

- 비제조업체(예:도·소매업)가 제조업체 등에 하청을 주어 생산케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대상업체로 선정
- 대규모업체신설의 경우등은 경제신문등에도 보도되고, 직·간접으로 파악이 가능한데도, 이의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조사착수가 매우 늦어지는 경우

<유형 2>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 착오

- 면편직물을 혼방합성 섬유직물로 조사
- 당면을 인스턴트면류(라면류)로 조사
- 소형모터를 전동기로 조사

<유형 3> 품목확인 소홀

- 농업용 트랙터 및 이앙기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
-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

<유형 4> 동일기업내 공장간 중복조사

- 본사와 함께있는 공장에서도 조사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도 조사
- 동일기업내 타공장서 인수한 량을 생산량에 포함

<유형 5> 위·수탁관계에서의 중복·누락

-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 하청공장의 자체생산 납품량(원재료 제공없음)을 납품받은 업체에서 포함 조사

〈유형 6〉 출하포착시점의 혼동

- 염색·가공을 위해 단순 출고된 량을 출하로 조사

〈유형 7〉 내수·수출의 착오

- 타사에 납품하여 수출되는 경우에, 타사수출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를 수출로 조사
- 내수·수출물량을 바꾸어 기재

〈유형 8〉 재투입물량의 혼동

- 연속된 일관공정이 아니고 제조 완료된 반제품을 일관공정으로 취급하여 재투입물량에서 제외
- 시판으로 하여야 할 물량을 재투입으로 조사

〈유형 9〉 단위환산 착오

- 상자로 포장된 제품수량을 지정단위로 환산시 환산수치를 잘못 적용하여 과대조사
- 수성페인트 kl 를 l 로 조사
- 벽지 m^2 를 필로 조사
- 착오로 끝숫자를 더붙여 기재

〈유형 10〉 품목번호 오기

- 신규품목 조사시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
- 품목번호의 끝자리와 바로 앞자리를 바꿔쓰는 경우

〈유형 11〉 잠정·확정치의 현격한 차이

- 조사자 임의로 전월실적과 비교하여 기입하는 경우

2. 중점 검토사항

- 사업체 고유번호는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품목부호는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단위는 정확히 기입하였으며, 조사단위와 물량(금액)을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전월말재고(조사수첩활용)+생산+구입-재투입-출하」로 계산한 것과 금월말 재고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부족조정」사유가 생겼는가?
- 원재료 사용량과 생산량을 비교할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조업일수나 종업원수, 연근무시간수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한 경우(또는 그반대) 등 관련사항간에 의문은 없는가?
- 전월에 비하여 생산·출하·재고가 크게 증감이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3. 수시 확인 점검사항

- 대상업체에서 새로운 조사지정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현재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조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사업체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4. 조사표 제출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되,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시는

늦게 도착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야 함.

-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조사표에 기입보고 (휴업의 경우도 동일)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Ⅳ.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1. 일반사항란

- ① 조사표 상단의 □□ 월분의 기입과, 잠정자료, 확정자료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② 사업체 고유번호 기입누락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사업체 고유번호는 없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③ 행정구역 부호기입 누락은 없으며, 정확히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④ 유고사항이 1. 전입인데 행정구역번호가 전월과 달라 졌는가?
(서울시는 4단위(시, 도, 구시군), 기타 시·도는 2단위(시·도) 부호가 바뀌어야 전입에 해당됨)
→ 확인하여 정정.

2. 제품생산·출하·재고

- ① 사업체별 품목부호는 전월과 같은가? 만약 추가된 품목이 있다면 품목 유고사항란에 부호 1(신규생산), 4(조사누락)중 어느 한 부호가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누락, 착오시는 정정.
- ② 물량 통계를 위해 세분, 조사되는 품목(품목부호 7단위중 6번째 단위가 ○이 아닌 품목)은 세분 품목으로 조사되었는가?
→ 착오시 질의

- ③ 전월대비 생산·내수, 수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실적이 대규모 업체 30%이상, 중소기업 업체 50%이상인 경우 확인
→ 증감부호, 증감사유등을 참고하되, 의심나면 질의.
- ④ 생산이 전월, 금월 모두 ○이면서 「구입」란에 실적이 있는 품목이 있는가?
→ 확인하여 자체 생산은 없고 구입만 있는 품목인 경우 삭제.
- ⑤ 전월대비 「구입」란 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확인
→ 금월 또는 전월분 착오여부등을 확인.
- ⑥ 전월에 재투입이 있었던 품목이 금월에 없어지는 경우 확인
→ 조사착오 여부, 특수사정등 확인.
- ⑦ 전월대비 재투입 실적이 ±30%이상인데 생산실적이 ±5% 이내면 확인
→ 조사착오여부 검토
- ⑧ 전월대비 월말재고 실적이 대규모업체 30%, 중소기업업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확인.
→ 조사착오여부 검토
- ⑨ 조사표 I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전월말재고+생산+구입계-재투입-출하계±과부족조정=금월말재고」
→ 착오기입 여부검점(특히 생산, 출하, 재고)
- ⑩ 조사표 II에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수치와 금월말 재고를 비교하여 ±30% 이상인 경우 확인
「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와 금월말재고 비교
→ 착오기입여부 검토(특히 생산, 출하, 재고)

⑩ 조사표 Ⅲ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가?

「전월말 수주잔량+당월수주량-당월진척량 = 당월수주잔량」

→ 착오기입 여부검토

3.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① 전월대비 전력사용량이 $\pm 20\%$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실적이 모두 반대인 경우 확인

→ 생산실적 착오조사 검토

② 국산, 수입 원재료별로 전월말 재고가 금월말 재고간에 $\pm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확인

→ 기입착오 확인

4.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① 월말 종업원수란의 「상시종업원 계」와 그 아래에 있는 「금월말 상시종업원」(보조자료)이 서로 일치하는가?

→ 틀릴경우 확인

② 상시종업원 생산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 「월말 종업원수×월중 조업일수」와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와의 차이가 $\pm 10\%$ 이상인 경우

○ 「월중종업원 연근무인원수×월중 1일평균조업시간」과 「월중종업원 연근무시간수」와의 차이가 $\pm 20\%$ 이상인 경우

→ 의심이 있을 경우 확인

③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나 연근무 시간수가 증가하였는데도 제품 사항란의 생산 품목이 모두 감소한 경우는 없는가?

→ 생산실적, 종업원 사항증 착오 확인.

④ 다음 등식은 성립하는가?

「전월말 상시종업원+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월중 상시종업원 이직
자=금월말 상시종업원」

→ 틀릴 경우 전월말 상시종업원 대조 및 관련사항을 확인.

⑤ 전월대비 월말 종업원수가 증가(또는 감소)하였는데도 급여총액이
감소(또는 증가)한 경우 확인

→ 특별급여 영향때문인지, 다른 특수사정이 있는지를 확인.

V. 사례연구 및 중점 강조사항

사례 1

〈문〉 • A업체는 각종 장난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정품목인 플라스틱스폰지, 소형모터, 동력식장난감을 생산한다. A업체는 어떤 조사표를 사용해야 하는가?

〈답〉 • 2 가지 종류의 조사표 사용
 즉, 플라스틱스폰지 (5600600), 인형 및 장난감 (9040100)
 조사표 I
 소형모터 (8342400) 조사표 II

사례 2

〈문〉 • B업체는 스위치 (8391200)를 생산한다. 다른 지정품목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스위치 생산은 지정단위 (천개)미만인 경우가 많다. 매월별 생산이 다음과 같다고 할때 매월 조사표의 생산수량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
| 생산량 (개) | 680 | 400 | 420 | 380 | 600 | 480 | 400 | 450 |
| 누 계 (개) | 680 | 1,080 | 1,500 | 1,880 | 2,480 | 2,960 | 3,360 | 3,810 |

〈답〉 • 통상 지정단위 이상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반올림규정에 따라 보고하면 됨.
 • 지정단위 미만으로 생산하는 달이 연간 6월이상일 경우는 누계생산량 (또는 액)에 따라 반올림규정을 적용함.

• 위 설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고

|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
| 생산량 (천개) | 1 | 0 | 1 | 0 | 1 | 0 | 0 | 1 |
| ※ | 월중생산 량반올림 | — | 누계량 반올림 | — | 월중생산 량반올림 | — | — | 누계량 반올림 |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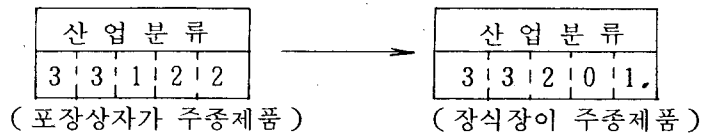
〈문〉 • C업체는 지정품목인 목제포장상자(3120100)를 주로하고 부수적으로 장식장(3200300)을 생산하였으나 금월부터는 장식장 생산에 주력하게 되어 목제포장상자는 부대품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금월 조사표의 산업분류부호는 어떻게 기입할 것인가?

〈답〉 • 산업분류부호는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는 품목만을 조사할 경우에는 연간출하액이 많은 품목의 산업분류부호, 조사표를 달리하는 품목들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 기재대상품목을 기준으로 출하액이 큰 품목의 산업분류부호를 기입함.

• 새로운 지정품목을 생산하거나, 기존 지정품목의 비중이 달라짐으로써 주종제품이 바뀔 경우 새로이 산업분류부호를 정하여야 함(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6월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이때 주종제품의 평가는 월간 출하액을 기준으로 함.

• 위 설문의 경우, 산업분류부호는 다음과 같이 바뀜



사례 4

〈문〉 D업체는 프레스기 생산업체이나 자금사정으로 휴업하였으며, 조사 당월생산, 출하실적은 없고 재고도 전무하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월분을 지급하였다.

조사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답〉
-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조사중지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설문의 경우 조사표 기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일반사항란의 「유고사항」:

| | |
|-----------|---|
| 유 고 사 항 | |
| 1. 전 | 입 |
| ② 휴 | 업 |
| 3. 사업체 흡수 | |
| 4. 사업체 분리 | |

— 「제품생산·출하·재고」

| 일련 번호 | 품목번호 | 품 목 명 | 유고 사항 | 단위 | 생 | 산 | ... | 월말재고 |
|----------|---------|-------|----------|----|---|---|-----|------|
| 01 | 8231100 | 프레스기 | 2 | MT | | | 0 | ... |

— 「원재료 및 연료사용 재고」

사용원재료가 없더라도 원재료부호, 명, 유고사항, 단위를 기입하고, 국산, 수입원재료 구분은 월말재고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월중사용량은 “0”, 월말재고량은 실제보유재고량을 기입함(다만 연료에 대하여는 사업체의 총사용량을 기입하

므로 공장유지, 사무실근무용등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기입)

一 「고용, 급여 및 조업사항」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월말종업원수, 전월말상시종업원,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이직자, 금월말 상시종업원, 급여총액, 정
액급여, 특별급여 항목은 기입, 다만 생산직종업원이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근무 인원수, 시간수, 조업일수,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란은 “0”으로 기입

사례 5

〈문〉 • E업체는 이번에 신규사업체 확인대상업체로 통보되어 왔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E업체는 자체 제조시설은 없고,
소아용 의복류를 몇군데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케 하여
판매하는데, 다만 납품을 받을때, E업체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또한 위탁사업체에서는 단가계약으
로 자기계산하에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상업체가 되는지?

〈답〉 • 대상사업체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그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업체는
도·소매업에 해당되어 애초부터 조사대상이 아님. 따라서 E
업체의 위탁물량은 위탁업체 개개에서 조사되어야 함.

(수탁업체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물론 조사할 필요가 없지
만)

•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도·소매, 농림, 수산,

전기, 개스, 수도, 금융, 건설, 운수, 창고, 통신, 서서비스산업등)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위탁한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받은 제조업체에서 조사해야 함.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받았든, 단가 또는 총액계약에 의하든간에 무조건)

- 그러나 산업분류가 제조업인 사업체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제공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조사할 대상이 달라지게 됨.
- 따라서 위 사례는 만약 조사하게 된다면 원초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닌 산업을 조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례 6

〈문〉 • F사업체는 「유성페인트(5210310)」생산업체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기업내 G공장에서부터 「수성페인트(5210320)」를 이송받아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입」란에 해당되는가?

〈답〉 • 「구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지정품목이고, 이와 포괄범위가 같은 제품을 외부로부터 구입(또는 수입)하거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이송받는 경우임.

- 이때 포괄범위가 같은 제품이라함은 지수품목부호(품목부호중 앞의 5자리까지)가 일치하면 동일품목으로 간주함.
- 따라서 위 설문의 경우,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는 제품의 성질상은 다르나 「페인트(5210300)」에 함께 포괄되므로 동일품목으로 간주됨.

- F사업체에서 「수성페인트」생산이 전혀 없다고 할 때에 조

사표 기입예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생 산 | 구 입 | |
|----------|-------|-----|-------------|-----------|
| | | | 외부구입 (수입포함) | 동일기업내 타공장 |
| 52110310 | 유성페인트 | 325 | 0 | 0 |
| 52110320 | 수성페인트 | 0 | 0 | 250 |

- 한편 G공장은 (전량 F공장으로 보낸다고 가정)

| 품목부호 | 품 목 명 | 생 산 | 출 하 | | |
|----------|-------|-----|------|-----|----------|
| | | | 국내시판 | 수 출 | 동일기업내타공장 |
| 52110320 | 수성페인트 | 250 | 0 | 0 | 250 |

사례 7

<문> • H제약회사에서는 각 의약품 도매업체에 출하하였던 의약품들이 유효기간경과로 상당수 반품되어 왔으므로, 이를 폐기처리코자 한다. 「구입」란과 「재고」에 기입하는 방법은?

<답> • 반품된 제품은 「구입」란에 계상하여야 하나,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구입」으로 보거나 「재고」란에 계상할 수 없음.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되는 제품
- 반품된 제품중 대부분 해체되어 새로이 생산공정에 투입될 제품 (이때는 새로이 생산, 출하, 재고를 파악하여야 함)
- 단순처리, 가공으로 반품처에 재출고될 제품

사례 8

<문> • I사업체 제조1부에서는 회사기획실로부터 연승 5,000 kg의 제조명령서를 받았다. 따라서 PE사(株)를 투입하여 연승 5,000 kg을 생산하였는 바, 이중 3,000 kg에 대하여는 추가제조지령서에 의하여 어망생산으로 투입하여 2,900 kg의 어망을 생산하였다. 생산·재투입간의 관계는?

<답> •

| 제 품 명 | 생 산 량 | 재 투 입 량 | 출 하 량 | 재 고 량 |
|-------|-------|---------|-------|-------|
| 연 승 | 5,000 | 3,000 | 0 | 2,000 |
| 어 망 | 2,900 | 0 | 0 | 2,900 |

- 일반적으로 생산량 관계조사는 경리장부상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음. 왜냐하면 경리장부는 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 체계이기 때문임. 따라서 정확한 생산량조사는 생산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함.
- 재투입관련문제는 쉽게 파악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일관공정에 걸쳐있는 재공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반적으로 「재투입(자가소비)」이란 동일공장 내에서 1차적으로 생산완료된 중간제품을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시 원재료로서 투입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생산완료된 중간제품이라 하면, 일단 현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창고에 있건, 현장에 있건간에) 다른 공장 또는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는 반제품을 말함.
- 따라서 현재 어떤 특정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정중에 걸쳐있는 원재료는 설혹 중간제품 생산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중간상태를 일단 생산으로 잡고 다시 전량 재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음.(생산완료된 제품이 아니고 재공품임)
이러한 경우는 재투입관계는 무시되어야 함.

- 그러나, 일단 중간제품으로 생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제조명령에 따라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다시 소비되거나, 다음 제조를 위해 시간적·장소적으로 일단 분리되거나 출하를 위해 대기중인 반제품 상태의 것은 일단 재공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다시 소비될 경우는 재투입관계가 조사되어야 함. 여하튼 재투입문제는 생산담당부서에서(회계담당부문의 처리와는 별도로) 여하히 파악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질 문제임.

사례 9

<문> • J 공장 생산부에서는 본사로부터 아연도강판 10,000 M/T의 생산명령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스톱보통강을 기초소재로 투입하여 생산을 완료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일관공정으로 작업을 진행하나, 아연도강판이 되기까지는 대강, 냉연박판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대강이나, 냉연박판의 생산을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제조명령서상의 제품제조수량만을 확인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 • 이 경우에는 대강, 냉연박판이 지수품목이라 하더라도, 굳이 대강, 냉연박판 생산량을 추정한 후, 다시 아연도강판을 만들기 위해 재투입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비록 대강이나 냉연박판 상태에 있긴하나 그것은 일관공정상 경유부분에 불과하여 하나의 재공품이기 때문임.

따라서 「아연도강판」만 조사하면 됨.

사례 10

〈문〉 • J공장 생산부에서는 본사로부터 각각 별개의 제조지령서에 의하여 냉연박판 3,000M/T, 아연도강판 4,000 M/T의 생산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3,000 M/T은 냉연박판 공정까지만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아연도강판 4,000 M/T은 일관공정으로 진행하였다. 생산, 재투입의 관계는?

〈답〉 •

| 제 품 명 | 생 산 량 | 재 투 입 량 | 출 하 량 | 재 고 량 |
|-----------|-------|---------|-------|-------|
| 냉 연 박 판 | 3,000 | 0 | 1,000 | 2,000 |
| 아 연 도 강 판 | 4,000 | 0 | 2,000 | 2,000 |

※ 다만, 생산부에서 일관공정이라도 일단 중간제품으로 생산량을 잡았다가 다시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례 11

〈문〉 • K업체는 알미늄샷시를 생산하면서 건설업도 겸업하고 있다. 자체에서 생산한 샷시바를 건축물샷시에 전량 투입하는데 재투입으로 볼 것인지?

〈답〉 • 제품을 자기사용(自己使用: 사무용, 업무용, 시험용, 전신용등)에 공하는 경우는 재투입이 아니라 출하로 포함해야 함. 더욱기 산업분류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제조업과 건설업, 제조업과 무역업등)에는 더욱 출하로 간주해야 함.

사례 12

<문> • L업체는 코오크스(5400400)를 자체 생산하여 이를 철강제품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자기사용으로 보아 「국내시판」에 포함할 것인지?

<답> • 코오크스를 생산하여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연료등으로 사용한 양은 출하가 아니고 재투입으로 처리함. (과거지침서의 처리방법을 변경)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는 출하가 아니고 재투입으로 하며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

— 제품원재료(원료, 부품)로서 투입

— 연료로 투입

— 촉매제, 환원제 등 화학처리를 위해 투입

— 다른 제품의 성질을 변형, 보완, 가공을 위하여 투입

※ 다만, 단순포장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자기사용으로 보아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 및 기타로 처리

사례 13

<문> • M업체는 반제품 및 부품(지수품목으로 채택된) 생산업체로서 대기업인 “갑”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갑”업체는 주로 수출오더에 의해 M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으므로, M업체는 이를 전량수출로 계상하고 있다. 옳바른 것인지?

<답> • 원칙은 다음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함.

첫째, “갑”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

는 「시판」으로 조사해야 하고
 들째, “갑”업체에서 부품 자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로 계상하여야 함.

사례 14

- 〈문〉 • 삼척N공장에서는 회주물을 생산하여 포항의 하치장으로 출하하였다. 포항의 하치장에서는 이 제품을 서울의 본사 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요처에 인도하고 있다. 이때 N공장에서의 조사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 • N공장에서는 「국내시판」으로 처리해야 함. 왜냐하면 제품 관리가 N공장의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임. 물론 포항하치장이 N공장의 관할하에 있다면 출하가 되지 않음.
-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포항하치장이 회주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

사례 15

- 〈문〉 • O공장에서는 집적회로(8340700)를 생산하여 칼라 및 흑백 T.V.를 생산하는 동일기업내 P공장으로 전량 이송하고 있으며, P공장에서는 집적회로를 자체생산하지는 않고, O공장에서 보내온 전량을 T.V.생산에 투입한다고 한다. O공장 및 P공장의 처리는?
- 〈답〉 • O공장에서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에 원재료(원료, 부품)로 제공하였으므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에 계상함.

또한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되어 연료, 촉매제등으로 전량 투입되는 경우도 같음.

- P공장에서는 집적회로의 생산이 없음으로 「생산」 「구입」란등에는 기재할 수 없고, 다만 주요원재료인 경우, 「원재료 사용, 재고」란에 기입하여야 함.

사례 16

〈문〉 • Q공장에서는 R사업체 (동일기업내 사업체가 아님)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중유 2,000 kℓ를 빌려주었다. R업체에서는 다음 달에 이를 전량 변제하기로 하였다. 양 사업체의 조사표 처리는?

〈답〉 • 외상판매가 아닌 융통관계는 현물로 받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빌려준 업체에서는 조사표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따라서 당월에 6,000 kℓ를 시판하고, 2,000 kℓ를 빌려주었다고 가정할 경우

| 외 부 판 매 | | 동일기업내 타공장 및 기타 | 월 말 재 고 |
|---------|-----|-------------------|---------|
| 국 내 시 판 | 수 출 | | |
| 6,000 | 0 | 0 | 5,000 |

로 되어 월말재고량에는 빌려준량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됨.

- 만약 다음달에 가서 현물변제대신 판매 (현금, 외상) 형태로 약정이 바뀌었다면 그때에 출하로 계상하고, 재고에서 제외시

키면 됨.

- 한편 R사업체에서는 빌려온 제품 2,000 kl를 포함하여 8,000 kl를 시판하고 재고가 500 kl 남았다고 할 경우

| 구 입 | | 출 하 | | | 월말재고 |
|----------|----------|---------|-----|--------------------|------|
| 외부(수입포함) | 동일기업내타공장 | 외 부 판 매 | | 동일기업내 타 공장 및 기타 | |
| | | 국내시판 | 수 출 | | |
| 2,000 | 0 | 8,000 | 0 | 0 | 500 |

- R업체에서 다음달에 2,000 kl를 Q공장에 전량 변제하였다고 하면 R업체에서의 처리방법은(구입없고 시판 6,000 kl, 재고 3,000 kl라 가정)

| 구 입 | | 출 하 | | | 월말재고 |
|----------|----------|---------|-----|--------------------|-------|
| 외부(수입포함) | 동일기업내타공장 | 외 부 판 매 | | 동일기업내 타 공장 및 기타 | |
| | | 국내시판 | 수 출 | | |
| 0 | 0 | 6,000 | 0 | 2,000 | 3,000 |

- 만약 현물변제하지 않고 약정을 바꾸어 현금으로 갚았다면 R업체에서는 조사표에 나타낼 필요가 없음.

사례 17

- <문> • S업체에서는 「인형 및 장난감」을 생산하고 있는바, 생산액, 출하액은 공장인도가격으로 평가하여 조사표에 기재하여 주나, 재고액은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생산, 출하, 재고액 간에 함수상 불일치가 생긴다고 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답> •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월말재고액+당월생산액+구입액-재투입액-출하액=월말재고액」의 함수관계가 성립할 것이지만, 회계처리방법이나, 금액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불일치가 생기게 됨. 이때는 실제재고액(현실태기준이 원칙이나 이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장부상 가액)을 먼저 기입한후, 증감액만큼을 ⊕, ⊖기호를 붙여 「과부족조정」(이 란이 없으면 기입불필요)란에 기입하면 됨.

예컨데 실제재고액은 15백만원이나 위 산식에 의해 계산된 재고액은 12백만원이라면

| 과 부 족 조 정 | | | | | | | 월 말 재 고 | | | | | | |
|-----------|-----|---|---|---|---|---|---------|-----|---|---|---|---|-----|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 단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 | | | | | 3 | | | | | | | 1 5 |

와 같이 기입(과부족조정란이 없는 경우는 실제재고만 기입)

사례 18

- <문> • T업체는 면직물을 생산하여 부분 자수과정을 거친후 동일기업내 U업체에 출하하고 U업체는 이를 완전 자수직물로 만들고 있다. 양 회사가 모두 대상사업체일때의 처리관계는?

- <답> • 자수직물(2140500)은 자수과정이 모두 완료된 것만 조사한다. 따라서 T업체는 부분자수과정만을 거쳤으므로 「면직물생산→재투입→자수직물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해서는 안되고 「면직물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로 조사하여야 함.

- 한편 U업체의 경우, 면직물을 자체생산하면서 완전자수직물을 만들 경우에는 T업체에서 받은 일부자수면직물은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재투입하여 자수직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야 함. 다만, 자체내에서 면직물 생산이 없는 경우는 T업체에서 받은 면직물은 「구입」이 되지 않고 「원재료사항」에 기입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조사표로 작성하면 다음예와 같음.

① T업체의 경우

| 품 목 번 호 | 품 목 명 | 생 산 | 출 하 | | |
|----------|-------|-----|------|-----|-----------|
| | | | 국내시판 | 수 출 | 동일기업내 타공장 |
| 21120110 | 순면직물 | 150 | 0 | 0 | 150 |

② U업체의 경우

i) 면직물 자체생산이 있는 경우

| 품목부호 | 품목명 | 생 산 | 구 입 | | 동일공장내 재 투 입 | 출 하 | |
|---------|------|-----|------|-------------|-------------|------|------|
| | | | 외부구입 | 동일기업내 타 공 장 | | 국내시판 | 월말재고 |
| 2120110 | 순면직물 | 400 | 0 | 150 | 450 | 100 | 0 |
| 2140500 | 자수직물 | 450 | 0 | 0 | 0 | 400 | 50 |

ii) 면직물 자체생산이 없는 경우

| 품목부호 | 품목명 | 생 산 | 구 입 | | 동일공장내 재 투 입 | 출 하 | |
|---------|------|-----|------|-------------|-------------|------|------|
| | | | 외부구입 | 동일기업내 타 공 장 | | 국내시판 | 월말재고 |
| 2140500 | 자수직물 | 450 | 0 | 0 | 0 | 400 | 50 |

사례 19

〈문〉 • 면직물, 방모직물등 일반 직물과 염색가공직물과의 관계는?

〈답〉 • 염색가공직물이 지수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염색가공업체(주로 외주가공)들의 동향을 자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일반직물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자체 염색시설을 갖추고 염색과정까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직물로 조사하여야 하고, 다만 외주가공만을 해주는 염색업체나 동일기업내에 속하면서 염색만을 산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염색가공직물로 조사하여야 함.

- 결국 광공업 동태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염색가공직물의 총량은 우리나라 전체 염색가공직물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가공이나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염색을 위탁받아 처리해준 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임.
- 예를들어 V사업체에서 면직물을 생산하여 자체염색을 하는 경우와 동일기업내 타공장인 W사업체(또는 타사업체)에 염색가공을 위탁한다고 할 경우의 조사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V사업체의 경우

i.) 면직물 생산과 함께 자체염색하는 경우

| 품목부호 | 품 목 명 | 생 산 | 구 입 | | 재투입 | 출 하 | | |
|---------|-------|-----|-----|-------|-----|------|----|----------|
| | | | 외 부 | 동일기업내 | | 국내시판 | 수출 | 동일기업내타공장 |
| 2120120 | 혼방면직물 | 120 | 0 | 0 | 0 | 50 | 30 | 0 |

ii) W사업체에 염색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 (i)조사표와 같음.

② W사업체(염색가공만을 하는 업체)의 경우

| 품목부호 | 품목명 | 생 산 | 구 입 | | 재 투입 | 출 하 | | |
|-----------|--------|-----|-----|-------|------|------|-----|--------------|
| | | | 외 부 | 동일기업내 | | 국내시판 | 수 출 | 동일기업내 타공장 |
| 211301100 | 염색가공직물 | 120 | 0 | 0 | 0 | 120 | 0 | 0 |

※ 이 경우 「동일기업내 타공장 및 기타 출하」가 되지 않는 이유는 V사업체에서는 염색가공 직물로 조사되지 않기 때문임.

사례 20

<문> 모기업체인 X사업체는 각각 독립된 사업체 고유번호를 가진 Y, Z사업체를 계열사업체로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Y, Z사업체는 모기업체인 X사업체로부터 원재료 일체를 공급받아 X사업체와 같은 지정품목을 생산한다. Y, Z사업체에서의 조사표 처리는?

<답>

-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또는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은 각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여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이를 각 공장간에 출하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지 않고 타공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이를 전량 원재료를 제공한 공장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위·수탁 관계로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Y, Z사업체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원재료를 전량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출하」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원재료 제공공장과 별개로 출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관계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각각 대상사업체로 처리되어야 함. 따라서 이 경우 Y, Z사업체는 X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를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원재료 사항란에 기재하고, 제품생산, 출하, 재고도 조사되어야 함.

Ⅵ. 조사대상사업체 관리요령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1. 개 요

가. 관리목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업체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표본사업체를 적기에 보완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누락·중복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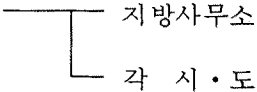
나. 대상사업체

-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및 기계수주 사업체

다.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

라.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지방사무소
- 각 시·도→지방사무소
- 지방사무소→중앙(산업통계과)
- 중앙(산업통계과) 

마. 관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등)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바.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휴업, 폐업, 진출, 합병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 신규 및 전입·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체
 - 전입·전출 사업체
- 조사표 변동사항
 - 조사관할변경에 따른 변동
 - 조사중지 지시에 따른 변동

사. 관리방법

- 지방사무소 : CRT입력 및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시도 :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지방통계사무소에 제출
- 중앙 (산업통계과) :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에 의한 후속조치
- 지방사무소간 전산망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관리현황보고서 및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음.

아. 보고서식

-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총괄)
-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자. 보고서 제출

- 매월 10일까지 중앙 (산업통계과)에 도착

2.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는 변동된 내용만 기재
(단, 사업체 변동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체 고유번호 및 사업체
명을 반드시 기입)
-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 (필요한 경우 영문 병기)로

기재

(3) 기입한 사항의 정정시는 횡선을 긋고 바로 그 위에 다시 기재
나. 관리현황 보고서 기재요령

(1) 사업체 고유번호

- 지정된 사업체 고유번호(7단위)를 기재하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된 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번
호를 기재

(2) 공장(사업체)명

- 공장(사업체)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을 기입한다.

※ 기입예 :

××공업(주)울산공장, (주)××산업 창원공장

- 사업체 명부와 실제공장(사업체)명이 다른 때에는 관리현황 보
고서에 기재, 제출한다.

(3) 소재지 및 행정구역 분류부호

- 소재지는 현재 공장(사업체)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기재

※ 기입예 :

① 여러개의 법정동이 모여서 하나의 행정동을 구성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가동 경운동 90 번지는 종로
구 경운동 90

②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35의 11번지는 안양시 호계2동
935-11로

- 신규사업체인 경우는 사업체규모 기준에 따라 분류 기입

(7) 작성구분

- 당해 공장(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본사(사무실등), 타공장등에서 조사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 | | |
|------------------------------------|---|
| — 당해공장(사업체) | 1 |
| — 타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 | 2 |
| — 분리된 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 | 3 |

(8) 조사종류

- 사업체에서 제출되는 조사종류에 따라 해당된 조사표란에 ○표를 기입
- 단일공장(사업체)에서 동태 지정품목이 달라 I, II, III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란에 ○표를 기입

(9) 조사지정품목

- 각시·도와 지방통계 사무소에서 조사대상품목의 포괄범위와 일치하고 사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규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공장(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태조사, 생산능력의 지정품목명과 품목번호를 기입
- 동일공장(사업체)에서 여러개의 조사지정품목이 생산되는 경우란을 달리 기입

※ 기입예 :

| 조 사 지 정 품 목 | | | | | | | | | | | | |
|--------------|---|---|---|---|---|-------------|--|--|--|--|--|--|
| 광공업동태품목 및 부호 | | | | | | 생산능력품목 및 부호 | | | | | | |
| 모 | | | | | | 래 | | | | | | |
| 0 | 9 | 0 | 0 | 3 | 0 | 0 | | | | | | |
| 자 | | | | | | 갈 | | | | | | |
| 0 | 9 | 0 | 0 | 4 | 0 | 0 | | | | | | |

(10) 유고내용

① 전입·전출

- 행정구역(각시·도)의 경계를 달리하여 공장(사업체) 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시·도에선 전입,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시·도는 전출
- 공장(사업체)의 이동이 각시·도의 경계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전출이 아니고 소재지 변경(관할이 같은 경우) 또는 조사 관할변경에 해당
- 행정구역 관할변경으로 소속시·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봄.

② 신규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표본추출결과 새로 조사 지시된 공장(사업체).
- 조사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사업체)이 새로 설립된 경우

③ 휴업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채로 1개월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비지수 품목생산은 계속하더라도 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도 휴업으로 간주

④ 폐업

- 사업체의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생산활동을 영구적으로 중지한 상태를 말한다.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 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해체인 경우
- 광업 및 제조업체가 타산업(건설, 서어비스등)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 6개월이상 휴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계속하여 지정품목 생산계획이 없는 업체 및 완전 폐업 사업체는 비교란에 「조사중지요망」이라 기재

⑤ 합병·합산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타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을 흡수하여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공장(사업체)으로 결합되는 경우

※ 공장(사업체) 감소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타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을 흡수하였으나 경영 및 장부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명칭변경만 발생)

⑥ 비 고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예 :

- 경기도에서 전입, 서울로 진출
- 현지 색출로 신규, 중앙지시로 신규
- 설비 완전폐기로 폐업등
- 사업체 변경, 동일 시·도내 주소이동, 전화번호 변경, 작성구분 변경, 조사종류 변경은 유고부호가 없으므로 변경내용만 기입
- 폐업·6개월이상 휴업등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은 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적색으로 “조사중지요망”이라 기입한다.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3.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시는 횡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다시 기재
 - (2)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유고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사업체의 내용만을 집계하여 기재
- 단, 폐업과 조사중지는 중앙지시에 따라 기입여부를 결정한다.

나.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1) 전월말 사업체 및 조사표

- 전월말 현재 제출된 조사표수와 조사대상 사업체수를 기입

(2) 증가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증가된 대상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를 각 항별로 기입

① 신규

- 중앙에서 새로이 지시된 신규조사 사업체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매수를 기입
-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신규사업체를 현지에서 색출하여 조사하는 경우 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② 전입

- 타시·도에서 이전되어온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③ 조사관할 변경

- 동일시·도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간 전입되는 사업체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3) 감소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감소된 대상 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① 조사중지

- 중앙에서 폐업 또는 휴업업체(전체휴업 또는 지정품목휴업)중 조사중지 지시한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② 합병·합산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이 합병·합산으로 인하여 사업체의 감소와 조사표 작성 매수에 변동이 있을시에 기입
단, 합병·합산이라도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별도로 수행되는

경우는 명칭변경 또는 상호변경만 발생한다.

- 흡수합병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관리현황 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③ 조사관할 변경

- 동일 시·도내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간에 전출되어가는 공장(사업체)과 조사표의 감소된 숫자를 기입

④ 전 출

- 공장(사업체)의 생산설비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공장(사업체)수 및 조사표 매수를 기입

⑤ 비 고

-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⑥ 기 타

- 유고사업체로서 조사중지 요청한 사업체의 조사표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휴업으로 표기 제출한다.

() 월분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

| 구분 조사종류 | 전월말사업체 및 조사표 | | 증 | | 가 | | 감 | | 소 | | 금월말사업체 및 조사표 | 비고 |
|------------------|-----------------|---|---|---|---------------|---------------|------|-------|---------------|---------------|-----------------|----|
| | 신 | 규 | 전 | 입 | 조사관 할 변 | 조사관 할 경 | 조사증지 | 합병·합산 | 조사관 할 변 | 조사관 할 경 | | |
| 광공업동태조사 대상사업체 | | | | | | | | | | | | |
| 생산능력조사 대상사업체 | | | | | | | | | | | | |
| 기계수주조사 대상사업체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광공업동태 조사표 I | | | | | | | | | | | | |
| 광공업동태 조사표 II | | | | | | | | | | | | |
| 광공업동태 조사표 III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생산능력조사표 | | | | | | | | | | | | |
| 기계수주조사표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사업체 수 | | | | | | | | | | | | |
| 조사표 수 | | | | | | | | | | | | |

29-5

가장조사포럼 및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국가정책연구소

통제청자료실



B0003354

VII. 광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 분류표

대분류 2. 광 업
대분류 3. 제 조 업
대분류 4. 전 기 업

대분류 2. 광 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3. 금속광업, 29. 기타광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휴광, 폐광사업체

가. 광업의 경우 자금 및 기타 사정으로 휴광이 많고,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광산주를 매월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실적보고 유무를 매월 확인.

나. 폐광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 보고

다. 광산물은 그 품위가 광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품위에 따라 실수율 또는 실채취율이 다르므로 매월 품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2. 품위환산

가. 품위환산 방법

1) 품 위

채굴된 광석에서 해당광물의 실채취량을 환산할 수 있도록 정한 광물의 함유 비율.

2) 환산방법

광산물은 그 품위에 따라 실수율 또는 실채취율이 다르기 때문에, 광산물 품위환산 조건표에 의한 실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함.

예) 1. 품위 40%인 철광석 100% 경우

(품위 40%, 환산수치는 0.643임) :

$$100\% \times 0.643 \approx 64\%$$

2. 품위 42.5%와 42.55% 철광석 각각 100% 경우

(품위 42%의 환산수치 0.663, 품위 43%의 환산수치 0.706임)

가) 품위 42.5%인 경우

$$100\% \times \{ 0.663 + (0.706 - 0.663) \times 5/10 \} \approx 68\%$$

나) 품위 42.55%인 경우

$$100\% \times \{ 0.663 + (0.706 - 0.663) \times 55/100 \} \approx 69\%$$

* 품위 43%인 경우는 71%이므로 42.5%, 42.55%등을 사사오입하여 43%로 계산해서는 안됨.

3. 매월 품위가 달라지는 경우

가. 품위별로 각각 생산, 출하, 재고를 환산

나. 월중 품위가 변동될 때도 품위별로 환산된 물량을 합계함.

4. 기준품위

- 무연탄 : 4,800 ~ 5,000 cal
- 철광석 : Fe 56%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 것)
- 중석광석 : W_o_3 70% (")
- 연광석 : Pb 50% (")
- 아연광석 : Zn 50% (")

5. 은광석, 금광석의 경우는 제련시설을 갖춘 사업체에서는 99.9%의

순은, 또는 순금의 실수량으로 조사하고, 제련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해당 광산의 금, 은의 함유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6.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구분조사
7. 당해 사업체서 채굴한 광석을 기초자료로 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
할 경우 그 광물은 원재료로 투입되는 전량을 재투입으로 기입
예) 석회석 조사시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생산할 경우
원료로 투입되는 물량은 재투입량으로 기입
8. 무연탄의 재고는 산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저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역두, 소비저 재고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관리하에 있는 재고 전부를 말함.
9. 조사범위
품목개념, 원재료, 용도등을 기준으로 포괄범위내에서 조사하여야 하
며 유사한 것으로, 포괄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문의
후 처리.
10. 기 타
광석의 주판매처, 품위, 수출이 있는 경우 수출국 등을 구체적으로
매월 기입.

광산물 품위환산 조건표

(%당×합량=광산물 환산량)

| 광산물 함유량 (%) | 광산물%당환산수치 | | | 광산물 함유량 (%) | 광산물%당환산수치 | | | |
|-------------------|-----------|-------|-------|-------------------|-----------|-------|-------|-------|
| | 철 | 연 | 아연 | | 철 | 연 | 아연 | 증석 |
| 20 | 0.275 | 0.374 | 0.372 | 55 | 0.977 | 1.112 | 1.112 | |
| 25 | 0.357 | 0.473 | 0.472 | 56 | 1.135 | 1.135 | | |
| 30 | 0.447 | 0.574 | 0.572 | 57 | 1.028 | 1.157 | 1.158 | |
| 32 | 0.485 | 0.615 | 0.613 | 58 | 1.056 | 1.180 | 1.181 | |
| 33 | 0.504 | 0.636 | 0.634 | 59 | 1.080 | 1.202 | 1.203 | |
| 34 | 0.524 | 0.657 | 0.655 | 60 | 1.104 | 1.225 | 1.227 | 0.819 |
| 35 | 0.544 | 0.678 | 0.676 | 61 | 1.130 | 1.248 | 1.250 | 0.836 |
| 36 | 0.563 | 0.698 | 0.696 | 62 | 1.157 | 1.271 | 1.273 | 0.854 |
| 37 | 0.583 | 0.719 | 0.717 | 63 | 1.182 | 1.295 | 1.296 | 0.871 |
| 38 | 0.604 | 0.740 | 0.738 | 64 | 1.206 | 1.318 | 1.320 | 0.890 |
| 39 | 0.624 | 0.762 | 0.760 | 65 | 1.233 | 1.344 | 1.347 | 0.907 |
| 40 | 0.643 | 0.783 | 0.781 | 66 | 1.261 | 1.370 | 1.373 | 0.925 |
| 41 | 0.653 | 0.804 | 0.802 | 67 | 1.285 | 1.395 | | 0.944 |
| 42 | 0.663 | 0.826 | 0.827 | 68 | 1.310 | 1.420 | | 0.962 |
| 43 | 0.706 | 0.847 | 0.846 | 69 | | | | 0.981 |
| 44 | 0.727 | 0.869 | 0.868 | 70 | | | | |
| 45 | 0.747 | 0.891 | 0.890 | 71 | | | | 1.018 |
| 46 | 0.772 | 0.913 | 0.912 | 72 | | | | 1.038 |
| 47 | 0.793 | 0.934 | 0.934 | 73 | | | | 1.057 |
| 48 | 0.819 | 0.956 | 0.956 | 74 | | | | 1.077 |
| 49 | 0.840 | 0.978 | 0.978 | 75 | | | | 1.097 |
| 50 | 0.862 | | | 76 | | | | 1.116 |
| 51 | 0.883 | 1.023 | 1.023 | 77 | | | | |
| 52 | 0.910 | 1.045 | 1.045 | 78 | | | | 1.156 |
| 53 | 0.932 | 1.067 | 1.067 | | | | | |
| 54 | 0.955 | 1.090 | 1.090 | | | | | |

소분류 210 . 석 탄 광 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0100100 | 무 연 탄 (無 煙 炭) | ℥ | 고정 탄소의 함량이 높고 휘발분이 적으며 회분이 많은 석탄 |

소분류 230 . 금 속 광 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0300100 | 철 광 석 (鐵 鑛 石) | ℥ | 주로 철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선광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성분이 제거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함유율이 높아진 광석) Fe 56%로 환산한다. |
| 0300200 | 중 석 광 석 (重 石 鑛 石) | ℥ | 주로 중석을 함유하는 정광 Wo ₃ 70%로 환산한다. |
| 0300300 | 은 광 석 (銀 鑛 石) | kg | 은을 함유하는 원석 Ag 99.9%로 환산한다. |

| 조 사 범 위 | 원재 료 | 용 도 |
|-------------------|------|--------|
| • 갈탄, 역청탄, 아탄은 제외 | | 연료, 연탄 |

| 조 사 범 위 | 원재 료 | 용 도 |
|--|------|-----|
| ○ 적철광, 자철광을 조사 | | |
| ○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은 정량을 조사 | | 은괴 |
| ○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원석 또는 정광의 은 함유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 | |
| × 제련소에서 제련된 은괴는 7210600으로 조사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0300409 | 금 광 석 (金 鑛 石) | kg | 금을 함유하는 원석 Au 99.9%로 환산한다. |
| 0300500 | 연 광 석 (鉛 鑛 石) | % | 주로 납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 Pb 50%로 환산한다. |
| 0300600 | 아 연 광 석 (亞 鉛 鑛 石) | % |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정광 Zn 50%로 환산한다. |
| 0300709 | 몰리브덴광석 | kg | MoS ₂ 를 주성분으로 하는 몰리브데나 이트광석 몰리브덴정광 90%로 환산한다.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금 정량을 조사 ○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원석 또는 정광의 금함유 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련소에서 제련된 금괴는 7210700으로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연광, 백연광, 황산연광, 기타연광을 포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련된 연괴는 제외. | | 연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아연광, 이극광, 홍아연광, 탄산아연광을 포함한다.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련된 아연괴는 제외 | | 아연괴 |
| | | 진공관재, 굴신재, 내열합금재, 페인트안료, 반도체, 전기료 |

소분류 290 . 기타 광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0900100 | 화 강 암 (花 崗 岩) | % | 심성암의 일종으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운모등을 주성분으로 한 석재(썩돌) |
| 0900200 | 쇄 석 (碎 石) | % | 각종 암석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돌조각 |
| 0900300 | 모 래 | m ³ | 강변, 해변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것. |
| 0900400 | 자 갈 | m ³ | 강변, 해변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것. |
| 0900500 | 석 회 석 (石 灰 石) | % | 탄산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성암(빚돌) CaO 50%로 환산한다. |
| 0900600 | 고 령 토 (高 嶺 土) | % | 바위속에 있는 장석이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흰빛 또는 잿빛을 띠는 흙 |
| 0900709 | 장 석 (長 石) | % | 정장석, 조장석, 회장석등의 광석이 있으며 유리나 도자기의 주원료로 쓰여지는것. |
| 0900800 | 규 석 (硅 石) | % | 규소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암석. |
| 0900900 | 납 석 (蠟 石) | % | 수분함량이 적은 연질광물로서 용이하게 분쇄되어 쓰이는 광물.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운모화강암, 백운모화강암 포함. ×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은 제외 (예 ; 비석, 상석등) | | 건축, 토목용 |
| | | 건축용, 도로포장, 철도 로반용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의 것을 조사. × 산업용 모래 (규사) 는 제외 | | 건축용, 도로포장, 철도 로반용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의 것을 조사 | | 건축용, 도로포장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석을 포함. | | 시멘트, 석회, 내화재, 벽재, 판유리, 도자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토포함. | | 도자기, 시멘트 |
| | | 도자기, 유리, 유리섬유, 애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사 (산업용 모래) 제외. | | 내화용벽돌, 주강사, 주 물사, 유리공업, 전자산 업 |
| | | 내화재료, 실충제, 아스 팔트충전재, 고무공업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0901009 | 천 일 염 (天 日 鹽) | % | 해수를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켜 얻은 자연염. |
| 0901100 | 흑 연 (黑 鉛) | % | 전기의 양도체이며 내고온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광물 |
| 0901200 | 활 석 (滑 石) | % | 매우 부드럽고 촉감이 매끄러우며 전기에 대해 절연성을 가지며 분말상태일때 흡수성, 고착성이 강하며 내화성이 있어 내화재, 충전재등으로 쓰여진다.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암염, 재제염은 제외. | | |
| × 공업적으로 무연탄, 피치등을 고온 가열하여 제조된 것은 제외. | | 주형재료, 탄소강원료, 내화재료, 탄소봉, 원자로용, 운할재 |
| ○ 스테아타이트, 소우프스톤을 포함 × 활석분은 제외. | | 요업제품재료, 페인트원료, 살충제, 제지, 내화재, 화장품, 고무 |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햄 및 소시지는 축육제품과 어육제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어육 햄, 어육소시지는 어육함량이 60%이상인 것이며, 혼합어육햄, 혼합어육소시지는 각각 어육햄, 어육소시지에서 조사한다.(식품제조허가시 구분허가하고 있음)
2. 분유는 생우유를 완전 탈수시킨 것으로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 우유기저 이유식을 포함한다.
곡분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기저 이유식은 제외됨을 주의
3. 냉동물고기에 냉장 또는 빙장된 것은 제외
냉동 : -20°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보관한 것
냉장 :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
빙장 : 얼음을 이용하여 부패방지 하는 것
원양어선상에서 냉동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은 제외되며 국내에서 가공처리를 위해 해동시킨 것을 다시 냉동시킨 경우는 냉동시점에서 조사
4. 어묵은 어육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찐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등 명칭, 형태에 관계없이 원재료 및 제조과정이 유사한 것은 모두 포함한다.(덴뿌라, 오뎅 등)
원양어선상에서 생선을 일차 가공하여 만든 냉동어육은 어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에서 제외한다.

5. 인삼차 및 분말인삼은 별도 조사하며 인삼차는 물엿 또는 과당을 혼합하여 과립 또는 분말화 시킨것으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인삼제품(인삼정, 인삼엑기스등)은 제외
6. 아이스크림, 빙과는 유지방함유량 및 성형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의 것으로, 반고형의 상태로 되어진 것을 말함.
7. 과즙음료는 과일을 입착하여 즙을 낸 것으로 과육부분의 섬유질등을 완전히 걸러내어 순수액상으로 된것을 말하며, 넥타는 과육부분을 갈아서 여과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과즙음료에 넥타는 제외되나, 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한 것(넥타쥬스)은 포함조사
8. 재건조잎담배는 제막엽만 조사대상으로 하며 주막(잎담배줄기), 판상엽은 제외

소분류 311-312 . 식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110100 | 햄 | Kg | 돼지고기, 어육을 염장, 훈제한 것 |
| 1110110 | 축 육 햄 | Kg | 돼지고기를 염장, 훈제한 것 |
| 1110120 | 어 육 햄 | Kg | 참치등 어육을 분쇄하여 염지한 것을 익혀 햄과 유사하게 만든 어육연제품 |
| 1110200 | 소 시 지 | M/T | 돼지고기, 어육 등을 분쇄하여 혼합한 것에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훈제, 케이싱한 것 |
| 1110210 | 축육소시지 | M/T | 돼지고기, 가축고기를 분쇄하여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혼합, 훈제 케이싱한것 |
| 1110220 | 어육소시지 | M/T | 어육을 분쇄하여 향신료등을 첨가하여 소시지와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케이싱한 것. |
| 1110300 | 가축가공고기 (家畜加工고기) | M/T | 가축 및 가금고기를 절단 포장하거나 염장, 건조, 훈제등 가공처리한 것 |
| 1120109 | 치 즈 | Kg | 전지유, 탈지유, 크림, 버터밀크등을 원료로하여 유산균과 렌넷을 첨가하여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유정을 제거, 가열, 가압, 발효 숙성한 유제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 베이컨은 제외</p> <p>○ 햄소시지는 소시지에서 조사</p> <p>○ 어육햄, 혼합어육햄을 포함</p> | <p>돼지고기</p> <p>참치, 명태</p> <p>등</p> | |
| <p>× 베이컨, 햄은 제외</p> <p>○ 어육소시지, 혼합소시지를 포함</p> | <p>가축고기</p> <p>돼지고기</p> | |
| <p>× 통조림은 제외</p> | | |
| <p>○ 가공치즈를 포함</p> <p>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유회시킨것</p> | <p>우유,</p> <p>유제품</p>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120200 | 분 유 (粉 乳) | M/T | 생우유를 탈수시켜 분말화한 것 |
| 1120300 | 아 이 스 크 립 | Kℓ | 우유 또는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당류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동결한 것으로 유지방 함유량이 일정량 이상의 냉동식품 |
| 1120400 | 시 유 (市 乳) | Kℓ | 음용으로 하기 위해 생우유를 살균처리한 것 |
| 1120500 | 유 산 균 음 료 (乳 酸 菌 飲 料) | Kℓ | 유 또는 유제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균상 또는 액상으로 한 것 |
| 1130100 | 농 산 물 통 조 립 (農 産 物) | M/T | 각종 과일, 채소를 가공 살균 및 저온가열하여 캔, 병등에 밀봉한 것 |
| 1130209 | 냉동과실및간밤 | Kg | 과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냉시킨 것 |
| 1130309 | 냉 동 과 즙 원 액 (冷 凍 果 汁 原 液) | Kℓ | 과일즙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시킨 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 탈지, 조제분유, 우유기저이유식을 포함 × 곡물기저 이유키는 제외 | 우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류를 포함 × 빙과(하드, 아이스케키)류는 제외 | 우유, 설탕 향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유(딸기우유, 커피우유등) 및 탈지유등을 포함 × 양유, 연유등은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균 발효유 및 유산균음료를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및 야채통조림을 포함 × 잼, 케찹등은 제외 | 야채, 과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 밥을 포함 ○ 냉동채소는 제외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140100 | 수산물통조림 | M/T | 어개류를 가공 가열 살균하여 밀봉한 것 |
| 1140200 | 냉 동 물 고 기 (冷 凍) | M/T | 생선을 변질되지 않게 급냉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물고기 |
| 1140300 | 한 천 (寒 天) | Kg | 우무가사리, 강리등에 함유되어 있는 점질물, 갈락토우스 및 무수갈락토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 |
| 1140400 | 어 목 | Kg | 어육을 갈아서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부원료를 첨가하여 증기·열수로 자숙하거나 이를 유탕처리한 것 |
| 1140500 | 가 공 어 패 류 (加 工 魚 貝 類) | M/T | 어개류를 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
| 1140609 | 가 공 해 조 류 (加 工 海 藻 類) | Kg | 미역, 다시마, 김등 해조류를 건조 염장, 훈제한 것 |
| 1150100 | 대 두 유 (大 豆 油) | Kℓ | 식용 콩기름 |
| 1150209 | 유 채 유 | Kℓ | 유채실에서 채취하여 정제한 식용유 |
| 1150309 | 옥 수 수 유 | Kℓ | 옥수수 배아에서 채취한 식용유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고등어, 꽁치, 참치, 굴, 조개, 골뱅이 등 어개류를 가공한 통조림 조사 | | |
| ○ 빙장, 냉장 및 원양어선에서 냉동한 것은 제외하며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이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냉동한 것은 조사 | | |
| | 우무가사리 강리 | 양갱, 우무, 젤리 수성 도료, 세균배양기 |
| ○ 찐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혼합어묵 을 포함 ○ 맛살류를 포함 × 오징어 혼제품은 제외 | | |
| ○ 오징어포, 어포, 건조조갯살, 오징어 혼제품등 포함. × 젓갈류는 제외. | | |
| × 생김을 구워 소금등을 친 가공품 (조미김, 맛김)은 제외. 튀각도 원초를 구입하여 가공한 것 은 제외. | | |
| × 비식용 식물유지로서의 콩기름은 제외 | | |
|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150400 | 대 두 박 (大豆粕) | M/T | 대두를 숙성하여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
| 1150500 | 마 가 린 | M/T | 정제한 동식물의 유지·식용경화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물등을 첨가하여 유화시켜 만든 가소성을 가진 것 또는 유동상의 유지, 가공식품 |
| 1150600 | 쇼 팅 | M/T | 식용동식물유지 및 식용경화유를 혼합 가공처리한 것으로 식염등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적은 것 (수분함량: 마가린 18%이하, 쇼팅 0.5% 이하) |
| 1160100 | 밀 가 루 | M/T | 밀의 배젓부를 제분한 것 |
| 1170100 | 빵 및 케익 | M/T |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설탕등 첨가물을 가하여 굽거나 찌거나하여 가공한 식품 |
| 1170200 | 건과자및스낵류 (乾果子 및 스낵類) | M/T | 밀가루, 설탕등을 주원료로 굽거나 튀기거나 볶은 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콩깻묵 포함 | | 사료, 된장, 간장용 |
| × 버터는 제외 | 식물성기름 동물성기름 | |
| × 마가린은 제외 | 동식물성 유지 | 튀김용 |
| ○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 | 연질, 경질 소맥 | |
| ○ 식빵, 과자빵, 카스테라, 케익류 등을 포함하여 주원료는 밀가루뿐 아니라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등 곡분을 가공한 것은 모두 포함 ○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만두는 포함. ○ 초코파이, 빅파이 등 제과업체에서 생산되는 파이류는 과자빵에 포함 × 건빵은 제외 × 만두피만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 | 곡분, 이스 트, 설탕 | |
| ○ 비스킷, 미과, 건빵, 스낵류등을 포함하며 기타 옥수수, 감자등을 소재로 | 밀가루, 감 자, 옥수수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170300 | 설 탕 과 자 (雪 糖 果 子) | M/T | 설탕, 물엿, 초코렛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과자 |
| 1170400 | 껌 | M/T | 천연 또는 합성수지에 가소제 충전제 감미료, 착향료를 배합하여 성형한 것 |
| 1170500 | 빙 과 (冰 菓) | M/T | 설탕물, 과일즙, 향료, 유제품등 첨가물을 혼합하여 고형 또는 반고형상태로 냉동시킨 것 |
| 1170600 | 인 스텐 트 면 | M/T |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하여 이에 각종 첨가물을 혼합하여 성형 또는 알파화한 것으로서 스프를 첨부한 것 |
| 1180100 | 정 당 (精 糖) | M/T | 사탕수수, 사탕무우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한 것 |
| 1210100 | 간 장 | Kℓ | |
| 1210200 | 글루타민산소다 | M/T |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한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상태의 조미료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한 유사한 제품을 포함</p> <p>× 곡물의 씨 자체를 볶거나 튀기거나 하여 가공한 것은 제외</p> | <p>고구마, 양 과, 우유, 팜유, 설탕 조미료등</p> | |
| <p>○ 캔디, 드롭프스, 카라멜, 초코렛, 제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밀가루과자(비스킷류)에 초코렛을 입힌 것은 건과자에서 조사</p> | <p>초코렛, 설탕, 물엿, 향료</p> | |
| | <p>껌베이스, 분당, 과당 향료</p> | |
| <p>×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콘류 등은 제외(아이스크림에서 조사)</p> | <p>설탕, 물, 과즙, 우유 식물성지방</p> | |
| <p>○ 인스턴트식품으로 면이 포함된 것은 모두 조사</p> | <p>밀가루, 우 지, 팜유, 조미료</p> | |
| <p>○ 정백당, 갈색당을 포함</p> | <p>원당</p> | |
| <p>○ 양조간장, 화학간장을 포함</p> | | |
| <p>× 순수 글루타민산소다에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은 혼합조미료로 조사 (다시다 등)</p> | <p>당밀, 염산 가성소다, 사탕수수</p>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210300 | 정 제 소 금 (精製소금) | M/T |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해수를 직접 진공증발하여 농축정제한 것으로 짠맛을 내는 결정체 |
| 1210400 | 혼 합 조 미 료 (混合調味料) | M/T |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식품을 건조 가공한 것에 아미노산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분말로 만든 조미료 |
| 1210500 | 마 요 네 즈 | M/T | 계란노른자위, 샐러드유, 설탕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 |
| 1220100 | 홍 삼 (紅 蔘) | Kg | 6년생 인삼을 찌서 말린것 |
| 1220200 | 인 삼 차 (人 蔘 茶) | Kg | 인삼을 농축하여 물엿, 과당등을 혼합한 것을 과립 또는 분말로 만든것 |
| 1220309 ✓ | 분 말 인 삼 (粉 末 人 蔘) | Kg | 인삼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
| 1220400 | 맥 아 (麥 芽) | M/T | 보리, 밀 등을 발아시켜 건조한 것 |
| 1220500 | 두 부 | M/T |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가열 여과한 여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천일염, 맛소금제외 | | |
| ○ 맛나, 다시다, 진국등의 조미료를 조사 ----- × 맛소금, 라면스프는 제외 | | |
| | 계란, 설탕 샐러드유 | |
| × 홍삼을 가공한 제품은 제외. (홍삼정, 삼차, 삼분은 제외) ----- × 건삼은 제외 | 인삼 | |
| × 분말인삼은 제외 | 인삼 | |
| ○ 약재용,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사 ----- × 인삼차는 제외 | | |
| | | 맥주, 음료, 당류 |
| ○ 연두부, 순두부를 포함 ----- × 순두부는 두부제조를 위해 재투입 되는 것은 제외하며 그 자체로 판 매되는 것만을 조사 | 콩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220600 | 전 분 (澱 粉) | M/T | 감자, 고구마, 옥수수등을 마쇄하여 사별, 분리, 정제,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 |
| 1220700 | 물 엿 | M/T | 곡분이나 고구마 등을 원료로 하여 산으로 당화시킨 산당화엿과 맥아로 당화시킨 맥아엿 |
| 1220800 | 과 당 (果 糖) | M/T | 전분, 설탕 또는 기타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농축한 것 |
| 1220900 | 식 용 사 카 린 | Kg | 탄수화물이외의 단맛을 가진 화학합성품으로 백색결정을 한 감미료 |
| 1221000 | 커피 | Kg | 커피원두를 볶거나 원두를 원료로 그 침출액을 가공하여 분말로한 것 |
| 1221100 | 커피크리머 | Kg | 커피, 홍차등의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보완 식품 |
| 1230100 | 배 합 사 료 (配 合 飼 料) | M/T | 가축, 가금류를 키우기 위한 충분한 영양소를 과학적·경제적으로 배합한 사료 |
| 1230200 | 보 조 사 료 (補 助 飼 料) | M/T | 가축, 가금류를 위한 사료로서 일부영양소를 첨가 또는 특화하여 성장촉진, 질병방지 및 생리기능을 조정시키도록 만든 사료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반제품인 수전분은 제외 | 감자, 옥수 수, 고구마 밀 | 제지, 제약, 접착제, 물 엿, 포도당, 당면, 양조. |
| × 엿은 제외 (응고된 것) | | |
| × 포도당은 제외 | 전분 | 제과, 제빵, 빙과, 통조 림, 음료, 양조 |
| ○ 소디움사카린, 불용성사카린을 포함 (식용만 조사) × 아스파 탐류는 제외. | | 설탕대체품, 당의정, 음 료 |
| ○ 카페인제거한 커피, 군커피, 분말커피를 포함 | 원두 | |
| × 연유, 기타 액상의 유제품은 제외 | 야자유, 물엿 | |
| × 보조사료는 제외 | 대두박, 옥 수수, 보리, 밀, 어분등 | |
| | 곡류, 아미 노산, 항생 물질, 비타 민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230300 | 어 분 (魚粉) | M/T | 어개류의 지방을 제거한 후 말려서 분말화한 것 |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310100 | 주 정 (酒精) | Kℓ | 전분, 당질을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시 킨 것으로 주류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색유동성 액체 |
| 1310200 | 소 주 (燒酒) | Kℓ |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소주 |
| 1310300 | 위 스 키 | Kℓ | 위스키원액, 주정, 물 및 기타 첨가물 을 혼합 제성한 것 |
| 1320100 | 탁 주 (濁酒) | Kℓ | |
| 1320209 | 약 주 (藥酒) | Kℓ | 곡류를 발효한 주요를 여과한 것 |
| 1320300 | 청 주 (淸酒) | Kℓ | 백미를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여 제 성한 것과, 발효중의 주요에 주정 또 는 희석식소주와 기타의 원료를 첨가 하여 숙성시켜 여과 제성한 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X 우모분, 육분, 꿀분을 제외 | | 배합사료의 원료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X 화학공업, 위생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주정은 제외 | 전분, 당밀 | |
| ○ 증류소주를 포함 X 고량주제외 | | |
| | 원액 | |
| X 약주를 제외 | 쌀, 밀가루 누룩 | |
| | | |
| ○ 합성청주도 포함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320400 | 포 도 주 (葡 萄 酒) | Kℓ | 포도를 발효시킨것 또는 주정 기타첨가물을 혼합하여 포도주와 유사하게 제조한 것 |
| 1330100 | 맥 주 (麥 酒) | Kℓ | 맥아·호프·옥수수·감자 등을 발효시켜 제성한 것 |
| 1340100 | 사 이 다 | Kℓ | 순수 무색 탄산음료 |
| 1340200 | 콜 라 | Kℓ | |
| 1340300 | 과 즈 음 료 (果 汁 飲 料) | Kℓ | 탄산가스가 주입되지 않은 음료로 과즙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 |
| 1340409 | 천 연 수 (天 然 水) | Kℓ | 자연상태의 천연수를 용기에 담아 놓은것 |
| 1340500 | 합성 탄산음료 (合 成 炭 酸 飲 料) | Kℓ | 탄산가스가 주입된 탄산음료로 과즙 또는 향을 가한것 |
| 1340609 | 오 렌 지 원 액 | Kℓ | 오렌지의 과즙 또는 오렌지 향을 내는 화학원액 |
| 1340700 | 두 유 (豆 乳) | Kℓ | 대두를 주원료로 식물성유지, 당류, 식염을 첨가한 음료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포도, 주정 | |
| ○ 생맥주를 포함 | | |
| × 생수는 제외 | | |
| × 보리음료는 제외 | | |
| × 분말쥬스 제외 | | |
| × 향 및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천연사이다는 사이다에서 조사 | | |
| ○ 탄산가스가 주입된 청량음료는 모두 포함 (보리음료 포함) | | |
| × 순수 오렌지 과즙을 장기보관하기 위해 냉동한 것은 1130309 냉동 과즙원액에서 조사 | | |
| ○ 순수두유 및 가공두유 (딸기, 잣, 초코, 두유등) 포함 | | |

소분류 314. 담배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1400100 | 재 건조 잎 담 배 (再乾燥잎담배) | M/T | 연초를 제맥분리하여 건조시킨것 (제맥엽) |
| 1400200 | 담 배 | 백 만 개 비 | 건조가공된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권련지로 말아놓은 담배제품 |
| 1400309 | 판 상 엽 (板狀葉) | Kg | 연초의 줄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모아 얇게 편것 |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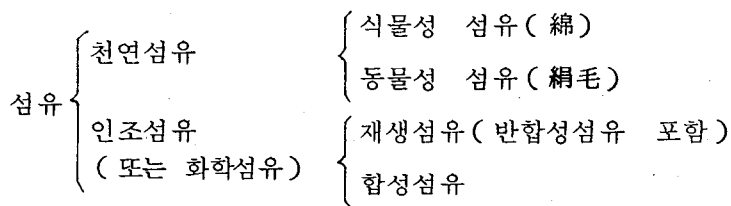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섬유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그 폭(직경)이 1/100 미리 이하로서 육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늘며 그 길이는 폭의 100 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321. 섬유제조업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섬유를 원재료로 한 사(실의 형태)나 직물, 편물 등의 지정된 품목이다.

2. 섬유의 분류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주맥, 판상엽은 제외 | 연초 | 담배제품 |
| ○ 필터담배, 필터없는 담배를 포함 × 각연, 여송연은 제외 | 재건조잎담배, 권련지 휠타 | |
| | | 담배제품 |



가. 식물성 섬유

면(綿), 마(麻) 등이 주종을 이루나 여기에서는 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 원면(原綿) → 개표(開表) → 해면(解綿) → 혼타면(混打綿)¹⁾ → 소면(梳綿)²⁾ → 슬라이버(Sliver)³⁾ → 연조(練條)⁴⁾ → 조방(組紡)⁵⁾ → 정방(精紡) → 단사(單絲) → 직조(織組) → 직물(織物) 이 공정을 설

명하면,

먼저 단단하게 압축포장된 포장을 풀고 자연방치시켜 원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표 및 해면에 해당하며 1) 혼타면 : 씨앗 및 불순물을 제거하며 얇게 펴서 두루말이 형태의 랩(Lap)을 만든다. 2) 소면 : 랩을 카드(Card)에 걸고 빗어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섬유가 단단하게 얽힌것(Nep)을 제거한 다음 3) 슬라이버 : 섬유를 묶어서 굵은 끈모양의 고치(Sliver)를 만든다. 이 슬라이버를 몇 가닥 모아서 4) 연조 : 연조기에 걸어 늘이면서 섬유의 방향을 다시 맞춘다. 5) 조방 : 실을 만들기 위해 굵은 것을 가늘게 만들어 약간 꼬임이 간 조사(組絲)를 만든다. 6) 정방 : 조사를 정방기에 걸어 일정한 가늘기로 늘여 꼬임을 준 것이 단사이다.

나. 동물성 섬유

1) 견(繭)

누에고치를 가공하여 실이나 직물을 제조한다. 춘잠은 5~6월, 하잠은 7월, 추잠은 8~9월에 사육한다.

제조공정은,

고치 말리기→고치간수하기→고치고르기→고치삶기→김풀기→다시감기→
끝맺음→직조→직물

고치고르기 단계에서는 김풀기(조사)할 수 없는 고치와 있는 고치를 분류한다. 고치삶기단계에서는 세리신을 적당히 순화요착력을 약화시켜 견사를 쉽게 뽑기 위한 것이다. 김풀기란 조사기에 고치를 옮겨 실마리를 잡아 한가닥 실로하여 잡아올린다.

2) 모(毛)

양모는 화학적으로 젤라틴이라 부르는 단백질에 속하며 일종의 피부 변태물이다. 주로 양모를 가공하는 활동으로 지부양모를 수입하여서 세척하여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세척양모를 수입 사용하거나 혹은 톱(top), 화이버(fiber)를 구입 사용한다. 제조공정은 소모공정과 방모공정으로 대분할 수 있으며 주요 공정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소모공정

세척양모 → Card top¹⁾ → rovingtop²⁾ → 순소모단사³⁾ → 소모사⁴⁾ → 직조⁵⁾
→ 소모직물⁶⁾

- 1) 의 공정은 양모섬유를 소면기(Card機)에 걸어 타면(打綿), 빗질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복합(doubling), 연신(drafting)하여 균등하면서도 비교적 굵은 top 상태를 만든다.
- 2) 의 공정은 전방공정으로서 실의 종류, 변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계에 걸어 복합, 연신을 되풀이 하며 정방기에 공급할 roving top을 만들기 위해 점차 가늘게 한다.
- 3) 의 공정은 필요한 굵기로 가늘어진 roving top을 꼬아서 단사(單絲)를 만든다.
- 4) 는 이러한 단사를 실의 굵기에 따라 여러 가닥 합해서 꼬는 공정이다.

나) 방모공정

모설(毛屑), 세척양모 → Card top → top → 방모 단사 → 방모사 → 직물

방모공정을 소모공정과 달리 전방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굵기도

일정치 않고 매끈하지도 않으며, 재료로는 모설, 재제모(再製毛), 소모공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사용한다. 즉, 방모와 소모의 구분은 원재료 사용과 공정상의 전방(前紡)유무에 의해 구별한다.

다. 재생섬유(반합성 섬유 포함)

1) 재생섬유

셀룰로오즈 등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를 용해하여 이것을 노즐에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 재생한 것인데 섬유를 형성하는 물질은 천연 고분자와 거의 같다.

제조과정에서 화학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며 원래 있었던 천연의 셀룰로오즈를 재생하였다는 의미에서 재생섬유(레이온)라 부른다.

(통칭 인견이라 한다)

2) 반합성 섬유

셀룰로오즈 분자에 초산기를 결합시켜 아세틸셀룰로오즈로 한 다음 용제로 하고 방사응고시켜 섬유로 만든 것이다.

이 섬유는 아세틸화한 부분이 합성품이므로 반합성섬유라 부른다.

내수성이 좋고 건조되기 쉬우며 촉감이 좋다.

라. 합성섬유

합성섬유란 저분자물질을 원료로 하여 섬유가 되는 쇠사슬 모양의 고분자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합성고분자를 용해, 분산, 용해시킨 후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시켜 만든 것인데 3대 합성섬유로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을 들 수 있다.

제조에는 중합성을 가진 단량체(monomer)를 만들고, 이것을 중합시켜서 중합체(Polymer)로 하여 방사한다.

1)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일반명은 나이론이라 하며, 제법에는 웨놀법과 PNC법 등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카프로락담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다. 인장력과 염기에 강하여 어망이나 레이스 등 찢어지기 쉬운 것의 보완용으로 많이 쓰인다.

2) 폴리 아크릴릭 합성섬유

양모와 가장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직물방면에 용도가 개발되어 편물, 메리야스, 인테어리어(장식물) 부문에 많이 사용된다. 제법으로는 프로필렌에 암모니아와 공기를 촉매로 하여 에이엔모노머(A. N. monomer)를 만들어 원재료로 사용한다.

3)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원재료는 테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이며 중합된 폴리에스터를 질소가스 압력으로 칩을 만들어 용해 방사한다. 내마모성은 나이론보다 약간 뒤떨어지나 아크릴릭보다 높으며 일반 의류를 만드는 섬유로 이용된다.

※ 편직물의 경우 합성섬유인 경우만 합성섬유직물로 포함하고 기타 섬유의 편직물은 해당 섬유직물조사에서 제외한다.

3. 각 섬유별 혼방도표

모든 섬유는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방한다.

| 혼방 주된 섬유 | 섬유 | 견 | 모 | 면 |
|-----------------------|---|----------------------------------|-------------------------------------|---|
| 견 | 1) | | | |
| 모 | 2) 61.0%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모혼방직물 • 방모 :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 1) | | |
| 면 | | | 1) | |
| 화 섬 ~ | 5) 71% 이상 • 혼방합성섬유사 혼방합성직물 | 6) 61% • 혼방섬유사 • 혼방섬유직물 | 7) 50% 이상 • 혼방섬유사 • 혼방섬유직물 | |
| 재 생 반 합 성 | | | | |

- 주 1) : 혼방이 안된 100%의 사, 직물
 2) : 모가 61%이상 견이 39%미만 혼방된 사, 직물
 3) : 모가 40%이상 화섬이 60%미만 혼방된 사, 직물
 4) : 모가 40%이상 재생, 반합성이 60%미만 혼방된 사, 직물
 5) : 화섬이 71%이상 견이 29%미만 혼방된 사, 직물
 6) : 화섬이 61%이상 모가 39%미만 혼방된 사, 직물
 7) : 화섬이 50%이상 면이 50%미만 혼방된 사, 직물
 8) : 화섬이 50%이상 재생, 반합성이 50%미만 혼방된 사, 직물
 (단, 3) 4)의 경우 하복지의 경우 모가 35%이상 화섬이 65%미만)

혼방도표

| 화 섬 | 재 생 (레 이 온) 반합성 (아세테이트) | 조 사 품 목 |
|---|---|--|
| | | 생사 (옥사포함) 순본견직물 |
| 3) 40 %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혼방소모직물 • 방모 :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 4) 40 % 이상 • 소모 : 혼방소모사 • 방모 : 혼방소모직물 혼방방모사 혼방방모직물 | 순소모사, 직물 순방모사, 직물 혼방소모사, 직물 혼방방모사, 직물 |
| 51 % 이상 • 혼방면사 혼방면직물 | | 순면사, 직물 혼방면사, 직물 |
| 1) | 8) 50 % 이상 • 혼방섬유사 혼방섬유직물 | 순합성사, 직물 혼방합성사, 직물 |
| | 1) | 재생섬유사 재생섬유직물조사 |

※ 공란은 조사하지 않는 품목임

※ 혼방도표에 따라 분류하되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모를 경우 원재료명과 혼방비율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본부와 협의할 것.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10100 | 생 사 (生 絲) | Kg |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 즉, 한가닥의 긴 필라멘트(filament)의 실을 몇 가닥으로 합하여 만든 것 |
| 2110200 | 면 사 (綿 絲) | M/T | |
| 2110210 | 순 면 사 (純 綿 絲) | M/T | 원면을 가공, 순면사를 방적한 것 |
| 2110220 | 혼 방 면 사 (混 紡 綿 絲) | M/T | 타섬유와 혼방된 것 |
| 2110300 | 양모 및 수모 (羊毛 및 獸毛) | Kg | 실의 원재료, 의복의 보온재 |
| 2110400 | 방 모 사 (紡 毛 絲) | M/T | |
| 2110410 | 순 방 모 사 (純 紡 毛 絲) | M/T | 양모를 가공하여 제조한 실. 원재료가 다양하며 섬유의 길이도 짧고 긴 것이 혼합되어 잔털이 많다. |
| 2110420 | 혼 방 방 모 사 (混 紡 紡 毛 絲) | M/T | 타섬유와 혼방된 실 |
| 2110500 | 소 모 사 (梳 毛 絲) | Kg | |
| 2110510 | 순 소 모 사 (純 梳 毛 絲) | Kg | 카드 및 콧공정을 거쳐 잘 간추려진 실이다. 모양이 매끄럽고 잔털이 적으며 일정한 굵기를 갖고 있다.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사포함 × 견방사는 제외하고, 견연사는 연사로 조사 | 누에 고치 (繭) | 견직물 |
| ○ 면사가 100%인 것만 조사 | 원 면 | 면직물 |
| ○ 면이 51%이상인 것만 조사 | 원면, 화학 섬유 | 면혼방직물 |
| ○ 양모, 수모, 모설, 기타동물털 등 카드스리머, 톱상태의 것도 포함 | 동 물 | 실, 보온재 |
| ○ 방모가 100%인 것만 조사 | 모설, 양모 수모 | 방모직물 |
| ○ 방모가 40%이상인 것만 조사 | 모설, 양모, 수모, 화학 섬유 | 혼방방모직물 |
| ○ Wool 이 100%로 방적된 사로서 반드시 전방공정을 거친 사만을 조사 | 양 모 | 소모직물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10520 | 혼 방 소 모 사 (混紡梳毛絲) | Kg | Wool Top 과 Top 상태의 타섬유와 혼합하여 순소모사의 전방공정에서부터 제조한 실 |
| 2110600 | 합 성 섬 유 사 (合成纖維絲) | M/T | |
| 2110610 | 순합성섬유사 (純合成纖維絲) | M/T | 석유화학공정을 거친 나프사를 원재료로한 실체의 실을 칭하며 나이론, 폴리에스텔, 아크릴이 대종을 이룬다. Fiber 와 Filament 등 일체의 합성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재공정한 사의 상태 |
| 2110620 | 혼방합성섬유사 (混紡合成纖維絲) | M/T | 화섬과 타섬유와 혼방되어 만들어진 사로서 각 섬유의 단점을 보완, 용도를 다양하도록 제조되었다. |
| 2110700 | 재 생 섬 유 사 (再生纖維絲) | M/T | Viscose 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실로서 비스코스인견사, 스프사 등을 말함. |
| 2110800 | 연 사 (撚 絲) | M/T | |
| 2110810 | 재 봉 사 (裁 縫 絲) | M/T | 재봉에 쓰이는 실 |
| 2110820 | 편 물 사 (編 物 絲) | M/T | 편물에 쓰이는 실 |
| 2120100 | 면 직 물 (綿 織 物) | 천 m²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가 40%이상인 혼방소모사만 조사 | 양모, 화학 섬유 | 혼방소모직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섬유사가 100%인 것만 조사. 합성장섬유사도 직접 방적할 수 있으면 포함조사 × 모노 필라멘트는 관련섬유(화학제 조업)에서 조사 | 합성섬유 | 순합성섬유직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방도표 참조 | 합성섬유, 견, 모, 면 | 혼방합성섬유직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테이트 섬유(반합성섬유)로 만든 실도 포함. | 펄 프 | 재생섬유직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연사, 견연사, 모연사, 인조섬유연사 바느질실 등 | 각 종 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연사, 모연사, 인조섬유연사, 기타 연사 등 | 각 종 사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20110 | 순 면 직 물 (純綿織物) | 천 m^2 | 순면사로만 짠 직물(일명 면포) |
| 2120120 | 혼 방 면 직 물 (混紡綿織物) | 천 m^2 | |
| 2120200 | 소 모 직 물 (梳毛織物) | 천 m^2 | |
| 2120210 | 순 소 모 직 물 (純梳毛織物) | 천 m^2 | 순소모사로만 짠 직물 |
| 2120220 | 혼 방 소 모 직 물 (純紡梳毛織物) | 천 m^2 | 혼방소모사로서 짜거나 순소모사와 타 섬유사와 방직한 것 |
| 2120300 | 방 모 직 물 (紡毛織物) | m^2 | |
| 2120310 | 순 방 모 직 물 (純紡毛織物) | m^2 | 순방모사로만 짠 직물 |
| 2120320 | 혼 방 방 모 직 물 (混紡紡毛織物) | m^2 | 혼방방모사로 짜거나 순방모사와 타섬 유사로 방직한 직물 |
| 2120400 | 순 본 견 직 물 (純本絹織物) | m^2 | 생사 또는 고치중 김풀기를 할 수 없는 것을 타면(打綿)하여 만든 견 방사로 제직한 것(일명 비단)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목, 내광목, 옥광목, 당목, 면범포, 포프린, 읍, 면복지 등 ----- × 면세포, 면거즈 제외 | 순 면 사 | 의류, 산업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의 비율이 51%이상인 것만 조사 | 면사, 합성섬유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ol 이 100%인 것만 조사하되 직물가공시 일부 타섬유가 재봉으로 1%정도 사용될 수 있다. ----- ○ 하복지의 경우에 한하여 소모가 35%이상 혼방인 경우 포함. | 소 모 사 혼방소모사, 순소모사와 타섬유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모가 100%인 것만 조사 ----- ○ 방모의 비율이 40%이상인 것만 조사 | 순 모 방 사 혼방방모사, 순방모사와 타섬유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리원단, 쓰므기원단 등 ----- × 원단에 수를 놓는 등의 가공은 제외 | 견방사, 생사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20500 | 합성섬유직물 (合成纖維織物) | 천 m^2 | |
| 2120510 | 순합성섬유직물 (純合成纖維織物) | 천 m^2 | 순합성섬유사로 방직한 직물 |
| 2120520 | 합성섬유파일직물 | 천 m^2 | |
| 2120530 | 혼방합성섬유직물 (混紡合成纖維織物) | 천 m^2 | 다른 성질의 섬유가 2종이상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로서 합성섬유가 기준 비율보다 많이 차지한 직물 |
| 2120600 | 재생섬유직물 (再生纖維織物) | 천 m^2 | 재생섬유사로 제작한 직물(일명 인견 직물) |
| 2120700 | 세 폭 직 물 (細幅織物) | 천 m^2 | 폭 13센티미터 미만의 직물 |
| 2120800 | 타 율 (TOWEL) | Kg | 세면 및 위생, 목욕용 등에 사용되는 수건 |
| 2130100 | 염색가공직물 (染色加工織物) | 천 m^2 | 원단에 염색을 한 것. 직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염색하는 것은 해당 직물로 조사 |
| 2140100 | 직 물 포 대 (織物包裝) | 천 m^2 | 합성섬유사, 마사,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것을 재봉한 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나이론, 다후다, 폴리텍스, 캐미컬트, 리코트 등을 포함. | 합성섬유사 | |
| ○ 혼방도포 참조 | 각 종 사 | |
| ○ 아세테이트직물도 포함. | 재생섬유사 | |
| ○ 밴드, 테이프, 리본, 전선의 절면 등의 재료 | 각 종 사 | |
| ○ 규격에 관계없이 조사 ※ 손수건, 이태리타올, 침대커버 제외 | 면 사 | |
| ○ 반드시 공장에서 기계로 염색, 표백 가공처리한 것만 조사 × 홀치기, 나염 및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염색가공활동 제외 | 염료,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 |
| ○ 양곡포대, 우편낭, 모래포대 등 × 종이포대, 압축성형(비료포대)제품 제외 | 합성섬유사, 마사, 프라스틱물질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40200 | 담 요 | m ² | 털 혹은 섬유질로 만든 모포 |
| 2140300 | 텐트 및 천막 | 매 | 야외행사 또는 야영(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섬유직물 또는 비닐직물로 만든 천막 및 텐트 |
| 2140400 | 배 낭 (背囊) | 개 | 물건을 담아 등에 질수 있도록 만든 낭 |
| 2140500 | 자 수 직 물 (刺繡織物) | 천m ² | 직물에 수를 놓은 것. 일명 니들위크 태피스트리(공장에서 10야드 이상 긴 천에 자수를 놓는 직물) |
| 2140600 | 직 물 벽 지 (織物壁紙) | 천m ² | 고급벽지로 안면은 종이 겉면은 직물이나 갈포로 제조된 벽지 |
| 2150100 | 스 타 킹 (STOCKING) | 천켄레 | 화섬이 60%이상 포함된 사로 편직하여 만든 무릎이상까지 덮을 수 있는 양말 |
| 2150200 | 양 말 (洋襪) | 천켄레 | 발목까지를 덮어주는 양말 |
| 2150300 | 메 리 야 스 내 의 | 천 매 | 편직기로 편직한 내의로 통칭 메리야스라 한다.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화학섬유사, 방모사 | |
| ○ 25 m ² 를 1매로 환산조사한다. | 섬유, 비닐 직물 | 야영 및 비, 이슬, 바 람, 별을 가리는 장막 |
| ○ 캠핑용품만 조사 ----- × 아동용, 군용배낭, 책가방 및 썩 (sack)은 제외 | | |
| ○ 기계자수만 조사 ----- × 가내자수 제외 | 직 물 | 자수제품 |
| | 직물, 갈포 | |
| ○ 타이스, 팬티스타킹, 밴드, 판타롱 | 화섬, 면 | |
| ○ 원재료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 각 종 사 | |
| ○ 남·녀용 여름내의 (팬티, 런닝셔츠) 및 겨울내의만 조사 ----- × 기타 내의는 322 의복에서 조사 | 면, 화섬 | 동·하절기 내의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50400 | 메 리 야 스 외 의 | 천 매 | 편물외의인테 반드시 편물한 것만 조사 |
| 2150500 | 인 조 섬 유 편 직 물 (人 造 纖 維 編 織 物) | 천m ² | 인조섬유사를 편직기로 짠 직물 |
| 2160100 | 카 페 트 (CARPET) | m ² | 인조섬유의 아크릴, 나이론, 비스코스트로 짠 직물이며 일명 융단, 양탄자 |
| 2170100 | 연승및섬유로프 (連 繩 及 纖 維 ROPE) | M/T | |
| 2170110 | 식물성섬유로프 (植 物 性 纖 維 ROPE) | M/T | 식물성 섬유를 가공하여 여러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 |
| 2170120 | 연승,인조섬유로프 (連 繩 , 人 造 纖 維 ROPE) | M/T | 화섬을 가공하여 여러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 |
| 2170200 | 어 망 (魚 網) | M/T | 수계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채포, 채 취하는 어업용 자재 |
| 2190100 | 솜 | Kg | 화이버상태에서 랩 (Lap) 공정을 거 친 솜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타류, 셔츠류 등 크기에 관계없이 조사 × Y-shirt, 브라우스, 운동복(츄리닝 포함)은 322 의복에서 조사 | 면, 화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지용 편직물도 조사 × 파일직물은 2120520 으로 조사 천 연섬유(면, 모 등) 편직물은 제외 | 인조섬유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적 수직 포함 × 명석, 매트(Mat) 등 제외 | 화 섬 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니라, 면, 파압 등 합 ○ 어망사, 인조섬유로프, 각종 합성로프 포함 | 아바카, 면사, 파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어망 모두 조사 × 곤충망, 농업용망, 건설업용망 제외 | 어 망 사 | 어로용수산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인조섬유, 기타섬유솜 모두 조사 × 페딩은 부직포로 조사 | 원면, 화섬 | 이불, 쿠션충진재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190200 | 부 직 포 (不織布) | 천m ² | 일반직물과는 달리 방직하지 않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포 |
| 2190300 | 인조섬유타이어지 (人造纖維타이어紙) | M/T | 화섬을 연사화하여 만든 직물 타이어의 골격으로 사용되며 하중, 충격, 공기압 등에 저항하는 역할 |

소분류 322. 의복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천(직물, 가죽, 모피, 합성피혁등)을 가지고 재단, 재봉한 모든 의류를 말한다.
2. 금액조사품목의 경우 생산자판매가격 수출의 경우는 계약 당시의 환율(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평가한다.
3. 단위에서 한벌이라함은 상하의를 말하고 코트의 경우, 1점이 한벌이다.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210109 | 男子用마춤洋服 | 벌 | |
| 2210209 | 女子用마춤洋裝服 | // | |
| 2220100 | 남자용기성양복 (男子用既成洋服) | // | 정 장 복 |
| 2220200 | 既成 셔츠류 | 천개 | 의의를 받쳐주는 중의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패딩, 니들편치, 펠트 등 | 합성섬유 | 여과포, 소독타올의 커버조화, 심지, 붕대, 가제등 |
| | 합성섬유 | 타이어 |

4. 조사요령

가. 편직내의중 남녀 여름용 팬티, 셔츠 및 겨울용 내의는 2150300으로 조사한다.

나. 편물외의의는 원단을 자체생산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2150400으로 조사하고 원단을 구입 봉제하는 경우만 의복류로 조사한다.

다. 편물외의라도 운동경기복(츄리닝포함)은 모두 2220600으로 조사한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남자용 마춤 정장복, 코트 각 1 착 | 직 물 | |
| ○ 여자용 마춤 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각 1 착) | 직 물 | |
| ○ 기성 정장복, 코트 각 1 착 | 직 물 | |
| ○ Y-셔츠, T-셔츠, 정복셔츠, 기타 셔츠 | 직 물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220300 | 기 성 하 의 (既 成 下 衣) | 개 | 직물로 만든 바지 |
| 2220400 | 기 성 작 업 복 (既 成 作 業 服) | 백만원 | 훈련, 업무, 작업시 입는 옷 |
| 2220500 | 기 성 보 통 외 의 (既 成 普 通 外 衣) | 백만원 | |
| 2220600 | 기 성 경 기 복 (既 成 競 技 服) | // | |
| 2220700 | 여 자 용 기 성 외 의 (女 子 用 既 成 外 衣) | // | |
| 2220800 | 소 아 용 기 성 외 의 (小 兒 用 既 成 外 衣) | // | |
| 2220900 | 女 性 用 화 운 데 이 션 및 난 제 리 류 | // | |
| 2221000 | 가 족 및 毛 皮 衣 服 | // | |

| 조 사 범 위 | 원재료 | 용 도 |
|--|-----------------|-----|
| ○ 남녀용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조사 | 직 물 | |
| ○ 작업복, 훈련복 ----- × 위생복, 방수복, 방열복 등 특수복 은 제외 | 직 물 | |
| ○ 자켓, 반코트, 캐주얼웨어, 콤비, 잠바 헌팅코트 등 | 직 물 | |
| ○ 선수용자켓, 운동복(츄리닝포함) 등 | 직 물 | |
| ○ 여자용정장복, 코트, 브라우스, 원피스 투피스, 여성캐주얼정장복, 드레스, 스 커트 등 여성용 외의 | 직 물 | |
| ○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및 셔츠, 코 트, 양복, 기타소아용외의 | 직 물 | |
| ○ 브래저, 콜셋, 콜셋벨트, 콜셋릿, 거들 콜셋, 히프벨트, 임신후복, 띠, 케미솔 쉬미즈, 페티코트, 스텝 등 ----- × 완전히 고무로 된 제품은 제외 펜티 및 런닝셔츠 → 메리야스내의 | 직 물 | |
| ○ 가죽, 모피, 합성피혁으로 만든 의복 은 모두 조사 | 가죽, 모피 합성 피혁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221100 | 모 자 (帽 子) | 천 개 | |
| 2221200 | 가죽및毛皮掌匣 | 천켠레 | |
| 2221309 | 손 수 건 | 천 매 | |

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수혁(갑피혁 :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 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나.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중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며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다. 이혁(SOLE)

(용도) 작업복 장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내고 남은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아교의 원료)가 남는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모든 모자 조사 × 철모, 플라스틱모자, 운동경기용 보호모자 제외 | | |
| ○ 가죽, 모피, 합성피혁으로 만든 장갑은 모두 조사 × 고무장갑, 직물제장갑, 야구장갑, 권투장갑 제외 | 가죽, 모피 합성피혁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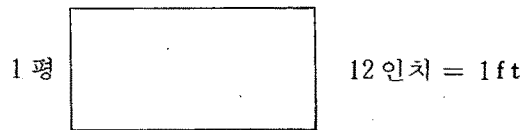
라. 저 혁

(용도) 창용·패킹·공업용 혁벨트

(성질) 특수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보다 저혁이 비싸다.

※ 우혁의 단위환산법

12인치 = 1ft



사방 12인치 = 0.093 m² (1 평)

1 매 30 ~ 40 평

1 매 2.8 m² (30 평)

1 매 3.7 m² (40 평)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310100 | 쇠 가 족 | 천㎡ | 원피(소)를 가공하여 만든 가죽으로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이 있다. |
| 2310200 | 재 생 및 인 조 가 족 (再生 및 人造가죽) | 천㎡ | 가죽조각을 재생시킨 것이나 인조가죽 |
| 2310309 | 돼 지 가 족 | ㎡ | 기름과 털을 제거 약품을 첨가하여 제혁공정을 거친 돈피(豚皮) |
| 2310409 | 파 총 류 가 족 | ㎡ | |
| 2320100 | 모 피 제 품 (毛皮製品) | 백만원 | 의복을 제외한 모피 가공 제품 |
| 2330100 | 가 방 | 〃 | |
| 2330200 | 핸 드 백 | 천 개 | |
| 2330309 | 마 구 (馬 具) | 백만원 | 말의 사육 및 조련에 사용되는 물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원 피 | 신발, 가방, 혁대등의 가죽제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가죽, 인조가죽 (직물이나 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입힌 것)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스틱레저는 제외 | 가죽 조각 직물, 폴리우레탄 등 | |
| | 돈 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피, 뱀장어피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카페트, 모피방석, Car Seat , 침대커버 등 | 모 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가죽, 모피, 합성피혁 등으로 만든 모든 가방 조사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백, 종이백, 비닐백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피혁, 합성피혁으로 만든 것 조사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 핸드백 및 소형지갑 제외 | 피혁, 합성 피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불, 말고삐, 말안장, 말굽 등 | | |

소분류 324. 신발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2400100 | 단 화 (短 靴) | 켈레 | |
| 2400200 | 가죽장화·등산화 및 작업화 | // | |
| 2400300 | 실 내 화 (室 內 靴) | 천켈레 | 가죽, 인조가죽 또는 그 위에 직물을 씌어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
| 2400409 | 신 발 부 속 품 | 백만원 | 가죽(인조가죽포함)신발 제조에 필요한 구성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남녀용 단화, 군용단화, 캐주얼화(가죽으로 만든 것) | 가죽, 합성 피혁모피 | |
| ○ 군화, 장글화, 작업화, 부츠, 앵글, 등산화 등 | | |
| ○ 플라스틱 레저를 절단, 봉제하여 만든 것도 포함 | | |
| <p>-----</p> × 완전고무제품, 플라스틱제는 제외 → 35 화학에서 조사 | | |
| ○ 반드시 피혁이 원재료가 된 것만 조사 | | |
| <p>-----</p> × 프라스틱, 고무제품 제외 | | |

중분류 33 .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포함)

소분류 331 .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소할재, 각재, 판재, 합판, 재생목재, 포장상자는 지정단위가 「㎥」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에서는 才, 매, B/F, S/F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정단위로 ㎥로 반드시 환산조사 하여야 한다.

※ 단위 환산방법

$$1 \text{才} = 0.00334 \text{ ㎥} \qquad 1 \text{ ㎥} = 303 \text{ 才}$$

$$1 \text{ B/F} = 0.002359 \text{ ㎥} \qquad 1 \text{ ㎥} = 423.77 \text{ B/F}$$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3110100 | 각 재 (角 材) | ㎥ | 각재 (두께 폭이 8센티미터 이상) 소할재 (두께 8센티미터 미만,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
| 3110200 | 판 재 (板 材) | 〃 | 두께 8센티미터미만.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
| 3110300 | 문 및 문 틀 | 〃 | |
| 3110400 | 일 반 합 판 (一 般 合 板) | 〃 | 단판을 여러장 겹쳐 접착제로 붙여 만든 판(板) |

○ S/F 환산방법 (합판의 경우)

| 규격 | | | 환산 | 수치 |
|--------|--------|---------|-----------|----------------|
| 가로 (F) | 세로 (F) | 두께 (mm) | 1매당 m^2 | 1S / F 당 m^2 |
| 4 | 8 | 3.2 | 0.0095133 | 0.0002973 |
| 3 | 6 | | 0.0053512 | |
| 4 | 8 | 3.6 | 0.0107024 | 0.0003345 |
| 3 | 6 | | 0.0060201 | |
| 4 | 8 | 4 | 0.0111892 | 0.000372 |
| 3 | 6 | | 0.006689 | |
| 4 | 8 | 6 | 0.017837 | 0.000557 |
| 3 | 6 | | 0.010034 | |

| 조사범위 | 원재료 | 용도 |
|---|-----|----|
| ○ 소할재 (정할재, 평할재), 각재 (심지각, 심거각, 정각, 평각) | 원목 | |
| ○ 소폭판 (小幅板), 사면판 (斜面板), 후판 (厚板) | '' | |
| ○ 문, 문틀, 창문, 창문틀의 원재료인 목재 사용량을 조사 | 제재목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3110500 | 가 공 합 판 (加工合板) | m ² | 합판에 무늬목을 부착하거나 프린팅한 것 |
| 3110600 | 재 생 목 재 (再生木材) | // | 폐재, 펄프, 찌꺼기, 벗집 등의 소편(小片)을 접착제로 압착한 것 |
| 3110709 | 침 목 (枕 木) | 본 |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제재하여 크레오소오트(방부제)를 주입한 것 |
| 3120100 | 포 장 상 자 및 통 (包装箱子및筒) | m ³ | 목재로 만든 포장용 상자 및 통 |
| 3190100 | 위생및식탁용목제품 (衛生및食卓用木製品) | 백만원 | |
| 3190209 | 콜크및콜크제품 | kg | 굴참나무 껍질을 분쇄, 접착하여 건조시킨 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슐레이션보드, 세미하드보드, 하드보드, 파티클보드 | 목 재 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침목, 분기침목, 교침목, 철도침목을 포함 × 철근콘크리트침목 및 갭목(坑木)은 제외 | 원 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용 통, 고체용 통, 각종 목재용 포장상자, 드럼 및 바렐, 펠리트 및 스키드 조사(단위는 원재료 기준) × 절목상자 제외 | 제 재 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푼, 포크, 위생저, 이쑤시개, 아이스크림대 등 | 원 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세사리, 병마개, 건축흡음재, 메모판 팩킹, 방진재 등 | 굴참나무피 | |

소분류 332 .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금속제 가구류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381.조립금속제품으로 분류조사)
2.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화장대를, 책장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의자를 병행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에 누락없도록 유의한다.
3. 특히 가구류의 경우는 대부분 판매만 하는 가구점만 외부에 나타나고 있어 공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외로 처리하기 쉬우나, 같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3200100 | 나 무 의 자 | 개 | 목재로 만든 각종 의자 |
| 3200200 | 나 무 책 상 (册 床) | " | 목재로 만든 책상 |
| 3200300 | 장 식 장 (粧 飾 機) | " | |

은 건물 또는 별도의 장소에 공장이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구업종은 생산제품의 변동이 빈번하고, 주문생산이 많으므로 품목누락에 항상 판별 보완하여야 한다.

5. 반제품 상태의 제품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예 : 1. 락카 또는 페인트등을 칠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

2. 조립을 하지 않고 부분품으로 출하된 제품

6. 책상과 의자를 단순히 편의상 연결시킨 제품은 각각 조사한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과 의자가 붙은 것(1인용)도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파, 등받침이 없는 의자(Stool) 및 벤치와 같은 공공용 및 플라 스틱의자는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에 관계없이 조사 ○ 학교책상도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겸용책상은 의자로 장식장겸용 은 장식장으로 조사 | 제 재 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서가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용 찬장, 도서관등에서 사용되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3200400 | 장 릉 (穢 龍) | 개 | 의류나 이불을 넣는 장 |
| 3200500 | 화 장 대 (化 粧 臺) | 개 | |
| 3200600 | 식 탁 (食 卓) | 개 | |
| 3200700 | 침 대 (寢 臺) | 개 | |
| 3200800 | 문 갑 (文 匣) | 개 | |
| 3200900 | 상 크 대 | 개 | 목재로 만든 부엌용 설비 |
| 3201000 | 서랍장맞춤향기기대 | 개 | |
| 3201109 | 찬 장 (饌 穢) | 개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는 진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책꽂이 문갑 등은 제외 | | |
| ○ 자개농, 티크농, 나전칠농 모두 조사 ----- × 찬장, 서랍장, 서가는 제외 | 제 재 목 | |
| ○ 경대, 화장장, 나전칠기, 자개, 포함 | // | |
| ○ 티테이블 및 상을 포함 ----- × 회의용 대형테이블, 사이드테이블 유리판만 올려놓은 탁자등은 제외 | // | |
| ○ Single, double, Twin 침대 모두 조사 ----- × 철재 침대 제외 | // | |
| ○ 자개, 나전칠기제 포함 | // | |
| ○ 설것이대, 조리대, 가스레인지대등으로 분리시켜 수량 파악 ----- × 벽장·후드관 및 철재 제외 | | |
| ○ 서랍장(단스), TV대, 전축대, 비디오대 등 | | |
| ○ 부엌용 찬장만 조사 (싱크대 위에 설치되는 찬장 포함)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3201209 | 공공건물용목재가구 (公共建物用木材家具) | 백만원 | 교회·강의실·도서실등 공공건물에서 사용되는 가구 |
| 3201309 | 가정용내장가구 (家庭用内櫥家具) | 백만원 | 탁자와 의자가 1 set 로 된 응접가구 |
| 3201409 | 차량용내장가구 (車輛用内櫥家具) | 백만원 | |

중분류 34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소분류 341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사업체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연」이다. 그러나 조사단위는 「M/T」임에 유의.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교회용 벤취·탁자·교탁등 | | |
| ○ 쇼파·쇼파용탁자 모두 조사 | | |
| ○ 타 용도의 가구와 구분하여 차량에 쓰이는 것만 조사 | | 자동차 Seat |

※ 단위환산

1 연 = 500 매 × 종이 1 매의 중량

1 매 : 가로 (1,091 m) × 세로 (0.788 m)

2. 「골판지원지」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골판지 및 상자」를 생산하니 재투입량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4110100 | 펄 프 | M/T | 목재를 기계로 갈아서 만든 쇠목펄프와 목재를 짧게 절단한 칩에 약품을 섞어서 만든 화학펄프 |
| 4110200 | 신문용지 (新聞用紙) | M/T | 인장강도가 높고 잉크가 잘 흡수되도록 제작한 종이 |
| 4110300 | 백상지 | M/T | 일명 모조지, 화학펄프만으로 제조한 고급인쇄용지 |
| 4110400 | 중질지 (中質紙) | M/T | 쇠목펄프에 화학펄프 30~40%를 배합 제조한 중급 인쇄용지 |
| 4110500 | 아트지 | M/T | 일명 안료도공지. 광물성의 백색 또는 담색안료를 지면에 입혀 만든 종이 |
| 4110600 | 크라프트지 | M/T | 가성소다와 황하나트륨의 혼합액에 넣은 후 고온저압을 가해 얻은 황산염 펄프를 원료로 한, 질기고 두터운 황토색의 종이 |
| 4110700 | 박엽지 (薄葉紙) | M/T | 얇은 종이의 총칭으로 평균 40g/m ² 이하의 것 |
| 4110809 | 화선지 (畫宣紙) | 매 | 일명 서예지. 붓으로 그림이나 글을 쓰는 선지류의 하나로 수제지임. |
| 4110900 | 판지 및 판지 상자 (板紙 및 板紙箱子) | M/T | 판지원지로 판지상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마닐라, 고휘표백, 기타등의 |

| 조 사 범 위 | 원재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쇄목, 감색쇄목, 황산표백, 소다, 용해, 식물성 등의 쇄목 및 화학 펄프를 조사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펄프(고지, 헝겍등) 제외 | 소 나 무, 참 나 무, 활엽수, 침엽수, 황산, 가성소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지포함 | 화 학 및 쇄 목 펄 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지포함 | 화 학 펄 프 | |
| | 쇄 목 펄 프, 화 학 펄 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트지, 광택지, 바라이트지 등 조사 | | 달력, 엽서등 원색판 인쇄 |
| | 화 학 펄 프 | 증포장 및 일반포장 용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본, 등사, 절연, 차봉지등의 각 원지와 담배용지등 조사 | 화 학 펄 프 | 사전, 성서 및 타자 용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판선지등 각종 선지류 포함 | 화 학 펄 프, 닥 나 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지만을 생산한 업체는 판지를, 판지를 생산, 상자를 만드는 업체 | 판지 원지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판지 또는 상자 |
| 4111000 | 골 판 지 원 지 (골板紙原紙) | M/T | 골판지를 만들 수 있게 제작한 종이 제품 |
| 4120100 | 골 판 지 및 상자 | 천㎡ | 골판지 상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 든 종이제품 또는 상자 |
| 4120200 | 크 라 프 트 지 포 대 (布 袋) | 천매 | 크라프트지를 3~6겹으로 하여 만든 포대 |
| 4120300 | 위 생 용 식 품 용 기 (衛 生 用 食 品 用 器) | kg | 종이로 만든 각종음료 및 식품의 일 회용 용기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는 상자를 조사</p> <hr/> <p>× 판지를 구입 상자를 만드는 것은 제외</p> | | |
| <p>○ 라이나원지 (A.B.K 원지), 중심지 조사</p> | 고지필프 | 골판지 및 상자 |
| <p>○ 조사요령은 4110900 판지 및 판지 상자와 동일.</p> <p>즉, 골판지원지를 구입하여 골판지만을 생산한 업체는 골판지를, 골판지를 생산하여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상자를 조사.</p> <p>※ 골판지원지를 생산, 골판지 및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골판지원지가 재투입이 됨.</p> <hr/> <p>× 골판지를 구입 상자만을 만드는 업체는 제외</p> | 골판지원지 | |
| <p>× 크라프트지가 아닌 백화점쇼핑백등은 제외</p> | | 시멘트, 곡물, 약품등의 포장재 |
| <p>○ 종이로 만든 컵, 접시, 우유 및 유산균 발효유등의 각종 용기 (카톤 팩)</p> <hr/> <p>× 콘, 얼음과자등의 포장용기와 프리</p>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4120409 | 지 관 (紙 管) | kg | 방적사, 어망사, 농업용필름, 화장지, 신문용지 등을 감을 수 있게 만든 것 |
| 4190100 | 종 이 벽 지 (壁 紙) | 천㎡ | |
| 4190200 | 위생용종이제품 | M/T | |
| 4190300 | 금 속 박 지 (金 屬 箔 紙) | M/T | 일반 지류에 금속광물(알루미늄, 주석, 아연등)을 吹付 또는 금속박을 합해서 만든 것 |
| 4190400 | 사 무 기 기 용 지 (事 務 器 機 用 紙) | M/T | 사무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든 사무용지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마통, 단순인쇄 및 코팅만 하는 것은 제외 | | |
| | 복 합 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링크러스타 포함 ----- × 갈포벽지는 2140600 (직물벽지)로, 순비닐벽지는 5600300 (플라스틱장판 및 벽지)로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형태의 화장지, 냄프킨, 생리대, 종이기저귀, 종이타월등을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은박지등을 조사 ----- × 금은박 또는 박지를 구입 접착제로 단순히 접촉하는 것은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시트지, 복사지, 천공용카드, 자동기록지, 전신 및 텔레타이프지를 조사 | | |

소분류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4210100 | 일 간 신 문 (日 刊 新 聞) | 천부 | 신문사에서 매일 발행하는 신문 |
| 4210200 | 정 기 간 행 물 (定 期 刊 行 物) | 천권 | 주간, 월간, 계간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각종 잡지류 |
| 4210300 | 서 적 (書 籍) | 백만원 | 판매 관계없이 일반출판사 및 국정교과서에서 발행되는 책자 |
| 4210400 | 일 반 인 쇄 물 (一 般 印 刷 物) | 연 | 정기간행물, 서적등 원고를 받아 임가공료를 받고 인쇄한 것과 기타 일반적인 인쇄물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 비밀간신문(주간신문, 학습지, 학보, 사보, 협회지등)은 일반인쇄물로 조사</p> | | |
| <p>○ 교과서, 참고서, 학술지, 문학기, 전문지, 대중소설, 어린이그림책등</p> <p>※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출판사는 일반인쇄물과 서적을 조사한다.</p> | | |
| <p>×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서적등은 인쇄소에서 일반 인쇄물로 조사</p> | | |
| <p>○ 팸플렛, 약보, 지도, 연하장, 어린이그림, 포스터 및 그림복사물, 주식·채권등의 유사권리증서를 포함</p> <p>※ 인쇄소에서 원고를 받아 인쇄하여 만든 서적류는 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일반인쇄물로 조사한다.</p> | | |
| <p>× 지폐, 우표 제외</p>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4210500 | 노 트 | 천권 | |
| 4210600 | 앨 범 | 천권 | 사진, 우표, 화폐 등을 보관할 수 있게 엮은 것 |

중분류 35 . 화합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소분류 351 .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 황산, 가성소다는 지정품위로 환산 조사

① 황 산

35 %, 40 % 등으로 생산되며 지정품위 98 %로 환산 조사

② 가성소다

40 %, 46 %, 97 % 등으로 생산되며 지정품위 100 %로 환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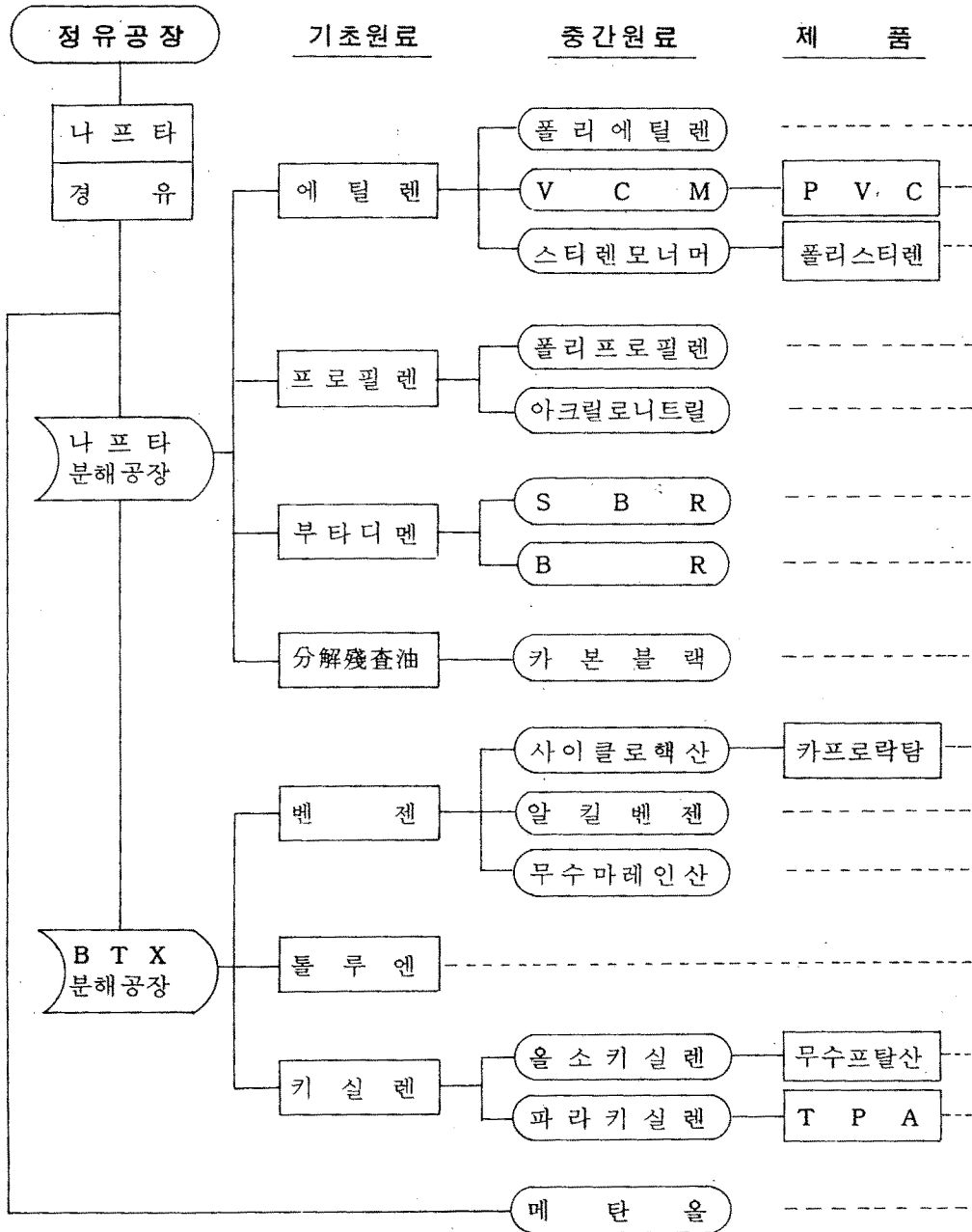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X 수첩, 다이어리, 장부책, 스케치북 제외 | | |
| X 학생졸업앨범등 내용물을 인쇄한 것 은 제외 | | |

※ 환산요령

예 : 40 % 황산 250M/T를 생산하였다면,

$$\frac{40}{98} \times 250 = 102 \text{ M/T} \dots\dots\dots \text{실생산량}$$

2. 농약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비수기때 황산, 가성소다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생산여부 확인조사
3. 나프타생산업체에서는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키실렌등을 생산하니 재투입 및 제품조사누락에 유의
4. 특히 화학제품은 타제품제조나 촉매제, 원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재투입조사에 누락없도록 유의



계 열 도 (지 정 품 목)

주 용 도 품 목

- 합 성 수 지 : 농업용필름, 전선피막, 각종상품의 포장재
- 합 성 수 지 : 파이프, 관, 모노름, 실내내장재
- 합 성 수 지 : 전기용품, 케이스, 건축재, 완구, 식기
- 합 성 수 지 : 필름, 성형제품, 합성섬유, 대형용기 및 식기
- 합성수지원료 : 아크릴수지, 아크릴릭섬유
- 합 성 고 무 : 타이어, 신발, 산업용 고무제품
- 합 성 고 무 : " " "
- 고무제품원료 : 타이어, 공업용 고무제품
- 합성섬유원료 : 나이론섬유, 수지
- 합성세제원료 : 각종 합성세제, 살충 및 살균제
- 화 공 약 품 : 합성수지도료, 가소제
- 합성수지원료 : 우레탄수지, 가소제, 염료, TNT
- 화 공 약 품 : 가소제, 도료
- 합성섬유원료 : 폴리에스텔섬유, 녹음테이프
- 화 공 약 품 : 포르말린, 접착제, 용제, 의약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10100 | 에틸렌 (Ethylene) | M/T | 二重結合을 갖는 탄화수소의 하나인 不飽和化合物 (올레핀탄화수소).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중요한 1차원료로 무색의 可燃性기체이며 꽃향기같은 냄새가 나는 물질 |
| 5110200 | 프로필렌 (Propylene) | M/T | 불포화화합물에 속하는 물질로 석유화학공업의 1차원료 |
| 5110300 | 부타디엔 (Butadiene) | M/T | 일명 폴리에틸렌탄화수소. 불포화화합물의 하나 |
| 5110400 | 벤젠 (Benzene) | M/T | 芳香族化合物의 기본물질로 가연성 무색 유독액체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 化工用, 重合用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重合</p> <p>※ 에틸렌 \longrightarrow 폴리에틸렌</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체 중합체</p> <p style="text-align: center;">(Monomer) (polymer)</p> | 나 프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수지원료</u> 폴리에틸렌, 스티렌 모너머, VCM • <u>합성섬유원료</u> 산화에틸렌 • <u>화공약품원료</u> 에탄올, 아세트알데 히드 |
| <p>○ 化工用, 重合용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중합</p> <p>※ 프로필렌 \longrightarrow 폴리프로필렌</p> | 나 프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수지원료</u> 폴리프로필렌, 산화 프로필렌 • <u>합성섬유 및 수지원료</u> 아크릴로니트릴 • <u>화공약품원료</u> 옥탄올, 부탄올 |
| | 나 프 타 | 합성고무(SBR, BR)의 원료 |
| <p>○ 公業약품 및 溶濟用 조사</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 BT(벤젠+톨루엔), BX(벤젠+키실렌) 같은 화합물은 제외</p> | 나 프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합성섬유원료</u> 싸이클로hex산 • <u>합성세제원료</u> 알킬벤젠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10500 | 톨 루 엔 (Toluene) | M/T | 톨루올이라고도 하며 메틸벤젠에 해당됨. 무색의 액체 |
| 5110600 | 키 실 렌 (Xylene) | M/T | 키실올이라고도 하며 디메틸벤젠에 해당 |
| 5110700 | 염화비닐모너머 (V.C.M) | M/T |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염화비닐의 單量體 (고분자화합물을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할 때 그 단위가 되는 화합물) |
| 5110800 | 에틸렌글리콜 (E.G) | M/T |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단맛과 吸濕性이 있고 粘度가 높은 무색의 액체 |
| 5110900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P.G) | M/T |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
| 5111000 | 아크릴로니트릴 (A.N) | M/T |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물질. 향긋한 냄새를 가진 폭발성, 가연성의 |

| 조 사 범 위 | 원재료 | 용 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원료 무수마레인산, 페놀 화공약품원료 아세톤 |
| | 나 프 타 | TDI 원료 (우레탄수지의 원료), 폭약, 염료, 수지, 농약, 가소제 |
| ○ 혼합, 올소, 파라키실렌을 포함 | 나 프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소키실렌 : 무수프탈산의 원료 파라키실렌 : TRA의 원료 |
| | 에 털 렌 | PVC 수지의 원료 |
| ○ 모너, 디, 트리에틸렌글리콜을 포함 | 에 털 렌 | 폴리에스테르섬유 및 수지, 부동액의 원료 |
| ----- X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제외 | | |
| | 산 화 프로필렌 | 우레탄수지의 원료 (플라스틱스폰지와 단열재 등 원료) |
| | 프로필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원료 ABS, AS, 아크릴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무색유독액체 |
| 5111109 | 초 산 에 틸 | M/T | |
| 5111209 | 옥 탄 올 | M/T | 일명 2에틸헥실알콜 |
| 5111300 | 스티렌모너머 (S . M) | M/T |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
| 5111400 | T . D . I | M/T |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물질. 녹는점 (MP)이 12 °C이며, 동절기 고체, 하절기는 액체상태로 무색투명하며 유 독함. |
| 5111500 | 페 놀 (Phenol) | M/T | 일명 石炭酸(C ₆ H ₅ OH). 방향족탄화수소핵의 수소원자를 水酸基 로 置換한 방향족히드록시화합물을 일 반적으로 페놀(類)이라 함. |
| 5111600 | 무 수 프 탈 산 | M/T | 기둥모양의 프탈산을 열을 가하면 탈 수되어, 바늘을 묶어놓은 것 같은 형태 (純白針狀)로 된 결정체 |
| 5111700 | 테 레 프 탈 산 (T.P.A) | M/T | 성질이 다른(異性體) 프탈산과 이소 프탈산의 화합물인 백색의 결정체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수지 <u>합성섬유원료</u> 아크릴계섬유 |
| | 질산, 황산 | |
| | 폴리프로필렌 | DOP 가소제의 원료 |
| | 에틸렌 | 합성수지인 폴리스티렌의 원료 |
| | DNT, 염소, 톨루엔 | 폴리우레탄 스폰지등 발포성제품의 원료 |
| ○ 수산기의 수에 따른 1가페놀, 다가페놀(2가, 3가페놀, 일명 폴리페놀)등을 조사 | 벤젠 | 페놀수지등의 원료 |
| | 키실렌 | 가소제의 합성재료, 도료의 원료 |
| | 키실렌 | 폴리에스텔섬유, 녹음테이프의 원료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11800 | 카프로락탐 (Caprolactam) | M/T | |
| 5111900 | 알킬벤젠 (Alkyl Benzene) | M/T | 벤젠의 수소원자를 1~6개의 알킬기를 가진 탄화수소류의 하나. 무색투명한 액체 |
| 5112009 | 싸이크로헥산 | M/T | 탄소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즉 有機溶劑로 석유냄새가 나는 무색流動性的의 액체 |
| 5112109 | 사카린원료 | M/T | O.T.S.A(Ortho Toluene Sulfon Amide) |
| 5112200 | 페놀수지 | M/T | 페놀류과 포름알데히드를 酸이나 알칼리로 축합시켜 얻는 熱硬化性플라스틱 |
| 5112300 | 폴리우레탄 | M/T | 熱可逆性폴리부가형플라스틱 |
| 5112400 | 폴리에틸렌 (P . E) | M/T | 열가소성플라스틱. 에틸렌을 중합시켜 만든 투명 또는 반투명 고체 |
| 5112410 | 저밀도폴리에틸렌 (L.D.P.E) | M/T | 고압법에 의해 만들어짐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싸이클로 헥산 | 나이론섬유 및 수지의 원료 |
| | 벤젠 |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농약의 원료 |
| | 벤젠 | |
| × 가소제원료인 P.T.S.A는 제외 | 톨루엔, 암모니아, 염화술포산 | |
| ○ 산성의 노불락(분말), 알칼리성의 데졸(액상) 포함. | 페놀, 포름 알데히드 | 전기절연재료, 기계, 농 기구의 부품, 톱니바퀴, 사무용품 |
| | 벤젠, 톨루엔, 싸이크로 헥산 | 폴리우레탄 폼(Foam) 우레탄고무, 우레탄 도료 및 발포성형제품 |
| | 에틸렌 | |
| | | 필름, 포장재, 시트, 전선피복.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12420 |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 M/T | 저밀도보다 結晶性이 크고 硬度, 強度, 耐熱性이 우수한 반면 加工性이 떨어짐. |
| 5112500 | 폴리프로필렌 (P.P) | M/T | 가장 가벼운 열가소성 플라스틱.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투명하며 내열성, 引張強度가 크며 전기적성질이 크다. |
| 5112600 | 폴리스티렌 (P.S) | M/T | 열가소성플라스틱. 스티렌의 중합체로 투명성, 電氣的性質, 熱流動性, 熱安定性, 着色性이 우수함. 충격에 약한 결점이 있음. |
| 5112700 | A B S 수 지 | M/T | 열가소성플라스틱.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의 공 중합체로 유백색이며 견고함. |
| 5112800 | P V C 수 지 | M/T | 일명 폴리염화비닐. 열가소성플라스틱.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不燃性이며 백색 무취함. |
| 5112900 |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不飽和 PET 樹脂) | M/T | 열경화성플라스틱 (FRP 수지). 불포화基를 갖는 선형폴리에스터와 비닐단량체와의 중합으로 얻은 수지 |
| 5113009 | 요소 수 지 (尿 素 樹 脂) | M/T | 열경화성플라스틱. 요소와 포름알데히드를 축합시켜 얻은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각종용기, 파이프 |
| | 프로필렌 | 가정용품(용기, 식기, 세면기등), 필름, 배관용파이프, 의자 |
| ○ 발포성 스티렌포함 | 스티렌모너머 | 착색의 식기 및 완구, 장신구, 일용잡화, 라디오, 냉장고등의 케이스 |
| |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 전기용품, 주택자재, 문구류, 용기, 구두굽 및 충격보강제제품 |
| ○ 중합도 기준에 따라 경질(가소제 함유량 29%이하), 연질(가소제 함유량 30~50%)이 있음. | VCM | 전선피복, 모노륨, 호스, 시트, 전선관, 수도파이프, 밸브등 건설자재 파이프 |
| |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 FRP 제품(의자, 욕조, 단추, 선박등) |
| | 요소, 포르말린 | 약품류의 용기의 캡, 전기부품, 단추, 식기,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것. 무색투명하여 임의로 착색이 쉬 우나 내수성이 약하고 건조하면 균열 하는 결점이 있음. |
| 5113109 | 에 폭 시 드 수 지 | M/T | 열경화성 플라스틱. 1 분자속에 에폭시기를 두개이상 갖는 樹脂狀물질 및 그 에폭시기의 開環重 습에 의해서 얻어진것. 황갈색의 粘 調한 액체 또는 고체. |
| 5113209 | 실 리 콘 수 지 | M/T | 일명 규소수지. |
| 5113309 | 포화폴리에스터수지 | M/T | 일명 선형포화폴리에스터 수지. |
| 5113400 | S . B . R | M/T |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공중합시켜 만든 합성고무의 하나. 유백색 및 갈색의 원료고무로 천연고무보다 약하고 부드 럽다. |
| 5113509 | 포 르 말 린 | M/T | 포름알데히드의 40% 수용액 |
| 5113609 | 스 테 아 린 산 | M/T | 유지류의 주요성분을 이루는 지방산에 액체산을 제거하여 만든 무취의 백색 고체.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접착제 |
| ○ 저분자량, 고분자량이 있음. | | 접착제 (저분자량), 페놀수지등 타수지와 병용해서 도료에 사용 (고분자량) |
| | 규소 (실리콘) | |
| |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DMT ? | 폴리에스터섬유, 필름 (Pet 필름) |
| ○ BR을 포함. × NBR, NCR, IIR, 스테레오 SBR 제외. | 스티렌, 부타디엔, 가소제 | 타이어, 신발창, 고무 벨트 |
| | 메탄올 | 접착제, 요소수지 |
| | 우지 | 고무공업, 금속문구, 안정제, 화장품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13709 | 구 연 산 (枸 櫞 酸) | M/T | 밀감등 과실류에서 짜내거나 당류를 어떤 종류의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것. |
| 5120100 | 카 바 이 드 | M/T | 일명 탄화칼슘. 생석회와 탄소를 반응시켜 만든 회색의 굳은 결정체. 물을 가하면 아세틸렌가스가 발생. |
| 5120209 | 황 산 (黄 酸) | M/T | 일명 유산. H_2SO_4 및 그 수용액을 말하며, 보통 수용액인 경우가 많음. 무기화학공업제품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를 가진 것으로 빛도 맛도 없는 끈끈한 기름모양의 액체. |
| 5120309 | 5 산화인 및 인산 | M/T | 황인을 태우면 5 산화인이 발생되며, 여기에 물을 혼합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산. |
| 5120409 | 과 산 화 수 소 (過 酸 化 水 素) | M/T | 황산수소암모늄의 전해에 의해 양극에 생기는 페르옥소 2 황산암모늄용액을 감압증류하여 얻는 것으로 기름모양의 무색액체, 산화작용이 강함. |
| 5120509 | 탄 산 칼슘 | M/T | 석회암, 대리석등으로 산출하며 칼슘염의 수용액에 탄산알칼리를 가하면 무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청량음료수 제조 |
| | 생석회 | 아세틸렌 가스제조 |
| ○ 98% 기준 한산초사. 발열황산(올레움) 포함. | 유황, 인광석 | 비료, 폭약, 염료, 금속 정련, 농약, 의약, 세제, 식품공업, 방직, 제지등 에 사용 |
| | 황인 | 금속표면처리제, 인산염 및 조미료 제조에 사 용 |
| | | 종이, 섬유등의 표백제 |
| ○ 중질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胡粉을 포함조사. | 석회석, 생석회, | 화공약품 및 형광물질 제조.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색침전으로 얻어진다. |
| 5120600 | 가 성 소 다 (苛性소다) | M/T | 일명 수산화나트륨 (NaOH). 즉, 흔히 양잿물이라 하며,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이 발생. |
| 5120700 | 가 소 제 (可塑劑) | M/T | 일명 수산화칼리 (KOH), 수산화칼륨 또는 가성칼리라 함. 플라스틱, 고무, 도료등 고분자물질에 첨가하여 유연성, 가공성, 접착성을 좋게 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만들게 하는 무색, 무미, 무취, 무독한 물질. |
| 5120800 | 소 다 회 | M/T | 일명 탄산나트륨 (Na ₂ CO ₂), 또는 탄산소다. 無水鹽을 속칭 소다회로 불리우며 흡습성이 있는 무색의 분말로 물에 잘 녹고 수용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냄. |
| 5120909 | 탄 산 칼 륨 | M/T | 일명 탄산칼리 (K ₂ CO ₃). 공기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물에 녹으면 강한 알칼리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소다회, 염화칼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액상태 포함. 100 % 기준 환산 | 소다회, 식염, 석회 | 조미료, 비스코스인건사, 염료, 향료, 농약, 의약품, 종이 및 펄프제조에 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탈산에스테르, 옥시산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계, 에폭시계 등 각종 가소제류 포함. ※ 고분자물질 : 분자량이 큰 화합물의 총칭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단백질, 섬유소) | 무수프탈산, 에틸렌글리콜, 무수말레인산 | 합성수지류, 접착제, 호스, 추잉검 등에 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액을 32 ℃로 결정시키면 10 水鹽 (속칭 양젓물) 이 됨. | 암모니아, 석회석, 식염 | 아미노산공업, 비누, 유리, 가성소다, 제지, 염색, 의약품 |
| | 염화칼륨 | 브라운관유리, 크리스탈유리, 카메라렌즈의 제조.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성을 나타냄. 고체의 백색결정체. |
| 5121009 | 염 산 (鹽 酸) | M/T | 일명 염화수소산. 염화수소의 수용액을 말함. |
| 5121109 | 규 산 소 다 (硅 酸 소 다) | M/T | 일명 규산나트륨이며 보편적으로 메타 규산나트륨(Na_2SiO_2)을 가르킴. 물에 쉽게 녹으며 수용액은 강한 알 칼리성을 나타낸다. |
| 5121200 | 산 소 (酸 素) | 천 m^3 | 적정온도에서 산소에 높은 압력을 가 하여 그 부피를 줄인 압축산소와, 영 하 118°C 이하의 온도 및 50 기압이 상의 압력으로 냉각, 압축하여 얻은 약간 푸른색을 띤 액체산소로 대별됨. |
| 5121300 | 아 세 틸 렌 가 스 | M/T | 아세틸렌계 탄화수소의 하나인 카바이 드(탄화칼슘)에 물을 가하여 얻은 무색의 독성이 있는 기체 |
| 5121400 | 화 이 트 카 본 | M/T | 규소화합물의 하나로 무색, 무해의 백 색 고운 분말. |
| 5130100 | 염 료 (染 料) | M/T | 일명 타르염료라고도 함.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 염산, 진한염산 조사 × 약국에서 파는 염산은 의약품으로 조사. | 염화수소 | 생철의 脫朱錫, 염화물, 의약, 색조류등의 제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르토규산나트륨 (Na_4SiO_4), $\text{Na}_2\text{Si}_2\text{O}_5$, $\text{Na}_2\text{Si}_4\text{O}_9$ 등의 각종 규산나트륨 포함. | 소다회, 2 산화규소 가성소다 | |
| | 공기, 물 | 용접, 용산, 열원, 폭약, 의료, 공기정화등에 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 아세틸렌 제외. | 카바이드 | |
| | 규산소다, 황산 | 백색 합성고무의 밝은색 보강제, 합성수지, 인쇄 잉크, 도료, 농약, 접착제등에 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성염료인 직접, 산성, 염기성, 반응성, 유기용제용해, 형광백, 유기합 | 벤젠, 톨루엔, | 섬유, 종이, 목재, 유지 등의 착색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30200 | 안 료 (顔 料) | M/T | 물, 기름등에 녹지않는 백색 또는 유색의 분말로 소정의 빛갈을 내게 하는 착색제. |
| 5130210 | 무 기 안 료 | M/T | 무기물질인 주로 금속의 산화물로 되며 유기안료와 비교하여 대체로 열안정성이 좋으며 색이 변하지 않음. |
| 5130220 | 유 기 안 료 | M/T | 유기화합물인 안료로 물에 가용성 또는 불용성인 염료를 금속염류등의 침전제로 불용성으로 한것(레이크계 안료)등. 무기안료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착색력이 크고 색상이 선명함. |
| 5130230 | 조 제 안 료 | M/T | 유기, 무기안료를 용도에 맞게 조제 한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성유기등의 모든 염료를 포함. | 염산, 소다회, 메탄올, 가성소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안료, 유기안료, 조제안료를 세분조사. | | 플라스틱, 고무, 도료, 인쇄잉크등 제조에 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인 연산화물, 티타늄화이트, 아연화등과 적색의 산화철, 청록색의 프레스안, 울트라마린 및 황적색의 적연 및 황연등의 안료를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조레이크계 안료, 불용성 아조계 안료, 푸타로시아닌계 (블루, 그린계) 안료등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유기, 무기안료, 조제법량 및 유약, 마스타 뱃치등 기타 조제안료 조사.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40100 | 아세테이트섬유 | M/T | 재생섬유(반합성섬유). 전기절연성이 뛰어나며 토우(tow)는 담배필터용으로 대량 사용. |
| 5140200 | 폴리아미드섬유 | M/T | 합성섬유의 하나. 일명 나이론섬유 |
| 5140300 | 폴리에스터섬유 | M/T | 합성섬유의 하나. TPA와 EG를 중합하여 만든 것으로 섬유의 대표적 성질인 강신도가 나이 론 다음으로 우수. |
| 5140400 | 아크릴릭섬유 | M/T | 합성섬유의 하나. 양모와 가장 비슷한 모양과 성질을 가진 폴리아크릴계섬유. |
| 5150100 | 요소비료 (尿素肥料) | M/T | 질소의 함유량이 높은 질소질비료의 하나로 흡습성이 강한 속효성의 중성 비료. |
| 5150200 | 복합비료 (複合肥料) | M/T | 비료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량을 조정하여 혼합 한 대표적인 화학비료. |
| 5150309 | 유안비료 (硫安肥料) | M/T | 일명, 황안비료. 황산과 암모늄을 반응시켜 만든, 백색 의 질소질비료. |
| 5150409 | 유기질비료 (有機質肥料) | M/T | 동식물의 유체 및 분뇨와 조미료 생 산시 그 부산물로 만든 비료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장섬유, 장섬유토우, 단섬유 조사 | 아세톤후 레이크 | |
| ○ 장섬유, 단섬유 조사 | 카프로락탐 | |
| ○ 장섬유, 단섬유, 장섬유토우 조사 | TPA, EG | |
| ○ 장섬유, 단섬유, 토우 조사. | 아크릴로 니트릴, 암모니아 | |
| | 암모니아, 탄산가스 | 전답 |
| | 암모니아, 과진산석회 | 전답, 원예, 인삼 |
| | 암모니아, 황산 | |
| ○ 2종복합비료에 유기질을 10%이상 가한 3종의 비료포함.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160100 | 농 약 (農 藥) | M / T | 乳劑, 粒劑, 粉劑, 液劑, 水和劑로 된 농약. |
| 5160110 | 살 충 제 | M / T | 해충을 구제, 사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기합성살충제. |
| 5160120 | 살 균 제 | M / T |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갖는 약제. |
| 5160130 | 제 초 제 | M / T | 잡초를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 |
| 5160209 | 살 서 제 | M / T | 취약 |

소분류 35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의약품의 증감사유기재시 부호와 함께 해당 약제명을 기입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세분조사. | 벤젠, 키실렌, 염산, 가성소다 |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 |
| ○ 수도용, 원예용 조사. (진디물, 각종 나방류, 멸구, 깍지 벌레, 응애, 토양해충약등) | | |
| ○ 합성살균제 포함. 수도용, 원예용 조사. (종자소독, 도열병, 흰가루병, 검은 무늬병, 탄저병, 갈록병, 흰빛마른 잎병, 더덩이병, 곰팡이병, 부탄병, 노균병약등) | | |
| ○ 페녹시초산형, 유기산형, 산아미드형, 페놀제등으로 된 제초제 조사. | | |
| | | |

< 약제명 >

신경계용약, 해열진통제,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혈액 및
체액용약(수액제, 지혈제 등), 항감염제, 기타

2. 세탁비누, 화장비누는 제조시 무게로 조사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210100 | 바 니 스 | ℓ | 일반적으로 니스라 불림. 광택 또는 무광택의 투명한 막을 만드는 유성 도료의 하나 |
| 5210200 | 에 나 멜 | ㎏ | 안료와 유바니스를 녹여 혼합한 전색 제 도료. 페인트보다 광택이 풍부하며 미끄럽고 건조가 빠르다. 녹을 막고 열에 견 디는 힘이 크다. |
| 5210300 | 페 인 트 | ㎏ | |
| 5210310 | 유 성 페 인 트 | ㎏ | 안료와 보일유를 혼합해서 만든 유색 도료의 하나. 된 반죽(堅練), 種, 調合페인트로 분류 됨 |
| 5210320 | 수 성 페 인 트 | ㎏ | |
| 5210400 | 락 카 | ℓ | 용제형으로 막이 질기고 강한 광택을 내는 투명도료의 하나. 건조시간이 빠르며 보통 셀룰로즈락카 및 섬유소 도료를 말함. |
| 5210500 | 신 너 | ㎏ | 일명 복합솔벤트. 도장작업에 적합한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물계 하는 용제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精, 油바니스(스파·골드·코팔·보 디등 바니스)등을 조사 | 톨루엔, 키 닐렌, 무스 프탈산, 산 화티탄, 수 리 | 나무의 투명도장 |
| | 무스프탈산 글리세린, 안료, 수지, 톨루엔, 키 일렌 | 차량, 선박, 건축등의 내부, 철재가구, 기계, 전기기기등에 도장 |
| ○ 방취, 방부페인트등 기타 유성도료 포함 | 무스프탈산 글리세린, 산화티탄, 스티렌모너 머 | 건축, 선박, 교량등 주로 옥외구조물에 도 장 |
| | 산화티탄, 스티렌모너 머 | 옥내용 도장 |
| ○ 아크릴, 하이솔리드, 우제 탄락카 및 락카에나멜을 조사 | 무수프탈산 수지, 톨루 엔, 키실렌, 가소제, 산 화티탄 | 가구, 완구, 항공기, 차량, 선박에 도장 |
| ※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솔벤트는 5300500 으로 조사 | 솔벤트, 키 실렌, 톨루 엔 | 페인트, 바니스등의 회 석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220100 | 의 약 품 (醫 藥 品) | 백만원 |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쓸것을 목적으로 제조된 모든 약제품 |
| 5230100 | 세 탁 비 누 | M / T | |
| 5230200 | 화 장 비 누 | M / T | |
| 5230300 | 합 성 세 제 (合 成 洗 劑) | M / T | 비누 이외의 합성 표면활성제를 말한다. |
| 5230310 | 세 탁 용 세 제 | M / T | |
| 5230320 | 주 방 용 세 제 | M / T | 식품, 주방집기등을 세척 |
| 5230400 | 계 면 활 성 제 (界 面 活 性 劑) | M / T | |
| 5230500 | 치 약 | M / T | |
| 5230600 | 화 장 품 (化 粧 品) | 백만원 | |
| 5230610 | 화 장 수 | 백만원 | 투명한 알카리 및 산성화장수와 유액상의 乳化性화장수로 대별됨 |
| 5230620 | 화 장 크 림 | 백만원 | 유액과 같이 기름과 물로 되어있는 含水油性, 無油性, 중성크림으로 대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모든 약제품 포함 | | |
| × 공업용비누(알루미늄, 칼슘, 망간, 아연 등의 비누) 제외 | 규산, 우지가성소다, 규산소다회 | |
| ○ 액체, 종이, 칼리, 부상비누를 포함 | | |
| ○ 연성, 경성세제 포함 | 가성소다, 향료, 알킬벤젠, 규산소다 | |
| ○ 유이온, 양이온, 비이온, 양성 등의 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등을 포함 | 벤젠, 소다회, 스테아린산, 가성소다, 메탄올, 글리세린 | 린스, 합성세제, 샴프, 비누 등 제조 |
| × 가루치분제외 | | |
| ○ 기초, 색조, 모발등의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등 전 화장품을 포함 | | |
| ○ 밀크로션, 쓰킨로션의 유연 및 수렴 화장수 모사 | | 기초화장 |
| ○ 콜드, 영양, 크린싱, 바니싱, 표백등의 크림을 조사 | | 기초화장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230630 | 삼 푸 및 린 스 | 백만원 |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乳液狀 및 젤리 상의 모발 세척제 |
| 5230640 | 기 타 화 장 품 | 백만원 | |
| 5290100 | 공 업 용 접 착 제 (工業用接着劑) | M / T | 합성접착제로 완제품인것 |
| 5290200 | 다 이 나 마 이 트 | M / T | 니트로글리세린을기제(劑)로 하여 만든 폭발약 |
| 5290300 | 카 본 블 랙 | M / T | 천연 및 석유가스등을 불완전 연소시켜 생긴 그을림을 긁어모은 분말로된 흑색안료의 하나. 착색력, 내열, 내광성 및 내약품성이 크다. |
| 5290400 | 인 쇄 잉 크 | kg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X 먼도크림, 헤어크림은 기타 화장품으로 조사 | | |
| ○ 분말, 액체, 젤리등의 모든 샴푸와 헤어린스, 헤어토닉등의 양모제를 포함 | | 모발화장 |
| ○ 화장수, 화장크림, 샴푸 및 린스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을 조사 | | |
| X 별도품목의 포르말린, 수지류와 동식물계(아교, 제자틴 등) 접착제는 제외 | 합성고무, 나이론, 폴리우레탄 고무 | |
| ○ 교질, 분상, 혼합등의 다이나마이트를 조사 | 글리세린, 초안 | 광석의 채굴 및 채취, 갱도굴진, 일반토목 |
| ○ 고무용, 안료용의 하드카본, 소프트 카본등을 조사 | 나프타, 콜타르 | 타이어, 인쇄잉크, 도료, 건전지, 고무의 착색 및 보강제 |
| ○ 철판, 요판, 형판, 등사, 그라비아등의 잉크를 조사 | 염료, 카본블랙, 산하티탄, 톨루엔, 대두유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290500 | P V C 안정제 (安定劑) | M / T | PVC 수지 배합시 첨가되어 열안정과 가공성을 높여주는 첨가제 |
| 5290609 | 초안폭약 (硝安爆藥) | M / T | 일명 질산암모늄 폭약, 폭발성의 감도가 둔하고 폭발온도가 낮다. |
| 5290709 | 방수액 | M / T | |
| 5290809 | 고무노화방지제 (老化防止劑) | M / T | 고무에 섞어 넣거나 표면에 칠하여 산화를 방지케 함으로써 고무의 수명을 연장케 함. 자갈색, 담황색, 담갈색 등의 액체, 후레이크, 분말로 되어있음 |
| 5290909 | 가황촉진제 (加黃促進劑) | M / T | |

소분류 : 353. 석유정제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각종 유류의 1BbL (바렐)은 158,984 ℓ 임

$$1\text{BbL} = 0.158984 \text{ kl} \quad \therefore \text{BbL} \times 0.158984 \text{ kl}$$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 (무기 및 금속성검제), <li style="padding-left: 20px;">- 액상 (액상유기 복합안정제 및 유기식계 안정제) 등의 안정제를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처리제, 배합제, 자외선 안정제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산암모늄유제 폭약, 슬러리 폭약 포함 | | 공업용폭약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민계, 알킬페놀계 등을 조사 | | 합성고무 및 합성고무라텍스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기성, 누연성 등의 각 촉진제를 포함 | | 고무제품, 신발, 전선, 접착제 등에 사용 |

2. 윤활유는 소분류 354 에서 조사. 윤활기유와 다름에 유의

3. 프로판가스 1t = 10.88 BbL = 1,729 kl

부탄가스 1t = 12.28 BbL = 1,968 kl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300100 | 젯 트 유 | kl | 연소 속도와 지속성이 크다. 연소중 탄소를 퇴적시키지 않으며 잔류탄소가 없다. 다른 기름에 비하여 규격이 엄격함 |
| 5300200 | 휘 발 유 (揮 發 油) | kl | |
| 5300300 | 나 프 타 | kl | 원유를 증류하여 얻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증류할 때에 발생하는 하나의 석유유출물(溜分). 무색 또는 담황색으로 인화, 폭발성이 가장 높다. |
| 5300400 | 등 유 (燈 油) | kl | 점도가 낮고 휘발성은 낮으나 인화점이 높다. 잘 정제되어 색상이 밝고 안정성이 있다. |
| 5300500 | 솔 벤 트 | kl | 일명 백정 |
| 5300600 | 경 유 (輕 油) | kl | 등유 다음으로 유출되며 엔진에 필요한 충분한 착화성과 적당한 점도를 가진 담황색 또는 담갈색의 기름 |
| 5300700 | 중 유 (重 油) | kl | 휘발유, 등유, 경유에 비하여 점도가 높고 침전물과 유황분이 많은 흑색의 기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민수용 (Jet. A1), 군수용 (JP4) 및 항공기용 가솔린을 조사 | 원유 | 젯트기관 및 항공터빈 연료 |
| ○ 직류, 개질, 분해등 가솔린을 조사 | 원유 | 자동차연료 |
| | 원유 | 석유 및 비료화학의 원료 |
| ○ 백등유, 다등유 조사 | 원유 | 가정용, 동력용연료 |
| ※ 복합솔벤트(신너)는 5210500 으로 조사 | 나프타 | 신너, 세정, 의약품의 원료 |
| ○ 경질, 중질의 경유를 조사 | 원유 | 대형차량, 기관차, 건설 기계 등의 고속디젤엔진 및 보일러 등의 연료 |
| ○ 방카A, B유 포함 | 원유 | 저속디젤엔진, 발전, 가스터빈 등의 연료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300800 | 방 카 C 유 | kl | 중유의 하나로 방카A, B유보다 침전물, 유황분이 더 많은 흑색의 저질 기름 |
| 5300900 | L P G | kl | 일명 석유액화가스 |
| 5300910 | 프 로 판 가 스 | kl | 탄화수소의 하나인 프로판(C ₃ H ₈)을 주성분으로한 석유계 가스 |
| 5300920 | 부 탄 가 스 | kl | 부탄(C ₄ H ₁₀)을 주성분으로한 석유계 가스 |
| 5301000 | 석 유 아 스 팔 트 | kl | 일명 석유역청(피치). 흑갈색 및 흑색을 띤 점착성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의 역청물 |
| 5301100 | 윤 활 기 유 (潤滑其油) | kl | 정유공정의 감압증유공정에서 나오는 殘渣油의 하나(Mineral 오일:광유) |
| 5301209 | 조 경 유 | kl | 코크스 제조시 발생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정제한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원유 | ※ 용도(국내 연간) 발전 : 45%, 산업 : 35%, 난방 : 20% |
| × 도시가스, 천연가스(LNG)는 제외 | 원유 | |
| ※ 1 t = 10.88 BbL = 1,729 kl | | 취사용 |
| ※ 1 t = 12.28 BbL = 1,968 kl | | 내연기관용 |
| <p>○ 스테이트(도로포장설), 블로운(슬라브지붕, 외벽, 지하실등의 방수 및 방습용)등의 아스팔트를 조사</p> <p>× 역청질혼합물(아스팔트에 골재를 섞은것)은 5400300 아스콘에서 조사</p> | 원유 | 도로포장용아스팔트제품, 배관피복, 건축물, 포장지의 방수 및 방습용 |
| × 윤활유는 5400200에서 조사 | 원유 | 윤활유의 원료 |
| | 코크스오븐가스 | 석탄계의 벤젠, 톨루엔, 키실렌 원료 |

소분류 : 354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400100 | 연 탄 (煉 炭) | M / T | |
| 5400200 | 윤 활 유 | ℓ | 윤활기유에 적당한 광물유를 첨가 배합한 윤활재 |
| 5400300 | 아 스 콘 | M / T | 일명 역청질혼합물 또는 가열혼합 가열포설 염층포장용 혼합물이라함 아스팔트에 골재를 혼합한 것 |
| 5400400 | 석 탄 코 크 스 | M / T | 유연탄(일명 粘結炭)을 가열하여 휘발분을 제거한 多孔質의 고체연료 |
| 5400500 | 콜 타 르 | M / T | 일명 광물타르. 유연탄을 가열 코크스를 만들때 그 건류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끈기가 있는 흑색 또는 갈색의 액체(상온에서 고체) |
| 5400600 | 콜 탈 핏 치 | M / T | 콜탈의 증류 잔유물(석탄액화와 잔유물). 즉 코크스 생산 과정에서 부생되는 콜탈을 계속 증류시켜 남은 찌꺼기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무연탄 향토석회석 | |
| ○ 윤활기유는 5301100에서 조사 | 윤활기유 | 기계가 맞는 부분의 마컵제거용 |
| | 아스팔트 골재 | 도로포장 |
| × 석유코크스 제외 | 유연탄 | 연료, 제철, 주물카바 이드 제조에 사용 |
| | 유연탄 | 카본블랙, 염료, 석탄계 벤젠등의 원료, 콜탈 핏치 |
| | 콜탈 | 알루미늄제련, 전주봉 제조, 코크스집결용등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400709 | 절삭유 (切削油) | ℓ | 철이나 스틸등의 재질을 자를 때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윤활제 |
| 5400809 | 아스팔트루핑 | M/T | 루핑(Roofing)원지에 아스팔트를 칩투 또는 피복한 것 |

소분류 : 355 . 고무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510100 | 자동차타이어 | 천 본 | |
| 5510200 | 모터사이클타이어 | 천 본 | |
| 5510300 | 자전거타이어 | 천 본 | |
| 5510400 | 자동차튜브 | 천 본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윤활기유, 에밀존, 솔 러블 | |
| ○ 아스팔트펠트(Felt) 포함 | 루핑원지, 아스팔트 | 건축재료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승용차, 버스, 트럭등의 소형 및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의 타이어를 조사 | 생고무, 합성고무, 타이어코드 사, 카본블 랙 | |
| ○ 각종 소·중·대형 모터사이클용 타 이어를 조사 | | |
| × 어린이용 삼발자전거, 리어카용 타이 어 제외 | | |
| ○ 자동차타이어에 준함: | 생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510500 | 모터싸이클튜브 | 천 본 | |
| 5510600 | 자 전 거 튜브 | 천 본 | |
| 5510700 | 재 생 타 이 어 | 본 | 드래드가 낡고 닳아없어져 디자인이 없어진 경우 표면의 고무만을 갈아 붙여서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만든 타이어 |
| 5590100 | 고 무 장 화 및 우 화 | 천켄레 | 발목, 무릎, 허벅다리까지 올라오는 고무제품의 신발 |
| 5590200 | 운 동 화 (運 動 靴) | 백만원 | 표피등 모든 재질이 직물, 나이론, 합성피혁, 순가죽등에 관계없이 만든 경기 및 일반보행용 신발 |
| 5590300 | 운 동 화 부 품 | 백만원 | |
| 5590400 | 고 무 호 스 | km | |
| 5590500 | 고 무 벨 트 | 천PLY | 면사 및 합성섬유 직물에 고무를 발라 성형하였거나 양면에 손상을 막기 위하여 커버고무를 씌운 것으로 이음매 없는 환상벨트 |
| 5590600 | 고 무 스폰 지 | m | 氣泡 - 있는 쿠션용 · 고무제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모터싸이클용 타이어에 준함 | | |
| ○ 자전거용 타이어에 준함 | | |
| ○ 자동차용 타이어에 준함 | | |
| ○ 우기, 수렵, 취사, 작업, 공업용 등 및 방한화를 조사 | 생고무, 합성고무, 면직물 | |
| ○ 전문경기용인 축구화, 야구화, 럭비 축구화 등 포함 | | |
| × 신사화, 등산화, 랜드로바등 가죽제 신발은 324에서 조사 | | |
| ○ 운동화의 갑피, 바닥창, 중창만을 조사 | 합성고무 | |
| ○ 충고무, 편상식, 布捲式등의 고무호스 를 조사 | 생고무, 재 생고무, 아 연화, 카본 블랙면직물, 합성섬유사 | 소방, 양수, 일반송수, 함마착압기, 압축공기 통과, 오일용 등 |
| ○ 平, V형, 톱니바퀴형 등 각종의 벨트를 조사 | 고무호스 참조 | 동력전달 및 운반용 |
| × 플라스틱물질을 원료로한 스폰지는 365 플라스틱스폰지로 조사 | 생고무, 합성고무, 아연화 | 주로 운동화 속창에 사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590709 | 산업용고무제품 | 백만원 | |
| 5590809 | 피 임 용 기 구 | 천다스 | |
| 5590909 | 고 무 장 갑 | 천컬레 | |

소분류 : 356 .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600100 | 플 라 스틱 필 림 | M / T | 각종 수지를 투입하여 만든 1차 제 품의 필름(원단) |
| 5600200 | 플 라 스틱 레 저 | M / T | 천이나 종이등에 주로 염화비닐수지를 바른 것 |
| 5600300 | 플 라 스틱 장 관 및 벽 지 | M / T | |
| 5600400 | 플 라 스틱 관 및 봉 | M / T | 각종 용도의 관(파이프) 및 봉 |
| 5600500 | 스 치 로 폴 | M / T | |
| 5600600 | 플 라 스틱 스폰 지 | M / T | 산업용 발포성형 제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12개를 1다스로 환산 조사 | | |
| ○ 가정용, 산업용 조사 |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필름(원단) 및 시트 조사 × 필름(원단)을 구입 재단 절단하여 만든 각종의 제품(봉투등 포장재)은 제외 | 합성수지 | 농업용 및 식품, 각종 물품등의 포장재 |
| | 염화비닐 | |
| ○ 일반 및 특수장판(거실 이외의 실내바닥에 펴는 것)과 순수 플라스틱 벽지를 조사 | 합성수지 | |
| ○ 배수, 배전, 이음등의 관 및 봉과 프로파일을 포함 | PVC 수지 | |
| ○ 건축용(평판)과 각종 물품 충격방지용 스티로폴을 조사 | 발포폴리 스티렌 | 건축, 전기전지기기 및 각종 물품 충격 방지용 |
| ○ 연질로된 스폰지류와 경질의 | PPG, TDI, | 자동차 외자, 보통의자,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600700 | F R P 제 품 | M / T | 강화플라스틱(내구성, 특수보강제를 첨가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등)중 FRP로만 만든 제품 |
| 5600800 | 전기전자기기용 케이스 | M / T | 산업용의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 케이스와 가정용의 전기 전자기기용 제품의 플라스틱케이스 |
| 5600900 | 플라스틱자동차부품 | M / T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의 부품 |
| 5601000 | 플라스틱주방용품 | M / T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 및 주방용 등의 각종 제품 |
| 5601100 | 플라스틱포장용기 | M / T | 플라스틱으로 만든 중·소·대형용기류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발포제품(주로 단열재)조사 | MDI | 침구류, 의복등의 쿠션 과 건축물의 단열재 |
| ○ 창틀, 욕조, 정화조, 의자, 물탱크, 화 학약품탱크, 헬멧조사 | 불포화 폴 리에스터수 지(FRP)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기기, 복사 기, TV, VTR, 냉장고, 전화기, 선풍 기, 세탁기, 오디오, 밥통, 녹음테이프 의 케이스만 조사 | 합성수지 | |
| ○ 식기 및 소형의 용기(밥·찬그릇, 대접, 접시등 식기류와 물통등의 소 형용기)와 칼, 수저, 포크, 주걱, 양 념통 등의 주방용품만 조사 ----- × 세면기, 목욕통, 비누갑, 쓰레기통등의 위생용기는 제외 | 합성수지 | |
| ○ 컨테이너박스(주류, 음료등 병박스), 고기상자, 육묘상자, 막걸리병, 화장품 용기, 세제용품용기, 물통 및 합지박 (일명 고무대야), 각종의 식품용기 | 합성수지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5601200 | 플 라 스틱 신 발 | M / T | 합성수지를 압축, 압출하여 만든 신발 |
| 5601300 | 플 라 스틱 포 대 | M / T | 합성수지를 압단 또는 접합하여 만든 포대 및 백 |
| 5601400 | 라 미 네 이 팅 | km | 합성수지 필름 및 지류에 인쇄를 해서 Sealant 성질이 있는 필름을 접착한 것 또는 합성수지를 코팅한 것 |
| 5601509 | 플 라 스틱 창 문 | M / T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합성수지만을 투입하여 만든 신발류 (주로 슬리퍼) | 합성수지 | |
| ○ 비료포대, 화공약품포대등 조사 ----- × 합성수지를 사출하여 편직기로 짠 것은 2140100 직물포대로 조사 | | |
| × 라미네이팅한 것을 구입 또는 주문 생산한 것을 받아 봉투만을 제작하 는 것과 인쇄만 하는 것은 제외 | 나이론 필름, OPP 필름, PET 필름, 복합필름, 지류 | |
| <p>※ 용도 : 진공, 냉동포장 및 기타 포장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론 필름 : 햄류, 조림류, 오징어등 진공포장 ○ OPP // : 라면류, 제과류등 ○ PET // : 농약, 보향성제품포장(커피등 향내가 나는 식품)등 ○ 복합 // : 스넥류 | | |
| | | |

중분류 3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분류 361 . 도기, 자기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 1) 도자식기, 위생도기제품은 도기로 된 제품만 조사한다. 즉 플라스틱이나 화이버토기(오지그릇) 등 유사제품은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 2) 도자기는 진흙의 종류와 구울때의 온도에 따라 질그릇, 돌그릇, 사기그릇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토기제품은 6100509 에만 조사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100100 | 가정용도자식기 (家庭用陶器食器) | 천 개 | 사기로된 식기류 |
| 6100200 | 위생용도기제품 (衛生用陶器製品) | 개 | 도자기류로서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위생처리기구 |
| 6100300 | 애 자 (磚 子) | M / T | 송배전용 지지물인 전주에 전력선을 연결하는데 쓰이는 도기제품 |
| 6100400 | 도 기 장 식 품 (陶器裝飾品) | 천 개 | 수종의 광석을 분해 혼합하여 형체를 이루어 구어낸 장식용 제품 |

3) 위생용 도기제품(화장실의 싱크)와 금속제싱크와는 특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도기장식품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 조사한다.

즉, 인간문화재의 골동품은 조사하지 않는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기, 자기로 된것 ○ 부엌 및 식탁용식기, 대접 | 백토, 규사, 고령토, 장석, 납석, 규석, 석고 | 주방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기, 대변기, 욕조, 세면기, 기타 위생도기제품 ○ 플라스틱 욕조는 5600700에서 조사 | 백토, 점토, 장석, 고령토, 납석, 석고, 규사 및 규석 | 위생용 용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애자, 현숙애자, 고압애자, 저압애자, 특고압애자, 기타도기절연체 ○ 애자류와 애관자기로된 전기절연제품 모두 조사 | 토석, 점토, 장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기형, 술병형, 인물형, 꽃병형, 동물형 및 도기완구 모두 포함 ○ 골동품은 제외 | 점토, 백토, 규사, 장석, 백운석, 고령토, 규석, 아연화 및 산화티타늄 | 실내 및 실외장식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100509 | 토 기 제 품 (土 器 製 品) | M / T | 각종 토기제품의 용기 |
| 6100609 | 싱 크 | 개 | 도자기류로써 건물에 반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기구 |

소분류 362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판유리, 안전유리는 2mm로 환산 조사한다.

예 : 규격 : 3mm 판유리를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규격 2mm로 환산하므로 $3/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300 C/S로 기입하고 포장(상자=C/S)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환산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200100 | 유 리 관 (琉 璃 管) | M / T | 유리로 된 관 형광전구 켈유리 실험실 용기구 일명 관유리 |
| 6200200 | 판 유 리 (板 琉 璃) | C / S | 판상(板狀)유리 $1C/S = 9.29 m^2$ |
| 6200300 | 거 울 판 유 리 | kg | 판유리를 구입 진공상태의 제조를 거 쳐 거울판유리를 만듦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일명 항아리, 뚜껑용 용기, 토기 화분 오지물을 입힌것도 포함 | 점토, 백토 | 김치독, 간장독, 뚜껑용기, 화분토기 |
| ○ 화장실의 세면기보다 대체로 큰것 | 백토, 점토 장석 | 위생처리장치 |

즉, $1C/S = 100 \text{ 평} = 100 S/F = 9.29 \text{ m}^2$ 환산한다.

2) 브라운관용 유리 (6200500)는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사 요령은 (앞면+뒷면) ÷ 2 조사한다.

3) 식품 및 음료병 유리병, 약 및 화장품용 유리병, 유리식기 및 유리 주방용품은 M/T으로 조사한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일명 관유리 | 규사, 규석, 소다회 파 유리 | 형광전구유리, 실험실 기구 |
| ○ 이형관유리, 보통관유리, 무늬관유리, 망유리, 플로트유리 | 규사, 소다 회, 백운석, 파유리, 망 초, 규사, 석회석, 장 석 | 건물용, 창유리, 형유리 |
| ○ 각종 거울관유리 모두 조사 | 관유리 | 거울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200400 | 안 전 유 리 (安 全 琉 璃) | C / S | 유리에 특수가공하여 압력, 충격, 온도 변화에 대한 강도를 높인 유리 |
| 6200500 | 브라운관용유리 | 천 개 | 내전압성, X선차폐성, 방사선 비색색상이 뛰어나게 만든 TV브라운관 쉘유리 |
| 6200510 | 흑백브라운관용유리 | 천 개 | |
| 6200520 | 칼라브라운관용유리 | 천 개 | |
| 6200600 | 식품및음료용유리병 | M / T | 각종 식품 및 음료수병 |
| 6200700 | 약및화장품용유리병 | M / T | 의약품, 위생 및 화공약품을 넣는데 쓰이는 용기 |
| 6200800 | 유리식기및유리주방용품 | M / T | 가정용 유리주방용품 |
| 6200900 | 유 리 설 유 | M / T | 유리와 섬유의 합성체로서 내열성, 단열성, 내약품성 절연성이 강하다. |
| 6201009 | 장식용유리제품 | 천 원 | 유리가공 장식제품 유리를 깎아 가공하고 색상을 입혀 만든 모조장식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유리, 적층유리, 적층단열유리 ※ 복층유리 제외 | 판유리 | 차량유리, 건물용 도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상기용, CRT용 전자오락기구 | 파유리, 규사, 규석, 소사회 | TV용, CRT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병(소주, 맥주)음료수(사이다, 콜라)우유, 베지말병 및 각종 음료병 | 규사, 규석, 소다회, 파유리 | 유리용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카스, 까스명수, 구론산병 각종 약병 및 화공약품병 | 규석, 소다회, 석회석, 초석, 파유리, 형석 | 유리용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식기, 유리컵, 유리술잔 포함 조사 | 규석, 소다회, 장석, 망초, 파유리, 석회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섬유사 포함조사 | 납석, 석회석, 붕광석, 파유리, 암모니아 | 건축용 내장재, 보강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형, 유리크리스탈 인물형, 꽃모양형, 조명에 장식으로 부착되는 것 | 유리 | 장식제품 |

소분류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은 형태에 관계없이 조사한다.
2. 콘크리트 전주나 콘크리트 파일은 그 규격이 매우 다양하지만, K.S 규격대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K.S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3. 흙관은 콘크리트관이나 석면 시멘트관과는 제조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포함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제품은 성형시켜 양생에 들어간 시점, 판상 제품(석면 스투트)은 부서지기 쉬우므로 검사를 끝낸 시점을 생산시점으로 본다.
5. 석면 스투트는 다음과 같이 환산 조사한다.(두께는 환산하지 않음)

| 구 분 | 두께 | 가로 | 세로 | 환산 (㎡) |
|----------|--------|--------|----------|--------|
| ① 소골 스투트 | | | | |
| 6 자 | 6.3 mm | 720 mm | 1,820 mm | 1.3104 |
| 7 자 | 6.3 mm | 720 mm | 2,120 mm | 1.5264 |
| 8 자 | 6.3 mm | 720 mm | 2,420 mm | 1.7424 |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910100 | 소성벽돌 (燒成벽돌) | 천 개 | 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소성한 벽돌 |
| 6910200 | 타일 (Tile) | 일 천 ㎡ | 건축물 내외장 및 치장용으로 쓰이는 도기류의 판재 |

| 구 분 | 두께 | 가로 | 세로 | 환산 (㎡) |
|----------|--------|----------|----------|--------|
| ② 대골 스투트 | | | | |
| 6 자 | 6.3 mm | 960 mm | 1,820 mm | 1.7472 |
| 7 자 | 6.3 mm | 960 mm | 2,120 mm | 2.0352 |
| 8 자 | 6.3 mm | 960 mm | 2,420 mm | 2.3232 |
| ③ 기와 스투트 | 6 mm | 570 mm | 1,050 mm | 0.5985 |
| ④ 평 스투트 | 4.5 mm | 910 mm | 1,820 mm | 1.6562 |
| | 6 mm | 910 mm | 1,820 mm | 1.6562 |
| | 6 mm | 1,200 mm | 2,420 mm | 2.904 |

6. 벽들에는 소성, 내화, 콘크리트벽들이 있으므로 조사시 원재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용 석고판제품(석고보드)와 산업용 석면제품과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므로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조 사 범 위 | 원 재료 | 용 도 |
|-----------------------------------|--------|-----------|
| ○ 보통벽돌, 오지벽돌 | 점 토 | 건축용자재 |
| ○ 외장타일, 내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모두 포함 | 장석, 백토 | 건축용 내·외장재 |
| ○ 판석, 인조판석, 프라스틱 혼합제품은 제외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920100 | 시 멘 트 (포 오 틀 랜 드) | 천M/T | 시멘트 크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 해 분쇄하여 제조함 적당량의 물과 혼합하여 조형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는 콘크리트제품의 원 재료 |
| 6920200 | 시 멘 트 크 링 커 | 천M/T | 석회석과 점토를 분쇄 건조시켜 적당한 비율 4:1로 혼합하여 이를 다시 적당 한 크기로 응고제조된 덩어리 |
| 6920300 | 프 라 스 터 (석 고) (石 膏) (Gypsum) | M/T | ○ 석회질 광물(각종 비료의 부산물) 150℃ 이상 가열하면 가루가 됨 ○ 천연석고와 타공업에서 부산물로 얻 어지는 화학석고 |
| 6920409 | 생 석 회 | M/T | 석회석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구운 백색 건조하며 알칼리성을 가진 광물 제품 |
| 6930100 | 석 면 스 레 트 | 천㎡ | 불연재로서 내열성이 우수하며 물이나 습기에 견디는 내수성이 강한 석면판 |
| 6930200 | 건축자재석고판제품 (석 고 보 드) | M/T | 불연, 단열내장용 건축자재(석고보드) |
| 6930300 | 레 미 콘 | 천㎡ | 시멘트, 물, 골재의 혼합된 굳지 않는 상태 콘크리트 반죽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5종 포오틀랜드 시멘트 벌크, 백색, 고로 시멘트, 내화 시멘트는 6940200에서 조사 | 시멘트크링커 철 광 석 철 압 석 고 | |
| | 석회석, 점토 | 각종 시멘트 원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화학비료에서 부산물을 제거한 순수한 분말상태의 석고 | 비료의 부산물 | 시멘트원료 |
| 소석회는 포함하지 말 것. | 석 회 석 백 운 석 | 제강용, 비료, 농약용 토양개량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형, 합판형, 기와형 | 시멘트, 석 면 유리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고보드, 아스칼, 아미텍스, 아스텍스, 석고텍스,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모두 포함 | 규산질석고 석회질석고 석면 | 건축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 규격품 모두 포함 | 시 멘 트 골 재 | 토목, 건축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930400 | 콘 크 리 트 벽 돌 | 천 매 | 블록과의 차이는 그 크기에 있다. KS 규격 길이 190 ~ 210 mm 높이 90 ~ 100 mm 두께 100 ~ 210 mm |
| 6930500 | 콘 크 리 트 블 록 | 천 매 | 시멘트, 골재, 물을 혼합하여 성형 양생한 것 KS 규격 길이 390 mm 높이 190 mm 두께 100 ~ 210 mm |
| 6930600 | 흙 관 | 본 | 일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소정의 틀에 조립된 철선을 넣고 회전하면서 혼합된 콘크리트를 넣어 성형한 다음 최고 65℃ 양생한 것 |
| 6930700 | 콘 크 리 트 전 주 | 본 |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철선과 철근을 내장하여 강도를 높여 굳힌 전주 |
| 6930800 | 콘 크 리 트 파 일 | 본 | 높은 압축 및 인장강도를 필요로 하는 말뚝으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형하고 60℃로 양생한다. |
| 6930909 | 콘 크 리 트 문 틀 | 개 | 콘크리트 창틀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시 멘 트 골 재 | 건축, 토목용 자재 |
| ○ 보도블록 제외 | 시 멘 트 골 재 | 건축자재, 토목용자재 |
| ○ 2.5 m 를 1 분으로 조사하며 반드시 열처리하여 양생하고 원심력에 의해 제조된 것만 조사 ○ 콘크리트관, 석면스레트관, 도관, 토관 등은 제외 | 시멘트, 골재, 철선 | 상하수도관 농수로용 관으로 사용 |
| ○ KS 규격대로 조사 | 시멘트, 철 근 목 재 | |
| ○ 토목, 건축용으로 쓰이는 제품만 조사 | 시멘트, 골 재, 봉강, 철선 | 토목, 건축물 기초공사 |
| ○ 콘크리트 제품만 조사 | 시 멘 트 모 래 | 건물용 창틀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6940100 | 내 화 용 벽 돌 (耐火用벽돌) | M/T | 요업, 보일러용, 용광로용 내화물 |
| 6940200 | 부 정 형 내 화 물 (不定型耐火物) | M/T | 형태가 없는 내화물 |
| 6990100 | 석 면 제 품 (石綿製品) | kg | 산업기계용(공업용)석면제품과 압면광석을 부수어서 열을 가해 섬유질을 생산함. 기계용 석면제품은 프레스나 압출기로 성형제품을 생산할 때 열방지효과로 쓰임 |
| 6990200 | 연 마 지 및 포 (研磨紙 및 布) | m ² | 크라프트지 또는 천에 금강사를 접착한 것(일명 뼈빠) |
| 6990300 | 장식및기념석제품 (裝飾및記念石製品) | 천 원 | 비석이나 석장식제 |
| 6990400 | 건자재용석물제품 (建資材用石物製品) | 천 원 | 건축 및 토목자재용 |
| 6990500 | 활 석 분 (滑石粉) | M/T | 활석을 분쇄한 가루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석질, 점토질, 고알루미나질의 내화 벽돌 |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점토 고령토, 백운석, 납석, 규사및 규석 | 용광로, 단일내화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 내화시멘트 내화골재 내화점토 | 용광로, 단일내화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적석면, 석면혼합물 ○ 석면이 50 ~ 100 % 이상 함유된 제품 ○ 건축자재석고판제품은 6930200 에서 (석고보드) 조사 | 암면광석 | 산업용, 기계용, 보일러 배관용, 기계부품용, 금속피복용 |
| | 금강사, 크라프트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및 석골동품, 석등 | 대리석, 화강암 | 비석, 석기념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석, 화강석 | 대리석, 화강암 | 건축자재용 |
| | 활 석 | 종이표백과 농약(분말) 제조용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소분류 371. 철 강 산 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철강제품은 그 형태와 두께 및 폭에 따라 품목이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최종제품의 용도, 탄소함유량 물리적 성질 및 비철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물량세분이 많으므로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110100 | 선 철 (銑 鐵) | M / T | 제강의 원료로서 용광로에서 철의 성분만을 뽑아낸 탄소함유량이 1.7% 이상인 철 |
| 7110110 | 제 강 용 선 철 (製 鋼 用 銑 鐵) | | |
| 7110120 | 주 물 용 선 철 (鑄 物 用 銑 鐵) | | |
| 7110200 | 합 금 철 (合 金 鐵) | | 철에 망간, 규소, 크롬, 원소를 20 ~ 80% 정도 함유시킨 철의 합금 |
| 7110210 | 망 간 철 (Ferro Manganese) | M / T | |
| 7110220 | 규 소 철 (Ferro Silicon) | | |
| 7110230 | 규 소 망 간 철 (Silicon Manganese) | | |
| 7110240 | 기 타 합 금 철 (others) | | |
| 7110300 | 강 괴 (鋼 塊) | M / T | 탄소의 함유량이 선철보다 낮으며 제강로에서 만들어지는 용강을 주형에 |

- 2) 철과 강 의 구분은 탄소가 1.7% 이상 함유한 것을 [철] 그 미만의 것을 [강] 이라고 한다.
- 3) 소분류 371 (제 1 차 철강제품)은 재공품 상태의 것과 반제품 (중간 제품) 상태의 것과 출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생산완료된 제품이 아니고 재공품 상태의 것은 재투입 관계는 무시하여야 한다.
- 4) 봉강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괄공정으로 마봉강을 생산할 경우 마봉강을 조사할 것. 이때 원래의 봉강은 조사하지 않는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강용 선철 ○ 주물용 선철 | 철강석, 고 철 | 압연제품 단조물, 주물용, 제강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간, 규소, 크롬을 함유한 철 ○ 크롬철, 몰리브데넘철, 텅스텐철, 기타 합금철 | 철, 망간, 규소, 크롬, 니켈 | 제 강 용 |
| | 선철, 고철 | 압연강재나 단장품 소재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M/T | 주입하여 응고된 피를 말하며 신축성이 적으나 단단하여 압연제품제조에 사용 |
| 7110310 | 압 연 용 강 피 | | |
| 7110320 | 단 조 용 강 피 | | |
| 7110400 | 주 강 (鑄 鋼) | M/T | 제련로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만든것 |
| 7110410 | 보 통 강 주 강 | | |
| 7110420 | 특 수 강 주 강 | | |
| 7110500 | 슬 랩 (Slab) | | 두툼한 강판제품 단면은 장방형으로 모서리가 둥근 일명 후강판 |
| 7110510 | 보 통 강 슬 랩 | | |
| 7110520 | 특 수 강 슬 랩 | | |
| 7110600 | 블 룸 (Bloom) | M/T | 대형강피 대형, 장방형, 단면은 정방형 |
| 7110610 | 보 통 강 블 룸 | | |
| 7110620 | 특 수 강 블 룸 | | |
| 7110700 | 빌 렛 (Billet) | M/T | 블룸을 소형으로 잘라 놓은 것으로 굵은 장작형, 철봉형 |
| 7110710 | 보 통 강 빌 렛 | | |
| 7110720 | 특 수 강 빌 렛 | | |
| 7120100 | 봉 강 (棒 鋼) | M/T | 강피나 강반성품을 봉괴형태로 조강한 것 봉강을 가공하여 마봉강을 생산할 경우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압연용강괴, 고탄소강강괴 ○ 보통단조용강괴, 특수강강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강 주강 ○ 고탄소강 주강, 합금강주강 | 고철, 선철 |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제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께 50 ~ 90 mm 폭 350 ~ 500 mm 길이 1 ~ 5 m | 평강, 강괴 | 후판, 열연대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 130 mm 이상 ○ 단면 16.90 mm² | 각형, 강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 130 mm 이하 ○ 단면 16.90 mm² | | 소형조강, 선재 |
| | 강괴, 빌렛 | 기계부품 소재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M/T | 마봉강만을 조사할것 이때 원래의봉강은 조사하지 않는다. |
| 7120110 | 보 통 강 봉 강 | | |
| 7120120 | 특 수 강 봉 강 | | |
| 7120200 | 철 근 (鐵 筋) | | 건축용 자재로 쓰이는 봉강의 일종 |
| 7120210 | 이 형 철 근 | M/T | |
| 7120220 | 원 형 철 근 | | |
| 7120300 | 형 강 (形 鋼) | | 강반성품을 압연하여 그 모양을 용도에 따라 길게 늘린것 |
| 7120310 | 보 통 강 형 강 | M/T | |
| 7120320 | 특 수 강 형 강 | | |
| 7120400 | 중 후 판 (中 厚 板) | | 두께 3mm 이상의 열간압연으로 만들어지는 강판 |
| 7120410 | 후 판 (厚 板) | M/T | |
| 7120420 | 중 판 (中 板) | | |
| 7120500 | 열 연 박 판 (熱 延 薄 板) | M/T | 두께 3mm 미만의 열간압연으로 만들어지는 얇게 늘려서 절단한 강판 |
| 7120600 | 열 연 대 강 (熱 延 帶 鋼) | | 열간압연으로 코일상태로 감긴것 두께 1.2mm~22.0mm 이상 |
| 7120610 | 열 연 광 폭 대 강 (熱 延 廣 幅 帶 鋼) | M/T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봉강, 중형봉강, 소형봉강 ○ 고탄소강, 합금봉강 | 고 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강과 혼돈하기 쉬우나 원재료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형 철근, 원형철근만 조사 | 강괴, 강반성품, 고철 | 건축, 토목용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중형, 소형, 보통강형강 및 강 시판포함, T형, H형등 각형 포함 ○ 고탄소강, 합금강, 형강 및 강시판 포함 | 강괴, 강반성품, 대강 | 토목자재, 건축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판, 보통강, 고탄소강, 합금강 6 mm 이상의 후판 150 mm 이상의 극후판 포함 ○ 3 ~ 6 mm 중판 | 강반성품 | 일반구조용 조선용 프레임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강 열연박판 ○ 고탄소강 열연박판 ○ 합금강 열연박판 | 열연대강 강반성품 | 각종 판제품제조 강관제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강 열연광폭대강 ○ 고탄소강 // ○ 합금강 // | 강반성품 | 각종 판제품제조 강관제조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120820 | 열 연 협 폭 대 강 (熱延狹幅帶鋼) | M/T | |
| 7120700 | 궤 조 (軌 條) | M/T | 철도 및 광산레일 |
| 7120710 | 중 궤 조 (重 軌 條) | | |
| 7120720 | 경 궤 조 (輕 軌 條) | | |
| 7120800 | 냉 연 박 판 (冷延薄板) | M/T | 두께 3 mm 미만의 열간대강을 소재로 냉간압연하여 절단한 강판 표면이 균일하고 광택을 내는 강판 |
| 7120900 | 특수강냉연강판 (特殊鋼冷延鋼板) | M/T | 니켈 (Ni) 8 ~ 16 % 크롬 (Cr) 11 ~ 20 % 를 함유한 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진 강판 |
| 7120910 | 스텐레스강판 | | |
| 7120920 | 냉연전기강판 (冷延電氣鋼板) | | 규소 1 ~ 5 %를 함유하는 합금강판으로 서 전기적 성질이 뛰어난 제품 |
| 7121000 | 냉연대강 (冷延帶鋼) | M/T | 냉간압연하여 코일상태로 감긴 상태의 강판 |
| 7121010 | 냉연광폭대강 | | |
| 7121020 | 냉연협폭대강 | | |
| 7121100 | 강 관 (鋼 管) | M/T | 대강을 말아서 용접하여 만들거나 빌 렛등 강편소재를 가열 압출하여 만든 강관 |
| 7121110 | 무계목강관 | | |
| 7121120 | 전기용접강관 | | |
| 7121130 | 아크용접강관 | | |
| 7121200 | 선 재 (線 材) | M/T | 철선의 2차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늘 게 하여 코일과 같이 말아 놓는것 |
| 7121210 | 보통강선재 | | |
| 7121220 | 합금강선재 |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보통강 열연협폭대강, 합금강협폭대강, 고탄소강열연협폭대강 | | |
| ○ 철도레일 ○ 광산레일, 엘리베이터레일 | 강괴, 강반성품 | 철도레일 광산 및 엘리베이터 |
| ○ 냉연박판 - 보통강 // - 고탄소강 // - 합금강 | 열연대강 |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부품 |
| ○ 크롬, 니켈외에 몰리브덴 합금의 스텐레스 강판도 포함 | 크롬, 니켈 강반성품 | 공장설비부품 및 건축물 벽면, 도구, 식기제조 |
| ○ 두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 강반성품, 강괴 |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제조에 사용 |
| ○ 냉연광폭대강 ○ 냉연협폭대강 | 열연대강 강반성품 | 전자제품, 자동차 및 기계부품 |
| ○ 강관을 구입해서 피복을 입힌 사업체는 조사에서 제외 | 강괴, 대강 강반성품 | 배관용, 보일러용, 토목배관용 |
| ○ 보통선재, 연강선재, 경강선선재 | 강반성품 강 괴 | 철선, 용접봉, 와이어로프, 못, 볼트, 너트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121300 | 철 강 선 (鐵鋼線) | M/T | 선재를 강도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실선 가공한것 |
| 7121310 | 흑 철 선 | | |
| 7121320 | 아 연 도 철 선 (亞鉛鍍鐵線) | | |
| 7121330 | 경 강 선 (硬鋼線) | | |
| 7121340 | P. C 강 선 | | |
| 7121350 | 피 아 노 선 | | |
| 7121360 | 스 텐 레 스 선 | | |
| 7130100 | 주 철 관 (鑄鐵管) | M/T | 주물용 선철, 고철을 주형에 주입하여 만든 관 |
| 7130110 | 직 관 | | |
| 7130120 | 이 형 관 | | |
| 7130200 | 회 주 물 (回鑄物) | M/T | 특정한 규격이 없이 쇠물을 녹여부어 일정한 형태로 서서히 냉각하여 만든 주물로 깨지기 쉽다. |
| 7130300 | 강 주 물 (鋼鑄物) | M/T | 선철 및 고철을 제련하여 주형에 주입 하여 만든 제품 |
| 7130400 | 가 단 주 물 (可鍛鑄物) | M/T | 일반주물을 60시간이상 가열한후 일정한 주형에 주입하여 급냉시켜 만든 주물 임. 표면이 흰색이다. |
| 7190100 | 단 조 물 (鍛造物) | M/T | 단련된 강으로서 압연강재나 주강으로 는 그 형상과 강도에서 부적당하기 때 문에 프레스나 햄머로 인장강도를 높인 강제품 |
| 7190110 | 보 통 강 단 조 물 | | |
| 7190120 | 특 수 강 단 조 물 |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철선, 소둔선 ○ 아연도철선, 울타리철선 ○ 경강선, CHQ선 ○ P.C 강선 ○ 피아노선 ○ 스텐레스선 | 선 재 | 와이어로프, 선스프링 양산살대, 못, 볼트, 너트, 용접봉, 철망, 철조망 |
| | 주물용 선철, 고철 | 상수도, 하수도용 배수관 |
| ○ 구상흑연주물 제외 | 고철, 선철 | 기계부분품 |
| ○ 강주물, 합금강주물 | 강주물, 합금강주물 | 기계부분품 |
| ○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 고철, 선철 | 농업용기계, 열쇠, 철도외륜 |
| ○ 보통강 단조물 ○ 고탄소강 단조물, 합금강단조물 | 강반성품 봉 강 | 원동기, 철도차량, 차축, 기계부품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190200 | 석 도 강 판 (錫 鍍 鋼 板) | M / T | 박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한 철판으로 내식성이 강하다. 일명 양철이라 함 |
| 7190300 | 아 연 도 강 판 (亞 鉛 鍍 鋼 板) | M / T | 박판에 아연을 도금하여 녹이 · 쓰는 것 을 방지하게 만든 강판 일명 합석 |

소분류 372. 비철금속산업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은과 금은 제련하는 업체만 그 대상이 되며, 광업소에서 생산하는 은광석은(0300300)으로 조사, 즉 전기동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은과 금은 (7210600, 7210700)으로 각각 조사한다.

예 : 동광석 1M / T에서 대략 전기동 30%, 금 3g, 은 70g이 생산되고 있다.

2) 「동」제품은 동봉 및 동합금봉, 동관 및 띠, 동관 및 중공봉 등 세가지로 나누어졌으므로 특히 품목의 개념에 유의하여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도금 석도강판 ○ 열지도금 석도강판 ○ 크롬도금강판 제외 | 열연대강, 냉연대강 | 식판용기, 통조림용판, 각종 관제조 및 병마 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연도 강판 - 전기도금 ○ " - 열지도금 ○ " - 착색도금 | 박 판 | 지붕판, 방화벽, 농기구, 국자등 제조 |

- 3) 알루미늄샷시바는 알루미늄괴를 압출하여 만드는 제품으로서 건축용샷시의 원자재가 되므로 건축용샷시와 혼돈하여 조사하면 안된다. 또 알루미늄샷시바를 재투입하여 절단하고 조립하면 건축용샷시가 되는것이므로 알루미늄샷시바를 생산하여 건축용샷시를 만드는 사업체는 건축용샷시를 생산한 만큼 알루미늄샷시바는 재투입량으로 조사해야 한다.
- 4) 나동선의 경우는 나동선 자체로도 출하되며, 케이블선으로도 출하되므로 재투입량과 출하량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5) 텅스텐 분말은 금속텅스텐 분말 (Tungsten Metal Powder ; W - P) 만 조사하고, 탄화텅스텐분말 (Tungsten Carbide Powder ; W - C) 및 기타 텅스텐분말은 조사해서는 안된다.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210100 | 전 기 동 (電氣銅) | M/T | 전기로 정련한 적색에 가까운 구리빛의 동괴 전성과 연성이 대단히 풍부하며 전기와 열의 양도체 |
| 7210200 | 알 루 미 늬 괴 | M/T | 제련된 은백색의 유연괴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
| 7210300 | 연 괴 (鉛塊) | M/T | 납덩어리로 전기나 열에 약하며 유연하므로 가공처리에 편리하여 타금속과 가공처리가 용이하고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갖고 있어 내부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다. |
| 7210400 | 아 연 괴 (亞鉛塊) | M/T | 청백색의 금속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습기중에 강한 염기성 있으며 탄산아연의 피막이 생겨 내부를 보호한다. |
| 7210500 | 주 석 괴 (朱錫塊) | M/T | 일명 낫쇠 원자기호(Sn) 은백색의 금속광택을 내며 전성 연성이 풍부함. |
| 7210600 | 은 괴 (銀塊) | kg | 은백색의 귀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함. |
| 7210700 | 금 괴 (金塊) | kg | 전연성과 내산성이 매우 큰 노란색의 귀금속 |
| 7220100 | 알 루 미 늬 합 금 | M/T | 알루미늄에 다른 금속을 혼합하여 내식성과 전기 및 열의 양 전도체로 만들거나 더 단단하게 만든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지금 1종~4종 모두 조사 ○ 동쇼트, 해갑봉(동찌꺼기) 등은 제외 | <p>황동과 휘 동광, 적동 광</p> | 전선, 활판, 합금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알루미늄괴 포함 | 보오크 사 이트 | 알루미늄합금계, 알루미늄판, 봉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Pb) 1종~6종을 모두 조사 | 방연광, 유 산연광, 백 연광 | 축전지, 활자제조 및 합금화학공업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n 1~6종 모두 조사 ○ 재생 아연괴 포함. | 섬아연광, 규아연광 아연정광 | 동합금, 아연도금, 건전 지, 안료, 방부제등의 원료 |
| | | 식기, 도금, 양철원재료, 전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도 99.9% | 황동광, 방연광 | 장식품, 화폐, 도금화학 및 의료용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장식품, 도금, 화폐, 금 박의 치재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물용, 압출용, 재생합금 포함 | 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 |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제조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220200 | 아 연 분 (亞鉛粉) | M/T | 아연가루(1종에서~6종까지 모두 조사), 철물산화방지제 |
| 7230100 | 동봉 및 동합금봉 (銅棒 및 銅合金棒) | M/T | 전기동의 제 2 차제품인 동의 봉과 동합금봉 |
| 7230200 | 나 동 선 (裸銅線) | M/T | 전기동을 압출하여 균일하게 뽑은 구리선 |
| 7230300 | 동 판 및 띠 | M/T | 전기동의 제 2 차제품인 동의판과 띠 |
| 7230400 | 동 관 및 중공봉 (銅管 및 中空棒) | M/T | 전기동의 제 2 차제품인 동의관 |
| 7230500 | 알 루 미 늬 슴 선 | M/T | 알루미늄으로 균일하게 뽑은 알루미늄선 |
| 7230600 | 알 루 미 늬 슴 판 | M/T | 알루미늄 만든 은백색의 유연한 판으로 연성과 전성이 풍부하다. 가볍고 열전도와 전기전도도 크다.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가루 | 아연피 | 철물산화방지용, 방부제, 도금착색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동봉, 동환강, 각강, 육각강, 팔각강, 반원강, 이형강 및 ㄱ, ㄷ, I, T, H형강등 포함. ○ 동합금제품 (황동, 청동, 포금동 : 케사 황동, 단조황동, 네블황동, 고강도황동) 도 포함조사 | 전기동, 동 설 | 건축자재, 기구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중에 피막을 입히지 않는 순수한 구리선만 조사 ○ 신선기를 통하여 뽑은 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조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판 1종, 2종, 동띠를 조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관과 속은 비었으나 양끝이 막혀 있는 증공봉을 포함. | // | 보일러용관, 기계공구 제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로드 (Rod)를 가지고, 신선기를 통하여 가늘게 뽑은 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 알루미늄피 | 전기기부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께에 관계없이 알루미늄판 제품 모두 조사 ○ 특종 1~3종 기타제품을 포함. | 알루미늄피, 알루미늄 고철 | 건축자재부품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7230700 | 알루미늄샷시 바 | M/T | 알루미늄괴를 압출기에 통해 압출하여 만든 기다란 막대 |
| 7230800 | 알 루 미 늄 관 및 중 공 봉 | M/T | 알루미늄샷시의 제 2 차제품인 알루미늄 관 |
| 7230909 | 아 연 판 , 띠 | M/T | 아연의 제 2 차제품인 아연판과 띠 |
| 7231000 | 연 봉 및 연 선 (鉛棒 및 鉛線) | M/T | 납의 2 차제품인 연봉 및 연선, 납의 2 차제품 |
| 7290100 | 텅 스텐 분 말 (텅 스텐 粉末) | M/T | 산화텅스텐을 수소로 환원하여 얻은 고순도 분말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 이형 모두 조사 단, 알루미늄 샷시바를 생산해서 조립된 철제나 알루미늄제의 문틀이나 창틀을 제조할 때는 8130200 건축용 샷시로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괴, 알루미늄고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괴, 알루미늄고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관과 속이 비어있는데 양끝이 막혀 있는 중공봉을 포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종 모두 조사 (Z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아연광, 능아연광, 규아연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자제조 및 전기전자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연광, 유산연광, 백연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땀납, 연선, 전기, 전자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텅스텐 분말만 조사 ○ 탄화 및 기타 텅스텐분말은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망강, 중석, 회중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텅스텐 금속제품원료 (Rod, Wire, Sheet 전기용접, 중합금, 전극) 텅스텐 카바이드원료 |

중분류 38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제품의 유형이나 원재료에 따른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많아 각각의 품목에 따라 조사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금속제 식탁용품 (8110100)은 수저, 포크, 국자, 주걱, 식탁용나이프만 조사하고 알루미늄제 가정용품 (8140100)이나 스텐레스제 가정용품 (8140200)은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류, 쟁반, 후라이팬, 대야, 요강, 비전기식 커피포트는 각각 알루미늄제인지 스텐레스제인지를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많은 품목에 포괄범위가 확대 조정되고 세분되었기 때문에 조사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월별로 제품이 달라지는 사업체가 많으므로 기존 조사품목 외에도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면 빠짐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전수조사업체에 한함)

3) 농업용 수공구에서 쟁기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뱃」과 「보습」을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10100 | 금속제 식탁용품 (金屬製食卓用品) | 천개 | 금속제의 식탁 및 주방용품 |

한 쌍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 석유스토브(난로)는 석유곤로와 구분되며, 스토브만 조사하고 곤로는 제외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겸용으로 생산된것(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석유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5) 건축용 샷시중 알루미늄샷시는 알루미늄샷시바를 잘라 조립한 건축부착물(창틀, 문틀)을 말하는 것으로 알루미늄샷시바와 구별 조사하여야 한다.

6) 금속 탱크 및 용기는 특히 단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 생산 14,000 ℓ을 14,000 kl로 조사

7) 금속가스탱크 및 용기는 용기 자체무게(중량톤)로 조사하지 말고 용량의 무게 %로 조사하여야 한다.

8) 공정을 환산

공정을 환산 대상품목은 열교환기(8130400), 육상구조물(8130500), 해상구조물(8130600), 금속탱크 및 용기(8130800), 가스저장탱크 및 운반용기(8130700)로서 제품중 공정이 3개월 이상일 때만 환산 조사한다.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수저, 포크, 국자, 주걱, 식탁용 나이프만 조사 ※ 용기는 알루미늄제 가정용품과 스테인레스제 가정용품에서 조사 | 스텐인레스 판, 석도원 판, 알루미늄 판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10200 | 칼 및 칼 날 | 천개 | |
| 8110300 | 가 위 | 천개 | |
| 8110400 | 손 톱 깎 기 | 천개 | |
| 8110500 | 공 장 용 수 공 구 (工場用手工具) | 천개 | 공장용 및 일반산업용 공구 |
| 8110600 | 농 업 용 수 공 구 | 천개 | 농사·과수·원예용으로 쓰이는 도구 |
| 8110700 | 톱 및 톱 날 | 천개 | |
| 8110800 | 가 방 부 착 용 철 물 (가방附着用鐵物) | Kg | 가방에 부착하는 모든 철물 |
| 8110900 | 자 물 쇠 및 열 쇠 | Kg | 자물쇠 및 열쇠 모두 조사 |
| 8111009 | 건 물 용 철 물 | 백만원 | 각종 건물에 부착된 철물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용칼, 주머니칼, 칼날, 면도날, 면도칼, 안전면도날 ○ 유리칼은 공장용 수공구에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텅스텐강, 스테인레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도, 주방용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사무실, 어린이용 모두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텐레스, 강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톱깎기 모두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어, 천공편치, 파이프절단기, 스패너, 줄칼, 유리칼, 모루, 바이스, 해머, 드릴, 태핑 및 나사공구 기타수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강, 고철, 박판, 주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수공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삽, 곡괭이, 호미, 기타수공구, × 야전삽, 모종(꽃)삽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강, 고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용, 금속용, 석재용, 시계 및 보석가공용, 기타톱, 톱날, 체인톱 ※ 손으로 사용하는 것만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강, 고탄소강, 텅스텐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자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백, 여행용가방, 기타가방등에 사용되는 철물 ※ 가방테두리 심용철사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철, 황동 스텐레스, 알루미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가방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건물문용, 책상, 열쇠 모두 포함. ※ 가방부착자물쇠는 8110800에 포함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놋쇠, 특수강, 주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에 부수적으로 부착된 철물 ※ 비상계단, 보호대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판, 스텐레스강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에 부착되는 철물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20100 | 철 제 캐 비 넬 | 개 | 가정용 및 사무실용 |
| 8120200 | 철 재 책 상 | 개 | 설합이 달리고 틀이 철제인 책상 |
| 8120300 | 철 제 의 자 | 개 | 틀이 철재 및 비철금속으로 된 의자 |
| 8130100 | 철 제 문 (鐵 製 門) | 개 | 철물로 된 문 |
| 8130200 | 샷 시 문 및 창 틀 | M/T | 알루미늄 샷시문이나 창틀문 |
| 8130300 | 산 업 용 보 일 러 | T/H | 목욕탕이나 산업에 쓰이는 보일러 |
| 8130400 | 열 교 환 기 (熱 交 換 器) | 백만원 | 관의 기벽을 통하여 냉온 두유체 사이의 열을 주고 받는 장치로 가열기, 냉각기, 응축기, 증발기등으로 분류된다. 보통은 폐열회수 목적의 장치가 많다. |
| 8130500 | 육 상 금 속 구 조 물 (陸上金屬構造物) | M/T | 주로 형강을 이용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루어진 구조물 |
| 8130600 | 해 상 금 속 구 조 물 (海上金屬構造物) | M/T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화일 캐비넷 포함 | 박판 | |
| ○ 철제책상 모두 조사 ----- × 타자기용 탁상은 제외 | 박판, 강판 | |
| ○ 틀이 금속으로 된 것을 조사 (이발소용 포함) ----- × 의료용 특수의자는 제외 | 박판, 주물, 합판, 각재 | |
| ○ 아파트철문, 철대문, 소방문, 셔터문 포함. ----- × 수문제외 | 철판, 열연 박판 | |
| ○ 사무실 및 주택용 등 | 알루미늄 | 문 |
| ○ 대형온수 보일러, 증기발생 보일러 | 박판, 강판, 주물 | 산업용 |
| ○ 투관식, 이중관식, 코일식, 편식, 플레 이트식, 공냉식, 굽어내기식의 모든 열교환기 조사 ----- × 공기조화기의 부속품인 전열교환기 제외 | 강판, 박판, 중후판 | 폐열회수, 증발, 냉각, 응축등 주로 화학산업 에서 이용 |
| ○ 육상건물구조재, 교량용, 철탑용, 망루 용의 구조재등 포함. | 형강, 강판 | 건축, 일반산업용 |
| ○ 해상의 가스 및 오일분리시설, Jacket Module, Pipeline 등 ----- ※ 시추선은 384에서 조사 | 형강, 강판 | 건축, 일반산업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30700 | 가스저장탱크 및 운 반 용 기 | M/T | 압축 및 액화개스를 저장 및 운반 을 위해 제작된 병상의 밀폐된 용기 와 탱크 |
| 8130800 | 금속탱크및용기 (金屬탱크및容器) | K/ | 금속으로 제작된 구형 기둥형의 운반 및 저장용기 |
| 8130900 | 콘 테 이 너 용 기 | 대 | 화물수송용 운반용기 |
| 8131109 | 구 조 용 품 금 속 판 제 품 | M/T | 사람이나 기계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 및 철봉제품 |
| 8140100 | 알 루 미 늬 음 제 품 가 정 용 품 | M/T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가정용기 |
| 8140200 | 스 텐 레 스 제 품 가 정 용 품 | M/T | 스텐레스로 만든 가정용기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가스(헬륨, 산소,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LPG, LNG 등 저장 또는 운송용 용기 및 탱크류 조사 × 적은 용량의 부탄가스통, 라이타가스통, 파리모기약통 제외 | 박판, 중후판, 용접봉 | 액화가스 저장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 유류, 사료저장, 우유 및 유가공제품의 저장 및 운반용탱크와 플랜트산업(유기화학공장등)설비의 일부, 탱크류등 조사 × 생맥주, 관공서재털이통 제외 | 박판, 중후판, 용접봉 | 저장용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콘테이너도 포함 ※ 20 ft 를 1 대로 환산 조사 | 중후판, 박판 | 화물박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판 및 철봉형 (지하철용, 배수구용, 시설, 기계차단용) | 철판, 철봉 | 보호시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 비전기식 커피포트등 알루미늄제 가정용기 | 알루미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 냄비, 주전자, 도시락, 식기류, 비전기식 커피포트, 스텐레스후라이팬, 대야, 요강등 스텐레스제 가정용기 | 스텐레스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40300 | 병 마 개 | 천개 | 금속제 병마개 |
| 81901000 | 금 속 캔 (식 관 및 잡 관) | 천개 | |
| 8190110 | 통 조 립 용 관 | 천개 | |
| 8190120 | 기 타 잡 관 | 천개 | |
| 8190200 | 드 럽 관 | 개 | |
| 8190300 | 스텐 레 스 제 싱 크 | 대 | 식기류등 주방용품을 세척하도록 제작 된 주방용기 |
| 8190400 | 가 정 용 보 일 러 | 대 | 난방용의 온수를 얻기 위한 보일러 |
| 8190500 | 방 열 기 (放 熱 器) | 매 | 서로 결합하여 증기를 흘리도록 제작 된 난방용 주물제품 |
| 8190600 | 석 유 난 로 | 대 |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로 종류는 ① 대형철제 스토브 ② 유리관이 달린 것 ③ 발열망과 반사판이 달린 것 ④ 발열망만이 달린것 등이 있음. |
| 8190700 | 난 방 용 버 너 및 터 히 | 대 | 연료(액체, 고체, 방카C유, 석유등)를 연소시켜서 열을 내는 기구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각종 금속병마개 포함. | 석도철판, 주석판 | |
| ○ 농산, 축산, 수산, 분유, 설탕, 벡타등 ○ 음식료품 및 통조림을 제외한 기타 금속판 | 석도강판, 주석강판 알루미늄판 | 음료 및 식료품통 |
| ○ 200 ∅ 용기만 조사 | 박판 | 유류저장 |
| ○ 스텐레스제품만 조사 | 스텐레스 | 주방세척용 |
| ○ 유류 및 연탄사용 보일러를 포함. ○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기타보일러 | 박판, 강판 | 가정용, 난방용 |
| ○ 건물용 방열기만 조사 × 건물용이면서도 핀형으로 된것과 차 량용은 제외 | 강철, 고철 | |
| ○ 난로와 콘로겸용 포함. ○ 석유콘로는 8261000 에서 조사 | 박판, 철선 | 난방 |
| | 철판, 황동 판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90800 | 나 사 제 품 (螺 絲 製 品) | M/T | 물체와 물체를 결합하기 위해 봉에 나선을 낸 슛나사(볼트)와 결합되어 조이도록 된 암나사(너트) |
| 8190900 | 철 망 | M/T | 각종 굵기의 철선으로 엮은 망 |
| 8190910 | 망 | M/T | |
| 8190920 | 철 조 망 | M/T | |
| 8191000 | 선 스프링 | M/T | 강선으로 만든 스프링 |
| 8191100 | 와 이 어 로 프 | M/T | 경강선을 여러개 꼬아 가닥을 만들고 다시 심앙을 중심으로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쇠줄 |
| 8191200 | 쇠 못 | M/T | 선재를 제정기에 걸어서 만든 못 |
| 8191300 | 밸 브 | 개 | 배관상에 부착되어 유체의 흐름을 통 제하는 장치 |
| 8191310 | 일 반 용 밸 브 | 개 | |
| 8191320 | 특 수 용 밸 브 | 개 | |
| 8191400 | 금 속 관 이 음 쇠 (金屬管 이음쇠) | M/T | 유체를 흘려보내는 파이프의 연결부분 이음쇠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트 및 너트, 나사못, 리베트, 와셔 및 파스너, 기타 나사제품 모두 조사 | 봉강, 주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티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각종철망 모두 조사 ○ 가시철조망, 링크철조망등 주로 울타리나 건물경계용 쓰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스프링 (차량용은 384 품목) | 강선 | 볼펜, 침대, 의자용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용 와이어로프 포함. 심을 넣지 않고 강선을 단순히 꼬은 것은 제외 | 경강선, 선재 | 선박, 크레인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물못은 제외 | 청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연기관 (엔진, 원동기) 밸브는 제외 ○ 수도꼭지는 포함 조사 ○ 청동, 주철, 주강, 기타 밸브를 모두 포함, ○ 고온고압용 밸브, 자동조절 밸브 | 청동, 주철, 주강, 봉강, 형강, 알루미늄, 스텐레스강 | 상수도 및 가스, 석유, 조선, 화학, 전력산업에 사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보 (45°, 90°형등) T, 유니온, 니뿔, 크로스, 소켓등 포함. | 중후관, 강관, 스텐레스 | 배관, 이음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191500 | 체 인 | M/T | 핀, 로울러, 핀링크플레이트와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체인을 구성, 스프로킷 휠과 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제품 |
| 8191600 | 용 접 봉 (鎔 接 棒) | M/T | 각종 철선에 피복을 입혀 용접효과를 좋게 철선 |

382 . 기계 제조업 (전기제외)

1. 기계제조업은 여타산업에서 사용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업이다.

이를 세분하여 분류하면,

- 1) 38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 2) 3822. 농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 3) 3823.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
- 4) 3824.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제외
- 5) 38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 6) 382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제조업
- 7) 38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제외로 나뉘어진다.

2. 이들 세분된 업종을 간략히 설명하면

- 1) 기관 및 터빈제조업은 각종기계의 동력원인 기관 및 터빈을 제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연계체인, 로울러체인, 사이런트체인, 메트레스체인, 싱크스토퍼체인 등 모두 조사 | 봉강, 특수강, 중후판 | 동력전달 |
| ○ 피복용접봉, 자동용접봉 (CO ₂ 용접봉) 포함. | 철선, 피복재 | 전기용접 |

조하는 제조업이다. 내연기관은 기계제조업에서는 육상용 내연기관중 운수장비용을 제외한 것을 조사한다.

2) 농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경작, 파종, 수확, 방제, 수확, 농산물의 건조등의 농업용기계 및 장비를 생산하는 업종이다.

3) 금속 공작가공 및 목공기계제조업은 다시 세분하면 금속절삭기계, 금속성형기계, 금속처리용기계, 수지식 동력구동공구 제조, 목공기계, 호환용절삭구, 금형 및 관련제품제조업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 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으로 나뉘어진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금속 절삭기계는 공작기계라고도 하는데, 크게 범용기계 (선반, 밀링기, 드릴링기, 연삭기등 일반적인 절삭작업이 가능한 기계)와 범용의 기계이나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된 NC 또는 CNC 공작기계 (NC선반, 머시닝센터등), 요구되는 특정제품의 전공정을 동시에 처리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생산, 대량생산작업에 유효한 전용공작기계와 이와 유사하나 하나의 공정만을 처리 가능한 단용공작기계가 있다.

금속판이나 선제품성형, 나사전조등의 작업을 하는 금속성형기계, 금속의 세척이나 도금등의 금속처리용기계, 손에 들고 이동하며 작업이 가

능한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제조업, 목공공작용의 목공기계, 앞의 공작기계들이 절삭이나 성형을 위한 호환용 절삭구, 그리고 금형관련제품과 기타 앞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세분되어진다.

- 4) 금속공작기계 및 목공기계를 제외한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는 건설 및 광산용의 기계장비, 섬유용기계, 식료품 가공기계,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기계, 종이산업용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유리 및 요업용기계 그리고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세분된다.

※ 직기부품 및 부속품

- 타페트 : 평직시에 쓰이는 직기의 부속품
- 도 비 : 직물에 무늬를 넣을 때 사용하는 직기의 부속품 (작은 무늬용)
- 자카드 : 큰 무늬를 넣을 때 사용되는 직기의 부속품
위의 세가지는 직물을 짜는 내용에 따라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며, 동시에 종광의 개구를 하는 역할을 한다.
- 종광 : 직물을 짜기 위하여 직기의 타페트나 도비, 자카드와 연결되어 날실을 2군으로 나누어 주는 가는선으로 된 직기부품
- 바디 : 북이 날줄 사이로 씨줄을 물고 지나간후 이를 두들겨 촘 촘히 하는 직기부품
- 샷틀 : 씨줄을 물고 날줄사이로 움직이는 직기부품 (일명 북)

- 5)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는 자동자료처리장비, 계산기, 등사 및 복사기, 저울, 타자기,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로 분류된다.

자동자료처리장비는 컴퓨터와 주변장치로 분류되는데 관련기기로는 CPU (중앙자료처리장치), CRT TERMINAL (단말기), DISK DRIVER(보

조기억장치), PRINTER (출력장치), BANKING TERMINAL (은행용 단말기), CRT MONITER (화상기), MULTIPLEXER, MODEM (전송장치), POWER SUPPLY (컴퓨터용 전압전류 조정기), KEYBOARD (자판)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CPU, DISK-DRIVER, PRINTER, CRT MONITER, MODEM, KEYBOARD 의 물량은 세분하여 단위 '대'와 '백만원'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주변기기는 금액조사의 경우에만 KEY BOARD에 합산조사한다(단, POWER SUPPLY는 분리조사)

- 6) 서어비스 산업용기계는 자동판매기, 상업용세탁기, 산업용 냉동장비, 공기조절장치, 상업용 조리 및 식품가공기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로 분류된다.
 - 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송풍기 및 환풍기제조업, 물품취급장비,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재봉기, 산업용 로봇,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장비로 분류된다.
3. 기계제조업의 제품에 대한 조사는 수량단위(IP, 대, %, m^2/H 등)와 금액단위(백만원:생산액, 시판액, 수출액)의 조사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한다.
4. 장기공정 생산품(생산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위에 대해서 진척을 환산조사를 실시한다.(단, 수량단위가 '대'인 경우는 금액(백만원)단위에 대해서만 진척률 조사를 실시할 것)
 5. 조사되는 제품중 플랜트(설비 또는 공장설비)인 경우는 적요란에 플랜트의 내용과 공기, 총수주액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6. 크레인은 건설용크레인과 물품취급용크레인으로 분리되었으니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10100 | 내 연 기 관 (內 燃 機 關) | IP | 연료를 기통내에서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고압의 폭발력을 직접 피스톤에 주어 회전력을 일으키는 원동기 |
| 8220100 | 탈 곡 기 (脫 穀 機) | 대 | 동력원을 갖추거나 동력전달장치가 부착되어 알곡을 털어내는 기계 |
| 8220200 | 경 운 기 (耕 耘 機) | IP | |
| 8220300 | 농 업 용 트 랙 터 (農 業 用 트 랙 터) | IP | 내연기관의 힘을 이용 경작, 경지정리등의 농사일을 하는 기계 |
| 8220400 | 이 양 기 (移 秧 機) | IP | 벼의 모종을 옮겨심는 기계 |
| 8220500 | 콤 바 인 | IP | 벼, 보리등의 수확용기계로 베고 탈곡까지 가능한 기계 |
| 8220600 | 농 업 용 동 력 분 무 기 (農 業 用 動 力 噴 霧 機) | 대 | 동력원을 갖추거나 동력전달장치가 부착되어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 분무하는 농업용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 석유, 알코올, 가스등을 연료로 하는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내연기관을 조사</p> <p>※ 자동차용 내연기관은 8431200 에서, 선박용 내연기관은 8410100 에서 조 사</p> <p>× 모터싸이클용 및 철도차량용 기관 제외</p> | <p>주물, 피스 톤</p> | <p>농업용기계, 일반산업용 기계의 동력생산</p> |
| <p>× 인력식 탈곡기 및 콤바인 제외</p> <p>※ 콤바인은 8220500 으로 조사</p> | <p>박판, 봉강, 형강</p> | |
| | <p>내연기관, 기어, 주물, 박판등</p> | |
| <p>× 임업, 건설용 트랙터 제외</p> | <p>내연기관, 기어, 주물 등</p> | |
| | | |
| <p>※ 바인다는 8221009 에서 조사</p> | | |
| <p>× 인력분무기, 방제차 부착 분무기 제 외</p>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20700 | 농 산 물 건 조 기 (農産物乾燥機) | 대 | 잎담배, 알곡, 고추등을 밀폐된 공간을 이용 간접열을 가하여 말리는 기계 |
| 8220800 | 착 유 기 (搾乳機) | 대 | 젖소나 양등의 젖을 짜는 기계 |
| 8220900 | 사 료 절 단 기 (飼料切斷機) | 대 | 볏집이나 옥수수대등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기계 |
| 8221009 | 바 인 다 | 대 | 벼나 보리등을 베고 묶는 수확용 농기계 |
| 8230100 | 수 치 제 어 선 반 | 대 | 수치제어장치가 부착되어 공작물을 자동,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반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공장에서 공장자동화와 겸하여 제작된 금속절삭기계 |
| 8230200 | 범 용 선 반 (汎用旋盤) | 대 | 회전축에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이동하는 절삭공구(Bite류)에 의해 선삭을 주로 한 금속절삭기계. 주축대, 삼입대, 왕복대 배드, 보냄장치등으로 구성된다. |
| 8230300 | 밀 링 기 | 대 | 회전축에 절삭공구(커트, 엔드밀)를 고정시키고 베드위에 공작물을 고정시켜 베드의 상하좌우 이동으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 |
| 8230310 | (범용)밀링기 | 대 | |
| 8230320 | 수 치 제 어 밀링기 | 대 | NC 또는 CNC장치가 부착된 밀링기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농산물용의 건조기만을 조사 | | |
| ※ 식물용 착유기는 8243109 에서 조사 | | |
| ○ 모터부착형, 동력전달장치 부착형 포함(취상형, 절삭형 포함) | | |
| | 내연기관, 박판, 강판 | |
| ○ CNC, NC선반을 조사 | 기계용 주 물, 박판, 모타, NC 컨트롤러 | 금속절삭기계 |
| ○ 보통선반, 자동선반, 터릿선반등을 포함 | 주물, 모타 기어 | "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30400 | 톱 기 계 (Sawing M/C) | 대 |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톱날로 공작물을 절단하는 기계 |
| 8230500 | 연 삭 기 | 대 | 바이드나 밀링커트로 가공할 수 없는 단단한 공작물이나, 기계부품의 정밀한 다듬질을 위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슷돌을 이용, 공작물의 표면을 연삭(절삭)하는 공작기계 |
| 8230600 | 드 릴 링 기 | 대 | 회전축에 드릴을 고정시키고 이를 상하 이동시켜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기계 |
| 8230700 | 전 용 공 작 기 계 (專用工作機械) | 대 | 특별한 목적(특정제품만을 생산)을 위해 전문적으로 절삭가공하도록 제작된 공작기계 |
| 8230800 | 척 (Chuck) | 개 | 회전축과 결합되어 공작물이나 날물(바이트, 커트등)을 고정시키는 공작기계의 부속품 |
| 8230900 | 방 전 가 공 기 (放電加工機) | 대 | 방전(Spark)현상을 임의로 조절하여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주로 금형같은 정밀제품가공에 많이 이용) |
| 8231000 | 머 시 닝 센 타 | 대 | 수치제어장치와 자동공구교환장치가 부착되어 입력된 자료에 따라 밀링,보링등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띠톱, 회전톱, 핵소포함 조사 ※ 목공용 기계톱은 8231700에서 조사 × 석재용톱은 제외. | | 금속절삭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제어 (NC) 연삭기, 공구연삭기 포함. × 탁상형 및 휴대용 (수지식) 연삭기는 8231600 으로 조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탭핑기 포함 × 휴대용 전기드릴 (수지식), 수동드릴 제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용기 (공작물의 전공정이 아닌 하나의 공정을 처리토록 된 기계) 는 제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척 (선반, 드릴링기, 밀링기용등) 포함 조사 | | " |
| | |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의 다양한 작업을 복합적으로 자동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복합공작기계 |
| 8231100 | 프 레 스 기 | M/T (능력) | 본(금형)을 이용, 철판에 쳐내기, 굽히기, 길이짜기, 압축등의 가공을 하는 금속성형기계 |
| 8231200 | 신 선 기 | 대 | 굵은선을 다이스를 통해서 드럼에 감고 인발작업을 통해 연속적인 작업으로 직경을 줄이는 기계 |
| 8231300 | 압 연 기 (壓延機) | 대 | 회전하는 로울(압연기롤)사이에 금속재료를 통과시키며 누르는 힘에 의해 두께를 줄이는 기계 |
| 8231400 | 압 연 기 롤 | M/T | 대체로 중량이 무겁고 표면을 특수처리하여 경도를 높게한 원주상의 압연기의 주 부품 |
| 8231500 | 초 음 파 세 척 기 (超音波洗滌機) | Watt | 각종제품의 오물세척을 위해 초음파의 음압(音壓)과 공동현상(空洞現象)을 일으켜 폭발효과와 열적작용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기계 |
| 8231600 | 수 지 식 연 삭 기 (手持式연삭기) | 대 | 주물제품의 거친면의 처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손에 들고서 작업하는 연삭기 |
| 8231700 | 목 공 기 계 | 대 | 목재의 가공 즉, 절단, 표면처리, 형상제작등의 작업을 하는 목공용의 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유압식, 기계식 포함 × 인력식 제외 | | 금속절삭 |
| ○ 건식 및 습식 신선기 포함 × 압출기 제외 | 철판, 주물, 중후판, 봉강, 형강, 강관 | 철선, 동선, 알루미늄선의 가공 |
| | 기계용주물, 감속기 | 금속압연 |
| ※ 제품의 연속된 이동시에 사용되는 콘베어들과 기타 기계장치의 제품 안내용틀은 8291900 에서 조사 | 주 물 | |
| ○ 고압세척기 포함 Watt : 초음파발생기 능력 | 스테인레스 강판, 두랄루민 | 세 척 |
| ○ 탁상형 연삭기 포함 | 전동기, 박판 | |
| ○ 목공밀링기, 대패 및 장부기, 기계톱 등 각종 목공기계를 포함 | | 목재가공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31800 | 공 작 용 절 삭 구 (工作用切削具) | 천개 | 칩을 발생시키며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바이트나 커트등의 날물 |
| 8231810 | 금속공작용절삭구 | 천개 | |
| 8231820 | 기타재료용절삭구 | 천개 | |
| 8231900 | 금 형 | 대 | 금속이나 기타재료의 성형을 위한 금속 제의 본 |
| 8231910 | 프 레 스 형 금 형 | 대 | |
| 8231920 | 프라스틱시출용금형 | 대 | |
| 8231930 | 기 타 금 형 | 대 | |
| 8232 009 | 전 단 기 | 대 | 절판의 절단을 위해 절단날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절단하는 기계 |
| 8240100 | 파 쇄 기 (破 碎 機) | 대 | 화강암이나 석회석등을 도로포장용의 쇄 석이나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잘게 부 수거나 마쇄하는 기계 |
| 8240200 | 교 반 혼 합 기 (아스팔트플랜트) | T/H | 도로포장용의 아스콘을 만들기 위해 아 스팔트와 쇄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는 아스콘제조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재료용 (드릴, 바이트, 밀링커트, 엔드밀, 연삭용휠등)을 조사 ○ 목재, 석재용등의 공구 | | |
| <p>금속프레스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고경도, 고강도의 금형</p> <p>프라스틱 칩을 열을 가함과 동시에 찍어내는 금형</p> <p>다이캐스팅형, FRP 용, 주단조용, 기타금형 포함</p> <p>× 금형부품 (MOLD BASE 금형등)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압식, 기계식 포함 | <p>금형용 특수강</p> | <p>각종재료성형</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쇄기 (crusher), 마쇄기 포함 조사 | <p>중후판, 형강</p> | |
| <p>※ T/H : 시간당 처리능력</p>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40300 | 건설(건축)용크레인 | M/T (중량) |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건설이나 건축등의 작업에 주로 이용되는 크레인과 고층건물 건축용의 탑형크레인 |
| 8240400 | 그 레 이 더 | 대 | 도로포장시 도로의 평탄작업을 하는 땅정지용의 건설장비 |
| 8240500 | 로 더 | 대 | 삽(Shovel) 또는 들것을 이용 흙이나 목재등을 들어올려 차량등에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용 장비 |
| 8240600 | 굴 삭 기 | 대 | 삽을 이용 땅을 긁거나 파고 흙을 파서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건설중장비 |
| 8240700 | 벧 치 플 랜 트 | M ³ /H | 도로포장작업을 위해 자갈, 모래, 시멘트 물을 일정비율로 섞어 레미콘을 만드는 기계 |
| 8240800 | 볼 도 저 | 대 | 건설중장비 25 Ton을 기준으로 환산 |
| 8240900 | 면 사 기 (撚 絲 機) | 대 | 실을 꼬는 기계 |
| 8241000 | 방 적 기 (紡 績 機) | 대 | 솜, 모사, 화학섬유등의 단섬유의 올을 잡아내어 실을 만드는 기계. 방적의 공정은 개포, 해면, 타면, 빗질, 연조등의 전방공정과 실을 만드는 정방으로 나뉘어진다.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자주식크레인, 탑형크레인 | 형강, 증후판, 궤도 | |
| | | |
| ※ 지게차와 혼동이 없을 것 | | |
| ※ 일명 엑스카베이터 | | |
| ○ 고정식과 이동식 포함 ○ M ³ /H : 시간당 처리능력 | | |
| | | |
| × 합사기는 제외 | | |
| × 전방공정의 방적준비기계 제외 ○ 정방기, 면방적기, 모방적기, 기타방적기를 포함조사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41100 | 직 기 (織 機) | 대 | 날가닥의 실을 2군으로 나누고 개구하여 그 사이에 씨가닥을 넣어서 직물을 짜는 기계 |
| 8241200 | 편 직 기 (編 織 機) | 대 | 실을 얽히게 하기 위해 실자체를 꼬부러 뜨게눈을 만들고 이 뜨게눈을 다음 줄의 뜨게눈과 서로 대조되게 하여 메리야스등의 편직을 하는 기계 |
| 8241300 | 도비 및 재퀴드 | 개 | 직기의 날줄을 2군으로 개구하는 부분으로 개구를 달리함으로서 직물의 무늬를 넣는 부분 |
| 8241400 | 샷 틀 | 개 | 씨가닥을 물고서 날줄사이를 움직이는 직기의 부품 |
| 8241500 | 바 디 (Reed) | 개 | 날줄사이로 씨줄이 지나간뒤 이를 두들겨서 공간을 촘촘하게 하는 직기의 부품 |
| 8241600 | 염 색 기 (染 色 機) | 대 | 직물을 염색하는 기계 |
| 8241700 | 정 미 기 (精 米 機) | 대 | 벼의 껍질을 벗기고(현미상태) 적당히 표면을 깎아내어(정미) 쌀을 만드는 기계 |
| 8241800 | 제 빵 용 기 계 (製 빵 용 機 械) | 대 | 제과점등에서 각종 모양의 빵을 형성하고 만드는 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면직기, 견직기, 모직기, 기타직기를 모두 조사 | | |
| ○ 각종 편직기를 모두 포함 조사 | | |
| ○ 도비(작은 무늬용)와 재워드(큰 무늬용)만 조사 | | |
| | | |
| | | |
| ○ 사염기, 지그, 윈스, 패드, 비임염색기, 드럼염색기 포함 | | |
| ○ 현미기와 정미기 포함조사 | 박판, 주물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41900 | 포장 및 충전기 | 대 | 용기(병, 통, 갑, 상자, 봉지, 자루등)에 내용물을 채워 넣고 검사하여 충전포장 또는 상포하는 기계 |
| 8242000 | 화학용압출기 (化學用壓出機) | 대 | 인조수지(합성수지)를 압출하여 봉이나 관, 필름등을 뽑아내는 기계 |
| 8242100 | 고무가공기계 | 대 | 경질의 고무를 부수고 화학처리하여 연질의 고무로 만들고, 이 고무로 요구되는 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
| 8242200 | (화학용)사출성형기 (化學用射出成形機) | 대 | 인조수지(합성수지)를 금형에 넣어 필요한 모양의 제품을 성형하여 뽑아내는 기계 |
| 8242300 | 펄프제조 및 초지용기계 | 대 | 폐지나 펄프를 원료로 종이를 제조하는 기계 제조과정: 원료→정선→저장→휘석(약품 투입)→탈수→압착→건조→카렌딩→감기→재단→권취 |
| 8242400 | 인쇄기 (印刷機) | 대 | 문자나 그림, 사진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충진기, 상포기 포함 × 단순히 포장된 상자를 묶는 결속기는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용 압출기는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가공용 믹서(혼합기), Mixing Mill, Press, Extruder (압출기), 칼렌 다기 포함조사 | 강판, 주조품, 환봉, 베어링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제조플랜트의 경우 각 공정의 기계를 분리하여 조사 ○ 펄프제조기, 초지기, 기타종이 제조용기계를 포함 조사 ○ 금액단위의 경우는 합산, 대수는 각 공정의 기계를 각각의 대수로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인쇄기(평압식, 원통압식, 윤전식 인쇄기등)를 포함조사 × 인쇄보조기계는 제외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42509 | 동 력 쇼 벨 | 대 | 지반을 굴착하고 동시에 운반차에 싣기 위한 기계 |
| 8242609 | 무 한 궤 도 | M/T | 산업중장비(블도저, 크레인등)의 이동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부의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이와 맞물리도록 연결된 편 |
| 8242709 | 스 핀 들 | 개 | 보빈을 결합시켜 실을 감는 방적기나 직기등의 부품(방적기계에서 실을 감는 보빈부분의 강철로 만든 축) |
| 8242809 | 종 광 (Reed Wire, Herld Wire) | Kg | 날줄을 종광의 가운데 부분의 구멍으로 한가닥씩 끼워서 도비(타페트, 재쿼드)와 연결되어 개구를 하여 주는 부품 |
| 8242909 | 나 염 기 (Printing M/C) | 대 | 실 도는 직물에 나염을 하는 기계 |
| 8243009 | 양조 및 증류용기계 | 대 | 주정공장의 알코올 증류기 및 발효용 기계 |
| 8243109 | 식 물 용 착 유 기 | 대 | 유압이나 스크류의 전진에 의한 압축력으로 참깨, 유채, 들깨등의 기름을 짜는 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굴삭기와 혼동이 없도록 할 것 | | 광산용 |
| ○ 구성품 즉 링크, 핀, 슈가 합쳐져서 된 트랙을 조사 (강철제의 좁은 판을 여러개 연결하여 앞뒤 바퀴에 사슬모양으로 걸고 이것을 동력으로 회전시켜 주행하게 하는 장치 : 일명 Caterpillar) | | |
| | | 방적기부품 |
| | 강 선 | 직기부품 |
| ○ 롤러나염기, 스크린나염기 포함 | | |
| ○ 증류기와 발효용기계를 각각으로 합산조사 | | |
| ○ 압착식 (유압식) 과 스크류 (Screw) 식 포함조사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43209 | 콘크리트제품성형기 | 대 | 콘크리트 전주, 파일, 홈관등 콘크리트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
| 8243309 | 연 탄 제 조 기 | 대 | 구공탄 제조용 기계 |
| 82501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백만원 (병행 :대) | 대량의 자료를 기억 신속정확하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전자자료 처리장치 |
| 8250110 | C P U | 백만원 (병행 :대) | 자료의 연산, 판단, 분류, 비교, 추출하는 중앙자료 처리장치 |
| 8250120 | 디스크드라이브 (Disk driver) | 백만원 (병행 :대) | Hard disk나 플로피 디스크의 자료를 구동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장치(보조기 역장치) |
| 8250130 | 프 린 트 (Printer) | 백만원 (병행 :대) | 처리된 자료를 외부로 찍어내는 장치 |
| 8250140 | C R T Monitor | 백만원 (병행 :대) | 자료의 처리상황을 화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 |
| 8250150 | 전 송 장 치 | 백만원 (병행 :대) | 단말기와 주자료처리장치와 자료를 연결시켜 주는 자료전송장치 |
| 8250160 | 키보드 (Key Board) 및 기타 | 백만원 (병행 :대) | |
| 8250200 | 컴퓨터용전류 전압공급기 (Power supply) | 대 | 컴퓨터내에 필요한 다양한 전압이나 전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장치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타일, 벽돌생산용 기계포함 | | |
| ○ 연탄을 찍는 기계만 조사 | 주 물 | |
| | PCB, 저항 코일등 | |
| ○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FD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포함 | | |
| ○ Key Board와 위의 장치를 제외한 것을 조사. 대수는 Key Board만 조사 | | |
| ○ 컴퓨터외의 여타 사무기계용으로 동 시 사용되는 제품 포함 | PCB, 저항, 코일등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50300 | 전 자 계 산 기 | 대 | |
| 8250310 | 휴대용전자계산기 | 대 | |
| 8250320 | 탁상용전자계산기 | 대 | |
| 8250400 | 산 업 용 저 울 | 대 | 차량의 계근이나 연속된 포장라인내에서 내용물의 계근등을 위한 산업용의 저울 |
| 8250500 | 상업용 및 가정용 저 울 | 개 | 지레의 방법등을 이용 지침이나 수침등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상업용이나 가정용의 저울 |
| 8250600 | 타 자 기 | 대 | |
| 8250700 | 플로피 디스크 (Floppy Disk) | 개 | 자료의 저장, 보관 그리고 필요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억시키는 매체 |
| 8260100 | 자 동 판 매 기 (Vending M / C) | 대 | 음식품, 잡화품, 서어비스용품을 판매원 없이 판매하는 기계 |
| 8260200 | 산업용 및 상업용 냉 장 고 | 대 | 음식료품을 저온으로 보관,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진열대를 겸하여 만든 냉장고 |
| 8260300 | 산 업 용 냉 동 기 | 대 | 중앙냉방형의 대형건물이나 어물이나 축산물의 냉동보관용의 대형냉동기계 |
| 8260400 | 룸 에 어 콘 | 대 | 창문이나 벽걸이형의 에어컨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카드형 계산기 포함 | | |
| | | |
| ○ 각종의 상업용 및 가정용저울 조사 | | |
| ○ 각종의 타자기 포함 | | |
| | | |
| ○ 등전교환기, 우표, 차표판매기, 담배판매기 포함 | | |
| ○ 정육점의 냉동고 포함 | | |
| | | 대형건물 냉방용, 냉동창고용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60500 | 차 량 용 에 어 콘 | 대 | 차량내의 냉방을 위한 차체부착형의 에어컨 |
| 8260600 | 패 키 지 형 에 어 콘 | R/T | 큰 면적의 냉방을 위하여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되는 대형의 에어컨 |
| 8260700 | 냉 각 탑 (冷 却 塔) | T/H |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용수의 냉각이나, 냉동기, 에어컨에서 냉매의 응축을 위해 설치된 탑 |
| 8260800 | 공 기 조 화 기 (Air Handling Unit) (空 氣 調 和 機) | 대 | 사무실의 냉난방을 위해 보일러나 냉동기에서 제공된 냉·온열을 정화된 외기와 혼합하여 송풍기에 의하여 강제로 공급하는 장치 |
| 8260900 | 가 스 레 인 지 | 대 | |
| 8261000 | 석 유 곤 로 | 대 | |
| 8261100 | 상 하 수 정 화 장 비 (上 下 水 淨 化 裝 備) | 대 | 상하수의 침전, 화학처리를 거쳐 정화하여 식수용이나 공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정수된 물을 강으로 흘리기 위한 정화장치 |
| 8290100 | 산 업 용 펌 프 | HP | 동력을 이용 액체를 공급, 배출 및 순환시키는 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용, 버스용, 트럭용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용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향류형, 직교류형의 냉각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R / T = 0.78 T / H$ 1 $T / H = 1.28 R / T$ ※ R/T: 냉동톤 T/H: 유량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 코일 유닛 (Fan-Coil Unit)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취사용, 식당용 (대형)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물제품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로 겸용의 경우는 석유스토브로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용이나 하수도용의 폐수처리 장치 포함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물을 이온화등으로 정화하는 정 수기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기 포함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90200 | 가 정 용 펌 프 | 대 | 가정용의 소형 자동펌프 |
| 8290300 | 공 기 압 축 기 (空 氣 壓 縮 機) | 대 | 공기의 압축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기 또는 그밖의 기체를 압축하는 기계 |
| 8290310 | 산업용공기압축기 | 대 | |
| 8290320 | 냉매용공기압축기 | 대 | |
| 8290400 | 송 풍 기 (送 風 機) | 대 | |
| 8290500 | 집 진 장 치 (集 塵 裝 置) | 대 | 수용성가스, 유해성가스, 분체등을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기 위해 전기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모으는 장치 |
| 8290600 | 호 이 스톱 | M/T | 주로 크레인에서 물건을 달아올리거나 감아당기기 위하여 도르레의 배율을 이용한 장치 |
| 8290700 | 물품취급용크레인 | M/T (중량) | 물품의 하역이나 적재를 위하여 물품을 들어올려서 이동시키는 기계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온수보일러용의 온수순환펌프 포함 | | |
| ○ 공장, 광산이나 건설용등의 산업용 압축기 | | |
| ○ 냉동기나 냉장고용의 냉매압축기 | | |
| ○ 블로우형 (송출압력 0.1 ~ 1.0 kg/cm ²) 과 팬형 (송출압력 0.1 kg/cm ² 미만) 을 포함 | | |
| ※ 환풍기는 8331009에서 조사 | | |
| ○ 전기집진기, 백 필터 (Bag filter) 집진기, 싸이클론집진기 포함 | | |
| ○ 전동식 호이스트만 조사 | | |
| ○ 부두용, 천정형, 부상형등의 물품취급 용만을 조사 | | |
| ※ 건설장비로서의 크레인은 건설용 크 레인으로 조사 | | |
| × 곤도라 제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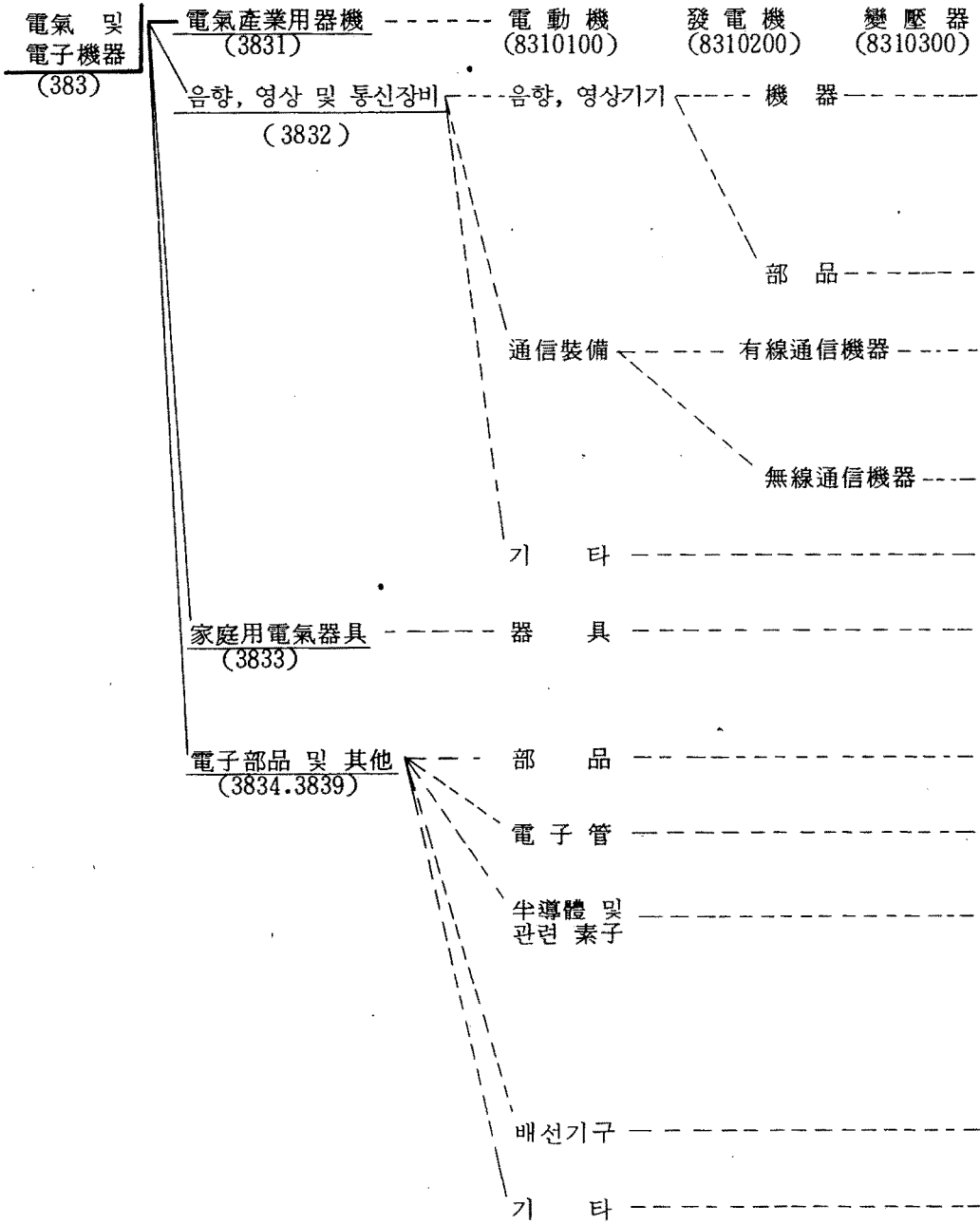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90800 | 에 스 컬 레 이 타 | 대 | 계단식의 이동장치를 통해 사람을 상하층으로 이동시키는 운반기계 |
| 8290900 | 엘 리 베 이 타 | 대 | 고층빌딩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으로 운반하는 기계 |
| 8291000 | 콘 베 이 어 | 대 | 연속적인 재료의 공급이나 배출, 분업화된 작업선(line)에서 화물을 수평이동이나 경사이동 시키는 화물연속이송장치 |
| 8291100 | 지 게 차 | 대 | 지게모양의 두개의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팔로 화물의 하역, 적재를 위해 제작된 물품취급장치 |
| 8291200 | 공 업 용 재 봉 기 | 대 | 얇은 직물에서 가죽에 이르기까지 재봉을 위해 전문화되어 제작된 재봉용기계 |
| 8291300 | 기 어 | M/T | 원통형이나 원뿔등의 면에 이를 만들어 이것이 다른것과 서로 맞물려서 한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과 회전을 전달하는 기계요소 |
| 8291400 | 감 속 기 (減 速 機) | 대 | 기어의 회전비를 이용, 기어를 여러단으로 연결하여 전동기에서 나오는 회전을 기계에 적절한 회전속도로 바꾸어 주는 장치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트콘베이어, 로라콘베이어, AQ콘베이어, 경사콘베이어등 각종 콘베이어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tery 이용 전동지게차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침직선, 본봉재봉틀, 오바로크등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기어, 헬리칼기어, 베벨기어, 워엄기어, 레크와 피니언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감속기, 유성감속기, 워엄감속기, 기어드모타 포함 | 주물, 기어, 중후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속기 제외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291500 | 베 어 링 | M/T | 회전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계요소 |
| 8291600 | 열처리로 및 전기로 (熱處理爐 및 電機爐) | 대 | 쇳물을 녹이거나 금속재료의 열처리를 위해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로와 버너등으로 열을 공급하는 열처리로 |
| 8291700 | 소 화 기 (消 火 器) | 대 | 물이나 소화액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불을 끄는 장비 |
| 8291800 | 소화용스프링쿨러 | 개 | 열감지장치에서 화재를 감지하여 소방용 벨브를 작동시켜 스프링쿨러에서 대량의 물을 일시에 살포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하는 자동소화장비의 소화부분 |
| 8291900 | 로 울 러 | 개 | 콘베이어나 제품의 이송을 위하여 안내를 제공하는 원통형의 굴림대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베어링, 로울러베어링, 메탈베어링, 기타베어링을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분말소화기, CO₂ 소화기, 하론 (Halon) 소화기 포함. ×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소화 전)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 용구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의 스프링롤러 헤드를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연기를 제외 | | |

소분류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配電盤 (8310400) 回路遮斷器 (8310500) 電氣溶接機 (8310600) 整流器 (8310700) 燈安定機 (8310809)

흑백 TV수상기, 칼라 TV수상기, 콤비네이션 TV수상기, 영상녹화재생기, 일반라디오,
 (8320100) (8320200) (8320300) (8320400) (8320700)
 카스테레오, 녹음 및 재생기, 소형전축, 데스크, 헤드폰, 레코드플레이어,
 (8320800) (8320900) (8321100) (8321200) (8321800) (8321300)
 스피커시스템, 전축용튜너, 전축용앰프, 자동차용음향증폭기, 방송용증폭기
 (8321400) (8321500) (8321600) (8321700) (8322000)

電子式 TV튜너, 機械式 TV튜너, 오디오용튜너, 확성기, 테크메카니즘
 (8320500) (8320600) (8321000) (8321900) (8322100)

電話機, 키폰, 電話交換機, 반송장치, 텔레폰레코더, 모사전송기기,
 (8322200) (8322400) (8322500) (8322600) (8322700) (8322800)
 인터컴, 인터폰, 유선통신기기부품, 모니터 TV
 (8322900) (8323909) (8324009) (8323000)

무선전화기, 무선송수신기, 무선원격조절기, 위성방송수신기, 자동차용전화기
 (8322300) (8323100) (8323200) (8323300) (8323400)

도난경보기, 의료용방사선기기,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8323500) (8323600) (8323700) (8323800)

가정용냉장고, 가정용선풍기, 전기세탁기,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8330100) (8330200) (8330300) (8330400) (8330600) (8330700)
 진공소제기, 가습기, 환풍기
 (8330800) (8330900) (8331009)

타임어스위치
 (8330500)

흑백 TV용브라운관, 칼라 TV용브라운관, 표시관, 산업용브라운관
 (8340100) (8340200) (8340300) (8340400)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직접회로, 혼성직접회로, 금속산화물반도체, 발광다이오드
 (8340500) (8340600) (8340700) (8341000) (8340800) (8340900)
 고정축전기, 가변축전기,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 변성기, 전자코일
 (8341100) (8341200) (8341300) (8341400) (8341500) (8341600)
 인쇄회로기판, 자기헤드, 코넥터, 릴레이, 동박적층판, 웨라이트코아
 (8341700) (8341800) (8341900) (8342000) (8342100) (8342200)
 웨라이트마그네트, 소형모터, 수정진동자, 로드안테나
 (8342300) (8342400) (8342500) (8342600)

소켓트, 스위치, 절연코드 및 코드셀, 콘센트, 프러그
 (8391100) (8391200) (8391300) (8391409) (8391500)

통신선 및 케이블, 전력선 및 케이블, 마그네트선, 백열전구, 형광전구,
 (8390100) (8390200) (8390300) (8390400) (8390500)
 장식용전구, 축전지, 건전지, 형광등, 차량용조명등 및 신호등
 (8390600) (8390700) (8390800) (8390900) (8391000)

○ 문제점 및 유의사항

1. 품목명이 유사할지라도 용도, 복합체, 강·약전(전압의 크기)용 등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한다.

예) · 전동기(8310100)와 소형모터(8342400)

· 변압기(8310300)와 변성기(8341500)

· 전력회로차단기(8310500)와 스위치(8391200)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10100 | 전 동 기 (電 動 機) | HP | 외부의 전기적에너지를 받아 기계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
| 8310110 | 직 류 전 동 기 (直 流 電 動 機) | HP | |
| 8310120 | 교 류 전 동 기 (交 流 電 動 機) | HP | |
| 8310200 | 발 전 기 (發 電 機) | KW |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적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 |
| 8310300 | 변 압 기 (變 壓 器) | KVA |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 |
| 8310400 | 배 전 반 (配 電 盤) | 백만원 (병행:대) | 발전기, 변압기, 기타 전기배선기구 등의 운전을 제어하고 그 발생전력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구, 기계를 모아서 장치한 반 |
| 8310500 | 회 로 차 단 기 (回 路 遮 斷 器) | 대 | 정상전류와 이상전류에 대하여 각각 통전(通電), 투입(投入), 차단하는 개폐(開閉)장치 |

릴레이 (8342000)

- 전력선 및 케이블 (8390200) 과 절연코드 및 세트 (8391300)

2. 타업종에 비하여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신제품개발이 활발하므로 관련
 사업체에서의 누락품목 등 확인사항 철저 산업통계과 담당자와
 협의 조사유무결정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만 조사 × 기기용의 소형모터 (보통 1kw이하) 는 제외 ○ 직권, 분권, 복권전동기 등 ○ 단상유도, 3상유도, 동기전동기 등 | 주물, 동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류, 교류 조사 | 주물, 철심, 코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용, 발전용포함, 강전용만 조사 | 주물, 철심, 코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전력용 고압, 저압 배전반, 제어반 분전용 분전반 등을 조사 | 주물, 철판 | ※ 단위변경 (대 1백만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차단기 조사 ○ 퓨즈, 스위치는 제외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10510 | 전력회로차단기 (電力回路遮斷器) | 대 | |
| 8310520 | 누전차단기 (漏電遮斷器) | 대 | |
| 8310600 | 전기용접기 (電氣溶接機) | 대 | 용접에 쓰이는 각종 전기용접기계 |
| 8310700 | 정류기 (整流機) | 대 | 전류의 흐름(교류를 직류로)을 바꾸어 주는 장치, 기기 |
| 8310809 | 등안정기 (燈安定機) | 대 | 각종 등에 내장되어 변압기능을 갖는 기기 |
| 8320100 | 흑백 TV 수상기 (黑白TV受像機) | 대 | |
| 8320200 | 칼라 TV 수상기 (칼라 TV 受像機) | 대 | |
| 8320210 | 로타리형수상기 | 대 | 기계식튜너를 통한 채널선택방식형 |
| 8320220 | 터치및리모콘형수상기 | 대 | 전자식튜너를 통한 채널선택방식형 |
| 8320300 | 콤비네이션TV수상기 (콤비네이션TV受像機) | 대 | TV수상기능과 오디오기능을 복합장치한 TV수상기 |
| 8320310 | 칼라콤비네이션 TV수상기 | 대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등을 조사 ×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용접기는 제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용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변류기, 전동발전기, 수은정류기, 금속정류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광등, 수은등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과 튜너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 TV게임, 공업용 TV, 학술조사용 등 특수분야 유선 TV (폐쇄회로)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 PCB, 브라운관 튜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백 TV수상기에 준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 PCB, 브라운관 튜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터블형 (휴대용), 콘솔형 (장식용) 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 PCB, 브라운관 튜너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20320 | 홀백콤비네이션 TV 수상기 | 대 | |
| 8320400 | 영상녹화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 대 | |
| 8320410 | 영상녹화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 대 | 녹화와 재생 겸용 |
| 8320420 | 영상재생기 (映像録畫再生機) | 대 | 단순재생기능만 있는 제품 |
| 8320500 | 전자식 TV 튜너 (電子式TV 튜너) | 천개 | TV수상기의 채널선택장치로써 터치 및 리모콘형 수상기에 쓰이는 부분품 |
| 8320600 | 기계식 TV 튜너 (機械式TV 튜너) | 천개 | TV수상기의 채널선택장치로써 로타리형 TV수상기에 쓰이는 부분품 |
| 8320700 | 일반 라디오 (一般 라디오) | 대 | |
| 8320800 | 카스테레오 | 대 | 자동차용 녹음재생기 |
| 8320900 | 녹음 및 재생기 (録音 및 再生器) | 대 | |
| 8320910 | 일반 녹음기 | 대 | 라디오부착 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기기 |
| 8320920 | 녹음 재생기 | 대 | 라디오미부착 단순재생기능만 갖춘 기기 |
| 8321000 | 오디오용 튜너 | 천개 | 각종 오디오용 방송주파수 조절기능장치 (채널선택기능장치)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R, VTR | | |
| | IC | |
| | IC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라디오 포함 ○ 카라디오는 8320800 카스테레오에 포함 조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부착 또는 미부착 녹음재생기 모두 포함. | | 자동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 및 재생기 포함 × 전축용 테크는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식, 기계식 포함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21100 | 소 형 전 축 (小 型 電 蓄) | 대 | 일명 뮤직센타, 앰프, 레코드플레이어, 스피커 등으로 조립된 콤파넌트의 제품 |
| 8321200 | 데 크 | 대 | 녹음테이프를 삽입하여 녹음 및 재생시킬수 있는 장치(데크메카니즘)가 부착된 콤파넌트의 부분품 |
| 8321300 | 레 코드 플 레 이 어 | 대 | 픽업, 턴테이블, 캐비넷 등으로 구성된 콤파넌트의 구성품(턴테이블: 레코드판의 홈에 수록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기기) |
| 8321310 | 일반레코드플레이어 | 대 | |
| 8321320 |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C . D . P) | 대 | |
| 8321400 | 스 피 커 시 스템 | 대 | 증폭된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갖춘 확성기 조립품 |
| 8321500 | 전 축 용 튜 너 | 대 |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받아 음성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갖춘 콤파넌트형의 부분품 |
| 8321600 | 전 축 용 앰 프 | 대 | 음성증폭기능을 갖춘 콤파넌트형의 부분품 |
| 8321700 | 자동차용음향증폭기 (自動車用音響增幅器) | 대 | 일명 카부스타 |
| 8321800 | 헤 드 폰 | 천개 | 폰을 양귀에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는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각종 기기의 분리형은 제외 | | |
| | 데크메카니즘 | |
| | 픽업, 턴테이블 | |
| | 확 성 기 | |
| | | |
| ○ Hi-Fi 앰프, 튜너앰프 등을 조사 | | |
| ○ 자동차에 내장 가능한 앰프만 조사 | | |
| ○ 대형, 소형 포함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제품 |
| 8321900 | 확 성 기 (擴 聲 器) | 천개 | 일명 스피커, 스피커시스템의 부분품 |
| 8322000 | 방 송 용 증 폭 기 (放 送 用 增 幅 器) | 대 | 전축용앰프를 제외한 산업 및 사무기기 용 제품 |
| 8322100 | 데 크 메 카 니 즘 | 천개 | 녹음, 녹화 및 재생기능을 하는 모타, 헤드를 포함한 기계 부분품 |
| 8322110 | 녹 음 기 용 D.M | 천개 | 오디오용 |
| 8322120 | 녹 화 기 용 D.M | 천개 | 비디오용 |
| 8322130 | 컴퓨터용및기타 D.M | 천개 | 컴퓨터용 |
| 8322200 | 전 화 기 (電 話 機) | 대 | |
| 8322210 | 전 자 식 전 화 기 | 대 | MFC전화기 |
| 8322220 | 다 이 알 식 전 화 기 | 대 | |
| 8322300 | 무 선 전 화 기 | 대 | 일명 코드레스전화기 |
| 8322400 | 키 폰 | 대 | 각 회선에 전화기를 연결하여 내선 상 호간은 물론 각 전화기에서 자유로운 국선호출, 응답, 다른 전화기에 전송이 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
| 8322500 | 전 화 교 환 기 (電 話 交 換 機) | 회선 | 전화기의 송수신기능을 연결가능토록 한 통신기기 |
| 8322510 | 자동식 전화교환기 | 회선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이어폰 제외 | | |
| | | |
| | | |
| | | |
| ○ 공중전화기 포함 | | |
| | | |
| | | |
| ○ 스텝 바이스방식, 크로스바방식, 전자교환방식, 자동식구내교환기, 기계식, 전자식 등 조사 | IC, 릴레이 통신선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22520 | 전 자 식 및 기 타 전 화 교 환 기 | 회 선 | |
| 8322600 | 반 송 장 치 (返 送 装 置) | 회 선 | 전화교환기와 전화기, 단말기, 국과 국의 연결등에서 기능보완을 갖춘 장치물(음 성신호 ↔ 전기적신호) |
| 8322700 | 텔 레 폰 레 코 더 | 대 | 전화기에 연결장치한 무인수신기 |
| 8322800 | 모 사 전 송 기 기 | 대 | 문서 또는 사진을 일반전화, 송수신망을 이용 송수신하는 장비(일명, 팩시밀리) |
| 8322900 | 인 터 컵 | 대 | 모기(母機)와 자기(子機)간의 직접무 선통화 할 수 있는 기기(무선인터폰) |
| 8323000 | 모 니 터 TV | 대 | 국시적 시청을 위한 수상기로 폐쇄회로 카메라로 화면을 포착 영상화하는 기기 |
| 8323100 | 무 선 송 수 신 기 (無 線 送 受 信 機) | 대 | 일명 : 민수용무전기 |
| 8323200 | 무 선 원 격 조 절 기 | 대 | 일명 : 리모콘 (Remote Control) |
| 8323300 | 위 성 방 송 수 신 기 (TVRO) | 대 | 적도 상공(약 40,000 km)의 방송위성에 서 보내오는 TV 프로그램을 직접 수신 하여 가정용 TV로 시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아파트, 호텔 등에서의 공청 도 가능 |
| 8323400 | 자 동 차 용 전 화 기 | 대 | 일명, 카폰, 자동차내에 부착 이동하면서 무선중계대와 교환국을 이용하여 일반전 화가입자나 다른 카폰과 통화할 수 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 PCB, IC | |
| ○ 자동응답기 포함 | | |
| | | |
| ※ 보통 1세트에 모기 1대, 자기 6대로 구성됨. | | 방송국에서 주로 쓰임 |
| | 브라운관 | • 도난방지, 감시기능 • 지하철 등에 쓰임 |
| ○ 민수용만 조사 ○ CB트랜시버, 워키토키 포함 | | • 건설현장 • 레저용 |
| | IC | TV용, 레저, 장난감용 |
| ○ 단일변환방식, 이중변환방식, 모노, 스테레오, 리모콘형 등 조사 | 안테나, 변류기 | TV시청용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는 전화기 |
| 8323500 | 도 난 경 보 기 (盜難警報器) | 대 | |
| 8323600 | 의료용 방사선기기 | 백만원 | 각종 방사선의료기기 및 기자재 |
| 8323700 | 녹 음 테 이 프 | KM | 플라스틱테이프표면에 자성철분을 입힌것 (오디오용) |
| 8323800 | 비 데 오 테 이 프 | 천개 | 영상을 재생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자 기테이프(비데오용) |
| 8323909 | 인 터 폰 | 대 | |
| 8324009 | 유선통신기기 부품 | 백만원 | 유선통신기기용 부품 |
| 8330100 | 가 정 용 냉 장 고 | 대 | |
| 8330110 | 소 형 냉 장 고 | 대 | 140 ℓ 이하 |
| 8330120 | 중 형 냉 장 고 | 대 | 270 ℓ 이하 |
| 8330130 | 대 형 냉 장 고 | 대 | 271 ℓ 이상 |
| 8330200 | 가 정 용 선풍기 (家庭用扇風機) | 대 | |
| 8330300 | 가정용전기세탁기 | 대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차량용, 주거용, 사무실용 각종 제품 포함 | | |
| ○ 보조기기 및 관련제품 포함 | | |
| ○ 카세트형, 릴형 모두 포함 | 플라스틱, 산화철 | |
| | 플라스틱, 산화철 | |
| ○ 통신기기부품중 유선통신기기만 조사 ----- × 무선통신기기용은 제외 | | |
| ○ 산업용은 382에서 조사 아이스박스 제외 | | |
| ○ 벽걸이선 풍기 포함 ----- × 산업용, 날개 만있는것 (자동차, 여객차 등에서 설치된 것)은 제외 | 타임어스워 치, 소형모 터 | |
| ○ 가정용만 조사 | 타임어스워 치, 소형모터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30400 | 탈 수 기 (脫 水 機) | 대 | 세탁물의 탈수기능만 갖춘 기기 |
| 8330500 | 타 임 어 스 위 치 | 천개 | 시간조절용 자동개폐기 |
| 8330600 | 전 자 레 인 지 | 대 | |
| 8330700 | 전 기 밥 솥 | 대 | |
| 8330800 | 진 공 소 제 기 (眞 空 掃 除 器) | 대 | |
| 8330900 | 가 습 기 (加 濕 器) | 대 | 물을 기화하여 건조한 공기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 |
| 8331009 | 환 풍 기 | 대 | |
| 8340100 | 흑백TV 용브라운관 | 개 | |
| 8340200 | 칼라TV 용브라운관 | 개 | |
| 8340300 | 표 시 관 | 천개 | 각종 디지털기기의 표시관 |
| 8340400 | 산업용브라운관 | 개 | 컴퓨터주변기기(모니터)용 |
| 8340500 | 트 랜 지 스 터 | 천개 | |
| 8340510 | S.S 트랜지스터 | 천개 | Small-Signal (1W이하) |
| 8340520 | P.W 트랜지스터 | 천개 | Power (1W이상) |
| 8340600 | 다 이 오 드 | 천개 | 양극과 음극의 두극만을 갖춘 진공관 |
| 8340700 | 집 적 회 로 (集 積 回 路) | 천개 |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소자를 작은기관위에 놓고 배선까지도 하여 한 계열의 기능을 갖도록 만든 반도체회로 |
| 8340800 | 금속산화물반도체 (M . O . S.) | 천개 | 집적회로용 메모리관 (Metal-Oxide-Semiconductor)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가정용만 조사 | | |
| ○ 각종 전기, 전자용 포함 | | |
| ○ 전기보온밥통겸용 포함 | | |
| | | |
| ○ 산업용은 제외 | | |
| | | |
| | | |
| | 발광다이오드 | |
| | | |
| | | |
| | | |
| ○ 반도체 I.C, 고밀도 I.C, 초고밀도 I.C 등 모두 포함 | | |
| | | |
|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40900 | 발 광 다 이 오 드 | 천 개 | 일명, LED |
| 8341000 | 혼 성 직 접 회 로 | 천 개 | 하이브리드 IC |
| 8341100 | 고 성 축 전 기 | 천 개 | 서로 마주본 2개의 전극사이에 유전체를 끼워서 정전용량을 갖게한 장치 |
| 8341200 | 가 변 축 전 기 | 천 개 | |
| 8341300 | 고 정 저 항 기 | 천 개 | |
| 8341400 | 가 변 저 항 기 | 천 개 | |
| 8341500 | 변 성 기 | 천 개 | 전압을 공급회로내에서 요구되는 전압을 승압시켜주는 장치물 일명, 트랜스포머 |
| 8341510 | 중간및고주파변성기 | 천 개 | |
| 8341520 | 전 원 변 성 기 | 천 개 | |
| 8341530 | 입 출 력 변 성 기 | 천 개 | |
| 8341540 | 고 압 변 성 기 | 천 개 | |
| 8341600 | 전 자 코 일 | 천 개 | 산화철을 혼합 자성물질을 갖춘 코아의 부품 |
| 8341700 | 인 쇄 회 로 기 관 | 개 | 동박적층판에 회로를 가한 것 |
| 8341710 | 페 놀 인 쇄 회 로 기 관 | 개 | |
| 8341720 | 에 폭 시 인 쇄 회 로 기 관 | 개 | |
| 8341800 | 자 기 헤 드 | 천 개 | 자기테이프와 접촉하여 녹음 녹화 또는 재생시켜주는 부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전 (전자기기) 용 제품 의 부품 |
| ○ 인덕형코일, 편향요크, 필터코일, 동조 코일, 포화코일, 고주파발생 코일 등 포함 | 산화철, 선 재 | 전자코아의 부품 |
| | 페놀동박적층판 에폭시동박적층판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41810 | 오디오용 자기헤드 | 천개 | |
| 8341820 | 비디오용 자기헤드 | 천개 | |
| 8341830 | 컴 퓨 터 및 기 타 자 기 헤 드 | 천개 | |
| 8341900 | 코 닥 터 | 천개 | 전자회로를 여러방향으로 연결가능토록 한 전자기기용 부품 |
| 8342000 | 릴 레 이 | 천개 | 자동개폐기 등을 갖춘 전자용스위치의 일종 |
| 8342100 | 동 박 적 층 판 | 천개 | 인쇄 회로기판의 원판 |
| 8342110 | 페 놀 동 박 적 층 판 | 천개 | 페놀수지에 절연지를 합침시켜 동박을 적층한 것 |
| 8342120 | 에폭시 동박적층판 | 천개 | 에폭시수지에 절연지를 합침시켜 동박을 적층한 것. |
| 8342200 | 웨 라 이 트 코 아 | 천개 | 전자코일을 소재로 한 전자부품 |
| 8342300 | 웨 라이트마그네트 | M/T | 자기능력을 갖춘 전자부품 |
| 8342400 | 소 형 모 터 | 천개 | 약전(보통 1kw이하)에 쓰이는 전자부 품 |
| 8342410 | 직 류 소 형 모 터 | 천개 | |
| 8342420 | 교 류 소 형 모 터 | 천개 | |
| 8342500 | 수 정 진 동 자 (水晶振動子) | 천개 | 수정의 진동현상을 응용한 것으로 주파 수변동을 줄여서 발진주파수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전자부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녹음기 등 오디오용제품 |
| | | • VCR 등 비디오용제품 |
| | | • 컴퓨터 등 산업용 제품 |
| ○ 전기 콘센트는 제외 | | |
| ○ 전기스위치는 제외 | | |
| | 페놀수지, 절연지, 동박 페놀수지, 절연지, 동박 | • 인쇄회로기판 • 가정용기기제품 (TV, VTR, 라디오등) • 산업용기기제품 (컴퓨터 교환기등) |
| | 전자코일, 산화철 | |
| | 산화철 | |
| | | 전자기기용, 장난감용 |
| | 수정 | 송수신기, 측정기등에 사용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42600 | 로 드 안 테 나 (Rod 안 테 나) | 천 개 | 로드 (Rod) 형 안테나, 전자기기용 부착 사용 |
| 8390100 | 통 신 선 및 케 이 블 | M/T | 통신용 절연선 |
| 8390200 | 전 력 선 및 케 이 블 | M/T | 전력용절연선 (강전용) |
| 8390300 | 마 그 네 트 선 | M/T | 절연물질 (에나멜등)로 피복한 절연선 (약전용) |
| 8390400 | 백 열 전 구 | 천 개 |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발광토록 한 전구 |
| 8390500 | 형 광 전 구 (螢 光 電 球) | 천 개 | 아아크방전 (수은증기)에 의해 생기는 자외선으로 유리관안쪽의 형광물질을 자 극하여 빛을 내제한 전구 |
| 8390600 | 장 식 용 전 구 | 천 개 | 주로 착색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전구 |
| 8390700 | 축 전 지 (蓄 電 池) | 개 | 화학적 변화에 의한 전류의 충전, 재생 기능을 갖춘 전지, 건전지와 구분되는 2차전지 |
| 8390800 | 건 전 지 | 천 개 | |
| 8390900 | 형 광 등 | 개 | 형광전구를 부착 가능토록 한 장치물 |
| 8391000 | 차량용조명및 신호등 | 천 개 | |
| 8391010 | 전 조 등 | 천 개 | 자동차 전면에 있는 헤드라이트 |
| 8391020 | 경 광 등 및 기 타 | 천 개 | 리어등, 신호등, 경보등, 실내등 포함 |
| 8391100 | 소 켓 트 | 천 개 | 전구를 끼워 전류의 흐름을 연결가능토 록한 장치물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 나동선 | 통신기기용 |
| | 나동선 | 전력송전 및 배전용 |
| ○ 권선도 포함 조사 | 나동선 | 전자기기용 |
| | 유리, 필라 멘트 | |
| | 유리관 | |
| ○ 착색유리가 아닌 장식용 제품도 포함 | | |
| | | 차량용 |
| | | |
| | 등안정기 | |
|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391200 | 스 위 치 | 천 개 | |
| 8391210 | 커버나이프 스위치 | 천 개 | |
| 8391220 | 옥내용 소형스위치 | 천 개 | |
| 8391230 | 전자기기용 및 기타 | 천 개 | |
| 8391300 | 절연코드 및 코드셋트 | K M | 각종 전기기기용에 쓰이는 절연선 (전기기기용 및 배선용) |
| 8391409 | 콘 센 트 | 천 개 | 전기배선기구 |
| 8391509 | 프 러 그 | 천 개 | |

소분류 384. 운수장비 제조업

1. 운수장비 제조업은 사람이나 물품을 장거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탈환으로 크게는 육상용과 해상용 그리고 항공용으로 분리될 것이다. 이를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 1) 3841, 선박건조 수선업
- 2) 3842, 철도장비 제조업
- 3) 3843, 자동차 제조업
- 4) 3844,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 5) 3845,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 6) 3846, 달리분류되지 않는 운수장비 제조업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 | |
| | | |
| | | |

2. 선박 및 철도차량 제품의 조사

선박 및 철도차량의 조사는 조사표(1)에 의해서 여타품목과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85년 기준의 조사부터는 독립된 조사표에 수주량,진척량, 수주잔량, 완성기준의 당일생산량(척)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니 유의한다.

3. 동일 사업체에서 여러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시에는 합산 또는 누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4. 차량용 부품은 종전의 조립금속 제품이나 기계제조업에서 이동하여 온 제품이 많으므로 유의할것 (예 : 자동차용 방열기, 자동차용 중판스프링, 변속기, 피스톤, 피스톤링 등)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410100 | 선박용내연기관 (船舶用內燃機關) | HP | 선박용의 엔진. 실린더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를 바꾸어 축을 움직이는 선박용 원동기. |
| 8410200 | 철강유조선 (鐵鋼油槽船) | G/T | 원유등의 수송을 위한 선박. (Tanker) |
| 8410300 | 일반화물선 (一般貨物船) | G/T | 일반화물을 운반할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
| 8410400 | 특수화물선 (特殊貨物船) | G/T | 특수한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할수 있게 특수형태로 건조된 선박 |
| 8410500 | 비상업용특수선박 (非商業用特殊船舶) | G/T |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예인선, 쇄빙선, 시추선, 케이블선, 준설선, 기중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등의 비상업용 선박. |
| 8410600 | 철강어선 (鐵鋼漁船) | G/T | 각종의 철강어선.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선박용 디젤기관 및 소옥기관 포함. | | |
| | | 원유, 정유운반선 |
| ○ 다목적 화물선 (석탄, 곡물, 광물, 목재 등 운반용선박), 바지선, 콘테이너선, 자동차전용선 포함. | | |
| ○ 화학제품 및 가스운반선, 냉동선, LPG 운반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 | |
| × 비상업용선박인 예인선, 시추선, 오물수거선, 기상관측선, 소방선등은 제외 | | |
| × 공장선 및 군함, 잠수함 등 군사용 제외 | | |
| ○ 부유생선가공선, 공장선, 포경선 포함 × 기타 재질어선은 제외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410700 | 합 성 수 지 선 (合成樹脂船) | G/T | 강화 플라스틱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으로 만든 선박. |
| 8410800 | 선 박 해 체 업 (船舶解體業) | L.D.T | 노후화된 고선박을 구입하여 고철 또는 철근소재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체하는 업. |
| 8410909 | 목 선 | G/T | 목재로 만든 선박 |
| 8420100 | 디 젤 기 관 차 | 량 | 디젤기관을 이용한 동력차. |
| 8420200 | 전 등 차 | 량 | 전력을 받아 모타의 움직임을 이용한 동력차. |
| 8420300 | 여객차및수하물차 (旅客車및手荷物車) | 량 | 자체동력이 없어 끌려다니는 열차로 여객을 위한 여객차와 수하물을 실는 열차. |
| 8420400 | 화 차 (貨車) | 량 | 화물을 전용으로 싣기위해 제작된 열차 |
| 8420500 | 철 도 차 량 부 품 (鐵道車輛部品) | 백만원 | 철도차량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부품. |
| 8420609 | 철 도 차 량 료 | 개 | 열차의 바퀴. |
| 8420709 | 광 차 | 량 | 광산에서 광석을 갱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동력이 없는 궤도차량 |
| 8430100 | 소형 승용 차 | 대 | 배기량 1,400 cc 이하의 승용차. |
| 8430200 | 중형 승용 차 | 대 | 배기량 1,900 cc 이하의 승용차. |
| 8430300 | 대형 승용 차 | 대 | 배기량 1,901 cc 이상의 승용차. |
| 8430400 | 지 프 형 승용차 | 대 | 지프 (Jeep)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FRP 어선, FRP보트 포함. | | |
| × 군사목적용은 제외 | | |
| ※ L.D.T : 경하배수량 (선박내의 물을 뺀 중량) → 화물을 적재않은 상태의 실지 중량톤) | | |
| | | |
| | | |
| | | |
| ○ 수화물차, 침대차, 식량차 포함. | | |
| ○ 무개차, 평저차, 유개차, 유로차, 냉장차등 포함. | | |
| × 내장재 (의자, 에어컨등)와 철도차량류 제외. | | |
| × 윤심제외 | | |
| × 광차로 끄는 광산의 기관차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430500 | 소 형 버 스 | 대 | 25인승 미만의 버스 |
| 8430600 | 일 반 버 스 | 대 | |
| 8430700 | 고 속 형 버 스 | 대 | 고속도로용의 고속엔진을 부착한 버스. |
| 8430800 | 소 형 트 럭 | 대 | 1/2톤이상 4톤미만의 트럭. |
| 8430900 | 중 형 트 럭 | 대 | 4톤이상 8톤미만의 중형트럭. |
| 8431000 | 대 형 트 럭 | 대 | 화물운반용의 8톤 이상의 트럭. |
| 8431100 | 특 장 차 (特 裝 車) | 대 |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차량. |
| 8431200 | 자 동 차 용 내 연 기 관 (自 動 車 用 內 燃 機 關) | 대 |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등 각종차량의 내연기관. |
| 8431300 | 자 동 차 용 기 관 부 품 | 백만원 | |
| 8431310 | 기 화 기 | 백만원 | 엔진의 운전상태에 따라 공기와 가솔린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고 동시에 미립화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부품. |
| 8431320 | 피 스 톤 | 백만원 | 차량엔진의 기통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고온고압가스에서 발생하는 힘을 축(크랭크축)에 전달하는 부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봉고차(9인승이상 포함) 및 마이 크로 버스 포함. | | |
| ○ 시내 및 시외버스 포함. | | |
| ○ 6인승이하 봉고형 밴트럭(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만든 차량) 및 농촌형 다목적 트럭 포함. | | |
| | | |
| ○ 병원차, 구난차, 콘크리트 믹서차, 위생차, 병원차, 방송차, 은행차, 장 의차, 급수차, 유조차, 냉동차, 트럭 트랙터 포함. | | |
| × 무동력 트럭 트레일러 제외. | | |
| ○ 자동차용만 조사. | | |
| ○ 자동차용만 조사.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431330 | 피 스톤 링 | 백만원 | 실린더와 피스톤사이의 공간을 밀폐하기 위해 피스톤에 끼우는 등근대. |
| 8431340 | 기타기관용부품 | 백만원 | |
| 8431400 | 변 속 기 (變 速 器) | 대 | 일명 트랜스 미션. 차량엔진의 회전수를 변경하여 차축으로 전달하는 기어변속장치. |
| 8431500 | 크랭크 샤프트 | 개 |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엔진의 출력을 외부로 전달하고 동시에 흡기, 압축, 배기의 각 행정에서 역으로 피스톤과 실린더에 운동을 전달하는 엔진부의 주제품. |
| 8431600 | 클러치 디스크 | 개 | 크랭크 샤프트로 부터의 회전력을 외부의 변속기로 전달하는 원형의 강판으로 된 동력전달장치 부품. |
| 8431700 | 시 동 전 동 기 (始動電動器) | 대 | 차량의 최초시동을 위하여 전지(Battery)에 의해 구동되는 전동기. |
| 8432100 | 자동차차체부품 | 백만원 | 자동차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구동부(엔진, 미션, 차축, 차륜등)를 고정시켜주는 틀(뼈대)과 사람이 탈수 있거나 화물을 싣을수 있도록 된 부분의 부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p>○ 기화기, 피스톤, 피스톤링을 제외한 기관용 부품을 조사.</p> <p>× 크랭크 샤프트는 별도조사.</p> | | |
| <p>○ 자동차용만 조사.</p> | | |
| <p>○ 자동차용만 조사.</p> | | |
| <p>○ 자동차용만 조사.</p> <p>× 클러치 카바 제외.</p> | | |
| <p>○ 자동차용만 조사.</p> | | |
| <p>○ 자동차용만 조사.</p> <p>× 플라스틱부품, 유리등 비금속 제품 제외.</p>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432200 | 브레이크조직 | 백만원 | 주행 중의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키고 동시에 주차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동장치. |
| 8432300 | 조향장치 (調向裝置) | 백만원 |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바꾸어 주는 장치. |
| 8432400 | 차량용스프링 | M/T | 자동차의 진동 및 충격을 완화시키는 현가장치 부품. |
| 8432410 | 차량용코일스프링 | M/T | 코일모양의 스프링 |
| 8432420 | 차량용중판스프링 | M/T | 띠(잎: leaf)모양의 스프링. |
| 8432500 | 자동차륜 (自動車輪) | 개 | 자동차의 타이어를 지지하는 부분(rim)과 바퀴를 허브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바퀴. |
| 8432600 | 차축 (車軸) | 개 | 차륜회전의 중심이 되는 축. |
| 8432700 | 자동차용방열기 (自動車用放熱器) | 개 |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는 장치. |
| 8440100 | 자전거 (自轉車) | 대 | 각종용도(아동용, 학생용, 성인용, 경기용)의 이륜자전거 또는 자전거 차체. |
| 8440200 | 자전거부품 | 백만원 | 자전거차체 및 자전거 림을 제외한 자전거 부품. |
| 8440300 | 모터싸이클 | 대 | 49 cc 이상 이륜 및 삼륜오토바이 |
| 8440400 | 모터싸이클부품 | 백만원 | 모터싸이클용 기관을 제외한 각종 모터싸이클 부품을 조사.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자동차용만 조사. | | |
| ○ 자동차용만 조사. | | |
| ○ 자동차 및 철도차량용 스프링을 조사. ----- ----- | | |
| ○ 자동차용만 조사. | | |
| ○ 후부차축, 앞부차축, 전달차축을 각 각 조사. | | |
| ○ 엔진냉각용 방열기만 조사. ----- × 차량내부 난방용 방열기 제외. | | |
| ○ 자전거 차체만 생산하는 업체도 완제품으로 간주하여 조사. | | |
| | | |
| × 모터 스쿠터는 제외. | | |
| | | |

소분류 38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510100 | 1 회 용 주 사 기 (1 回 用 注 射 器) | 천 개 | |
| 8510200 | 수액 및 수혈셋트 (輸 液 및 輸 血 셋 트) | 개 | 영양제 주입 및 수혈을 위한 줄 및 그 세트를 말함 |
| 8510300 | 치 과 용 진 료 대 (齒 科 用 診 療 臺) | 대 | 환자가 걸터앉아 head rest 에 후두부를 대고 구강치료를 받는 치과치료 의자 |
| 8510409 | 치 과 기 공 품 | 백만원 | |
| 8520100 | 광 섭 유 (光 纖 維) | Km | MCVD (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기상증착법 및 VAD Vapor phase axial deposition) 기상축부법으로 만든 석영글라스파이버, 다성분글라스파이버, 복합재료파이버, 플라스틱파이버 등의 섬유를 말함. |
| 8520200 | 광 섭 유 케 이 블 | Km | 광섬유를 피복하여 만든 선 및 케이블 |
| 8520300 | 광 학 렌 즈 | 개 | 광학유리로 제조된 각종 용도의 렌즈를 말함 (대물렌즈, 거리측정용 렌즈 등) |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left margin, including a large signature and some illegible scribbles.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치료대 (dental chair), 치과용유닛 (dental unit), chair unit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시멘트 인조치아 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영글라스파이버, 다성분글라스파이버, 복합재료파이버, 플라스틱 파이버 등 | SiO_2, GeO_2 P_2O_5, B_2O_3 $Na_2O, B_2O_3,$ CaO, TiO_2 플라스틱 그레이트 폴리스티롤 실리콘 등 | 일반통신용 광에너지 전송용 영상정보 전송용 |
| | 광섬유 | 광통신시스템 계측시스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안경, 현미경, 망원경, 카메라용 렌즈 포함 × 안경용 렌즈, 콘택트렌즈 제외 | 광학유리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520400 | 안 경 렌 즈 (眼 鏡 렌 즈) | 개 | |
| 8520500 | 사 진 기 | 대 | |
| 8520600 | 전 자 복 사 기 (電 子 複 寫 機) | 대 | |
| 8520700 | 현 미 경 (顯 微 鏡) | 백만원 | |
| 8520710 | 복합광학현미경 | 백만원 | 대물렌즈, 접안렌즈, 조명장치로 되어있어 극히 미세한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거 나 촬영하는 광학기기 |
| 8520720 | 전자및양자현미경 | 백만원 | 회절 장치, 광선대신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광학현미경과 구별 |
| 8520800 | 안 경 테 | 천 개 | 금속 및 셀룰로이드판, 아세테이트판 등 으로 만든 각종 형태의 안경용 테 |
| 8520900 | 쌍 안 경 (雙 眼 鏡) | 개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렌즈 및 플라스틱렌즈 포함 (선그라스렌즈 포함) × 콘택트, 하드, 소프트렌즈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사진기 및 폴로라이드 사진기 포함 × TV, VTR, 영화촬영 카메라는 제외 용 카메라는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사기기 제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현미경, 금속현미경, 줌 (Zoom) 현미경, 배양, 수술현미경, 顯微分光 光度計, 工具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光電현미경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그라스테 포함 교정용 안경테 포함 | 철선, 황동 동선, 셀룰 로이드판 P E수지 | |
| 오페라글라스 (Opera grass) 프리즘 쌍안경 대형 쌍안경 (架臺에 부착) 등 | 렌즈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8530100 | 손 목 시 계 | 개 | 기계식 및 전자식 (디지털, 아날로그) |
| 8530200 | 벽 시 계 (壁時計) | 개 | 기계식 및 전자식 |
| 8530300 | 탁 상 시 계 | 개 | 기계식 및 전자식 |
| 8530400 | 손목시계케이스 | 개 | |
| 8530500 | 시계부품및반제품 | 백만원 | 시계기동부, 문자판 및 일부 시계부분이 결합된 반제품등 모든 시계 부품 |
| 8530609 | 큰시계용케이스 | 개 | |
| 8540100 | 온도계 및 체온계 (溫度計 및 體溫計) | 개 | |
| 8540200 | 수 도 미 터 | 개 | 수도물 소비량 측정계기 |
| 8540300 | 적 산 전 력 계 (積算電力計) | 대 | 전력소비량 측정계기 (일명 전기계량기) |
| 8540400 | 전 자 계 측 기 (電子計測機) | 백만원 |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등의 전기량을 지침이 가리키는 눈금값으로 나타내는 계기 및 이들을 변환할 수 있는, 물리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경기기록용 (stop watch), 어린이용 플라스틱 시계 제외 | 스텐레스판 시계케이스 황동판 | |
| | 알루미늄판 스텐레스판 시계케이스 황동판, 판재 | |
| | // | |
| × 플라스틱 시계케이스는 제외 | | |
| × 휴대용 시계케이스, 큰시계용 시계 케이스 및 플라스틱·목제품 제외 | | |
| ○ 탁상시계 및 벽시계용 시계케이스 | | |
| × 습도계, 기압계, 비중측정계 및 산 업용, 물리, 화학분석용 제외 | | |
| ○ 소형, 대형도 포함 조사 | | |
| × 개스미터기 제외 | | |
| ○ 교류 및 직류 적산전력계 포함 | 알루미늄판 동 선 규소강판 철 판 유 리 | |
| ○ 지시계측기, 기록계측기 및 전자용 계측기를 조사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량과 화학량의 시간적 변화를 지시 또는 기록지 위에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계기 |
| 8540509 | 측 량 자 | 개 | 길이측정에 사용되는 자 |

중분류 39 . 기타제조업 소분류 390 . 기타 제조업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9010100 | 귀석 및 반귀석 (貴石 및 半 貴石) | 백만원 |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오팔 등 원석을 가공한 것 |
| 9010200 |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장신구 | 백만원 | 가공한 귀석, 반귀석 및 귀금속으로 만든 완제품 (반지, 목걸이, 브로찌, 팔찌 등) |
| 9010300 | 모 조 장 신 구 (模 造 裝 身 具) | 백만원 | 귀석, 반귀석, 귀금속이 아닌 기타 재료로 만든 치장용품 |
| 9010400 | 금 속 주 화 (金 屬 鑄 貨) | M/T | 우리나라 화폐 (주화) 를 제외한 외국 주화, 기념주화, 메달, 토큰 등 |
| 9020100 | 피 아 노 | 대 | |

| 조 사 범 위 | 원재료 | 용 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텐레스 줄자 섬유 줄자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용 자는 제외 | 스텐레스 섬유 | |

| 조 사 범 위 | 원재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 수정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금, 백금, 은, 금, 은합금 제품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은, 동 및 각종 합금제품 포함 ○ (국내용 중 기념주화, 메달, 토큰등 포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피아노 포함 | 판재, 합판 각재, 탄소 강, 주철,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9020200 | 기 타 | 대 | |
| 9020300 | 전 자 현 악 기 (電 子 絃 樂 器) | 대 | 현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픽업을 가지며 앰프로 증폭하여 스피커에서 음을 내는 악기이다. |
| 9020409 | 오 르 간 | 대 | |
| 9030100 | 라 켓 | 개 | |
| 9030200 | 대 형 공 | 개 | |
| 9030300 | 소 형 공 | 백만원 | |
| 9030400 | 야 구 장 갑 (野 球 장 갑) | 개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동선, 철선 황동알루미늄 합성수 지 등 | |
| × 전자기타 제외 | 합판, 각재 판재, 철선 나이론 줄 | |
| ○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크로마 하아프 등 포함 | | |
| ○ 전자오르간 포함 × 파이프 오르간 제외 | | |
| ○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만 조사 | 금속, 플라 스틱 목재 | |
| ○ 농구, 축구, 배구, 송구, 수구, 미식축 구, 럭비공 등을 포함 | | |
| ○ 야구, 테니스, 탁구공 × 골프공 제외 | | |
| | 소가죽, 말 가죽, felt (양모, 牛 毛) 합성실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9030500 | 뉡 시 대 | 개 | |
| 9030600 | 뉡 시 용 립 | 개 | ○ 뉡시줄을 감거나 펴는 용구 |
| 9030709 | 어린이용놀이터장비 | 백만원 | |
| 9030809 | 건강및미용체력기구 | 백만원 | |
| 9030909 | 뉡 시 용 부 속 장 구 | 백만원 | 뉡시줄, 뉡시바늘, 찌, 납봉, 콜러 뉡시끝 등 |
| 9040100 | 인 형 및 장 난 감 | 백만원 | |
| 9040110 | 인 형 | 백만원 | 봉제인형(사람 및 동물형) |
| 9040120 | 어 린 이 승 용 물 | 백만원 | 삼륜차, 유모차, 보행기, 족담식 자동차등 |
| 9040130 | 기 타 장 난 감 | 백만원 | 과학용, 동력식, 무기류, 조립식, 모형, 악기 등 |
| 9050100 | 조 화 및 유 사 제 품 (造花및類似製品) | 백만원 | 각종조화 및 유사제품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대나무 및 금속제의 낚시대와 플라스틱제 낚시대 포함 | 글라스파이버 (유리섬유) 합성수지 카본 | |
| | | |
| ○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대 등 | | |
| ○ 러닝머신, 에르고미터 (미용자전거) 로잉머신, 트위스트머신, 벨트 바이브레이터 레크앤드의 익스텐션머신 등 | | |
| × 낚시대 및 릴 제외 낚시용의복 및 가방, 신발등 제외 | | |
| × 천을 입히지 않은 목각, 금속, 플라스틱등의 인형 및 동물형 제외 | 합성섬유직물, 면직물, 플라스틱등 | |
| × 인형 및 어린이 승용물 제외 | | |
| ○ 제지조화, 리본플라워, 플라스틱플라워 폴리에스테르 실크플라워, 아메리칸플라워, 인조수목, 인조열매등 포함 |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9050200 | 가 발 (假 髮) | 천 개 | |
| 9050309 | 금속장식공예품 | 백만원 | 주물을 떠서 만든 각종 모형의 장식품 |
| 9090100 | 볼 펜 | 천 개 | |
| 9090200 | 연 필 | 천 타 | |
| 9090300 | 크레용 및 파스텔 | 백만원 | |
| 9090400 | 마킹 펜 (marking pen) | 천 개 | |
| 9090500 | 샤프 연 필 | 천 개 | |
| 9090600 | 철제우산 및 양산 (鐵製雨傘 및 陽傘) | 천 개 | |
| 9090700 | 개인위생용 솔 (個人衛生用솔) | 백만원 | 여자용 헤어브러쉬 (Hair Brush) 및 화장용 솔 (눈, 입술, 손톱솔 등)만 조 사 |
| 9090800 | 칫 솔 | 천 개 | |
| 9090900 | 영구 및 반영구 라이타 | 개 | 금속제 및 플라스틱제를 불문하고, 연료를 재충전하여 계속 쓸수 있는 것.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인조가발 및 합성가발 조사 | | |
| | 황동 심주 등 | |
| ○ 금속제, 플라스틱제의 볼펜을 조사 | | |
| ○ 색연필 포함 | | |
| ○ 크레용 및 파스텔만 조사 | | |
| ○ 펄트펜, 사인펜 (컬러펜, 언더라인펜) 플라스틱펜 (플러스펜, 붓펜) 형광펜, 컴퓨터용펜, 파스펜등 조사 | | |
| × 샤프 연필심 제외 | | |
| ○ 철제우산 및 양산의 완제품 및 유리섬유 (글라스파이버) 우산·양산 조사 ----- × 플라스틱 및 목재살대 우산 제 외 | 폴리에스테르, 실크, 비닐, 황동 파이프, 알 루미늄파이 프 구리선 순테인레스 유리섬유 (글라스파 이버) | |
| × 옷솔, 구두솔, 면도솔, 동물용솔 제외 | | |
| | 합성수지 | |
| ○ 전자 및 장식용라이터 포함 | 황동판, 철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 | | |
| 9091000 | 일 회 용 라 이 타 | 개 |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것 |
| 9091100 | 담 배 필 터 | M/T | |
| 9091200 | 지 퍼 | Km | |
| 9091300 | 단 추 천 개 | | 모든 소재의 단추 |
| 9091400 | 바 늘 | 백만원 | 직조, 방적, 미싱, 편직용 바늘 및 침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판, 알미늄 판, 규소강 판, 동선 | |
| | 플라스틱 | |
| | 아세 테이트 섬 유 | |
| ○ 금속제, 플라스틱, 나일론 지퍼 모두 포함 | 알미늄, 구리, 니켈,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플라스틱 | |
| ○ 금속제, 플라스틱제, 나일론 지퍼 모두 포함 ----- × 후크 앤드 아이 (Hook & eye) 후크 앤드 루프 (Hook & loop fastener) 제외 | | |
| ○ (직조, 방직, 미싱, 편직)용 바늘 및 침, 손바늘 재봉바늘 포함 | 대강, 강선 강철선, 고탄소강선 연선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9091500 | 그 립 물 감 | 백만원 | |
| 9091609 | 만 년 필 천 개 | | |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화물감, 수채그림물감(포스터칼라, 템페라칼라), 아크릴칼라 등 포함 | 천연수지, 천연유지, 합성수지 | |
| | 황동판 스텐판 P.V.C 수지 | |

대분류 4. 전 기 업

1. 단위 : 1 GWH = 1,000 MWH = 1,000,000 KWH

2. 전기업은 한전 및 기타전력 생산업체의 전력생산량과 판매량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한다.

○ 지정품목 분류표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 위 | 품목개념 및 품질규격 |
|---------|---------|-----|-------------|
| 9999900 | 발전량및판매량 | GWH | |

3. 판매량은 발전량에서 송변전단에서 발생한 손실량을 뺀것으로 한다.

- 판매량 = 발전량 (생산량) - 송변전손실량 (과부족)

| 조 사 범 위 | 원 재 료 | 용 도 |
|---------|-------|-----|
| | | |

Ⅷ. 지정원재료 분류표

1. 유의사항

- (1) 원재료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원재료명의 해설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제품조사에 준하여 조사
- (2) 면 사 : 순면사, 면혼방사를 포함
- (3) 소모사 : 순소모사, 혼방소모사를 포함
- (4) 화학섬유사 : 합성섬유와 재생섬유로 구분조사하고 합성섬유사는 합성섬유방직사, 혼방합성섬유방직사, 합성섬유면사를 포함하고 재생섬유방직사는 아세테이트사(반합성섬유사), 재생섬유방직사, 혼방재생섬유방직사, 재생섬유 연사를 포함
※ 상기 품목외에도 모든 絲는 혼방된 것도 포함 조사하며 연사도 포함.
- (5) 면직물 : 순면직물과 혼방면직물을 구분하여 조사
- (6) 화학섬유직물 : 재생섬유직물, 합성섬유직물을 분리하여 조사
- (7) 혼방직물 : 면혼방직물, 모혼방직물, 혼방합성직물, 혼방재생직물, 혼방견직물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 (8) 특수강 : 철강은 강도를 기준으로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구분되는데 탄소강중에서 고탄소강과 합금강 중에서 고합금강을 특수강으로 조사, 용도별로 구분되는 것중 탄소공구강, 고속도강, 내열내식강 등이 특수강이며 이는 각종절삭공구베어링, 스프링과 같은 기계의 특수품목, 피아노선, 용접봉심선, 자석등에 사용됨. 단, 합금강 중의 저합금강은 저탄소강과 같이 특수강에서 제

- 외하며, 특수강으로 취급되는 고합금강이라도 규소강판, 스테인
레스판과 같이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
- (9) 황동 : 황동은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과 아연 합금이다. 일명 놋쇠
또는 진유라고도 하며 과(塊), 판(板), 봉(棒)을 포함하여
조사
- (10) 알루미늄 (0.2 mm 미만) : 알루미늄박은 제 1차 비철금속제품의 알루미늄박판을
말함.
- (11) 알루미늄판 (0.2 mm 이상) : 알루미늄박은 제외
- (12) 인청동판 : 동에 인과 주석을 입힌 합금판으로 인 (10 - 15 %) 과 주
석 (3 - 7 %) 이 합금된 철판
- (13) 비철금속 제품중 동, 알루미늄, 아연 등이 서로 합금된 것은 함유량이
가장 큰 제품속에 포함.
- (14) P.C.B원판 (Printed Circuit Board) : 트랜지스터나 T.V에 사용되는
회로판으로 표면은 동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어-스 (earth) 역할을
한다.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격은 1 m × 1 m 인 것을
기준으로 조사
- (15) 강반성품은 스톱, 비렛트, 쉬트바 (Sheetbar), 브룸을 포함 조사하
고 열연대강 (핫코일) 과 냉연대강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
- (16) 무연탄, 원료탄 (유연탄), 경유, 중유, B - C유, 코크스의 사용량중 연
료로 사용한 량은 연료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란에 기입.

2. 광공업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대분류 2. 광업 | | | 706 | 설 탕 | ㄱ |
| 522 | 갱 목 | mm | 707 | 소 기름(우지) | ㄱ |
| 778 | 폭 약 | kg | 708 | 경 화 유 | ㄱ |
| | | | 780 | 향 료 | kg |
| 대분류 3. 제조업 | | | 818 | 통 조 립 관 | 천개 |
|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 | 313. 음료품제조업 | | |
|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 | | 501 | 보 리(대 맥) | ㄱ |
| | | | 502 | 밀 (소 맥) | ㄱ |
| 502 | 밀 (소 맥) | ㄱ | 504 | 고 구 마 | ㄱ |
| 503 | 콩 (대 두) | ㄱ | 517 | 호 프 | kg |
| 504 | 고 구 마 | ㄱ | 518 | 당 밀 | ㄱ |
| 505 | 소 맥 피 | ㄱ | 701 | 보 리 쌀(정 맥) | ㄱ |
| 506 | 탈 지 강 | ㄱ | 702 | 밀 가 루(소맥분) | ㄱ |
| 507 | 콩 깻 목(대두박) | ㄱ | 703 | 옥 수 수(가루포함) | ㄱ |
| 518 | 당 밀 | ㄱ | 704 | 녹 말 가 루(전 분) | ㄱ |
| 519 | 생 우 유 | ㄱ | 706 | 설 탕 | ㄱ |
| 525 | 어 개 류 | ㄱ | 710 | 주 정 | kl |
| 702 | 밀 가 루 | ㄱ | 711 | 콜 라 원 액 | l |
| 703 | 옥 수 수(가루포함) | ㄱ | 712 | 엿 기 림(맥 아) | ㄱ |
| 704 | 녹 말 가 루(전분) | ㄱ | 749 | 탄 산 가 스 | kg |
| 705 | 원 당 | ㄱ | 780 | 향 료 | kg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90 | 유 리 병 | 천 개 | 717-1 | 채 생 섬 유 사 (아세테이트포함) | % |
| 877 | 쌀 (현미, 백미) | kg | 717-2 | 합 성 섬 유 사 | % |
| 314. 담배제조업 | | | 718 | 생 사 | kg |
| 516 | 잎 담 배 | % | 726 | 화 학 펄 프 | % |
| 738 | 은 박 지 | % | 752 | 카 프 로 락 담 | % |
| 740 | 휠 타 | % | 768 | 폴 리 에 치 렌 수 지 | kg |
| 869 | 권 련 지 | kg | 770 | 폴 리 프 로 피 렌 수 지 | kg |
| 중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 | | 771 | 합 성 섬 유 (튼, 실, 화이버) | kg |
| 321. 섬유제조업 | | | 772 | 재 생 섬 유 (SF면, 아세테이트섬유포함) | kg |
| 508 | 원 면 | % | 774 | AN 모 노 마 | % |
| 509 | 누 에 고 치 (잠견) | kg | 775 | 에 치 렌 그 리 골 | % |
| 510 | 지 부 양 모 | kg | 776 | D. M. T | % |
| 511 | 세 척 양 모 | kg | 876 | 나 이 론 수 지 | kg |
| 512 | 아 마 | kg | 880 | 부 잠 사 | kg |
| 513 | 아 바 카 | kg | 881 | 견 방 사 | kg |
| 515 | 모 설 | kg | 882 | 어 망 사 | kg |
| 713 | 양 모 톱 | kg | 899 | T. P. A | % |
| 714 | 면 사 | kg | 322. 의복제조업 | | |
| 715 | 소 모 사 | kg | 719 | 순 면 직 물 | m ² |
| 716 | 방 모 사 | kg | 720 | 순 소 모 직 물 | m ² |
| | | | 721 | 순 방 모 직 물 | m ²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22-1 | 재 생 섬 유 직 물 (아세 테 이 트포 함) | m ² | 521 | 원 목 | m ² |
| 722-2 | 합 성 섬 유 직 물 | m ² | 758 | 호 르 마 린 | M ² |
| 723-1 | 혼 방 재 생 섬 유 직 물 (아세 테 이 트포 함) | m ² | 759 | 메 타 늘 | M ² |
| 723-2 | 혼 방 합 성 섬 유 직 물 | m ² |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 | |
| 723-3 | 혼 방 면 직 물 | m ² | 727 | 각 재 | m ² |
| 723-4 | 혼 방 모 직 물 | m ² | 728 | 판 재 | m ² |
| 723-5 | 혼 방 견 직 물 | m ² | 729 | 합 판 | m ² |
| 724 | 소 가 죽 | m ² |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제조업 | | |
| 875 | 순 본 견 직 물 | m ² |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목피제품제조업 | | | 512 | 아 마 | kg |
| 520 | 원 피 | 매 | 514 | 갈 저 | kg |
| 724 | 소 가 죽 | m ² | 521 | 원 목 | m ² |
| 898 | 합 성 피 혁 | m ² | 524 | 고 지 | M ² |
| 324. 신발제조업 | | | 624 | 활 석 분 | M ² |
| 724 | 소 가 죽 | m ² | 702 | 밀 가 루 | M ² |
| 898 | 합 성 피 혁 | m ² | 714 | 면 사 | kg |
|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 제품제조업 | | | 725 | 쇄 목 펄 프 | M ² |
|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 | | 726 | 화 학 펄 프 | M ² |
| | | | 731 | 백 상 지 | M ² |
| | | | 732 | 중 질 지 | M ²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33 | 크라프트지 | % | 618 | 석회석 | % |
| 735 | 박엽지 | kg | 741 | 황산 | % |
| 736 | 판지 | % | 742 | 염산 | kg |
| 737 | 골판지원지 | % | 743 | 카바이드 | % |
| 744 | 가성소다 | % | 744 | 가성소다 | % |
| 751 | 유산반토 | kg | 747 | 소다회 | % |
| 817 | 알미늄박 | kg | 748 | 암모니아 | % |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 | | 750 | V. C. M | % |
| 730 | 신문용지 | % | 752 | 카프로락담 | % |
| 731 | 백상지 | % | 753 | 염화카리 | % |
| 732 | 중질지 | % | 754 | 벤젠 | kg |
| 734 | 아트지 | kg | 755 | 톨루엔 | kg |
| 735 | 박엽지 | kg | 756 | 키시렌 | kg |
| 784 | 인쇄잉크 | kg | 758 | 호르마린 | % |
|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759 | 메타놀 | % |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 | 766 | 요소 | kg |
| 614 | 유황 | % | 870 | 에티렌 | % |
| 615 | 인광석 | % | 871 | 프로피렌 | % |
| 617 | 공업염 | % | 872 | 부타디엔 | % |
| | | | 873 | 싸이크로헥산 | kg |
| | | | 788 | 납사 | kl |
| | | | 789 | 코크스 | %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92 | 생 석 회 | % | 763 | 지 방 산 | % |
| | | % | 764 | 스 테 아 린 산 | kg |
| <u>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u> | | | 766 | 요 소 | kg |
| 706 | 설 탕 | % | 777 | 스 치 렌 모 노 마 | kg |
| 707 | 소 기 림 (우지) | % | 779 | 초 안 | kg |
| 709 | 아 마 인 유 | kg | 780 | 향 료 | kg |
| 710 | 주 정 (에타놀) | kg | 781 | 아 연 화 | kg |
| 738 | 은 박 지 | % | 782 | 산 화 티 탄 | kg |
| 741 | 황 산 | % | 790 | 유 리 병 | 천 개 |
| 742 | 염 산 | kg | 872 | 부 타 티 엔 | % |
| 744 | 가 성 소 다 | % | | | |
| 745 | 규 산 소 다 | kg | <u>353. 석유정제업</u> | | |
| 747 | 소 다 회 | % | 603 | 원 유 | kg |
| 748 | 암 모 니 아 | % | | | |
| 754 | 벤 젠 | kg | <u>354. 기타 석유 및 석탄 제품제조업</u> | | |
| 755 | 톨 루 엔 | kg | 601 | 무 연 탄 | % |
| 756 | 키 시 렌 | kg | 602 | 원 료 탄 (유연탄) | % |
| 757 | 알 킬 벤 젠 | kg | | | |
| 759 | 메 타 놀 | % | <u>355. 고무제품제조업</u> | | |
| 760 | 무 스포 탈 산 | kg | 523 | 천 연 (생) 고 무 | % |
| 761 | 염 료 | kg | 714 | 면 사 (면사포) | kg |
| 762 | 그 리 세 린 | kg | 773 | 합 성 고 무 | % |
| | | | 781 | 아 연 화 | kg |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 위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 위 |
|-------------------------------|------------------|-----|------------------------|-------------|----------------|
| 782 | 산 화 티 탄 | kg | 618 | 석 회 석 | ㎏ |
| 783 | 카 본 블 랙 | kg | 620 | 장 석 | ㎏ |
| 883 | 타 이 어 코 드 사 | ㎏ | 621 | 규 사 및 규 석 | ㎏ |
| 884 | 재 생 고 무 | ㎏ | 625 | 형 석 | ㎏ |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628 | 백 운 석 | ㎏ |
| 765 | 가소제 (DOP, DBP 등) | kg | 629 | 파 유 리 | ㎏ |
| 767 | P. V. C 수 지 | kg | 746 | 유산소오다 (망초) | ㎏ |
| 768 | 폴 리 에 치 렌 수 지 | kg | 747 | 소 다 회 | ㎏ |
| 769 | 폴 리 스티 렌 수 지 | kg |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 |
| 770 | 폴 리 프로 피 렌 수 지 | kg | 612 | 점 토 | ㎏ |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 613 | 모 래 | m ³ |
|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 | 618 | 석 회 석 | ㎏ |
| 612 | 점 토 | ㎏ | 619 | 고 령 토 | ㎏ |
| 619 | 고 령 토 | ㎏ | 620 | 장 석 | ㎏ |
| 620 | 장 석 | ㎏ | 621 | 규 사 및 규 석 | ㎏ |
| 621 | 규 사 및 규 석 | ㎏ | 622 | 납 석 | ㎏ |
| 627 | 석 고 | ㎏ | 625 | 형 석 | ㎏ |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 626 | 석 면 | ㎏ |
| 616 | 초 석 | ㎏ | 627 | 석 고 | ㎏ |
| | | | 726 | 화 학 필 프 | ㎏ |
| | | | 739 | 크 라 프 트 지 대 | 천 매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91 | 시멘트 | % | 800 | 주물 | % |
| 797-1 | 붕강 | % | 801 | 선재 | % |
| 797-2 | 철근 | % | 808 | 아연괴 | kg |
| 802 | 철선 | % | 372. 비철금속산업 | | |
| 887 | 자갈 | m ³ | 605 | 동광석 | % |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 | | 606 | 연광석 | % |
| 371. 철강산업 | | | 607 | 아연광석 | % |
| 602 | 원료탄(코크스제조용) | % | 610 | 동실 | kg |
| 604 | 철광석 | % | 611 | 알미늄고철 | kg |
| 608 | 망강광석 | % | 618 | 석회석 | % |
| 609 | 고철 | % | 789 | 코크스 | % |
| 618 | 석회석 | % | 806 | 전기동 | kg |
| 789 | 코크스 | % | 807 | 아연괴 | kg |
| 793 | 선철 | % | 808 | 아연괴 | kg |
| 794 | 강피 | % | 809 | 알미늄괴 | kg |
| 795-1 | 강반성품(스라브, 비래트, 브롬) | % | 874 | 아루미나 | kg |
| 795-2 | 열연대강(핫코일) | % | 888 | 아연설 | kg |
| 797-1 | 붕강 | % | 889 | 아연설 | kg |
| 798 | 중후판 | %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 | |
| 799 | 박판 | %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 | | | 609 | 고철 | % |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 위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 위 |
|-----------|--------------|-----|-------------|--------------|-----|
| 610 | 동 설 | kg | 878 | 합 금 철 | kg |
| 611 | 알 미 늄 고 철 | kg | 879 | 알 미 늄 비 래 트 | kg |
| 789 | 코 크 스 | Mt | 890 | 석 도 철 판 | kg |
| 793 | 선 철 | Mt | | | kg |
| 796 | 형 강 | Mt | 382. 기계 제조업 | | |
| 797-1 | 봉 강 | Mt | 609 | 고 철 | |
| 798 | 중 후 판 | Mt | 610 | 동 설 | Mt |
| 799 | 박 판 | Mt | 789 | 코 크 스 | kg |
| 800 | 주 물 | Mt | 793 | 선 철 | Mt |
| 801 | 선재 (와이어로프) | Mt | 796 | 형 강 | Mt |
| 802 | 철 선 | Mt | 797-1 | 봉 강 | Mt |
| 803 | 강 판 | Mt | 798 | 중 후 판 | Mt |
| 804 | 특 수 강 | Mt | 799 | 박 판 | Mt |
| 806 | 전 기 동 | kg | 800 | 주 물 | Mt |
| 807 | 연 괴 | kg | 801 | 선재 (와이어로프) | Mt |
| 808 | 아 연 괴 | kg | 802 | 철 선 | Mt |
| 809 | 알 미 늄 괴 | kg | 803 | 강 판 | Mt |
| 810 | 황 동 (놋쇠, 진유) | kg | 804 | 특 수 강 | Mt |
| 811 | 알 미 늄 판 | kg | 806 | 전 기 동 | kg |
| 815 | 스 테 인 레 스 판 | kg | 809 | 알 미 늄 괴 | kg |
| 816 | 동 선 | kg | 810 | 황 동 (놋쇠, 진유) | kg |
| 819 | 용 접 봉 | kg | 811 | 알 미 늄 판 | kg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812 | 동 판 | kg | 808 | 아 연 괴 | kg |
| 815 | 스 테 인 레 스 판 | kg | 809 | 알 미 늄 괴 | kg |
| 816 | 동 선 | kg | 810 | 황동 (놋쇠, 진유) | kg |
| 819 | 용 접 봉 | kg | 811 | 알 미 늄 판 | kg |
| 891 | 전 동 기 | HP | 812 | 동 판 | kg |
| 892 | 변 속 기 | 개 | 813 | 인 청 동 판 | kg |
| 893 | 내 연 기 관 | HP | 814 | 규 소 강 판 | M ² |
| 894 | 체 인 | kg | 815 | 스 텐 레 스 판 | kg |
| 895 | 베 아 링 | kg | 816 | 동 선 | kg |
| 896 | 유 압 기 기 | 대 | 817 | 알 미 늄 박 | kg |
| 897 | 주 강 | M ² | 820 | 트 랜 지 스 터 | 천 개 |
| <u>383.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u> | | | 821 | 집 적 회 로 | 개 |
| 523 | 천 연 (생) 고 무 | M ² | 822 | 브 라 운 관 | 개 |
| 767 | P . V . C 수 지 | kg | 823 | P . C . B 원 판 | 매 |
| 773 | 합 성 고 무 | M ² | 824 | 자 석 (마그네트) | 천 개 |
| 798 | 중 후 판 | M ² | <u>384. 운수장비제조업</u> | | |
| 799 | 박 판 | M ² | 796 | 형 강 | M ² |
| 802 | 철 선 | M ² | 797-1 | 봉 강 | M ² |
| 804 | 특 수 강 | M ² | 798 | 중 후 판 | M ² |
| 806 | 전 기 동 | kg | 799 | 박 판 | M ² |
| 807 | 연 괴 | kg | 800 | 주 물 | M ²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802 | 철 선 | ㎏ | 767 | P. V. C 수 지 | kg |
| 803 | 강 관 | ㎏ | 802 | 철 선 | ㎏ |
| 805 | 대 강 | ㎏ | 803 | 강 관 | ㎏ |
| 809 | 알미늄 피 | kg | 810 | 황 동 | kg |
| 819 | 용접 봉 | kg | 815 | 스텐레스관 | kg |
| 825 | 트랜스미션 | 개 | | | |
| 826 | 자동차엔진 | 대 | | 대분류 4. 전기업 | |
| 885 | 타이어 | 본 | | | |
|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 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 | | | ※ <연료 및 전력> | |
| 810 | 황 동 | kg | 901 | 무연탄 및 원료탄 | ㎏ |
| 815 | 스텐레스관 | kg | 902 | 경유 및 중유 | kl |
| | | | 903 | 방카 C 유 | kl |
| | | | 904 | 전 력 | 천KWH |
|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 | | | | |
| 526 | 인 모 | kg | | | |
| 623 | 흑 연 | kg | | | |
| 717-1 | 재생섬유사 (반합성섬유사포함) | ㎏ | | | |
| 717-2 | 합성섬유사 | ㎏ | | | |
| 722-1 | 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직물포함) | m ² | | | |
| 722-2 | 합성섬유직물 | m ² | | | |

부록 1.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 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데니어임.

3) 'S (번수·番數) : 건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840 야드는 1 'S면사의 길이)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560 야드는 1 'S소모사의 길이)

(3) $4,3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 야드는 1 'S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 560 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 / 32 S, 쌍사(雙絲)의 경우는 2 / 32 '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精紡機), 연사기(撚絲機) 등 스피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 정방기는 매일 16 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 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4 파

운드로 생산함.

- 5) D / 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 6) G / 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길이×높이의 f^3 , 100 f^3 를 1 G / T으로 한다.
- 7)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 (1,853 m)를 달리는 속력
- 8) S / 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oot × 1 foo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이다.

[주] 1.1 才 1 처 × 1 처 × 12 처

2.1 石 180 L

3.1 斤 1.3 Lbs

4.1 實 8.2 Lbs

5.1 400 Lbs

6.1 坪 3.3 m^2

7.1 木材 3分板 1 평은 9才

4分板 1 평은 12才

5分板 1 평은 15才

9) R / T (냉동톤) : 1 R / T = 12,000 BTU / H

1 BTU / H : 1 pound의 물을 1°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0) T / H : 물 1 Ton을 1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

11)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박 자체의 무게, 즉 중량톤을 말한다.

부록 2 . 도 량 형

<표 1> 길 이

| 단 위 | mm | cm | m | km | in | ft |
|---------|-----------------|-----------------|---------|--------------------|---------|---------|
| 1 mm | □ | 0.1 | 0.001 | (0.1) ⁸ | 0.03937 | 0.00328 |
| 1 cm | 10 | □ | 0.01 | (0.1) ⁵ | 0.3937 | 0.0328 |
| 1 m | 1,000 | 100 | □ | (0.1) ³ | 39.37 | 3.2808 |
| 1 km | 10 ⁶ | 10 ⁵ | 1000 | □ | 39,370 | 3280.8 |
| 1 in | 25.4 | 2.54 | 0.0254 | 0.000025 | □ | 0.0833 |
| 1 ft | 304.8 | 30.48 | 0.3048 | 0.000304 | 12 | □ |
| 1 yd | 914.4 | 91.44 | 0.9144 | 0.00091 | 36 | 3 |
| 1 mile | - | 160930 | 1609.3 | 1.6093 | 63360 | 5280 |
| 1 尺 (자) | 303.03 | 30.303 | 0.303 | 0.00030 | 11.93 | 0.9932 |
| 1 間 (간) | 1818.2 | 181.82 | 1.818 | 0.0182 | 71.582 | 5.965 |
| 1 町 (정) | 10909.1 | 10909.1 | 109.091 | 0.1090 | 4294.9 | 357.91 |
| 1 里 (리) | - | - | 3927.27 | 3.927 | 154619 | 12885 |
| 1 寸 (치) | 30.303 | 3.0303 | 0.0303 | 0.00003 | 1.1930 | 0.0994 |

환 산 표

| yd | mile | 尺 | 間 | 町 | 里 | 寸 |
|---------|----------|--------|---------|----------|----------|--------|
| 0.00109 | 0.000006 | 0.0033 | 0.00055 | 0.000009 | - | 0.033 |
| 0.0109 | 0.000006 | 0.033 | 0.005 | 0.00009 | - | 0.33 |
| 1.0936 | 0.00062 | 3.3 | 0.55 | 0.009 | 0.00025 | 33 |
| 1093.6 | 0.62137 | 3300 | 550 | 9 | 0.25 | 33000 |
| 0.0278 | 0.000015 | 0.0838 | 0.0140 | 0.0002 | - | 0.8382 |
| 0.3333 | 0.00019 | 1.0058 | 0.1676 | 0.0028 | 0.00008 | 10.058 |
| □ | 0.00057 | 3.0175 | 0.5029 | 0.0083 | 0.0002 | 30.175 |
| 1760 | □ | 5310.8 | 885.12 | 14.752 | 0.4098 | 53108 |
| 0.3314 | 0.0002 | □ | 0.1667 | 0.0028 | 0.00008 | 10 |
| 1.9884 | 0.011 | 6 | □ | 0.0167 | 0.0005 | 60 |
| 119.304 | 0.0678 | 360 | 60 | □ | 0.0278 | 3600 |
| 4295 | 2.4403 | 12960 | 2160 | 36 | □ | 129600 |
| 0.0331 | 0.00002 | 0.1 | 0.01667 | 0.00028 | 0.000008 | □ |

< 표 2 > 부 피

| 단 위 | cm ³ | m ³ | in ³ | ft ³ | yd ³ |
|-------------------|-----------------|--------------------|-----------------|-----------------|-----------------|
| 1 cm ³ | □ | (0.1) ⁶ | 0.06103 | 0.00003 | 0.00001 |
| 1 m ³ | 10 ⁶ | □ | 61027 | 35.3147 | 1.3080 |
| 1 in ³ | 16.3872 | 0.000016 | □ | 0.00057 | 0.00002 |
| 1 ft ³ | 28316.8 | 0.02831 | 1728 | □ | 0.03703 |
| 1 yd ³ | 764511 | 0.76451 | 46656 | 27 | □ |
| 1 gal (美) | 3785.43 | 0.00378 | 231 | 0.1337 | 0.00495 |
| 1 gal (英) | 4545.9 | 0.00455 | 277.42 | 0.1605 | 0.00595 |
| 1 ℓ | 1000 | 0.001 | 61.027 | 0.03531 | 0.0013 |
| 1 合 (香) | 180.39 | 0.00018 | 11.0041 | 0.0066 | 0.00023 |
| 1 升 (되) | 1803.9 | 0.0018 | 110.041 | 0.0637 | 0.0023 |
| 1 斗 (말) | 18039 | 0.01803 | 1100.41 | 0.6371 | 0.0236 |
| 1 石 (섬) | 180391 | 0.1803 | 11004.1 | 6.3704 | 0.2359 |

| gal (美) | gal (英) | ℓ | 合 | 升 | 斗 | 石 |
|---------|---------|---------|---------|---------|---------|----------|
| 0.00026 | 0.00022 | 0.001 | 0.00554 | 0.00055 | 0.00005 | 0.000005 |
| 264.186 | 219.97 | 1000 | 5543.52 | 554.325 | 55.435 | 5.5435 |
| 0.00432 | 0.0036 | 0.01638 | 0.0908 | 0.00908 | 0.00091 | 0.00009 |
| 7.4805 | 6.228 | 28.3169 | 156.966 | 15.6966 | 1.5697 | 0.15697 |
| 201.974 | 168.18 | 764.511 | 4238.09 | 423.81 | 42.381 | 4.2381 |
| □ | 0.8327 | 3.7854 | 20.983 | 2.0983 | 0.2098 | 0.02098 |
| 1.2009 | □ | 4.5459 | 25.206 | 2.5206 | 0.2521 | 0.02521 |
| 0.2642 | 0.21997 | □ | 5.5435 | 0.5544 | 0.0554 | 0.00554 |
| 0.04765 | 0.03968 | 0.18039 | □ | 0.1 | 0.01 | 0.0001 |
| 0.4765 | 0.3968 | 1.8039 | 10 | □ | 0.1 | 0.001 |
| 4.7657 | 3.6981 | 18.039 | 100 | 10 | □ | 0.1 |
| 47.6567 | 39.681 | 180.39 | 1000 | 100 | 10 | □ |

〈표 3〉 무게

| 단 위 | g | kg | t (噸) | L / B | O Z |
|-----------|-----------------|---------|--------------------|----------|---------|
| 1 g | 1 | 0.001 | (0.1) ⁶ | 0.002204 | 0.03527 |
| 1 kg | 1000 | 1 | 0.001 | 2.20459 | 35.273 |
| 1 t (M/T) | 10 ⁶ | 1000 | 1 | 2204.59 | 35273 |
| 1 L/B | 453.592 | 0.45359 | 0.00045 | 1 | 16 |
| 1 OZ | 28.8495 | 0.02835 | 0.000028 | 0.0625 | 1 |
| 1 S/T(미톤) | 907200 | 907.2 | 0.9072 | 2000 | 32000 |
| 1 L/T(영톤) | 1016000 | 1016 | 1.016 | 2240 | 35840 |
| 1 gr | 10.06479 | 0.00006 | - | 0.00014 | 0.00228 |
| 1 匁 (돈) | 3.75 | 0.00375 | 0.000004 | 0.00827 | 0.1323 |
| 1 (근) | 600 | 0.6 | 0.0006 | 1.3228 | 21.1647 |
| 1 貫 (관) | 3750 | 3.75 | 0.00375 | 8.2672 | 132.28 |

| S / T | L / T | gr | 刃 | 斤 | 貫 |
|-----------|-----------|---------|---------|---------|----------|
| 0.000011 | 0.000098 | 15.432 | 0.2667 | 0.00166 | 0.000266 |
| 0.001102 | 0.000984 | 15432 | 266.67 | 1.6666 | 0.2666 |
| 1.1022 | 0.9841 | - | 266670 | 1666.6 | 266.66 |
| 0.0005 | 0.000446 | 7000 | 120.96 | 0.756 | 0.12096 |
| 0.000031 | 0.000028 | 437.4 | 7.56 | 0.0473 | 0.00756 |
| □ | 0.89286 | - | 293919 | 1512 | 241.92 |
| 1.12 | □ | - | 262420 | 1693.4 | 270.95 |
| - | - | □ | 0.01728 | 0.00108 | 0.000017 |
| 0.0000041 | 0.0000037 | 57.872 | □ | 0.00625 | 0.001 |
| 0.00066 | 0.00059 | 9259.56 | 160 | □ | 0.16 |
| 0.00413 | 0.00369 | 57872 | 1000 | 6.25 | □ |

< 표 4 > 넓 이

| 단 위 | m ² | cm ² | m ² | km ² | in ² | ft ² | yd ² |
|---------------------|------------------|------------------|--------------------|---------------------|----------------------|---------------------|---------------------|
| 1 m ² | □ | 0.01 | (0.1) ⁶ | (0.0) ¹² | 0.00155 | 0.0001 | 0.000001 |
| 1 cm ² | 100 | □ | (0.1) ⁴ | (0.1) ¹⁰ | 0.1550 | 0.0011 | 0.00012 |
| 1 m ² | 10 ⁶ | 10 ⁴ | □ | (0.1) ⁶ | 1549.99 | 10.764 | 1.1958 |
| 1 km ² | 10 ¹² | 10 ¹⁰ | 10 ⁶ | □ | (39370) ² | (3280) ² | (1090) ² |
| 1 in ² | 645.16 | 6.4516 | 0.00065 | - | □ | 0.00694 | 0.00077 |
| 1 ft ² | 92903.04 | 929.03 | 0.0929 | - | 144 | □ | 0.1111 |
| 1 yd ² | - | 8359.44 | 0.8361 | - | 1296 | 9 | □ |
| 1 mile ² | - | - | - | 2.5899 | (63360) ² | (5280) ² | (1760) |
| 1 a | 10 ⁸ | 10 ⁶ | 100 | 0.0001 | 155001.7 | 1076.4 | 119.58 |
| 1 ha | 10 ¹⁰ | 10 ⁸ | 10 ⁴ | 0.01 | 15500160 | 107640 | 11958 |
| 1 acre | - | - | 4046.8 | 0.0040 | 6274735 | 43560 | 4840 |
| 1 坪 | - | - | 3.3058 | 0.000003 | 5125.58 | 35.583 | 3.9537 |
| 1 段步 | - | - | 991.74 | 0.00099 | 1537500 | 10674.9 | 1186.1 |
| 1 町步 | - | - | 9917.4 | 0.0099 | 15375000 | 106749 | 11861 |
| 1 平方尺 | - | 918.2 | 0.09182 | - | 142.35 | 0.9884 | 0.1098 |

| mile ² | a | ha | acre | 坪 | 段 步 | 町 步 | 平方尺 |
|-------------------|--------------------|---------------------|----------|---------|---------|-----------|-----------|
| - | (0.1) ⁸ | (0.1) ¹⁰ | - | - | - | - | 0.00001 |
| - | (0.1) ⁶ | (0.1) ⁸ | - | 0.00003 | - | - | 0.0011 |
| - | 0.01 | 0.0001 | 0.000247 | 0.3025 | 0.001 | 0.0001 | 10.89 |
| 0.3861 | 10000 | 100 | 247.114 | 302500 | 1008.3 | 100.83 | 108900000 |
| - | 0.000006 | - | - | 0.00019 | - | - | 0.0070 |
| - | 0.0009 | 0.000009 | 0.000022 | 0.0281 | 0.00009 | 0.000009 | 1.0117 |
| - | 0.00836 | 0.00008 | 0.00021 | 0.2529 | 0.00084 | 0.00008 | 9.1054 |
| □ | 25898.46 | 258.98 | 640 | - | - | 78347.597 | - |
| 0.000039 | □ | 0.01 | 0.0247 | 30.25 | 0.1008 | 0.01008 | 1089 |
| 0.0039 | 100 | □ | 2.471 | 3025 | 10.183 | 1.008 | 108900 |
| 0.00156 | 40.468 | 0.40468 | □ | 1224.2 | 4.0806 | 0.4081 | 44071.2 |
| - | 0.0331 | 0.00033 | 0.00081 | □ | 0.0033 | 0.00033 | 36 |
| 0.00004 | 9.9174 | 0.09917 | 0.2451 | 300 | □ | 0.1 | 10800 |
| 0.0004 | 99.174 | 0.9917 | 2.4506 | 3000 | 10 | □ | 108000 |
| - | 0.00091 | 0.00009 | - | 0.0278 | 0.00009 | 0.000009 | □ |

29-2

鑛工業 動態調查 指針

(市・道 調査 擔當者 用)

1988.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차 례

| | |
|------------------------------|----|
| I. 조 사 개 요 | 3 |
| II. 조사표 기입 요령 | 9 |
| III. 조사표 내검 및 제출 | 27 |
| IV. 조사대상사업체 관리 | 28 |
| V.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30 |
| VI.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원재료 분류표 | 44 |
| <부록> : 도량형 환산표 | 54 |

I. 조 사 개 요

1. 왜 조사하는가?

- 경기동향분석 및 전망 지표 작성
 - 지수 (index) 편제
 - 산업생산지수 (전국 및 시·도별)
 - 생산자 출하지수 (전국 및 시·도별)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전국 및 시·도별)
 - 생산자 제품 재고율지수
 - 고용 및 임금지수
 - 원재료 소비·재고지수
 - 실적편제
 - 주요제품 생산, 출하, 재고실적
- 주요 관련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통계 제공
 - GNP 통계 한국은행
 - 노동생산성 통계 한국생산성본부
 - 기타 주요물자 수급 각부처, 연구기관, 기업체 관련 실적 및 전망통계

2. 조사의 법적근거는?

- 통계법 제 3 조 (통계작성의 승인)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 (통계작성의 승인) 에 의한 정부지정통계 (111 - 11 - 12)

3. 조사의 대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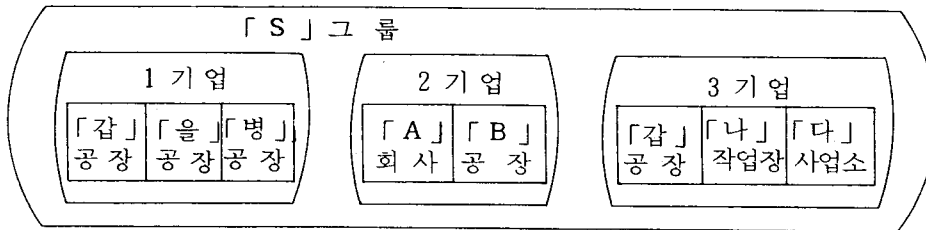
○ 산 업

| | | | | | | |
|-----------------|-------|--------|-----------------|----|----|--------|
| 1. 농업·임업·어업·수산업 | 2. 광업 | 3. 제조업 | 4. 전기, 개스, 수도사업 | | | 5. 건설업 |
| | | | 전기 | 개스 | 수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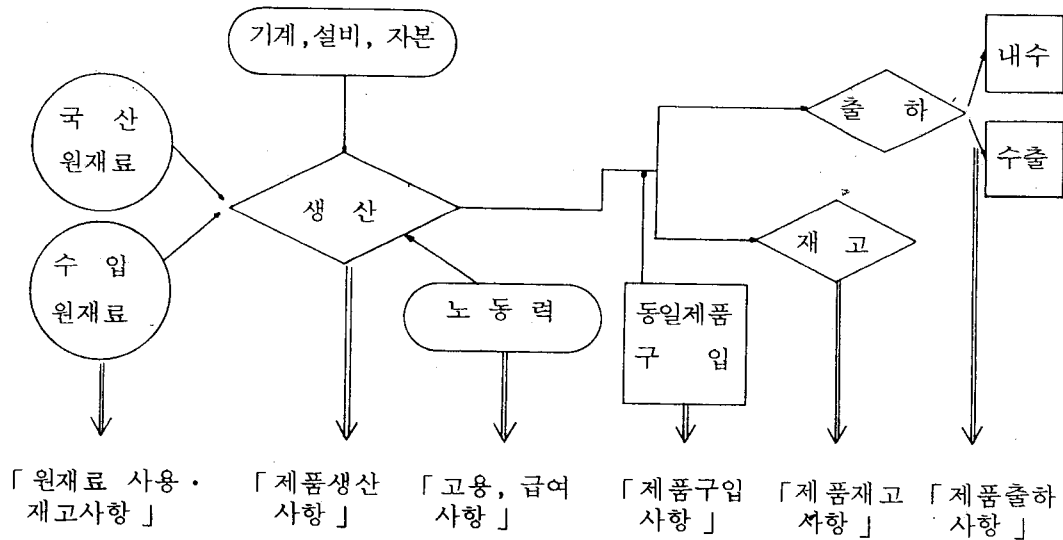
조사대상사업
 (지정품목, 지정업체에 한함)

| | | | | |
|------------------|-----------------|-----------------------|----------------|-----------|
|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8.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0. 분류불능산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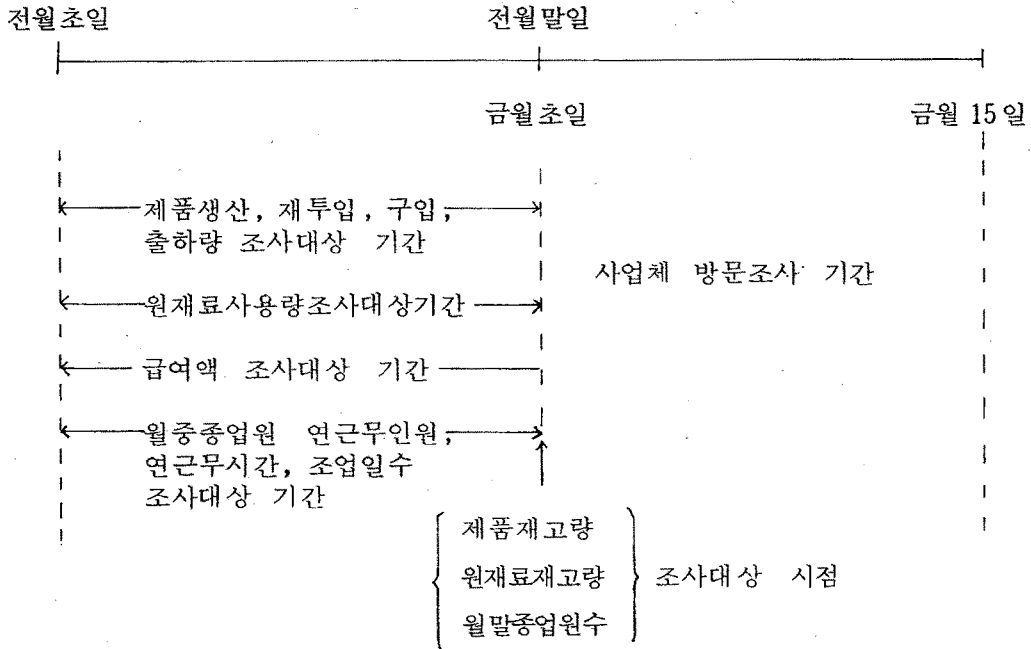
○ 업체 단위 : 원칙적으로 공장, 사업소, 작업장, 광산등 단위 (개별사업체) 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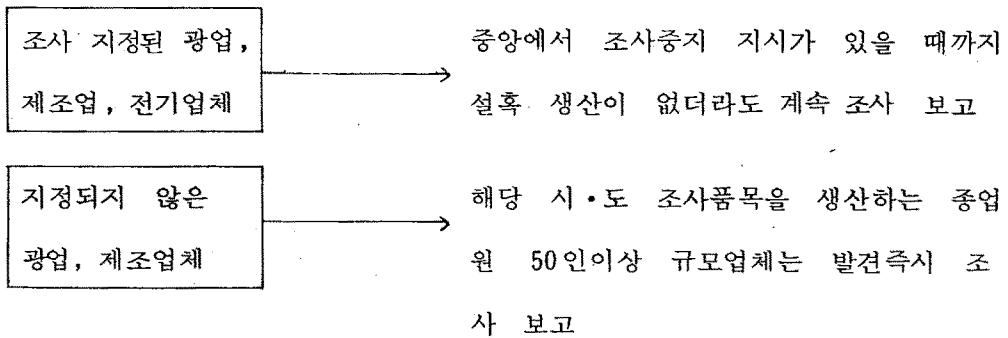
4. 무엇을 조사하는가?



5. 어느때를 기준으로 언제조사 하는가?



6. 어떤 사업체를 조사하는가?



※ 어떤 사업체가 조사 지정 되었는가?

- 전국 또는 시·도별로 광공업부문의 생산관련 동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생산품목을 통털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이 되도록 주요품목을 선정할 후, 이들 주요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중 일정규모(종업원 또는 출하액 기준으로) 이상인 업체는 모두 조사하고, 나머지 영세업체는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도록 지정 (주로 종업원 10인 이상 약 19,500개 업체중 9,100업체를 지정)

7. 어떤 품목을 조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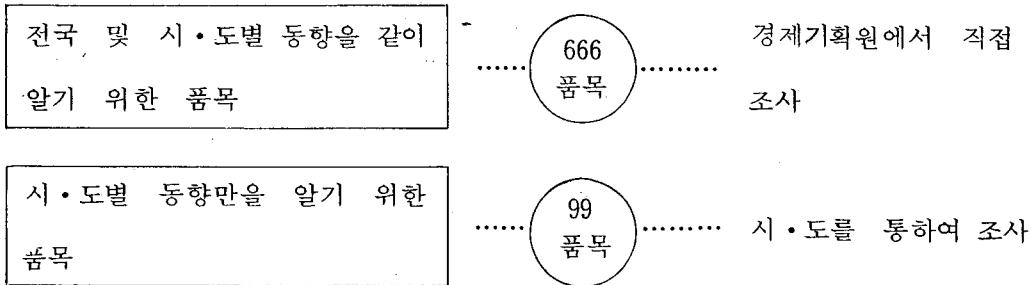
조사지정된 품목> 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생산되지 않더라도 조사지정된 품목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속조사 보고

지정되지 않은 품목> 조사할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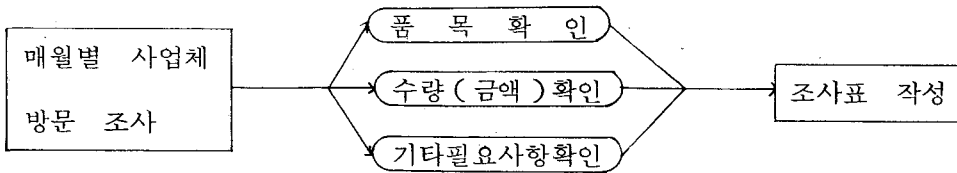
※ 어떤 품목이 조사지정 되었는가?

- 전국 또는 시·도별로 총생산액의 1/10,00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중 경기동향분석을 위하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8. 어떤 체계로 조사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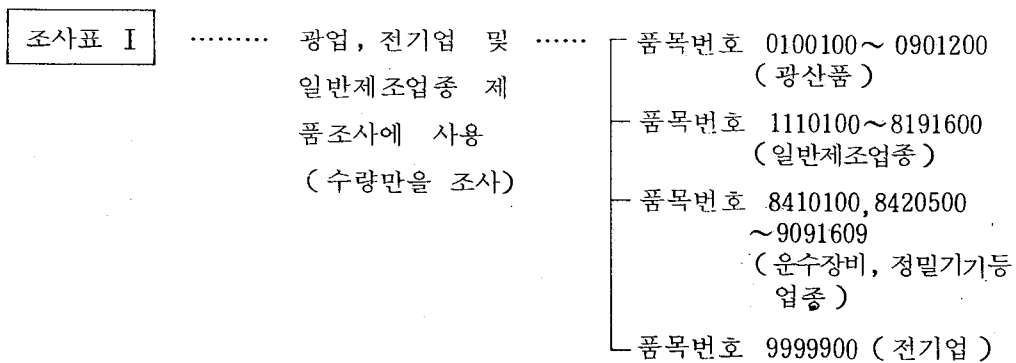
9. 어떻게 조사하는가?



※ 왜 반복 확인이 필요한가?

- 단기간의 경기동향분석이나 전망 또는 산업생산 성장률 추계에는 1~2%의 오차라도 큰 영향을 주게되며, 오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반복 확인하는 것임.

10. 어떤 조사표를 사용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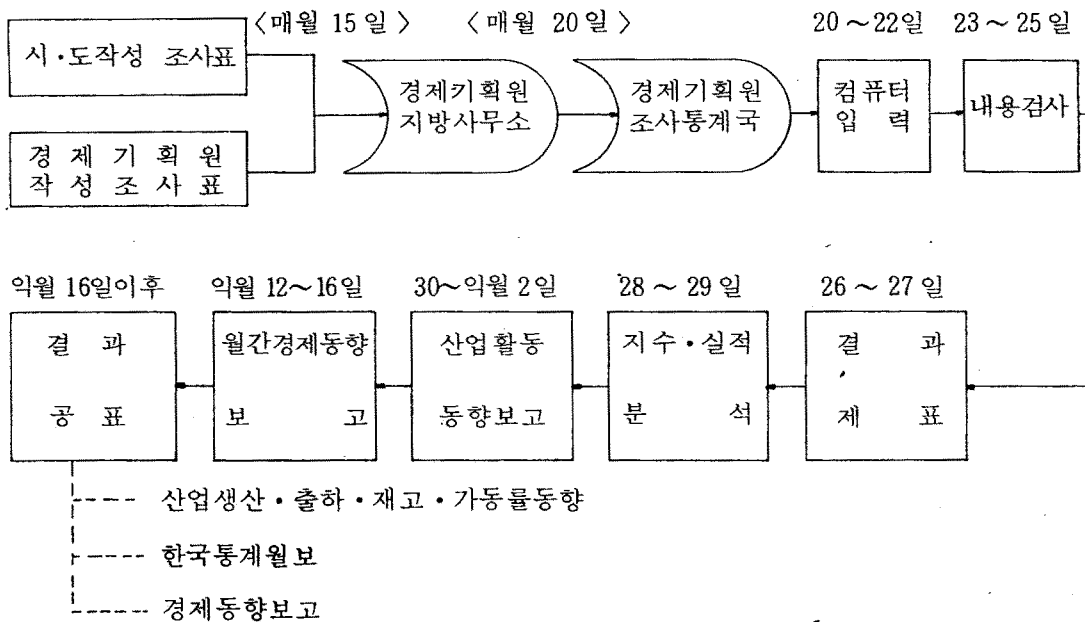
조사표 II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번호 8210100~8391509
 제품 조사에
 사용(수량과 금
 액을 병행조사)

조사표 III 제조기간이 오래 품목번호 8410200~8420400
 걸리는 제품조사 (선박, 철도차량)
 에 사용(공정진
 척률에 따라 수
 량으로 환산조사)

※ 조사표를 잘못 사용하면?

- 조사항목 배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상 큰 혼란을 초래함.

11. 조사표집계 및 결과 공표는 어떻게 하는가?



- 과거자료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삭제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라. 행정구역번호

「한국행정구역분류부호」(경제기획원 고시)의 시·도, 구시군, 동읍면부호를 기입(다만 특별시, 직할시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시부호(○)을 생략하여 6단위로 기입)

※ 행정구역 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 A도에서의 실적이 B도의 실적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

마. 산업분류번호

사업체 명부상에 지정된 산업분류부호를 기입.

바. 조사구번호

| | | | | | |
|---|---|---|---|--|--|
| 1 | 1 | A | - | | |
|---|---|---|---|--|--|

와 같이 「시·도」행정구역부호 다음에 A를 추가 기입하고 이후는 공란으로 둬.

사. 사업체명 및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질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아. 본사명 및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 관련사항에 대하여 본사 조화가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자.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는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기 지정하였으므로 임의변경 불가

차. 종업원 규모

매월말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포함)를 기준으로 해당규모에 ○표시

카. 유고사항

┌ 1. 전 입 :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타 시·도에서 조사

하던 업체가 새로 조사대상으로 이전되어온 경우 또는 사업체가 신설된 경우에 조사 첫월에만 표시

2. 휴업 : 사업체가 휴·폐업되었으나 증양에서 조사증지 지시가 없어 계속 조사해야 하는 것

3. 사업체 흡수 : 타공장 또는 사업체를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4. 사업체 분리 : 1개사업체가 2개이상 사업체로 분리되어 공장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2. 「제품생산·출하재고」사항(조사표 I, II)

I 제품생산·출하·재고

| 일련 번호 | 품목부호 | 품목명 | 유고사항 | 단 위 | 생 산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십일 |

| 구 | | 입 | | | | 동일공장내재투입 (자가소비) | | | | | | | | | | | |
|----------|----|----------|---|---|----|--------------------|----|---|---|---|----|----|----|---|---|---|----|
| 외부(수입포함) | | 동일기업내타공장 | | | | |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일 |

| 출 | | | | 하 | | | | 과부족조정 | | | | | | | | | |
|------|----|----|---|----------|----|----|----|-------|---|---|----|----|----|---|---|---|----|
| 외부 | | 판매 | | 동일기업내타공장 | | | | | | | | | | | | | |
| 국내시판 | | 수출 | | 출하및기타 | | |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일 |

| | | | | | | |
|---------|---|---|---|---|---|---|
| 월 말 재 고 | | | | | | |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만 | 만 | | | | | |

※ 여기에 기재되는 품목은 조사대상품목으로서 반드시 당해 사업체에서 생산중이거나 일시 생산중단품목인 경우에만 조사기입하여야 함. 전혀 생산이 없는 품목은 설혹 구입이 있더라도 조사될 성질이 아님

가. 품목부호, 품목명

품목부호가 빠른 순서로 정해진 부호 및 명칭을 기입하되 품목조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됨.

나. 유고사항

품목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시 다음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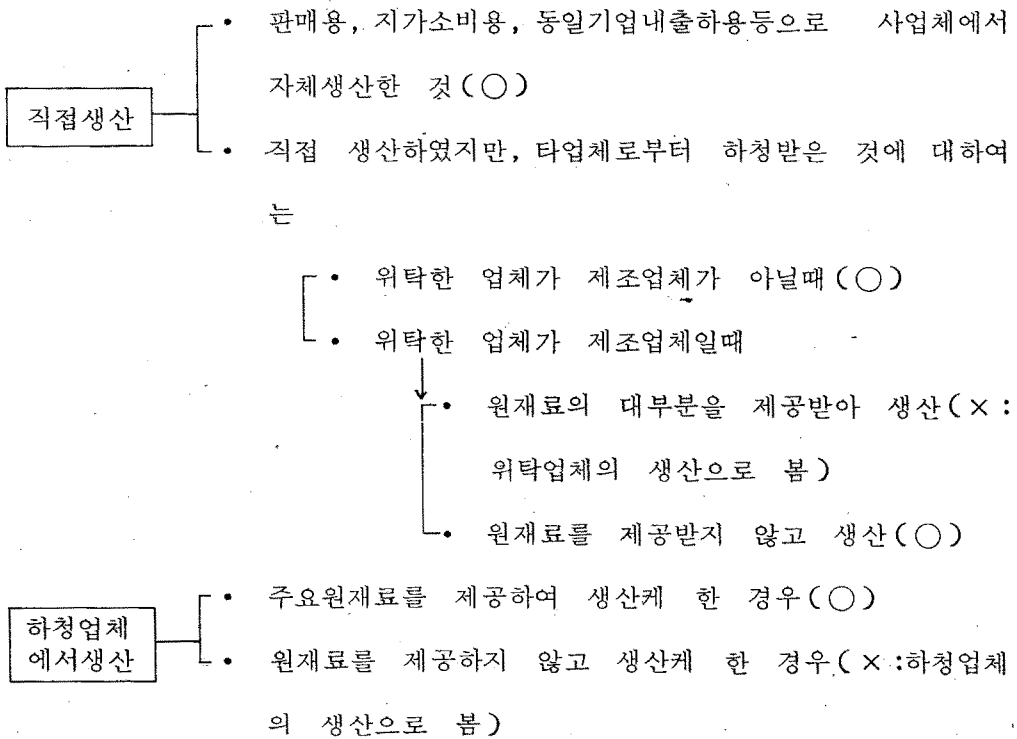
- 품목신규 생산..... 1 → 기존에 없던 조사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 (전수조사업체만 해당)
- 품목생산 중단..... 2 → 기존에 조사중이던 품목생산이 중단된 경우
- 품목분류착오로 제외 ... 3 → 조사중이던 품목이 분류착오로 밝혀진 경우
- 품목조사누락 4 → 이미 생산되고 있었으나 착오로 조사누락 시킨 경우 (생산시점부터 소급조사보고 요 함)

다. 단 위

반드시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함.

라. 생 산

다음 예중 0 표시된 경우만을 해당사업체의 생산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여야 함.



마. 구 입

※ 반드시 해당사업체에서 현재 생산중이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지정품목의 구입만을 조사

※ 조사지정제품의 원재료나 연료 또는 부품인 경우에는 원재료란에

기입할 수는 있으나 제품구입란에 기입해서는 안됨.

- (1) 외부구입(수입분 포함) ————
- 판매목적으로 국내 타업체로부터 구입한 것
 - 판매목적으로 국내 타업체로부터 유통한 것
 - 판매목적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하청 생산케 한 것
 - 판매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것
 - 출고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단순 수리·가공후 재판매될 것

- (2)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 ————
- 같은 기업내에 속하는 타공장에서 인수받은 것으로서 판매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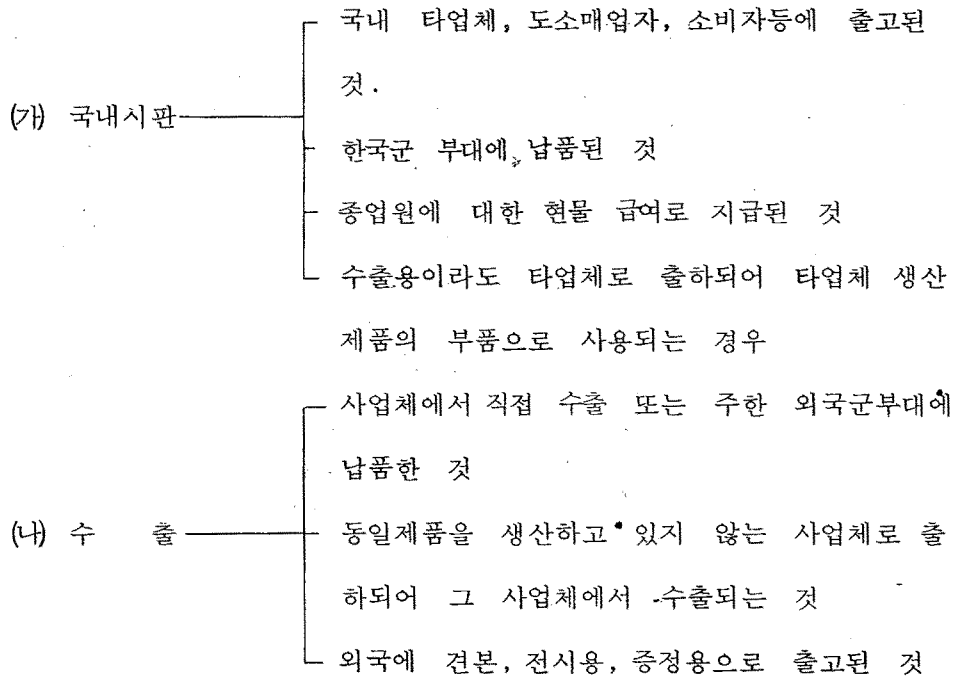
※ 조사표 II에서는 외부구입과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분을 모두 합하여 조사기입

바. 동일 공장내 재투입(자가소비)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당해 사업체내의 공정에 원재료, 연료, 부품등으로 재투입된 것
- 다른 제품의 가공을 위해 촉매제, 환원제등으로 소비된 것
- 다른 제품의 하청 생산을 위해 하청공장에 원재료로서 제공된 것

사. 출 하

(1) 외부판매



(2)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및 기타

-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분
- 국내에 견본, 증정용등으로 출하된 것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출고된 것
- 타업체로부터 유통한 량의 변제

※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는 이송받은 업체에서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이송한 업체에서 국내시판 또는 수출(수출용)로 계상하여야 함.

※ 염색, 도장 또는 단순 추가가공을 위하여 타업체로 일시 출하되는 것은 출하가 아니고 판매될 때까지 재고로 계상하여야 함.

아. 과부족 조정

실제 재고조사 또는 기타 사유로 기 보고된 제품 재고량에 변동이 생겨 조정해야할 경우, 재고증가요인은 「+」, 재고감소요인은 「-」로 첫칸에 기입한 후 수량을 조사 기입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멸실 또는 분실된 량(-)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한 량(-)
- 실지 재고조사 결과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재고증가(+)
- 실지 재고조사 결과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재고감소(-)

※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부분품등이 아닌 경우의 과부족 수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므로 과부족 조정란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제품재고에 가감 반영하도록 하였음.

자. 월말재고

- 아직 출하되지 않은 지정제품의 실제 재고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것은 재고에 계상하지 않음.

※ 규격·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류(조사표 II사용제품)은 생산, 출하, 재고에 대하여는 금액(현재 판매가격 또는 판매예정가격)조사를 병행토록 하고 있음.

※ 전월말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 금 월 금월말
재고량 + 생산량 + 구입량 - 재투입량 - 출하량 - 과부족조정량 = 재고량

가. 당월 수주량

확실한 계약에 의거 국내(국내용) 또는 외국(수출용)에서 주문받은 량

나. 당월 진척량

당월에 진행된 공정량을 말하며 「전월말 수주잔량×당월진척률」로 계산하거나,

「총수주량×공정진척률누계-전월까지의 진척량누계」로 계산됨

다. 수주잔량

총수주량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량

라. 당월 완성품 인도량

공정진척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월에 인도한 완성선박 또는 철도차량

| | | | | | | | |
|---|------|---|-----|---|-----|---|------|
| ※ | 전월말 | + | 당월 | - | 당월 | = | 당월말 |
| | 수주잔량 | | 수주량 | | 진척량 | | 수주잔량 |

4.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사항

②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 일련 번호 | 원재료및연료부호 | 원재료및연료명 | 유고 사항 | 단 위 | 구분 | 월중사용량 | | | 월말재고량 | | |
|----------|------------|---------|----------|----------|----|------------|------------|---------|------------|---------|--|
| | | | | | | 국산1 수입2 | 백'십 만'만 | 천'백'십'일 | 백'십 만'만 | 천'백'십'일 | |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51 | 9'0'1'-0'0 | 무연탄·연료탄 | | % | | | | | | | |
| 52 | 9'0'2'-0'0 | 경 유·중 유 | | kl | | | | | | | |
| 53 | 9'0'3'-0'0 | 방 카 C 유 | | kl | | | | | | | |
| 54 | 9'0'4'-0'0 | 전 력 | | 천 KWH | | | | | | | |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정제품중 비중이 가장 큰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원재료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되 지정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분은 제외.

가. 원재료 및 연료부호

해당 원재료의 부호를 이 지침서 부록에서 찾아 기입.
(단, 부호가 없을 경우 부호 생략)

나. 원재료 및 연료명

소비되는 원재료 및 연료의 명칭기입

다. 유고사항

「제품 생산, 출하, 재고」사항란과 같음.

라. 단 위

「지정원재료분류표」(부록)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

마. 구 분

- 소비 또는 재고 원재료가 국산이면「1」, 수입품이면 「2」를 기입
- 국산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란을 달리하여 기재

바. 월중사용량

조사대상기간중 대상사업체의 지정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소비된
량(단, 연료, 전력은 비 지정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한 량도 모두
포함)

사. 월말재고량

자체생산구입(수입분 포함)을 망라하여 보유재고량을 기입

5. 「고용, 급여 및 조업상황」란

③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 | | 월말종업원 수 (명) | 월 중 종업원 연근무인원수(명) | 월중종업원연근무 시간수 (시간) | |
|--------------|-------------------|-------------------|----------------------|----------------------|--------------------|
| | | 만천백십일 | 백십만천백십일 | 천백십만천백십일 | |
| 상 시 종업원 | 생 산 직 | | | | |
| | 사 무 직 · 기 타 | | | | |
|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 | | | |
| | 계 | | | | |
| 임 시 일 고 | 생 산 직 | | | | |
| | 사 무 직 · 기 타 | | | | |
| | 계 | | | | |
| 전월말상시 종업원 | 월 중 상 시 종업원입직자 | 월 중 상 시 종업원이직자 | 금 월 말 상시종업원 | 월 중 조업일수 | 월 중 1 일 평균조업시간 |
| □□□□ 명 | □□□□ 명 | □□□□ 명 | □□□□ 명 | □□ 일 | □□□□ 시간 □□□□ 교대 |
| | | 급 여 총 액 | 정 액 급 여 | 특별급여(상여금등) | |
| | | 천백십억억천백십만천 | 천백십억억천백십만천 | 백십억천백십만천 | |
| 상 시 종업원 | 생 산 직 | | | | |
| | 사 무 직 · 기 타 | | | | |
| | 계 | | | | |
| 임 시 일 고 | 생 산 직 | | | | |
| | 사 무 직 · 기 타 | | | | |
| | 계 | | | | |

※ 지정품목 생산라인 또는 사무실의 종업원 뿐만 아니라 비지정제품 생산부문의 종사자 및 관리, 보조, 기술, 전문, 서기직 수행자들을 모두 포함하되, 하청업체 종업원이나 타공장종업원은 포함하지 않음.

※ 상시종업원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지난 3개월 통산 45일 이상 계속 고용된 자.

임시·알고 • 매일 매일 또는 필요시 수시 고용하는 자.

가. 월말 종업원수

- 해당 월 말일 현재의 종업원
- 말일 현재로 파악이 곤란한 경우 가장 가까운 급여일 기준 종업원

※ 휴업등으로 조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 급여가 계속 지급되거나, 2개월까지의 일시 휴업일 경우는 종업원수를 계속 조사기입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종업원수는 0으로 기입.

나. 월중 종업원 연근무 인원수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는 모두 포함하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급료지급불문)는 제외
- 매일별 인원수를 월간 합계하여 기입.

다. 월중 종업원 연 근무시간수

(예) 종업원 10명이 변동없이 25일간 하루 10시간씩 계속 근무한 경우

- 연근무인원수 : 10명 × 25(일) = 250명
- 연근무시간수 : 10(명) × 25(일) × 10시간 = 2,500시간

※ 휴업, 파업등으로 생산직 종업원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근무인원수 및 시간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사무직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사무직만 포함 계산.

라. 전월말 상시 종업원

전월말 현재의 상용 종업원수

마. 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 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입직 : 신규채용, 전입등
- 이직 : 자진퇴사, 사망, 해고, 전출등

바. 금월말 상시종업원

- 「금월말 상시종업원」=「전월말 상시종업원」+「월중 상시종업원 입직자」-「월중 상시종업원 이직자」
- 「월말 종업원수」란의 「상시 종업원계」와 일치하여야 함.

사. 월중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생산직 종업원 일부만 조업한 경우 또는 사업체 사정에 의해 단축조업(1시간 이상)을 한 경우도 포함.
-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한 경우등도 조업일수는 1일로 함.

아.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1일 평균조업시간 = $\frac{\text{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text{월중 조업일수}}$
- 교대작업.....몇 교대 작업인지를 기입

자. 급여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

- 해당월중 전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를 구분 기입
- 정액급여: 매월 정례적 지급 급여(매월 지급하는 수당 포함)
- 특별급여: 각종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지급분, 연차수당, 임시수당,
- 급여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 1개 사업체에서 2종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고용
급여사항은 사업체의 주산업이 속하는 조사표에만 기입.
(분할기입, 양자 모두 기입 불가)

6. 증감내용

※ 「제품생산, 출하, 재고」, 「고용·급여·조업상황」란의 증감내용은 조사내용의 정확성 및 타당성 검토와 결과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것임. 특히 전월대비 증감폭이 다소 클 경우는 반드시 기입.

※ 전월비(%) = $\frac{\text{금월생산(출하, 재고)량}}{\text{전월생산(출하, 재고)량}} \times 100 - 100$ (소숫점미만반올림)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1. 중점검토사항

- 사업체 고유번호는 정확히 기입되었나 …… 「사업체명부」와 대조
- 품목부호 단위는 정확한가 …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분류표」와 대조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사업체명부」와 대조
- 조업일수, 종업원수, 연근무시간수 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감소)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증가)한 경우 관련사항간에 의문은 없는가?
- 전월에 비해 생산, 출하, 재고가 크게 증감이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2. 수시확인사항

- 새로운 조사 지정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사업체담당자(조사자, 응답자)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3. 조사표 제출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
- 지정품목이 계절성을 띠고 있어 주문이 없거나 또는 휴업으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부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조사표에 기입한 후 생산, 출하, 재고량등을 “0”으로 기입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등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조사표를 제출

IV. 조사대상 사업체관리

1. 목 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업체의 누락, 중복을 방지하고, 표본사업체를 적기에 보완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누락, 중복방지

2. 대상사업체

- 광공업동태 사업체 중 지역지수품목 생산사업체

3.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으로 파악

4. 관리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등)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5.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신규 및 전입·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후술 참조)
- 조사표 변동사항

6.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 → 각 시·도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지방사무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7. 관리현황서식

- 사업체 및 조사표 관리현황(총괄)
- 사업체 관리현황보고서

8. 서식 작성 및 제출

- 동 서식을 매월 작성 5일까지 해당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방사무소에 제출

※ ◎ 신규, 전입사업체 보고

- 신규창설(조사년도) 및 전입사업체 발굴
 - 해당시도 지정품목 생산업체중 월평균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
 - 타시·도 전입업체중 해당시·도 지정품목업체
- 보고 및 서식작성요령
 - 7항 관리현황서식중 「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여백이나 별도 칸지에 첨부, 해당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방사무소에 제출
 - 기입사항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월평균종업원수, 연간출하액(백만원) 월평균생산액(량), 전소재지(전입업체의 경우) 등

V. 광공업동태조사지정품목분류표

대분류 2. 광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3. 금속광업, 29. 기타광업

소분류 230. 금속광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0300409 | 금 광 석 (金 鑛 石)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석을 분쇄, 마광, 부선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출한 금정량을 조사 ○ 원석 또는 정광상태로 출하할 때는 금함유 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 제련소에서 제련된 금괴는 제외한다. |
| 0300709 | 물 리 브 덴 광 석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공관재, 굴신재, 내열합금재, 페인트안료, 반도체, 전기로 등에 쓰이는 광석 ○ 물리브덴정광 90%로 환산조사 |

소분류 290. 기타광업

| | | | |
|---------|------------------|---|---|
| 0900709 | 장 석 (長 石)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나 도자기의 주원료로 쓰이는 광석 ○ 정장석, 조장석, 회장석 등을 조사 |
| 0901009 | 천 일 염 (天 日 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를 자연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켜 얻은 자연염을 조사 ※ 암염, 재제염은 제외 |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소분류 311-312. 식료품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1120109 | 치즈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치즈와 가공치즈를 조사 (가공치즈...자연치즈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킨 것) ※ 참고 치즈란 우유, 유제품등을 가공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유정을 제거, 가열 가압 발효 숙성한 유제품 |
| 1130209 | 냉동과실및간밤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전 가능토록 급냉시킨 과실과 간밤을 조사 ※ 냉동채소는 제외 |
| 1130309 | 냉동과즙원액 (冷凍果汁原液) | k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시킨 과일즙을 조사. |
| 1140609 | 가공해조류 (加工海藻類)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역, 다시마, 김등 해조류를 건조 염장, 훈제한 것을 조사 ※ 맛김은 제외 |
| 1150209 | 유채유 | k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채실에서 채취하여 정제한 식용유를 조사 |
| 1150309 | 옥수수유 | k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배아에서 채취한 식용유를 조사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1220309 | 분 말 인 삼 (粉末人蔘) | kg | ○ 인삼을 건조하여 분쇄한 약재용, 식용 등을 조사 ※ 인삼차는 제외 |

소분류 313. 음료품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1320209 | 약 주 | kl | ○ 곡류를 발효한 주류를 여과한 주류를 조사 |
| 1340409 | 천 연 수 (天 然 水) | kl | ○ 자연상태의 천연수를 용기에 담아놓은 것을 조사 ※ 향 및 당분을 첨가하여 만든 천연사 이다는 사이다에서 조사 |
| 1340609 | 오 렌 지 원 액 | kl | ○ 오렌지의 과즙 또는 오렌지 향을 내 는 화학원액을 조사 ※ 냉동한 오렌지과즙은 1130309 (냉동과 즙원액)로 조사 |

소분류 314. 담배제조업

| | | | |
|---------|-------|----|--|
| 1400309 | 관 상 엽 | kg | ○ 연초의 줄기 또는 가공과정에서 나오 는 부스러기를 얇게 편것을 조사 |
|---------|-------|----|--|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2210109 | 남자용마춤양복 | 벌 | ○ 마춤정장복, 코트등을 조사(남자용) |
| 2210209 | 여자용마춤양복 | 벌 | ○ 마춤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등)을 조사(여자용) |
| 2221309 | 손 수 건 | 천매 | ○ 크기,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 |

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 | | | |
|---------|--------------|----------------|--|
| 2310309 | 돼 지 가 죽 | m ² | ○ 기름과 털을 제거 약품을 첨가하여 제혁공정을 거친 돼지가죽을 조사 |
| 2310409 | 파 충 류 가 죽 | m ² | ○ 뱀, 뱀장어, 악어등 파충류의 가죽중 제혁공정을 거친 것을 조사 |
| 2330309 | 마 구 (馬 具) | 백만원 | ○ 말의 사육 및 조련에 사용되어지는 말이불, 말고삐, 말안장, 말굽등 물품을 조사 |

소분류 324. 신발제조업

| | | | |
|---------|-----------|-----|---|
| 2400409 | 신 발 부 속 품 | 백만원 | ○ 가죽(인조가죽포함) 신발제조에 필요한 구성품을 조사 ※ 플라스틱, 고무제품등은 제외 |
|---------|-----------|-----|---|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

소분류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3110709 | 침 목 |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목을 일정한 크기로 제재하여 크레오소오트(방부제)를 주입한 철도침목, 교침목등을 조사 ※ 철근콘크리트침목 및 갱목은 제외 |
| 3190209 | 콜크및콜크제품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세사리, 병마개, 건축흡음재, 메모판, 팩킹, 방진재등에 쓰이는 굴참나무 껍질을 분쇄, 접착하여 건조시킨 목제품을 조사 |

소분류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 | | | |
|---------|------------------------------|-----|---|
| 3201109 | 찬 장 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엌용 미부착 찬장을 조사(싱크대 위에 설치되는 벽걸이 찬장 포함) |
| 3201209 | 공공건물용목재가구 (共公建物用 木材家具) | 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공공대형건물에 사용되는 벤취(긴의자), 탁자, 교탁등을 조사 |
| 3201309 | 가정용내장가구 | 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자와 의자가 1세트로된 응접가구, 쇼파, 쇼파용탁자등을 조사 |
| 3201409 | 차량용내장가구 | 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에 내장하는 가구만 조사 |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4110809 | 화 선 지 | 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서예지, 붓으로 그림이나 글을 쓰는 선지류의 하나로 수제지만을 조사 ○ 닥나무, 펄프등으로 만든것 |
| 4120409 | 지 관 |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지등을 가공 방적사, 어망사, 농업용 필름, 화장지등을 감을 수 있게 만든 종이용기를 조사 |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소분류 35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 | | | |
|---------|-----------|---|---|
| 5111109 | 초 산 에 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2에틸헥실알콜 ○ 탄소가 주성분으로 함유된 유기용제 (有機溶劑) |
| 5111209 | 옥 탄 올 | ℥ | |
| 5112009 | 싸이클로헥산 | ℥ | |
| 5112109 | 사 카 린 원 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O . T . S . A |
| 5113009 | 요 소 수 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경화성 플라스틱류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5113109 | 에폭시드수지 | % | ○ 열경화성 플라스틱류 |
| 5113209 | 실 리 콘 수 지 | % | ○ 일명, 규소수지 |
| 5113309 | 포화폴리에스터수지 | % | ○ 일명, 선형포화폴리에스터수지 |
| 5113509 | 포 르 말 린 | % | ○ 합판 접착등에 쓰이는 접착제의 일종 |
| 5113609 | 스 테 아 린 산 | % | ○ 유지류의 지방산에 액체산을 제거하여 만든 고체 |
| 5113709 | 구 연 산 | % | ○ 밀감등 과실류에서 짜냈거나 당류를 발효시켜 만든 물질 |
| 5120209 | 황 산 | % | ○ 일명 유산, 발열황산(올레오)도 포함 |
| 5120309 | 5 산화인 및 인산 | % | ○ 5산화인에 물을 혼합한 일련의 산을 조사 |
| 5120409 | 과 산 화 수 소 | % | ○ 종이, 섬유등의 표백제의 일종 |
| 5120509 | 탄 산 칼 습 | % | ○ 중질탄산칼습, 경질탄산칼습, 호분을 포함 조사 |
| 5120909 | 탄 산 칼 륨 | % | ○ 일명 탄산칼리 |
| 5121009 | 염 산 | % | ○ 약국에서 파는 염산은 의약품으로 조사 |
| 5121109 | 규 산 소 다 | % | ○ 일명 규산나트륨 |
| 5150309 | 유 안 비 료 | % | ○ 황산과 암모늄을 반응시켜 만든, 질소 질비료 |
| 5150409 | 유 기 질 비 료 | % | ○ 동식물의 유체 및 분뇨와 조미료 생 산시 그 부산물로 만든 비료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5160209 | 살 서 제 | ℥ | ○ 쥐약 |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 | | |
|---------|-----------|---|---------------------------------------|
| 5290609 | 초 안 폭 약 | ℥ | ○ 공업용 폭약 |
| 5290709 | 방 수 액 | ℥ | ○ 건축자재용 |
| 5290809 | 고무노화방지제 | ℥ | ○ 고무에 섞어넣거나 표면에 칠하여 산 화를 방지케 하는 제재 |
| 5290909 | 가 황 촉 진 제 | ℥ | |

소분류 353. 석유정제업

| | | | |
|---------|-------|----|--|
| 5301209 | 조 경 유 | kl | ○ 코크스 제조시 발생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정제한 것을 조사 |
|---------|-------|----|--|

소분류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 | | | |
|---------|-------|----|--|
| 5400709 | 절 삭 유 | kl | ○ 철이나 스틸등의 재질을 자를때 칼날 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윤활제 |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5400809 | 아스팔트 투핑 | ㎡ | ○ 루핑원지에 아스팔트를 침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조사 |

소분류 355. 고무제품제조업

| | | | |
|---------|-----------|-----|----------------------|
| 5590709 | 산업용고무제품 | 백만원 | ○ 각종기기용(전기, 전자, 기계등) |
| 5590809 | 피 임 용 기 구 | 천타 | ○ 12개를 1타로 환산조사 |
| 5590909 | 고 무 장 갑 | 천켈레 | ○ 가정용, 산업용 모두 조사 |

소분류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 | | | |
|---------|-----------|---|---------------|
| 5601509 | 플 라 스틱 창문 | ㎡ | ○ 플라스틱제 창문, 틀 |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소분류 361. 도기, 자기제조업

| | | | |
|---------|---------|---|----------------------|
| 6100509 | 토 기 제 품 | ㎡ | ○ 각종 토기제품의 용기를 조사 |
| 6100609 | 싱 크 | 개 | ○ 도자기류 등으로 만든 싱크를 조사 |

소분류 36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6201009 | 장식용유리제품 | 천원 | ○ 유리를 깎아 가공하고 색상을 입혀 만든 모조장식품 |

소분류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
| 6920409 | 생 석 회 | ㄲ | ○ 석회석을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구운 광물제품을 조사 |
| 6930909 | 콘크리트문틀 | 개 | ○ 콘크리트로 만든 문틀, 창틀을 조사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소분류 372. 비철금속산업

| | | | |
|---------|-----------|---|----------------------------|
| 7230909 | 아 연 판 , 띠 | ㄲ | ○ 아연의 제 2 차 제품인 아연판, 띠만 조사 |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8111009 | 건 물 용 철 물 | 백만원 | ○ 건물에 부수적으로 부착되는 철물을 조사 |
| 8131109 | 구조용금속판제품 | ㎡ | ○ 사람이나 기계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판 및 철판형 제품 |

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 | | | |
|---------|---------|---|--|
| 8221009 | 바 인 다 | 대 | ○ 벼나 보리등을 베고 묶는 수확용 농기계 |
| 8232009 | 전 단 기 | 대 | ○ 철판의 절단을 위해 절단날의 위치에 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절단하는 기계 |
| 8242509 | 동 력 쇼 벨 | 대 | ○ 지반을 굴착하고 동시에 운반차에 싣기 위한 기계 |
| 8242609 | 무 한 례 도 | ㎡ | ○ 산업중장비의 이동과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부의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이와 맞물리도록 연결된 편을 조사. |
| 8242709 | 스 핀 들 | 개 | ○ 방적기계에서 실을 감는 보빈부분의 강철로 만든 축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8242809 | 중 광 | kg | ○ 낮줄을 중광의 가운데 부분의 구멍으로 한가닥씩 끼워서 로비와 연결되어 개구를 하여 주는 부품 |
| 8242909 | 나 염 기 | 대 | ○ 실 또는 직물에 나염을 하는 기계 |
| 8243009 | 양조및증류용기계 | 대 | ○ 주정공장에서 알코올 증류 및 발효용으로 쓰이는 기계 ○ 증류기와 발효용기계를 각각으로 합산 조사 |
| 8243109 | 식물용착유기 | 대 | ○ 유압이나 스크류의 전진에 의한 압축력으로 참깨, 유채, 들깨등의 기름을 짜는 기계 |
| 8243209 | 콘크리트제품성형기 | 대 | ○ 콘크리트제품을 성형하는 기계 |
| 8243309 | 연탄제조기 | 대 | ○ 연탄을 찍는 기계만 조사 |

소분류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 | | | |
|---------|----------|-----|--|
| 8310809 | 등 안 정 기 | 대 | ○ 각종 등에 내장되어 변압기능을 갖는 기기 |
| 8323909 | 인 터 폰 | 대 | ○ 실내 유선전달장치물 |
| 8324009 | 유선통신기기부품 | 백만원 | ○ 유선통신기기에 쓰이는 부품만 조사 ※ 무선통신기기에만 쓰이는 것은 제외 |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8331009 | 환 풍 기 | 대 | |
| 8391409 | 콘 센 트 | 천개 | ○ 전기배선기구 |
| 8391509 | 프 러 그 | 천개 | ○ 전기배선기구 |

소분류 384. 운수장비제조업

| | | | |
|---------|-----------|-----|-------------------------------------|
| 8410909 | 목 선 | G/T | ○ 목재로 만든 각종선박(어선등) |
| 8420609 | 철 도 차 량 른 | 개 | ○ 열차의 바퀴를 조사 |
| 8420709 | 광 차 량 | | ○ 광산에서 광석을 갱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동력이 없는 궤도차량 |

소분류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

| | | | |
|---------|-----------|-----|----------------------|
| 8510409 | 치 과 기 공 품 | 백만원 | ○ 치과용시멘트, 인조치아등을 조사 |
| 8530609 | 큰시계용케이스 | 개 | ○ 탁상시계 및 벽시계용케이스만 조사 |
| 8540509 | 측 량 자 | 개 | ○ 길이측정에 사용되는 줄자 |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소분류 391 . 기타제조업

| 품목부호 | 품 목 명 | 단위 | 조사범위 및 참고사항 |
|---------|-----------|-----|--|
| 9020409 | 올 | 개 | ○ 전자오르간도 포함조사 |
| 9030709 | 어린이용놀이터장비 | 백만원 | ○ 미끄럼틀, 시소, 그네, 회전대등을 조사 |
| 9030809 | 건강및미용체력기구 | 백만원 | ○ 러닝머신, 미용자전거등 각종 체력증진 기구 포함 |
| 9030909 | 뉘시용부속장구 | 백만원 | ○ 뉘시대 및 털, 뉘시용 의복 및 가방, 신발등을 제외한 전제품 조사 |
| 9050309 | 금속장식공예품 | 백만원 | ○ 주물을 펴서 만든 각종 모형의 장식 품 |
| 9091609 | 만 | 년 | 필 |
| | | 천개 | ○ 사무기기용 |

Ⅵ. 광공업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 대분류 2. 광업 | | 706 | 설 탕 | ㄱ |
| 522 | 갱 목 | m ² | 707 | 소 기름(우지) | ㄱ |
| 778 | 폭 약 | kg | 708 | 경 화 유 | ㄱ |
| | 대분류 3. 제조업 | | 780 | 향 료 | kg |
| |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 818 | 통 조 릫 관 | 천개 |
| |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 | | <u>313. 음료품제조업</u> | |
| 502 | 밀 (소 맥) | ㄱ | 501 | 보 리 (대 맥) | ㄱ |
| 503 | 콩 (대 두) | ㄱ | 502 | 밀 (소 맥) | ㄱ |
| 504 | 고 구 마 | ㄱ | 504 | 고 구 마 | ㄱ |
| 505 | 소 맥 피 | ㄱ | 517 | 호 프 | kg |
| 506 | 탈 지 강 | ㄱ | 518 | 당 밀 | ㄱ |
| 507 | 콩 깻 목(대두박) | ㄱ | 701 | 보 리 쌀 (정 맥) | ㄱ |
| 518 | 당 밀 | ㄱ | 702 | 밀 가 루 (소 맥 분) | ㄱ |
| 519 | 생 우 유 | ㄱ | 703 | 옥 수 수 (가루포함) | ㄱ |
| 525 | 어 개 류 | ㄱ | 704 | 녹말가루 (전 분) | ㄱ |
| 702 | 밀 가 루 | ㄱ | 706 | 설 탕 | ㄱ |
| 703 | 옥 수 수 (가루포함) | ㄱ | 710 | 주 정 | kl |
| 704 | 녹말가루(전 분) | ㄱ | 711 | 콜 라 원 액 | l |
| 705 | 원 당 | ㄱ | 712 | 엿 기름 (맥 아) | ㄱ |
| | | | 749 | 탄 산 가 스 | kg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80 | 향료 | kg | 715 | 소모사 | kg |
| 790 | 유리병 | 천개 | 716 | 방모사 | kg |
| 877 | 쌀 (현미, 백미) | kg | 717-1 | 재생섬유사 (아세테이트포함) | % |
| 314. 담배제조업 | | | 717-2 | 합성섬유사 | % |
| 516 | 앞담배 | % | 718 | 생사 | kg |
| 738 | 은박지 | % | 726 | 화학필프 | % |
| 740 | 휠타 | % | 752 | 카프로락담 | % |
| 869 | 권련지 | kg | 768 | 폴리에치렌수지 | kg |
| 중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 | | 770 | 폴리프로피렌수지 | kg |
| 321. 섬유제조업 | | | 771 | 합성섬유 (튼, 설, 화이버) | kg |
| 508 | 원면 | % | 772 | 재생섬유 (SF면, 아세테이트섬유포함) | kg |
| 509 | 누에고치 (잠견) | kg | 774 | AN 모노마 | % |
| 510 | 지부양모 | kg | 775 | 에치렌그리골 | % |
| 511 | 세척양모 | kg | 776 | D. M. T | % |
| 512 | 아마 | kg | 876 | 나이론수지 | kg |
| 513 | 아바카 | kg | 880 | 부잠사 | kg |
| 515 | 모실 | kg | 881 | 견방사 | kg |
| 713 | 양모 | kg | 882 | 어망사 | kg |
| 714 | 면사 | kg | 899 | T. P. A | % |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
| <u>322. 의복제조업</u> | | | 898 | 합성피혁 | m ² |
| 719 | 면직물 | m ² |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 제품제조업 | | |
| 720 | 순소모직물 | m ² | <u>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u> | | |
| 721 | 순방모직물 | m ² | 521 | 원목 | m ³ |
| 722-1 | 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포함) | m ² | 758 | 호르마린 | M ² |
| 722-2 | 합성섬유직물 | m ² | 759 | 메타놀 | M ² |
| 723-1 | 혼방재생섬유직물 (아세테이트포함) | m ² | <u>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u> | | |
| 723-2 | 혼방합성섬유직물 | m ² | 727 | 각재 | m ³ |
| 723-3 | 혼방면직물 | m ² | 728 | 판재 | m ² |
| 723-4 | 혼방모직물 | m ² | 729 | 합판 | m ² |
| 723-5 | 혼방견직물 | m ² | 중분류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제조업 | | |
| 724 | 소가죽 | m ² | <u>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u> | | |
| 875 | 순본견직물 | m ² | 512 | 아마 | kg |
| <u>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목피제품제조업</u> | | | 514 | 갈저 | kg |
| 520 | 원피 | 매 | 521 | 원목 | m ³ |
| 724 | 소가죽 | m ² | 524 | 고지 | M ² |
| 898 | 합성피혁 | m ² | 624 | 활석분 | M ² |
| <u>324. 신발제조업</u> | | | | | |
| 724 | 소가죽 | m ² | | |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02 | 말 가 루 | % | 중분류 35. 화합물과 화학 섬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714 | 면 사 | kg | | | |
| 725 | 쇄 목 펄 프 | % | | | |
| 726 | 화 학 펄 프 | % | | | |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 | | | |
| 731 | 백 상 지 | % | 614 | 유 황 | % |
| 732 | 중 질 지 | % | 615 | 인 광 석 | % |
| 733 | 크 라 프 트 지 | % | 617 | 공 업 염 | % |
| 735 | 박 엽 지 | kg | 618 | 석 회 석 | % |
| 736 | 판 지 | % | 741 | 황 산 | % |
| 737 | 골 판 지 원 지 | % | 742 | 염 산 | kg |
| 744 | 가 성 소 다 | % | 743 | 카 바 이 드 | % |
| 751 | 유 산 반 토 | kg | 744 | 가 성 소 다 | % |
| 817 | 알 미 늄 박 | kg | 747 | 소 다 회 | % |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업 | | | | | |
| 730 | 신 문 용 지 | % | 748 | 암 모 니 아 | % |
| 731 | 백 상 지 | % | 750 | V. C. M | % |
| 732 | 중 질 지 | % | 752 | 카 프 로 락 담 | % |
| 734 | 아 트 지 | kg | 753 | 염 화 카 리 | % |
| 735 | 박 엽 지 | kg | 754 | 벤 젠 | kg |
| 784 | 인 쇄 잉 크 | kg | 755 | 톨 루 엔 | kg |
| | | | 756 | 키 시 렌 | kg |
| | | | 758 | 호 르 마 린 | %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59 | 메 타 늘 | % | 754 | 벤 젠 | kg |
| 766 | 요 소 | kg | 755 | 틀 루 엔 | kg |
| 870 | 에 티 렌 | % | 756 | 키 시 렌 | kg |
| 871 | 프 로 피 렌 | % | 757 | 알 킬 벤 젠 | kg |
| 872 | 부 타 디 엔 | % | 759 | 메 타 늘 | % |
| 873 | 싸 이 크 로 핵 산 | kg | 760 | 무 스프 탈 산 | kg |
| 788 | 납 사 | kl | 761 | 염 료 | kg |
| 789 | 코 크 스 | % | 762 | 그 리 세 린 | kg |
| 792 | 생 석 회 | % | 763 | 지 방 산 | % |
| <u>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u> | | | | | |
| 706 | 설 탕 | % | 764 | 스 테 아 린 산 | kg |
| 707 | 소 기 림 (우 지) | % | 766 | 요 소 | kg |
| 709 | 아 마 인 유 | kl | 777 | 스 치 렌 모 노 마 | kg |
| 710 | 주 정 (에타늘) | kl | 779 | 초 안 | kg |
| 738 | 은 박 지 | % | 780 | 향 료 | kg |
| 741 | 황 산 | % | 781 | 아 연 화 | kg |
| 742 | 염 산 | kg | 782 | 산 화 티 탄 | kg |
| 744 | 가 성 소 다 | % | 790 | 유 리 병 | 천개 |
| 745 | 규 산 소 다 | kg | 872 | 부 타 티 엔 | % |
| 747 | 소 다 회 | % | <u>353. 석유정제업</u> | | |
| 748 | 암 모 니 아 | % | 603 | 원 유 | kl |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
|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 | |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
| 601 | 무 연 탄 | % |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 |
| 602 | 원료 탄 (유연탄) | % | 612 | 점 토 | % |
| 355. 고무제품제조업 | | | 619 | 고 령 토 | % |
| 523 | 천 연 (생) 고무 | % | 620 | 장 석 | % |
| 714 | 면 사 (면사포) | kg | 621 | 규 사 및 규 석 | % |
| 773 | 합 성 고무 | % | 627 | 석 고 | % |
| 781 | 아 연 화 | kg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
| 782 | 산 화 티 탄 | kg | 616 | 초 석 | % |
| 783 | 카 본 블랙 | kg | 618 | 석 회 석 | % |
| 883 | 타 이 어 코 드 사 | % | 620 | 장 석 | % |
| 884 | 재 생 고무 | % | 621 | 규 사 및 규 석 | % |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625 | 형 석 | % |
| 765 | 가소제 (DOP, DBP 등) | kg | 628 | 백 운 석 | % |
| 767 | P. V. C 수 지 | kg | 629 | 파 유 리 | % |
| 768 | 폴 리 에 치 렌 수 지 | kg | 746 | 유 산 소 오 다 (망 초) | % |
| 769 | 폴 리 스티 렌 수 지 | kg | 747 | 소 다 회 | % |
| 770 | 폴 리 프로 피 렌 수 지 | kg |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 |
| | | | 612 | 점 토 | % |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
| 613 | 모래 | m ³ | 608 | 망강광석 | % |
| 618 | 석회석 | % | 609 | 고철 | % |
| 619 | 고령토 | % | 618 | 석회석 | % |
| 620 | 장석 | % | 789 | 코크스 | % |
| 621 | 규사 및 규석 | % | 793 | 선철 | % |
| 622 | 납석 | % | 794 | 강피 | % |
| 625 | 형석 | % | 795-1 | 강반성품 (스라브, 비래트, 브롬) | % |
| 626 | 석면 | % | 795-2 | 열연대강 (핫코일) | % |
| 627 | 석고 | % | 797-1 | 붕강 | % |
| 726 | 화학필프 | % | 798 | 중후판 | % |
| 739 | 크라프트지 | 천매 | 799 | 박판 | % |
| 791 | 시멘트 | % | 800 | 주물 | % |
| 797-1 | 붕강 | % | 801 | 선재 | % |
| 797-2 | 철근 | % | 808 | 아연피 | kg |
| 802 | 철선 | % | <u>372. 비철금속산업</u> | | |
| 887 | 자갈 | m ³ | 605 | 동광석 | % |
| 중분류 37. 제 1 차금속산업 | | | 606 | 연광석 | % |
| <u>371. 철강산업</u> | | | 607 | 아연광석 | % |
| 602 | 원료탄 (코크스제조용) | % | 610 | 동설 | kg |
| 604 | 철광석 | % | 611 | 알미늄고철 | kg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618 | 석 회 석 | % | 802 | 철 선 | % |
| 789 | 코 크 스 | % | 803 | 강 관 | % |
| 806 | 전 기 동 | kg | 804 | 특 수 강 | % |
| 807 | 연 과 | kg | 806 | 전 기 동 | kg |
| 808 | 아 연 과 | kg | 807 | 연 과 | kg |
| 809 | 알 미 늄 과 | kg | 808 | 아 연 과 | kg |
| 874 | 아 루 미 나 | kg | 809 | 알 미 늄 과 | kg |
| 888 | 아 연 설 | kg | 810 | 황 동 (놋쇠, 진유) | kg |
| 889 | 연 설 | kg | 811 | 알 미 늄 관 | kg |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 | | 815 | 스 테 인 레 스 관 | kg |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816 | 동 선 | kg |
| 609 | 고 철 | % | 819 | 용 접 봉 | kg |
| 610 | 동 설 | kg | 878 | 합 금 철 | kg |
| 611 | 알 미 늄 고 철 | kg | 879 | 알 미 늄 비 래 트 | kg |
| 789 | 코 크 스 | % | 890 | 석 도 철 관 | kg |
| 793 | 선 철 | % | 382. 기계제조업 | | |
| 796 | 형 강 | % | 609 | 고 철 | % |
| 797-1 | 봉 강 | % | 610 | 동 설 | kg |
| 798 | 중 후 관 | % | 789 | 코 크 스 | % |
| 799 | 박 관 | % | 793 | 선 철 | % |
| 800 | 주 물 | % | 796 | 형 강 | % |
| 801 | 선 재 (와이어로프) | % | 797-1 | 봉 강 | % |
| | | | 798 | 중 후 관 | % |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원재료명 | 단위 |
|-----------|-------------------|----|-----------|--------------|----|
| 799 | 박 판 | % | 767 | P. V. C 수 지 | kg |
| 800 | 주 물 | % | 773 | 합 성 고 무 | % |
| 801 | 선 재 (와이어로프) | % | 798 | 중 후 판 | % |
| 802 | 철 선 | % | 799 | 박 판 | % |
| 803 | 강 관 | % | 802 | 철 선 | % |
| 804 | 특 수 강 | % | 804 | 특 수 강 | % |
| 806 | 전 기 동 | kg | 806 | 전 기 동 | kg |
| 809 | 알 미 늄 피 | kg | 807 | 연 피 | kg |
| 810 | 황 동 (놋쇠, 진유) | kg | 808 | 아 연 피 | kg |
| 811 | 알 미 늄 판 | kg | 809 | 알 미 늄 피 | kg |
| 812 | 동 판 | kg | 810 | 황 동 (놋쇠, 진유) | kg |
| 815 | 스 테 인 레 스 판 | kg | 811 | 알 미 늄 판 | kg |
| 816 | 동 선 | kg | 812 | 동 판 | kg |
| 819 | 용 접 봉 | kg | 813 | 인 청 동 판 | kg |
| 891 | 전 동 기 | HP | 814 | 규 소 강 판 | % |
| 892 | 변 속 기 | 개 | 815 | 스 텐 레 스 판 | kg |
| 893 | 내 연 기 관 | HP | 816 | 동 선 | kg |
| 894 | 체 인 | kg | 817 | 알 미 늄 박 | kg |
| 895 | 베 아 링 | kg | 820 | 트 랜 지 스 터 | 천개 |
| 896 | 유 압 기 기 | 대 | 821 | 집 적 회 로 | 개 |
| 897 | 주 강 | % | 822 | 브 라 운 판 | 개 |
| | | | 823 | P. C. B 원 판 | 매 |
| |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 | 824 | 자 석 (마그네트) | 천개 |
| 523 | 천 연 (생) 고 무 | % | | | |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원재료 번호 | 지정 원재료명 | 단위 |
|---|-----------|------|-------------|----------------------------|----------------|
| <u>384. 운수장비제조업</u> | | | 717-1 | 재 생 섬 유 사 (반합성섬유사포함) | % |
| 796 | 형 | 강 % | 717-2 | 합 성 섬 유 사 | % |
| 797-1 | 봉 | 강 % | 722-1 | 재 생 섬 유 직 물 (아세테이트직물포함) | m ² |
| 798 | 중 후 | 관 % | 722-2 | 합 성 섬 유 직 물 | m ² |
| 799 | 박 | 관 % | 767 | P. V. C 수 지 | kg |
| 800 | 주 | 물 % | 802 | 철 선 | % |
| 802 | 철 | 선 % | 803 | 강 관 | % |
| 803 | 강 | 관 % | 810 | 황 동 | kg |
| 805 | 대 | 강 % | 815 | 스 텐 레 스 관 | kg |
| 809 | 알 미 늄 | 괴 kg | 대분류 4. 전기업 | | |
| 819 | 용 접 봉 | kg | | | |
| 825 | 트 란 스 밧 손 | 개 | | | |
| 826 | 자 동 차 엔 진 | 대 | | | |
| 885 | 타 이 어 | 본 | | | |
| <u>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 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제조업</u> | | | ※ <연료 및 전력> | | |
| 810 | 황 동 | kg | 901 | 무연탄 및 원료탄 | % |
| 815 | 스 텐 레 스 관 | kg | 902 | 경 유 및 중 유 | kl |
| <u>중분류 39. 기타제조업</u> | | | 903 | 방 카 C 유 | kl |
| 526 | 인 | 모 kg | 904 | 전 력 | 천 KWH |
| 623 | 흑 | 연 kg | | | |

부 록 도 량 형

< 표 1 > 길 이

| 단 위 | mm | cm | m | km | in | ft |
|---------|-----------------|-----------------|---------|--------------------|---------|---------|
| 1 mm | □ | 0.1 | 0.001 | (0.1) ⁸ | 0.03937 | 0.00328 |
| 1 cm | 10 | □ | 0.01 | (0.1) ⁵ | 0.3937 | 0.0328 |
| 1 m | 1,000 | 100 | □ | (0.1) ³ | 39.37 | 3.2808 |
| 1 km | 10 ⁶ | 10 ⁵ | 1000 | □ | 39,370 | 3280.8 |
| 1 in | 25.4 | 2.54 | 0.0254 | 0.000025 | □ | 0.0833 |
| 1 ft | 304.8 | 30.48 | 0.3048 | 0.000304 | 12 | □ |
| 1 yd | 914.4 | 91.44 | 0.9144 | 0.00091 | 36 | 3 |
| 1 mile | - | 160930 | 1609.3 | 1.6093 | 63360 | 5280 |
| 1 尺 (자) | 303.03 | 30.303 | 0.303 | 0.00030 | 11.93 | 0.9932 |
| 1 間 (간) | 1818.2 | 181.82 | 1.818 | 0.0182 | 71.582 | 5.965 |
| 1 町 (정) | 10909.1 | 10909.1 | 109.091 | 0.1090 | 4294.9 | 357.91 |
| 1 里 (리) | - | - | 3927.27 | 3.927 | 154619 | 12885 |
| 1 寸 (치) | 30.303 | 3.0303 | 0.0303 | 0.00003 | 1.1930 | 0.0994 |

환 산 표

| yd | mile | 尺 | 間 | 町 | 里 | 寸 |
|---------|-----------|--------|---------|----------|----------|--------|
| 0.00109 | 0.0000006 | 0.0033 | 0.00055 | 0.000009 | - | 0.033 |
| 0.0109 | 0.000006 | 0.033 | 0.005 | 0.00009 | - | 0.33 |
| 1.0936 | 0.00062 | 3.3 | 0.55 | 0.009 | 0.00025 | 33 |
| 1093.6 | 0.62137 | 3300 | 550 | 9 | 0.25 | 33000 |
| 0.0278 | 0.000015 | 0.0838 | 0.0140 | 0.0002 | - | 0.8382 |
| 0.3333 | 0.00019 | 1.0058 | 0.1676 | 0.0023 | 0.00008 | 10.058 |
| □ | 0.00057 | 3.0175 | 0.5029 | 0.0083 | 0.0002 | 30.175 |
| 1760 | □ | 5310.8 | 885.12 | 14.752 | 0.4098 | 53108 |
| 0.3314 | 0.0002 | □ | 0.1667 | 0.0028 | 0.00008 | 10 |
| 1.9884 | 0.011 | 6 | □ | 0.0167 | 0.0005 | 60 |
| 119.304 | 0.0678 | 360 | 60 | □ | 0.0278 | 3600 |
| 4295 | 2.4403 | 12960 | 2160 | 36 | □ | 129600 |
| 0.0331 | 0.00002 | 0.1 | 0.01667 | 0.00028 | 0.000008 | □ |

< 표 2 > 부 피

| 단 위 | cm ³ | m ³ | in ³ | ft ³ | yd ³ |
|-------------------|-----------------|--------------------|-----------------|-----------------|-----------------|
| 1 cm ³ | □ | (0.1) ⁶ | 0.06103 | 0.00003 | 0.00001 |
| 1 m ³ | 10 ⁶ | □ | 61027 | 35.3147 | 1.3080 |
| 1 in ³ | 16.3872 | 0.000016 | □ | 0.00057 | 0.00002 |
| 1 ft ³ | 28316.8 | 0.02831 | 1728 | □ | 0.03703 |
| 1 yd ³ | 764511 | 0.76451 | 46656 | 27 | □ |
| 1 gal (美) | 3785.43 | 0.00378 | 231 | 0.1337 | 0.00495 |
| 1 gal (英) | 4545.9 | 0.00455 | 277.42 | 0.1605 | 0.00595 |
| 1 ℓ | 1000 | 0.001 | 61.027 | 0.03531 | 0.0013 |
| 1 合 (喜) | 180.39 | 0.00018 | 11.0041 | 0.0066 | 0.00023 |
| 1 升 (되) | 1803.9 | 0.0018 | 110.041 | 0.0637 | 0.0023 |
| 1 斗 (말) | 18039 | 0.01803 | 1100.41 | 0.6371 | 0.0236 |
| 1 石 (섬) | 180391 | 0.1803 | 11004.1 | 6.3704 | 0.2359 |

| gal (美) | gal (英) | ℓ | 合 | 升 | 斗 | 石 |
|---------|---------|---------|---------|---------|---------|----------|
| 0.00026 | 0.00022 | 0.001 | 0.00554 | 0.00055 | 0.00005 | 0.000005 |
| 264.186 | 219.97 | 1000 | 5543.52 | 554.325 | 55.435 | 5.5435 |
| 0.00432 | 0.0036 | 0.01638 | 0.0908 | 0.00908 | 0.00091 | 0.00009 |
| 7.4805 | 6.228 | 28.3169 | 156.966 | 15.6966 | 1.5697 | 0.15697 |
| 201.974 | 168.18 | 764.511 | 4238.09 | 423.81 | 42.381 | 4.2381 |
| □ 1 | 0.8327 | 3.7854 | 20.983 | 2.0983 | 0.2098 | 0.02098 |
| 1.2009 | □ 1 | 4.5459 | 25.206 | 2.5206 | 0.2521 | 0.02521 |
| 0.2642 | 0.21997 | □ 1 | 5.5435 | 0.5544 | 0.0554 | 0.00554 |
| 0.04765 | 0.03968 | 0.18039 | □ 1 | 0.1 | 0.01 | 0.0001 |
| 0.4765 | 0.3968 | 1.8039 | 10 | □ 1 | 0.1 | 0.001 |
| 4.7657 | 3.6981 | 18.039 | 100 | 10 | □ 1 | 0.1 |
| 47.6567 | 39.681 | 180.39 | 1000 | 100 | 10 | □ 1 |

〈표 3〉 무게

| 단 위 | g | kg | t (噸) | L / B | O Z |
|-------------|-----------------|---------|--------------------|----------|---------|
| 1 g | □ | 0.001 | (0.1) ⁶ | 0.002204 | 0.03527 |
| 1 kg | 1000 | □ | 0.001 | 2.20459 | 35.273 |
| 1 t (M / T) | 10 ⁶ | 1000 | □ | 2204.59 | 35273 |
| 1 L / B | 435.592 | 0.45359 | 0.00045 | □ | 16 |
| 1 OZ | 28.8495 | 0.02835 | 0.000028 | 0.0625 | □ |
| 1 S/T (미톤) | 907200 | 907.2 | 0.9072 | 2000 | 32000 |
| 1 L/T (영톤) | 1016000 | 1016 | 1.016 | 2240 | 35840 |
| 1 gr | 10.06479 | 0.00006 | - | 0.00014 | 0.00228 |
| 1 匁 (돈) | 3.75 | 0.00375 | 0.000004 | 0.00827 | 0.1323 |
| 1 (근) | 600 | 0.6 | 0.0006 | 1.3228 | 21.1647 |
| 1 貫 (관) | 3750 | 3.75 | 0.00375 | 8.2672 | 132.28 |

| S / T | L / T | gr | 刃 | 斤 | 貫 |
|-----------|-----------|---------|---------|---------|----------|
| 0.000011 | 0.000098 | 15.432 | 0.2667 | 0.00166 | 0.000266 |
| 0.001102 | 0.000984 | 15432 | 266.67 | 1.6666 | 0.2666 |
| 1.1022 | 0.9841 | - | 266670 | 1666.6 | 266.66 |
| 0.0005 | 0.000446 | 7000 | 120.96 | 0.756 | 0.12096 |
| 0.000031 | 0.000028 | 437.4 | .7.56 | 0.0473 | 0.00756 |
| □ | 0.89286 | - | 293919 | 1512 | 241.92 |
| 1.12 | □ | - | 262420 | 1693.4 | 270.95 |
| - | - | □ | 0.01728 | 0.00108 | 0.000017 |
| 0.0000041 | 0.0000037 | 57.872 | □ | 0.00625 | 0.001 |
| 0.00066 | 0.00059 | 9259.56 | 160 | □ | 0.16 |
| 0.00413 | 0.00369 | 57872 | 1000 | 6.25 | □ |

< 표 4 > 넓 이

| 단 위 | mm ² | cm ² | m ² | km ² | in ² | ft ² | yd ² |
|---------------------|------------------|------------------|--------------------|---------------------|----------------------|---------------------|---------------------|
| 1 mm ² | □ | 0.01 | (0.1) ⁶ | (0.0) ¹² | 0.00155 | 0.0001 | 0.000001 |
| 1 cm ² | 100 | □ | (0.1) ⁴ | (0.1) ¹⁰ | 0.1550 | 0.0011 | 0.00012 |
| 1 m ² | 10 ⁶ | 10 ⁴ | □ | (0.1) ⁶ | 1549.99 | 10.764 | 1.1958 |
| 1 km ² | 10 ¹² | 10 ¹⁰ | 10 ⁶ | □ | (39370) ² | (3280) ² | (1090) ² |
| 1 in ² | 645.16 | 6.4516 | 0.00065 | - | □ | 0.00694 | 0.00077 |
| 1 ft ² | 92903.04 | 929.03 | 0.0929 | - | 144 | □ | 0.1111 |
| 1 yd ² | - | 8359.44 | 0.8361 | - | 1296 | 9 | □ |
| 1 mile ² | - | - | - | 2,5899 | (63360) ² | (5280) ² | (1760) |
| 1 a | 10 ⁸ | 10 ⁶ | 100 | 0.0001 | 155001.7 | 1076.4 | 119.58 |
| 1 ha | 10 ¹⁰ | 10 ⁸ | 10 ⁴ | 0.01 | 15500160 | 107640 | 11958 |
| 1 acre | - | - | 4046.8 | 0.0040 | 6274735 | 43560 | 4840 |
| 1 坪 | - | - | 3.3058 | 0.000003 | 5125.58 | 35.583 | 3.9537 |
| 1 段步 | - | - | 991.74 | 0.00099 | 1537500 | 10674.9 | 1186.1 |
| 1 町步 | - | - | 9917.4 | 0.0099 | 15375000 | 106749 | 11861 |
| 1 平方尺 | - | 918.2 | 0.09182 | - | 142.35 | 0.9884 | 0.1098 |

| mile ² | a | ha | acre | 坪 | 段步 | 町步 | 平方尺 |
|-------------------|--------------------|---------------------|----------|---------|---------|-----------|----------|
| - | (0.1) ⁸ | (0.1) ¹⁰ | - | - | - | - | 0.00001 |
| - | (0.1) ⁸ | (0.1) ⁸ | - | 0.00003 | - | - | 0.0011 |
| - | 0.01 | 0.0001 | 0.000247 | 0.3025 | 0.001 | 0.0001 | 10.89 |
| 0.3861 | 10000 | 100 | 247.114 | 302500 | 1008.3 | 100.83 | 10890000 |
| - | 0.000006 | - | - | 0.00019 | - | - | 0.0070 |
| - | 0.0009 | 0.000009 | 0.000022 | 0.0281 | 0.00009 | 0.000009 | 1.0117 |
| - | 0.00836 | 0.00008 | 0.00021 | 0.2529 | 0.00084 | 0.00008 | 9.1054 |
| □ | 25898.46 | 258.98 | 640 | - | - | 78347.597 | - |
| 0.000039 | □ | 0.01 | 0.0247 | 30.25 | 0.1008 | 0.01008 | 1089 |
| 0.0039 | 100 | □ | 2.471 | 3025 | 10.183 | 1.008 | 108900 |
| 0.00156 | 40.468 | 0.40468 | □ | 1224.2 | 4.0806 | 0.4081 | 44071.2 |
| - | 0.0331 | 0.00033 | 0.00081 | □ | 0.0033 | 0.00033 | 36 |
| 0.00004 | 9.9174 | 0.09917 | 0.2451 | 300 | □ | 0.1 | 10800 |
| 0.0004 | 99.174 | 0.9917 | 2.4506 | 3000 | 10 | □ | 108000 |
| - | 0.00091 | 0.000009 | - | 0.0278 | 0.00009 | 0.000009 | □ |

1. 開發編制의 必要性

- 。全國 및 地域 經濟動向을 相互連繫 分析하여 地域間 均衡 發展計劃을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基本 資料의 確保
- 。地方自治制 實施에 對備, 地域別 景氣 및 産業活動動向을 把握을 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供
- 。地域 所得 推計를 爲한 鑛工業 部門 基礎資料 提供

2. 編制 概要

가. 指數의 性格

- 。各市·道 單位別로 鑛工業 部門의 主要 品目別 生産·出荷·在庫量의 變動 狀況을 每月別로 把握하여 이를 '85年度를 基準으로 한 數量指數 形態로 變換하여, 이 指數를 土臺로 市·道別 鑛工業 實績動向과 景氣의 흐름을 觀察할 目的으로 作成하는 代表的 經濟指標임.

나. 編制方法 및 內容

- 。地域別 鑛工業指數의 編制方法은 現在 每月別로 公表하고 있는 全國 産業 生産·出荷·在庫 指數와의 連繫分析이 可能토록 하기 위하여 全國指數 編制基準 및 方法을 대부분 準用하고 있음.
- 。基準時
 - 指數는 어떤 一定時點을 基準으로 比較時의 變化推移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地域指數도 全國指數에서와 같이 1985年을 基準으로 하여 作成하고 있음(1985=100). 다만 市·道別로는 基準時 以後에 品目 및 對象業體의 新規 發生 또는 消滅로 因한 變動狀況이 多少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變化는 開發編制時點에서 調整 反映하였음.
- 。代表品目
 - 鑛工業指數는 個別品目의 움직임을 綜合하여 指數化하게 됨으로 指數 作成을 爲한 個別品目(代表品目)의 選定이 매우 重要함.
 - 鑛工業指數는 每月의 變化를 迅速하게 나타내기 爲하여 作成되는 것이므로 鑛工業 部門의 全事業體를 對象으로 모든 製品을 總網羅하여 把握하기는 現實的으로 어려운 反面, 이 指數가 景氣動向을 敏感하게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鑛工業의 總合的인 動向은 물론, 細部業種別 動向 分析도 可能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서는 業種別로 代表性이 充分히 確保될 수 있도록 比重이 높은 品目들은 可及的 包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兩面性을 考慮하여 指數 作成의 基礎가 되는 品目은 各市·道業 種別 總生産額의 85% 内外를 차지할 수 있는 範圍까지 擴大 選定하였음.

市·道別 代表品目

| | | | | | | | | | | | | | | | | |
|-----|-----|-----|-----|-----|-----|-----|-----|-----|-----|-----|-----|-----|-----|-----|-----|----|
| 全國 | 生産 | 665 | 406 | 362 | 219 | 384 | 131 | 534 | 106 | 146 | 230 | 155 | 151 | 273 | 460 | 38 |
| 서 울 | 出 荷 | 665 | 402 | 362 | 219 | 382 | 130 | 533 | 106 | 144 | 229 | 153 | 148 | 272 | 457 | 38 |
| 釜 山 | 在 庫 | 550 | 261 | 168 | 292 | 98 | 421 | 71 | 105 | 181 | 118 | 114 | 217 | 367 | 20 | |
| 仁 川 | | | | | | | | | | | | | | | | |
| 大 邱 | | | | | | | | | | | | | | | | |
| 光 州 | | | | | | | | | | | | | | | | |
| 京 畿 | | | | | | | | | | | | | | | | |
| 江 原 | | | | | | | | | | | | | | | | |

(註) 全國指數에서는 電氣業이 追加되나 여기서는 除外하였음.

加重值

代表品目들은 大部分 數量으로 把握되는 關係로 調査單位가 서로 相異할 是 아니라(個, 臺, kg, m, G/T 등) 個別品目들이 鑛工業 部門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各각기 다르므로, 이를 綜合하여 總合指數를 作成하기 爲하여는 一定한 加重值 體系가 必要하게 됨.

代表品目들의 鑛工業上 比重을 나타내는 加重值는 原則的으로 基準時의 構造에 따라 다음 基準에 의해 萬分比로 擴大 作成하였음.

- 生産指數 : 附加價值額 構成比
- 出荷指數 : 出荷額 構成比
- 在庫指數 : 年平均 在庫額 構成比

市·道別 主業種(生産比重基準)

(鑛工業總合=100.0%)

| | | | | |
|-----|-----|---|------|-----------------|
| 全國 | 主業種 | % | 30.3 |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
| 서 울 | 主業種 | % | 27.6 | 纖維·衣服·가죽 製品 |
| 釜 山 | 主業種 | % | 30.2 | 石油·化學·고무·플라스틱 |
| 仁 川 | 主業種 | % | 61.3 | 纖維·衣服·가죽 製品 |
| 光 州 | 主業種 | % | 36.7 |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
| 京 畿 | 主業種 | % | 28.5 |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
| 江 原 | 主業種 | % | 60.3 | 石炭鑛業 |
| 全 國 | 主業種 | % | 20.3 | 飲食料品 및 담배 |
| 忠 北 | 主業種 | % | 28.4 | 纖維·衣服·가죽 製品 |
| 忠 南 | 主業種 | % | 33.5 | 飲食料品 및 담배 |
| 全 北 | 主業種 | % | 48.5 | 石油·化學·고무·플라스틱 |
| 全 南 | 主業種 | % | 34.6 |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
| 慶 北 | 主業種 | % | 51.6 | 組立金屬·機械·電子·運輸裝備 |
| 慶 南 | 主業種 | % | 67.8 | 飲食料品 및 담배 |
| 濟 州 | 主業種 | % | | |

。指數算式

- 基準時点 固定 加重算術 平均方法(Laspeyres 算式)을 使用함.
- 代表品目들의 指數를 먼저 求한 後, 이를 一定한 加重值 體系에 따라 積算하여 業種別 및 鑛工業總合指數를 算出함.

。標本事業體

- 代表品目を 生産하고 있는 從業員 10人以上 19,300個 業體를 市·道別로 區分한 後, 從業員數가 100人 以上이거나, 從業員數가 그 未滿이라도 品目別 出荷額 規模가 큰 事業體는 모두 全數調査하고, 出荷額 規模가 작은 小規模 業體는 系統 標本 抽出하여 調査함.

市·道別 標本事業體

(個)

| | 全 國 | 서 울 | 釜 山 | 大 邱 | 仁 川 | 光 州 | 京 畿 | 江 原 | 忠 北 | 忠 南 | 全 北 | 全 南 | 慶 北 | 慶 南 | 濟 州 |
|------|--------|--------|--------|--------|--------|--------|--------|--------|--------|--------|--------|--------|--------|--------|--------|
| 標本業體 | 9,108 | 1,515 | 1,060 | 598 | 597 | 190 | 1,832 | 341 | 276 | 544 | 385 | 436 | 552 | 692 | 91 |

。編制指數의 種類

- 鑛工業 生産·出荷·在庫指數(總合指數, 業種別指數, 品目別指數)
- 財別 分類指數(生産財, 消費財別 生産·出荷·在庫指數)

。編制時点

- 1985年 1月分 以後의 指數를 每月別로 編制

。編制 對象 地域

-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14個 市·道 單位로 編制
- 大田直轄市는 現在 忠南 道에 包含하여 編制하고 있으나 '89年中 分離 豫定임.

。資料蒐集 體系

- 全國 및 地域指數 作成에 共通의으로 包含되는 品目(665個) : 調査統計局 地方統計事務所에서 調査
- 特定 市·道 指數 作成에만 反映되는 品目(99個) : 該當 市·道에서 調査

。集計 및 指數 編制

- 調査統計局에서 一括 集計 및 指數 作成.
- 市·道別 與件이 갖추어지는대로 段階的으로 移管할 計劃임.

。全國指數와의 關係

- 市·道別 特性上 代表 品目, 加重值 構造 등이 서로 相異할 수 밖에 없으므로 市·道指數를 總合하여 全國指數를 算出하는데는 無理가 따름.
- 따라서 全國指數와 市·道別指數와는 分離하여 各各 獨立的으로 編制 하되, 編制基準·方法 등을 統一·連繫 시킴으로써 相互 有機的 分析이 可能토록 하였음.

3. 編制結果

가. '88年中 鑛工業動向 概況

- 。'88年中 國內 鑛工業 生産은 電氣電子, 運輸裝備 및 其他化學製品 業種等を 主軸으로 '87年 對比 13.5%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市·道別로는 全南(33.2%), 京畿(32.7%), 慶北(22.8%), 忠北(20.8%), 慶南(16.9%), 仁川(15.1%)에서 全國 平均 增加率을 上廻하는 伸張勢를 보인反面, 忠南(12.7%), 光州(12.7%), 서울(8.3%), 大邱(8.1%), 全北(4.7%), 江原(1.8%), 釜山(1.0%)에서는 比較的 낮은 伸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特히 濟州道の 경우는 飲食料品 産業의 不振 影響으로 前年對比 -5.3%로 나타나 鑛工業 部門은 負(-)의 成長을 보였음.
- 。한편 生産者 出荷도 京畿(26.8%), 全南(26.8%), 慶北(22.4%), 忠北(21.1%)에서 20% 以上の 매우 높은 增加率을 보였고, 서울, 大邱, 仁川, 光州, 忠南, 慶南 等도 10%~20% 内外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釜山, 江原, 全北에서는 5% 内外의 낮은 增加率을 보였으며 濟州道の 경우는 -1.7%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 。生産 및 出荷 增加率이 '87年에 비해 多少 鈍화된 가운데 年平均 在庫 增加勢는 一部 市·道(서울, 大邱, 光州, 全北, 慶北)를 除外하고는 대체적으로 擴大 樣相을 나타내었음.

地域別 生産·出荷·在庫 增減率

(比前年(分期), %)

| | 生 産 | | | | | | 出 荷 | | 在 庫 | |
|-----|------|------|------|------|-------|------|------|------|------|-------|
| | '87 | '88 | | | | | '87 | '88 | '87 | '88 |
| | | 1/4 | 2/4 | 3/4 | 4/4 | 年間 | | | | |
| 全 國 | 18.4 | 20.5 | 7.1 | 16.2 | 11.4 | 13.5 | 18.1 | 13.1 | 9.9 | 13.6 |
| 서 울 | 16.6 | 10.8 | 6.0 | 6.3 | 10.2 | 8.3 | 18.1 | 10.3 | 29.1 | 13.2 |
| 釜 山 | 11.5 | 11.8 | -0.3 | -0.7 | -5.8 | 1.0 | 9.9 | 1.5 | 12.5 | 16.4 |
| 大 邱 | 11.0 | 15.0 | 7.7 | 6.8 | 3.9 | 8.1 | 14.7 | 10.8 | 50.4 | -10.8 |
| 仁 川 | 20.9 | 19.8 | 0.4 | 11.6 | 29.8 | 15.1 | 21.7 | 18.9 | 11.0 | 24.8 |
| 光 州 | 18.0 | 26.4 | -2.9 | 21.6 | 8.4 | 12.7 | 22.6 | 16.5 | 21.3 | -6.2 |
| 京 畿 | 33.4 | 40.9 | 29.9 | 34.7 | 27.2 | 32.7 | 31.3 | 26.8 | 41.2 | 53.6 |
| 江 原 | 0.1 | 2.5 | -3.5 | 7.4 | 1.7 | 1.8 | 1.7 | 5.2 | 9.0 | 13.2 |
| 忠 北 | 20.8 | 22.2 | 26.5 | 19.1 | 15.9 | 20.8 | 16.9 | 21.1 | -7.5 | 41.5 |
| 忠 南 | 14.6 | 17.7 | 11.5 | 17.0 | 5.9 | 12.7 | 13.2 | 15.9 | 13.4 | 18.1 |
| 全 北 | 15.1 | 9.2 | 3.8 | 2.6 | 3.6 | 4.7 | 17.6 | 5.4 | 8.6 | 0.4 |
| 全 南 | 11.9 | 29.9 | 28.1 | 32.9 | 40.8 | 33.2 | 8.1 | 26.8 | 2.2 | 4.9 |
| 慶 北 | 20.2 | 26.1 | 17.6 | 26.5 | 21.6 | 22.8 | 19.3 | 22.4 | 19.9 | 7.9 |
| 慶 南 | 12.4 | 27.1 | -2.4 | 27.8 | 18.3 | 16.9 | 12.2 | 16.4 | 12.5 | 32.3 |
| 濟 州 | 10.3 | 27.9 | 14.2 | -1.7 | -27.3 | -5.3 | 18.7 | -1.7 | -6.8 | 7.8 |

나. 市·道別 動向

(1) 서울 特別市

。'88年中 鑛工業 生産은 '87年 對比 8.3%, 出荷는 10.3% 增加하였으나, 그 增加勢는 '87年에 비해 크게 鈍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로는 電氣電子 製品의 國內外 需要 增加에 따라 電氣電子 業種이 生産·出荷 各 26.6%, 26.5%씩 增加한 것을 비롯, 日刊新聞, 一般印刷物 等이 增加함에 따라 印刷出版業이 各 13.7%, 11.4%씩의 伸張勢를 보였으며, 그 밖에도 其他 化學製品(18.0%, 29.7%; 印刷잉크, 醫藥品 等 增加) 및 衣服製造業(14.4%, 7.3%; 女性用화운데이션, 女子用外衣 等 增加)에서 比較的 높은 伸張勢를 보인 反面, 原料切上에 따른 輸出 不振 影響으로 纖維 (-12.1%, -8.6%; 메리야스外衣, 純本絹織物 等 減少) 및 其他 製造業 (-20.7%, -19.5%; 貴石 및 半貴石, 人形 및 장난감 等 減少) 등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業 | '87 | | '88 |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鑛業 | 16.6 | 18.1 | 8.3 | 10.3 |
| 鑛業 | -29.8 | -46.1 | -93.8 | -91.9 |
| 製造業 | 16.8 | 18.3 | 8.5 | 10.5 |
| 生産業 · 飲食料品 및 담배 · 纖維 · 衣服 · 가죽 · 나무 · 家具 · 종이 · 印刷出版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 非金屬 礦物 製品 · 第1次 金屬 · 組立 金屬 · 機械 裝備 · 其他 製造業 | 4.4 | 6.4 | -0.1 | 0.2 |
| | 20.2 | 20.1 | 3.2 | 0.2 |
| | 20.6 | 19.1 | 10.0 | 11.9 |
| | 7.8 | 13.2 | 12.8 | 12.0 |
| | 12.6 | 11.9 | 9.0 | 12.1 |
| | 16.3 | 22.7 | -4.7 | 13.0 |
| | 24.1 | 35.3 | 21.0 | 39.7 |
| | 23.8 | 24.4 | 19.5 | 20.2 |
| | 20.3 | 19.0 | -20.7 | -19.5 |
| | | | | |
| 食料品(-1.9), 飲料品(10.1) 纖維(-12.1), 衣服(14.4) 나무(-9.1), 家具(27.4) 종이(7.2), 印刷出版(13.7) 産業用化合物(14.1), 其他化學(18.0) 其他非金屬礦物(-7.4), 유리(2.7) 鐵鋼(29.5), 非鐵金屬(-15.2) 機械(11.2), 電氣電子(26.6) | | | | |

(2) 釜山直轄市

。聯合鐵鋼紛糾의 長期化, 大韓造船公社 傘下工場의 罷業, 원貨切上에 따른 衣服, 運動化 業種의 不振 등 隘路 要因이 겹쳐 '88年中 鑛工業 生産 및 出荷는 前年對比 各各 1.0%, 1.5%의 매우 낮은 增加에 그쳤음.

。業種別로는 産業用化合物의 生産·出荷가 높은 增加率(32.6%, 21.0% ; 폴리우레탄, 酸素 等 增加)를 보인 것을 비롯 機械(12.8%, 11.9% ; 研削機, 프레스機 等 增加), 其他化學(11.2%, 15.8% ; 페인트, 신너 等 增加)業種 等에서는 比較的 높은 增加勢를 나타내었으나, 原貨切上으로 輸出 採算性이 惡化된 運動化(3.0%, 4.3% 增加)를 포함한 고무製品 製造業이 낮은 增加率(3.2%, 4.1% 增加)을 보이는데다가, 勞使紛糾 等 影響으로 鐵鋼(-15.0%, -19.8% ; 亞鉛鍍鋼板, 冷延薄板 等 減少), 組立金屬(-4.9%, -8.8% ; 陸上金屬構造物, 스텐레스製 食器 等 減少), 運輸裝備(-1.5%, -0.9%) 業種 等이 減少를 보였으며 衣服業種(-8.4%, -9.7% ; 既成洋服, 既成셔츠類 等 減少)에서도 原貨切上 影響으로 生産·出荷가 매우 不振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7 | | ' 8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11.5 | 9.9 | 1.0 | 1.5 | |
| 。鑛 業 | 3.2 | 6.0 | -12.9 | -28.4 | 其他鑛業(-13.7) |
| 。製 造 業 | 11.5 | 9.9 | 1.0 | 1.5 | |
| · 飲食料品 및 담배 | 4.2 | 3.7 | 1.4 | -1.3 | 食料品(0.6), 飲料品(7.1) |
| · 纖維·衣服·가죽 | 15.1 | 12.0 | -0.1 | 1.8 | 纖維(5.4), 衣服(-8.4) |
| · 나무·家具 | 13.3 | 13.5 | 22.9 | 14.4 | 나무(9.8), 家具(115.6) |
| · 종이·印刷出版 | 7.9 | 11.7 | 1.1 | 5.8 | 종이(7.7), 印刷出版(-7.8) |
|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 12.0 | 11.7 | 5.2 | 10.2 | 産業用化合物(32.6), 고무(3.2) |
| · 非金屬鑛物製品 | 2.1 | 6.0 | 7.3 | 9.0 | 其他非金屬鑛物(7.4), 유리(5.7) |
| · 第1次金屬 | 7.3 | 7.9 | -12.9 | -17.9 | 鐵鋼(-15.0), 非鐵金屬(13.5) |
| · 組立金屬·機械裝備 | 11.1 | 8.2 | -1.0 | -0.4 | 組立金屬(-4.9), 運輸裝備(-1.5) |
| · 其他 製造業 | 22.4 | 22.8 | -2.1 | 0.3 | |

(4) 仁川直轄市

- 。石油精製, 電氣電子, 組立金屬製品 및 家具·裝置物業種 等에서의 높은 增加에 따라 生産은 前年對比 15.1%, 出荷는 18.9% 伸張하였음
- 。業種別로는 國內外 需要 增加로 京仁에너지의 生産 能力이 擴充됨에 따라 石油精製(42.0%, 51.9% ; 輕油, 방카C油 等 增加)業種이 크게 增加한 것 을 비롯, 電氣電子 (76.3%, 56.0% ; 코넥터, 비디오테이프 等 增加), 家具 및 裝置物(42.4%, 37.6% ; 올림픽 特需 等으로 寢臺, 서랍장 및 音響器機臺 等 增加), 組立金屬製品(21.7%, 22.2% ; 熱交換機, 家庭用보일러 等 增加), 飲料品(48.2%, 47.3% ; 合成炭酸飲料, 果汁飲料 等 增加)業種 等에서는 높은 增加勢를 보였으나, 大宇電子 生産라인 一部の 光州 移轉 및 一部 大企業體의 勞使分糾 等 影響으로 機械(-11.8%, -8.9%; 가스레인지, 컴퓨터 및 周邊器機 等 減少)業種에서 前年對比 減少한 것 을 비롯 運輸裝備(-10.9%, -1.8% ; 非商業用特殊船舶, 合成樹脂船 等 減少), 衣服(-12.8%, -13.9% ; 女子用既成外衣, 既成普通外衣 等 輸出 減少)業種 等에서는 減少를 보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20.9 | 21.7 | 15.1 | 18.9 | |
| 。鑛 業 | 8.0 | 5.7 | 14.1 | 0.7 | 其他鑛業(14.4) |
| 。製 造 業 | 20.9 | 21.7 | 15.1 | 19.0 | |
| · 飲食料品 및 담배 | 12.1 | 13.0 | 8.4 | 4.3 | 食料品(2.8), 飲料品(48.2) |
| · 纖維·衣服·가죽 | 1.6 | -4.1 | 6.5 | 11.9 | 纖維(8.0), 가죽신발(52.0) |
| · 나무·家具 | 7.6 | 7.6 | 22.0 | 17.7 | 나무(4.2), 家具(42.4) |
| · 종이·印刷出版 | 19.6 | 22.0 | 8.7 | 9.5 | 종이(21.6), 印刷出版(-37.2) |
|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 9.2 | 8.1 | 25.4 | 30.5 | 産業用化合物(11.6), 石油精製(42.0) |
| · 非金屬鑛物製品 | 19.6 | 21.1 | 13.5 | 11.0 | 其他非金屬鑛物(13.5), 유리(15.9) |
| · 第1次金屬 | 31.9 | 28.5 | 8.8 | 15.1 | 鐵鋼(9.8), 非鐵金屬(-0.2) |
| · 組立金屬·機械裝備 | 29.1 | 35.5 | 15.2 | 15.8 | 電氣電子(76.3), 組立金屬(21.7) |
| · 其他製造業 | 18.6 | 19.3 | 20.5 | 19.1 | |

(5) 光州直轄市

○ 自動車 産業 및 電氣電子 産業 등에서 好調을 보임에 따라 '87年 對比 生産・出荷가 各 12.7% 및 16.5% 増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 業種別로는 自動車 産業의 好調을 反映, 運輸裝備(24.7%, 22.1%; 小型 버스, 大型트럭 등 増加) 業種에서 크게 増加한 것을 비롯하여 고무製品 14.2%, 13.7%; 自動車타이어, 自動車타이어 등 増加, 電氣電子(33.3%, 49.0%; 電子레인지, 乾電池 등 増加) 業種에서는 높은 伸張勢를 보인 反面, 全南紡織의 織物 生産라인 靈敏移轉 등의 事由로 纖維(-1.5%, 2.2%; 綿織物, 合成纖維織物 등 生産 減少) 業種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도 담배(-2.7%, 15.2%; 再乾燥인담배 등 生産 減少), 組立金屬製品(-12.6%, -12.8%; 스텐레스製家庭用品, 갓시門 및 窓等 減少) 業種 등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増減率

(比前年, %)

| 産 業 | '87 | | '88 |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鑛 工 業 | 18.0 | 22.6 | 12.7 | 16.5 |
| 鑛 業 | 24.8 | 1.8 | -17.4 | 29.8 |
| 製 造 業 | 18.0 | 22.6 | 12.7 | 16.5 |
| ・ 飲 食 料 品 및 담배 | 1.3 | 11.4 | -0.1 | 14.0 |
| ・ 纖 維 ・ 衣 服 ・ 가죽 | 5.9 | 8.2 | 0.7 | 2.8 |
| ・ 나무 ・ 家具 | 30.4 | 28.9 | 19.9 | 20.1 |
| ・ 종이 ・ 印刷 出版 | 14.9 | 14.0 | -4.0 | -4.2 |
|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 12.4 | 20.2 | 13.4 | 12.4 |
| ・ 非金屬 鑛物 製品 | 34.7 | 35.2 | 5.6 | 4.2 |
| ・ 第1次 金屬 | 42.8 | 36.9 | 22.4 | 11.1 |
| ・ 組立 金屬 ・ 機械 裝備 | 33.1 | 36.4 | 22.4 | 25.5 |
| ・ 其他 製造 業 | 24.8 | 24.8 | 68.6 | 68.6 |
| 食料品(5.0), 담배(-2.7) | | | | |
| 纖維(-1.5), 衣服(17.5) | | | | |
| 나무(0.4), 家具(35.7) | | | | |
| 종이(-8.7), 印刷出版(-3.3) | | | | |
| 고무(14.2), 其他化學(100.1) | | | | |
| 其他非金屬鑛物(5.6) | | | | |
| 鐵鋼(9.2), 非鐵金屬(38.0) | | | | |
| 電氣電子(33.3), 運輸裝備(24.7) | | | | |

(6) 京畿道

。主業種인 電氣電子, 運輸裝備, 其他化學製品 業種 등을 中心으로 前年에 이어 繼續 높은 伸張勢를 보임에 따라 生産은 '87年 對比 32.7%, 出荷는 26.9%의 매우 높은 增加率을 示顯

。業種別로는 電氣電子(50.6%, 38.3%; VTR, 칼라TV 등 增加)를 비롯, 運輸裝備(92.5%, 101.0%; 大型乘用車, 輕型乘用車, 高速型버스 등 增加), 機械(31.9%, 31.7%; 車輛用에어콘, 컴퓨터 및 周邊器機 등 增加), 組立金屬製品(29.1%, 23.9%; 병마개, 飲料用캔 등 增加), 其他化學製品(28.0%, 26.7%; 醫藥品, 化粧品 등 增加), 飲料品(66.3%, 61.3%; 果汁飲料, 合成炭酸飲料 등 增加) 業種 等에서는 큰 幅 增加를 보였으나, 元貨切上 등으로 輸出 採算性이 惡化된 가죽製品(-8.9%, -3.6%; 가방, 핸드백 등 減少) 業種과 印刷出版業(-9.1%, -1.0%; 앨범, 書籍 등 減少)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33.4 | 31.3 | 32.7 | 26.8 | |
| 。鑛 業 | 7.2 | 17.8 | 0.5 | -1.1 | 金屬鑛業(31.4), 其他鑛業(-4.9) |
| 。製 造 業 | 33.5 | 31.4 | 32.8 | 26.9 | |
| · 飲食料品 및 담배 | 26.3 | 20.7 | 34.4 | 26.2 | 食料品(14.0), 飲料品(66.3) |
| · 纖維 · 衣服 · 가죽 | 18.8 | 19.8 | 5.6 | 3.8 | 纖維(2.8), 衣服(22.6) |
| · 나무 · 家具 | 46.6 | 42.9 | 38.6 | 45.1 | 나무(7.5), 家具(49.7) |
| · 종이 · 印刷出版 | 19.9 | 23.3 | 16.3 | 20.8 | 종이(20.7), 印刷出版(-9.1) |
|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 26.0 | 25.8 | 20.2 | 14.5 | 産業用化合物(10.3), 其他化學(28.0) |
| · 非金屬鑛物製品 | 12.4 | 15.6 | 10.2 | 21.2 | 其他非金屬鑛物(5.9), 유리(29.6) |
| · 第1次金屬 | 17.0 | 18.8 | 13.4 | 27.9 | 鐵鋼(8.8), 非鐵金屬(16.5) |
| · 組立金屬 · 機械裝備 | 46.2 | 43.1 | 47.9 | 37.8 | 電氣電子(50.6), 運輸裝備(92.5) |
| · 其他製造業 | 19.6 | 16.7 | -0.8 | 4.7 | |

(7) 江原道

製造業 部門에서는 其他非金屬礦物製品, 其他石油·石炭製品 및 電氣電子 業種 等에서의 増加로 前年 對比 生産6.3%, 出荷 8.2%의 増加를 보였으나, 이 地域 鑛工業 生産 部門의 約 60%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石炭鑛業에서 的 減少 影響으로 鑛工業 部門 全體로는 生産 1.8%, 出荷 5.2%의 낮은 增加率에 그쳤음.

製造業 部門에서는 其他非金屬礦物製品(15.8%, 11.1%; 시멘트, 콘크리트 電柱 等 増加), 其他石油·石炭製品(15.4%, 13.9%; 아스콘, 石炭코크스 等 増加), 電氣電子(30.4%, 29.2%; 蓄電池, 換風機 等 増加) 業種 等に 比較的 높은 増加를 보였으나, 原料 切上 等 影響으로 衣服(-56.5%, -15.7%; 女子用 既成 外衣 等 減少) 業種 및 其他製造業(-29.9%, -30.7%; 人形 및 장난감, 小型공 等 減少) 等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採炭事情의 惡化와 油價 下落에 따른 燃料 消費 費 削減의 變化로 無煙炭 需要가 크게 減少 함으로써 石炭鑛業 (-1.2%, -2.3%)이 不振을 보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鑛 工 業 | 0.1 | 1.7 | 1.8 | 5.2 |
| 鑛 業 | -2.9 | -3.0 | -1.0 | -0.8 |
| 製 造 業 | 5.2 | 4.2 | 6.3 | 8.2 |
| · 飲 食 料 品 및 담배 | 0.2 | 0.1 | 2.7 | 2.6 |
| · 纖 維 · 衣 服 · 가 죽 | -8.1 | -4.5 | -21.3 | 8.4 |
| · 나무 · 家 具 | 7.4 | 4.5 | -24.4 | -19.1 |
| · 종이 · 印 刷 出 版 | 20.8 | 25.7 | 4.7 | 19.4 |
|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 13.6 | 12.9 | 13.4 | 6.3 |
| · 非 金 屬 礦 物 製 品 | 7.6 | 6.8 | 15.9 | 11.2 |
| · 第 1 次 金 屬 | 17.4 | -1.3 | 20.4 | 26.0 |
| ·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 32.4 | 20.1 | 28.6 | 33.8 |
| · 其他 製 造 業 | 13.7 | 6.1 | -29.9 | -30.7 |
| 其他化學(63.5), 其他石油·石炭(15.4) | | | | |
| 陶·瓷·土器(74.2), 其他非金屬礦物 | | | | |
| 鐵鋼(20.4), 機械(24.8), 電氣電子(30.4) | | | | |
| (15.8) | | | | |
| 나부(-24.4), 종이(12.4), 印刷出版(-2.0) | | | | |
| 食料品(8.5), 담배(0.5) 衣服(-56.5), 가죽신발(-68.7) | | | | |

(8) 忠清北道

。營農機械化의 進展에 따라 農業用 機械 製造 部門의 큰 幅 伸張과 아울러 其他化學製品, 纖維, 其他非金屬鑛物製品 業種 등에서 높은 成長을 보임에 따라 前年 對比 生産 20.8%, 出荷 21.1% 增加.

。業種別로는 機械 製造業에서 營農機械化 趨勢의 擴散으로 콤바인, 移秧機 等의 生産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生産 및 出荷가 各各 209.1%, 244.0% 씩 增加한 것을 비롯, 其他化學製品(46.4%, 43.5%; 化粧品, 合成洗劑 等 增加), 纖維(28.3%, 28.2%; 合成纖維織物, 綿織物 等 增加), 印刷出版(297.1%, 421.7%; 造幣公社 沃川工場 新設로 一般印刷物 等 增加) 및 其他非金屬鑛物製品(14.8%, 15.5%; 시멘트, 生石灰 等 增加) 等 業種에서 높은 增加勢를 보였으나, 가죽製品(-14.5%, -18.0%; 쇠가죽 減少), 其他石油·石炭製品(-4.9%, -3.6%; 煉炭, 아스콘 等 減少), 陶·瓷·土器(-7.4%, -7.8%; 陶瓷食器 減少) 및 組立金屬製品(-8.9%, -6.3%; 陸上金屬構造物, 建物用鐵物 等 減少) 業種 等에서는 減少를 보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20.8 | 16.9 | 20.8 | 21.1 | |
| 。鑛 業 | 8.1 | 6.0 | 6.1 | 4.3 | 石炭鑛業(-9.1), 其他鑛業(12.6) |
| 。製 造 業 | 21.0 | 17.3 | 21.6 | 21.6 | |
| · 飲 食 料 品 및 담 배 | 8.9 | 8.3 | 6.3 | 4.3 | 食料品(1.4), 飲料品(20.5) |
| · 纖 維 · 衣 服 · 가 죽 | 13.2 | 3.6 | 24.4 | 19.3 | 纖維(28.3), 가죽(-14.5) |
| · 나 무 · 家 具 | -1.3 | 1.8 | -17.4 | -16.3 | 나무(9.1), 家具(-47.6) |
| · 종 이 · 印 刷 出 版 | 25.1 | 16.5 | 138.3 | 146.8 | 종이(62.1), 印刷出版(297.1) |
| · 化 學 · 石 油 · 고무 · 플 라 스틱 | 22.4 | 17.5 | 18.8 | 18.3 | 産業用化合物(31.4), 其他化學(46.4) |
| · 非 金 屬 鑛 物 製 品 | 14.1 | 15.2 | 12.6 | 14.2 | 其他非金屬鑛物(14.8), 陶·瓷·土器(-7.4) |
| · 第 1 次 金 屬 | 7.9 | 36.1 | 66.6 | 94.8 | 鐵鋼(67.0), 非鐵金屬(24.8) |
| ·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 45.5 | 47.0 | 32.3 | 43.7 | 電氣電子(4.8), 機械(209.1) |
| · 其 他 製 造 業 | 3.6 | 8.2 | -13.2 | -15.6 | |

(9) 忠清南道(大田直轄市 包含)

。主産業인 纖維・衣服・가죽製品 製造業에서는 원貨切上 影響 등으로不振을 보였으나, 飲食料品 및 담배, 化學, 電氣電子 等 業種에서 높은 成長率을 보임에 따라 '87年 對比 生産 12.7%, 出荷 15.9% 增加.

。業種別로는 電氣電子(34.8%, 65.6%; 國內外 需要 增加로 비디오테이프, 蓄電池 等 增加), 고무製品(34.8%, 30.1%; 自動車타이어, 再生타이어 等 增加), 其他化學製品(22.9%, 18.8%; 醫藥品, 合成洗劑 等 增加), 食料品(14.9%, 16.3%; 畜肉鹽, 乳酸菌飲料 等 增加), 담배(21.4%, 17.8%) 業種 등에서 높은 增加率을 보였으나, 主産業인 纖維製造業(4.2%, 9.4%; 綿絲, 綿織物 等 增加)에서 낮은 增加를 보인것을 비롯, 衣服(-14.2%, -16.2%; 既成셔츠類, 既成普通外衣 等 減少), 가죽製品(-24.2%, -21.5%; 쇠가속, 핸드백 等 減少), 印刷出版(-4.4%, -8.4%; 造幣公社 印刷工場 移轉으로 一般印刷物 等 減少) 業種 등에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増減率

(比前年, %)

| 産 業 | '87 | | '88 |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14.6 | 13.2 | 12.7 | 15.9 |
| 。 鑛 業 | 10.0 | 10.3 | 10.1 | 0.1 |
| 。 製 造 業 | 14.8 | 13.2 | 12.8 | 16.2 |
| ・ 飲食料品 및 담배 | 10.2 | 11.6 | 17.3 | 17.0 |
| ・ 纖維・衣服・가속 | 13.1 | 8.0 | -1.7 | -0.4 |
| ・ 나무・家具 | 13.6 | 12.6 | -12.1 | -5.3 |
| ・ 종이・印刷出版 | 14.9 | 22.0 | 6.4 | 13.6 |
|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 14.8 | 15.1 | 23.8 | 19.2 |
| ・ 非金属鑛物製品 | 13.3 | 13.3 | 9.1 | 13.1 |
| ・ 第1次金屬 | 15.6 | 20.1 | 17.8 | 11.3 |
| ・ 組立金屬・機械裝備 | 24.2 | 16.7 | 25.2 | 44.8 |
| ・ 其他製造業 | 11.1 | 9.3 | 36.9 | 34.1 |
| 主要 生産 増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
| | | | | 食料品(14.9), 담배(21.4) 衣服(-14.2), 가속(-24.2) 나무(-7.6), 家具(-23.8) 종이(13.0), 印刷出版(-4.4) 其他化學(22.9), 고무(34.8) 其他非金属鑛物(11.1), 陶・瓷・土器 (3.4) 鐵鋼(18.2), 非鐵金屬(17.6) 電氣電子(34.8), 機械(19.8) |

(10) 全羅北道

- 。主産業의 하나인 纖維·衣服·가죽製品 製造業이 輸出 採算性 惡化로 不振하고 食料品과 담배 製造業種에서도 小幅 增加에 그침에 따라 生産·出荷 各各 4.7%, 5.4% 增加로 대체적으로 沈滯 樣相을 보였음.
- 。業種별로는 比重이 높은 纖維(0.2%, -1.7% ; 매리야스內衣類 生産이 小幅 增加에 그친데다가 綿織物, 純本絹織物 等이 減少)와 衣服類(-40.4%, -34.7% ; 女子用既成外衣, 가죽 및 毛皮장갑 等 減少)가 크게 不振을 보였으며, 역시 元貨切上 影響으로 其他製造業(-11.4%, -8.6% ; 이리 工團 內 貴石 및 半貴石 減少)에서도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反面, 自動車 産業에서의 需要 增加로 유리業種(22.0%, 21.9% ; 安全유리 增加)이 큰 幅 增加를 보인 것을 비롯, 其他非金屬鑛物製品(23.1%, 23.8% ; 建築景氣 活性化로 레미콘, 裝飾用石製品 等 增加), 飲料品(20.3%, 26.6% ; 淸酒, 酒精, 燒酒 等 增加), 産業用化合物(11.2%, 10.1% ; 폴리에스터纖維, 過酸化水素 等 增加) 및 종이産業(6.6%, 11.2% ; 新聞用紙, 골板紙原紙 等 增加)에서는 增加하였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15.1 | 17.6 | 4.7 | 5.4 | |
| 。鑛 業 | -7.6 | -10.9 | 13.0 | -2.4 | 其他鑛業(15.9) |
| 。製 造 業 | 15.5 | 17.9 | 4.6 | 5.4 | |
| · 飲食料品 및 담배 | 10.1 | 15.4 | 7.5 | 9.1 | 飲料品(20.3), 담배(4.5) |
| · 纖維·衣服·가죽 | 20.8 | 24.9 | -4.3 | -6.3 | 纖維(0.2), 衣服(-40.4) |
| · 나무·家具 | 17.2 | 15.3 | -1.0 | -7.2 | 나무(-0.9), 家具(-3.8) |
| · 종이·印刷出版 | 13.1 | 13.4 | 6.3 | 11.1 | 종이(6.6), 印刷出版(0.1) |
| · 化學·石油·고무·플라스틱 | 18.1 | 17.9 | 10.4 | 9.1 | 産業用化合物(11.2), 其他化學(20.5) |
| · 非金屬鑛物製品 | 12.5 | 15.4 | 22.0 | 22.3 | 유리(22.0), 其他非金屬鑛物(23.1) |
| · 第1次金屬 | -4.3 | -1.4 | -5.3 | -4.1 | 鐵鋼(-5.3) |
| · 組立金屬·機械裝備 | 12.8 | 14.4 | 7.2 | 13.0 | 電氣電子(20.7), 運輸裝備(235.9) |
| · 其他 製造業 | 32.6 | 28.1 | -11.4 | -8.6 | |

(11) 全羅南道

光陽製鐵所 第2期 設備 新規增設 稼動으로 鐵鋼産業이 큰 幅의 新張勢를 보임과 아울러 石油化學 業種에서도 높은 成長을 이룸에 따라 前年 對比 生産 33.2%, 出荷 26.8%의 高伸張勢를 나타냄.

業種別로는 鐵鋼業(77.4%, 88.7% ; 銹鐵, 슬랩, 熱延帶鋼 등 增加)이 高伸張勢를 보인 것을 비롯, 石油精製(24.2%, 29.4% ; 輕油, 나프타, 방카 C油 등 增加), 産業用化合物(20.7%, 16.5%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酸素 등 增加), 其他化學製品(22.1%, 29.6% ; 고무老化防止劑, 카본블랙 增加) 및 纖維(71.8%, 32.4% ; 全南紡織 靈巖工場 吸收 增設로 綿絲, 合成纖維絲 등 增加) 業種 등에서 높은 增加率을 나타냈으나, 고무製品(-9.4%, -10.6% ; 運動靴 減少) 組立金屬製品(-0.9%, 2.3% ; 鐵製門, 家庭用보일 러 등 生産 減少) 및 運輸裝備(-7.5%, -0.3% ; 木船, 鐵鋼漁船 등 減少) 등 業種에서는 不振을 보였음.

業種別 生産 · 出荷 增減率

(比前年, %)

| 業 | '87 | | '88 |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産 | 11.9 | 8.1 | 33.2 | 26.8 |
| 鑛 業 | -3.9 | -2.6 | 15.2 | 7.3 |
| 製 造 業 | 13.0 | 8.3 | 34.0 | 27.0 |
| · 飲 食 料 品 및 담배 | -1.6 | 3.1 | 4.6 | 9.5 |
| · 織 維 · 衣 服 · 가 죽 | 23.5 | 23.9 | 66.6 | 28.9 |
| · 나무 · 家具 | 20.8 | 31.4 | 33.9 | 25.6 |
| · 종이 · 印刷 出版 | 81.6 | 84.8 | 44.0 | 39.0 |
| · 化學 · 石油 · 고무 · 플라스틱 | 7.6 | 5.6 | 22.4 | 24.2 |
| · 非金屬 礦物 製品 | 11.5 | 16.5 | 10.1 | 10.7 |
| · 第1次 金屬 | 39.5 | 44.6 | 77.4 | 88.7 |
| · 組立 金屬 · 機械 裝備 | -6.8 | -7.3 | -7.3 | -2.2 |
| · 其他 製造 業 | -7.8 | 1.7 | 0.6 | 0.1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 (産業 小分類) | | | | |
| 食料品(5.1), 飲料品(3.3) | | | | |
| 纖維(71.8), 衣服(23.4) | | | | |
| 나무(20.9), 家具(406.8) | | | | |
| 종이(44.0) | | | | |
| 産業用化合物(20.7), 石油精製(24.2) | | | | |
| 陶 · 瓷 · 土器(5.6), 其他非金屬礦物 | | | | |
| 鐵鋼(77.4) | | | | |
| 機械(-32.5), 運輸裝備(-7.5) | | | | |
| (11.9) | | | | |

(12) 慶尙北道

。電氣電子, 機械業種 등에서 큰 幅 增加함에 따라 前年 對比 生産 22.8%, 出荷 22.4%의 伸張勢를 나타냄.

。業種別로는 가장 比重이 높은 電氣電子(45.0%, 49.9% ; 칼라TV, VTR, 車輛用 前照 및 警光燈 等 增加)를 비롯, 機械(41.6%, 46.5% ; 콤파인, 컴퓨터 및 周邊器機 等 增加), 纖維(10.8% , 9.9% ; 綿絲, 合成纖維絲, 合成纖維織物 等 增加), 其他非金屬鑛物製品(16.4% , 16.7% ; 不定型耐火物, 滑石粉, 裝飾用石製品 等 增加), 産業用化合物(18.6%, 20.6% ; 폴리에스터 纖維, 無水프탈酸 等 增加) 業種 등에서 比較的 높은 增加를 보였으나, 組立金屬製品(-22.0%, -22.0% ; 三星重工業 浦項工場의 昌原市 移轉으로 陸上金屬構造物 等 減少), 衣服(-29.5%, -27.1% ; 既成셔츠, 既成下衣 等 減少), 其他製造業(-35.2%, -36.4% ; 人形 및 장난감 等 減少) 等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主要 業種인 鐵鋼 産業은 浦鐵의 第 2熱延爐의 新銳化 工事로 生産은 前年 對比 -0.1% 減少하였으며, 出荷는 2.6% 小幅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 · 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20.2 | 19.3 | 22.8 | 22.4 | |
| 。鑛 業 | 12.4 | 12.6 | 1.6 | 1.2 | 金屬鑛業(6.5), 其他鑛業(13.3) |
| 。製 造 業 | 20.5 | 19.4 | 23.6 | 22.7 | |
| · 飲 食 料 品 및 담배 | 10.8 | 19.7 | 8.8 | 11.0 | 食料品(7.0), 飲料品(12.0) |
| · 纖 維 · 衣 服 · 가 죽 | 8.1 | 4.2 | 9.8 | 9.3 | 纖維(10.8), 衣服(-29.5) |
| · 나 무 · 家 具 | 4.0 | 2.5 | -21.2 | -21.0 | 나무(-22.1), 家具(-16.0) |
| · 종 이 · 印 刷 出 版 | 19.3 | 26.1 | 17.3 | 23.7 | 종이(27.0), 印刷出版(-2.4) |
| · 化 學 · 石 油 · 고 무 · 플 라 스틱 | 15.9 | 15.5 | 22.5 | 21.4 | 産業用化合物(18.0), 플라스틱(58.8) |
| · 非 金 屬 鑛 物 製 品 | 11.7 | 13.7 | 14.3 | 15.1 | 유리(21.7), 其他非金屬鑛物(16.4) |
| · 第 1 次 金 屬 | 9.6 | 10.2 | 1.9 | 3.4 | 鐵鋼(-0.1), 非鐵金屬(32.1) |
| ·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 33.0 | 34.7 | 39.9 | 44.5 | 電氣電子(45.0), 機械(41.6) |
| · 其 他 製 造 業 | 98.8 | 107.2 | -35.2 | -36.4 | |

(13) 慶尙南道

。主宗産業인 運輸裝備, 石油精製業을 中心으로 '87年 對比 生産・出荷가 各各 16.9%, 16.4%의 높은 增加勢를 나타냄.

。業種別로는 運輸裝備(19.1%, 15.4%; 油槽船, 大型 및 中型乘用車, 車軸 等 增加), 機械(22.4%, 29.0%; 콤바인, 모더, 지게車 等 增加), 電氣電子 (24.2%, 12.5%; 電氣冷藏庫, 電子레인지, 칼라TV용브라운관 等 增加), 石油精製(14.0%, 21.6%; 방카C油, 輕油, 휘발油 等 增加), 産業用化合物 (15.8%, 26.4%; 말레프탈酸, 폴리프로필렌 等 增加), 飲料品(99.3%, 92.9%; 果汁飲料, 麥酒 等 增加) 業種 等에서는 큰 幅 增加를 보인 反面, 衣服 (-17.7%, -20.1%; 원자切上 等 影響으로 既成셔츠, 既成競技服 等 減少), 組立金屬製品(-6.6%, -7.1%; 現代重工業 勞使粉料 影響 等으로 陸・海上 金屬構造物 等 減少), 科學・精密器械(-8.1%, -5.6%; 카메라, 光學렌즈 等 減少) 業種 等에서는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増減率

(比前年, %)

| 産 業 | '87 | | '88 |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鑛 工 業 | 12.4 | 12.2 | 16.9 | 16.4 |
| 。鑛 業 | 9.9 | 15.4 | 25.0 | 25.0 |
| 。製 造 業 | 12.4 | 12.2 | 16.9 | 16.4 |
| 。其他 製造業 ・ 第1次金屬 ・ 組立金屬・機械裝備 ・ 非金屬礦物製品 ・ 化學・石油・ 고무・ 플라스틱 ・ 종이・印刷出版 ・ 나무・家具 ・ 纖維・衣服・가죽 ・ 飲食料品 및 담배 ・ 나무・家具 ・ 종이・印刷出版 ・ 化學・石油・ 고무・ 플라스틱 ・ 非金屬礦物製品 ・ 第1次金屬 ・ 組立金屬・機械裝備 ・ 其他 製造業 | 20.5 | 19.2 | 30.8 | 22.4 |
| | 21.6 | 18.4 | -2.0 | -4.9 |
| | 18.2 | 20.2 | 413.5 | 419.8 |
| | 9.5 | 9.8 | 1.7 | -0.4 |
| | 8.2 | 9.7 | 15.2 | 22.3 |
| | 13.0 | 19.1 | 14.7 | 18.0 |
| | 21.1 | 18.9 | 4.6 | 4.4 |
| | 11.5 | 11.1 | 15.7 | 13.2 |
| | 24.0 | 27.0 | -4.0 | -32.0 |
| | 20.5 | 19.2 | 30.8 | 22.4 |
| 21.6 | 18.4 | -2.0 | -4.9 | |
| 18.2 | 20.2 | 413.5 | 419.8 | |
| 9.5 | 9.8 | 1.7 | -0.4 | |
| 8.2 | 9.7 | 15.2 | 22.3 | |
| 13.0 | 19.1 | 14.7 | 18.0 | |
| 21.1 | 18.9 | 4.6 | 4.4 | |
| 11.5 | 11.1 | 15.7 | 13.2 | |
| 24.0 | 27.0 | -4.0 | -32.0 | |

(14) 濟州道

。主 産業인 飲食料品 製造業이 原材料 供給 不足으로 크게 減少함에 따라 鑛工業 部門의 生産(-5.3), 出荷(-1.7%)가 各各 負(-)의 伸張勢를 나타내 었음.

。業種別로 보면 飲料品 製造業이 오랜지 原液의 生産 減少(가뭄으로 인해 갑골 作況이 不振하여 原材料 確保 隘路)로 生産·出荷 各各 -21.6%, -17.9%의 減少를 보인 것을 비롯, 食料品(-5.0%, -9.4%; 고구마 確保가 어려움에 따라 澱粉 生産 減少, 採算性 惡化와 大豆油로의 需要 代替로 油菜油 生産 減少, 原材料 擴保의 隘路로 加工海藻類 生産 減少等) 業種 과 印刷出版業(-17.3%, -15.9%; 日刊新聞, 一般印刷物 減少) 및 組立金 屬(-28.6%, -29.3%; 鐵製門, 金屬탱크 및 容器等 減少) 業種 등에서 減 少를 보였으나 其他非金屬鑛物製品(13.2%, 13.5%; 濟州 觀光 開發 事業 等으로 레미콘, 콘크리트블럭 등 增加), 其他플라스틱製品(45.7%, 39.1% ; 스티로폴 需要 增加) 및 産業用化合物(81.2%, 85.0%; 有機質肥料 等 增加) 業種 等에서는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음.

業種別 生産·出荷 增減率

(比前年, %)

| 産 業 | ' 8 7 | | ' 8 8 | | 主要 生産 增減 業種(産業小分類) |
|----------------------------|-------|------|-------|-------|--------------------------|
| | 生産 | 出荷 | 生産 | 出荷 | |
| 。鑛 工 業 | 10.3 | 18.7 | -5.3 | -1.7 | |
| 。鑛 業 | 54.8 | 71.7 | 30.1 | 21.7 | 其他鑛業(30.1) |
| 。製 造 業 | 9.6 | 18.1 | -6.1 | -2.1 | |
| ・ 飲 食 料 品 및 담 배 | -2.0 | 4.7 | -13.4 | -11.8 | 食料品(-5.0), 飲料品(-21.6) |
| ・ 纖 維 · 衣 服 · 가 죽 | 7.7 | 13.8 | -3.8 | -8.8 | 纖維(-5.5), 衣服(4.1) |
| ・ 나 무 · 家 具 | 6.8 | 7.2 | 44.2 | 47.9 | 나무(54.9), 家具(-48.0) |
| ・ 종 이 · 印 刷 出 版 | 21.6 | 18.4 | -10.5 | -0.8 | 종이(6.1), 印刷出版(-17.3) |
| ・ 化 學 · 石 油 · 고 무 · 플 라 스틱 | 12.9 | 9.2 | 24.2 | 13.0 | 産業用化合物(81.2), 플라스틱(45.7) |
| ・ 非 金 屬 鑛 物 製 品 | 61.0 | 65.2 | 13.2 | 13.5 | 其他非金屬鑛物(13.2) |
| ・ 第 1 次 金 屬 | - | - | - | - | |
| ・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 15.9 | 20.1 | -48.6 | -40.1 | 組立金屬(-28.6), 運輸裝備(-82.8) |
| ・ 其 他 製 造 業 | - | - | - | - | |

< 附 錄 >

< 圖 1 > 全國, 市・道別 鑛工業 生産・出荷・在庫指數 動向

< 圖 2 > 全國, 市・道別 鑛工業 生産・出荷・在庫 増減率 動向

< 圖 3 > 全國, 市・道別 業種別 生産 動向

< 圖 4 > 全國, 市・道別 鑛工業 構造

< 表 1 > 市・道別 主要 業種別 比重(生産加重値)

< 表 2 > 市・道別 生産 加重値 上位 品目

圖1
 — 生產
 - - - 出荷
 ··· 在庫

全國, 市, 道別 鑛工業生產, 出荷, 在庫指數 動向

原指數(19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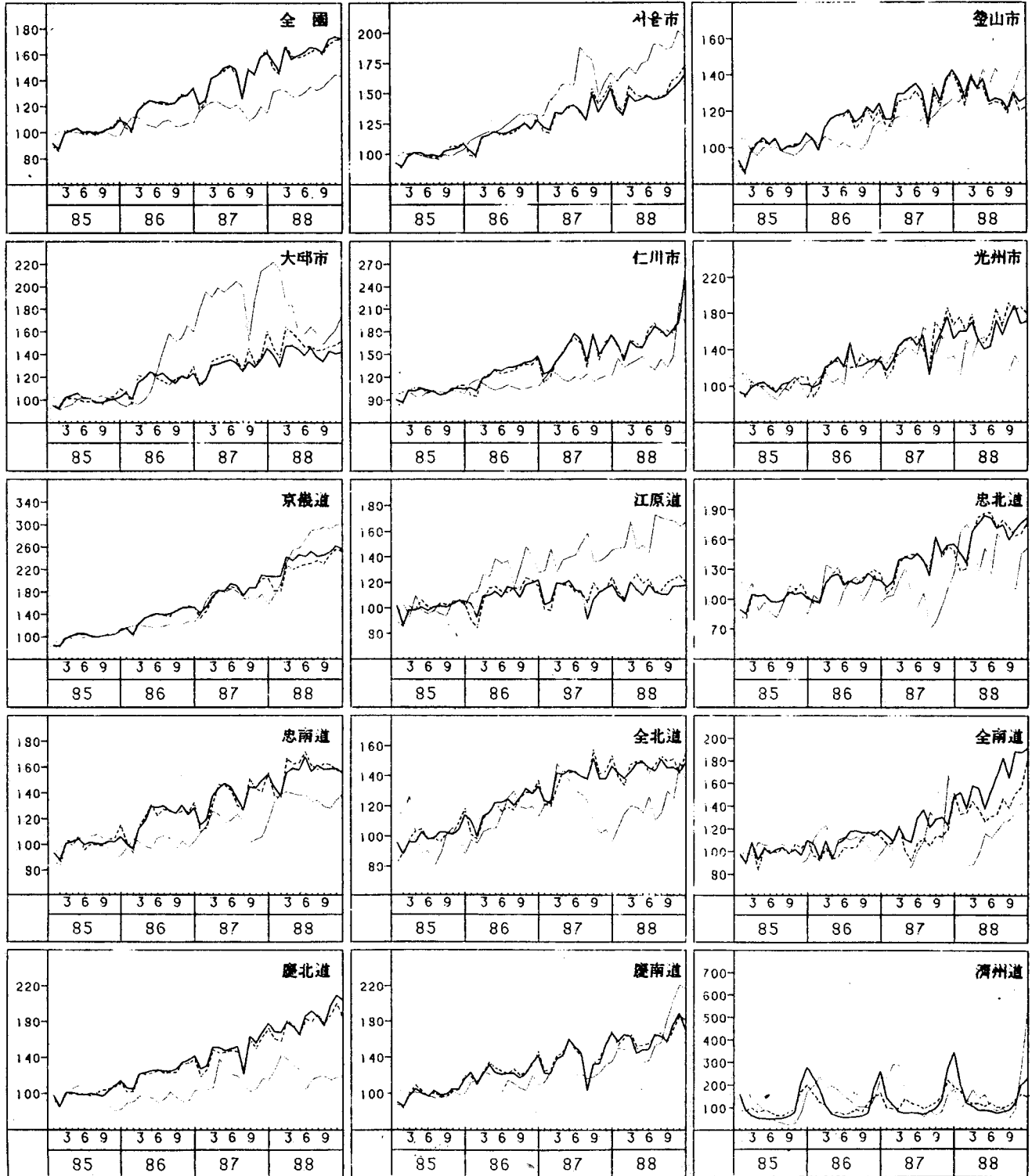


圖2 ——— 生產
 - - - 出荷
 ····· 在庫

全國、市、道別 鑛工業生產、出荷、在庫增減率 動向

原指數，前年同月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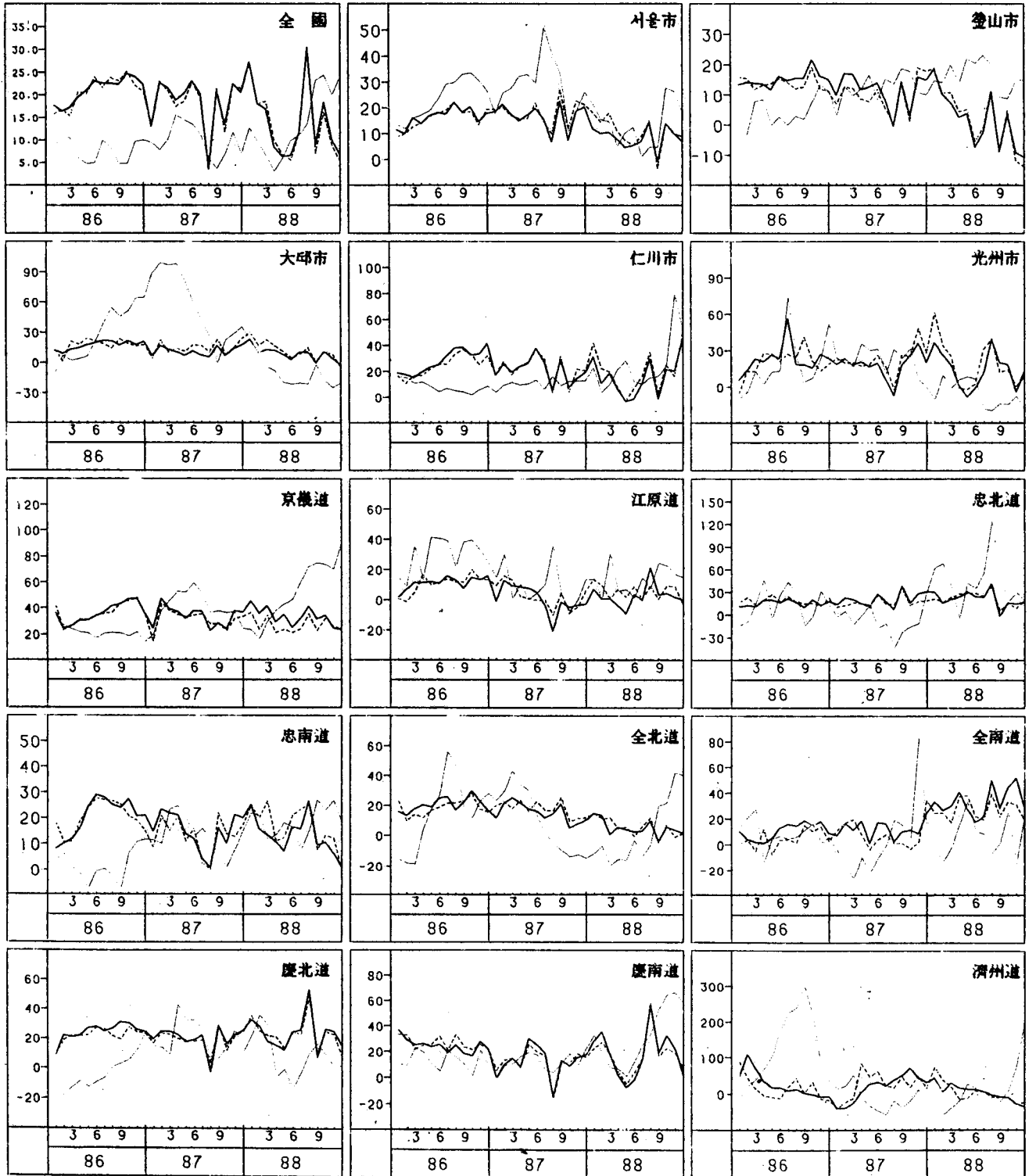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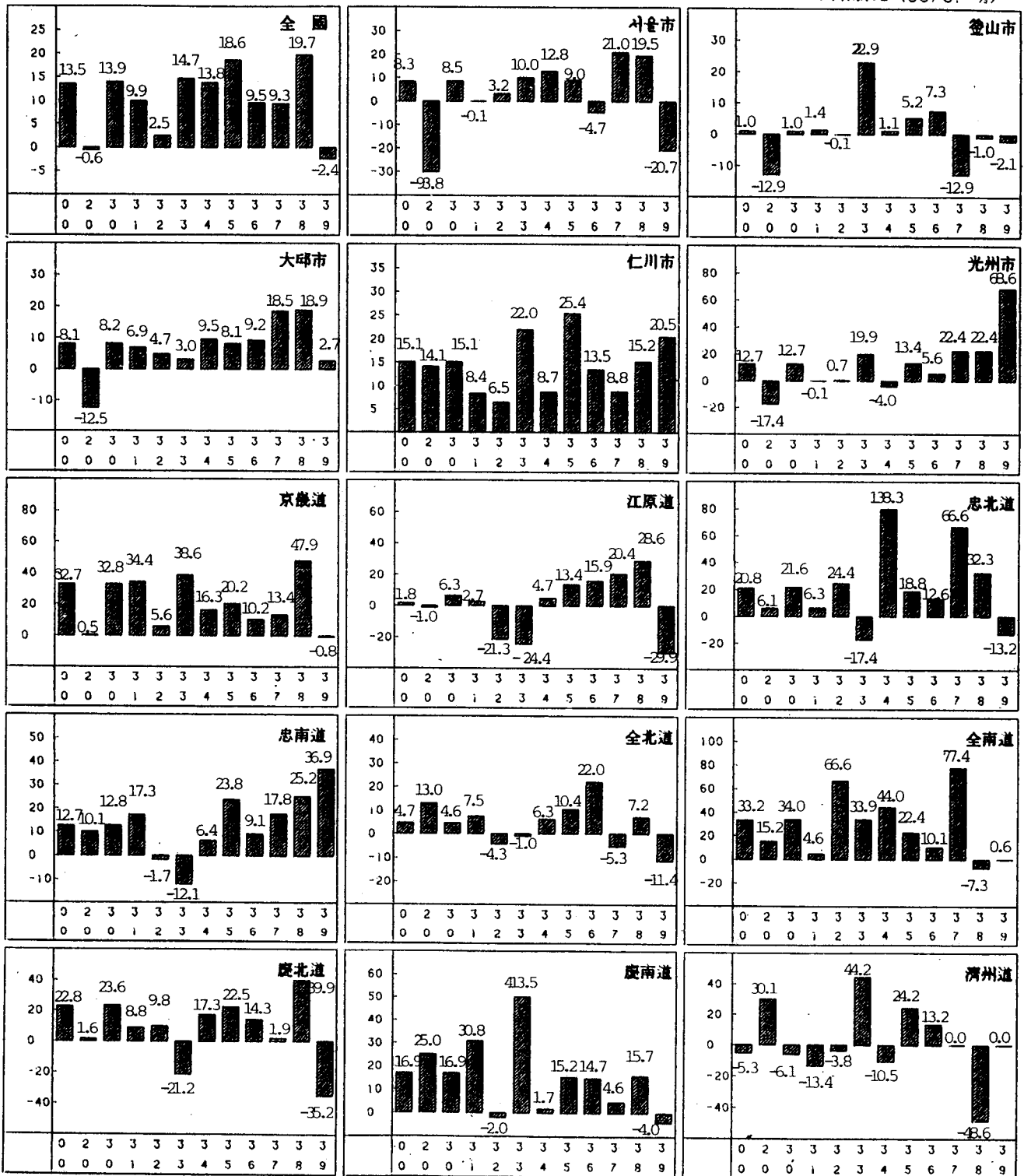


圖3

全國, 市, 道別 業種別生產 動向

前年累計比 (88/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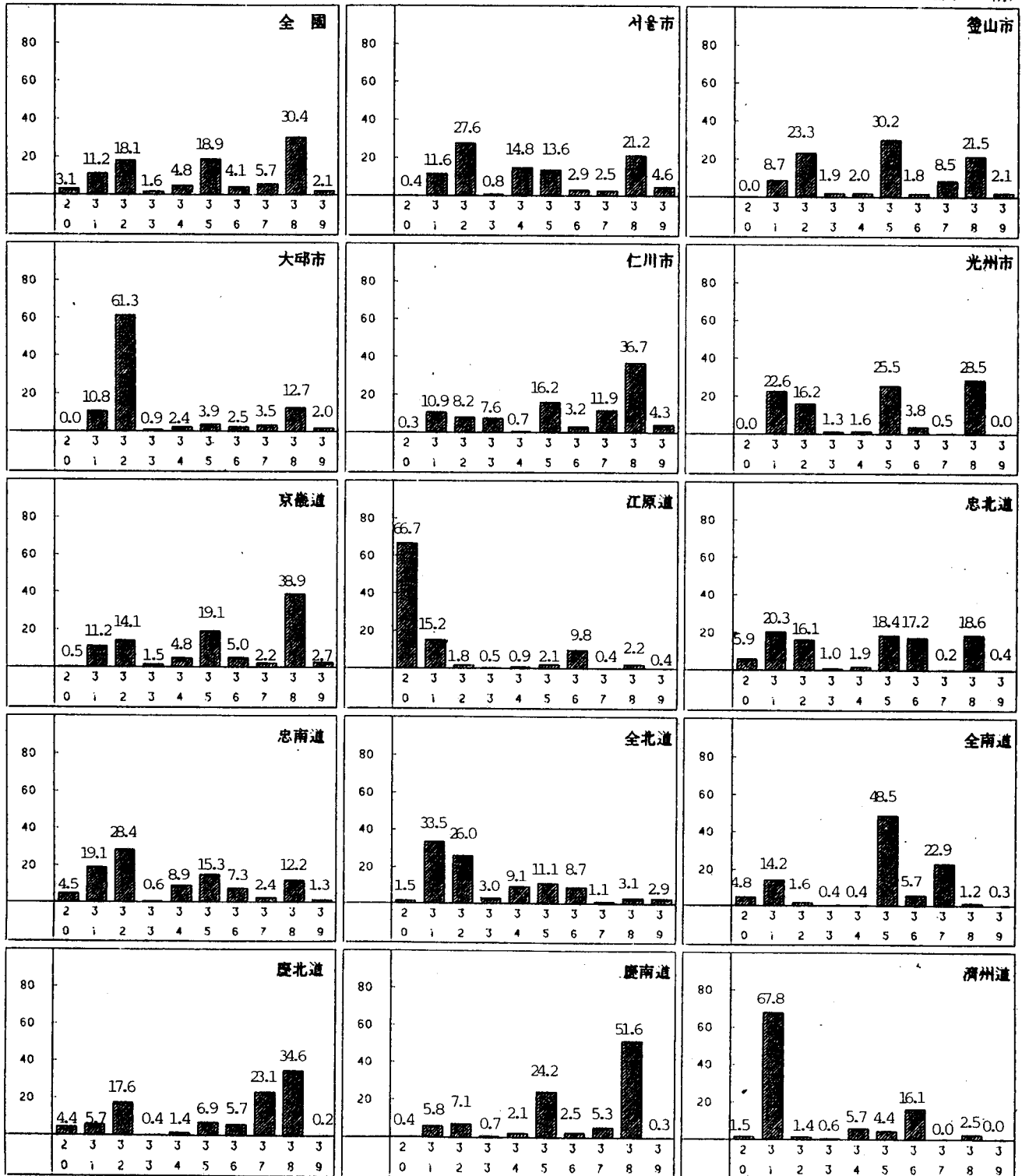


* 20:광업, 31:음식료·담배, 32:섬유·의복·가죽, 33:나무·가구, 34:종이·인쇄, 35:석유·화학·고무, 플라스틱, 36:비금속광물, 37:제1차금속, 38:조립금속·기계·전자·운수장비, 39:기타 제조업

圖 4

全國, 市, 道別 鑛工業 構造

附加價值基準 (%)



* 20: 광업, 31: 음식료·담배, 32: 섬유·의복·가죽, 33: 나무·가구, 34: 종이·인쇄, 35: 석유·화학·고무, 플라스틱, 36: 비금속광물, 37: 제1차금속, 38: 조립금속·기계·전자·운수장비, 39: 기타제조업

< 表 2 > 市・道別 生産 加重値 上位品目(附加價值 基準)

(全代表品目 : 100.0 基準)

| 順位 | 全 國 1) | 서 울 | 釜 山 |
|----|---------------------|---------------------|---------------------|
| 1 | 醫 藥 品 (2.7) | 醫 藥 品 (5.2) | 運 動 靴 (15.8) |
| 2 | 合 成 纖 維 織 物 (2.4) | 日 刊 新 聞 (4.8) | 既 成 셔츠 類 (5.3) |
| 3 | 一 般 貨 物 船 (2.2) | 메 리 야 쓰 外 衣 (4.4) | 既 成 普 通 外 衣 (2.2) |
| 4 | 無 煙 炭 (2.0) | 女 子 用 既 成 外 衣 (3.8) | 鐵 筋 (2.0) |
| 5 | 合 成 纖 維 絲 (1.8) | 書 籍 (3.3) | 一 般 貨 物 船 (2.0) |
| 6 | 運 動 靴 (1.6) | 가 죽 및 毛 皮 衣 服 (2.6) | 運 動 靴 部 品 (1.9) |
| 7 | 染 色 加 工 織 物 (1.6) | 定 期 刊 行 物 (2.4) | 合 成 纖 維 絲 (1.7) |
| 8 | 담 배 (1.5) | 既 成 普 通 外 衣 (2.3) | 冷 凍 물 고 기 (1.6) |
| 9 | 칼 라 T·V 受 像 機 (1.1) | 人 形 및 장난감 (2.1) | 一 般 버 스 (1.5) |
| 10 | 방 카 C 油 (1.1) | 既 成 셔츠 類 (1.9) | 自 動 車 車 體 部 品 (1.4) |
| 11 | 既 成 셔츠 類 (1.0) | 一 般 印 刷 物 (1.9) | 밀 가 루 (1.3) |
| 12 | 輕 油 (1.0) | 煉 炭 (1.5) | 綿 織 物 (1.2) |
| 13 | 메 리 야 스 外 衣 (1.0) | 化 粧 品 (1.5) | 스텐레스製家庭用品 (1.1) |
| 14 | 日 刊 新 聞 (0.9) | 레 미 콘 (1.3) | 冷 延 薄 板 (1.0) |
| 15 | 化 粧 品 (0.8) | 集 積 回 路 (1.3) | 연승및섬유로우프 (1.0) |
| 16 | 既 成 普 通 外 衣 (0.8) | 染 色 加 工 織 物 (1.2) | 綿 絲 (0.9) |
| 17 | 女 子 用 既 成 外 衣 (0.8) | 雪 糖 菓 子 (1.2) | 인 스텐 트 麵 類 (0.9) |
| 18 | 中 型 乘 用 車 (0.8) | 合 成 纖 維 織 物 (1.1) | 고 무 長 靴 및 雨 靴 (0.9) |
| 19 | 陸 上 金 屬 構 造 物 (0.7) | 女 性 用 화운데이션 (1.1) | 配 合 飼 料 (0.8) |
| 20 | 綿 織 物 (0.7) | 乾 菓 子 및 스낵 類 (1.1) | 洗 濯 비 누 (0.8) |
| 21 | 綿 絲 (0.7) | 錄 音 機 및 再 生 機 (1.1) | 合 成 纖 維 織 物 (0.8) |
| 22 | 配 合 飼 料 (0.7) | 글루타민산 소다 (1.1) | 鐵 鋼 油 槽 船 (0.8) |
| 23 | 레 미 콘 (0.7) | 金 型 (0.9) | 金 型 (0.8) |
| 24 | 人 形 및 장난감 (0.6) | 自 動 車 타이어 (0.9) | 染 色 加 工 織 物 (0.7) |
| 25 | 煉 炭 (0.6) | 男 子 用 既 成 洋 服 (0.8) | 一 般 合 板 (0.7) |
| 26 | 一 般 印 刷 物 (0.6) | 인 스텐 트 麵 類 (0.8) | 女 子 用 既 成 外 衣 (0.7) |
| 27 | 自 動 車 타이어 (0.5) | 가 방 (0.8) | 鐵 鋼 線 (0.7) |
| 28 | 書 籍 (0.5) | 鋼 管 (0.8) | 페 인 트 (0.7) |
| 29 | 熱 延 帶 鋼 (0.5) | 麥 酒 (0.7) | 煉 炭 (0.7) |
| 30 | 시 멘 트 (0.5) | 빵 및 케 이 크 (0.6) | 鋼 管 (0.7) |

| 順位 | 大 邱 | 仁 川 | 光 州 |
|----|-----------------|-----------------|-----------------|
| 1 | 合成纖維織物 (22.8) | 鐵筋 (2.7) | 自動車 타이어 (21.5) |
| 2 | 染色加工織物 (17.3) | 군사기 (2.6) | 呂宋배 (14.7) |
| 3 | 呂宋배 (5.3) | 방카 C 油 (2.5) | 中型 트럭 (9.6) |
| 4 | 合成纖維絲 (4.9) | 輕油 (2.5) | 綿絲 (6.3) |
| 5 | 梳毛織物 (3.9) | 鋼管 (2.4) | 大型 트럭 (5.6) |
| 6 | 綿織物 (2.9) | 피아노 (2.3) | 合成纖維織物 (2.7) |
| 7 | 燒酒 (1.9) | 形鋼 (2.3) | 市乳 (2.7) |
| 8 | 綿絲 (1.1) | 配合飼料 (2.0) | 乾電池 (2.7) |
| 9 | 刺繡織物 (1.1) | 自動車用內燃機關 (1.7) | 綿織物 (2.2) |
| 10 | 再生纖維織物 (1.0) | 角材 (1.6) | 레미콘 (2.0) |
| 11 | 眼鏡 (1.0) | 지게車 (1.6) | 小型 버 (1.6) |
| 12 | 回鑄物 (1.0) | 中型乘用車 (1.6) | 煉炭 (1.5) |
| 13 | 알루미늄板 (1.0) | 비디오 테이프 (1.5) | 氷菓 (1.2) |
| 14 | 시멘트 (0.9) | 精糖 (1.5) | 再乾燥 잎담배 (1.1) |
| 15 | 클러치 디스크 (0.9) | 밀가루 (1.3) | 一般 버 (1.1) |
| 16 | 農藥 (0.8) | 一般合板 (1.3) | 高速型 버 (1.0) |
| 17 | 레미콘 (0.8) | 家庭用冷藏庫 (1.2) | 自動車 부드 (0.9) |
| 18 | 自動車車體部品 (0.8) | 合成普通外衣 (1.2) | 合成纖維絲 (0.8) |
| 19 | 양탄 (0.7) | 陸上金屬構造物 (1.1) | 汎用旋盤 (0.7) |
| 20 | 煉炭 (0.7) | 커피 (1.0) | 一般印刷物 (0.6) |
| 21 | 人形 및 장난감 (0.7) | 컴퓨터 및周邊器機 (1.0) | 自動車車體部品 (0.6) |
| 22 | 乾菓子 및 스낵類 (0.7) | 가스 레인지 (1.0) | 사이 다 (0.6) |
| 23 | 織機 (0.7) | 베어 링 (0.9) | 女子용 마송洋裝服 (0.5) |
| 24 | 燃絲 (0.7) | 亞鉛鍍鋼板 (0.9) | 建築材用石製品 (0.5) |
| 25 | 梳毛絲 (0.7) | 스텐레스製家庭用品 (0.9) | 再生纖維絲 (0.5) |
| 26 | 알루미늄製家庭用品 (0.6) | 電子複寫機 (0.8) | 日刊新聞 (0.5) |
| 27 | 純本絹織物 (0.6) | 콘테이너容器 (0.8) | 既成 셔츠類 (0.4) |
| 28 | 바크 (0.6) | L. P. G. (0.8) | 角材 (0.4) |
| 29 | 日刊新聞 (0.6) | 장농 (0.8) | 金型 (0.4) |
| 30 | 클러 (0.5) | 農藥 (0.8) | 電子 레인지 (0.4) |

| 順位 | 京 畿 | 江 原 | 忠 北 |
|----|-------------------------|-----------------------|-----------------------|
| 1 | 醫 藥 品 (8.0) | 無 煙 炭 (60.3) | 시 멘 트 (9.1) |
| 2 | 化 粧 品 (2.4) | 담 배 (9.2) | 담 배 (5.8) |
| 3 | V. T. R. (2.3) | 시 멘 트 (6.0) | 合 成 纖 維 絲 (4.2) |
| 4 | 칼라 T·V 受像機 (2.2) | 시 멘 트 크링커 (2.5) | 合 成 纖 維 織 物 (3.8) |
| 5 | 染色加工織物 (2.0) | 重 石 鑛 石 (2.0) | 綿 絲 (3.1) |
| 6 | 小 型 트럭 (1.6) | 石 灰 石 (1.7) | 磁 氣 헤 드 (3.0) |
| 7 | 合 成 纖 維 絲 (1.3) | 加 工 魚 貝 類 (1.3) | 플라스틱壯板, 壁紙 (2.9) |
| 8 | 電 子 레인지 (1.1) | 燒 酒 (1.2) | 自 動 車 用 스테레오 (2.8) |
| 9 | 麥 酒 (1.1) | 煉 炭 (1.1) | 回 路 遮 斷 器 (2.7) |
| 10 | 메 리 야 쓰 外衣 (1.0) | 鐵 鑛 石 (1.0) | 石 灰 石 (2.5) |
| 11 | 家 庭 用 冷 藏 庫 (1.0) | 市 乳 (0.8) | 再 乾 燥 잎담배 (2.3) |
| 12 | 쇠 가 죽 (1.0) | 脫 水 機 (0.6) | 滑 石 粉 (2.3) |
| 13 | 레 미 콘 (0.9) | 男 子 用 既 成 洋 服 (0.5) | 플라스틱包裝用器 (2.0) |
| 14 | 電 力 線 및 케이블 (0.8) | 亞 鉛 鑛 石 (0.5) | 化 粧 品 (1.9) |
| 15 | 人 形 및 장난감 (0.8) | 配 合 飼 料 (0.4) | 無 線 送 受 信 機 (1.7) |
| 16 | 自 動 車 機 關 用 部 品 (0.8) | 女 子 用 既 成 外 衣 (0.4) | 固 定 蓄 電 器 (1.7) |
| 17 | 通 信 線 및 케이블 (0.8) | 硅 石 (0.4) | 豆 乳 (1.6) |
| 18 | 市 乳 (0.8) | 濁 酒 (0.4) | 家 庭 用 陶 瓷 食 器 (1.6) |
| 19 | 錄 音 機 및 再 生 機 (0.8) | 動 力 소 벨 (0.3) | 플라스틱 필름 (1.6) |
| 20 | 乳 酸 菌 飲 料 (0.8) | 골 板 紙 및 箱 子 (0.3) | 齒 藥 (1.6) |
| 21 | 配 合 飼 料 (0.8) | 레 미 콘 (0.3) | 醫 藥 品 (1.4) |
| 22 | 合 成 纖 維 織 物 (0.7) | 一 般 印 刷 物 (0.3) | 市 乳 (1.4) |
| 23 | 既 成 普 通 外 衣 (0.7) | 合 金 鐵 (0.3) | 無 煙 炭 (1.2) |
| 24 | 폴리에스터 纖維 (0.7) | 角 材 (0.2) | 積 算 電 力 計 (1.2) |
| 25 | 골 板 紙 및 箱 子 (0.7) | 콘 크 리 트 벽 돌 (0.2) | 家 畜 加 工 고기 (1.2) |
| 26 | 플라스틱 필름 (0.7) | 換 風 機 (0.2) | 라 미 네 이 텅 (1.2) |
| 27 | 燒 酒 (0.7) | 避 妊 用 고무 器 具 (0.2) | 煉 炭 (1.1) |
| 28 | 컴퓨터 및 周 邊 器 機 (0.7) | 人 形 및 장난감 (0.2) | 레 미 콘 (1.1) |
| 29 | 光 纖 維 케이블 (0.7) | 純 本 絹 織 物 (0.2) | 방 및 케이크 (1.1) |
| 30 | 위 스 키 (0.6) | 카 바 이 드 (0.2) | 合 成 洗 劑 (1.1) |

順位

| | | |
|----|-------|---------------|
| 1 | 담 | 메 (7.0) |
| 2 | 綿 | 絲 (5.8) |
| 3 | 綿 | 織物 (5.4) |
| 4 | 自動車 | 타이어 (3.7) |
| 5 | 비디오 | 테이프 (3.5) |
| 6 | 無煙 | 炭 (3.2) |
| 7 | 一般印刷物 | (3.0) |
| 8 | 既成 | 셔츠類 (2.3) |
| 9 | 粉 | 乳 (2.3) |
| 10 | 合成纖維 | 絲 (2.0) |
| 11 | 合成纖維 | 織物 (1.9) |
| 12 | 化粧 | 品 (1.9) |
| 13 | 외가 | 족 (1.8) |
| 14 | 家庭用 | 陶器 食器 (1.6) |
| 15 | 配合飼料 | (1.5) |
| 16 | 크라프트 | 紙 (1.5) |
| 17 | 醫藥 | 品 (1.4) |
| 18 | 燃 | 絲 (1.4) |
| 19 | 女性用 | 화우메이션 (1.3) |
| 20 | 乳酸菌 | 飲料 (1.3) |
| 21 | 合成洗劑 | (1.2) |
| 22 | 農藥 | (1.1) |
| 23 | 紅 | 蔘 (1.0) |
| 24 | 알루미늄 | 샷시바 (1.0) |
| 25 | 煉 | 炭 (1.0) |
| 26 | 가죽 | 長靴 및登山靴 (0.9) |
| 27 | 女子用 | 既成 外衣 (0.9) |
| 28 | 石棉 | 슬레이트 (0.9) |
| 29 | 시멘트 | (0.8) |
| 30 | 플라스틱 | 包裝用器 (0.8) |

忠南

| | |
|----------|----------------|
| 메리야스 | 內衣 (17.0) |
| 담 | 배 (16.4) |
| 플라스틱 | 纖維 (5.7) |
| 판유리 | (3.7) |
| 新聞用 | 紙 (3.4) |
| 中質 | 紙 (3.1) |
| 인스턴트 | 麵類 (2.3) |
| 貴石 | 및半貴石 (2.1) |
| 配合飼料 | (2.1) |
| 燒 | 酒 (1.7) |
| 一般 | 合板 (1.7) |
| 綿 | 絲 (1.3) |
| 女子用 | 既成 外衣 (1.3) |
| 過酸化 | 水素 (1.3) |
| 酒 | 精 (1.3) |
| 가죽 | 및毛皮掌匣 (1.2) |
| 純本 | 絹織物 (1.2) |
| 食品, 飲料 | 用유리병 (1.1) |
| 위스키 | (1.1) |
| 清 | 酒 (1.1) |
| 乾菓子 | 및스낵類 (1.0) |
| P. V. C. | 樹脂 (0.9) |
| 酒 | (0.8) |
| 필 | 프 (0.8) |
| 레미 | 콘 (0.8) |
| 클 | 라 (0.8) |
| 角 | 材 (0.7) |
| 煉 | 炭 (0.7) |
| 유리 | 食器 및廚房用品 (0.7) |
| 鑄 | 鐵 管 (0.7) |

全北

| | |
|----------|--------------|
| 熱延 | 鋼 (18.0) |
| 輕 | 油 (6.8) |
| 방카 | C油 (6.2) |
| 폴리에틸렌 | (3.4) |
| 複合肥 | 料 (3.1) |
| 鐵 | (3.0) |
| 나프 | 타 (2.4) |
| 燒 | 酒 (2.4) |
| 無煙 | 炭 (2.4) |
| 加工 | 魚貝類 (2.3) |
| 고무 | 老化防止劑 (2.1) |
| P. V. C. | 樹脂 (2.1) |
| 加工 | 海藻類 (2.0) |
| 염화 | 비닐 모노머 (1.9) |
| 揮發 | 油 (1.9) |
| 冷凍 | 물고기 (1.9) |
| 켓트 | 油 (1.7) |
| 슬 | 랩 (1.5) |
| 시멘트 | (1.4) |
| 天 | 日 塩 (1.3) |
| 폴리프로 | 필렌 (1.2) |
| 苛性 | 소다 (1.2) |
| A. B. S. | 樹脂 (1.2) |
| 家庭用 | 陶器 食器 (1.2) |
| 燈 | 油 (1.1) |
| L. P. G. | (1.1) |
| 尿 | 素 肥料 (1.0) |
| 레미 | 콘 (1.0) |
| 配合飼料 | (0.9) |
| 合成 | 고무 (0.8) |

全南

| 順位 | 慶 北 | 慶 南 | 濟 州 |
|----|------------------------|-------------------------|-----------------------|
| 1 | 칼라 T. V 受像機 (8.9) | 一 般 貨 物 船 (12.5) | 오 렌 지 原 液 (24.7) |
| 2 | 合 成 纖 維 織 物 (8.8) | 中 型 乘 用 車 (3.9) | 레 미 콘 (10.5) |
| 3 | 熱 延 帶 鋼 (6.0) | 방 카 C 油 (3.8) | 農 產 物 통조림 (9.9) |
| 4 | 電 話 交 換 機 (5.2) | 合 成 纖 維 絲 (3.3) | 澱 粉 (9.4) |
| 5 | 中 厚 板 (3.5) | 輕 油 (3.1) | 燒 酒 (6.7) |
| 6 | 合 成 纖 維 絲 (3.1) | 海 上 金 屬 構 造 物 (2.8) | 配 合 飼 料 (5.6) |
| 7 | 無 煙 炭 (3.1) | 船 舶 用 內 燃 機 關 (2.7) | 煉 炭 (2.8) |
| 8 | 칼라 T.V브라운관 (2.4) | 鐵 鋼 油 槽 船 (2.1) | 日 刊 新 聞 (2.8) |
| 9 | 컴퓨터및周邊器機 (2.1) | 陸 上 金 屬 構 造 物 (2.0) | 콘 크 리 트 벽돌 (2.7) |
| 10 | 黑 白 T. V 受 像 機 (1.8) | 特 殊 貨 物 船 (1.4) | 빵 및 케 이 크 (2.5) |
| 11 | 線 材 (1.8) | 物 品 取 扱 用 크레인 (1.1) | 冷 凍 물 고 기 (1.9) |
| 12 | 陸 上 金 屬 構 造 物 (1.7) | 家 庭 用 冷 藏 庫 (1.1) | 市 乳 (1.9) |
| 13 | 綿 織 物 (1.5) | 드 럼 管 (1.0) | 유 채 油 (1.8) |
| 14 | 銑 鐵 (1.5) | 特 殊 鋼 冷 延 鋼 板 (0.9) | 加 工 海 藻 類 (1.7) |
| 15 | 로 울 러 (1.4) | L. P. G (0.9) | 一 般 印 刷 物 (1.6) |
| 16 | 通 信 線 및 케이블 (1.3) | 鋼 管 (0.7) | 콘 크 리 트 블록 (1.6) |
| 17 | 시 멘 트 (1.1) | 燈 油 (0.7) | 碎 石 (1.5) |
| 18 | 슬 랩 (1.1) | 아 크 릴 릿 纖 維 (0.7) | 골 板 紙 및 箱 子 (1.2) |
| 19 | 再 乾 燥 잎담배 (1.1) | 複 合 肥 料 (0.6) | 建 資 材 用 石 製 品 (1.1) |
| 20 | 鐵 筋 (1.0) | 麥 酒 (0.6) | 스 치 로 폴 (1.1) |
| 21 | 폴리에스터 纖 維 (0.9) | 텔 레 프 탈 酸 (0.6) | 木 船 (0.9) |
| 22 | 錫 鍍 鋼 板 (0.9) | 펄 프 (0.6) | 鐵 製 門 (0.8) |
| 23 | 綿 絲 (0.9) | 플라 스틱 壯 板, 壁 紙 (0.6) | 魚 幕 (0.7) |
| 24 | 브 라 운 管 琉 璃 (0.8) | 非 商 業 用 特 殊 船 舶 (0.5) | 메 리 야 스 外 衣 (0.5) |
| 25 | 耕 耘 機 (0.8) | 產 業 用 보 일 러 (0.5) | 濁 酒 (0.5) |
| 26 | 冷 延 帶 鋼 (0.8) | 타 일 (0.5) | 담 요 (0.4) |
| 27 | 熱 延 薄 板 (0.7) | 페 인 트 (0.5) | 샷 시 문 및 窓 틀 (0.4) |
| 28 | 鋼 塊 (0.7) | 키 실 렌 (0.5) | 有 機 質 肥 料 (0.3) |
| 29 | 耐 火 벽 돌 (0.7) | 合 成 고 무 (0.5) | 門 및 門 틀 (0.2) |
| 30 | 黑 白 T. V 브라운관 (0.7) | 엘 리 베 이 터 (0.5) | 金 屬 탱 크 및 容 器 (0.2) |

註 : 1) 全國에는 電氣業 發電量이 포함되나, 이를 除外하여 鑛工業部門을 10,000.0으로 하여 構成比를 再換算하였음

※生産指數는 最下單位인 品目別 生産量變化를 加重平均하여 作成하게 됨.
 이때 各 品目들은 測定單位가 相異하므로 品目別 重要度(附加價值 構成比)를 加重值로 使用하게 됨.

〈表1〉市・道別로는 業種別 比重(附加價値基準 生産 加重値)

| 業 | 全 國 | 서울 | 釜 山 | 大 邱 | 仁 川 | 光 州 | 京 畿 | 江 原 | 忠 北 | 忠 南 | 全 北 | 全 南 | 慶 北 | 慶 南 | 濟 州 |
|--------------------------------|----------|----------|----------|----------|----------|----------|----------|----------|----------|----------|----------|----------|----------|----------|----------|
| < 生 産 >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 鑛 業 | 313.9 | 36.8 | 1.2 | 2.9 | 26.5 | 4.2 | 54.8 | 6,671.2 | 586.1 | 451.9 | 151.9 | 475.1 | 438.0 | 41.6 | 152.2 |
| 。 炭 鑛 業 | 206.7 | - | - | - | - | - | - | 6,032.1 | 125.5 | 321.9 | 1.6 | 240.6 | 312.7 | - | - |
| 。 石 屬 鑛 業 | 16.6 | - | 0.1 | - | 0.1 | - | 7.2 | 377.6 | 58.1 | 2.0 | 12.0 | 1.8 | 24.1 | 3.3 | - |
| 。 其 他 鑛 業 | 90.6 | 36.8 | 1.1 | 2.9 | 26.4 | 4.2 | 47.6 | 261.5 | 402.5 | 128.0 | 138.3 | 232.7 | 101.2 | 38.3 | 152.2 |
| 。 製 造 業 | 9,686.1 | 9,963.2 | 9,998.8 | 9,997.1 | 9,973.5 | 9,995.8 | 9,945.2 | 3,328.8 | 9,413.9 | 9,548.1 | 9,848.1 | 9,524.9 | 9,562.0 | 9,958.4 | 9,847.8 |
| 。 飲 食 料 品 及 菸 草 製 造 業 | 1,114.7 | 1,160.4 | 871.6 | 1,077.3 | 1,086.6 | 2,262.3 | 1,115.8 | 1,519.4 | 2,028.9 | 1,912.1 | 3,351.2 | 1,420.3 | 567.1 | 577.7 | 6,778.9 |
| 。 織 維 衣 服 及 其 他 製 造 業 | 1,812.9 | 2,765.7 | 2,331.5 | 6,131.8 | 824.3 | 1,615.2 | 1,406.3 | 179.5 | 1,616.1 | 2,836.0 | 2,599.0 | 159.3 | 1,758.5 | 715.6 | 141.1 |
| 。 木 材 及 其 他 製 造 業 | 159.0 | 77.9 | 193.0 | 93.7 | 759.4 | 129.3 | 153.5 | 44.9 | 100.0 | 55.9 | 296.7 | 41.9 | 40.1 | 67.9 | 59.0 |
| 。 紙 及 其 他 製 造 業 | 479.8 | 1,478.7 | 199.6 | 244.1 | 68.0 | 154.9 | 480.0 | 90.9 | 192.5 | 886.8 | 907.6 | 39.3 | 136.9 | 213.2 | 566.7 |
| 。 化 合 物, 石 油, 高 分 子 製 品 製 造 業 | 1,892.5 | 1,361.0 | 3,021.9 | 385.9 | 1,618.8 | 2,548.7 | 1,907.4 | 214.5 | 1,838.1 | 1,528.5 | 1,111.6 | 4,851.4 | 687.5 | 2,416.6 | 439.5 |
| 。 非 金 屬 礦 物 製 品 製 造 業 | 409.6 | 286.0 | 178.8 | 245.1 | 324.5 | 379.3 | 502.4 | 984.3 | 1,719.7 | 734.2 | 868.6 | 572.2 | 574.0 | 246.6 | 1,606.7 |
| 。 第 1 次 金 屬 製 造 業 | 569.9 | 255.1 | 849.3 | 347.6 | 1,190.6 | 49.2 | 220.2 | 44.3 | 17.5 | 243.4 | 113.5 | 2,289.2 | 2,309.8 | 526.3 | - |
| 。 組 立 金 屬 製 品, 機 械 及 裝 備 製 造 業 | 3,034.8 | 2,119.9 | 2,150.3 | 1,269.6 | 3,667.0 | 2,850.8 | 3,892.3 | 215.1 | 1,862.5 | 1,217.2 | 311.5 | 121.1 | 3,463.8 | 5,164.4 | 255.9 |
| 。 其 他 製 造 業 | 212.9 | 458.5 | 202.8 | 202.0 | 434.3 | 6.1 | 267.3 | 35.9 | 38.6 | 134.0 | 288.4 | 30.2 | 24.3 | 30.1 | - |

註 : 1) 全國指數에는 電氣業이 追加되나, 여기서는 除外하여 萬分比로 再換算하였음.
 ※ 業種別 比重은 各市・道에 있어서 鑛工業 部門의 全體 附加價値를 10,000.0 으로 하였을 때 各 業種들이 차지하는 比率를 나타내는 것임.
 生産 指數에서는 이 構成比率를 加重値(Weight)로 使用하게 됨.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지정통계: 111-11-12

광공업동태조사표(I)

[일반업종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부호 | 사업체명 | | 소재지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사업체규모 |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
| | | 사업체 | | | | | 1. 대규모 | 1. 500명 이상 2. 300~499명 3. 100~299명 4. 99명 이하 | 1. 전 입 2. 휴 업 3. 사업체 흡수 4. 사업체 분리 |
| 행정구역번호 | 조사구번호 | 본사 | | | | | 2. 중소규모 | | |

1. 제품생산·출하·재고

| 일련 번호 | 품목부호 | 품목명 | 유고 사항 | 단 위 | 구 입 | | 동일공장내재투입 (자가소비) | 출 하 | | | | | | 과부족조정 | 월말재고 | | | | |
|----------|------|-----|----------|--------|----------|--------|--------------------|------|---|--------|---|-------------------|--------|-------|------|---|---|--------|---|
| | | | | | 외부(수입포함) | | | 국내시판 | | 수출 | | 동일기업내타공장 출하및기타 | | | | | | | |
| | | | | | 백 만 | 십 만 | | 천 | 백 | 십 만 | 천 | 백 | 십 만 | | | 천 | 백 | 십 만 | 천 |
| 01 | |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 일련 번호 | 원재료및연료부호 | 원재료 및 연료명 | 유고 사항 | 단 위 | 구분 국산1 수입2 | 월 중 사 용 량 | | | | | 월 말 재 고 량 | | | | | | | | |
|----------|-------------|-----------|----------|--------|------------------|-----------|--------|---|---|--------|-----------|---|--------|---|---|--------|--|--|--|
| | | | | | | 백 만 | 십 만 | 천 | 백 | 십 만 | 천 | 백 | 십 만 | 천 | 백 | 십 만 | | | |
| 01 | |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51 | 9 0 1 - 0 0 | 무연탄·원료탄 | | M/T | | | | | | | | | | | | | | | |
| 52 | 9 0 2 - 0 0 | 경유·중유 | | Kℓ | | | | | | | | | | | | | | | |
| 53 | 9 0 3 - 0 0 | 방카 C 유 | | Kℓ | | | | | | | | | | | | | | | |
| 54 | 9 0 4 - 0 0 | 전 력 | | 천KWH | | | | | | | | | | | | | | | |

* 증감내용

| | 품목부호 | 전월비 (%) | 증감 부호 | 증감사유 | ●증감내용부호 | |
|-------------|------|------------|----------|------|--------------|--------------|
| | | | | | <증 가> | <감 소> |
| ① 생 산 | | | | | 01 수출(주문) 증가 | 11 수출(주문) 감소 |
| | | | | | 02 내수(주문) 증가 | 12 내수(주문) 감소 |
| | | | | | 03 설비증설 | 13 설비축소 |
| | | | | | 04 정상가동 | 14 보수·고장 |
| ② 출 하 | | | | | 05 지정품목생산개시 | 15 타품목생산 |
| | | | | | 06 타공장흡수로증가 | 16 원재료구입부진 |
| | | | | | 07 수요증가대비 | 17 휴업 |
| | | | | | 08 신제품·신기법 | 18 화재·파업 |
| ③ 재 고 | | | | | 도입에 따른 증가 | 19 기타(일기불순등) |
| | | | | | 09 기 타 | |

3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 | | 월말종업원수(명) | | | | | 월중종업원연근무인원수(명) | | | | |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 | | | | | | |
|------------|---------------|-----------|---|---|---|---|----------------|---|---|---|---|-----------------|---|---|---|---|---|---|---|
| | | 만 | 천 | 백 | 십 | 일 | 만 | 천 | 백 | 십 | 일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상 시 종업원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 | |
| | 자영업주·무급가족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임 시 일 고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전월말상시종업원 |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 금월말상시종업원 | 월중조업일수 | 월중 1일평균조업시간 |
|----------|------------|------------|----------|--------|--------------------|
| □□□□ 명 | □□□□ 명 | □□□□ 명 | □□□□ 명 | □□ 일 | □□□□ 시간 □□□□ 교대 |

| | | 급여총액 | | | | 정액급여 | | | | 특별급여(상여금등) | | | | |
|------------|-----------|------|---|---|---|------|---|---|---|------------|---|---|---|---|
| |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천 | 백 | 십 | 만 |
| 상 시 종업원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임 시 일 고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증감내용

| | 증감부호 | 증 감 사 유 | ● 증 감 내 용 부 호 | |
|-----------|------|---------|-------------------------------------|----------------------------|
| ① 입 직 자 | | | 1. 신규채용 2. 이직자충원 | 3. 기 타 |
| ② 이 직 자 | | | 1. 생산활동부진 감축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 3. 기 타 |
| ③ 조 업 일 수 | | | 1. 생산활동호조 2. 정상가동 | 3. 생산활동부진 4. 휴업, 파업, 기타 |
| ④ 정 액 급 여 | | | 1. 급여인상 2. 초과근무수당증가 | 3. 종업원 증가 4. 종업원 감소 |
| ⑤ 특 별 급 여 | | | 1. 상여금지급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 3. 기 타 |

| 응답부서 | 응답자 | 조사담당자 | 내검자 | 관리책임자 |
|--------|-----|-------|-----|-------|
| 과 | | | | |
| 전화 () | ① | ① | ① | ① |

당 부 말 씀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써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 제외:
 - 타 제조업체로부터 주요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생산한량

외 부 구 입

- 조사품목(생산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외국수입 및 국내 타 업체로부터의 구입·용통량
- 주요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하청생산케 하여 납품받은 량
- 반품된량(폐기품 제외)

동일기업내타공장분구입

-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부터 인수한 량

동 일 공 장 내 재 투 입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위탁생산을 위해 하청공장에 원재료로 제공한 량
- ※ 제외: •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된량

국 내 시 판

- 국내 타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량
- 수출용이라도 타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 동일조사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 이송한 량
-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출하 이송한 량
- 타업체로부터 용통받은 량의 변제
- 선물, 견본, 전사용 및 자기사용(사무실, 공장내)으로 공급된 량
- ※ 제외: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국내시판용,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도장 또는 단순 가공을 위해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지정조사품목의 자체생산분, 위탁생산분 및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출하로 계상 없음)
-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량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작성체계: 111-11-12

광공업동태조사표 (표)

본 조사표는 광공업 동태조사표의 일종으로,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업종용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대원 12월말까지 제출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부호 | 사업체명 | | 소재지 | 대표기업 | 전화번호 | 사업체유형 |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
| 행정구역번호 | 조사구번호 | 사업체 | 본사 | | | | | | |

1 제품생산·출하·재고

| 일련번호 | 품목부호 | 품목명 | 유고사항 | 생산 | | 매입 | 내재재무입 | 출하 | | 재고 |
|------|------|-----|------|----|----|----|-------|----|----|----|
| | | | | 수량 | 단위 | | | 수량 | 단위 | |
| 01 | | | | | | | | | | |
| 02 | | | | | | | | | | |
| 03 | | | | | | | | | | |
| 04 | | | | | | | | | | |
| 05 | | | | | | | | | | |
| 06 | | | | | | | | | | |
| 07 | | | | | | | | | | |
| 08 | | | | | | | | | | |
| 0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 일련번호 | 원재료 및 연료부호 | 원재료 및 연료명 | 유고사항 | 단위 | 구분 | | 월중사용량 | | 월말재고량 | |
|------|------------|-----------|------|-----|----|-----|-------|---|-------|---|
| | | | | | 국산 | 1 2 | 배 | 정 | 배 | 정 |
| 51 | 9 0 1 | 부연탄·원료탄 | | M/T | | | | | | |
| 52 | 9 0 2 | 경유·중유 | | Kℓ | | | | | | |
| 53 | 9 0 3 | 방카 C 유 | | Kℓ | | | | | | |
| 54 | 9 0 4 | 전력 | | kWh | | | | | | |

※ 증감내용

| 일련번호 | 품목부호 | 원재료 | 종감사유 | ◎ 증감내용부호 | | | |
|-------------|------|-----|------|----------|----------|----|-----------|
| | | | | 증 | 감 | | |
| 1 생 산 | | | | 01 | 수준(주물)증가 | 11 | 수준(주물)감소 |
| | | | | 02 | 배수(주물)증가 | 12 | 배수(주물)감소 |
| | | | | 03 | 금속기 | 13 | 금속기 |
| 2 출 하 | | | | 04 | 정제수출 | 14 | 정제수출 |
| | | | | 05 | 지정수출 | 15 | 지정수출 |
| 3 재 고 | | | | 06 | 수출증가 | 16 | 수출감소 |
| | | | | 07 | 수출증가 | 17 | 수출감소 |
| 4 재 고 | | | | 08 | 화학·가업 | 18 | 화학·가업 |
| | | | | 09 | 기타 | 19 | 기타(일기불순등) |

③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 | | 월말종업원수(명) | | | | | 월중종업원연근무인원수(명) | | | | |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 | | | | | | | | |
|-----------|--------|-----------|---|---|---|---|----------------|---|---|---|---|-----------------|---|---|---|---|---|---|---|---|---|
| |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상시 종업원 | 생산직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직·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임시 일고 | 생산직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직·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전월말상시종업원 |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 금월말상시종업원 | 월중조업일수 |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
| □□□□ 명 | □□□□ 명 | □□□□ 명 | □□□□ 명 | □□□□ 일 | □□□□ 시간 □□□□ 교내 |

| | | 급여총액 | | | | | 정액급여 | | | | | 특별급여(상여금등) | | | | |
|-----------|--------|------|---|---|---|---|------|---|---|---|---|------------|---|---|---|---|
| | | 천 | 백 | 십 | 만 | 억 | 천 | 백 | 십 | 만 | 억 | 천 | 백 | 십 | 만 | 억 |
| 상시 종업원 | 생산직 | | | | | | | | | | | | | | | |
| | 사무직·기타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임시 일고 | 생산직 | | | | | | | | | | | | | | | |
| | 사무직·기타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증감내용

| | 증감부호 | 증감사유 | ●증감내용부호 | |
|--------|------|------|---------------|---------------|
| ① 입직자 | | | 1. 신규채용 | 3. 기타 |
| ② 이직자 | | | 1. 생산활동부진 감축 | 3. 기타 |
| ③ 조업일수 | | | 1. 생산활동호조 | 3. 생산활동부진 |
| ④ 정액급여 | | | 2. 정상가동 | 4. 휴업, 파업, 기타 |
| ⑤ 특별급여 | | | 1. 급여인상 | 3. 종업원 증가 |
| | | | 2. 초과근무수당증가 | 4. 종업원 감소 |
| | | | 1. 상여금지급 | 3. 기타 |
| | | |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 |

| 응답부서 | 응답자 | 조사담당자 | 내검자 | 관리책임자 |
|--------|-----|-------|-----|-------|
| 과 | | | | |
| 전화 () | 인 | 인 | 인 | 인 |

당부말씀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전기업 부분의 경기동향을 매일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하므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피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③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생 산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생산한 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 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구 입

- 사업체에서 생산중인 조사품목과 같은 제품으로서 국외수입, 국내 사업체로부터의 구입, 유통 및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부터 입고된 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하청공장에 위탁생산하여 납품받은 량
- 반품된량(폐기품 제외)
- ※ 제외: • 사업체의 조사품목(생산품목)이 아닌 제품의 구입량

동 일 공 장 내 재 투 입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내에서 자가 소비된 량
- 위탁 생산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재료로서 공급한 량

국 내 시 판

- 국내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납용으로 출고된 량
- 수출용이라도 타 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 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량
- 종업원에 대한 현물급여로 지급된 량

수 출

- 직·간접 수출량 및 주한 외국군 납품량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 동일 조사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량
- 동일 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출하한 량
- 타사업체로 부터 유통받은 량의 반제
- 선물, 견본, 전사용 등으로 출고할 량
- ※ 제외: • 같은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내 타 공장으로의 출하(국내시판, 수출용으로 계상)
- 염색 또는 단순가공을 위해 일시 출고된 량(재고로 계상)

월 말 재 고

- 자체생산, 위탁생산, 구입분의 실제 재고량
-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량(출하로 계상 없음)
- ※ 제외: • 반품된 제품중 폐기될 량

작성기관: 경 제 기 획 원
지정통계: 111-11-12

광공업동태조사표(Ⅲ)

[진척율 조사품목용]

통계법 제4조에 따라 귀업체는 통계자료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8 년 월분)

1. 잠정자료 2. 확정자료

※ 매월 12일까지 제출

| 사업체고유번호 | 산업분류 부호 | 사업체명 | | 소재지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사업체규모 |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
| 행정구역번호 | 조사구 번호 | 사업체 | | | | | 1. 대규모 | 1. 500명 이상 | 1. 전 입 |
| | | 본사 | | | | | 2. 중소규모 | 2. 300~499명 | 2. 휴 업 |
| | | | | | | | | 3. 100~299명 | 3. 사업체 흡수 |
| | | | | | | | | 4. 99명 이하 | 4. 사업체 분리 |

1 품목수주·진척사항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품 목 명 | 유고 사항 | 단 위 | 당 월 수 주 량 | | | | 당 월 진 척 량 | | | | 수 주 잔 량 | | | | 당월원성품인도량 | | | | | | | | |
|----------|---------|----------|----------|--------|-----------|----|-------|---|-----------|---|-------|----|---------|---|-------|---|----------|---|------|----|---|---|---|---|---|
| | | | | | 국 내 용 | | 수 출 용 | | 국 내 용 | | 수 출 용 | | 국 내 용 | | 수 출 용 | | 톤 수 | | 척(대) |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01 | 8410200 | 철강유조선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2 | 8410300 | 일반화물선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3 | 8410400 | 특수화물선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4 | 8410500 | 비상업용특수선박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5 | 8410600 | 철강어선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6 | 8410700 | 합성수지선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7 | 8410800 | 선박해체업 | | LDT | | | | | | | | | | | | | | | | | | | | | |
| 08 | 8410909 | 목선 | | G/T | | | | | | | | | | | | | | | | | | | | | |
| 09 | 8420100 | 디젤기관차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10 | 8420200 | 전동차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11 | 8420300 | 여객차및수하물차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12 | 8420400 | 화차 | | 대 | | | | | | | | | | | | | | | | | | | | | |

2 원재료 및 연료사용·재고

| 일련 번호 | 원재료 및 연료부호 | 원재료 및 연료명 | 유고 사항 | 단위 | 구분 국산1 수입2 | 월 중 사용량 | | | | 월 말 재고량 | | | | | | | | | | | | | | | | |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 | | | |
|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901-000 | 무연탄·원료탄 | | M/T | | | | | | | | | | | | | | | | | | | | | | |
| 52 | 902-000 | 경유·중유 | | Kℓ | | | | | | | | | | | | | | | | | | | | | | |
| 53 | 903-000 | 방카·C유 | | Kℓ | | | | | | | | | | | | | | | | | | | | | | |
| 54 | 904-000 | 전 력 | | 천KWH | | | | | | | | | | | | | | | | | | | | | | |

※ 증감내용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전월비 (%) | 증 감 사 유 |
|----------|---------|------------|---------|
| | | | |

3 고용·급여 및 조업상황

| | | 월말종업원수(명) | | | | | 월중종업원연근무원수(명) | | | | | 월중종업원연근무시간수(시간) | | | | | | | | | |
|------------|-----------|-----------|---|---|---|---|---------------|---|---|---|---|-----------------|---|---|---|---|---|---|---|---|---|
| |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상 시 종업원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임 시 일 고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전월말상시종업원 | 월중상시종업원입직자 | 월중상시종업원이직자 | 금월말상시종업원 | 월중조업일수 | 월중1일평균조업시간 |
|----------|------------|------------|----------|--------|--------------------|
| □□□□ 명 | □□□□ 명 | □□□□ 명 | □□□□ 명 | □□□□ 일 | □□□□ 시간 □□□□ 교대 |

| | | 급여총액 | | | | | 정액급여 | | | | | 특별급여(상여금등) | | | | |
|------------|-----------|------|---|---|---|---|------|---|---|---|---|------------|---|---|---|---|
| | | 천 | 백 | 십 | 억 | 만 | 천 | 백 | 십 | 억 | 만 | 천 | 백 | 십 | 억 | 만 |
| 상 시 종업원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임 시 일 고 | 생 산 직 | | | | | | | | | | | | | | | |
| | 사 무 직·기 타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증감내용

| | 증감부호 | 증 감 사 유 | ● 증 감 내 용 부 호 | |
|-----------|------|---------|---------------------|---------------|
| ① 입 직 자 | | | 1. 신규채용 | 3. 기 타 |
| ② 이 직 자 | | | 1. 생산활동부진 감축 | 3. 기 타 |
| ③ 조 업 일 수 | | | 2. 공정개선, 자동화에 따른 감축 | |
| ④ 정 액 급 여 | | | 1. 생산활동호조 | 3. 생산활동부진 |
| ⑤ 특 별 급 여 | | | 2. 정상가동 | 4. 휴업, 파업, 기타 |
| | | | 1. 급여인상 | 3. 종업원 증가 |
| | | | 2. 초과근무수당증가 | 4. 종업원 감소 |
| | | | 1. 상여금지급 | 3. 기 타 |
| | | | 2. 임금인상소급분 지급 | |

| 응답부서 | 응답자 | 조사담당자 | 내검자 | 관리책임자 |
|-------|-----|-------|-----|-------|
| 과 | | | | |
| 전화() | ① | ① | ① | ① |

당 부 말 씀

-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제조업·전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만을 조사함으로 귀업체의 생산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유사제품이나 다른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할 때에는 당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업체의 조직·경영상 변동사항(합병, 이전, 휴·폐업, 증설 등)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당 월 수 주 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 또는 국내로부터 주문 받은 량
 - 선박해체업의 경우는 폐선박 도입량(경화배수톤수)
- 당 월 진 척 량**
 -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중인 선박, 철도차량의 공정 진척율에 따른 환산량.
(수주잔량×당월 진척율)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공정진척율에 따른 해체량
- 수 주 잔 량**
 - 총 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잔량
 - 선박 해체업의 경우는 미해체량
- 당 월 완 성 품 인 도 량**
 - 공정 진척도에 관계없이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주문처에 납품한 량

()월분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 사무소

| ① 연 번 결 호 | ② 사업체고유번호 | ③ 사 업 체 명 | ④ 작 성 구 분 | ⑤ 사 업 체 구 분 | ⑥ 산 업 분 류 | ⑦ 주 소 (행정구역 분류 번호) | ⑧ 전 화 번호 | ⑨ 종 업 원 수 | ⑩ 예 측 조 사 지 정 | | ⑪ 유 고 사 항 | | |
|--------------------|-----------|--------------------|--------------------|-------------------------|--------------------|--------------------------|----------------|--------------------|------------------------------|----------|--------------------|----------|------------------------------|
| | | | | | | | | | 품목명및품목부호 | 품목명및품목부호 | 유고 부호 | 유고 년월 | 유 고 내 용 (적 요)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조사표작성구분 : 1. 당해공장 2. 주공장 3. 본사 ※ 사업체구분 : 1. 본사 2. 본사+공장 3. 공장 4. 단독사업체

※ 유고내용및부호 : 1. 전입 2. 휴업 3. 전출 4. 신규 5. 폐업 6. 합병·합산

29-8

제조업 생산 예측 조사표 (IV)

○ 작성기관 : 경제기획원
○ 지정번호 : 111-11-12

1 9 8 년 월분

※ 매월 20일까지 제출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사업체 고유번호 | 산업분류부호 | 조사구번호 | 총종업원수 | 사업체유고사항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1. 전 업 2. 휴 업 3. 설비 및 공장신설, 휴수 4. 설비 및 공장축소, 분리 |
| 생산 실적 및 예측 | | | | |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품 목 명 | 유 고 사 항 | 지 정 단 위 | 전 월 생 산 실 적 | | | | | | 당 월 생 산 예 측 | | | | | | 의 월 생 산 예 측 | 당월예측 증감사유 |
|----------|---------|-------|---------|---------|-------------|----|---|---|---|---|-------------|----|----|---|---|---|-------------|--------------|
| |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 |
| 01 |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이 조사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대한 단기예측을 함으로써 경기분석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귀업체에 속하는 산하공장전체를 총합하여 조사하게 됨으로 지정품목이나 산하공장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③ 귀사의 계획에 따라 당월 및 익월생산예측을 작성하여 주시는 경우에도 경기여건, 사업체의 실정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생산예측자료가 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④ 「익월생산예측」을 다음달에 「당월생산예측」난에 다시 기재하실 때,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주십시오.
- ⑤ 이 조사에서 「생산」이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수탁생산량
 ※ 공정진척율에 의해 광공업 동태조사표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예측조사표도 공정진척율에 따라 주십시오.

| 응답부서 | 응답자 |
|---------------|-----|
| 작성부서명: 전화: | 인 |

| 조사담당자 | 내·검·자 | 관리책임자 |
|-------|-------|-------|
| 인 | 인 | 인 |

29-9

원 재 료

| | | | | | |
|-----------|--|----------|--|--------|--|
| 원재료 부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 | | | | |
|-----------|--|----------|--|--------|--|
| 원재료 부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1 | | | | | 1 | | | | |
| 2 | | | | | 2 | | | | |
| 3 | | | | | 3 | | | | |
| 4 | | | | | 4 | | | | |
| 5 | | | | | 5 | | | | |
| 6 | | | | | 6 | | | | |
| 7 | | | | | 7 | | | | |
| 8 | | | | | 8 | | | | |
| 9 | | | | | 9 | | | | |
| 10 | | | | | 10 | | | | |
| 11 | | | | | 11 | | | | |
| 12 | | | | | 12 | | | | |

| | | | | | |
|-----------|--|----------|--|--------|--|
| 원재료 부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 | | | | |
|-----------|--|----------|--|--------|--|
| 원재료 부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1 | | | | | 1 | | | | |
| 2 | | | | | 2 | | | | |
| 3 | | | | | 3 | | | | |
| 4 | | | | | 4 | | | | |
| 5 | | | | | 5 | | | | |
| 6 | | | | | 6 | | | | |
| 7 | | | | | 7 | | | | |
| 8 | | | | | 8 | | | | |
| 9 | | | | | 9 | | | | |
| 10 | | | | | 10 | | | | |
| 11 | | | | | 11 | | | | |
| 12 | | | | | 12 | | | | |

원 재 료

| | | | | | |
|------------|--|----------|--|--------|--|
| 원재료 부 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 | | | | |
|------------|--|----------|--|--------|--|
| 원재료 부 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1 | | | | | 1 | | | | |
| 2 | | | | | 2 | | | | |
| 3 | | | | | 3 | | | | |
| 4 | | | | | 4 | | | | |
| 5 | | | | | 5 | | | | |
| 6 | | | | | 6 | | | | |
| 7 | | | | | 7 | | | | |
| 8 | | | | | 8 | | | | |
| 9 | | | | | 9 | | | | |
| 10 | | | | | 10 | | | | |
| 11 | | | | | 11 | | | | |
| 12 | | | | | 12 | | | | |

| | | | | | |
|------------|--|----------|--|--------|--|
| 원재료 부 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 | | | | |
|------------|--|----------|--|--------|--|
| 원재료 부 호 | | 원재료 명 | | 단 위 | |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월 | 국 산 (1) | | 수 입 (2) | |
|----|---------|-------|---------|-------|----|---------|-------|---------|-------|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월중사용량 | 월말재고량 |
| 1 | | | | | 1 | | | | |
| 2 | | | | | 2 | | | | |
| 3 | | | | | 3 | | | | |
| 4 | | | | | 4 | | | | |
| 5 | | | | | 5 | | | | |
| 6 | | | | | 6 | | | | |
| 7 | | | | | 7 | | | | |
| 8 | | | | | 8 | | | | |
| 9 | | | | | 9 | | | | |
| 10 | | | | | 10 | | | | |
| 11 | | | | | 11 | | | | |
| 12 | | | | | 12 | | | | |

29-13

製造業 生産 豫測調査 指針書

1988.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차 례

| | |
|--------------------------------|----|
| I. 조사개요 | 3 |
| 1. 조사목적 | 5 |
| 2. 조사대상기간 | 5 |
| 3. 조사시기 | 5 |
| 4. 조사대상 | 5 |
| 5. 조사단위 | 5 |
| 6. 조사품목 | 6 |
| 7. 조사사항 | 6 |
| 8. 조사방법 | 6 |
| 9. 집계 및 공표 | 7 |
| II. 조사표 기입요령 | 9 |
|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11 |
| 2. 조사사항란 기재요령 | 13 |
| 가. 난외사항 | 13 |
| 나. 생산실적 및 예측란 기재요령 | 17 |
| 다. 생산실적 및 예측 | 20 |
| 라. 기업체(본사)의 산하사업체(공장) 변동 | 27 |
| III. 조사표 검토 및 제출 | 29 |
| 1. 일반사항 | 31 |
| 2. 난외사항 | 31 |

| | |
|--------------------------------------|----|
| 3. 제품생산 | 32 |
| 4. 조사표 제출 | 33 |
| IV. 예측조사 중점강조사항및 사례 | 37 |
| 1. 예측조사의 필요성 | 39 |
| 2.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 및 익월예측생산량(액) | 39 |
| 3. 조사표 기입(예) | 40 |
| 4. 예측조사를 위한 질문요령(예)..... | 43 |
| 5. 예측생산량 추정방법(예)..... | 47 |
| V.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요령 | 51 |
| 1. 관리개요 | 53 |
| 2. 예측조사사업체 관리현황보고서 기입요령 | 54 |
| 3. 예측조사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 63 |
| VI.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69 |
| VII. 부 록 | 93 |
| 1. 주요단위 해설 | 95 |
| 2. 도량형 환산표 | 98 |

I. 조 사 개 요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경기동향 분석을 위하여 제조업 생산활동에 대한 단기 예측자료 제공
- GNP 추계자료 제공
-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경기전망 및 분석 자료 제공

2. 조사대상 기간

- 전월, 당월, 익월의 3개월분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조사

3. 조사시기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사완료
- 매월 25일까지 조사통계국에 도착

4. 조사대상

- 한국표준 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 고시 제 71호)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대상사업체로 지정된 사업체

5. 조사단위

가. 측정단위

- 물량단위 중심조사
- 복합품목군으로서 물량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액조사로 지정된 품목은 생산금액을 조사

예 : 의약품, 화장품

나. 대상사업체 단위

- 기업체 (본사) 중심조사
- 본사가 없거나, 생산계획을 공장에서 자체 수립하는 사업체는 개별 공장별로 조사
- 주공장 (사업체)에서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주공장 (사업체)에서 조사

6. 조사품목

- '85년 기준 생산지수대상품목 666개 중 예측이 가능하고, 가중치가 비교적 높은 260개 품목 (지수품목 258, 세분되는 품목 2)을 선정 조사

※ 세분되는 품목 : 화장수 (5230610), 플라스틱사출용금형 (8231920)

7. 조사사항

- 전월 생산실적량 (액), 조사당월 예측생산량 (액), 익월 예측 생산량 (액)
- 총종업원수

8. 조사방법

- 면접 타계식 방법과 자계식 방법을 병행
- '89년 이후는 자계식 우편조사로 전환 예정
- 매월 20일까지 조사표 수집

9. 집계 및 공표

-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집계, 분석 등을 거쳐 예측지수 작성
- 예측지수의 정도 추이 검토후 '89년 1월 이후 공표 여부 결정

Ⅱ. 조사표 기입요령

Ⅱ.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인 주의사항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영문병기)로 기재
- 잘못 기입한 사항을 정정할시는 횡선을 긋고, 그바로 위에 다시 기재
- 조사표상 정해진 자리수 문자(백만, 십만, 만, 천, 백, 일)와 조사 단위(%, 백만원, kg 등)와의 차이에 유의하여 기재
- 조사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조사단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사용단위와 서로 다른 경우는 지정된 조사 단위로 환산기입

※ 기입예 :

기업체 또는 사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생산한다면

- 인형 및 장난감 : 6,000,000 원 지정단위 → 백만원
- 소 모 직 물 : 42,000 m² // → 천m²
- 의 약 품 : 9,000,000 원 // → 백만원
- 잘못 기입

| 품 목 부 호 | 품 목 명 | 유 고 사 항 | 지 정 단 위 | 전월생산실적(액) | | | | | | |
|---------------|----------|------------|-----------------|-----------|-----|---|---|---|---|---|
| | | |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9 0 4 0 1 0 0 | 인형 및 장난감 | | 백만원 | 6 | 0 | 0 | 0 | 0 | 0 | 0 |
| 2 1 2 0 2 0 0 | 소 모 직 물 | | 천m ² | | | 4 | 2 | 0 | 0 | 0 |
| 5 2 2 0 1 0 0 | 의 약 품 | | 백만원 | | | | | 9 | 0 | 0 |

• 바른 기입

| 품 목 부 호 | | | | | | | | 품 목 명 | 유 고 사 항 | 지 정 단 위 | 전월생산실적(액) | | | | | |
|---------|---|---|---|---|---|---|----------|-------|------------|------------|-----------|--------|---|---|---|-----|
| | | | | | | | | | | | 백 만 | 십 만 | 만 | 천 | 백 | 십 |
| 9 | 0 | 4 | 0 | 1 | 0 | 0 | 인형 및 장난감 | | 백만원 | | | | | | | 6 |
| 2 | 1 | 2 | 0 | 2 | 0 | 0 | 소 모 직 물 | | 천㎡ | | | | | | | 4 2 |
| 5 | 2 | 2 | 0 | 1 | 0 | 0 | 의 약 품 | | 백만원 | | | | | | | 9 |

- 조사지정 단위 미만의 수치는 각 항목별로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반올림하여 기재, 다만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나 월별로는 반올림 규정에 따라 「1」이상이 아니고 「0」이 되는 경우라도 수개월의 누계를 반올림하여 1이월 경우는 당해월에 정수를 기재함.

※ 기입예 : 지정단위→천㎡인 경우

- 기업체 또는 사업체에서 자수직물을 다음과 같이 월별로 생산한다면

| 월 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
| 소모직물 | 370㎡ | 290㎡ | 420㎡ | 430㎡ | 250㎡ | 220㎡ | 460㎡ | 470㎡ | 350㎡ | 400㎡ |

○ 잘못 기입

| 월 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
| 조사표 기 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바른 기입

1월 + 2월 = 660 m², 3월 + 4월 = 850 m², 5월 + 6월 + 7월 = 930 m²...

| 월 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조사표 기재 | 0 | 1 | 0 | 1 | 0 | 0 | 1 | 0 | 1 | 0 |

○ 생산예측조사표는 광공업동태조사표(세가지 종류)와는 달리 단일 조사표로 되어 있음

○ 광공업동태조사에서 382, 383업종 품목은 금액과 물량을 대부분 병행조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측조사는 병행조사를 하지 않고 지정된 단위로만 조사기입

※ 8310400 →배전반, 8250100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금액으로만 조사하고 병행단위(대)는 조사할 필요가 없음.

※ 「광공업 동태조사」와 「제조업생산예측조사」의 기재 사항 중 품목부호 및 품목명, 조사단위, 전·출입 처리요령 등에 차이가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유의

2. 조사항란 기재요령

가. 난외 사항

1) 년, 월분

- 조사표가 작성되는 당해 년, 월을 기재
- 년은 1자리 월은 2자리 숫자로 기재

※ 기입예 : (198 8년 04월분)

2) 사업체 고유번호

- 예측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 고유번호(7자리)를 기입하되 중앙(산업통계과)의 변경 지시가 없는 한 절대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지정된 예측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모집단 고유번호를 기입(광공업 동태조사의 신규사업체 처리와 동일)

3) 산업분류

- 생산품목의 연간생산(출하)액을 비교할 때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해당되는 산업세분류(5단위)를 기입
- 조사표 내용에 수 개의 사업체(공장)가 포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액을 비교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분류(5단위)를 기입
- 사업체에서 새로운 지정품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을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품목이 주종 품목이 된다면 새로운 품목의 산업세분류(5단위)를 기입함.

4) 조사구 번호

- 광공업 동태조사에 준하여 조사구 번호를 부여

5) 총종업원수

가) 개별사업체(공장)에서 조사

- 해당 조사월 말일 현재의 총종업원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되 상시, 임시 및 일고등 지위여하는 불문)수를 기입.
- 월말 총종업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 계

산일을 기준하여 기입(단, 수시로 종업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됨)

※ 종업원수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 30~32페이지 「월말종업원수」 파악 요령을 참고

나) 기업체(본사)에서 조사

-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산하 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와 본사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총종업원수에 기입
- 기업체(본사) 종업원수와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산하 사업체(공장) 종업원수만을 합산하기 곤란한 경우는 기업체(본사) 종업원수와 모든 산하 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총종업원수란에 기입

다) 주공장(사업체)에서 조사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하는 요령과 동일

6) 사업체 유고 사항

※ 예측조사표상 「사업체유고사항」란에는 해당 번호에 ○표를 기입

가) 전입 : 1

- 예측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체(본사) 또는 사업체(공장)가 지방사무소의 관할 경계를 달리하여 이동되는 경우 이동된 장소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만 기입

※ 주 의

- 예측조사의 전, 출입 개념과 광공업동태조사의 전, 출입 개념은 서로 다르다.
- 광공업동태조사는 시, 도별 지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 도

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므로 동일 사무소 관내라도 시·도를 달리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전입에 해당하나 예측조사는 전국 추이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도 경계를 달리하여 이동하더라도 동일 사무소 조사 관할내에 있으면 전입, 전출로 보지 않음.

나) 휴업 : 2

- 생산시설등을 유지한 채로 1개월이상 조업을 하지 않는 업체
- 다른 품목은 생산하나 예측지수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도 휴업사업체로 간주

다) 설비 및 공장 신설, 흡수 : 3

- 동일 기업내 타공장 또는 타기업체의 공장을 흡수 합병하여 공장규모가 늘어난 경우
- 사업체 자체의 공장설비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기업체(본사)가 다른 기업체(본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라) 설비 및 공장 축소, 분리 : 4

- 사업체(공장)가 공장설비를 축소하거나 기업체 내의 다른 사업체(공장)를 폐쇄시키는 경우
- 1개의 사업체(공장)가 경영 및 회계를 달리하는 2개이상의 사업체로 분리되거나 1개의 기업체(본사)가 2개 이상의 기업체(본사)로 분할된 경우

7) 응답부서, 응답자

- 사업체(공장) 및 기업체(본사)의 생산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

관할하는 부서를 선택하여 조사

- 응답자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질의 내용에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기입
- 전화번호는 응답부서의 직통전화번호를 기입할 것이며 구내 교환 전화번호를 사용할시는 구내 교환 전화번호도 병행기입

나. 생산실적 및 예측란 기재 요령

1) 조사대상제품

- 예측조사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기업체(본사) 또는 사업체(공장)에서 명부에 기록된 지정품목 이외의 예측조사 지정품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사
- 사업체에서 사용한 제품명칭이 다르더라도 예측조사 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되면 조사

※ 예 : 맥콜, 보리텐 등은 「1340500→합성탄산음료」

- 예측조사 대상기업체(본사) 또는 사업체(공장)가 휴업 및 폐업상태 일지라도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 (「예측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

- 예측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외에 새로운 예측조사지정 제품을 사업체에서 신규로 생산하면 이미 조사되고 있는 품목에 첨가하여 조사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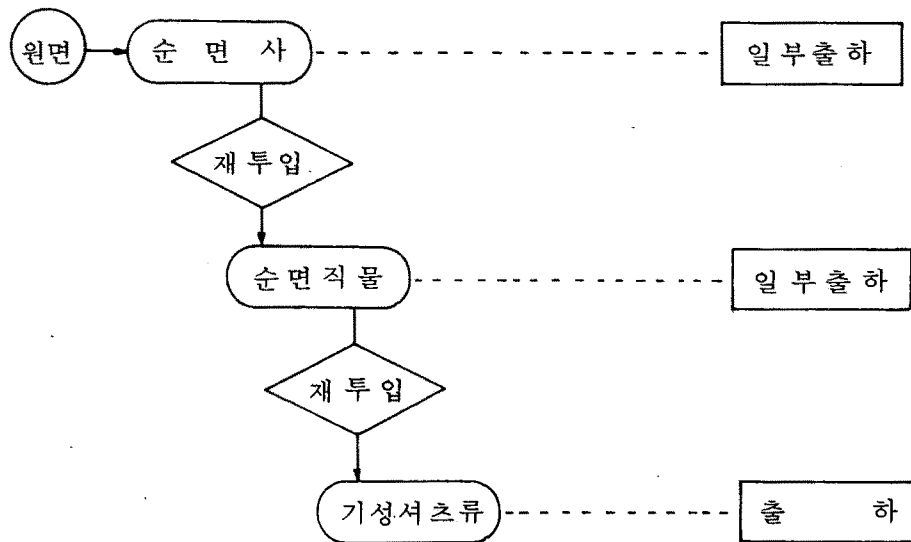
※ (「예측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

- 재공품이 아닌 중간제품을 제품원료로서 다른 제품생산을 위해 재투입하거나 기타 연료, 가공용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지정

된 품목일 경우는 각각 조사

※ 재공품이란 : 어떤 제품이 생산라인에 올려 있어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 도중에 있는 품목으로서 현상태로는 외부출하가 불가능한 제품

※ 기입예 : 단일 사업체 (공장)에서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 단계를 거쳐 기성서츠류를 생산한다면



- 위의 경우는 모두 지정 품목이므로 세가지 모두를 제품으로 각각 조사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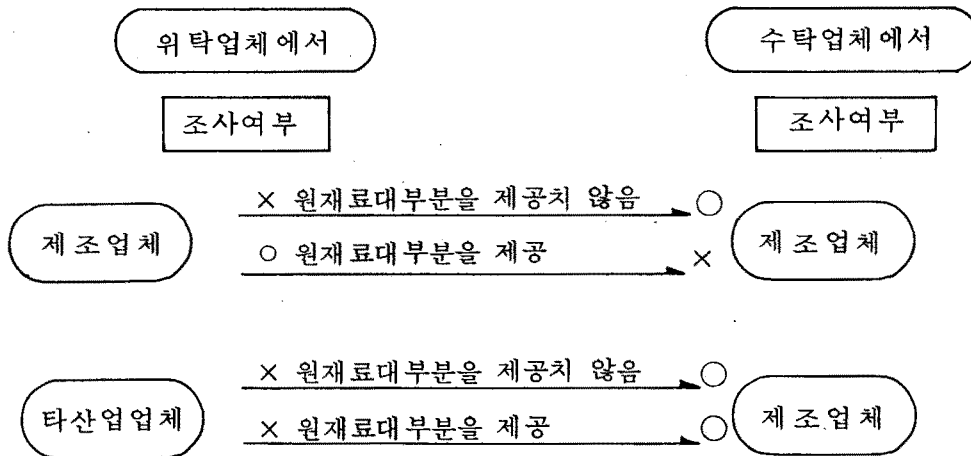
2) 위탁 및 수탁 관련 제품

- 원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 생산한 제품은 위탁업체의 생산품으로 간주하여 위탁업체에서 조사
- 원재료의 대부분을 위탁업체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원재료를 구입 사용하여 위탁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는 경우는 수

탁업체의 생산품으로 조사

- 제조업이 아닌 타산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정품목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수탁업체의 생산품으로 조사(원재료 제공여부 불문)

※ 조사 대상여부 예시 :



3) 공정 진척율 조사관련 제품

- 전월 생산실적
 - 조사 전월에 진척된 공정 진척량을 기재
- 당월 생산예측
 - 진척량 환산 방법에 의거 조사당월의 예측 진척량을 기재
- 익월 생산예측
 - 진척량 환산 방법에 의거 익월의 예측 진척량을 기재

※ 진척량 환산 방법

- 수주잔량에 조사일의 공정진척율을 승하여 환산

- 총수주량에 공정진척율 누계를 승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차감하여 환산

※ 「광공업동태조사」에서 공정진척율에 의하여 조사되는 품목은 예측조사도 공정진척율에 의할 것

다. 생산실적 및 예측

1) 일련번호

- 1개 품목이상을 기재할 경우는 조사품목의 수량을 나타냄.
- 과거 생산실적을 소급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품목의 소급월을 나타냄.
- 과거 생산 실적을 소급조사할 경우는 일련번호(소급월) 좌측에 해당년도를 기재하여 소급 년, 월을 표시하여야 함.

※ 기입예 :

- '88년도 3~5월까지 생산실적을 소급조사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고 부호 | 지정 단위 |
|----------|---------|---|---|---|---|---|---|-------|----------|----------|
| 01 | | | | | | | | | | |
| 02 | | | | | | | | | | |
| 03 | 5 | 2 | 1 | 0 | 3 | 0 | 0 | 페 인 트 | | kg |
| 04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88년도 1~5월까지 생산실적을 소급 조사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 고 부 호 | 지 정 단 위 |
|----------|---------|---|---|---|---|---|---|-------|------------|------------|
| | | | | | | | | | | |
| 01 | 5 | 2 | 1 | 0 | 3 | 0 | 0 | 페 인 트 | | kl |
| 02 | | | | | | | | | | |
| 03 | | | | | | | | | | |
| 04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주의 : 소급조사표는 예측조사표 우측 상단에 「소급조사표」라고 적색싸인펜으로 기재하여 경상조사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제출

2) 품목부호 및 품목명

- 「제조업생산예측조사지정품목분류」에 기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품목부호 분류체계(7단위)는 「광공업동태조사지침서」 14페이지 참조
- 예측조사 지정품목 부호는 특별히 지정된 품목(5230610 : 화장수, 8231920 : 플라스틱사출용 금형)을 제외하고 광공업 동태조사의 지수품목 부호 품목명을 기입
- 광공업 동태조사는 1개 지수품목이 여러개의 세분품목으로 나누

어져 있는 경우(소시지는 축육과 어육, 면사는 순면사와 혼방면사, 방모사는 순방모사와 혼방모사로 세분하는 등) 세분품목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예측조사는 지수품목이 동일하거나 지수품목이 서로 다른 품목(순면사, 순방모사)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각각 세분품목으로 기재하지 말고 예측조사로 지정된 지수 품목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지수 품목부호가 같은 세분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품목 부호 및 품목명 기입

- 대상사업체에서 축육소시지(1110210)만을 생산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 고 부 호 | 지 정 단 위 |
|----------|---------|---|---|---|---|---|---|-------|------------|------------|
| | 1 | 1 | 1 | 0 | 2 | 0 | 0 | | | |
| 01 | 1 | 1 | 1 | 0 | 2 | 0 | 0 | 소 시 지 | | M/T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대상사업체에서 어육소시지(1110220)만을 생산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 고 부 호 | 지 정 단 위 |
|----------|---------|---|---|---|---|---|---|-------|------------|------------|
| | 1 | 1 | 1 | 0 | 2 | 0 | 0 | | | |
| 01 | 1 | 1 | 1 | 0 | 2 | 0 | 0 | 소 시 지 | | M/T |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대상사업체 축육·어육소시지 두 세분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고 부호 | 지정 단위 |
|----------|---------|---|---|---|---|---|---|-------|----------|----------|
| 01 | 1 | 1 | 1 | 0 | 2 | 0 | 0 | 소 시 지 | | M/T |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기입예 : 지수 품목부호가 다른 세분품목만을 생산하는 경우 품
목부호 및 품목명 기입

- 대상사업체에서 순면사(2110210)만을 생산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고 부호 | 지정 단위 |
|----------|---------|---|---|---|---|---|---|-------|----------|----------|
| 01 | 2 | 1 | 1 | 0 | 2 | 0 | 0 | 면 사 | | M/T |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대상사업체에서 순방모사(2110410)만을 생산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고 부호 | 지정 단위 |
|----------|---------|---|---|---|---|---|---|-------|----------|----------|
| 01 | 2 | 1 | 1 | 0 | 4 | 0 | 0 | 방 모 사 | | M/T |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대상 사업체에서 지수 품목부호가 완전히 다른 순면사(2110210)와 순방모사(2110410)의 세분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 | | | | | 품 목 명 | 유 고 부 호 | 지 정 단 위 |
|----------|---------|---|---|---|---|---|---|-------|------------|------------|
| | 2 | 1 | 1 | 0 | 2 | 0 | 0 | | | |
| 01 | 2 | 1 | 1 | 0 | 2 | 0 | 0 | 면 사 | | M/T |
| 02 | 2 | 1 | 1 | 0 | 4 | 0 | 0 | 방 모 사 | | M/T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3) 사업체 유고사항

- 품목에 관련된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다음에 따라 해당된 부호를 기입

- ※ 예시 : 유고사항 유고번호
- 지정 품목을 신규로 생산 1
 - 지정 품목을 생산중단 2
 - (품목생산휴업)
 - 기조사 보고된 품목이 분류착오로 삭제..... 3
 -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조사누락 4

단, 유고부호가 4번에 해당되는 예측 지정품목은 소급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

- ※ 품목에 관련된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예측사업체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산업통계과)에 보고

4) 지정단위

- 「제조업 생산예측조사지정품목분류」에 기재된 조사단위를 기입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지정단위가 다를 경우 지정된 조사 단위로 정확히 환산 기입

※ 지정 조사단위 환산예 : 쇠가죽의 경우

- 사업체에서

사용단위 : 평 또는 매

월생산량 : 20,000 평 또는 500매 (40평 짜리)

- ※ 생산량을 매라고 할 때는 「몇 평짜리 몇 매를 생산」등으로 호칭됨.

쇠가죽 1평 = 사방 12인치 (12 in²)
 = 사방 1피트 (1ft²)
 = 0.093 m²으로 환산되며

- 단위환산

40평짜리 500매일 경우

40 × 500매 = 20,000 평

20,000 평 × 0.093 = 1,860 m²

조사단위 천m²이므로

조사표상 기입은 → 2라고 기입됨

- ※ 예측조사에서 단일 지정품목이 두개의 지정단위 (금액과 수량)로 병행조사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지정된 조사단위 하나만을 조사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5) 전월 생산실적

- 조사 대상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수량(액)을 조사
- 전월분 생산실적(액)은 조사당월을 기준할 때 전월의 확정된 생

산수량(액)을 기재

6) 당월 생산예측

- 당월 생산예측량(액)은 조사표 작성일이 속하는 당월에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량(액)을 조사하되 제품주문상태, 원재료 상황, 기타 조업상황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월 말일까지의 생산량(액)을 예측하여 기재

7) 익월 생산예측

- 익월생산예측량(액)은 조사익월의 생산계획량(액)을 기재하되 향후경기 전망, 사업체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입
- 「익월생산예측」은 다음 조사월에는 「당월생산예측」으로 기재될 것이나 익월 생산 예측량 그대로를 단순히 이기하지 말고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기입
- 생산예측은 향후 나타날 실적치와 큰차이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며 예측의 근거를 항상 파악하여 중앙(산업통계과)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함.

8) 당월예측 및 증감사유

- 전월실적에 비하여 당월예측이 현저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 품목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증감사유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에 사유를 기입하여 조사표에 첨부

※ 계절적인 수요대비 또는 수요증가(감소)라고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기입예 :

- 주택공사 상계지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문증가로 생산증가
- 광주고속에서 타이어 주문증가로 생산증가
- 증류탑 시설보수로 생산량 감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라. 기업체(본사)의 산하 사업체(공장) 변동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산하사업체(공장)에 유고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표에 기입
- 매월마다 예측조사 사업체 명부와 대조하여 예측조사지정품목 생산여부와 상관없이 산하사업체(공장)의 신규, 누락, 폐업, 주소이전 등의 변동이 있으면 「예측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측조사사업체명부가 수정될 수 있도록 중앙(산업통계과)에 보고한다.

※ 광공업동태조사의 신규사업체(종업원 100인 이상)로서 예측조사 조사항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는 경우 예측조사 신규 사업체로 조사하며 「예측사업체 관리현황보고서」를 작성함.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Ⅲ. 조사표 검토 및 제출

1. 일반사항

※ 예측조사표는 매월 20일까지 해당사무소에 수집하여 내검 확인 등이 완료되어야 함.

※ 제출 기한에 임박하여 내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난외사항

가. 조사표 상단의 □□월분의 난외 월이 기입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나. 사업체 고유번호기입 누락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고유번호가 있는가?

다. 광공업동태조사와 동일 사업체인 경우 동일한 고유번호가 기입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라. 예측 조사대상업체가 아닌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에서 예측조사표를 작성하였는가?

→ 확인하여 정정

마. 기업체에서 예측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예측조사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산하사업체(공장)가 누락되었는지?

→ 확인하여 포함시킴

바. 사업체유고가 있을 경우 「사업체 유고란」에 유고사항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사. 기업체(본사), 주공장(사업체)조사 경우, 총종업원수가 바르게 집계
되어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3. 제품생산

가. 예측조사 지정 품목부호로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나. 세분품목(5230610 : 화장수, 8231920 : 플라스틱사출형금형)으로 지정
된 것 이외의 품목이 지정품목부호(지수품목부호)가 아닌 세분품목
으로 잘못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다. 전월 생산실적량(액) 당월 생산예측량(액) 익월 생산예측량(액) 모두 조
사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라. 품목 유고사항 부호가 정확하게 부여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마. 증감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있게 기입되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4. 조사표 제출

가.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

나. 유고 사업체인 경우 중앙(산업통계과)의 조사 중지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조사표는 계속하여 제출

※ 기타 모든 유형은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를 참조한다.

제 조 업 생 산 예 측 조 사 표 (Ⅳ)

○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 지정번호: 111-11-12

1 9 8 년 월 일

통계법 제 8 조 및 제 9 조에 의거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매월 20일까지 제출

| | | | | |
|----------|--------|-------|--------|--|
| 사업체 고유번호 | 산업분류부호 | 조사구번호 | 총종업원인수 | 사업체유고사항 |
| | | — | | 1. 건 2. 휴 3. 설비 및 공장신설, 휴수 4. 설비 및 공장축소, 분리 임 업 |

생 산 실 적 및 예 측

| 일련 번호 | 품 목 부 호 | 품 목 명 | 유고사항 | 지정단위 | 전월생산실적 | | 당월생산예측 | | 의월생산예측 | | 당월예측 증감사유 |
|----------|------------------|-------------|------|------|-------------|------------------|-------------|------------------|-------------|------------------|--------------|
| | | | | | 백 십 만 | 천 백 십 일 | 백 십 만 | 천 백 십 일 | 백 십 만 | 천 백 십 일 | |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이 조사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생산동향에 대한 단기에측을 함으로써 경기분석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 ② 이 조사는 당원에서 미리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귀업체에 속하는 산하공장전체를 총합하여 조사하게 됨으로 지정품목이나 산하공장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③ 귀사의 계획에 따라 당월 및 익월생산예측을 작성하여 주시는 경우에도 경기여건, 사업체의 실적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생산예측자료가 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④ 「익월생산예측」을 다음달에 「당월생산예측」난에 다시 기재하실 때,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주십시오.
- ⑤ 이 조사에서 「생산」이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 판매용, 자가소비용 등으로 자체 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 위탁생산한량
 - 주요 원재료를 자체구입하여 제조한 타업체로부터의 위탁생산량
 - 제조업이 아닌 업체, 상사, 기관, 단체, 소비자로부터의 위탁생산량
 ※ 공정진척율에 의해 광공업 동태조사표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예측조사표도 공정진척율에 따라 주십시오.

| | |
|----------------|-----|
| 응답부서 | 응답자 |
| 작성부서명: 진 화: | 인 |

| | | |
|-------|-----|-------|
| 조사담당자 | 내검자 | 관리책임자 |
| 인 | 인 | 인 |

Ⅳ. 예측조사 중점강조사항 및 사례

IV. 예측조사 중점강조사항 및 사례

1. 생산예측조사의 필요성

- 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민간기업경영계획의 합리적 수립·추진을 위하여는 실물부문의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실세 및 향후전망 자료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경기불안정시나 경기전환국면에 있어서는 과거 실적과 정책수립시점간의 시차성으로 인하여 과거 실적에만 의존한 평가·분석만으로는 경기대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애로가 많음.
따라서 실물부문에 대한 정확한 단기적인 예측자료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2.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 및 익월예측생산량(액)의 개념

-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 및 익월예측생산량(액)이라 함은 조사당월 및 익월에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대상품목별 물량(금액조사대상품목은 금액)을 말함.
- 연간계획생산량 또는 월간계획생산량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업체일지라도 수요동향, 원재료수급사정, 기타 사업체의 특수사정에 따라 실제생산량과 계획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정등을 감안하여 예측생산량을 조사하여야 함.
- 조사당월 예측생산량(액)은 익월에 조사되는 실제 실적과 대비하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이상적임.
따라서 사실상 완전일치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가장 최

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조사방법이 필요

3. 조사표 기입(예)

- 조사누락의 방지
 - 휴업 및 품목생산중단(재고조절, 설비보수나 변경, 다른 품목생산으로 인한 경우 등)의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금월 및 익월 예측 생산량(액)을 조사기입
- 사업체에서 예측물량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체에서 예측물량을 제공해주더라도 실제달성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사정으로 초과달성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지의 여부를 재확인 후 기입
 - 사업체에서 제공한 예측물량을 기입하는 경우, 증감사유란에 사업체에서 응답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명기

* 기입예

| 품 목 명 | 조사 당월 예측 생산량 | | | | | | | 당월예측 증감사유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가죽 장화 등산화 및 작업화 | | | | | | 1 | 2 | 봄철이후 수요대비로 생산량 증가계획(사 업체 응답) |

- 조사자가 물량을 추산하여 기입하는 경우
 - 사업체에서 계획이 없거나, 주문상태 불확실, 원재료수급불안정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사업체에서 예측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단순히 증감을 또는 증감방향 정도만을 응답하는 경우에는 조사자가

직·간접 질문을 통해 예측생산량 추정 기입

- 과년도 실적, 현재의 휴업사정, 국내경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추정하되, 추정근거를 증감사유란에 명기하고, 아울러 조사자가 추산한 자료임을 표시

* 기입예

| 품목형 | 조사당월예측생산량 | | | | | | | 당월예측 증감사유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장식장 | | | | | 2 | 0 | 6 | (장식장) : 업체에서 전월대비 약 3~4%정도 증가할 것으로 응답(조사자 4%증가 추정) |
| 식탁 | | | | | 1 | 6 | 3 | (식탁) : 업체에서 전월대비 포함수준 응답(조사자 조업일 수증가감안 3%증가 추정) |

- 응답기업에 대하여는 조사목적, 비밀보호 등의 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유도
- 예측이 곤란한 일부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자가 직·간접적 질문 방법을 개발하여 추정하되, 빠른 시일내에 사업체에서의 예측이 가능토록 유도
- 휴업사업체의 경우
 - 조사당월 전기간 휴업인 경우 예측생산량은 「 0 」으로 기입

- 조사당월중 일부기간만 휴업인 경우 예측생산량은 조사되어야 하고 증감사유란에 휴업기간 명기
- 휴업중이던 사업체가 조사당월에 들어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예측 생산량 조사와 함께 증감사유란에 생산재개일자 명기

* 기입예

| 품 목 명 | 조사당월예측생산량 | | | | | | | 당월예측 증감사유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인 형 | | | | | | | 0 | '88.4월말이후 계속 휴업중 당월 생산계획없음(사업체응답) |

○ 일부품목 생산중단의 경우

- 조사당월에 기존 조사품목의 생산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 예측생산량이 없으면「0」으로 기입하고, 증감사유란에 반드시 사유를 명기(업체재고조절로 계획없음, 설비보수로 생산계획 없음, 다른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계획 없음, 주문이 거의 없어 생산계획 없음 등)

* 기입 예

| 품 목 명 | 조사당월예측생산량 | | | | | | | 당월예측 증감사유 |
|-------|-----------|----|---|---|---|---|---|--|
|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철제캐비닛 | | | | | | | 4 | (철제의자) : 재고 과잉으로 조사당월 생산계획 없음(사 업체 응답) |
| 철제의자 | | | | | | | 0 | |
| 철제책상 | | | | | | | 6 | |

4. 예측조사를 위한 질문요령 (예)

- 사업체에서 예측생산량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다음 질문요령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질문방법 및 추정방법을 개발사용하되, 가급적 빠른 기간내 사업체에서의 자료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기업체 (본사) 단위
 - 현재 극소수의 대기업체에서 예측조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는 업체계획의 비밀유지, 응답의 번잡성 등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취지, 비밀보호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협력을 요청하여 해결토록 해야 함.
- 개별사업체 단위

— (사례 1) 주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곤란

(질문요령)

- 전월에 비해 생산증가계획인가? 감소계획인가? 그 증가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 조사일 현재까지의 주문상황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증가인가? 감소인가? 그 증가폭은?
- 금월 작업예정일수는 전월에 비해 몇일이나 증감되는가?
- 조사일 현재까지의 생산수준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 생산설비의 가동실태는 전월과 비교해서 어떤가?
- 전월보다 주문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가? 나빠질 것이라면 어느 정도인가?

- 작년 같은 달의 생산수준은 그 전월과 비교해서 어떠하였는가?

(사례업체)

- 대두유, 유산균음료, 배합사료 등 생산 일부업체
- 가성소다, 안료 등 산업용화학물 생산 일부업체
- 일반 인쇄물 등 일부 출판업체
- 목재 및 목재품 생산 일부업체

— (사례 2) 계절적 품목으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전월에 비해 생산증가계획인가? 감소계획인가? 그 증가폭은?
- 작년 같은 달은 그 전월에 비교하여 생산수준이 어떠하였는가?
- 조사일 현재까지의 생산은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 금월의 작업예정일수는 전월작업일수와 비교할 때 얼마나 증감될 것인가?

(사례업체)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산소 등 생산 일부업체

— (사례 3) 시설보수중(계획중)이므로 예측 곤란

(질문요령)

- 시설보수가 언제부터 진행(계획)중인가? 또 언제 끝날 예정인가? 끝나는 대로 정상가동되는가?
- 보수중에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생산이 이루어지는가? 정상생산이 아닌 경우, 정상조업에 비해 어

느정도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가?

(사례업체)

- 철강 및 정유업체

— (사례 4) 설비변경(계획)으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기존 조사품목 생산이 설비변경으로 전면 중단되는가? 아니면 일부 축소되는가? 일부 축소된다면 기존설비의 몇 %정도가 변경(대체)되는가? 언제부터 변경되며, 언제 완료되는가?
- 설비변경에 따른 기존품목생산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사례업체)

- 플라스틱 관 및 봉 생산 일부업체

— (사례 5) 원재료수급불확실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조사일 현재까지의 원재료 확보상태는 전월에 비해 어떠한가? 금월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앞으로의 원재료 확보전망이 어떠한가?
- 현재 보유중인 원재료로는 어느정도 생산가능한가?
- 원재료 공급처의 사정은 어떤가?
- 현재 상태로 보아 어느정도 생산이 감소될 것 같은가?

(사례업체)

- 철강, 화학 생산 일부업체

— (사례 6) 금액위주로 계획하므로 생산량으로 파악 곤란

(질문요령)

- 전월에 비해 금액상으로 몇% 증가 또는 감소계획인가?
- 금액으로 볼 때 생산품목별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매월 평균 구성비가 크게 달라지는 품목이 있는가?
- 품목별 평균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가?
- 금액증감율을 품목별 구성비에 따라 배분하여 전월물량수준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사례업체)

- 장농 장식장, 식탁, 침대, 싱크대 등 가구류 생산 일부업체

— (사례 7) 노사분규 및 재해 등으로 예측곤란

(질문요령)

- 노사분규중 전면파업인가 혹은 일부 파업인가?
- 정상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는 하지 않는 태업인가?
- 현재 노사타협이 진행중인가?
- 타협완료후 정상가동은 언제인가?
- 앞으로의 타결전망은 어떠한가?
- 언제 타결될 것인가?
- 현재 재해복구가 되는가?
- 타회사 노사분규로 인한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사례업체)

- 운수, 기계, 전자, 철강 등 업체

5. 예측생산량 추정방법(예)

- 일부 예측생산량 조사가 곤란한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방법들을 참고하여 추정방법을 개발적용하도록 하고, 막연한 수치 기입이나 빈칸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정방법예시

— (방법 1) 「 추정조업일수 × 1일 평균생산량(액) = 월중예측생산량(액) 」

- 추정조업일수 계산시는 공휴일, 사업체 자체계획 등을 참고하여 전월실제조업일수에서 적절히 가감하여야 함.
- 1일평균생산량(액) 추정은 전월생산량을 전월실제조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상황, 종업원수 사정 등을 적의 감안해야 함.

— (방법 2) 「 조사시점 현재까지의 실적량 × $\frac{\text{당월추정조업일수}}{\text{조사시점까지의 조업일수}}$ = 월중예측생산량 」

— (방법 3) 「 $\frac{\text{조사시점까지의 주문량}}{\text{전월같은 기간동안의 주문량}}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월중예측생산량 」

- 이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의 주문사정을 적절히 판단하여 가감」

— (방법 4) 「 조사당월추정 (계획) 조업일수

$$\frac{\text{조사당월추정 (계획) 조업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월중예측생산량」

- 이 방법은 (방법 1)과 같으나 변형된 것임.

— (방법 5) 「 조사시점까지의 원재료소비량(액)

$$\frac{\text{조사시점까지의 원재료소비량(액)}}{\text{전월같은기간동안의 원재료소비량(액)}}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월중예측생산량」

- 원재료 수급사항이 불안정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사당월의 잔여기간동안의 원재료 수급전망을 감안하여야 함.

— (방법 6) 「 조사시점까지의 1일평균원재료재고량(액)

$$\frac{\text{조사시점까지의 1일평균원재료재고량(액)}}{\text{전월같은기간까지의 1일평균원재료재고량(액)}} \times \text{전월실적생산량} = \text{월중예측생산량}」$$

— (방법 7) 「 금월생산계획액

$$\frac{\text{금월생산계획액}}{\text{전월생산액}} \times \text{전월생산량} = \text{월중예측생산량}」$$

- 물량예측은 곤란하나, 금액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품목별생산구성비가 매월 큰 변화가 없을 때 적용

— (방법 8) 「 금월생산계획액

$$\frac{\text{금월생산계획액}}{\text{전월생산액}} \times \text{품목별전월생산량} \times (1 \pm \text{전월대비구성비 증감율}) = \text{월중예측생산량}」$$

- (방법 7)과 유사하나, 조사당월에 품목별 생산구성비가 전월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

— (방법 9) 「 $\frac{\text{보수로 인한 기간제외 조업예정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생산량}$
 =월중예측생산량)

- 설비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전혀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

— (방법 10) 「 $\left\{ \frac{\text{조사당월정상조업예정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생산량} \right\} +$
 $\left\{ \frac{\text{보수로 인한 비정상조업일수}}{\text{전월조업일수}} \times \text{전월생산량} \times (1 - \text{비정상}$
 조업에 따른 생산감소율) $\right\} = \text{월중예측생산량}$

- 설비보수로 인해 일정기간은 비정상조업(생산축소), 나머지 기간은 정상조업을 한 경우에 적용

V.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요령

V.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관리요령

1. 관리 개요

가. 관리목적

- 신규 및 휴·폐업등의 변동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예측조사 사업체의 누락, 중복을 방지
- 사업체 변동에 따른 조사표 작성의 누락, 중복을 방지

나. 대상사업체

- 별도 선정된 사업체 (예측조사 사업체명부 참조)

다. 대상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변동사항을 대상

라. 관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사무소
- 지방사무소 → 중앙 (산업통계과)
- 중앙 (산업통계과) → 지방사무소

마. 관리단위

- 기업체 (본사)
- 본사가 없거나 생산계획을 공장 자체에서 수립하는 사업체는 개별 사업체 (단독사업체) 공장

바. 관리사항

- 조사지정 사업체의 변동사항
 - 휴업, 폐업, 진출, 합병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변경

- 신규 및 전입, 전출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체
 - 전입, 전출 사업체
- 조사상 변동사항
 - 조사관할 지방사무소 변경에 따른 변동
 - 조사중지 지시에 따른 변동

사. 관리방법

- 지방사무소 : CRT입력 및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및 총괄표 작성
 - 중앙(산업통계과) :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및 총괄표에 의한 후속조치
- ※ 지방사무소간 전산망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및 총괄표는 제출하지 않음

아. 보고서식

-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자. 보고서제출

- 매월 10일까지 중앙(산업통계과)에 도착

2.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는 변동사항의 내용만 기입
 - 연결번호, 사업체고유번호와 사업체명은 반드시 기재하고 변동되는

내용은 해당란에만 기입

- 모든 변동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요란을 적극 활용
- 기업체(본사)의 조사표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산하사업체(공장)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기입

※ 적요란 기입예 :

- 사업체명칭 변경 : 경인산업(주) → 서울산업개발(주)로 변경
- 진출(입)사업체 : 공장시설물은 변동이 없고 조사표 작성부서(본사)만 진출(입)
- 산하사업체 변동 : 공장신설(인수등) 또는 합병, 폐업

2) 예측조사 사업체에 변동하는 내용이 없어도 「예측조사 사업체관리 현황보고서」 및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는 매월 작성 제출함.

3) 기업체(본사)의 산하 사업체(공장)변동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체(본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매월마다 예측조사 사업체 명부와 대조하여 산하사업체(공장)의 신규, 누락, 폐업, 주소이전 등의 변동이 있으면 「예측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측조사 사업체명부가 수정될 수 있도록 중앙(산업통계과)에 보고함.

4)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의 변동

-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는 매월 광공업동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체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어 변동사항을 기입하여야 함.

나. 관리현황 보고서 기입요령

1) 연결번호

- 기업체(본사) 단위로 묶은 번호로 기업체내 산하사업체(공장)는 모두 동일한 연결번호를 사용
- 중앙의 변경지시가 없는한 바꿀 수 없음

2) 사업체고유번호

- 예측사업체 명부에 등재된 사업체고유번호(7 단위)를 기입하되 중앙(산업통계과)의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로 조사지정된 예측사업체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모집단 고유번호를 기입

3) 사업체명

가) 기업체(본사)명

- 기업체(본사)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 기업체(본사)에 소속된 공장명칭은 해당기업체(본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나)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 공장명

-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 공장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

※ 사업체명부와 실제 기업체(본사)명, 소속된 공장명칭,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공장명이 상이할 때에는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 예측조사표에는 사업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사업체명 기재를 생

략하였음.

4) 작성구분

- 당해공장(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본사(사무실등) 또는 주공장에서 조사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는 다음 해당 부호를 기입

※ 기입예 :

- 당해공장(사업체),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에서 조사표가 작성 제출되면 1
- 주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과 본사(본사와 공장이 동일 장소에 있고, 또 다른 어느곳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서 조사표가 작성 제출되면 2
- 수개의 공장이 있으나 공장에서 완전히 분리된 본사(사무소 등)에서 조사표가 작성 제출되면 3

5) 사업체 구분

- 사업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를 식별하는 부호로 4가지로 구분함.
 - ① 본사 : 기업체의 본사가 공장과 완전히 다른 장소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 ② 본사+공장 : 기업체의 본사와 공장이 동일 장소에 설립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 한개 이상의 공장이 또 있는 경우
주의 : 다른 장소에 공장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단독사업체에 해당된다. (구분부호 : 4)
 - ③ 공장 : 당해공장의 본사가 다른 장소에 설립되어 있고 공장만이

존재하는 경우

- ④ 단독사업체 : 본사와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직 당해업체(공장) 하나만 있는 경우

6) 산업분류

- 지정품목들의 연간생산(출하액)을 비교할 때 품목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 조사표 내용에 포함되는 산하사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일지라도 지정품목들의 연간생산(출하액)을 비교할 때 품목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산업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새로운 지정품목(지수품목 258개,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품목이 주종 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목의 산업세세분류(5단위)를 기입

7) 소재지 및 행정구역 분류부호

- 소재지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

※ 기입예 :

- 광공업 동태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기입요령과 동일
- 행정구역 분류부호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송부한 행정구역 분류부호 전산제표지를 활용하여 지정된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기입. 단,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 증설된 행정구역의 분류부호는 새로운 「행정구역분류부호」 전산제표지가 지방사무소에 배부되지 않는 한 종전 행정구역 분류부호를 계속 사용함.

※ 사업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조사표에는 소재지 기재를 생략하였음

8) 전화번호

- 조사표를 실제로 작성 제출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입

9) 종업원수

- 기업체(본사)에서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 본사의 종업원수와 산하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를 합제한 총 종업원수를 기입
 - 산하사업체(공장)는 당해사업체(공장)의 종업원수를 기입
 - 순수본사의 종업원수는 총 종업원수 바로위에 ()로 표시하여 기입
- 단독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 단독사업체의 종업원 수를 기입

※ 종업원수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공업동태조사지침서」 30~32 페이지 「월말 종업원수」 파악요령을 참고

10) 예측조사 지정품목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예측조사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지수품목 258개 세분품목 2개)은 광공업동태조사의 지수품목과 동일한 부호를 기재
 - 단, 2개의 품목(5230610 화장수, 8231920 플라스틱사출형금형)은 세분품목부호를 기재
-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예측조사 지정품목 이외의 다른 예측 지정품목을 신규로 생산하거나 조사했던 품목이 생산을 완전중단(폐업)하는 경우는 품목명과 품목부호를 기입하고 적요란에 유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동일 사업체에서 여러개의 예측조사 지정품목이 생산되는 경우 품목변동이 있을 때에는 난을 달리 기입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

※ 기입예 :

| | |
|----------------------|--|
| 예측조사지정 품목 및 품목 부호 | |
| 방 모 사 | |
| 2110400 | |
| 소 모 사 | |
| 2110500 | |

11) 유고내용

가) 전입, 전출(1,3)

- 조사표 작성을 관할하는 지방 통계사무소의 관할을 달리하여 기업체(본사)나 개별사업체(단독)의 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지방 통계사무소에선 전입이라 하고 이전하기 전 장소의 관할 지방 통계사무소는 전출이라 함.

※ 주 의

- 예측조사 전·출입 개념은 광공업동태조사의 전·출입개념과 완전히 다르므로 예측조사 사업체관리에 혼동이 없도록 함.
- 광공업동태조사는 시·도별 지수를 동시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구분

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나, 예측조사는 생산활동의 전국추이만을 전망하기 때문에 두 개념상에 차이가 있음.

- 기업체(본사)의 진출이 있는 경우는 기업체(본사)에 소속된 산하사업체명부를 1부 복사하여 전입지 사무소에 송부함.

나) 휴업(2)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 채로 1개월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 비예측품목은 계속 생산하더라도 예측조사 지정품목을 3개월이상 전혀 생산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계획이 불투명한 업체
- ※ 계속 조사여부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에 따름.

다) 신규(4)

- 중앙(산업통계과)에서 새로 조사 지시된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사업체)
- 지방사무소에서 색출한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종업원 100인이상)가 예측지수 품목(지수품목 258, 세분품목 2개)을 생산하면 예측조사의 신규사업체로 조사하고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를 작성
- 계속 조사여부는 중앙(산업통계과)의 지시에 따름.

라) 폐업(5)

- 사업체의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가 지금까지의 생산활동을 영구적으로 중지한 상태를 말함.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 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

여 생산설비 일체를 해체한 경우

- ※ 폐업사업체가 발생하면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에 「조사중지요망」을 신청하며, 중앙의 조치를 기다림.

마) 합병, 합산(6)

- 조사대상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가 타기업체(본사) 또는 타개별사업체(단독)를 흡수하여 경영조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로 결합되는 경우

※ 기업체(본사) 및 개별사업체(단독)가 감소됨

- 조사대상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가 타기업체(본사) 또는 타개별사업체(단독)를 흡수하였으나 경영 및 장부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명칭변경만 발생)

12) 적 요

- 예측조사 대상기업체(본사) 또는 개별사업체에 유고내용이 발생하면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예:

— 전·출입경우: 동부사무소에서 본사만 전입

경기사무소로 진출

— 폐업: 중앙의 지시로 폐업

— 신규: 중앙의 지시로 신규

— 명칭변경: 소나무기업(주) → 우현공사(주)로 변경

— 기타: 사업체 관리에서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

3.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보고서의 유고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기업체(본사), 개별사업체(단독)의 내용을 집계하여 기재함.
- (2) 관리현황 보고서에 내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총괄표는 매월 작성 제출함.

나. 총괄표 기입요령

(1) 전월말 사업체 및 조사표

- 전월말 현재 제출된 예측조사표 수와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수를 기입

(2) 증가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증가된 예측조사 대상사업체 수와 예측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 신규
 - 중앙에서 새로이 조사 지시된 사업체 수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수를 기입
 - 지방 통계사무소가 색출한 신규사업체(종업원 100인 이상)의 수와 그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수를 기입
- 전입, 전출
 -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단위 사업체가 지방 통계사무소간에 이동되어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에 증감을 가져오는 경우
 - 공장단위 사업체는 이동이 없는데 조사표만을 작성해주는 본사 등이 지방 통계사무소간에 이동되어 조사표 매수에 증감을 가

저오는 경우

(3) 감소한 사업체 및 조사표

- 금월에 감소된 예측조사 대상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를 각 항목별로 기입
- 조사중지
 - 중앙에서 조사중지 지시한 사업체수 및 조사표수를 기입
- 합병, 흡산
 - 합병, 흡산으로 인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의 감소와 조사표 작성 매수에 변동이 있을시에 기입
- 적요
 - 사업체수와 조사표 매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
 -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입

() 월분 예측조사 사업체 관리현황 총괄표

() 사무소

| 구분 조사종류 | 진입 일 | 증 | | | 감 | | | 소 출 | 금 월 | 말 | 적 | 요 |
|------------|---------|---|---|---|---|----|---|--------|--------|---|---|---|
| | | 신 | 규 | 전 | 입 | 조사 | 합 | | | | | |
| 기업체(본사)사업체 | | | | | | | | | | | | |
| 소속된사업체 | | | | | | | | | | | | |
| 개별(단독)사업체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조사표수 | | | | | | | | | | | | |
| 기업체(본사)조사표 | | | | | | | | | | | | |
| 개별(단독)조사표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진입(전출) - 여기에서 진입(전출)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단위 사업체가 사무소간 이동되어 사업체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 실제공장단위 사업체는 이동이 없는데 조사표를 작성해 주는 본사등이 사무소간 이동되어 조사표작성 권한권 변동으로 인해 조사표수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Ⅵ. 제조업 생산 예측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Ⅵ. 제조업 생산예측조사 지정품목 분류표

○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311-312 식료품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1110200 | 소 시 지 | M/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1110210 | 축 육 소 시 지 | " |] 1110200 " 소시지로 조사 " |
| 1110220 | 어 육 소 시 지 | " | |
| 1120200 | 분 유 | " | " |
| 1120300 | 아 이 스 크 립 | Kℓ | " |
| 1120400 | 시 유 | " | " |
| 1120500 | 유 산 균 음 료 | " | " |
| 1140400 | 어 목 | Kg | " |
| 1150100 | 대 두 유 | Kℓ | " |
| 1160100 | 밀 가 루 | M/T | " |
| 1170100 | 빵 및 케 익 | " | " |
| 1170200 | 건과자및스넥류 | " | " |
| 1170300 | 설 탕 과 자 | " | " |
| 1170600 | 인 스텐 트 면 | " | " |
| 1180100 | 정 당 | " | " |
| 1210200 | 글루타민산소다 | " | " |
| 1210400 | 혼 합 조 미 료 | " | " |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1220200 | 인 삼 차 | Kg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1220600 | 전 분 | M/T | " |
| 1220800 | 과 당 | " | " |
| 1221000 | 커 피 | Kg | " |
| 1230100 | 배 합 사 료 | M/T | " |

• 313 음료품 제조업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1310200 | 소 주 | Kℓ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1310300 | 위 스 키 | " | " |
| 1330100 | 맥 주 | " | " |
| 1340100 | 사 이 다 | " | " |
| 1340200 | 콜 라 | " | " |
| 1340300 | 과 즈 음 료 | " | " |
| 1340500 | 합성 탄산음료 | " | " |

• 314 담배 제조업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1400200 | 담 배 | 백만개비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 321 섬유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2110200 | 면 사 | M/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2110210 | 순 면 사 | " |] 2110200 " 면사로 조사 " |
| 2110220 | 혼 방 면 사 | " | |
| 2110400 | 방 모 사 | " | " |
| 2110410 | 순 방 모 사 | " |] 2110400 " 방모사로 조사 " |
| 2110420 | 혼 방 방 모 사 | " | |
| 2110600 | 합 성 섬유 사 | " | " |
| 2110610 | 순 합 성 섬유 사 | " |] 2110600 " 합성섬유사로 조사 " |
| 2110620 | 혼 방 합 성 섬유 사 | " | |
| 2110800 | 연 사 | " | " |
| 2110810 | 재 봉 사 | " |] 2110800 " 연사로 조사 " |
| 2110820 | 편 물 사 | " | |
| 2120100 | 면 직 물 | 천m ² | " |
| 2120110 | 순 면 직 물 | " |] 2120100 " 면직물로 조사 " |
| 2120120 | 혼 방 면 직 물 | " | |
| 2120200 | 소 모 직 물 | " | " |
| 2120210 | 순 소 모 직 물 | " |] 2120200 " 소모직물로 조사 " |
| 2120220 | 혼 방 소 모 직 물 | " | |
| 2120400 | 순 본 견 직 물 | m ² | " |
| 2120500 | 합 성 섬유 직 물 | 천m ² | " |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2120510 | 순합성섬유직물 | 천m ²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2120520 | 합성섬유직물 | " | 2120500 합성섬유직물로 조사 |
| 2120530 | 혼합섬유직물 | " | |
| 2150200 | 양말 | 천켄레 | |
| 2150300 | 메리야스내의 | 천 매 | " |
| 2150400 | 메리야스외의 | " | " |
| 2170100 | 연승밧섬유로프 | M/T | " |
| 2170110 | 식물성섬유로프 | " | 2170100 연승밧섬유로프로조사 |
| 2170120 | 연승인조로프 | " | |

• 322 의복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2220100 | 남자용기성양복 | 벌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2220200 | 기성셔츠류 | 천 개 | " |
| 2220700 | 여자용기성외의 | 백만원 | " |
| 2220900 | 여자용화운데이션및난제리류 | " | " |
| 2221000 | 가족및모피의복 | 백만원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2221200 | 가족및모피장갑 | " | " |

•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2310100 | 쇠 가 죽 | 천m ²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2330100 | 가 방 | 백만원 | " |

• 324. 신발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2400100 | 단 화 | 컬 레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2400200 | 가죽장화·등산화 및 작업화 | " | " |

○ 33.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 331. 나무 및 나무와 폴크제품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3110100 | 각 재 | m ³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3110200 | 판 재 | " | " |
| 3110400 | 일 반 합 판 | " | " |

•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3200300 | 장 식 장 | 개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3200400 | 장 농 | " | " |
| 3200600 | 식 탁 | " | " |
| 3200700 | 침 대 | " | " |
| 3200900 | 싱 크 대 | " | " |
| 3201000 | 서랍장 및 음향기기대 | " | " |

○ 34. 종이 및 종이제조업·인쇄 및 출판업

·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4110100 | 필 프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4110200 | 신문 용 지 | // | // |
| 4110300 | 백 상 지 | // | // |
| 4110400 | 중 질 지 | // | // |
| 4110500 | 아 트 지 | // | // |
| 4110600 | 크라프트지 | // | // |
| 4110900 | 판지및판지상자 | // | // |
| 4111000 | 골 판 지원 지 | // | // |
| 4120300 | 위생용식품용기 | K g | // |
| 4190200 | 위생용종이제품 | M / T | // |

·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사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4210100 | 일 간 신 문 | 천 부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4210200 | 정 기 간 행 물 | 천 권 | // |
| 4210300 | 서 적 | 백만원 | // |
| 4210600 | 앨 범 | 천 권 | // |

○ 35. 화합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110100 | 에틸렌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110700 | 염화비닐모너머 | " | " |
| 5111700 | 텔레프탈산 | " | " |
| 5112400 | 폴리에틸렌 | " | " |
| 5112410 | 저밀도 폴리에틸렌 | " | 5112400 폴리에틸렌으로 조사 " |
| 5112420 | 고밀도 폴리에틸렌 | " | |
| 5112500 | 폴리프로필렌 | " | " |
| 5112600 | 폴리스티렌 | " | " |
| 5112800 | P.V.C. 수지 | " | " |
| 5113400 | S . B . R. | " | " |
| 5120100 | 카바이드 | " | " |
| 5120600 | 가성소다 | " | " |
| 5121200 | 산 소 | 천 m ³ | " |
| 5130200 | 안료 | M / T | " |
| 5130210 | 무기안료 | " | 5130200 안료로 조사 " |
| 5130220 | 유기안료 | " | |
| 5130230 | 조제안료 | " | |
| 5140200 | 폴리아미드섬유 | " | " |
| 5140300 | 폴리에스터섬유 | " | " |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140400 | 아크릴릭섬유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150200 | 복 합 비 료 | // | // |
| 5160100 | 농 약 | // | // |
| 5160110 | 살 총 제 | // | 5160100 농약으로 조사 |
| 5160120 | 살 균 제 | // | |
| 5160130 | 제 초 제 | // | |

•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210300 | 페 인 트 | Kℓ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210310 | 유 성 페 인 트 | // | 5210300 페인트로 조사 |
| 5210320 | 수 성 페 인 트 | // | |
| 5220100 | 의 약 품 | 백만원 | // |
| 5230300 | 합 성 세 제 | M / T | // |
| 5230310 | 세탁용합성세제 | // | 5230300 합성세제로 조사 |
| 5230320 | 주방용합성세제 | // | |
| **5230610 | 화 장 수 | 백만원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의 화장품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화장수」만 조사 |
| 5290500 | P.V.C. 안정제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353. 석유정제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300300 | 나 프 타 | Kℓ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300600 | 경 유 | // | // |
| 5300800 | 방 카 C 유 | // | // |
| 5300900 | L . P . G. | // | // |
| 5300910 | 프 로 판 가 스 | // | 5300900 L.P.G. 로 조사 // |
| 5300920 | 부 탄 가 스 | // | |

•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400100 | 연 탄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400200 | 윤 활 유 | Kℓ | // |

• 355. 고무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510100 | 자동차용타이어 | 천 본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590200 | 운 동 화 | 백만원 | // |
| 5590500 | 고 무 벨 트 | 천 PLY | // |

• 356.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600100 | 플라 스틱 필름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600200 | 플라 스틱 레저 | // | // |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5600300 | 플라스틱장판및 벽지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5600400 | 플라스틱관및봉 | " | " |
| 5600800 | 전기전자기기용 케 이 스 | " | " |
| 5601100 | 플 라 스 틱 포 장 용 기 | " | " |
| 5601400 | 라 미 네 이 팅 | Km | " |

○ 3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61 . 도기 · 자기제조업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6100100 | 가정용도자식기 | 천 개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6100200 | 위생용도기제품 | 개 | " |

• 362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6200200 | 판 유 리 | C / S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6200500 | 브라운관용유리 | 천 개 | " |
| 6200510 | 흑백브라운관용 유 리 | " | 6200500 브라운관용 유리 |
| 6200520 | 칼라브라운관용 유 리 | " | |
| 6200600 | 식품및음료용 유 리 병 | M / T | " |
| 6200700 | 약 및 화 장 품 유 리 병 | " | " |
| 6200800 | 유 리 식 기 및 유 리 주방용 품 | " | " |

•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6910200 | 타 일 | 천 m^2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6920100 | 시 멘 트 | 천M/T | " |
| 6920200 | 시멘트크링커 | " | " |
| 6930300 | 레 미 콘 | 천 m^3 | " |
| 6930600 | 흙 관 분 | " | " |
| 6930700 | 콘크리트전주 | " | " |
| 6930800 | 콘크리트파일 | " | " |
| 6940100 | 내 화 용 벽 돌 | M/T | " |
| 6990500 | 활 석 분 | " | " |

○ 37. 제 1 차금속산업

· 371. 철강산업

| 지정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7110100 | 선 철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7110110 | 제 강 용 선 철 | " |] 7110100 " |
| 7110120 | 주 물 용 선 철 | " |] 선철로 조사 " |
| 7110300 | 강 괴 | " | " " |
| [7110310 | 압 연 용 강 괴 | " |] 7110300 " |
| 7110320 | 단 조 용 강 괴 | " |] 강괴로 조사 " |
| 7110500 | 슬 랩 | " | " " |
| [7110510 | 보 통 강 슬 랩 | " |] 7110500 " |
| 7110520 | 특 수 강 슬 랩 | " |] 슬랩으로 조사 " |
| 7120200 | 철 근 | " | " " |
| [7120210 | 이 형 철 근 | " |] 7120200 " |
| 7120220 | 원 형 철 근 | " |] 철근으로 조사 " |
| 7120300 | 형 강 | " | " " |
| [7120310 | 보 통 강 형 강 | " |] 7120300 " |
| 7120320 | 특 수 강 형 강 | " |] 형강으로 조사 " |
| 7120400 | 중 후 판 | " | " " |
| [7120410 | 후 판 | " |] 7120400 " |
| 7120420 | 중 판 | " |] 중후판으로 조사 " |
| 7120600 | 열 연 대 강 | " | " " |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7120610 | 열연광폭대강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7120600 열연대강으로 조사 " |
| 7120620 | 열연협폭대강 | " | |
| 7120800 | 냉 연 박 판 | " | " |
| 7121100 | 강 관 | " | " |
| 7121110 | 무 계 목 강 관 | " | 7121100 냉연대강으로 조사 " |
| 7121120 | 전기용접강관 | " | |
| 7121130 | 아크용접강관 | " | |

• 372 . 비철 금속산업

| 지정 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7210100 | 전 기 등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7230100 | 동봉및동합금봉 | " | " |
| 7230200 | 나 등 선 | " | " |
| 7230300 | 동 판 및 띠 | " | " |
| 7230400 | 동 관및중공봉 | " | " |
| 7230600 | 알 루 미 늬 음 판 | " | " |
| 7230700 | 알루미늄샷시바 | " | " |

○ 3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120100 | 철 제 캐 비 넷 | 개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120200 | 철 제 책 상 | 〃 | 〃 |
| 8120300 | 철 제 의 자 | 〃 | 〃 |
| 8130300 | 산업용보일러 | T / H | 〃 |
| 8130500 | 육상금속구조물 | M / T | 〃 |
| 8130600 | 해상금속구조물 | 〃 | 〃 |
| 8130900 | 콘 테 이 너 용 기 | 대 | 〃 |
| 8140200 | 스 텐 레 스 제 품 가 정 용 | M / T | 〃 |
| 8140300 | 병 마 개 | 천 개 | 〃 |
| 8190100 | 금 속 캔 (식관및잡관) | 〃 | 〃 |
| 8190110 | 통 조 립 용 관 | 〃 |] 8190100 금속캔 (식관및잡관)으로조사 〃 |
| 8190120 | 기 타 잡 관 | 〃 | |
| 8190200 | 드 럽 관 | 개 | 〃 |
| 8190400 | 가정용보일러 | 대 | 〃 |
| 8190800 | 나 사 제 품 | M / T | 〃 |
| 8191100 | 와 이 어 로 프 | 〃 | 〃 |
| 8191200 | 쇠 못 | 〃 | 〃 |
| 8191300 | 밸 브 | 개 | 〃 |
| 8191310 | 일 반 용 밸 브 | 〃 |] 8191300 밸브로 조사 〃 |
| 8191320 | 특 수 용 밸 브 | 〃 | |

| 지정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191400 | 금속관이음쇠 | M / T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191600 | 용접봉 | // | // |

•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 지정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210100 | 내연기관 | HP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220200 | 경운기 | // | // |
| 8220300 | 농업용트랙터 | // | // |
| 8220400 | 이앙기 | // | // |
| 8220500 | 콤바인 | // | // |
| 8230200 | 범용선반대 | // | // |
| 8230300 | 밀링기 | // | // |
| 8230310 | 범용밀링기 | // |] 8230300 밀링기로 조사 // |
| 8230320 | 수치제어밀링기 | // | |
| 8231000 | 머시닝센터 | // | // |
| 8231100 | 프레스기 | M / T | // |
| **8231920 | 프라스틱사출용금형 | 대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의 금형전체를 조사하는것이 아니고 그중「프라스틱사출용금형」만을 조사 |
| 8240500 | 로더 | //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240600 | 굴삭기 | // | // |
| 8240800 | 불도저 | // | // |

| 지정 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241100 | 직 기 | 대 | 광공업동태 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241200 | 편 직 기 | // | " |
| 8241500 | 바 디 | 개 | " |
| 8241900 | 포 장 및 충 진 기 | 대 | " |
| 8250100 | 컴 퓨 터 및 주 변 기 | 백만원 | " |
| 8250110 | C . P . U . | // | " |
| 8250120 | DISK DRIVER | // | " |
| 8250130 | 프 린 터 (PRINTER) | // | 8250100 |
| 8250140 | CRT MONITOR | // | 컴퓨터및주변기기로조사 " |
| 8250150 | 전 송 장 치 | // | " |
| 8250160 | 키보드 (KEY BOARD)및기타 | // | " |
| 8250300 | 전 자 계 산 기 | 대 | " |
| 8250310 | 휴 대 용 전 자 계 산 기 | // | 8250300 |
| 8250320 | 탁 상 용 전 자 계 산 기 | // | 전자계산기로 조사 " |
| 8250600 | 타 자 기 | // | " |
| 8260100 | 자 동 판 매 기 | // | " |
| 8260200 | 산 업 및 상 업 용 냉 장 고 | // | " |
| 8260300 | 산 업 용 냉 동 기 | // | " |
| 8260400 | 룸 에 어 콘 | // | " |
| 8260600 | 페 케 이 지 형 에 어 콘 | R / T | " |
| 8260900 | 가 스 레 인 지 | 대 | " |

| 지정품목부호 | 지정품목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290100 | 산업용 펌프 | HP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290700 | 물품취급용 크레인 | M / T | " |
| 8290900 | 엘리베이터 | 대 | " |
| 8291100 | 지게차 | " | " |
| 8291200 | 공업용재봉기 | " | " |
| 8291400 | 감속기 | " | " |
| 8291500 | 베어링 | M / T | " |
| 8291600 | 열처리로 및 전기로 | 대 | " |
| 8291700 | 소화기 | " | " |
| 8291800 | 소스프링클러 | 개 | " |
| 8291900 | 로울러 | " | " |

•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품목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310100 | 전동기 | HP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310110 | 직류전동기 | " |] 8310100 전동기로 조사 " |
| 8310120 | 교류전동기 | " | |
| 8310300 | 변압기 | KVA | " |
| 8310400 | 배전반 | 백만원 | " |
| 8310500 | 회로차단기 | 대 | " |
| 8310510 | 전력회로차단기 | " |] 8310500 회로차단기로 조사 " |
| 8310520 | 누전차단기 | " | |

| 지정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320100 | 흑백TV수상기 | 대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320200 | 칼라TV수상기 | // | // |
| 8320210 | 로타리형수상기 | // | 8320200 |
| 8320220 | 터치및리모콘형수상기 | // | 칼라TV수상기로 조사 |
| 8320400 | 영상녹화재생기 | // | // |
| 8320410 | 영상녹화재생기 | // | 8320400 |
| 8320420 | 영상재생기 | // | 영상녹화재생기로 조사 |
| 8320900 | 녹음및재생기 | // | // |
| 8320910 | 일반녹음기 | // | 8320900 |
| 8320920 | 녹음재생기 | // | 녹음및재생기로 조사 |
| 8321100 | 소형전축 | // | // |
| 8322100 | 데크메카니즘 | 천 개 | // |
| 8322110 | 녹음기용D.M. | // | 8322100 |
| 8322120 | 녹화기용D.M. | // | 데크메카니즘으로 조사 |
| 8322130 | 컴퓨터용및기타D.M. | // | // |
| 8322200 | 전화기 | 대 | // |
| 8322210 | 전자식전화기 | // | 8322200 |
| 8322220 | 다이알식전화기 | // | 전화기로 조사 |
| 8322400 | 키 폰 | // | // |
| 8322500 | 전화교환기 | 회 선 | // |
| 8322510 | 자동식전화교환기 | // | 8322500 |
| 8322520 | 전자식및기타전화교환기 | // | 전화교환기로 조사 |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323700 | 녹 음 테 이 프 | KM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323800 | 비데오테이프 | 천 개 | " |
| 8330100 | 가정용냉장고 | 대 | " |
| 8330110 | 소형냉장고 | " |] 8330100 가정용냉장고로 조사 |
| 8330120 | 중형냉장고 | " | |
| 8330130 | 대형냉장고 | " | |
| 8330200 | 가정용선풍기 | " | " |
| 8330300 | 가 정 용 전 기 세 탁 기 | " | " |
| 8330600 | 전 자 레 인 지 | " | " |
| 8340200 | 칼 라 TV 용 브 라 운 관 | 개 | " |
| 8340500 | 트 랜 지 스 터 | 천 개 | " |
| 8340510 | S 트 랜 지 스 터 | " |] 8340500 트랜지스터로 조사 |
| 8340520 | P 트 랜 지 스 터 | " | |
| 8340700 | 집 적 회 로 | " | " |
| 8341100 | 고 정 축 전 가 | " | " |
| 8341500 | 변 성 기 | " | " |
| 8341510 | 중 간 및 고 주 파 변 성 기 | " |] 8341500 변성기로 조사 |
| 8341520 | 전 원 변 성 기 | " | |
| 8341530 | 입 출 력 변 성 기 | " | |
| 8341540 | 고 압 변 성 기 | " | |
| 8341700 | 인 쇄 회 로 기 관 | 개 | " |

| 지정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341710 | 페놀인쇄회로판 | 개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8341700 인쇄회로기판으로 조사 " |
| 8341720 | 에폭시인쇄회로판 | " | |
| 8390100 | 통신선및케이블 | M / T | " |
| 8390200 | 전력선및케이블 | " | " |

· 384. 운수장비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 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410100 | 선박용내연기관 | HP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410200 | 철강유조선 | G / T | " |
| 8410300 | 일반화물선 | " | " |
| 8410700 | 합성수지선 | " | " |
| 8420200 | 전동차 | 량 | " |
| 8430100 | 소형승용차 | 대 | " |
| 8430200 | 중형승용차 | " | " |
| 8430300 | 대형승용차 | " | " |
| 8430500 | 소형버스 | " | " |
| 8430600 | 일반버스 | " | " |
| 8430800 | 소형트럭 | " | " |
| 8430900 | 중형트럭 | " | " |
| 8431000 | 대형트럭 | " | " |
| 8440100 | 자전거 | " | " |
| 8440300 | 모터사이클 | " | " |

·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치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8520200 | 광섬유케이블 | Km | 광공업 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8520500 | 사 진 기 | 대 | " |
| 8520600 | 전 자 복 사 기 | " | " |
| 8520800 | 안 경 테 | 천 개 | " |
| 8530100 | 손 목 시 계 | 개 | " |
| 8530200 | 벽 시 계 | " | " |
| 8540200 | 수 도 미 터 | " | " |
| 8540300 | 적 산 전 력 계 | 대 | " |
| 8540400 | 전 자 계 측 기 | 백만원 | " |

○ 39. 기타 제조업

• 390. 기타 제조업

| 지정품목부호 | 지정 품 목 명 | 조사단위 | 품목개념및품질규격, 조사범위, 원재료, 용도 |
|---------|---------------------|------|----------------------------|
| 9020100 | 피 아 노 | 대 |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와 동일 |
| 9020200 | 기 타 | // | " |
| 9030500 | 낙 시 대 | 개 | " |
| 9030600 | 낙 시 용 릴 | // | " |
| 9040100 | 인형 및 장난감 | 백만원 | " |
| 9040110 | 인 형 | // | " |
| 9040120 | 어린이승용물 | // | 9040100 인형 및 장난감으로 조사 " |
| 9040130 | 기 타 장 난 감 | // | " |
| 9050200 | 가 발 | 천 개 | " |
| 9090100 | 볼 펜 | // | " |
| 9090900 | 영 구 및 반 영 구 라이 터 | 개 | " |
| 9091200 | 지 퍼 | Km | " |
| 9091400 | 바 늘 | 백만원 | " |

Ⅶ. 부 록

Ⅶ. 부 록

1. 주요단위해설

1) ppm : 용액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하는 약호이다.

2) d (데니어, Denier) : 450 m의 장사(長絲)로 0.05 g이면 1 데니어임.

3) 'S (번수·番數) : 견사 1 파운드의 길이 즉, 4,436,889 야드를 전환인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840) = \text{면사 번수}$

※ 데니어 : 5282 / 면사 번수

(840 야드는 1 'S 면사 길이)

(2) $4,436,889 / (\text{데니어} \times 560) = \text{소모사 번수}$

(560 야드는 1 'S 소모사의 길이)

(3) $4,336,889 / (\text{데니어} \times 256) = \text{방모사 번수}$

※ 데니어 = 17,331.6 / 방모사 번수

(256 야드는 1 'S 방모사의 길이)

소모사는 영국식으로 560 야드 1 파운드의 것을 1 번수라 함.

예컨대 32 번수 단사(單絲)의 경우는 1/32 S, 쌍사(雙絲)의 경우는 2/32 'S로 됨.

(4) 추(錘) : 조방기(組紡機), 정방기(淸紡機), 연사기(撚絲機) 등 스피들을 사용하는 기계의 양을 나타냄.

면방“링” 정방기는 매일 16시간 가동으로 20 번수를 0.5 파운드정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짐. 소모율, 정방기로는 48 번수를 0.44 파운드로 생산함.

- 5) D/W (Dead Weight)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자체의 무게를 뺀 중량 2,240 파운드를 1 중량톤으로 한다.
- 6) G/T (Gross Tonnage) : 배의 용적을 표시하는 단위로 선목×길이×높이의 f^3 , 100 f^3 를 1 G / T으로 한다.
- 7) 노트 (Knot) : 배가 1시간에 1해리 (1,853 m)를 달리는 속력
- 8) S / F $\frac{1}{8}$ (Square Feet $\frac{1}{8}$ inch) : 합판의 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 foot × 1 foot × $\frac{1}{8}$ 인치의 체적을 말한다. 이를 m^3 로 환산하면 $0.3048 m \times 0.3048 m \times 0.0254 m \times \frac{1}{8} = 0.00029 m^3$ 이다.

[주]

| | | |
|--------|-------|------------------|
| 1.1 才 | | 1 치 × 1 치 × 12 차 |
| 2.1 石 | | 180 L |
| 3.1 斤 | | 1.3 Lbs |
| 4.1 實 | | 8.2 Lbs |
| 5.1 | | 400 Lbs |
| 6.1 坪 | | 3.3 m^2 |
| 7.1 木材 | | 3 分板 1 평은 9 才 |
| | | 4 分板 1 평은 12 才 |
| | | 5 分板 1 평은 15 才 |

9) R / T (냉동톤) : 1 R / T = 12,000 BTU/H

1 BTU/H : 1 pound 의 물을 1°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0) T/H : 물 1 Ton 을 1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

11) L.D.T.(Light Displacement Tonnage) :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
서의 선박 자체의 무게, 즉 중량톤을 말한다.

2. 도 량 형

〈표1〉 길 이

| 단 위 | <i>mm</i> | <i>cm</i> | <i>m</i> | <i>km</i> | <i>in</i> | <i>ft</i> |
|---------------|-----------------|-----------------|----------|--------------------|-----------|-----------|
| 1 <i>mm</i> | □ | 0.1 | 0.001 | (0.1) ⁸ | 0.03937 | 0.00328 |
| 1 <i>cm</i> | 10 | □ | 0.01 | (0.1) ⁵ | 0.3937 | 0.0328 |
| 1 <i>m</i> | 1,000 | 100 | □ | (0.1) ³ | 39.37 | 3.2808 |
| 1 <i>km</i> | 10 ⁶ | 10 ⁵ | 1.000 | □ | 39,370 | 3280.8 |
| 1 <i>in</i> | 25.4 | 2.54 | 0.0254 | 0.000025 | □ | 0.0833 |
| 1 <i>ft</i> | 304.8 | 30.48 | 0.3048 | 0.000304 | 12 | □ |
| 1 <i>yd</i> | 914.4 | 91.44 | 0.9144 | 0.00091 | 36 | 3 |
| 1 <i>mile</i> | - | 160930 | 1609.3 | 1.6093 | 63360 | 5280 |
| 1 尺 (자) | 303.03 | 30.303 | 0.303 | 0.00030 | 11.93 | 0.9932 |
| 1 間 (간) | 1818.2 | 181.82 | 1.818 | 0.0182 | 71.582 | 5.965 |
| 1 町 (정) | 10909.1 | 10909.1 | 109.091 | 0.1090 | 4294.9 | 357.91 |
| 1 里 (리) | - | - | 3927.27 | 3.927 | 154619 | 12885 |
| 1 寸 (치) | 30.303 | 3.0303 | 0.0303 | 0.00003 | 1.1930 | 0.0994 |

환 산 표

| yd | mile | 尺 | 間 | 町 | 里 | 寸 |
|---------|-----------|--------|---------|----------|----------|--------|
| 0.00109 | 0.0000006 | 0.0033 | 0.00055 | 0.000009 | - | 0.033 |
| 0.0109 | 0.000006 | 0.033 | 0.005 | 0.00009 | - | 0.33 |
| 1.0936 | 0.00062 | 3.3 | 0.55 | 0.009 | 0.00025 | 33 |
| 1093.6 | 0.62137 | 3300 | 550 | 9 | 0.25 | 33000 |
| 0.0278 | 0.000015 | 0.0838 | 0.0140 | 0.0002 | - | 0.8382 |
| 0.3333 | 0.00019 | 1.0058 | 0.1676 | 0.0028 | 0.00008 | 10.058 |
| Ⅰ | 0.00057 | 3.0175 | 0.5029 | 0.0083 | 0.0002 | 30.175 |
| 1760 | Ⅰ | 5310.8 | 885.12 | 14.752 | 0.4098 | 53108 |
| 0.3314 | 0.0002 | Ⅰ | 0.1667 | 0.0028 | 0.00008 | 10 |
| 1.9884 | 0.011 | 6 | Ⅰ | 0.0167 | 0.0005 | 60 |
| 119.304 | 0.0678 | 360 | 60 | Ⅰ | 0.0278 | 3600 |
| 4295 | 2.4403 | 12960 | 2160 | 36 | Ⅰ | 129600 |
| 0.0331 | 0.00002 | 0.1 | 0.01667 | 0.00028 | 0.000008 | Ⅰ |

〈표 2〉 부 피

| 단 위 | ㎤ | ㎡ | in ³ | ft ³ | yd ³ |
|-------------------|-----------------|--------------------|-----------------|-----------------|-----------------|
| 1 ㎤ | □ | (0.1) ⁶ | 0.06103 | 0.00003 | 0.00001 |
| 1 ㎡ | 10 ⁶ | □ | 61027 | 35.3147 | 1.3080 |
| 1 in ³ | 16.3872 | 0.000016 | □ | 0.00057 | 0.00002 |
| 1 ft ³ | 28316.8 | 0.02831 | 1728 | □ | 0.03703 |
| 1 yd ³ | 764511 | 0.76451 | 46656 | 27 | □ |
| 1 gal(美) | 3785.43 | 0.00378 | 231 | 0.1337 | 0.00495 |
| 1 gal(英) | 4545.9 | 0.00455 | 277.42 | 0.1605 | 0.00595 |
| 1 ℓ | 1000 | 0.001 | 61.027 | 0.03531 | 0.0013 |
| 1 合(舊) | 180.39 | 0.00018 | 11.0041 | 0.0066 | 0.00023 |
| 1 升(舊) | 1803.9 | 0.0018 | 110.041 | 0.0637 | 0.0023 |
| 1 斗(舊) | 18039 | 0.01803 | 1100.41 | 0.6371 | 0.0236 |
| 1 石(舊) | 180391 | 0.1803 | 11004.1 | 6.3704 | 0.2359 |

| gal (美) | gal (英) | ℓ | 合 | 升 | 斗 | 石 |
|---------|---------|---------|---------|---------|---------|----------|
| 0.00026 | 0.00022 | 0.001 | 0.00554 | 0.00055 | 0.00005 | 0.000005 |
| 264.186 | 219.97 | 1000 | 5543.52 | 554.325 | 55.435 | 5.5435 |
| 0.00432 | 0.0036 | 0.01638 | 0.0908 | 0.00908 | 0.00091 | 0.00009 |
| 7.4805 | 6.228 | 28.3169 | 156.966 | 15.6966 | 1.5697 | 0.15697 |
| 201.974 | 168.18 | 764.511 | 4238.09 | 423.81 | 42.381 | 4.2381 |
| □ | 0.8327 | 3.7854 | 20.983 | 2.0983 | 0.2098 | 0.02098 |
| 1.2009 | □ | 4.5459 | 25.206 | 2.5206 | 0.2521 | 0.02521 |
| 0.2642 | 0.21997 | □ | 5.5435 | 0.5544 | 0.0554 | 0.00554 |
| 0.04765 | 0.03968 | 0.18039 | □ | 0.1 | 0.01 | 0.0001 |
| 0.4765 | 0.3968 | 1.8039 | 10 | □ | 0.1 | 0.001 |
| 4.7657 | 3.6981 | 18.039 | 100 | 10 | □ | 0.1 |
| 47.6567 | 39.681 | 180.39 | 1000 | 100 | 10 | □ |

〈표 3〉 무게

| 단 위 | g | kg | t (噸) | L / B | O Z |
|------------|-----------------|---------|--------------------|----------|---------|
| 1 g | □ | 0.001 | (0.1) ⁶ | 0.002204 | 0.03527 |
| 1 kg | 1000 | □ | 0.001 | 2.20459 | 35.273 |
| 1 t (噸) | 10 ⁶ | 1000 | □ | 2204.59 | 35273 |
| 1 L / B | 453.592 | 0.45359 | 0.00045 | □ | 16 |
| 1 O Z | 28.8495 | 0.02835 | 0.000028 | 0.0625 | □ |
| 1 S/T (미톤) | 907200 | 907.2 | 0.9072 | 2000 | 32000 |
| 1 L/T (영톤) | 1016000 | 1016 | 1.016 | 2240 | 35840 |
| 1 gr | 10.06479 | 0.00006 | - | 0.00014 | 0.00228 |
| 1 匁 (돈) | 3.75 | 0.00375 | 0.000004 | 0.00827 | 0.1323 |
| 1 (근) | 600 | 0.6 | 0.0006 | 1.3228 | 21.1647 |
| 1 貫 (관) | 3750 | 3.75 | 0.00375 | 8.2672 | 132.28 |

| S / T | L / T | gr | 刃 | 斤 | 貫 |
|-----------|-----------|---------|---------|---------|----------|
| 0.0000011 | 0.0000098 | 15.432 | 0.2667 | 0.00166 | 0.000266 |
| 0.001102 | 0.000984 | 15432 | 266.67 | 1.6666 | 0.2666 |
| 1.1022 | 0.9841 | - | 266670 | 1666.6 | 266.66 |
| 0.0005 | 0.000446 | 7000 | 120.96 | 0.756 | 0.12096 |
| 0.000031 | 0.000028 | 437.4 | 7.56 | 0.0473 | 0.00756 |
| □ | 0.89286 | - | 293919 | 1512 | 241.92 |
| 1.12 | □ | - | 262420 | 1693.4 | 270.95 |
| - | - | □ | 0.01728 | 0.00108 | 0.000017 |
| 0.0000041 | 0.0000037 | 57.872 | □ | 0.00625 | 0.001 |
| 0.00066 | 0.00059 | 9259.56 | 160 | □ | 0.16 |
| 0.00413 | 0.00369 | 57872 | 1000 | 6.25 | □ |

< 표 4 > 넓 이

| 단 위 | mm | cm | m | km | in ² | ft ² | yd ² |
|---------------------|------------------|------------------|--------------------|---------------------|----------------------|---------------------|---------------------|
| 1 mm | □ | 0.01 | (0.1) ⁶ | (0.0) ¹² | 0.00155 | 0.0001 | 0.000001 |
| 1 cm | 100 | □ | (0.1) ⁴ | (0.1) ¹⁰ | 0.1550 | 0.0011 | 0.00012 |
| 1 m | 10 ⁶ | 10 ⁴ | □ | (0.1) ⁶ | 1549.99 | 10.764 | 1.1958 |
| 1 km | 10 ¹² | 10 ¹⁰ | 10 ⁶ | □ | (39370) ² | (3280) ² | (1090) ² |
| 1 in ² | 645.16 | 6.4516 | 0.00065 | - | □ | 0.00694 | 0.00077 |
| 1 ft ² | 92903.04 | 929.03 | 0.0929 | - | 144 | □ | 0.1111 |
| 1 yd ² | - | 8359.44 | 0.8361 | - | 1296 | 9 | □ |
| 1 mile ² | - | - | - | 2.5899 | (63360) ² | (5280) ² | (1760) |
| 1 a | 10 ⁸ | 10 ⁶ | 100 | 0.0001 | 155001.7 | 1076.4 | 119.58 |
| 1 ha | 10 ¹⁰ | 10 ⁸ | 10 ⁴ | 0.01 | 15500160 | 107640 | 11958 |
| 1 acre | - | - | 4046.8 | 0.0040 | 6274735 | 43560 | 4840 |
| 1 坪 | - | - | 3.3058 | 0.000003 | 5125.58 | 35.583 | 3.9537 |
| 1 段步 | - | - | 991.74 | 0.00099 | 1537500 | 10674.9 | 1186.1 |
| 1 町步 | - | - | 9917.4 | 0.0099 | 15375000 | 106749 | 11861 |
| 1 平方尺 | - | 918.2 | 0.09182 | - | 142.35 | 0.9884 | 0.1098 |

| mile ² | a | ha | acre | 坪 | 段 步 | 町 步 | 平方尺 |
|-------------------|--------------------|---------------------|----------|---------|---------|-----------|----------|
| - | (0.1) ⁸ | (0.1) ¹⁰ | - | - | - | - | 0.00001 |
| - | (0.1) ⁶ | (0.1) ⁸ | - | 0.00003 | - | - | 0.0011 |
| - | 0.01 | 0.0001 | 0.000247 | 0.3025 | 0.001 | 0.0001 | 10.89 |
| 0.3861 | 10000 | 100 | 247.114 | 302500 | 1008.3 | 100.83 | 10890000 |
| - | 0.000006 | - | - | 0.00019 | - | - | 0.0070 |
| - | 0.0009 | 0.000009 | 0.000022 | 0.0281 | 0.00009 | 0.000009 | 1.0117 |
| - | 0.00836 | 0.00008 | 0.00021 | 0.2529 | 0.00084 | 0.00008 | 9.1054 |
| □ | 25898.46 | 258.98 | 640 | - | - | 78347.597 | - |
| 0.000039 | □ | 0.01 | 0.0247 | 30.25 | 0.1008 | 0.01008 | 1089 |
| 0.0039 | 100 | □ | 2.471 | 3025 | 10.183 | 1.008 | 108900 |
| 0.00156 | 40.468 | 0.40468 | □ | 1224.2 | 4.0806 | 0.4081 | 44071.2 |
| - | 0.0331 | 0.00033 | 0.00081 | □ | 0.0033 | 0.00033 | 36 |
| 0.00004 | 9.9174 | 0.09917 | 0.2451 | 300 | □ | 0.1 | 10800 |
| 0.0004 | 99.174 | 0.9917 | 2.4506 | 3000 | 10 | □ | 108000 |
| - | 0.00091 | 0.000009 | - | 0.0278 | 0.00009 | 0.000009 | □ |

< 광공업 통계 조사 >

1. 조사 요청서
2. 자료처리 요청서
3. 결 과 포
4. 산업 및 품목분류포
5. 조사포 접수대장
6. 취사 전출사명체명부
7. 광공업 통계 조사포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

조 사 요 령 서

1988. 5.

경 제 기 획 원

차 례

| | |
|---------------------------------|----|
| I. 조사개요 | 3 |
| 1. 조사목적 | 3 |
| 2. 조사의 법적근거 | 3 |
| 3. 조사연혁 | 3 |
| 4. 조사체계 | 3 |
| 5. 조사기간 | 3 |
| 6. 조사대상 | 4 |
| 7. 조사단위 | 7 |
| 8. 조사표의 종류 | 8 |
| 9. 조사사항 | 8 |
| 10. 조사방법 | 9 |
| 11. 조사표 내검, 질의조회 및 조사표 제출 | 9 |
| 12. 조사결과 공표 | 9 |
| II. 조사요원의 임무 | 10 |
|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 10 |
| 2. 조사원의 임무 | 10 |
| 3. 지도원의 임무 | 14 |
| III. 조사표 작성요령 | 16 |
| 1. 일반적 유의사항 | 16 |
| 2. 항목별 작성요령 | 17 |
| 가. 조사표〔 I 〕의 작성요령 | 17 |
| 나. 조사표〔 II 〕의 작성요령 | 46 |
| IV.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 48 |
| 1. 일반적인 사항 | 48 |
|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 48 |

| | |
|-----------------------------------|----|
| 가. 조사표〔Ⅰ〕 | 48 |
| 나. 조사표〔Ⅱ〕 | 50 |
| V. 관련자료 작성요령 | 51 |
| 1. 요계표 작성 | 51 |
| 2. 조사용 사업체명부 정리 및 보완 | 54 |
|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 57 |
|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 58 |
| 5. 합산조사 사업체명부 작성 | 58 |
| Ⅵ. 조사요령 요약 (Ⅰ표 기준) | 60 |
| 부록 1. 사업체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 | 62 |
| 부록 2.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 | 65 |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광공업부문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동 부문의 구조변동과 생산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주요 용도〉

- 관련 경제정책 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용 기초자료
- 관련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용 기초자료
- 광공업부문 각종 통계의 기준 및 모집단 자료
- 광공업부문 및 관련 주요 경제지표의 편제 또는 개편용 기초자료
(GNP, 생산·출하·재고·가동률지수, 도매물가지수, 산업연관표 등)
- 전광공산품의 품목별 분석(생산·출하·재고 등)을 위한 유일한 기초자료

2.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 제2조 2, 4항과 제3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승인번호 111-11-10호)로 지정된 법정 기본통계

3. 조사연혁

1967년 기준의 제1회 조사 실시이후 매년 실시하여 금년이 제17차 조사

4. 조사체계 (지방행정기관 체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조사원) → 사업체
↓
지방통계사무소

5. 조사기간

- 가. 조사기준일 : 1987.12.31 현재
- 나. 조사대상기간 : 1987. 1. 1 ~ 12.31 (1개년간)
- 다. 조사실시기간 : 1988. 5.11 ~ 6. 4 (25일 간)

6. 조사대상

가. 조사대상 사업체

국내에 실재하는 사업체로서

- 1) 한국 표준산업분류중 “대분류 2, 3”인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이며
-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여
 - 가) 1987.12.31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이거나
 - 나) 1987년 조업한 기간중의 월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인 사업체

나. 광업과 제조업의 정의

1) 광업

광업이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단한 손질 및 품질개선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제조업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 광공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1) 겸업사업체

가) 겸업사업체는 광공업 활동실적만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사대상기간 중 연간 총수입(생산액 또는 출하액)이 많았던 산업을 주산업으로 본다.

예 : 연간 총수입이 광공업 > 타산업.....조사대상

” 광공업 < 타산업.....제 외

나) 상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해당활동의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해 산업을 결정한다.

2) 농림, 수산업과의 관계

- 가) 농가, 어가에서 주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나) 어선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다) 벌목업(伐木業)과 단순한 목재 절단업은 임업으로 분류되며 조사대상이 아니다.

3) 건설업과의 관계

- 가) 제조된 부분품을 조립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조립 설치하는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는 제외된다.(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트, 알미늄 샷시 창틀설치 등)
- 나)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광상의 탐사, 개발 및 준비작업과 시굴작업은 건설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도·소매업과의 관계

- 가) 빵제품 등을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기타 도·소매업자 등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나,接客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로 구내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소규모 의류제품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한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타사업체로부터의 구입(기성품) 판매분이 자가제조 부문보다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 포장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라)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에게 지

급하여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시판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하청받아 생산한 업체가 제조업체)

마) 알미늄 샷시바를 타사로부터 구입하여 창틀을 직접 조립 또는 가공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조사하나, 구입상품을 단순절단 또는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비중이 조립판매분보다 클 때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건재상 등)

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과의 관계

가) 주로 가정 용구(난로,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그러나 선박수리, 산업용 보일러수리, 방적기수리, 산업용 장비 등 산업용 기계장치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조사대상이다)

나) 의류와 직물 등을 표백, 염색하는 업체는 직접 직조하여 염색하든, 임가공료만 받고 염색하든 관계없이 조사대상이 되나 개개의 가정 소비자로부터 위탁받아 표백, 염색, 정리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6) 인쇄 출판업과의 관계

가) 학교, 각종협회, 종교단체 등의 산하소관부서에서 발간하여 단체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본다.

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① 콩나물 공장
- ② 표백 및 염색활동을 겸한 세탁소(개개인 상대)
- ③ 제과, 제빵점 중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로 구내 판매할 경우
- ④ 양품점(의류), 양장, 양복, 양화점 중 구입판매분이 자체 제조판매분보다 클 경우
- ⑤ 서류복사업(용역업)
- ⑥ 알미늄 샷시바 판매점(건재상 등에서의 단순절단판매 등)
- ⑦ 자동차, 자전거 수리점
- ⑧ 의복류 위탁제조판매업체

- ⑨ 사진현상 및 인화 (서비스업)
- ⑩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 ⑪ 공공단체, 학교의 실습장, 연구소, 시험소
- ⑫ 종교단체, 학교, 각종협회에서의 인쇄·출판 활동부서 (비매품)

마. 광공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 ① 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 ③ 수탁사업체 : 다른 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제조하여 준 대가로 가공임 (수주가공임) 을 받는 사업체
- ④ 도정업 : 도정업체는 임가공료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물 (사료) 수입은 제품으로 조사한다.
- ⑤ 도살업 : 도살업은 어떠한 업체를 불문하고 임가공료만 조사하며 부산물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임가공료에 포함 조사한다.
- ⑥ 방위산업 사업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체외에는 모두 조사한다. (군으로부터의 수탁여부 불문)
- ⑦ 연초제조창과 담배원료공장

7. 조사단위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가.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업소, 상점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사업체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게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1) 동일 장소 (구역) 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는 경우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대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

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사업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사업장소가 동일 구역내의 여러 장소에 분리되어 있어도 임금대장 및 경영장부가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어서 구분조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나. 보조단위의 처리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 즉 창고, 차고, 수선소, 연구개발 및 실험실, 발전부서 등과 같은 것은 그 사업체의 내부부서로 간주해서 포함조사하고, 본사와 같은 총괄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하고 보조하고 있는 주된 사업체의 산업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8. 조사표의 종류

가. 사업체용 조사표 [I] : 공장, 광산 등의 사업체에 적용

나. 본사용 조사표 [II] : 사업체의 본사(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본사가 산하 사업체와 별도로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공장)를 가지고 있는 다공장기업의 본사가 그 중 어느 한 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9. 조사사항

가. 조사표 [I] : 21개 항목

①공장명 및 소재지 ②본사소재지 ③소속모기업명 ④창설년월 ⑤결산기 ⑥경영조직 ⑦자본금 ⑧부지 및 건물면적 ⑨주요 사용원재료명 ⑩주요생산공정 ⑪종업원수 ⑫연간급여액 ⑬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⑭연간주요생산비 ⑮내국소비세액 ⑯재고액 ⑰연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⑱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⑲건설가계정 ⑳유형고정자산 ㉑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지

나. 조사표 [II] : 15개 항목

①본사명 및 소재지 ②소속모기업명 ③창설년월 ④결산기 ⑤경영조직

- ⑥자본금 ⑦종업원수 ⑧연간급여액 ⑨상품매출액 및 임대수입액 ⑩재고액
- ⑪유형고정자산 ⑫건설가계정 ⑬사업체의 공장별 조사표작성가능여부
- ⑭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⑮동일그룹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10. 조사방법

조사담당자가 관할구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 조사대상여부를 확인한다.

1) 광공업 사업체인가?

2) 조사기준일('87.12.31) 현재 또는 월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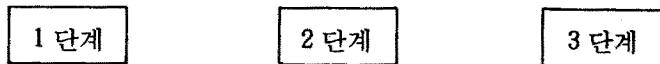
※ 사업체 명부는 조사의 편의를 위한 보조자료로서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위 1), 2)항 어느 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체 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하지 않는 반면, 사업체 명부에는 누락되었지만 실존하는 사업체는 조사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의 조사표 작성 능력 여부에 따라서 자계식 조사(사업체에서 작성)와 타계식조사(조사원이 작성)를 병행한다.

단, 자계식에 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 항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조사표를 회수한다.

11. 조사표 내검, 질의조회 및 조사표 제출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표가 접수되는 대로 단계별로 내검 및 질의조회를 한다.



동·읍·면 ————— 구·시·군 ————— 시·도(시·도 책임내검 완결 후 조사표 제출)

※ 질의조회는 조사표 접수단계별 역순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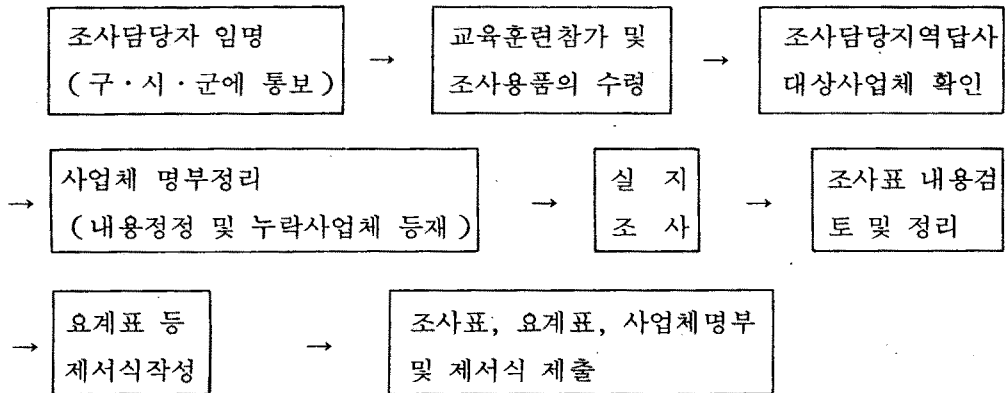
12. 조사결과 공표

시·도로부터 직접 중앙에 접수된 조사표는 전산처리하여 중간속보 및 최종보고서의 형태로 발간, 공표한다.

Ⅱ. 조사요원의 임무

조사담당자는 시·도, 구·시·군의 지휘 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담당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제로 실사에 반영하는 조사요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며,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실시순서



2. 조사요원의 임무

가. 조사준비

1) 교육훈련

조사원은 반드시 해당 구·시·군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조사용품을 수령한다.

2) 조사용품수령

가) 조사용품

- ① 조사표〔Ⅰ〕,〔Ⅱ〕
- ② 조사협조 의뢰공문
- ③ 조사요령서
- ④ 각종 작성 서식 : 요계표, 조사표접수대장(구·시·군 및 시·도용)
합산 사업체명부, 추가 및 전출 사업체명부

⑤ 산업 및 품목분류표 (사업체 배부용 포함)

⑥ 사업체 명부

나) 수령체계

경제기획원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조사원)

3) 조사대상 사업체 확인 및 명부의 정리

가) 조사원은 실사전에 담당지역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여부 (광업 또는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5인 이상인가) 를 확인하여 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나) 조사용 사업체명부는 단지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부이므로 동 명부에 없는 사업체라도 '87년도의 실적이 있는 조사대상업체가 발견되면 명부에 등재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88년도에 신규 창설한 신규사업체가 발견되면 사업체 명부에 등재하되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 전출 (행정구역 착오 및 개편에 의한 경우도 포함) 사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동·읍·면 및 구·시·군에 통보하여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조사협조 공문서 전달

가) 사업체 방문당일 조사원은 협조공문서 (수신처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명기후) 를 휴대, 해당사업체에 접수시킨다.

나. 조사표류배부

조사용 사업체 명부 확인과 동시에 사업체에서 자계식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으로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표를 배부한다.

1) 공장, 광산 등의 사업체에는 조사표 [I], 산하공장과 별도의 장소에 있는 본사 (본점) 에는 조사표 [II],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사업체에는 조사표 [I] 과 [II] 를 각각 배부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본사에서 산하공장과는 별도로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I] 과 [II] 를 동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장에서는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하여 타지역의 본사 또는 공장에서 작성되어야 할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부한다.

3) 조사표 기입은 반드시 조사표 이면의 「조사표 작성요령」 을 참조하여 작

성하도록 설명한다. 특히, 「17항의 품목분류」는 사업체 명부상의 전년도에 조사된 출하품목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사업체 담당자와 확인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분 기입하도록 조사표 배부시에 분류번호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 때 금년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일부 개편작성되었음을 유의한다.

- 4) 분철된 「산업 및 품목분류표」를 배부하는 업체(대규모, 다품종 생산업체)에는 특히 업종(산업분류)을 달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사표류 배부시에 분류번호를 결정하도록 한다.
- 5) 조사표 회수 가능일자 및 작성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다. 실지조사

자계식 조사가 가능한 사업체에 대한 조사표 배부가 끝나면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산장부를 확인, 면접조사(타계식)한다.

라. 조사표 회수

자체적으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사업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표를 회수한다. 단, 회수시에는 반드시 결산장부에 의해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표 작성상 문제점 해결

1) 유고사업체

사업체 방문시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 명부상의 우측여백에 그 사유를 기입한 후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현재 휴업한 사업체라도 '87년도 실적을 조사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경우는 조사표를 작성한다.

2) 조사응답 거부 사업체

조사의 취지, 목적 및 법적근거를 잘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계속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구·시·군 또는 순회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 방위산업 사업체

방위산업체에 대하여는 협조를 구하고, 방위산업 품목에 한하여 제품명을 「기타 품목」으로 처리한다. 특히 방위산업 사업체의 비밀이 조사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예”

| |
|---|
| 35292200 [무기용 화약 (무연화약, 혼성추진약 등)] → 35299179 기타공업용 화학제품 |
| 38298100 [총포 (권총, 소총, 대포, 고사포), 총탄, 포탄, 폭발물 발사기, 장갑차 등 관련장비 및 부품] → 38299979 기타산업용 기계 |
| 38323900 (군수용 무선통신장비) → 38329179 기타전화 장치 |
| 38451100 (항공기) → 38490970 기타운송장비 |
| 38452100 (항공기부품) → 38490979 기타운송장비 부품 |

4) 조사불능 사업체

관계장부 또는 서류가 관계기관에 영치되어 있는 사업체는 참고가 될 각종 서류나 구술자료에 의거 작성하고,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5) 다공장소유 기업의 본사가 어떤 한 공장과 함께 있는 경우(조사표 [I], [II] 동시작성 사업체)

본사 조사표에는 1~6, 13~15항만을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은 함께 있는 공장(조사표 [I])에 포함하여 기입한다.

6) 현지공장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체(공장)에서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체가 본사 또는 조사표작성이 가능한 주된 사업체에 요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한다.

7) 타공장과 구분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자료의 부속자료가 출하액, 생산비 등의 주요 조사사항이 타공장과 도저히 구분 작성할 수 없도록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하액의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사업체(공장)에서만 조사된 사업체로 처리하고 기타 사업체에서는 각각 그 조사표 사본을 회수하되 별첨조사표로 첨부한다.

이때 주된 사업체에서는 조사표의 전 항목에서 합산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합산된 사업체에서는 당해 사업체분이 합산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8) 결산마감일이 12월이 아닌 사업체

결산마감일이 12월이 아닌 사업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사유를 기입한다.

9) 덕대제 광업사업체(조광권자)

덕대제 채택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따라서 광업권자는 직영광산분만을 조사하고 덕대가 직접 출하하였거나 광업권자에게 인도한 것은 모두 덕대 사업체의 출하로 조사한다.

바. 조사표 내검 및 관련자료 작성

1)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과 「관련자료 작성요령」참조

2) 조사표는 [I], [II], 별첨조사표로 구분하여 간지를 첨부 합철한다.

사. 조사표류 제출

작성 정리된 조사표류를 수령 체계의 역순으로 제출한다.

3. 지도원의 임무

가. 구·시·군 지도원

1) 사업체 명부의 조정배부

행정구역 개편지역(분동, 분구, 통합지역)은 구·시·군에서 사업체 명부를 사전에 분할 배부하되 사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사업체 및 동별 사업체수를 분명히 파악하여 조사후에 면밀히 점검한다.

2)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적정량의 조사표를 동·읍·면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관계자료와 함께 동·읍·면별로 접수하여 합철한다.

3) 조사요령 교육참석 및 조사원 훈련실시

시·도에서 실시하는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조사원을 직접 훈련시킨다.

4) 실사순회지도

실사기간 중 각 동·읍·면을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

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5) 조사표 내검

동·읍·면에서 작성, 제출하는 조사표를 내용검토하여 확인 및 보완한다.

6) 관련자료작성 및 제출

동·읍·면에서 작성된 요계표를 근거로 구·시·군 요계표를 작성하고, 조사표 접수대장을 작성하며, 조사표를 비롯하여 사업체명부, 합산사업체명부 등 각 서식을 동·읍·면별로 편철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나. 시·도 지도원

1) 조사표류 배부 및 회수

적정량의 조사표류를 산하 구·시·군에 배부하되 행정구역 개편지역(분구·통합등)은 사전에 사업체명부를 조정하여 배부하고 조사완료된 각종 자료를 구·시·군별로 접수, 분류하여 제출한다.

2) 훈련, 순회지도

구·시·군 지도원에 대한 교육실시, 조사원 훈련시의 관내 순회지도(적격 조사원의 훈련여부, 훈련과정의 충실 등을 확인)

3) 실사순회지도

실사기간 중 관내를 순회하여 조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4) 조사표 내검

구·시·군에서 작성 또는 제출한 조사표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5) 질의조회 및 확인조사

구·시·군에게 제출한 조사표를 내검하여 미비점 또는 착오사항을 동·읍·면에 질의하거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수정한다.

6) 시·도 관련자료 작성

요계표, 조사표 접수대장 등 시·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Ⅲ. 조사표 작성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본 조사표는 '87.1.1 ~ 12.31 일의 1년간 자료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한다.
- 나. 21개 조사항목 중 특히 「17항 품목별 출하액, 13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4항 연간 주요생산비, 16항 재고액」등을 중점 조사한다.
- 다. 제품의 품목구분과 품목번호 기입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책자 중 각 산업별로 분류 예시한 품목분류표 본문과 가·나·다 순에 따라 분류한 「품목색인표(부록)」를 병용하면 효과적이다.
- 라. 조사표 작성시 일부 항목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일치되도록 한다.
- 마.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횡선(=)으로 수정하며 칼로 긁거나 수정액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바.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며 금액단위의 각란에 맞도록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사업체에 조사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도 「잉크」나 「볼펜」을 사용토록 요청할 것)
- 사. 숫자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숫자에 의한 정수로 기입한다.
- 아. 각 수량 및 금액단위는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5입(반올림)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한다.(단, 17항(5)단위당 출하가격은 “원”임을 유의한다)
- 자. 조사표상의 수량단위 바로 앞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중앙에서의 부호기입란임)
- 차. 숫자가 음수(마이너스)일 때는 숫자앞에 △표시를 한다.
(예) 부가가치세)
- 카. 다공장 소유기업체의 공장을 조사할 경우에 조사표의 전항목에 대하여 당해 공장분만 조사되도록 하고 부득이 일부 항목에 타공장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기한다.

2. 항목별 작성요령

가. 조사표 [I]의 작성요령

| ★사업체 명부상 부호 | 행정구역분류번호 | 일련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기업체번호 | 그룹번호 | 산업분류 |
|-------------------|-------------|------|---------|-------|-------|-------|
| |-..... | | | | | |

(1) 행정구역 분류번호

사업체 명부상의 행정구역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2) 일련번호

사업체 명부상에 기재된 번호를 기입하며, 명부상 누락 사업체나 전입 사업체의 경우는 각 동·읍·면별로 기존명부상의 마지막 일련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

(3) 사업체 고유번호

가) 동·읍·면에서 기입할 때

사업체 고유번호는 조사용 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기입한다. 단, 사업체 명부상 누락사업체의 고유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시·도에서 기입)

나) 구·시·군에서 기입할 때

조사용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중 동일 구·시·군내의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에 대하여 이전(移轉)전 소재지의 사업체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하여야 한다.

다) 시·도에서 기입할 때

새로 발견된 사업체명부상의 누락사업체,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의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최종 기입한다. 명부상 누락사업체와 타 시·도로부터 전입된 사업체에 대하여는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를 취합하여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사업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서울은 남부통계사무소에서 사업체 관리) 관내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이전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고유번호를 찾아 그대로 기

입한다.

(4) 기업체번호 및 그룹번호

한 기업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2개 이상의 공장·광산을 운영하거나 공장(광산)과 다른 장소에 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체번호를, 또한 그룹에 속해있는 계열기업인 경우 각 사업체마다 그룹번호를 각각 사업체명부에 부여하였다.

사업체 명부에 기재된 기업체(또는 소속그룹)명이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는 명부상의 기업(또는 그룹)번호를 그대로 이기하나, 명부내용과 상이하거나 명부상 누락사업체의 경우는 관내 명부에서 알 수 있을때만 기입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체는 그대로 둔다.

(5) 산업분류(조사완료후 기입)

- 조사표 17항(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의 산업 및 품목분류번호로부터 주된 산업분류(분류번호의 앞 5자리 숫자)를 기입하며 임가공(수탁제조)업체는 18항(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의 품목분류 번호로부터 산업분류를 기입한다.

*산업분류 결정방법

- ① 품목분류번호가 1개뿐인 경우 : 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숫자
(산업분류)
 - ② 품목분류번호가 2개이상일 경우 : 품목분류번호의 앞 5자리숫자중 출하액이 큰 5자리 숫자. 또, 동일한 산업분류는 출하액을 합쳐하여 산업분류를 결정.
- 선박, 산업용장비 등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는 수리품의 주된 산업을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확인하여 기입한다.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공장(사업체)명 _____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구·시·군 구·로·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1) 공장(사업체)명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한다.

<예시> : 「××공업주식회사 울산공장」

「주식회사××산업 창원공장」

(2) 일정한 공장(사업체)명칭이 없을 경우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을 기입한다.

(3) 공장(사업체)의 소재지(주소)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는 바, ××빌딩, ××상가, ××공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표에 인쇄되어 있는 행정단위 명칭에 “○”표를 한다.

(예 : 경기 시 수원 구
 ⊕ ⊕
 도 군

(4) 전화번호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사(본점)소재지

대표자: _____

전화: _____

시·도 구·시·군 구·로·동·읍·면 가·동·리 번지 호

(1) 본사가 있으나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2)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 소재지란에 위탁한 광업사업체의 대표자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대표자명 우측 여백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3) 본사가 없거나, 서울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는 서울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의 전화번호도 상단여백에 기입한다.

3. 소속모기업 (그룹)명 ()

모기업이란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자본, 혈연관계 등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결합된 2개이상의 기업군중 지도적(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을 말하며 조사표상의 사업체가 속해 있는 그룹(모기업)명을 기입한다.

(1) 이러한 기업집단을 일반적으로 「××그룹」이라고 부를 경우는 그룹명을 기입하고 <예시 : 1 >

(2) 「××그룹」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는 계열기업군은 모기업명을 기입한다.
<예시 : 2 >

<예시 : 1 > { 제일모직(주), 삼성전자(주), 전주제지(주)→삼성
(주)금성사, (주)럭키, 금성통신(주)→럭키금성

<예시 : 2 > { 동아제약(주), 라미화장품(주), 동명산업(주)→동아제약
(주)대성산업, 대성광업개발(주), 창원기화기공업(주)→대성산업

[주요 그룹(모기업)명]

현대, 럭키금성, 선경, 삼성, 쌍용, 대우, 효성, 대림, 한진, 한국화약, 대한전선, 두산, 롯데, 코오롱, 한양, 삼미, 한일합섬, 동양시멘트, 진로, 동아제약, 동부, 동아, 신동아

4. 창설년월
(현 사업체의 가동월 또는 개점월)
19 년 월

- (1)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월을 기입하고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 사업체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해(年)(가동월 또는 개점월)을 기입한다.
- (2)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사업체(공장)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 (3)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4) 동일 업종으로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 (5) '87년 창설업체는 16항(1) 연초 재고액이 없고 20항 유형고정자산의 (01) 신규나 (02) 중고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단, 유형고정자산을 임차 사용중일 경우에는 예외)

5. 결산기(결산마감월) ()월

결산대상기간(예: 1~12월)이 아니고 결산마감월(예: 12월)을 말한다.

<예시> 결산이 연 1회(결산기간 1~12월)인 경우와 연 2회(결산기간 1~6월, 7~12월)인 경우의 기재방법은 각각(12월), (6, 12월)로 기입한다.

6. 경영조직(해당란에 ○표)
 (1) 회사법인() (2) 기타법인() (3) 개인()

- (1) 회사법인이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 (2) 기타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인격(法人格)을 부여받은 조합등을 포함하며,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3)개인에 포함된다.
- (3) 개인이란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7. 자본금 또는 출자금(회사법인에 한함)
 '87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 조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원 |
|---|----|----|----|---|----|-----|
| | | | | | | |

- (1) 4항의 경영조직 중 「회사법인」에 한하여 '87.12.31 현재의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을 기입한다.

- (2) 1개 회사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공장에서는 본사의 자본금 총액을 각각 기입한다.

| | |
|------------------------------|-----|
| 8. 부지 및 건물면적 (광업은 제외) | |
| ○ 1평 ≙ 3.3㎡ | |
| ○ 임차사용분 조사하고 임대분은 제외 | |
| ① 부 지 | (㎡) |
| ② 건물밀면적 | (㎡) |
| ③ 건물연면적 | (㎡) |

본 항목은 제조업체에 한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의 부지와 건물의 밀면적 및 연면적을 조사하며(임차사용분 포함하나 비업무용 및 임대해 준 것은 제외한다) 광업은 조사하지 않는다.

(1) 부 지

㉠ 광업과 연계되어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광업부문은 제외하고 제조업 부문만 조사한다.(예 : 시멘트공장의 석회석광산 부지는 제외)

㉡ 사택, 기숙사, 운동장 등 복리후생시설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포함하고 별도의 장소에 있거나 일반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건물밀면적

부지와 접한 건물 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3) 건물연면적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유의사항>

㉠ 2층 이상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부지 및 건물밀면적은 제 1층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조사하고 건물 연면적은 실제 사용중인 건물 연면적을 사업체별로 조사한다.

예) 부지 100평, 각층 30평인 3층 건물에 A(1층), B(2~3층) 두 사업체가 임차사용하고 있을 경우

• A사업체

| | |
|---------|-----------|
| ① 부 지 | 330 m^2 |
| ② 건물밀면적 | 99 m^2 |
| ③ 건물연면적 | 99 m^2 |

• B사업체

| | |
|---------|-----------|
| ① 부 지 | - |
| ② 건물밀면적 | - |
| ③ 건물연면적 | 198 m^2 |

(내) 일반적으로 부지가 있고 건물 밀면적과 건물 연면적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① 빌딩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② 벽돌·블록 제조업체일 경우

(대) 건물 연면적은 건물 밀면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태) 부지는 건물 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배) 단위는 「 m^2 」이므로 평(坪)은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 \text{ 평} \approx 3.3 \text{ } m^2$$

(해) 광업은 기입하지 않는다.(석탄, 채석장, 염전, 석회석 등의 광업체)

(사)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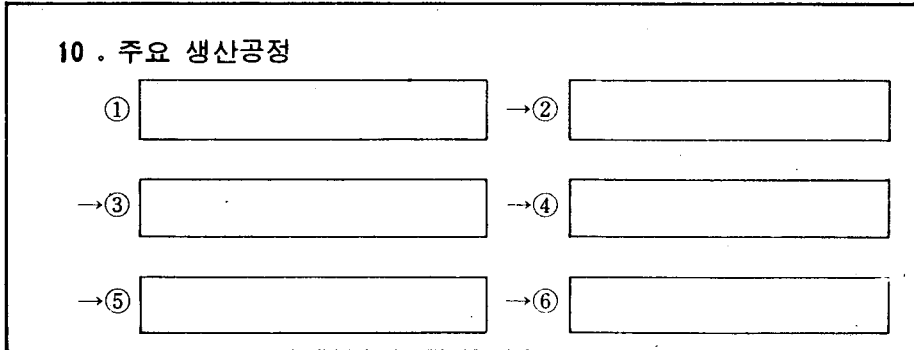
9. 주요 사용 원재료명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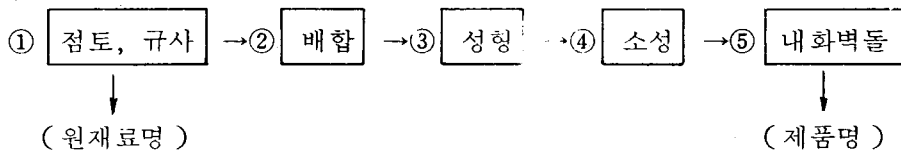
③

원재료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 중 비중이 큰 것 3개지만 기입한다.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을 기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제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 기입한다.

<예시>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 11. 종업원수(임시 및 일고종사자 포함) | | | | (명) | |
|-------------------------|-------|--------------------------|---|-----|-----------------------|
| | | (1) 12월말 현재 | | | (2) 조업기간 중 월평균종업원수 |
| | | 계 | 남 | 여 | |
|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② 피 고용 자 | 생 산 직 | | | | |
| | 사무및기타 | | | | |
| 합 계 | | | | | |
| (3) 연간 조업 월 수 | | ()개월 | | | |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동거자 포함)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작업(경영)시간의 $\frac{1}{3}$ 이상 사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4항의 경영조직이 (1)회사법인이나 (2)기타법인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을 수 없으며 (3)개인사업체는 적어도 1인 이상은 있음에 유의한다.

(2) 피고용자(被雇傭者)

가) 생산직 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생산종업원을 말하며, 생산공정의 특정단계를 기록하거나 촉진하는 기록원, 감독원과 생산활동에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트럭운전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서 제외한다.

나)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전화교환원, 간호원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 보수를 받는 사장, 지배인, 중역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3)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1987.12.31 일 현재의 실제 종업원수를 말하며, 남·녀별로 구분 기입하고 12월중에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휴업, 계절업종 등)에는 종업원수를 기입하지 않고 “△” 표시만 한다.

(4)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

휴업을 했거나 생산중단 등 실제 조업을 하지 않은 달(月)은 제외하고 조업을 한 각 월말 종업원수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월평균 종업원수를 말한다.

<예시> 얼음제조업체인 “갑”이라는 회사가 아래의 표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5개월 조업하였다면 월평균 종업원수는?

| | | | | | |
|------|----|----|----|----|----|
| 월 | 5 | 6 | 7 | 8 | 9 |
| 종업원수 | 35 | 50 | 60 | 60 | 40 |

※ (35 + 50 + 60 + 60 + 40) ÷ 5 = 49

(5) 연간 조업일수

실제 조업한 달을 말하며, 최소한 월간 1주일 이상 조업을 했을 경우에 조업일수에 포함한다.

<유의사항>

- ㉠ 피고용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이상), 군복무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또한 위탁 제조시킨 경우 수탁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 광공업과 타산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광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만을 발체, 기입한다.
- ㉢ 12월말 현재와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가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적요란에 휴업한 달(月)을 기재한다.
- ㉤ 일고 종업원은 반드시 포함조사하되 연인원으로 조사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예시> 월중 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20명씩, 그리고 다음 7일간에 15명씩, 나머지 9일간에 30명씩 근무한 경우 월평균 종업원수는?

※ 일고종업원의 월평균 종업원수

$$= \frac{\text{월중 연근무인원수}}{\text{조업일수}} = \frac{575(\text{명})}{26\text{일}} = 22\text{명}$$

$$\text{월중 연근무인원수} = (10\text{일} \times 20\text{명}) + (7\text{일} \times 15\text{명}) + (9\text{일} \times 30\text{명}) = 575(\text{명})$$

| | | 12. 연간급여액 | | | | | |
|-----|--------------|------------|---|---|---|---|---|
| | | 상여금, 제수당포함 | | | | | |
| | | 천 | 백 | 십 | 억 | 천 | 만 |
| ① | 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② | 피고용자, 생산직 | | | | | | |
| | 사무 및 기타 | | | | | | |
| 합 계 | | | | | | | |

- (1) 1987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된 것을 1987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87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한다.
- (2)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 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시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3) 급여액이 11항의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급여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월별 급여액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종업원 1인당 월평균급여액 = (연간급여액 합계 ÷ 월평균종업원수) ÷ 조업월수
- (4) 퇴직금(퇴직급여 총당금)과 복리후생비, 장기결근자 및 외국인, 군복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은 포함한다.
- (6) 급여액은 세금, 기여금, 보험료, 저금, 근로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총액으로 기입한다.
- (7) 생산직급여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사무 및 기타의 급여액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급료와 임금”을 참고한다.

| 13.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기타 수입액 | | | | | | |
|---------------------------------|---|----|----|----|---|---------------|
| | 조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백만 원 |
| ① 제품출하액(제품의 외형매출액) | | | | | | |
| ② 폐품판매액(생산과정의 폐품, 불량품) | | | | | | |
| ③ 수탁제조수입액(임가공료) | | | | | | |
| ④ 수리수입액(수리대금) | | | | | | |
| 합 계(①+②+③+④) | | | | | | |
| ⑤ 상품매출액(구입상품 재판매액) | | | | | | |
| ⑥ 상품매출원가(구입상품매출에 대한 재판매원가) | | | | | | |
| ⑦ 임대수입액: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수입액(토지분은 제외) | | | | | | |

(1) 제품출하액

- ㉠ 제품출하액이란 자사(自社)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였거나 위탁생산한 모든 제품중에서 '87년 1년간 출하(수출액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 따라서 외국 또는 타사(他社)에서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출하한 결산서상의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 ㉢ 제품 출하액에 판매이윤은 포함(제품수불명세서가 아닌 매출명세서상의 금액으로 조사)되어야 하나, 내국간접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특별소비세 및 주세 과세대상 품목생산업체 특히 유의할 것)
- ㉣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수출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 ㉤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점이나 보관창고로 이송한 것,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무상 양도한 것, 건설업 등 타산업 활동부문으로 대체된 것은 대체된 금액에 외부 매출시의 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 ㉥ 광공업이 아닌 타산업부문으로부터 수탁생산(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제조가공 인도하고 그 댓가로 임가공료를 받는 경우)하여 위탁사업체에 인도한 것은 시가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2) 폐품 판매액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철공소에서 쇠부스러기,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 불합격품(불량품)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기물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3) 위탁제조 수입액

(가)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 공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나) 원재료(또는 중간제품)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납품한 경우는 위탁(주문)업체의 산업활동유형에 관계없이 생산업체에서 제품 출하액으로 조사한다.

(다) 광공업 이외의 타산업체(무역업, 판매업 등)로부터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위탁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 생산하여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① 제품출하액에 기입한다.

(라) 주산업이 위탁제조(임가공)인 도살업, 도정업, 도금업은 위탁제조(임가공)수입액만 기입하고 신문사, 출판사 등의 광고수입도 본 항목에 포함 조사한다.

(4) 수리 수입액

타인 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선박, 산업용 보일러, 산업용 장비등)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13항 출하액 합계액이 14항 생산비 합계액에 비해 과소하거나 과도한 경우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요란에 기재한다.

(5) 상품매출액

(가)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재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액)

내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적송품, 시용판매, 할부판매, 예약판매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일단 상품이 출고되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조사한다.

(6) 상품매출원가

연간 판매한 상품에 대한 구입원가를 기입한다.

(7) 임대수입액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취임료를 말하며 토지분에 대한 임대수입액은 제외한다.

| 14. 연간주요생산비 |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원 | | | | | | | |
|--------------------------|----------------------|----|----|----|---|----|----|---|
| | 조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원 |
| ①재료비(부재료, 보조재료 포함) | | | | | | | | |
| ②연료비(석유, 석탄, 방카C유 등의 연료) | | | | | | | | |
| ③전력비(구입전력) | | | | | | | | |
| ④용수비(구입용수) | | | | | | | | |
| ⑤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 | | | | | | | |
| ⑥수리유지비(수선비) | | | | | | | | |
| 합 계 | | | | | | | | |

1987년 1년간 실제 생산에 소요된 영업비용(제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에서 명시한 6개 비목만을 각 항목별로 기입한다.

(1) 재료비

개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87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주재료)와 부분품, 용기 등과 포장 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부재료)로서 실제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내 미사용 재료비가 포함된 구입액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대 다(多) 단계 생산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재료비는 중복 기입하지 않도록 단계정대체액은 제외하고 최초 투입재료비에 공정을 거치면서 부가된 재료비만을 포함 기입한다.

㉔ 동일 기업내의 다른 공장(사업체)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료(또는 반제품)는 대체금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㉕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 기입한다.

㉖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

①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생산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는 수탁 사업체의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계상한다.

② 그러나 광공업이 아닌 타 산업의 사업체(무역업, 판매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공받은 재료를 사용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수탁업체에서 기입하여야 한다. 단, 도살업, 도정업은 임가공료만 조사하므로 원재료는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2) 연료비

㉗ 1987년 1년간에 가열로(加熱爐, 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 등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석탄류, 석유류, 방카C유, 기타 연료)의 금액을 기입한다.

㉘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3) 전력비

㉙ 전력비는 87년 1년간 구입 사용한 전력요금을 말하며 자가발전에 사용된 연료비(석탄, 유류 등)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연료비」에 포함한다.

㉚ 개인 사업체인 경우 가정소비분과 생산소비분이 각각 구분 가능할 경우에는 생산에 사용된 부분만 조사한다.

(4) 용수비

1987년 1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얼음공장에서의 용수비는 (1)재료비에 포함한다)

(5) 위탁생산비 (외주가공비)

가 위탁 사업체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수탁 사업체에 지불한 외주작업의 대가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에게 외주작업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도 포함한다.

나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료」는 본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수리유지비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 (수익적지출)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보고서상의 수선비 항목을 합하여 기입한다.

가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액」란에 포함 기입한다.

나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대체시킨 경우는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과 연간처분 및 손해액에 기입한다.

| 15. 내국소비세액 | | 천 | 억 | 백 | 억 | 십 | 억 | 억 | 천 | 만 | 백 | 만원 |
|------------|----------------------------------|---|---|---|---|---|---|---|---|---|---|----|
| ○ | 부가가치세 (매출세-매입세) | | | | | | | | | | | |
| ○ | 부가세 (특별소비세와 주세에 부가된 방위세, 교육세) 포함 | | | | | | | | | | | |
| ① | 부 가 가 치 세 | | | | | | | | | | | |
| ② | 특 별 소 비 세 | | | | | | | | | | | |
| ③ | 주 세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중 재화와 용역의 생산, 판매,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발생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로 구분 기입한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발생기준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기입한다.

㉡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상의 차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한다.

※ 과세특례자는 연간 공급가액(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중 제조업의 경우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방앗간), 양복점업 및 양장점업, 양화점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세율은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20/1,000이다.

㉢ 신문, 전매품(專賣品), 연탄 및 무연탄, 소금 등을 제조 또는 채광하여 원료용 또는 일반소비자용으로 출하하는 것은 면세된다. 단, 주된 산업활동이 면세업종이더라도 과세사업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신문사의 광고수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등)

㉣ 출하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0의 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負)의 수치(환급세액) “-”」가 될 수 있다.(이 경우는 숫자 앞에 “△” 표시하고 환급세액을 기입한다)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체(공장) 분만을 구분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 계산상의 공급가액(과세표준액)이란 매출액에 특별소비세와 주세,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와 교육세 등 간접세를 가산한 금액이다.

(2)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사치성품목, 소비억제품목, 고급내구성 소비재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석류, 귀금속, 모피, 골프용품, 특수화장품 등이 있다.(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록 참조)

(3) 주세

각종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주류 품목별 세율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부록 참조)

| 16 . 재고액 | | | | | | | | | | | |
|------------|------------|----|----|---|----|------------|----|----|----|---|----|
| | (1)연 초재 고액 | | | | | (2)연 말재 고액 | | | | | |
|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 ①완 제 품 | | | | | | | | | | | |
| ②반제품 및 재공품 | | | | | | | | | | | |
| ③원 재 료 | | | | | | | | | | | |
| ④연 료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① 완제품은 당해 사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출하(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하며 재고액평가는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반제품 및 재공품은 당해사업체가 추가가공을 요하는 미완성제품, 즉 조사기준시점 현재 출하할 수 없는 상태의 중간제품을 말하며, 반제품의 재고액에는 사용원자재비, 노동투입비 등이 포함된다.
- ③ 원재료 및 연료에는 당해 사업체의 소유분으로 작업상 외부에 보관중인 것도 포함되며 원재료 및 연료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한다.
 - 1987년 창설업체는 연초재고액이 없으며 연초재고액은 전년도(86년)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재고는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고액이 출하액에 비하여 너무과다 과소할 경우에는 재확인하고 그 사유를 적요란에 기재한다.

| 17 . 연간제품출하액 (매출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 | | | | | |
|----------------------------------|---------------------------|--|--|--|-------|----|----------|
| 일련 번호 |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 | | | 제 품 명 | ★★ | 수량 단위 |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1) 본 항목에서는 「 13항① 제품출하액 」과 「 16항 (1), (2)의 ①완제품의 연

- 초·연말재고액」에 일괄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 (2) 연간 총출하액 및 수출액은 제품매출명세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연초연말 재고액은 제품수불명세서상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3) 품목분류번호

- ㉠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8단 위 숫자」로 기입한다.(8단위 수치중 앞의 5자리는 “산업분류번호”이고 뒤의 3자리는 “품목분류번호”임)
- ㉡ 일반적으로 동일한 품목인 것처럼 표기되고 있더라도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공정 등에 따라서 달리 분류되므로 사업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출하품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분류하여야 한다.(전년조사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분류 타당성 재검토해야 함 → 품목분류표가 일부 개편됨)

< 예 시 >

① 원재료가 다른 경우

| | |
|---------------|------------------|
| 나무의자 33201111 | 면 장 갑 32154111 |
| 철재의자 38121113 | 가 죽 장 갑 32228112 |

② 성질이 다른 경우

| | |
|---------------|---------------|
| 흑백TV 38321111 | 이형철근 37121131 |
| 칼라TV 38321112 | 원형철근 37121132 |

③ 용도가 다른 경우

| | |
|-------------------|------------------|
| 여자용기성외의 제조업 32223 | 상업용 냉장고 38263111 |
| 소아용기성외의 제조업 32224 | 가정용 냉장고 38331111 |

④ 생산공정이 다른 경우

| | |
|--------------------|----------------------|
| 열연박판(보통강) 37121331 | 압연용 강괴(보통강) 37113111 |
| 냉연박판(보통강) 37122111 | 단조용 강괴(보통강) 37113121 |

- ㉢ 품목별 출하자료는 본 분류번호에 따라 전산처리하므로 품목별 분류번호의 정확한 기입은 본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 ㉣ 사업체의 생산품이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단위에 의하여 기입하고 품목에 대한 설명을 구체

적(원재료명, 용도 등)으로 기재한다.

(4) 제품명

㉠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사업체의 사용 명칭을 사용하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품목분류번호는 사업체 담당자(또는 생산부서 직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품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필요이상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① ...제품, ...용품, ...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② 제품의 부품을 규격별로 필요이상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 제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는 가급적 그 용도 등을 병기한다.

<예시>

자동차 차체 → 자동차차체(장난감용)

㉣ 제품명은 정식명칭을 기입하고 외국어나 특수품명 등 품목분류가 애매한 것은 품목설명을 명기한다.

<예시>

| | |
|---------------------|--------------|
| { 슬라브 (slab) (보통강) | { 사카린 (식용) |
| { 슬라브 (slab) (고탄소강) | { 사카린 (공업용) |
| { 기계부품 (식료품 가공기계) | { FeMn (망간철) |
| { 기계부품 (섬유용 기계) | { FeSi (규소철) |

㉤ 타사 출하분과 내부거래분은 구분 기입하고 내부거래분은 제품명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그 내용을 부기한다.

①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 → (타공장 이송)

② 고정자산으로 대체 → (자산대체)

③ 건설부문 등 타산업 활동부문에 자가사용 → (타산업 대체)

④ 비 광공업체로부터 수탁생산하여 위탁사업체에 인도 → (타산업수탁)

㉥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품출하액이 큰 품목순으로 기입하고 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 제품분류시 기타 품목으로의 분류가 불가피한 경우는 총 출하액의 5%

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는 출하규모를 감안 더욱 세분하여야 한다.

(5) 수량단위

- ㉠ 수량단위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의 단위와 서로 달라 지정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단위 환산표」에 의하여 그대로 환산하고, 단위환산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 정확한 환산이 되도록 한다.
- ㉡ 환산이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용단위로 조사하고 그 단위의 자세한 규격 및 설명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 ㉢ 산업 및 품목분류표상 수량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를 병기한다. (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 ㉣ 특히 유의할 것은 단위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로 정정하고 수량은 환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예 시〉

- ① 1분병이 190 ml인 콜라 219,000 상자(C/S : 24분)를 지정단위(kl)로 환산하면,

$$190(ml) \times 24(분) \times 219,000(상자) = 998,640,000(ml)$$

$$\text{그런데 } 1kl = 1,000\ell = 1,000,000ml$$

$$\text{따라서 } 998,640,000(ml) \div 1,000,000(ml) = 999(kl)$$

- ② 연탄(22공탄) 5,560,000장을 지정단위(M/T)로 환산하면, 22공탄 278장=1M/T(25공탄 208장, 31공탄 133장=1M/T)

$$\text{따라서 } 5,560,000(장) \div 278(장) = 20,000(M/T)$$

- ③ 합성섬유직물(폭36인치) 500,000yd(야아드)를 지정단위(천㎡)로 환산하면,

$$m^2 = yd(길이) \times inch(폭) \times 0.0254(m) \times 0.9114(m)$$

$$= 500,000 \times 36 \times 0.0254 \times 0.9114 = 418,050(m^2) \rightarrow 418(천m^2)$$

$$\left\{ \begin{array}{l} 36\text{인치 } 1yd = 0.8361m^2 \\ 44\text{인치 } 1yd = 1.0219m^2 \end{array} \right.$$

<참고> 주요단위 설명

- M / T (메트릭톤) = 1,000 kg ○ 1 L / B (파운드) ≒ 0.454 kg
- 족(足) = 켄레 ○ C / S = 상자 ○ 착(着) = 벌

| (1)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 (수출액 포함) | | | | | | | | |
|----------------------------|---|---|----|----|----|---|----|-----|
| 수 | 량 | 조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의 합계액은 13항 ①의 제품출하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나)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은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을 합한 금액이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매출액은 제외한다.

|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 | | | | | | | | |
|-----------------|---|---|----|----|----|---|----|-----|
| 수 | 량 | 조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원 |
| | | | | | | | | |

- (가) 자기명의 수출, 위탁수출 및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제품의 수출을 합산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원” 화로 기입하여야 한다.
(외화 금액표시의 경우는 수출 당시의 외화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나) 국내의 제조업체 (수출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반제품 및 부품을 공급했을 경우 수출액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참고>

- (가) 자기명의 수출
수출입업 허가업체가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내) 위탁수출

자기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입허가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타업체(수출입업 허가업체 :수출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출한 경우의 수출면장(또는 내국신용장)금액을 말한다.

(대) 내국신용장 수출

자사가 직접 외국상사와 수출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타 수출업체(비광공업체에 한함)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제2, 3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거 수출용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의 공급액을 기입한다.

(태) 기타 약정에 의한 수출

-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승인서와 임가공 및 기타 약정에 의거 비광공업체에 공급한 수출용 제품의 공급액을 기입한다.(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② 계약서상 수출용품이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자사제품이 수출품임을 공급자가 확신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수출용품으로 간주한다.

|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 | | | | | | | |
|-------------------|---|---|---|---|---|---|---|
| 수 | 량 | 천 | 억 | 백 | 억 | 십 | 억 |
| | | | | | | | |

(개) 연초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1)의 ① 완제품의 연초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내) 제품수불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 (4) 품목별 제품의 연말 재고액 | | | | | | | |
|--------------------|---|---|---|---|---|---|---|
| 수 | 량 | 천 | 억 | 백 | 억 | 십 | 억 |
| | | | | | | | |

(개) 연말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2)의 ①완제품의 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내 제 품 수 불 명 세 상 의 금 액 을 기 입 한 다.

| | |
|-----------------|---------|
| (5) 단위당 출하가격(원) | |
| 최 저 단 가 | 최 고 단 가 |
| | |

개 금 액 을 수 량 으 로 나 누 (평 균 출 하 가 격) 은 단 위 당 출 하 가 격 의 최 저 단 가 와 최 고 단 가 범 위 내 의 가 격 이 어 야 한 다.

내 수 량 과 금 액 의 관 계 와 단 위 당 출 하 가 격 이 어 느 정 도 타 당 하 더 라 도 지 정 된 수 량 단 위 를 사 용 하 지 않 았 을 경 우, 품 목 별 전 체 물 량 을 집 계 분 석 하 는 데 큰 착 오 가 발 생 되 니 단 위 당 출 하 가 격 은 반 드 시 지 정 단 위 에 대 한 가 격 이 어 야 한 다.

| 18.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 | | | | | | | |
|--------------------------|---------------------------|-------|--------|--------|--------|---|--------|--------|---|
| 일련 번호 | 품목분류번호 (산업 및 품목분류표 참조) | 제 품 명 | 천 억 | 백 억 | 십 억 | 억 | 천 만 | 백 만 | 원 |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1) 본 항목은 「 13 항 ③의 수탁제조(임가공)수입액 」을 제품별로 구분 기입한다.
- (2) 품목분류는 별책 「 산업 및 품목분류표 」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반드시 8.단위 숫자로 기입한다.
- (3) 동일 품목이라도 제품을 매출하는 경우와 임가공 생산하는 경우의 「 산업 및 품목분류 」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예 시 >

| | | | |
|---|-------------------|---|--------------------|
| { | 쌀(제품출하) 31161111 | { | 서적(출판) 34213111 |
| | 쌀(임가공도정) 31192100 | | 서적(임가공인쇄) 34221100 |

| 19 . 건설가계정 |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백만원 | | | | | |
|-------------|----------------------|--|--|--|--|--|
| | | | | | | |
| ① 연 간 증 가 액 | | | | | | |
| ② 연 간 감 소 액 | | | | | | |
| ③ 연 말 잔 액 | | | | | | |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기계 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① 연간증가액

1987.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등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1년간 합계액을 기입한다.

② 연간감소액

1987.1.1 ~ 12.31 일 사이에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③ 연말잔액

1987.12.31 현재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원가 또는 비용의 누계액으로서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 연간 감소액은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신규취득액」과 「중고취득액(토지제외)」합계와 같거나 적어야 한다.
- 건설가계정(시설가계정, 미착기계계정 등 포함)이 설정된 사업체만 조사한다.

| 20 . 유형고정자산 | | | | | | | | | | |
|----------------------|------------------|----------------|------------------|----------------|------------------|----------------|------------------|----------------|---------------------------|----------------|
| | (01) 연간 신규취득액 | | (02) 연간 중고취득액 | | (03)연간처 분및손해액 | | (04) 연간 감가상각액 | | (05) 연 말 총액 (미상각잔액) | |
| | 천백십 억 | 천백 억 만 원 | 천백십 억 | 천백 억 만 원 | 천백십 억 | 천백 억 만 원 | 천백십 억 | 천백 억 만 원 | 천백십 억 | 천백 억 만 원 |
| ①토 지 | x | x | x | | | | | x | x | x |
| ②건물및구축물 | | | | | | | | | | |
| ③기계장치, 공 구,기구, 비품 | | | | | | | | | | |
| ④차량, 선박및 운 반 구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1)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선박 및 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이상의 내구성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 (2) 기존 고정자산의 경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은 제외한다.(수익적 지출)

①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 사택대지, 운동장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 개량비[정지, 매립(埋立)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

②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은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조선대(造船臺), 송유관 등을 말한다.

③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와 반사로, 가열로, 용광로

와 공구·기구·비품 등을 포함한다.

④ 차량·선박 및 운반구

자동차·철도궤도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傳馬船),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 운반구 및 항공기 등을 말한다.

(01) 연간 신규 취득액

연간 신규 취득액이라 함은 1987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신규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02) 연간 중고 취득액

신규 취득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말하며 토지의 취득은 중고 취득으로 간주한다. 외국으로부터 중고품취득은 신규취득으로 간주한다.

(토지에서는 정지, 매립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

(03) 연간 처분 및 손해액

1987년 1년간에 매각, 양도(讓渡),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가격의 감소는 제외된다.

(04) 연간 감가 상각액

반드시 1987년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만 기입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액누계액 또는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累計額)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05) 연말총액

1987.12.31 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미상각 잔액을 말한다.

<유의사항>

㉠ 장부가액을 기입하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 임차 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해 준 것은 포함한다.

㉢ 87년도 창설업체는 토지, 건물, 기계,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의 중고 또는 신규취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임차사용하는 경우는 적요란에 임차상황을 기입한다.

㉣ 유형고정자산의 (01)연간 신규 취득액과 (02)연간 중고 취득액(토지 취득은 제외)의 합계액은 19항 건설가계정의 (2)연간감소액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해 (01) + (02) - (03) - (04) ≤ (05)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해 유형고정자산의 연초총액은 조사하지 않는다.

| 21. 동일기업내 타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 | | | |
|---------------------------|--------------|---------------|-------|------|
| 일련 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 타공장(사업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01 | | | | |
| 02 | | | | |
| 03 | | | | |

동일기업내에 산하공장(사업체)이 2개이상 있을 경우에 각각의 공장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되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 사업체 고유번호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둔다.

<예시>

“금강산업주식회사”의 산하공장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있고 각 공장에서 본 항목을 기입할 경우의 예시를 보면

(1) 서울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 일련 번호 | 사 업 체 고유번호 | 타 공 장 (사업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01 | 2202455 | 대 구 공 장 | 대구 북구 침산1동 69 | 763-4953 |
| 02 | 3404282 | 대 전 공 장 | 충남대전 중구 도마동 35 | 45-5133 |
| 03 | 2301241 | 광 주 공 장 | 광주 동구 지원동 26-3 | 23-7635 |

(2) 대구공장에서 기입할 경우

| 일련 번호 | 사 업 체 고유번호 | 타 공 장 (사업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01 | 1113245 | 서 울 공 장 |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3 | 696-2209 |
| 02 | 3404282 | 대 전 공 장 | 충남 대전 중구 도마동 35 | 45-5133 |
| 03 | 2301241 | 대 구 공 장 |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1동 69 | 763-4953 |

(3) 대전, 광주공장에서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 (1) 본 조사표에 합산여부 | | (2) 공 장 별 종업 원 수 (명) | (3) 공 장 별 출하액 (백만원) |
|-----------------|-------|-------------------------|------------------------|
| ① 합 산 | ② 제 외 | | |
| | | | |
| | | | |
| | | | |

(1) 본 조사표에 합산여부

당해 공장분만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② 제외란에 각각 “○” 표시하고 구분작성이 불가능하여 타공장을 합산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①합산란에 각각 “○” 표시한다.

(2) 공장별 종업원수

공장(사업체)별로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업원수를 기입한다.

(3) 공장별 출하액

공장(사업체)별로 출하액을 기입한다.

적요 : 적자요인, 품목분류의 문제점, 위탁사업체명, 합산작성 내용등의 참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본란은 조사표상의 조사내용이 일반적인 조사원칙이나 사업체의 결산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차후 조사표 내검 및 전년도와의 수준대비 등의 자료점검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용도, 원재료, 성질 등의 사항

(2) 품목의 수량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에 환산방법

(3) 조사자료가 전년도와 수준증감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요인

- (4) 적자일 경우 그 요인
- (5)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 (6) 유형고정자산의 임차상황, 부지 및 건물면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
- (7) 외국어나 전문용어로 기입한 제품의 설명(원재료, 용도, 성질, 생산공정 등)
- (8) 사업체 경영에 있어 전년도와의 큰 변화사항(시설확장, 생산증대 및 감축, 종업원의 실태 등)
- (9) 타공장분을 합산 작성한 경우 각 공장별 생산제품명 및 담당공정
- (10) 기타 그 사업체의 특이한 사항을 기입한다.

나. 조사표〔Ⅱ〕의 작성요령

- (1) 일반적 유의사항
 - ㉠ 본사조사표(Ⅱ)는 본사가 산하 공장과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타지역에 1개이상의 관할 사업체(공장)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 조사내용은 본사(본점)분에 한해서 작성하며, 산하공장분을 포함 합산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 신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이 없는 사업체라도 조사표〔Ⅰ〕에 의하여 조사해야 한다.
- (2) 항목별 작성요령
 - ※ 조사표(Ⅰ)과 공통항목은 조사표(Ⅰ)의 작성요령에 준한다.

| | |
|----------------------------------|--|
| 13. 사업체(공장별)의 조사표 작성가능 여부 | |
| (해당란에 ○표) | |
| ① 공장에서만 가능 | |
| ② 본사에서만 가능 | |
| ③ 모두 가능 | |

본 항목은 조사표〔Ⅰ〕 즉 공장(사업체)용 조사표의 작성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어느 한곳에서만 “○” 표 한다.

| 14. 동일그룹 (소속모기업)내 계열기업명 및 소재지 | | | | | | |
|-------------------------------|---------|------|-----|------|----------------|----|
| 일련 번호 | ★★기업체번호 | 기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주된경제활동 (업종) | 비고 |
| 01 | | | | | | |
| 02 | | | | | | |
| 03 | | | | | | |

- (1) 동일그룹(기업군)에 속한 계열기업을 모두 기입한다.(주력기업은 비고란에 표시)
- (2) 개별사업체(공장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업체에 관한 사항임에 유의한다.
- (3) 계열기업체 번호는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4) 주된 경제활동은 주요업종을 기입한다.(예, 건설업, 무역업, 의류제조업등)
- (5)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사표의 뒷면에 이어서 기입한다.

| 15. 동일기업내 관할사업체명 및 사업내용 | | | | | |
|-------------------------|----------|------|-----|------|-----------|
| 일련 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주요 제품명 |
|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1) 종업원수(명) | (2) 제품출하액 (백만원) | (3) 상품매출액 (백만원) | (4)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백만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1)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모든 산하공장에 대한 사항을 기입한다.
- (2)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 명부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이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둔다.
- (3) 제품·상품매출액은 구분하여 기입한다.
- (4)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은 각 공장별 유형고정자산의 1987.12.31 현재의 장부상 미상각 잔액을 기입한다.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

1. 일반적인 사항

- (1) 사업체 별로 정확하게 조사표〔Ⅰ·Ⅱ〕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 (2) 연관항목의 계수가 일치하는지, 적자경영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 (3) 조사표상의 행정구역 분류부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와 일치시킨다.
- (4) 누락 및 타 시·도로부터의 전입사업체 고유번호는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누락 및 전입사업체 명부를 별도로 작성,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에 통보, 신규번호를 부여받아 기입한다.
- (5) 조사표는 동·읍·면별 사업체 명부상 일련번호 순으로 철하되 본사용 조사표(Ⅱ) 및 별첨 조사표(합산조사된 사업체의 조사표 사본)는 뒷부분에 간지를 넣어 구분 합철한다.

2. 연관항목별 심사요령 (조사표〔Ⅰ〕기준)

가. 조사표〔Ⅰ〕

- (1) 4항 창설년이 '87년이면 16항 (1)연초 재고액은 있을 수 없으며 20항 유형고정자산 (1)신규나 (2)중고 취득액이 있어야 한다.(단, 임차 사용중일 경우에는 없을 수 있음)
- (2) 6항 경영조직이 ①회사법인일 경우에는 7항의 자본금(또는 출자금)이 있어야 하고, 11항 ①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③개인일 경우에는 위 자본금이 없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②기타 법인은 자본금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 (3) 12항 연간급여액은 11항 종업원수란의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와 대비하여 급여액 수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①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액 / 합계 ÷ 월평균 종업원수 ÷ 조업월수
② 월평균 급여액 수준은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수준이 타당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 (4) 14항 연간 주요 생산비중 ①재료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13항, 17항의

제품출하액이 있어야 하고, ⑤위탁 생산비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생산품도 제품출하로 간주하여야 한다.

- (5) 19 항 건설가계정의 ②연간 감소액은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01) 신규와 (02) 중고(토지취득액은 제외) 취득액과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 (6) 8 항 부지 및 건물면적에서 ①부지가 있고 ②건물 밀면적과 ③건물연면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7) 13 항 ①제품출하액이 있을 때는 17 항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하며, ③수탁제조 수입액이 있으면 18 항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이 있어야 한다.
- (8) 17 항 (1) 품목별 제품 총출하액의 합계는 13 항 ① 제품출하액과, 17 항(3) (4) 품목별 제품 연초·연말 재고액의 합계는 16 항 (1) 연초재고액 및 (2) 연말 재고액의 ① 완제품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 (9) 17 항의 (3) 품목별 제품의 연초재고액은 (1) 품목별 제품의 총 출하액과 (4) 품목별 제품의 연말재고액의 합계보다 많아서 안된다.
- (10) 15 항 부가가치세액은 13 항 합계액의 1~8% 이내가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免稅)업종(연탄, 소금, 전매품, 신문), 0세율(零稅率)을 적용받은 수출업체인가를 확인한다.
- (11) 17 항의 품목별 내역에서 각 품목의 단위당 평균 출하액은 (5) 단위당 출하가격 범위내의 가격이어야 한다. 특히 수량 단위가 지정단위와 달라 정정할 때에는 단위만 정정하지 말고 반드시 수량도 지정단위에 맞게 환산하여야 한다.
- (12) 17 항 (2) 품목별 제품의 수출액은 (1) 품목별 제품총출하액과 같거나 더 적어야 한다.
- (13) 17 항의 품목분류가 「~제품」 「~류」 「기타품목」 등 너무 포괄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된다.
- (14) 수입부문인 13 항 합계와 16 항 완·반제품의 재고증감액(16 항 재고액 증(2)의 ①+②의 금액에서 (1)의 ①+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비용부문인 14 항 연간주요생산비 합계와 12 항 연간급여액의 합계 및 20 항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의 합계를 합한 금액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착오요인이 없는지 확인 보완한다.

(가) 수입부문 (출하액)

- ① 매출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매출원가로 기입한 경우
- ②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이송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③ 직매점이나 보관용 창고로 이송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④ 고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⑤ 건설업등 타산업 활동부문으로 대체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⑥ 일부 제품출하분을 누락시킨 경우

(나) 비용부문 (생산비)

- ① 실제생산에 투입된 사용액이 아니고 구입액을 기입한 경우 (미사용 원재료 포함)
- ② 다단계 생산공정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의 중간 원가계산 재료비가 중복 산입된 경우 (제조원가 보고서상 원재료 타계정 대체액)
- ③ 관세환급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④ 조사표에 명시된 6개항목 이외의 비용 (영업외 비용등) 을 포함한 경우

나. 조사표 [Ⅱ]

- (1) 조사표 [Ⅱ] 에 의한 조사가 타당한 사업체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2) 조사표 [Ⅰ] 의 심사요령에 준한다.

2) 유고 부호 및 종류

| 부호 | 02 | 03 | 04 | 06 | 08 | 09 | 10 | 11 | 12 | 14 |
|----|----|----|----------|----------|----|-----|----------|----|-----------|----|
| 내용 | 전출 | 휴업 | 기준 미달 | 소재 불명 | 폐업 | 대상의 | 조사 불능 | 합산 | 명부상 중복 | 기타 |

- ① 기준미달 : “'87년 12월말 현재 종업원수” 및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업원수” 모두 4인 이하인 사업체
- ② 대 상 의 : 광업, 제조업 사업체가 아닌 타산업(건설업·운수업 등)인 경우
- ③ 합 산 : (동일기업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존재할 경우) 장부 미비치 등으로 부득이 동일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포함 조사되는 경우로서 합산한 조사표의 사본을 반드시 회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휴업과 폐업의 구분 : 생산설비의 완전 철거 등으로 재가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만 폐업으로 정리, 가동은 하지 않으나 생산설비가 남아 있다면 휴업으로 처리해야 함.
- ⑤ 명부상 중복 : 사실상의 1개 사업체가 명부에 2개 이상으로 기입된 경우.

- 3) 전출사업체의 처리(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동일 요령으로 처리)
 동·읍·면, 구·시·군, 시·도는 관내의 전출 사업체를 파악하여 해당 동·읍·면(동일구·시·군내의), 구·시·군(동일시·도내의), 시·도로 통보하고 차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구·시·군, 시·도는 전입된 사업체 및 관내이전 사업체가 빠짐없이 조사되도록 조치하고 조사표류 접수시 조사여부 및 고유번호 이기 상태등을 확인한다.

라. 추가(전입, 누락 및 신규) 사업체 등재

추가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사용 사업체 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추가 및 전출사업체 명부도 작성하여 상급기관에서 고유번호 확인 기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추가사업체란 ① 전입사업체는 '87년 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로서

타 행정구역에서 전입되어 온 경우이며, ② 누락사업체는 역시 '87년 중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로서 명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이고, ③ 신규사업체는 '88년도에 신규창설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체는 빠짐없이 발굴하여 명부 하단 여백이나 간지를 첨부하여 양식에 따라 등재한다.

특히, 전입사업체의 경우 비고란에 전입전 소재지를 필히 기입하고 행정구역 착오로 인한 경우도 전입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전입과 누락사업체는 조사표작성을 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체는 사업체명부에만 등재한다.

2) 사업체 고유번호

전입사업체의 경우는 통보된 자료에 의하고 누락 및 신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해당 경제기획원 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도에서 기입한다

3) 일련번호

명부에 이미 부여된 일련번호 맨끝 번호에 이어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전입사업체의 유고발행

일단 전입으로 추가 기입한 후 유고 처리한다. 부호는 최종 유고 번호를 기입하고 사유를 명기한다.

5) 변동 부호

전입의 경우 '01', 신규의 경우 '05', 누락의 경우 '13' 을 명부의 유고 부호란에 맞도록 기입한다.

마. 행정구역 개편 및 착오에 의한 타 동·읍·면 소재 사업체 처리

행정구역 개편(시 승격지역, 분동지역)으로 인하여 명부상 실제 행정구역이 다른 사업체가 혼재한 경우에는 구·시·군에서 개편된 행정구역별로 조정 배부하고, 그외 착오 등으로 다른 동·읍·면 소재 사업체가 등재된 경우는 전출로 처리하되 명부를 발취 기입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바. 정리 및 보완요령

- 1) 타 사업체에 착오 기입하거나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 변동사항의 정정은 변경된 부분만 횡선으로 긋고 상단여백에 정정한다.
- 3) 전입·누락, 신규등의 사업체 추가는 흑색(청색)을 사용한다.
- 4) 유고사업체는 적색으로 유고년월과 유고부호, 비고란만 정리한다.

[참 고]

명부항목 중 “조직”과 “구분”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것임.

| | | | |
|--------|---------|---------|----------------|
| (경영)조직 | 1. 회사법인 | (사업체)구분 | 1. 본사(공장과 분리된) |
| | 2. 기타법인 | | 2. 본사·공장(통합) |
| | 3. 개인 | | 3. 공장(본사와 분리된) |
| | | | 4. 단독업체 |

3.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작성

가. 전입(01)과 전출(02), 신규(05), 누락(13)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읍·면에서 작성.

나. 사업체 고유번호

1) 전입사업체

동일 구·시·군내에서 동·읍·면간에 전출입한 경우 동·읍·면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동일 시·도내에서 구·시·군간에 전출입한 사업체의 경우는 시·도에서 이전 전 소재지의 사업체 명부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를 찾아 이기하여야 한다.

2) 누락 및 신규사업체

새로 발견된 누락 및 신규업체는 시·도에서 일괄 기입한다. 이때, 시·도에서는 본 추가사업체 명부를 취합하여 해당 「경제기획원 지방통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다. 생산품명

조사표상의 「제품명」란의 주요생산품명을 제품출하가 없는 수탁생산(임가공) 업체는 임가공품목을 각각 1~2개 기입

라. 구 분

전입, 전출, 누락, 신규의 해당란에 “○” 표 한다.

마. 비 고

전입(전출) 사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전(전출후) 소재지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4.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가. 작성기관

구·시·군, 시·도

나. 기입요령

1) 행정구역명

구·시·군 작성시는 동·읍·면명을, 시·도 작성시는 구·시·군명을 기입한다.

2) 조사표수

가) 조사대상 사업체 중 유고사업체를 제외한 실제로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체의 조사표수를 [I] [II]로 구분 기입한다.

나)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 [I]과 [II]가 동시에 작성된(본사 조사표 일부만 작성) 경우에는 조사표 [II]는 별첨 조사표로 기입

3) 조사대상 사업체수

명부상 대상 사업체와 누락, 전입 등 추가사업체수를 합한 수이며 동·읍·면별 사업체 명부표지상의 대상 사업체 수의 합과 같다.

4) 유고 사업체수

사업체 명부상의 사업체 중 유고 사업체로서 유고 유형별로 구분 기입한다.

5) 별첨 조사표수

타 사업체에 합산된 사업체의 경우 합산한 조사표(조사표 [I]의) 사본이나, 1개 공장에서 조사표 [I]과 [II]를 동시에 작성(조사표 [II]는 불완전 조사표)한 경우의 조사표 [II]와 기타 조사된 조사표로 계산할 수 없는 조사표수를 기입한다.

5. 합산조사 사업체명부 작성

가. 작성기관

동·읍·면

나. 편 찰

구·시·군에서는 동·읍·면 분류 부호순, 시·도에서는 구·시·군부호순으로 편찰

다. 기입요령

합산 조사한 사업체 관할 동·읍·면 뿐만 아니라 합산 조사된 사업체 관할 동·읍·면에서도 각각 작성한다.

- (1) 행정구역 분류번호, 명부상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 명부에서 이기하고 관외의 사업체에 관하여는 알 수 있는 항목만 기입한다.
- (2) 조사표 작성여부
관내의 사업체가 타사업체를 합산하여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만 “○” 표시한다.
- (3) 소재지
합산한 사업체는 물론 합산된 사업체의 소재지도 조사 기입한다.
- (4) 조치내용
 - ㉠ 합산조사 사업체 명부작성의 목적은 조사표 작성시 다공장 소유기업의 산하 공장분의 중복작성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시·군, 시·도에서는 관내의 합산조사 사업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합산 조사된 조사표의 처리
 - ① 장부조직상 사업체별 구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하액의 비중에 따라 주된 사업체 소재지역에서 조사된 것으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유고(합산된 사업체)로 처리한다.(유고처리한 사업체 관할 동·읍·면에서는 합산작성된 조사표 사본을 회수하여 별첨조사표로 첨부)
 - ② 공장별 구분 작성이 가능하면 각 공장별로 분리 작성한다.
(예) A 공장 : B 공장분 합산 작성, B 공장 : B 공장분만 작성했을 경우, (A 공장-B 공장)하여 A 공장분만 작성한다.

Ⅵ. 조사요령 요약 (〔I〕표기준)

1.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 (1) 조사는 조기에 착수하여 기간내에 완료한다.
- (2) 본 조사는 조사항목이 복잡하므로 대규모 사업체는 자계식(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소규모 사업체에는 타계식(조사원의 면접조사 작성)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 (3) 조사 순서는 본사등 타 지역에서만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난 다음, 자계식으로 작성이 가능한 사업체에 조사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면접조사 가능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기 배부 사업체의 조사표를 회수한다.
- (4) 특히 「17항 연간 출하제품의 품목구분」에 관하여는 조사표 배부시에 사업체 담당자와 사업체 명부상의 전년조사 품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현행 산업 및 품목분류 기준에 적합하게 구분, 기입하도록 한다.
- (5) 본 조사표 작성 담당부서는 사업체의 경리, 또는 기획부서이며, 부록1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를 참조한다.
- (6) 본 조사의 1차 우선순위는 품목별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등이다.
- (7) 본 조사는 조사단위를 개개 사업체(공장 또는 광산)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서 산하 사업체분을 작성할 때는 각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 (8) 품목분류번호 및 수량단위는 반드시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9) 사업체 명부상에 등재 누락된 사업체도 발굴, 조사하여야 한다.
- (10) 조사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전의 기입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한다.(칼로 긁거나 수정액 사용 불가)

2.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 (1) 본 조사항목의 개념과 사업체의 사용개념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조사개념에 의하여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행정구역 분류번호, 일련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기업체번호, 그룹번호는 사업체명부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 (3) 금액단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므로 「자리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단위미만은 4사5입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 기입한다.
- (4) 각 항목별 연관계수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 (5) 일고 종업원은 연인원을 기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평균 종업원수로 환산 기입한다.

3. 산업 및 품목분류 요령

- (1)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모든 품목의 분류번호는 8단위로 기입한다.
- (2) 단위가 「※」인 품목은 조사표의 “수량단위”란에는 「※」로, “수량”란에는 수량과 사업체 사용단위를 기입한다. (실제 품목분류 착오인 경우 재조사를 방지하기 위함)
- (3) 수량은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조사하고 규격 또는 품위의 차이가 큰 품목은 가급적 분리하여 기입하며 그 규격 또는 품위를 명시한다.
- (4) 분류의 일반원칙은 ①원재료, ②성질, ③용도, ④생산과정에 따라 품목분류번호가 다르므로 유의한다.
- (5) 품목분류번호를 찾기 어려울 때는 품목명칭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부록인 「색인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6)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번호는 사업체명부의 분류번호를 참고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책자에 의해 분류 기입한다.

4. 조사표 검토요령

- (1) 조사 누락된 사업체가 없는지 검토한다.
- (2)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조사표〔Ⅰ〕 또는 〔Ⅱ〕를 바르게 선택하여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조사표 배부방법 참조)
- (3) 조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한다.
- (4) 각 항목의 연관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5) 「Ⅳ. 조사표 심사 및 정리요령」과 부록 2 조사표〔Ⅰ〕의 심사요령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 부록 1 >

사업체 결산서 항목과 조사항목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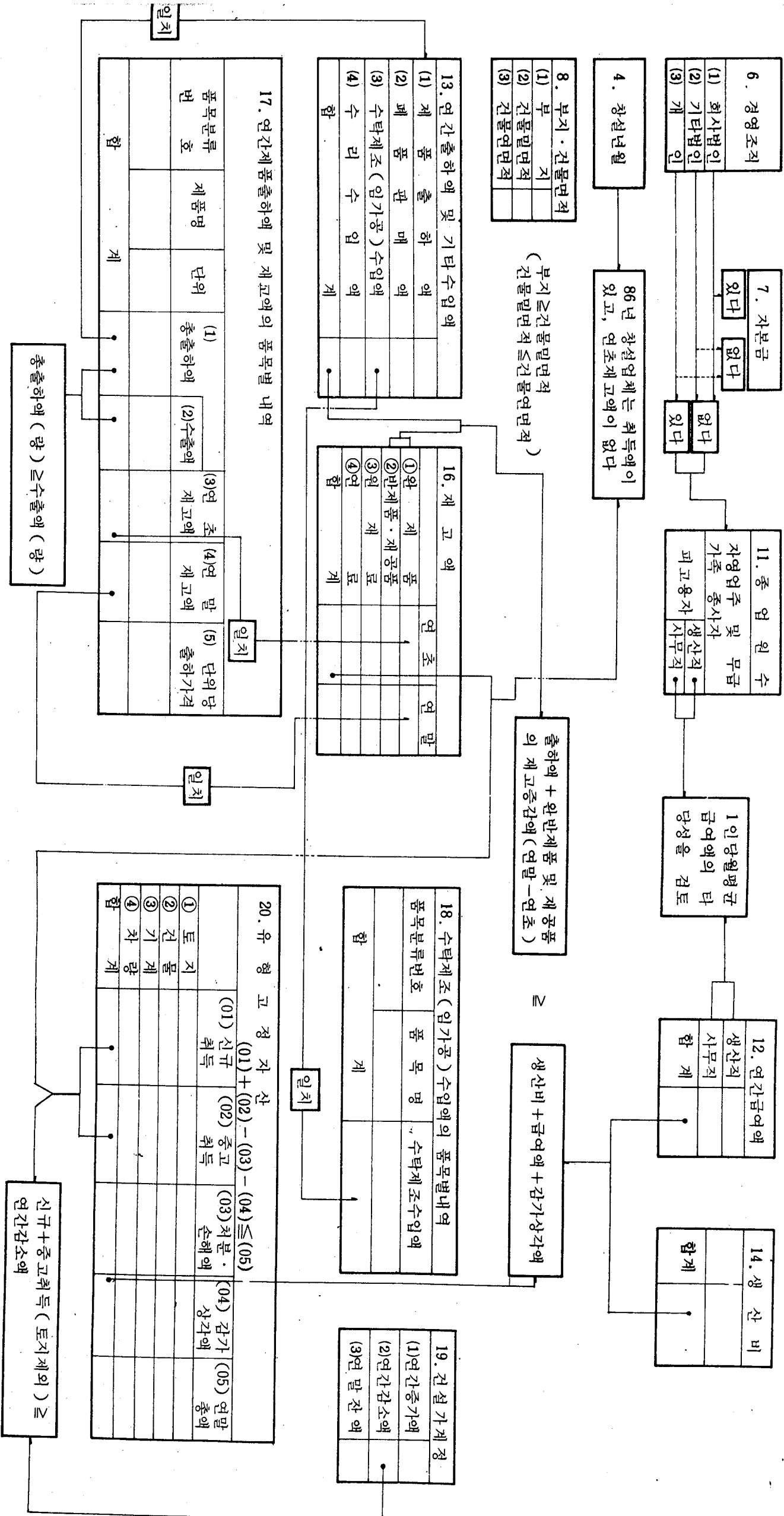
| 사업체 결산서 항목 | 조사항목 |
|--|---------------------------------|
| I. 대차대조표 | |
| 1.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 16 항 연초·연말 재고액 |
| 2.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 20 항 유형고정자산 |
| 3. 이연자산 | |
| 4. 자기자본 { 자본금 잉여금 | 7 항 자본금 |
| 5. 부채 { 고정부채 유동부채 | |
| II. 손익계산서 | |
| 1.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이익) | 13 항 출하액 |
| ※ 매출원가 = 당기 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재고액 = 완제품재고액 + 반제품· 재공품재고액 |
| ① 제품매출액 | 13 항 ① 제품출하액 |
| ② 상품매출액 | 13 항 ⑤ 상품매출액 |
| ③ 폐품판매액 | 13 항 ② 폐품판매액 |
| ④ 수탁제조 (임가공) 수입액 | 13 항 ③ 수탁제조 수입액 |
| ⑤ 수리수입액 | 13 항 ④ 수리수입액 |
| 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① 보수·급료·임금·수당·상여금... | 12 항 급여액 (사무직) |
| ② 감가상각비 | 20 항 유형고정자산(04) 감가상각액 |
| ③ 용수비·전력비·연료비·외주 | |

| 사업체 결산서 항목 | 조사 항목 |
|--|---------------------|
| 가공비·수선비 | 14 항 생산비 |
| ④ 기타비용 | |
| 3. 영업이익 = 매출이익 -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 |
| 4. 영업외수익 | |
| ① 수입임대료 | 13 항 출하액 ⑦ 임대수입액 |
| ② 기타 영업외수익 | |
| 5. 영업외비용 | |
| 6. 경상이익 = 3 + 4 - 5 | |
| 7. 특별이익 | |
| 8. 특별손실 | |
| 9.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 6 + 7 - 8 | |
| 10. 당기순이익 = 9 - 법인세 · 사업소세 · 주민세 · 방위세 등 | |
| Ⅲ. 제조원가보고서 | |
| 1.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보조재료비) | 14 항 생산비 |
| 2. 노무비 (급료 · 임금 · 수당 · 상여금) | 12 항 급여액 (생산직) |
| 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
| 4. 제조비용 | |
| ① 전력비 | 14 항 생산비 ③ 전력비 |
| ② 수도료 | " ④ 용수비 |
| ③ 광열비, 연료비 | " ② 연료비 |
| ④ 감가상각비 | 20 항 유형고정자산 ④ 감가상각액 |
| ⑤ 외주가공비 | 14 항 생산비 ⑤ 위탁생산비 |
| ⑥ 수선비 | 14 항 생산비 ⑥ 수리유지비 |
| ⑦ 기타 제조비용 | |
| 5. 당기총제조비용 = 1 + 2 + 3 + 4 | |
| 6. 타계정 대체액 | |
| 7. 당기제품 제조원가 = 5 - 6 + 기초재 공품재고액 - 기말재공품재고액 | |

| 사업체결산서항목 | 조사항목 |
|-----------------------|----------------------------|
| IV. 부속명세서 | |
| 1. 임금대장·근무상황표 | 11 항 종업원수 |
| 2. 상품매출명세서 | 13 항 ⑥ 상품매출원가 |
| 3. 재고자산명세서 | 16 항 재고액 |
| 4. 제품매출명세서 | 17 항 연간제품의 품목별 출하액 (량) |
| 5. 제품수불명세서 | 17 항 품목별 재고액 (량) |
| 6. 고정자산명세서 | 20 항 유형고정자산 |
| | 19 항 건설가계정 |
| 7. 감가상각 총당금 명세서 | 20 항 유형고정자산 (04) 감가 상각액 |

조사표 I 실시요령도

<부록 2>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

자료처리요령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차 례

| | |
|------------------------------|----|
| I. 자료처리 개요 | 3 |
| 1. 목 적 | 3 |
| 2. 기본방향 | 3 |
| 3. 처리과정 및 일정표 | 4 |
| II. 과별 처리요령 | 5 |
| 1. 산업통계과 | 5 |
| 가. 조사표류 접수 | 5 |
| 나. 합산사업체명부 조치 | 6 |
| 다. 요계표 검토 | 7 |
| 라. 조사표류 인계 | 7 |
| 2. 자료처리과 | 7 |
| 가. 사업체명부 정리 및 조사표 정리보완 | 7 |
| 나. 요계표 집계 | 9 |
| (1) 내용검토 | 9 |
| (2) 천공 및 검공 | 9 |
| (3) 전산내검 | 10 |
| (4) 수준점검표 및 결과표 제표 | 11 |
| 다. 조사표 집계 (조사표 I 기준) | 11 |
| (1) 내용검토 | 11 |
| (2) 편 철 | 11 |

| | |
|-------------------------------|----|
| (3) 부호기입 | 12 |
| (4) 천공 및 검공 | 12 |
| (5) 전산내검 | 12 |
| (6) 수준점검표 제표 | 29 |
| (7) 결과표 제표 | 29 |
| 라. 자료처리 및 내용심사용 부대자료 준비 | 33 |

Ⅲ. 결과표 양식(별책)

| | |
|-------------|----|
| 부호일람표 | 35 |
|-------------|----|

I. 자료처리 개요

1. 목 적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완료한 1987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조사표 및 관련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집계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용하고자 한다.

2. 기본방향

- 가. 본 업무에 관여하는 실무담당자(기획 및 분석, 조사관리, 프로그램, 천공 및 심사부문 등)는 본인이 수행할 업무내용 및 각 부문에서 수행되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므로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다.
- 나. 자료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므로서 연내 자료처리를 완료하여 조기집계 공표한다.
- 다. 품목별 조사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자료의 정도를 제고한다.
- 라. 각 과정별 자료처리일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처리과정 및 일정표

| | 조 사 표 | 요 계 표 |
|------------------------------|----------------|--------------|
| 조 사 표 류 접 수 | 6.20 ~ 7.2 | 6.20 ~ 7.2 |
| 내 용 심 사 · 정 리 및 조 사 표 편 철 | 6.20 ~ 7.9 | - |
| 부 호 기 입 | 7.11 ~ 7.23 | - |
| 천 공 및 검 공 | 7.25 ~ 9.24 | 7.11 ~ 7.16 |
| 전 산 내 검 | 7.25 ~ 9.30 | 7.11 ~ 7.23 |
| 수 준 점 검 표 제 표 | 10.4 ~ 10.8 | 7.25 ~ 7.30 |
| 수 준 점 검 | 10.10 ~ 12.31 | 8.1 ~ 9.10 |
| 결 과 표 제 표 | 1.4 ~ 1.21 | - |
| 결 과 분 석 | 1.23 ~ 2.18 | 9.12 ~ 9.30 |
| 공 표 · 보 고 서 발 간 | 88.2.20 ~ 3.31 | 10.4 ~ 10.29 |

Ⅱ. 과별 처리요령

1. 산업통계과

가. 조사표류 접수

- (1) 각 시·도로부터 접수하는 조사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사표〔Ⅰ, Ⅱ〕
 - ② 사업체명부
 - ③ 요계표〔Ⅰ〕
 - ④ 조사표접수대장
 - ⑤ 합산사업체명부
 - ⑥ 추가 및 전출사업체명부
 - ⑦ 내용심사 총괄표
- (2) 행정구역별로 조사표표지, 사업체명부, 조사표접수부, 요계표를 대조하여 사업체수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3) 조사표 표지에 기입된 조사표매수와 실제조사표 매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4) 사업체명부 표지의 조사현황란과 사업체명부 내용을 대조하여 유고사업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출사업체에 대하여는 전출지 행정구역을 확인하여 미조사되었으면 즉시 재조사 조치한다.
- (5) 추가(누락 및 전입) 사업체의 고유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사업체명부, 조사표, 요계표)
- (6) 유고사업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조사결과 요계표는 자료처리과에

즉시 인도하여 우선적으로 잠정집계하도록 조치한다.

나. 합산사업체명부 조치

동·읍·면에서 작성한 「합산조사 사업체명부」상, 「합산조사한 사업체(A)」의 조사표와 「합산조사된 사업체(B)」의 사업체명부를 각각 검토하여,

- (1) A조사표에 B가 합산되어 있고, B사업체소속 행정동(읍·면)에서 B사업체를 조사하지 않고 “합산”으로 유고처리하였으면, 합산사업체명부 B사업체조치 내용란에 “A에 합산”으로 기입한다.
- (2) A조사표에 B가 합산되어 있고, B사업체소속 행정동(읍·면)에서 B사업체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면,
 - ① B사업체 조사표에 B사업체만 조사되었으면 A-B하여 A사업체만을 구분 작성하고, 요계표도 수정하며, 합산사업체명부 조치내용란에 “조사표분리”라고 기입함.
 - ② B사업체 조사표에 A사업체가 합산 조사되었으면(분리작성 불가능한 경우) 출하액 비중이 작은 사업체의 조사표를 삭제, 별첨 조사표로 처리하고 해당 행정동(읍·면)의 사업체명부, 요계표, 접수대장 등을 정리하고 합산사업체명부 조치내용란에 “A(또는 B)사업체에 합산”으로 처리한다.
- (3) A의 조사표에 B가 실제로 합산되어 있지않고 B조사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면 B를 즉시 재조사 조치하고 조사표를 접수하도록 하며, A의 조사표에는 21항의 「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

지」란의 (1) 본조사표에 합산여부란의 “제외”에 ○표한다.

- (4) A의 조사표에 B가 실제로 합산되어 있지않고 B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A조사표의 21항(1)의 “제외”에 ○표시하고 합산사업체 명부에서 삭제한다.

다. 요계표 검토

- (1) 조사표〔 I 〕의 매수와 요계표〔 I 〕에 기입된 사업체수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2) 별첨조사표는 요계표에 집계되어서는 안된다.

라. 조사표류 인계

- (1) 조사표〔 I 〕,〔 II 〕
- (2) 요계표〔 I 〕
- (3) 사업체명부를 자료처리과에 인계한다.

2. 자료처리과

가.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정리보완

산업통계과로부터 인수한 조사표〔 I 〕,〔 II 〕, 별첨조사표를 사업체명부와 대조하여 사업체명부 또는 조사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 및 보완한다. 별첨조사표중 집계대상조사표를 선별하여 조사표에 포함하고 요

계표에도 추가 기입한다.

(1)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가 기준이므로 명부상의 고유번호와 조사표상의 고유번호가 다르면 사업체명부상의 고유번호로 통일 수정한다. 단, 전입 및 누락사업체 고유번호는 사업체명부상과 추가사업체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대조 확인후 적용한다.

(2) 기업체번호, 그룹번호

사업체명부에 번호가 있는 사업체에 한하여 조사표상의 번호를 명부와 일치시킨다.

(3) 기타항목

사업체 고유번호 이외의 각 항목은 조사표상의 사항과 일치되도록 사업체명부를 보완한다.(품목분류번호와 명칭은 제외)

(4) 유고사업체

- ① 유고사업체는 사업체명부의 유고사항란에 바르게 기입 (유고내용과 유고번호 일치)되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조사표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조사표가 있으면 유고사업체는 조사된 사업체이어야 하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② 전출사업체는 유고사유란의 전출지 주소를 추적하여 전입지에서 같은 고유번호로 조사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고유번호가 다르면 최초의 명부상 고유번호로 정정하고 조사표, 요계표도 동시에 정정한다.

③ 유고번호

| 유고내용 | 전 출 | 휴 업 | 기준미달 | 소재불명 | 폐 업 | 대상의 | 조사불능 | 합 산 | 명부상 중 복 | 기 타 |
|------|-----|-----|------|------|-----|-----|------|-----|------------|-----|
| 유고번호 | 02 | 03 | 04 | 06 | 08 | 09 | 10 | 11 | 12 | 14 |

확인된 실존사업체중 조사표를 작성 못한 사업체(합산제외)는 조사불능(10)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요계표 집계

(1) 내용검토

(가) 행정구역 분류부호,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가 조사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나) 요계표[I]에 조사표[I]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2) 천공 및 검공

(가) 동·읍·면에서 작성한 사업체별 요계표상의 모든 내용(행정구역 분류부호와 ①, ②, ④~⑭항)을 천공 및 검공한다.

(나) 다만 ①, ②, ③, ⑦항만이 적색볼펜으로 기입된 사업체(유고사업체)는 천공하지 아니한다.

(3) 전산내검

<기호별 전산내검 및 착오사항 처리요령>

| 기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AA | 행정구역분류부호(6자리)는 행정구역 Master file 과 일치하여야 한다. | 반드시 확인 일치수정한다. (사업체명부, 조사표와 대조확인) |
| BB | 사업체 고유번호는 중복이나 누락이 없어야 한다. | '' |
| DD | 산업분류는 산업분류 Master file 과 일치하여야 한다. | 조사표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
| EE | $0.3 \leq \frac{\text{생산비}}{\text{출하액}} \leq 0.7$ 이어야 한다. |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한다. |
| FF | $2 \leq \frac{\text{출하액}}{\text{종업원수}} \leq 50$ 이어야 한다. | '' |
| GG | $0.5 \leq \frac{\text{유형고정자산}}{\text{종업원수}} \leq 10$ 이어야 한다. | '' |
| WW | $120\text{만원} \leq \frac{\text{급여액}}{\text{종업원수}} \leq 1,200\text{만원}$ 이어야 한다. | '' |
| HA | ⑥연간급여액 + ⑨생산비 < ⑩출하액 + ⑫연말재고액(완·반제품) - ⑪연초재고액(완·반제품)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 |

| 기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MM | 종업원수 ≥ 5 이어야 한다. | 반드시 확인 수정한다. |
| ★ | ④, ⑦, ⑧, ⑨, ⑩, 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안된다. | 〃 |

(4) 수준점검표 및 결과표 제표

- ① 수준점검표는 전산내검이 완료된 후 결과표 중의 「1. 수준점검표」중에서 (1), (2), (3), (4), (5), (13) 및 (14)표를 제표한다. 제표시마다 (3) 및 (14)표는 각 1부 (1), (2), (4), (5) 및 (13)표는 각 2부씩 제표한다.
- ② 결과표는 전산내검이 완료된 후 「1. 수준점검표」중에서 (1), (2), (3), (4), (5), (13) 및 (14)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을 제표한다.
- ③ 작성시 유의사항은 「(7) 결과표 제표시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다. 조사표 집계

(1) 내용검토

- ① 사업체 고유번호,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② 품목 분류번호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③ 기타항의 누락이 없는지 검토한다.

(2) 편 철

- ① 행정구역별로 조사표 I, II, 별첨조사표 (I 또는 II)를 분리한다.

- ② 조사표 I 은 시·도별 사업체 고유번호 순으로 사업체 고유번호 300 또는 400 번 단위(조사표 약 200매 기준)로 분철한다.
- ③ 조사표 II는 시·도단위로 사업체고유번호순으로 약 200매 기준으로 분철한다.
- ④ 별첨조사표는 시·도단위로 사업체고유번호순으로 합철한다.

(3) 부호기입

- ① 부호기입은 조사표 I의 ★★란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조사표 I ★★란에 수량단위 부호를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에 따라) 「부호 일람표(별첨)」에 의해 적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4) 천공 및 검공

- ① 조사표 I 상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와 4~8, 11~21항을 천공 및 검공한다.(1~3, 9~10, 17항의 (5)는 천공하지 않음)
- ② 조사표 II는 1,2,13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별도 천공한다.

(5) 전산내검

(가) 전산내검은 제 1,2,3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사항을 중점 실시한다.

- ① 제 1 단계 (2회)
 - ㉠ 조사표 천공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 ㉡ 기호별 전산내검 요령의 모든 사항을 실시한다.
- ② 제 2 단계 (2회)
 - ㉢ 제 1 단계 전산내검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항목의 합계를 일치 삽입하고,

㉔ 사업체별 주산업분류는 제 17 항 및 제 18 항의 세세분류산업 (5 자리) 중 출하액이 가장 많은 산업분류를 프로그램으로 삼입한 후 기호별 전산내검 요령의 모든 항목을 전산내검 한다.

㉕ 제 2 단계 제 2 회 전산내검시는 ★표시 착오사항에 한해 실시 한다.

③ 제 3 단계 (2 회)

㉖ 제 1, 2 단계 요령으로 반복 실시한다.

㉗ 수준 점검결과 사업체별 자료의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수준점검결과와 같은 요령으로 필수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의 착오가 없을 때까지 반복 실시한다.

㉘ 제 1, 2 단계 전산내검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일부 기호별 전산내검사항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전산내검 프로그램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전산내검표는 사업체 고유번호순으로 제표한다.

② 용어의 정의 및 산식은 「결과표 제표시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③ 조사표상의 부의수치 (-)는 15 항 ①부가가치세와 내국 소비세액 합계에 한하여 있을 수 있다.

(다) 전산내검결과 심사시 유의사항

① 전산내검 결과 심사는 제 1 단계 제 1 차 심사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사표 천공누락 또는 천공착오 사항을 중점 확인 수정한다.

- ② 기호별 착오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천공착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착오인 경우에는 조사표상의 연관사항을 검토하여 기호별 착오사항 처리요령에 따라 확인 수정한다.
- ③ 합계착오인 경우, 세항목(내역)의 천공착오여부를 확인하고 세항목의 천공착오가 아니면 합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 ④ 조사표상의 제 17항 및 제 18항의 품목별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므로 인하여 제 2단계 전산내검결과 ZA, ZB, ZC, ZE, ZF와 HA 착오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수정한다.
- ⑤ 조사착오사항을 수정할 시에는 조사표와 전산내검표에 동시에 수정한다.
- ⑥ 전산내검은 출하액이나 종업원수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점 심사한다.
- ⑦ 기호별 전산내검 사항중 ★표시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착오사항은 착오내용의 경중에 따라 그 타당성을 확인 수정하여야 한다.
- ⑧ 제 2단계 전산내검시에는 합계가 자동적으로 일치 삽입되므로 특히 내역의 수정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호별 전산내검 사항 및 처리요령

★ 표시의 착오사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 기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AA ☆ | 4.16.20 항 4 항 창설년이 1987년이면 20 항 유형고정자산의 (1) 신규 취득액의 합계 또는 (2) 중고취 득액의 합계가 있어야 하며 16 항 재고액의 (1) 연초재고액의 합계가 없어야 한다. | (1) 창설년도가 87년이 확실한가 를 우선 확인하여 착오인 것 은 착오년도를 일치 정정한 다. (2) 87년이 창설이 확실하면서 유형고정자산 취득이 없으면 확인 기입한다. (단, 임차사용이면 없음:적 요란 확인) (3) 87년 창설이면서 연초재고액 이 있으면 창설년을 확인 수 정한다. (경영조직 변경은 예 외) |
| AB ☆ | 6.7.11 항 6 항 경영조직이 (1) 회사법인이 면 7 항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 (1) 6 항의 경영조직과 1 항의 사 업체명, 2 항의 본사명을 확인 |

| 기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p>11 항 종업원수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없어야 한다.</p> | <p>하여 착오인 것은 경영조직 부호를 정정한다.</p> <p>(2) 회사가 확실하면 7 항의 자본금과 11 항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검토하여</p> <p>㉞ 두항목이 모두 있으면 11 항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삭제하고 사무 및 기타 종업원수에 포함한다.</p> <p>㉟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 기입한다.</p> |
| <p>AC ☆</p> | <p>6.7.11 항 6 항 경영조직이 (3) 개인이면 7 항 자본금이 없어야 하며 11 항 종업원수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p> | <p>(1) 1 항의 사업체명 2 항 본사명을 확인하여 6 항의 경영조직이 착오인 것은 경영조직 부호를 정정한다.</p> <p>(2) 개인이 확실하면 6 항의 자본금과 11 항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의 종사자를 검토하여</p>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 ㉔ 두항목이 모두 있으면 자본금을 삭제한다. ㉕ 두항목이 모두 없으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명을 기입하되 대표자명을 참조하여 남·여 해당란에 기입한 후 합계란을 수정한다. |
| A D ☆ | 6,7,11 항 6 항 경영조직이 (2) 기타 법인이면 7 항 자본금과 11 항의 (1)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 (1) 1 항과 2 항을 확인하여 경영조직이 착오인 것은 경영 조직부호를 수정한다. (2) 기타 법인이 확실하면 자본금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삭제한다. |
| S A ☆ | 8 항 8 항의 (3) 건물연면적은 (2) 건물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1) 제조업에 한하며 광업은 해당 없다. (2) 확인 수정한다. |
| S B ☆ | 8 항의 (1) 부지면적은 (2) 건물 밀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3) 건물임차는 부지 또는 밀 면적이 없고 연면적만 있다.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 (단, 1 층을 포함하여 임 차한 경우는 부지와 밀면 적이 있어야 한다) |
| S C | 8 항 (1) 부지 (2) 건물밀면적 (3) 건물연면적의 각각의 수치는 10 ~ 300,000 ㎡이내 이어 야 한다. | (4) 해태제조업, 멸치건조업인 경 우는 부지건물이 없을 수 있다. (5) 벽돌, 블록제조인 경우는 건 물면적이 없을 수 있다. |
| S D ☆ | 광업은 8 항의 (1) (2) (3)이 없 어야 한다. | (6) 광업이면 삭제한다. |
| B B ☆ | 19,20 항 20 항 유형고정자산중 토지를 제외한 (1) 신규와 (2) 중고취득액의 합계는 19 항 건설가계정의 (2) 연간 감소액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1) 소액 (천만원미만)의 건설 가계정은 대부분 없다. (2) 취득액이 없고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액이 있을 때는 취득액으로 옮겨쓴다. |
| B C ☆ | 20 항의 (01) + (02) - (03) - (04) ≤ (05) 의 등식이 성립해 야 한다. | (1) 확인 수정한다. (2) =등식은 87년 창설업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
| E A | 11,12 항 11 항 종업원수와 12 항 급여 액에서 생산종업원 1인당 월 | (1) 생산종업원수는 있으나 생 산종업원 급여액은 없고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p>평균 급여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p> <p>※ 1인당 월평균급여액 = (급여액 ÷ 월평균 종업원수) ÷ 조업월수</p> | <p>사무 및 기타 종업원은 없으나 사무 및 기타 종 업원 급여액이 기록된 경우 사무종업원 급여액을 삭제 하여 생산종업원 급여액에 이기한다.</p> <p>(2) 11항의 피고용자란 어느 곳에도 종업원수가 없으나 생산종업원 급여액이 있으 면 재조사 기록한다.</p> <p>(3) 11항의 피고용자란 ①②에 모두 종업원수가 있으나 12항의 생산종업원 급여액 이 없으면 재조사 기록 처 리한다.</p> <p>(4)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 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의 급여액이 바뀌어 기록되지 않았는지 검토한 다.</p>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EB | 11,12 항 사무 및 기타 종업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이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EA에 준한다. |
| ET ☆ | 11 항 월평균 종업원수가 5인 미만 일 때 | ① 12월말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면 5인으로 수정한 다. ② 12월말 종업원수가 5인미 만이면 조사표를 삭제한다. |
| HA | 12,13,14,16,20 항 13항합계 (①~④) + 16항(2)의 ② - 16항(1)의② ≥ 12항합계 + 14 항합계 + 20항(04)합계의 부등 식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① 다음의 경우는 OK 처리 한다. ㉠ 적요란에 합리적인 적자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비료제조업 (3515 ~ 3516) 과 같이 정부보조로 적 자를 보전하는 경우 ② 위 ㉠㉡ 이외의 경우에는 확인 처리한다. |
| HB | 13,14 항 13항 ① 제품출하액이 있으 면 반드시 14항의 연간 주요 | 제품출하액이 있으면서 재료비 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한다.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생산비 ① 재료가 있어야 한다. | (1) 광업체(석회석, 모래채취등)는 없을 수 있다. (2) 얼음공장도 없을 수 있다. (3) 기타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
| HF | 13,16,17,18 항 13항 ①의 제품출하액이 없고 13항 ③의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이 기록된 경우는 수탁 제조업이므로 16항 제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①완제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 17항의 품목별 제품출하액, 수출액 및 재고액이 모두 없어야 한다. 그리고, 18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 타당성을 검토하여 13항 ③의 수탁제조 수입액을 ① 제품출하액으로 이기하거나 또는 16항 ①완제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과 17항을 모두 삭제하고, 17항의 내용을 18항에 이기한다. |
| PT | 13항 13항 ⑤상품 매출액은 13항 ⑥상품매출 원가액보다 커야 한다. | ⑤와 ⑥이 서로 바뀌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
| PU ☆ | 13항 13항 ⑤+13항⑦ < 13항 ①의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
| PW | 13항, 20항 13항 ⑦임대수입액이 20항(05)연말총액 합계보다 클 때 | 임대수입액은 토지의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액이므로 토지나 유형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수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ZA ☆ | 13,17항 13항의 ①제품출하액은 17항의(1)품목별 제품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17항의 합계액은 전산에 의하여 삽입하였으므로 반드시 품목별 내역의 천공착오나 중복기입 등의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내 용 |
|----------|--|---|
| | |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에는 13항의 ①제품출하액을 17항 합계액과 일치 수정한다. |
| Z B ☆ | 16, 17 항 16항 (1)의 ①금액과 17항 (3)의 품목별 제품 연초재고액 합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기준하여 맞춘다. |
| Z C ☆ | 16항 (2)의 ①금액과 17항 (4)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 |
| Z D ☆ | 17 항 17항 (1)제품출하액 + 17항(4)제 품연말재고액 \geq 17항 (3) 제품의 연초재고액 합계의 관계가 각 품목별로 성립하여야 한다. | 다른 품목과 비교 검토하여 확인 수정한다. |
| Z E ☆ | ZD와 똑같은 부등식의 관계가 수량에서도 성립하여야 한다. | (1) 다른 품목과 비교 검토하 여 확인 수정한다. (2) 출하단가에 맞게 수량이 환산되었나 확인하고 수정 한다. |

| 가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내 용 |
|----------|--|--|
| Z F ☆ | 13 항의 ③수탁제 조수입액의 금 액과 18 항의 합계액은 일치하 여야 한다. |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항목에 기준하여 수정한다. |
| J A ☆ | 17 항 17 항 (1)품목별 제 품출하액≥ 17 항 (2)품목별 제 품수출액 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반드시 출하액이 커야 한다. |
| J B ☆ | 17 항 17 항 (1)품목별 제 품출하수량≥ 17 항 (2)품목별 제 품수출수량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출하단가에 맞추어 수출수량을 수정한다. 그리고 단위 환산이 잘못된 것도 수정한다. |
| K G | 13,15 항 15 항 ①부가가치세는 13항합 계(①~④)의 2~9% 범위 여야 하며 출하액은 1억 이 상인 사업체에 한한다. | (1) 면세업종(소금, 신문, 무연 탄, 연탄, 담배 등 전매품) 은 예외 (2) 17항에서 수출액이 많은 업체는 환급세액이 있어야 한다.(－발생) (3) 소액의 영세사업체는 1% 미만일 수도 있다.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KH | 15,17 항 15 항② 특별소비세는 17 항의 품목분류 번호가 31, 32, 332, 35235, 35300, 35402, 36206, 383, 384, 385, 39의 분류에 한하여 조사된다. | (1) 17 항의 품목명과 품목분류 번호가 맞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2) 품목분류표의 부록(3)을 확인한다. |
| KJ | 15,17 항 15 항 ③주세는 17 항 품목분류번호가 313에 한하여 위분류에 해당하면 반드시 주세가 있어야 한다. | (1) KH에 준한다. (2) 비알콜성 음료인 경우는 OK |
| QA ☆ | 17,18 항의 각 품목분류번호가 품목 Master File 과 일치되어야 한다. | 품목분류표와 대조 수정한다. |
| QB ☆ | 17 항의 품목분류번호의 수량단위는 품목 Master File 의 수량단위와 일치되어야 한다. | 품목분류표와 대조, 확인하여 수정하고 수량은 단가에 적정하게 환산하여 수정한다. |
| QC ☆ | 17,18 항 임가공 품목분류번호가 17 항에 조사될 때 | 해당 사업체가 수탁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탁업체가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 <p>맞으면 17 항의 내용을 18 항에 이기하고 수탁업체가 아니면 품목분류번호를 맞게 수정한다.</p> |
| Q D | <p>17,18 항 품목분류번호가 ~ 9 , ~ 900 인 품목의 출하액이 500백만원 이상일 때</p> | <p>품목분류표를 확인하여 타당한 품목분류번호를 기입한다.</p> |
| Q S ☆ | <p>17,18 항 17 항이나 18 항의 품목분류번 호에서 산업이 38298, 38451, 38452 이거나 품목이 35292219, 38298100, 38451100, 38452100, 38323900 으로 조사될 때</p> | <p>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번호를 바꾸어 준다.</p> <p>38451, 38452 → 38490 38298 → 38299 35292219 → 35299179 38298100 → 38299979 38323900 → 38329179 38451100 → 38490970 38452100 → 38490979</p> |
| NURAK | <p>4,5,6,8,11,12,13,14,20 항의 누 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경영조직이 (1)회사, (2)기</p> | <p>(1) 4,5,6,8 항은 전년도 조사 표를 참고한다. (2) 11 항에서 실제조업을 해야</p>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 <p>타 법인이면 11항 (1)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없다)</p> | <p>종업원수가 기재되므로 일시적, 계절적 휴업일은 조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얼음, 벽돌, 염전, 광산 등 유의)</p> <p>(3) 11항이 있으면 12항이 있어야 한다.</p> <p>(4) 8항은 부지만 있거나(벽돌제조)건물 연면적만 있거나(상가, 빌딩임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하며 건물 밀면적만 있는 것은 잘못이다.</p> <p>(5) 14항에서 광업이나 수탁업체도 일부의 재료비는 있을 수 있다.</p> <p>(6) 20항은 임차사용부분은 제외하고 업체소유분만 기입한다.(전부 임차사용일 경우 공란)</p>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항 처리 요령 |
|---------|--|-----------------------------------|
| ** | 11,12,13,14,15,16,17,18,20 항 의 각각의 합계는 그 세항목 의 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천공착오여부를 확인 및 내역 과 합계를 일치시킨다. |
| * ☆ | 시·도부호는 11,21,22,23,24, 31,32 ... 39이내이어야 한다. | 확인 수정한다. |
| WA ☆ | 사업체 고유번호가 중복되거나 7자리를 초과할 때 | 사업체명부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한다. |
| WB ☆ | 17항과 18항중에서 최다 출 하액의 산업분류(동일세세분류 는 합계)와 사업체의 산업분 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 17항(혹은 18항)에서 최다 출하액 산업분류로 한다. |
| WC ☆ | 4항 창설년은 87년이내이어야 한다. |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
| WD ☆ | 5항 결산기는 01~12이내이 어야 한다. | 타당성 검토 |
| WE ☆ | 6항 경영조직은 1~3이내이 어야 한다. | 사업체명칭을 보고 분류한다. |
| WF | 7항 자본금은 100,000백만 (1,000억원)이내이어야 한다. | 대규모 사업체일 경우에는 OK한다. |

| 기 호 | 전 산 내 검 사 항 | 착 오 사 항 처 리 요 령 |
|---------|---|--|
| WG ☆ | 17 항중에서 수량단위가 99가 아닌 품목이 금액만 있고 수량이 없어서는 안된다. | 단위환산하여 기입하고 단위미만은 “1”을 기입한다. |
| WH ☆ | 20 항 ①토지는 (01)신규취득액 및 (04)감가상각액이 없어야 한다. |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취득액은 중고취득액으로 기입하고 감가상각액은 처분 및 손해액으로 처리한다. |
| WI ☆ | 17,18 항에서 일련번호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면 안된다. |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공란을 두지 않도록 한다. |
| WJ ☆ | 20 항 (04) 감가상각액 합계가 (05) 연말총액 합계보다 커서는 안된다. |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다. |
| WI | 21 항 합산여부란에 합산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산업통계과에 질의한다. |

(6) 수준점검표 제표

(가) 제표시점

제 2 단계 전산내검과 Sequence Check 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표 한다.

(나) 제표순서

① 제 1 단계

수준점검표 1,2,3,4,5,13,14 표

② 제 2 단계

수준점검표 6,7,8,9,10,11,12 표

(다) 제표부수

3~6,9,14 표는 2 부작성, 1~2,7,8,10~13,15,16 표는 1 부 작성한다.

(7) 결과표 제표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① 단위 미만은 「0」으로,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로 프린트 한다.
- ② 숫자가 마이너스(음수)일 때는 숫자앞에 「-」표를 한다.
- ③ 311-312 (식료품제조업)는 한개의 소분류산업이므로 311 과 312의 각각의 수치는 프린트하지 않는다.
- ④ 부가가치, 재고증감액,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액 합계는 음수(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 ⑤ 모든 결과표는 표의 윗부분에 한글표명 및 항목명을 프린트한다.

(나) 보고서 수록용결과표 작성상 유의사항

- ① 결과표는 수준점검이 완료되면 제 3 단계 전산내검을 실시하여 착오사항이 없으면 제표한다.
- ② 또한 산업분류가 2인 광업체는 부지 및 건물 연면적을 삭제하고, 조사표 17항 품목별 출하액란에서는 수량단위가 ※(99)인 품목은 수량을 삭제하고 제표한다.
- ③ 보고서는 사진판 인쇄방법에 의해 발간되므로 보고서용 결과표의 활자를 명확하게 프린트한다.
- ④ 모든 결과표의 산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Ⅲ 표(품목편)의 산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는 활자(한글, 영문, 숫자)를 더블펀치(고딕체)하여 프린트한다.
- ⑤ 산업, 품목명, 시도명, 수량단위명 등은 한글, 영문 모두 프린트한다.
- ⑥ 모든 표에서 분류단위별로 사업체수가 2개 미만인 때에는 사업체수를 제외한 모든 관련수치를 "X"로 제표한다.
- ⑦ 특수품목 및 산업은 다음에 지정하는 품목 및 산업으로 합계한 후 제표한다.

| 특수품목(산업) → 지정품목(산업) | | 비 고 |
|----------------------|-------|---|
| 35292 219 (35299179) | 추 후 | 1. 특수품목(산업)의 번호 및 명칭도 프린트하지 않음. 2. 수량은 지정품목의 수량단위가 ※(99)이므로 합계하지 않음. |
| 38298 100 (38299979) | 별도 지정 | |
| 38323 900 (38329179) | | |
| 38451 100 (38490970) | | |
| 38452 100 (38490979) | | |
| 38298 | | |
| 38451 | | |
| 38452 | | |
| 3845 | | |

⑧ 그밖에 86년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및 「산업 및 품목분류표」 등 관계 자료를 참고한다.

(다) 용어의 정의 및 산식

- ① 생산액 = 출하액 (합계) + 연말재고액 (완제품 + 반 · 재공품) - 연초재고액 (완제품 + 반 · 재공품)
- ② 출하액 = 제품출하액 + 폐품판매액 + 수탁제조수입액 + 수리수입액
- ③ 부가가치 = 생산액 - 생산비합계
- ④ 생산비합계 = 재료비 + 연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수리유지비 + 위탁생산비
- ⑤ 재고증감액 = 연말재고액 - 연초재고액
- ⑥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생산액}} \times 100$
- ⑦ 원재료투입률(%) = $\frac{\text{재료비}}{\text{생산액}} \times 100$

$$\textcircled{8} \text{ 비전년 증감률(\%)} = \frac{\text{비교치 (87년)}}{\text{기준치 (86년)}} \times 100 - 100$$

$$\textcircled{9} \text{ 구성비(\%)} = \frac{\text{세항목}}{\text{합 계}} \times 100$$

$$\textcircled{10} \text{ 지 수} = \frac{\text{비교치}}{\text{기준치}} \times 100$$

⑪ 올 및 비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⑫ 사업체당 및 종업원 1인당 지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사업체당 지표 : (종업원수,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재고액, 유형고정자산, 부지, 건물면적 등) ÷ 사업체수

㉡ 종업원 1인당 지표 :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등) ÷ 평균 종업원수

단, 1인당 급여액은 사업체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가계산 누적, 다른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1 \text{ 개월조업}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 + 사무직) } \} \times 12$$

$$2 \quad " \quad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 + 사무직) } \} \times 6$$

$$3 \quad " \quad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 + 사무직) } \} \times 4$$

$$4 \quad " \quad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 + 사무직) } \} \times 3$$

$$5 \quad " \quad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 + 사무직) } \} \times \frac{12}{5}$$

$$6 \quad " \quad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 + 사무직) } \} \times 2$$

$$7 \text{ 개월조업}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사무직)} \} \times \frac{12}{7}$$

$$8 \text{ " }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사무직)} \} \times \frac{3}{2}$$

$$9 \text{ " }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사무직)} \} \times \frac{4}{3}$$

$$10 \text{ " }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사무직)} \} \times \frac{6}{5}$$

$$11 \text{ " }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사무직)} \} \times \frac{12}{11}$$

$$12 \text{ " } : \{ \text{급여액} \div \text{평균피고용자수 (생산직+사무직)} \} \times 1$$

⑬ 유형 고정 자산 취득액 = 신규취득액 + 중고취득액 (토지포함)

⑭ 유형 고정 자산 신규취득액 = 건물 · 구축물 + 기계 · 장비 + 공구 · 기구 ·
비품 + 차량 · 선박 · 운반구

⑮ 내국소비세액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라) 기타 자세한 것은 산업통계과 자료처리담당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자료처리 및 내용심사용 부대자료 준비

(1) 자료처리용 자료

(가) 산업 및 품목분류 Master file (6월 작성)

- ①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부호
- ② 국·영문 명칭
- ③ 수량단위 부호 및 국영문 명칭

(나) 행정구역분류 Master file (6월 작성)

- ① 행정구역 분류부호

② 국·영문 명칭

(다) 사업체고유번호 일람표 (6월 작성)

(라) 기업체 및 복합기업명부 (9월 작성)

1986년 기업체명부를 기초로 1987년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마) 가나다 순위별 사업체명부 (8월 작성)

내부자료용 결과표 (6)표 - 1부 (기업체명부 보완작성용)

(2) 내용심사용 자료

(가) 구·시·군별 산업별 집계표

수준점검표 (14)표 - 2부 (조사표 접수단계 심사참고용)

(나) 광공업통계·동태조사결과 사업체별 연간집계표

내부자료용 결과표 (5)표 - 3부 (조사표 접수단계 심사참고용 및 집계결과 점검용)

부 호 일 략 표

★표 이외의 란은 전산프로그램에 참조

| | | | |
|--|------------------|----------------------|------------------------|
| 행정구역분류번호 | 공장 (광산) ... 3 | 50~99백만원... 3 | 100~199인 5 |
| ○사업체 명부상의 번호를 이기 ○ 6 자리 숫자 (시도, 구시군, 동읍면) | 단독사업체 4 | 100~499 // ...4 | 200~299인 6 |
| | 창 설 년 도 | 500~999 // ...5 | 300~499인 7 |
| | 1945년이전 ... 01 | 1,000~4,999 // ...6 | 500인이상 8 |
| | 1946~1950 ... 02 | 5,000~9,999 // ...7 | 출 하 액 규 모 |
| 사업체 고유번호 | 1951~1955 ... 03 | 10,000백만원이상...8 | 1 ~ 49 백만원 ... 1 |
| | 1956~1960 ... 04 | 유형고정자산규모 | 50~99 // ... 2 |
| ○사업체 명부상 번호를 이기 ○ 7 자리 숫자 (시도 일련번호) | 1961~1965 ... 05 | 1~49 백만원 ... 1 | 100~499 // ... 3 |
| | 1966~1970 ... 06 | 50~99 // ... 2 | 500~999 // ... 4 |
| | 1971~1975 ... 07 | 100~299 // ... 3 | 1,000~4,999 // ... 5 |
| | 1976~1980 ... 08 | 300~499 // ... 4 | 5,000~9,999 // ... 6 |
| 경 영 조 직 | 1981 09 | 500~999 // ... 5 | 10,000~49,999 // ... 7 |
| | 1982 10 | 1,000~4,999 // ... 6 | 50,000백만원이상... 8 |
| 회사법인 1 기타법인 2 개 인 3 | 1983 11 | 5,000~9,999 // ... 7 | |
| | 1984 12 | 10,000백만원이상...8 | |
| 사 업 체 구 분 | 1985 13 | 종 업 원 규 모 | |
| | 1986 14 | 5 ~ 9 인 1 | |
| 본 사 1 본사·공장 2 | 1987 15 | 자 본 금 계 층 | |
| | 1 ~ 9 백만원 ... 1 | 10 ~ 19인 2 | |
| | 10~49 // ... 2 | 20 ~ 49 인 3 | |
| | | 50 ~ 99 인 4 | |

★ 품목 수량단위 부호

| | | | | | |
|--|----|-----------------------|--------------------|---------------|----|
| 길이 및 넓이 | | | | | |
| <i>m</i> | 21 | 천 <i>m</i> | 14 | 타 (打) | 48 |
| <i>m / Ply</i> | 22 | 천 <i>kl</i> | 15 | 갑 | 49 |
| 천 <i>Ply</i> | 23 | 기 타 | | 천갑 | 50 |
| <i>m²</i> | 24 | 매 (枚) | 30 | 정 | 51 |
| 천 <i>m²</i> | 25 | 백매 | 31 | HP (마력) | 52 |
| <i>km</i> | 26 | 속 (束, 100 장) ... | 32 | K.V.A | 53 |
| 천 <i>km</i> | 27 | 짹 (2,000 매) | 33 | M.F | 54 |
| 무 계 | | | 짹 (2,000 마리) | 쌍 | 55 |
| <i>g</i> | 01 | 대 (臺) | 35 | 장 | 56 |
| <i>kg</i> | 02 | 본 (本) | 36 | 회선 | 57 |
| $\frac{1}{4}$ (1,000 <i>kg</i>) | 03 | 천본 | 37 | 천매 | 58 |
| G/T | 04 | 천부 | 38 | 천족 | 59 |
| S/T | 05 | 족 | 39 | 천개 | 60 |
| 천 $\frac{1}{4}$ | 06 | 착 | 40 | 천조 | 61 |
| 부 피 | | | 조 | 천타 | 62 |
| <i>l</i> | 11 | 개 | 42 | 마리 | 63 |
| <i>kl</i> | 12 | 권 (卷) | 43 | 통 | 64 |
| <i>m³</i> | 13 | 권 (2,000 매) | 44 | 천권 | 65 |
| | | 연 | 45 | 천대 | 66 |
| | | 상자 (C/S) | 46 | 천착 | 67 |
| | | 량 (輛) | 47 | 천장 | 68 |
| | | | | ※ | 99 |

結 果 表

'87基準 鑛工業統計調查(第17次)分

1988. 4.

產 業 統 計 課

차 례

1. 수준점검표 3

2. 내부자표용 결과표 15

3. 사업체 명부에 대한 결과표 19

4. 보고서 발간용 결과표 25

1 . 수 준 점 검 표

| | |
|--|----|
| (1)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산업순위별) | 5 |
| (2)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사업체고유번호 순위별) | 5 |
| (3) 산업세세분류, 종업원 규모, 시·도 및 경영조직별 총괄 | 5 |
| (4) 산업소분류 및 시·도별 수준비교 | 6 |
| (5) 시·도 및 산업소분류별 수준비교 | 6 |
| (6) 품목별 비전년 수준비교 | 6 |
| (7) 품목 및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 7 |
| (8) 사업체별 품목의 비전년 수준비교 | 7 |
| (9) 카드 및 사업체별 자료수정표 | 8 |
| 1. 4카드 (생산비 항목) | 8 |
| 2. 6카드 (품목별 제품출하액) | 8 |
| 3. 7카드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 9 |
| 4. 9카드 (유형고정자산) | 9 |
| (10) 품목별 동·정태 비교 | 10 |

| | |
|--|----|
| (11) 품목별 사업체별 동·정태 비교 | 10 |
| (12)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의 수준비교 | 11 |
| (13) 품목 및 사업체별 임가공 수입액의 수준점검표 | 11 |
| (14) 다공장 기업체별 총괄 | 12 |
| (15) 구·시·군 및 산업중분류별 비전년 수준비교 | 12 |
| (16)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규모별 내국소비세액, 임대수입액, 건설가계정 및 상품매출액 | 13 |
| (17) 산업세세분류 및 사업체 고유번호순 내국소비세액, 임대수입액, 상품매출액 및 건설가계정 | 13 |
| (18)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규모별 유형고정자산 및 생산비 | 14 |
| (19) 산업세세분류 및 사업체 고유번호순 유형고정자산 및 생산비 | 14 |

(1)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산업순서별)

| 산업 세분류 부호 | 사업체 고유번호 | 사업체명 | 행정구역 분류번호 | 연 도 | 평균 종업원 수 | 급 여 액 | 생 산 비 | 출 하 액 | 생 산 액 | 부 가 가 치 | 연말재고액 | | | 재고증감액 | | | 유형 고정자산 | | 부 가 가 치 율 | 부 지 | 건 물 연 면 적 | 내 국 소 비 세 액 | 수 출 액 |
|-----------------|-------------|------|--------------|-----------------|----------------|-------------|-------------|-------------|-------------|------------------|--------|-------------|-----------------------|--------|-------------|-----------------------|-------------|------------------|-----------------------|--------|-----------------------|----------------------------|-------------|
| | | | | | | | | | | | 합 계 | 제 재 반 | 품 공 및 제 품 | 합 계 | 제 재 반 | 품 공 및 제 품 | 취 득 액 | 연 말 총 액 | | | | | |
| | | | | 86 87 증감율 | | | | | | | | | | | | | | | | | | | |

- (주) 1. 산업분류기준은 '87년에 의해 제표
 2. '86년 또는 '87년 중 1개년도만 수치가 있어도 프린트함.
 3. 출하액 10억이상, 종업원 50인이상,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10억이상, 부지 33,000㎡이상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업체는 모두 제표한다.
 4. '86년, '87년의 산업분류가 불일치하거나 부가가치액이 음수인 사업체는 별도 구분 제표한다.

(2)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사업체고유번호 순서별)

(1)표와 동일하게 제표함 (시도별 사업체고유번호순).

(3) 산업세분류, 종업원 규모, 시·도 및 경영조직별 총괄

| 산업세분류 종업원규모, 시·도 및 경영조직 | 사 업 체 수 | 평균 종업원 수 | 연 말 종업원 수 | 급 여 액 | 생 산 비 | 출 하 액 | 생 산 액 | 부 가 가 치 | 재 합 고 증 감 액 계 | 수 출 액 | 유형 고정자산 | | 부 지 | 건 물 연 면 적 | 내 국 소 비 세 액 |
|----------------------------------|------------------|----------------|--------------------|-------------|-------------|-------------|-------------|------------------|---------------------------------|-------------|-------------|------------------|--------|-----------------------|----------------------------|
| | | | | | | | | | | | 취 득 액 | 연 말 총 액 | | | |
| | | | | | | | | | | | | | | | |

(4) 산업소분류 및 시·도별 비전년 비교 (산업소분류 순서별)

| 산업소분류 및 시·도별 | 연 도 | 사 업 체 수 | 평 균 중 소 업 원 수 | 급 여 액 | 생 산 비 | 총 하 액 | 수 출 액 | 생 산 액 | 부 가 가 치 | 유형고정자산 | | 부 가 가 치 율 | 부 지 | 건 물 연 면 적 | 재 합 고 증 감 액 계 |
|--------------------|-----------------|------------------|---------------------------------|-------------|-------------|-------------|-------------|-------------|------------------|-------------|------------------|-----------------------|--------|-----------------------|---------------------------------|
| | | | | | | | | | | 취 득 액 | 연 말 총 액 | | | | |
| | 86 87 증감율 | | | | | | | | | | | | | | |

(5) 시·도 및 산업소분류별 비전년 비교 (시·도 순서별)
 <(4)표와 동일하게 설계함>

(6) 품목별 비전년 수준비교

| 품 번 | 품 목 명 | 단 위 호 | 단 위 명 | 연 도 | 사 업 체 수 | 총 출 하 | | | 생 산 | | | 수 출 | | | 연 초 재 고 | | | 연 말 재 고 | | |
|--------|-------------|-------------|-------------|-----------------|------------------|--------|--------|--------|--------|--------|--------|--------|--------|--------|---------|--------|--------|---------|--------|--------|
| | | | | | | 수 량 | 금 액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단 가 | 수 량 | 금 액 | 단 가 |
| | | | | 86 87 증감율 | | | | | | | | | | | | | | | | |

(7) 품목별 사업체별 비전년 수준비교

| 품 번 | 목 호 | 품목명 | 단 위 부 호 | 단 위 명 | 사 업 체 번 호 | 사 업 체 명 | 일 련 번 호 | 연도 | 총 출 하 | | | 수 출 | | | 연 초 재 고 | | | 연 말 재 고 | | |
|--------|--------|-----|------------------|-------------|-----------------------|------------------|------------------|-----------------|--|----|----|-----|----|----|---------|----|----|---------|----|----|
| | | | | | | | |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 | | | | | | | | 86 87 증감율 | ※ ① 단가는 원 ② 수출, 재고의 단가는 출하단가에 대한 백분비(단위미만절삭) ③ 품목별 합계는 생산, 출하, 수출, 연초재고, 연말재고 순으로 고디 print | | | | | | | | | | | |

(8) 사업체별 품목의 비전년 수준비교

| 사업체 고유번호 | | | | 사업체명 | | | | | | | | | | | | |
|----------|------|-----|------|-----------------|---|----|----|-----|----|----|---------|----|----|---------|----|----|
| 품목번호 | 단위부호 | 단위명 | 일련번호 | 연도 | 총 출 아 | | | 수 출 | | | 연 초 재 고 | | | 연 말 재 고 | | |
| | | | |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수량 | 금액 | 단가 |
| | | | | 86 87 증감율 | ※ ① 단가는 원 ② 수출, 재고의 단가는 출하단가에 대한 백분비(단위미만 절삭) ③ 품목별 합계는 생산, 출하, 수출, 연초재고, 연말재고 순으로 고디 print | | | | | | | | | | | |

(9) 카드 및 사업체별 자료 수정표

1. 4카드 (생산비 항목) : 출하액 20억이상이거나 부가가치액이 음수인 사업체전부제표

| | | | | | | | | |
|----------|-------------|----|-----|-----|-----|-----|-------|-------|
| 사업체 고유번호 | 카드번호 (4) | ★★ | 재료비 | 연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위탁생산비 | 수리유지비 |
|----------|-------------|----|-----|-----|-----|-----|-------|-------|

2. 6카드 (품목별 제품출하액) : 해당되는 전 사업체 제표

| 사업체 고유번호 | 카드번호 | 일련번호 | 품목번호 | 단위부호 | 출 하 | | 수 출 | | 연초재고 | | 연말재고 | |
|----------|------|------|------|------|-----|----|-----|----|------|----|------|----|
|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3. 7카드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 해당되는 전사업체 제표

| 사업체 고유번호 | 카드 번호 (7) | ★★ | 01 | | 02 | | 03 | | 04 | | 05 | |
|-------------|-----------------|----|----------|----|----------|----|----------|----|----------|----|----------|----|
| | | | 품목 번호 | 금액 | 품목 번호 | 금액 | 품목 번호 | 금액 | 품목 번호 | 금액 | 품목 번호 | 금액 |
| | | | | | | | | | | | | |

4. 9카드 (유형고정자산) : 연말총액이 10억이상인 사업체제표

| 사업체 고유번호 | 카드 번호 (9) | 01 | 토 지 | 건 물 | 기계장치·공구 및 기구, 비품 | 차 량 선 박 |
|-------------|-----------------|----|--------|-------------|------------------------|------------------|
| | | ? | | 구 축 물 | | 및 운 반 구 |
| | | 05 | | | | |

- 1) 신규취득액
- 2) 중고취득액
- 3) 처분 및 손해액
- 4) 감가상각액
- 5) 연말총액

- 주) 1. 각 카드별로 MULTIPLE DISKETTE LAYOUT FORM과 동일한 양식이나 행정구역번호
일련번호, 합계란은 제외 하였음.
2. ★★는 해당사항 없음.

(10) 품목별 동·정태 비교

| 동 태 | | | 정 태 | | | 사업체수 | | 생 산 | | | 총 출 하 | | | 수 출 | | |
|----------|-----|-----|----------|-----|-----|------|-----|-----------|-----------|--------------------------|-----------|-----------|--------------------------|-----------|-----------|--------------------------|
| 품목 번호 | 품목명 | 단위명 | 품목 번호 | 품목명 | 단위명 | 정 태 | 동 태 | 정태 (A) | 동태 (B) | $\frac{A}{B} \times 100$ | 정태 (A) | 동태 (B) | $\frac{A}{B} \times 100$ | 정태 (A) | 동태 (B) | $\frac{A}{B} \times 100$ |
| | | | | | | | | | | | | | | | | |

(주) 동태품목의 단위가 금액(백만원)인 경우는 정태의 금액과 비교

(11) 품목 및 사업체별 동·정태 비교

| 정 태 | | | 동 태 | | | 사업체번호 | | 행정 구역 번호 | 사업 체명 | 생 산 | | | 총 출 하 | | | 수 출 | | |
|----------|-----|-----|----------|-----|-----|-------|----|----------------|----------|-----------|-----------|--------------------------|-----------|-----------|--------------------------|-----------|-----------|--------------------------|
| 품목 번호 | 품목명 | 단위명 | 품목 번호 | 품목명 | 단위명 | 정태 | 동태 | | | 정태 (A) | 동태 (B) | $\frac{A}{B} \times 100$ | 정태 (A) | 동태 (B) | $\frac{A}{B} \times 100$ | 정태 (A) | 동태 (B) | $\frac{A}{B} \times 100$ |
| | | | | | | | | | | | | | | | | | | |

(12)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의 수준비교

| 품목번호 | 품목명 | 단위 | 연도 | 임가공 사업체수 | 임가공 수입액 | 총사업체수 | 총출하 | | 수출 | |
|------|-----|----|-------------------|-------------|------------|-------|-----|----|----|----|
| | |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 '86 '87 증감률 | | | | | | | |

(13) 품목 및 사업체별 임가공 수입액의 수준점검표

| 품목번호 | 품목명 | 사업체번호 | 사업체명 | 산업분류 | 일련번호 | 연도 | 임가공수입액 |
|------|-----|-------|------|------|------|-------------------|--------|
| | | | | | | '86 '87 증감률 | |

(14) 다공장 기업체의 사업체별 총괄

| 기업체 및 번호 | 기업체명 및 사업체명 | 산업세세분류 | 평균종업원수 | 급여액 | 생산비 | 출하액 | 수출액 | 부가가치 | 유형고정자산 | | 자본금 | 부지 | 건물연면적 | 내국소비세액 | 상품매출액 |
|----------|-------------|--------|--------|-----|-----|-----|-----|------|--------|------|-----|----|-------|--------|-------|
| | | | | | | | | | 취득액 | 연말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15) 구·시·군 및 산업종분류 비전년 수준비교

| 구·시·군 및 산업종분류 | 연도 | 사업체수 | 평균종업원수 | 급여액 | 생산비 | 출하액 | 생산액 | 부가가치 | 연말재고액 | 재고증감액 | 유형고정자산 | | 부지 | 건물연면적 | 수출액 | 내국소비세액 |
|---------------|-------------------|------|--------|-----|-----|-----|-----|------|-------|-------|--------|-----|----|-------|-----|--------|
| | | | | | | | | | | | 연말총액 | 취득액 | | | | |
| | '86 '87 증감률 | | | | | | | | | | | | | | | |

(16)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규모별 내국소비세액 및 임대수입액, 건설가계정, 상품매출액

|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 규모 | 내국소비세액 | | | | 임대수입액 | 건설가계정 | | | 상품매출액 | 상품매출 원가 |
|---------------------------|--------|-----------|-----------|----|-------|-----------|-----------|----------|-------|------------|
| | 계 | 부가 가치세 | 특별 소비세 | 주세 | | 연감 증가액 | 연간 감소액 | 연말 잔액 | | |
| | | | | | | | | | | |

(17) 산업세세분류 및 사업체고유번호순 내국소비세, 임대수입액, 상품매출액 및 건설가계정

| 사업체번호 | 사업체명 | 행정구역부호 | 산업세세분류 | 내국소비세 | | | | 임대 수입액 | 건설가계정 | | | 상품 매출액 | 상품 원가 |
|-------|------|--------|--------|-----------|-----|----|---|-----------|----------|----------|----------|-----------|----------|
| | | | | 부가 가치세 | 특소세 | 주세 | 계 | | 연간 증가 | 연간 감소 | 연말 잔액 | | |
| | | | | | | | | | | | | | |

(18)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규모별 유형고정자산 및 생산비

| 산업세세분류 시·도 및 종업원 규모 | 유형고정자산 | | | | | 생산비 | | | | | | |
|---------------------------|-----------|-----------|------------|-----------|----------|---------|---------|---------|---------|-------------------|-------------------|---|
| | 신규 취득액 | 중고 취득액 | 처분및 손해액 | 감가 상각액 | 연말 총액 | 재료 비 | 연료 비 | 전력 비 | 용수 비 | 위생 산 탁 비 | 수유 지 리 비 | 계 |

(19) 산업세세분류 및 사업체고유번호순 유형고정자산 및 생산비

| 사업체 번호 | 사업체명 | 행정구역 | 산업분류 | 유형고정자산 | | | | | 생산비 | | | | | | |
|-----------|------|------|------|-------------------|--------------|------------------------|-----------------------|------------------|-------------|-------------|-------------|-------------|-----------------------|-----------------------|---|
| | | | | 신취 득 규 액 | 중취 고 득 | 처손 분 해 및 액 | 감 상 각 가 액 | 연 총 말 액 | 재 료 비 | 연 료 비 | 전 력 비 | 용 수 비 | 위 생 산 탁 비 | 수 유 지 리 비 | 계 |

2. 내부자료용 결과표

| | |
|--|----|
| (1) 구·시·군 및 산업중분류별 총괄 | 16 |
| (2) 산업소분류 및 결산기별 총괄 | 16 |
| (3) 산업 및 품목별 총출하, 내수, 수출의 수량, 금액 및 구성비 | 17 |
| (4)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및 출하액규모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출하액 | 17 |
| (5) '87년 광공업통계조사용 내검자료 | 18 |

(1) 구·시·군 및 산업중분류별 총괄

| 구·시·군 및 산업중분류 | 사 업 체 수 | 평균 종업 원수 | 급 여 액 | 생 산 비 | 출 하 액 | 생 산 액 | 부 가 가 치 | 연 말 재 고 액 | 재 고 증 감 액 | 유형고정자산 | | 부 지 | 건 물 연 면 적 | 수 출 액 | 내 국 소 비 세 액 |
|------------------|------------|----------------|-------------|-------------|-------------|-------------|------------------|-----------------------|-----------------------|------------------|-------------|--------|-----------------------|-------------|----------------------------|
| | | | | | | | | | | 연 말 총 액 | 취 득 액 | | | | |
| | | | | | | | | | | | | | | | |

(2) 산업소분류 및 결산기별 총괄

| 산 업 소 분 류 및 결 산 기 | 사 업 체 수 | 총 업 원 수 | 출 하 액 | 생 산 액 | 부 가 가 치 | 수 출 액 | 내 국 소 비 세 액 | 유 형 고 정 자 산 | |
|---|------------------|------------------|-------------|-------------|------------------|-------------|----------------------------|----------------------------|------------------|
| | | | | | | | | 취 득 액 | 연 말 총 액 |
| | | | | | | | | | |

(3) 산업 및 품목별 총출하, 내수, 수출의 수량, 금액 및 구성비

| 분류번호 | 산업 및 품목 | 수량 단위 | 총 출 하 | | | 내 수 | | | 수 출 | | |
|------|---------|----------|-------|----|-----|-----|----|-----|-----|----|-----|
| | | | 수량 | 금액 | 구성비 | 수량 | 금액 | 구성비 | 수량 | 금액 | 구성비 |
| | | | | | | | | | | | |

(4)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출하액규모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금액액

| 산업소분류 및 출하액규모 | 사 업 체 수 | | | | 종 업 원 수 | | | | 출 하 액 | | | |
|------------------|---------|------|-------|-------------|---------|------|-------|-------------|-------|------|-------|-------------|
| | 계 | 5~9인 | | 500인 이 상 | 계 | 5~9인 | | 500인 이 상 | 계 | 5~9인 | | 500인 이 상 |
| | | | | | | | | | | | | |

(주) 종업원규모는 1~8 규모임.

(5) '87년 광공업 통계조사용 내검자료

| 행정구역분류 부호 및 명 | 사업체 고유번호 | 사업체명 | 평균 종업원수 | 급여액 | 생산비 | 출하액 | 재고액(연말) | | 유형 고정자산 연말총액 | 부지 | 건물 연면적 | 수출액 |
|------------------|-------------|------|------------|------|-----|------|---------|-------|--------------------|----|-----------|-----|
| | | | | | | | 계 | 완·반제품 | | | | |
| | | | | | | | | | | | | |
| 품목분류번호 | | 품목명 | | 수량단위 | | 총출하량 | 수출량 | 연말재고량 | | | | |
| 정태 | 동태 | 정태 | 동태 | 정태 | 동태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품목별 수량은 동태사업체의 '87년도 물량
 2. 동태조사업체이거나 출하액 5억원이상인 업체를 프린트

3. 사업체 명부에 대한 결과표

| | |
|---------------------------------------|----|
| (1) 광공업통계조사용 사업체 명부 | 20 |
| (2) 동·읍·면 및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 20 |
| (3) 유고부호별 동·읍·면의 사업체수 | 21 |
| (4) 구·시·군의 사업체수 규모별 동·읍·면수 | 21 |
| (5) 구·시·군 , 종업원규모 및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 22 |
| (6) 기업별 사업체 명부 | 22 |
| (7) 그룹 및 기업별 사업체 명부 | 23 |
| (8) 가, 나, 다순 사업체 명부 | 23 |

(1) 광공업 통계조사용 사업체명부 (조사원에게 배부)

| | | | | | | | | | | | | | | | | |
|----------|-------------|-----------|-----------|----------|--------|------|------|------|-----|-----|------|-----|-------|-----|--|--|
| 행정구역분류번호 | | 0000 - 00 | | 행정구역명 | | | | | | | | | | | | |
| 12 | | 7 | | 10 | | | 25 | | | | | | | | | |
| 일련 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 사업체명 | 주소 | | | 전화번호 | 산업분류 | 종업원수 | 조 직 | 구 분 | 창설년월 | 유 교 | | 비 고 | | |
| | | | 법정동 코드 | 법정동 명 | 번 지 | | | | | | | 연 월 | 부호 | | | |
| 3 | 7 | 20 | 2 | 12 | 9 | 9 | 5 | 5 | 1 | 1 | 4 | 4 | 2 | 15 | | |
| | | ** 기업체번호 | | | | | | | | | | | | | | |
| | | 2 4 | | | | | | | | | | | | | | |
| | | *** | | | 품목분류번호 | | | | | | | | 품 목 명 | | | |
| | | 3 3 20 | | | 8 | | | | | | | | 24 | | | |

(2) 동·읍·면 및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 | | | | | | | | | |
|------------------------|-------------|--------|---------|---------|-----------|-----------|----------|--------|-------|
| 시·도, 구·시·군, 동·읍·면 | 사업체수 (A) | 5 ~ 19 | 20 ~ 49 | 50 ~ 99 | 100 ~ 199 | 200 ~ 299 | 300 인 이상 | A ÷ 60 | B + 1 |
| | | | | | | | | (B) | (C) |
| 전국 서울 종로구 ○○동 | | | | | | | | | |

- (주) 1. B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프린트하며 C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고 정수로 프린트
 2. B + 1 (C)은 동·읍·면에 한해서 공식을 적용하며 전국, 시·도, 구·시·군에서는 동·읍·면에서 계산된 수치의 합계를 프린트.

(3) 유고부호별 동·읍·면의 사업체수

| 시·도, 구·시·군, 동·읍·면 | 계 (A+B) | 가동중인사업체 (A) | 유 고 사업체 (B) | 유 고 부 호 | | | |
|------------------------|------------|----------------|-------------------|---------|----|----|-------|
| | | | | 02 | 04 | 06 | |
| 전국 서울 종로구 ○○동 | | | | | | | |

(4) 구·시·군의 사업체수 규모별 동·읍·면수

| 시·도, 구·시·군 | 계 | 사업체수 규모별 동·읍·면수 | | | | | | | | | | | | | |
|-----------------------------|---|-----------------|--------|---------|---------|---------|---------|---------|---------|---------|---------|---------|---------|---------|--------|
| | | 1~60 | 61-120 | 121-180 | 181-240 | 241-300 | 301-360 | 361-420 | 421-480 | 481-540 | 541-600 | 601-660 | 661-720 | 721-780 | 780 이상 |
| 전국 서울 종로구 중 구 ⋮ | | | | | | | | | | | | | | | |

(5) 구·시·군 , 종업원규모 및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 시·도, 구·시·군 및 종업원규모 | 계 (2,3) | 산 업 중 분 류 별 사 업 체 수 | | | | | | | | | | | | | | | |
|-----------------------------|------------|---------------------|----|----|----|---|----|----|----|----|----|----|----|----|----|--|--|
| | | 2 | 21 | 23 | 29 | 3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
| 전국 계 5~9 10~19 ... | | | | | | | | | | | | | | | | | |
| 서울 계 5~9 ... | | | | | | | | | | | | | | | | | |
| 종로구 계 5~9 ... | | | | | | | | | | | | | | | | | |

(6) 기업별 사업체 명부

| 기업체 번호 | 사업체고유번호 | 사 업 체 명 | 주 소 | | | | |
|--------|---------|---------|-----|-------|-------|-----|-----|
| | |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번 지 | 전 화 |
| | | | | | | | |

(7) 그룹 및 기업별 사업체 명부

| 그룹 번호 | 기업체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 사업체명 | 주소 | | | | |
|-------|-------|-------------|------|-----|-------|-------|-----|----|
| | | |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번 지 | 전화 |
| | | | | | | | | |

(8) 가, 나, 다순 사업체 명부

(사업체 명부 양식과 동일하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은 제외)

4. 보고서 발간용 결과표

(1) 산업편

| | |
|--|----|
| ① 연도 및 산업중분류별 총괄 | 30 |
| ② 경영조직 및 산업중분류별 총괄 | 30 |
| ③ 산업세분류별 사업체당 및 종업원 1인당 지표 | 32 |
| ④ 산업세세분류 및 종업원 규모별 총괄 | 32 |
| ⑤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급여액 | 34 |
| ⑥ 산업세세분류별 생산비 및 출하액 | 36 |
| ⑦ 산업세세분류별 재고액 | 36 |
| ⑧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별, 출하액 및 유형고정자산 규모별 사업체수 | 38 |
| ⑨ 산업중분류, 종업원규모 및 자본금규모별 사업체수 | 38 |
| ⑩ 산업중분류 및 창설연도별 총괄 | 40 |
| ⑪ 산업세세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 및 감가상각액과 건설가계정 | 40 |
| ⑫ 산업세세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처분액 | 42 |

(2) 지 역 편

| | |
|---|----|
| ① 시·도, 산업중분류 및 연도별 총괄 | 46 |
| ② 시·도, 산업중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 46 |
| ③ 시·도, 산업중분류, 출하액규모 및 유형고정자산규모별 사업체수 | 48 |
| ④ 시·도, 산업중분류 및 자본금규모별 사업체수 | 48 |
| ⑤ 시·도,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급여액 | 50 |
| ⑥ 시·도, 산업중분류별 생산비 및 출하액 | 52 |
| ⑦ 시·도, 산업중분류별 재고액 | 52 |
| ⑧ 시·도, 산업중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 및 감가상각액과 건설가계정 | 54 |
| ⑨ 시·도, 산업중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처분액 | 54 |
| ⑩ 시·도, 구·시·군 및 산업대분류별 총괄 | 56 |

(3) 품 목 편

| | |
|--|----|
| ① 주요품목의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 60 |
| ② 주요품목의 시·도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 60 |
| ③ 주요품목별 사업체수, 생산, 출하 및 연말재고의 수량 및 금액 | 61 |

| | | |
|---|------------------------------------|----|
| ④ | 산업세분류별 주요품목의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 61 |
| ⑤ | 주요품목의 산업세분류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 62 |
| ⑥ | 품목별 수탁제조 수입액 | 62 |
| ⑦ | 주요품목의 연도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 63 |

(4) 기업체 편

| | | |
|---|--|----|
| ① |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기업체수 | 66 |
| ② |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종업원수 | 66 |
| ③ |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생산액 | 67 |
| ④ |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부가가치 | 67 |
| ⑤ |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 68 |
| ⑥ | 산업소분류,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총괄(전 기업체) | 68 |
| ⑦ | 산업소분류,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총괄(1기업, 2사업체이상 관할기업체) | 69 |
| ⑧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전 기업체) | 69 |
| ⑨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1기업, 2공장이상 소유기업체) | 70 |
| ⑩ | 본사 또는 본점에 속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표 | 70 |
| ⑪ | 본사 또는 본점 총괄 | 71 |

(I) 산 업 편

① 연도 및 산업중분류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산업중분류 및 연도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 업 원 수 No. of workers | 급 여 액 Employees' remmuneration | 생 산 비 Production costs |
|------------|------------|-------------------------------------|------------------------------|--------------------------------------|---------------------------|
|------------|------------|-------------------------------------|------------------------------|--------------------------------------|---------------------------|

② 경영조직 및 산업중분류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산업중분류 및 경 영 조 직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 업 원 수 No. of workers | 급 여 액 Employees' remmuneration | 생 산 비 Production costs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생 산 액 Gross output |
|------------|--------------------|-------------------------------------|------------------------------|--------------------------------------|------------------------------|--------------------------------|--------------------------|
|------------|--------------------|-------------------------------------|------------------------------|--------------------------------------|------------------------------|--------------------------------|--------------------------|

7
45
13
13
13
13
13
13

① Summary Figures by Year and by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생 산 액 Gross output | 부 가 가 치 Value added | 재 고 증 감 액 Change of inventories | 유 형 고 정 자 산 연 말 총 액 Amount of tangible fixed assets | Division of industry and year | Code |
|-----------------------------|-----------------------|------------------------|------------------------------------|---|-------------------------------|------|
|-----------------------------|-----------------------|------------------------|------------------------------------|---|-------------------------------|------|

② Summary Figures by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부 가 가 치 Value added | 재 고 증 감 액 Change of inventories | 유 형 고 정 자 산 Tangible fixed assets | | | | 연 말 총 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Division of Industry and type of ownership | Code |
|------------------------|------------------------------------|--------------------------------------|--------------------|----------------------------------|----|--|--|------|
| | | 취 득 액 Investment | 처 분 액 Disposals | 감 가 상 각 액 Annual depreciation |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

③ 산업세분류별 사업체당 및 종업원1인당 지표

단위 : 명, 천원, m²

| 분 류 번 호 | 산업세분류 | 사 업 체 당 Average per establishment | | | | | | |
|------------|-------|--------------------------------------|--------------------------------|--------------------------|---------------------------|-----------------------------------|-------------|-------------------------------|
| | | 종업원 수 No of workers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생 산 액 Gross output | 부 가 가 치 Value added | 재고증감액 Change of inventories | 부 치 Site | 건물연면적 Total floor space |
| 7 | 45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 부지, 건물면적은 광업은 제외(이하 통계표 동일)

④ 산업세분류 및 종업원 규모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류번호 | 세세분류 및 규모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 수 No of workers | 급 여 액 Employees' remuneration | 생 산 비 Production costs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생 산 액 Gross output |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 (주) 1. 종업원 규모별에서 사업체 1개는 사업체수만 Print 하고 나머지 "×" 표시
 2. 사업체가 1개인 산업분류는 종업원규모를 Print 하지 않는다.

③ Summary Indicator Per Establishment and Workers by Group of Industry

in person, thousand won, m^2

| 종업원 1인당 Average per Worker | | | | | 피고용자 1인당 급여액 Remuneration per employee | Group of industry | Code |
|-------------------------------|------------------------|------------------------|------------|-------------------------------|---|----------------------|------|
| 출하액 Value of shipments | 생산액 Gross output | 부가가치 Value added | 부지 Site | 건물연면적 Total floor space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④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and by Sub-group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부가가치 Value added | 재고증감액 Change of inventoris | 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 | | 연말총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Sub-group and size of workers | Code |
|------------------------|----------------------------------|---------------------------------|------------------|---------------------------------|---|---|----------------------------------|------|
| | | 취득액 Investments | 처분액 Disposals | 감가상각액 Annual depreciation | 연말총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

⑤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급여액

단위: 개, 명, 백만원

| 분류 번호 | 산업세세분류 | 사업체수 Number of establis - hments | 평 균 종 업 원 수 Average number of workers | | | | 연 말 Number of workers | | |
|----------|--------|---|--|--|---------------------|--|--------------------------|----------------------------------|-------------|
| | | | 계 Total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W.P. and U.F.W | 생산종업원 Operatives | 사무및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 계 Total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W.P. and U.F.W | |
| | | | | | | | | 남 Male | 여 Female |
| 7 | 4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⑤ Number of Establishment, Workers, Remuneration by Sub-group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종업원 수 at the end of the year | | | | 급여액 Employess' remuneration | | | Sub- group of Industry | Code |
|---------------------------------|-------------|---|-------------|--------------------------------|---------------------|---|---------------------------|------|
| 생산종업원 Operatives | | 사무 및 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 | 계 Total | 생산종업원 Operatives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 | |
| 남 Male | 여 Female | 남 Male | 여 Female | | | | | |
| 11 | | 11 | | 11 | 11 | 11 | 45 | 7 |

⑥ 산업세세분류별 생산비 및 출하액

단위 : 백만원

| 분류번호 | 산업세세분류 | 생산비 Production Costs | | | | | |
|------|--------|-------------------------|-----------------------|--------------|--------------------|--------------|------------------------|
| | | 계 Total | 원재료비 Raw materials | 연료비 Fuels | 전력비 Electricity | 용수비 Water | 위탁생산비 Contract work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⑦ 산업세세분류별 재고액

단위 : 백만원

| 분류번호 | 산업세세분류 | 계 Total | | 완제품 Finished Products | | 반제품 및 Semi - finished goods and |
|------|--------|------------------------------|-------------------------|------------------------------|-------------------------|------------------------------------|
| | | 연말 At the end of the year | 대연초증감액 Annual change | 연말 At the end of the year | 대연초증감액 Annual change | 연말 At the end of the year |
| 7 | 45 | 16 | 16 | 16 | 16 | 16 |

⑥ Production Costs and Value Shipped by Sub-group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수리 유지비 Repair and maintenance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 | | | Sub - group of industry | Code |
|-------------------------------------|-----------------------------|------------------------------|--------------------------|---------------------------------------|---------------------------------|-------------------------|------|
| | 계 Total | 완 제 품 Products shipped | 폐 품 Wastes shipped | 수탁제조수입액 Receipts for processing | 수리수입액 receipts for repair | | |
| | | | |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⑦ Value of Inventories by Sub-group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재 공 품 Goods in process | 원 재 료 Raw - materials | | 연 료 Fuels | | Sub - group of industry | Code |
|---------------------------|-----------------------------|----------------------------------|-----------------------------|----------------------------------|-------------------------|------|
| | 대연초 증감액 Annual change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대연초 증감액 Annual change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 |
| | | | | | | |
| 16 | 16 | 16 | 16 | 16 | 45 | 7 |

⑧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출하액 및 유형고정자산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

| 분 류 번 호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 |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Size of value shipped | | | | | | | | |
|------------|-------------------|------------------------------------|---|------------------------------------|--------------------------------------|--------------------------------------|--|--|--|--|
| | | 계 Total | 50 백만원미만 Less than 50 million Won | 59 ~ 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 ~ 4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 ~ 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 ~ 4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 ~ 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0 ~ 4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0 백 만 원 이상 More than 50000 million Won |
| 7 | 45 | 9 | 9 | 9 | 9 | 9 | 9 | 9 | 9 | 9 |

⑨ 산업중분류, 종업원 규모 및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

| 분 류 번 호 | 산업중분류 및 종업원 규모 | 계 Total | 자본금 규모별 회사수 Number | | | | |
|------------|-------------------|------------|--------------------|---|---------------------------------|---------------------------------|-----------------------------------|
| | | | 소 계 Sub - total | 10 백만원미만 Less than 10 million won | 10 ~ 49 백 만 원 million won | 50 ~ 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 ~ 499 백 만 원 million won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⑧ Number of Establishments by Size of Value shipped, Tangible Fixed Assets and by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 유형고정자산 규모별 사업체수 Size of tangible fixed assets | | | | | | | | |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계 Total | 50 백만원미만 Less than 50 million won | 50 ~ 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 ~ 299 백 만 원 million won | 300 ~ 4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 ~ 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 ~ 4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 ~ 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0 백 만 원 이상 More than 10,000 million won | | |
| 9 | 9 | 9 | 9 | 9 | 9 | 9 | 9 | 9 | 45 | 7 |

⑨ Number of Establishments by size of Capital Paid, by size of workers and by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 of Company by size of Capital paid | | | | 회사이외의 법인 Other Corporation | 개 인 Individuals | Division of industry and size of workers | Code |
|------------------------------------|-------------------------------------|-------------------------------------|--|----------------------------------|--------------------|--|------|
| 500 ~ 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 ~ 4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 ~ 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0 백 만 원 이상 More than 10000 million won |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⑩ 산업중분류 및 창설년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산업중분류 및 창 설 년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수 No. of workers | 급 여 액 Employees' remuneration | 생 산 비 Production costs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생 산 액 Gross outputs |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⑪ 산업세세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 및 감가상각액과 건설가계정

단위 :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산업세세분류 | 연 말 총 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 | | | 계 Total |
|------------|--------|--|-------------|--|---|--|------------|
| | | 계 Total | 토 지 Land | 건물 및 구축물 Buildings and structures | 기계기구 및 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s | 차량 및 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s |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⑩ Summary Figures by Year of Found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부가가치 Value added | 재고증감액 Change of inventories | 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 | | Year of foundat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 | 취득액 Investment | 처분액 Disposals | 감가상각액 Annual depreciation | 연말총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⑪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and Depreciation Value of Tangible Fixed Assets,
Construction in process by Sub-group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연간감가상각액 Annual depreciation | | | 건설가계정 Construction in process | | | Sub-group of industry | Code |
|--|--|--|----------------------------------|------------------------------|------------------|--------------------------|------|
| 건물및구축물 Buildings and structures | 기계기구및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 | 차량및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s | 연간감소액 Annual increased | 연간감소액 Annual decreased | 연말잔액 Balances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⑫ 산업세세분류별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처분액
 단위 :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산업세세분류 | 연 간 취 득 액 Annual acquisition | | | | | 토 지 Land |
|------------|--------|------------------------------|---|--|---|--|-------------|
| | | 계 Total | 신규취득 Acquisition of new assets | 건물및구축물 Buildings and structures | 기계기구및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s | 차량및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s | |
| 7 | 45 | 16 | 16 | 16 | 16 | 16 | 16 |

⑫ Acquisition Value and Disposal Value of Tangible Fixed Assets by Sub - group of Industry

In million won

| | 연 간 처 분 액 Annual disposals | | | | | Sub - group of industry | Code |
|--|-------------------------------|-------------|---|--|---|----------------------------|------|
| | 계 Total | 토 지 Land | 건물및 구조물 Buildings and structures | 기계기구및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ss | 차량및 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ion equiments | | |
| 중 고 취 득 Acquistion of old assets | | | | | | | |
|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Ⅱ) 지 역 편

① 시·도, 산업중분류 및 연도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시·도 및 산업중분류 | 1984 | | | 1985 | | |
|------------|-------------|-------------------------------------|---------------------------|------------------------|-------------------------------------|---------------------------|------------------------|
| |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수 No. of workers | 부가가치 Value added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수 No. of workers | 부가가치 Value added |

② 시·도, 산업중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시·도, 산업중분류 및 종업원규모 | 사 업 체 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수 No. of workers | 급 여 액 Employees remuneration | 생 산 비 Production costs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생 산 액 Gross output |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① Summary Figures by Year,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1986 | | | 1987 | |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사업체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수 No. of workers | 부가가치 Value added | 사업체수 No. of establishments | 종업원수 No. of workers | 부가가치 Value added | | |
| | | | | | | | |

②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부가가치 Value added | 재고증감액 Change of inventories | 유형고정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 | | Size of workers,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 | 취득액 Investments | 처분액 Disposals | 감가상각액 Annual depreciation | 연말총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③ 시·도, 산업중분류 및 출하액 규모, 유형고정자산 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

| 분 류 번 호 | 시 · 도 및 산업중분류 |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No.of establishments by size of value of shipments | | | | | | | | |
|------------|---------------------|---|---|------------------------------------|--------------------------------------|--------------------------------------|--|--|---|--|
| | | 계 Total | 50 백만원 미 만 Less than 50 million won | 50 ~ 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 ~ 4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 ~ 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 ~ 4,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 ~ 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0 ~ 4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0 백만원이상 More than million won |
| 5 | 45 | 9 | 9 | 9 | 9 | 9 | 9 | 9 | 9 | 9 |

④ 시·도, 산업중분류 및 자본금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

| 분 류 번 호 | 시 · 도 및 산업중분류 | 계 Total | 자 본 금 규 모 별 | | | | |
|------------|---------------------|------------|--------------------|---|---------------------------------|---------------------------------|-----------------------------------|
| | | | 소 계 Sub - Total | 10 백만원미만 Less than 10 million won | 10 ~ 49 백 만 원 million won | 50 ~ 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 ~ 499 백 만 원 million won |
| 7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③ Number of Establishments by size of value Shipped, Tangible Fixed Assets,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 유형고정자산규모별사업체수 No. of establishments by size of tangible fixed assets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 | | | | | | | |
|---|---------------------------------|---|--|--|--|--|---|---|---|------|
| | 계 | 50 백만원 미 Less than 50 million won | 55 ~ 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 ~ 299 백 만 원 million won | 300 ~ 4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 ~ 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 ~ 4,999 백 만 원 million won | 5,000 ~ 9,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0 백만원이상 More than 10,000 million won | Code |
| Total | 9 | 9 | 9 | 9 | 9 | 9 | 9 | 9 | 45 | 5 |

④ Number of Establishments by size of Capital Paid,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 by size of Capital Paid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 |
|--|--|---|------|
| | 회사이외의 법 인 Other corporation | 개 인 Individuals | Code |
| 500 ~ 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 ~ 4,999 백 만 원 million won | 10,000 백만원 이상 More than 10,000 million won | 13 |
| 13 | 13 | 13 | 45 |
| 13 | 13 | 13 | 7 |

⑤ 시·도,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및 급여액

단위 : 개, 명, 백만원

| 분 류 번 호 | 시 · 도 및 산업중분류 | 사업체수 Number of establishments | 평 균 종 업 원 수 Average number of workers | | | | 연 말 Number of workers | | |
|------------|---------------------|-------------------------------------|--|--|---------------------|--|-----------------------------|---------------------------------|-------------|
| | | | 계 Total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W.P. and U.F.W | 생산종업원 Operatives | 사무및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 계 Total | 자영업주및 무급가족종사자 W.P. and U.F.W | |
| | | | | | | | | 남 Male | 여 Female |
| 7 | 4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⑤ Number of Establishments, Workers, Remuneration by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on, million won

| 종업원 수 at the End of the year | | | | 급여액 Employees' Remuneration | |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생산종업원 Operatives | | 사무 및 기타 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 | 계 Total | 생산종업원 Operatives | 사무 및 기타종업원 Administrative and other workers | | |
| 남 Male | 여 Female | 남 Male | 여 Female | | | | | |
| 11 | | 11 | | 11 | 11 | 11 | 45 | 7 |

⑥ 시·도, 산업중분류별 생산비 및 출하액
단위 : 백만원

| 분류번호 | 시·도 및 산업중분류 | 생 산 비 Direct production costs | | | | | |
|------|-------------|-------------------------------|-----------------------|--------------|--------------------|--------------|------------------------|
| | | 계 Total | 원재료비 Raw materials | 연료비 Fuels | 전력비 Electricity | 용수비 Water | 위탁생산비 Contract work |
| 5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⑦ 시·도 및 산업중분류별 재고액
단위 : 백만원

| 분류번호 | 시·도 및 산업중분류 | 계 Total | | 완 제 품 Finished goods | | 반제품 및 Semi-finished goods |
|------|-------------|----------------------------------|----------------------------|----------------------------------|----------------------------|----------------------------------|
| |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대연초증감액 Annual Change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대연초증감액 Annual Change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 5 | 45 | 16 | 16 | 16 | 16 | 16 |

⑥ Production Costs and Value Shipped by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수리유지비 Repair and maintenance | 출 하 액 Value of shipments | | | |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 계 Total | 완 제 품 Product shipped | 폐 품 Wastes shipped | 수탁제조수입액 Receipt for processing repair works | 수리수입액 Receipts for repair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7 |

⑦ Value of Inventories by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재 공 품 and good in process | 원 재 료 Raw materials | | 연 료 Fuels |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 대 연초증감액 Annual Change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대 연초증감액 Annual Change | 연 말 At the end of the year | | |
| 16 | 16 | 16 | 16 | 16 | 45 | 5 |

⑧ 시·도, 산업중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 및 감가상각액과 건설가계정

단위 : 백만원

| 분류번호 | 시·도 및 산업중분류 | 연 말 총 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 | | | 계 Total |
|------|-------------|--|-------------|--|---|--|------------|
| | | 계 Total | 토 지 Land | 건축및구축물 Buildings and structures | 기계 및 장치, 공구기구 및 비품 Machinery and equipment | 차량 및 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s | |
| 5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⑨ 시·도 및 산업중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처분액

단위 : 백만원

| 분류번호 | 시·도 및 산업중분류 | 연 간 취 득 액 Annual acquisition Value | | | | | 토 지 Land |
|------|-------------|---------------------------------------|-----------------------|--|---|--|-------------|
| | | 계 Total | 신규취득 New assets | 건축및구축물 Buildings and structures | 기계·기구 및 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s | 차량 및 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s | |
| 5 | 45 | 13 | 13 | 13 | 13 | 13 | 13 |

⑧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and Depreciation Value of Tangible Fixed Assets and Construction in Process by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연간 감가상각액 Annual depreciation Value | | | 건설가계정 Construction in process | |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건물 및 구축물 Buildings and structure | 기계·장치·공구 기구 및 부품 Machinery and equipment | 차량및운반구 Vehicles & transport equipments | 연간 증가액 Annual increased | 연간 감소액 Annual decreased | 연말잔액 Balances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5 |

⑨ Acquisition Value and Disposition Value of Tangible Fixed Assets by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million won

| 중고취득 Old assets | 연간 처분액 Annual disposition value | | | | | Region and 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 계 Total | 토지 Land | 건물및구축물 Building and structures | 기계·기구 및 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s | 차량 및 운반구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s | | |
| 13 | 13 | 13 | 13 | 13 | 13 | 45 | 5 |

⑩ 시·도, 구·시·군 및 산업대분류별 총괄

단위 : 개, 명, 백만원, m^2

| 분 류 | 구·시·군 및 | 사 업 체 수 | 종업원수 | 급 여 액 | 생 산 비 | 출 하 액 | 생 산 액 | 부가가치 |
|-----|-----------|-----------------------|----------------|-------------------------|------------------|--------------------|--------------|-------------|
| 번 호 | 산 업 대 분 류 | No. of Establishments | No. of Workers | Employees' Remuneration | Production costs | Value of shipments | Gross output | Value added |
| 7 | 31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⑩ Summary Figures by Gu.Si.Gun and Division of industry

In each, persno, million won, m²

| 재고증가액 Change of inventories | 유형 고정 자산 Tangible fixed assets | | | | 부지 Site | 건물연면적 Total floor space | Province of Gu-shi Gun and major-division of industry | Code |
|--------------------------------------|-----------------------------------|------------------|---------------------------------|---|------------|----------------------------------|---|------|
| | 취득액 Investment | 처분액 Disposals | 감가상각액 Annual depreciation | 연말총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31 | 7 |

(Ⅲ) 품 목 편

① 주요품목의 종업원규모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단위 : 개, 백만원

| | | | | |
|------|-------|------|------|-----|
| 분류번호 | 품 목 명 | | 수량단위 | |
| | 종업원규모 | 사업체수 | 출 하 | |
| | | | 수 량 | 금 액 |
| 10 | 25 | | 15 | 15 |

| | | | | |
|------|-------|------|------|-----|
| 분류번호 | 품 목 명 | | 수량단위 | |
| | 종업원규모 | 사업체수 | 출 하 | |
| | | | 수 량 | 금 액 |
| 10 | 25 | | 15 | 15 |

② 주요품목의 시·도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단위 : 개, 백만원

| | | | | |
|------|-------|------|------|-----|
| 분류번호 | 품 목 명 | | 수량단위 | |
| | 시·도명 | 사업체수 | 출 하 | |
| | | | 수 량 | 금 액 |
| 5 | 25 | | 15 | 15 |

| | | | | |
|------|-------|------|------|-----|
| 분류번호 | 품 목 명 | | 수량단위 | |
| | 시·도명 | 사업체수 | 출 하 | |
| | | | 수 량 | 금 액 |
| 5 | 25 | | 15 | 15 |

③ 주요품목별 사업체수 생산, 출하 및 연말재고의 수량 및 금액

단위 : 개, 백만원

| 분류번호 | 품 목 명 | 수량단위 | 사업체수 | 생 산 | | 출 하 | | 연 말 재 고 | |
|------|-------|------|------|-----|-----|-----|-----|---------|-----|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10 | 40 | 5 | 5 | 12 | 12 | 12 | 12 | 12 | 12 |

④ 산업세분류별 주요품목의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단위 : 개, 백만원

| 분류번호 | 산업세분류 및 품 목 | 수량단위 | 사업체수 | 출 하 | | Group of Industry and products | Code |
|------|----------------|------|------|-----|-----|-----------------------------------|------|
| | | | | 수 량 | 금 액 | | |
| 8 | 40 | 5 | 5 | 12 | 12 | 40 | 8 |

⑤ 주요품목의 산업세분류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단위 : 개, 백만원

| | | | | | | | |
|------|------------|------|------|-----|-----|-----------------------------------|------|
| 분류번호 | 품목 및 산업세분류 | 수량단위 | 사업체수 | 출 하 | | Products and Group of Industry | Code |
| | | | | 수 량 | 금 액 | | |
| 8 | 40 | 5 | 5 | 12 | 12 | 40 | 8 |

⑥ 품목별 수탁제조 사업체수 및 수입액

단위 : 개, 백만원

| | | | | | |
|------|-------|---------|------------|-------------|------|
| 분류번호 | 품 목 명 | 사 업 체 수 | 수탁제조 (임가공) | Commodities | Code |
| | | | 수 입 액 | | |
| 10 | 45 | 5 | 10 | 45 | 10 |

⑦ 주요품목의 연도별 사업체수 출하량 및 출하액
 단위 : 개, 백만원

| 분류번호 | 품 목 명 | | 수량단위 | |
|------|-------|------|------|-----|
| | 연 도 | 사업체수 | 출 하 | |
| | | | 수 량 | 금 액 |
| 10 | 25 | | 15 | 15 |

| 분류번호 | 품 목 명 | | 수량단위 | |
|------|-------|------|------|-----|
| | 연 도 | 사업체수 | 출 하 | |
| | | | 수 량 | 금 액 |
| 10 | 25 | | 15 | 15 |

(Ⅳ) 기 업 체 편

①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기업체수

Number of enterprise by size of Workers and capital,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회 | | | | | | 사 | | | 기 타 법 인 | 개 인 |
|---------------------|---|-----------------------------|---------|---------|-----------|-----------|------------------|------------------|---------------------------------|------------------|--------|
| | 계 | 10 백 만 원 미 만 | 10 ~ 49 | 50 ~ 99 | 100 ~ 499 | 500 ~ 999 | 1,000 ~ 4,999 | 5,000 ~ 9,999 | 10,000 백 만 원 이 상 | | |
| | | | | | | | | | | | |

②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종업원수

Number of workers by size of workers and capital,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회 | | | | | | 사 | | | 기 타 법 인 | 개 인 |
|---------------------|---|-----------------------------|---------|---------|-----------|-----------|------------------|------------------|---------------------------------|------------------|--------|
| | 계 | 10 백 만 원 미 만 | 10 ~ 49 | 50 ~ 99 | 100 ~ 499 | 500 ~ 999 | 1,000 ~ 4,999 | 5,000 ~ 9,999 | 10,000 백 만 원 이 상 | | |
| | | | | | | | | | | | |

③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생산액
 Value of output by size of workers and capital,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회 | | | | | | 사 | | | 기 타 법 인 | 개 인 |
|---------------------|---|-------------------------|---------|---------|-----------|-----------|------------------|------------------|-----------------------------|------------------|--------|
| | 계 | 10 백만 원 미 만 | 10 ~ 49 | 50 ~ 99 | 100 ~ 499 | 500 ~ 999 | 1,000 ~ 4,999 | 5,000 ~ 9,999 | 10,000 백만 원 이 상 | | |
| | | | | | | | | | | | |

④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부가가치
 Value added by size of Workers and capital,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회 | | | | | | 사 | | | 기 타 법 인 | 개 인 |
|---------------------|---|-------------------------|---------|---------|-----------|-----------|------------------|------------------|-----------------------------|------------------|--------|
| | 계 | 10 백만 원 미 만 | 10 ~ 49 | 50 ~ 99 | 100 ~ 499 | 500 ~ 999 | 1,000 ~ 4,999 | 5,000 ~ 9,999 | 10,000 백만 원 이 상 | | |
| | | | | | | | | | | | |

⑤ 산업소분류, 종업원규모,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별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Amount at the end of the year of Tangible fixed assets by size of Workers and capital,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회 | | | | | | 사 | | | 기 타 법 인 | 개 인 |
|---------------------|---|-------------------------|---------------|---------------|-----------------|-----------------|---------------------|---------------------|-----------------------------|------------------|--------|
| | 계 | 10 백만 원 미 만 | 10 ~ 49 | 50 ~ 99 | 100 ~ 499 | 500 ~ 999 | 1,000 ~ 4,999 | 5,000 ~ 9,999 | 10,000 백만 원 이 상 | | |
| | | | | | | | | | | | |

⑥ 산업소분류, 경영조직 및 자본금 규모별 총괄 (전기업체)
 Summary Figures by Size of capital,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산업소분류 경영조직 및 자본금규모 | 기업체수 | 사업체수 | 종업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유형고정자산 |
|-----------------------------|------|------|------|-----|------|--------|
| | | | | | | 연말총액 |
| | | | | | | |

⑦ 산업소분류, 경영조직 및 자본금 규모별 총괄 (1기업 2사업체이상 관할기업체)

Summary Figures by type of Management Organization by size of capital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 | | | | | |
|-------------------------|------|------|------|-----|------|----------------|
| 산업소분류 경영조직및 자본금계층 | 기업체수 | 사업체수 | 종업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
|-------------------------|------|------|------|-----|------|----------------|

⑧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 규모별 총괄 (전기업체)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 | | | | | |
|---------------------|------|------|------|-----|------|----------------|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기업체수 | 사업체수 | 종업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
|---------------------|------|------|------|-----|------|----------------|

⑨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별 총괄 (1 기업 2 사업체이상 관할기업체)
 Summary Figures by size of Workers and by Division of industry

| | | | | | | |
|---------------------|-------|-------|-------|-----|------|-------------------|
| 산업소분류 및 종업원규모 | 기업체 수 | 사업체 수 | 종업원 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유형 고정자산 연 말 총액 |
|---------------------|-------|-------|-------|-----|------|-------------------|

⑩ 본사 또는 본점에 속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표
 Regional distribution table by establishments

| | | | | | | | | | | | | | | | | |
|--------------------------------------|---|---|----|----|----|----|----|----|----|----|----|----|----|----|----|----|
| 기업체 수 1 기업 2 사업체 1 기업 2 사업체 이상 | 본사본점에 속한 사업체 수 1 기업 2 사업체 1 기업 2 사업체 이상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 | | | | | | | | | | | | | | |

⑩ 본사 또는 본점 총괄
Summary Figures of head office

| 신업소분류 | 본사 또는 본점수 | 종업원수 | 급여액 | 원재료 및 연료 계 고 액 | | 유형 고정자산연말총액 | | | | | | | |
|-------|-----------|------|-----|-------------------|------------|-------------|----|----------------|---------------------|----------------|--|--|--|
| | | | | 연말 계 고액 | 대연초 증 감 | 계 | 토지 | 건물 및 구축물 | 기계 및 기구·기구·비품 | 차량 및 운반구 | | | |
| | | | | | | | | | | | | | |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용
산업 및 품목분류표
(광업 및 제조업부문)

경 제 기 획 원

본 책자는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통계조사」를
위하여 발간된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는 이
용할 수 없습니다.

목 차

| | |
|--|----|
| I . 이용상 유의사항..... | 7 |
| II . 산업별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 12 |
| III . 산업 및 품목분류 (광업 및 제조업부문)..... | 27 |
| 대분류 2 . 광업..... | 29 |
| 중분류 21 . 석탄 광업 | 31 |
| 중분류 23 . 금속 광업 | 32 |
| 중분류 29 . 기타 광업 | 33 |
| 대분류 3 . 제조업..... | 35 |
| 중분류 31 .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36 |
| 311~312 . 식료품 제조업 | 26 |
| 313 . 음료품 제조업..... | 42 |
| 314 . 담배 제조업..... | 43 |
| 중분류 32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 44 |
| 321 . 섬유 제조업..... | 44 |
| 322 . 의복 제조업, 신발 제외..... | 49 |
| 323 .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 의복 제외..... | 51 |
| 324 .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 52 |
| 중분류 3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포함 | 53 |
| 331 .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53 |

| | |
|---|-----------|
| 332 .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제 제외..... | 55 |
| 중분류 34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 57 |
| 341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57 |
| 342 .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 59 |
| 중분류 35 .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1 |
| 351 .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61 |
| 35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67 |
| 353 . 석유 정제업..... | 70 |
| 354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70 |
| 355 . 고무제품 제조업..... | 71 |
| 35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72 |
| 중분류 3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74 |
| 361 .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74 |
| 362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74 |
| 36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75 |
| 중분류 37 . 제 1 차 금속산업 | 78 |
| 371 . 제 1 차 철강산업..... | 78 |
| 372 . 제 1 차 비철금속 산업..... | 80 |
| 중분류 38 .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83 |
| 381 .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 83 |
| 382 .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 83 |
| 383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98 |
| 384 . 운수장비 제조업..... | 104 |
| 385 . 의료, 광학, 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106 |

| | |
|-----------------------|-----|
| 중분류 39 . 기타 제조업 | 111 |
| 390 . 기타 제조업..... | 111 |

부 록

| | |
|-------------------------------|-----|
| 1 . 품목 색인표..... | 119 |
| 2 . 도량형 단위 환산표..... | 191 |
| 3 .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 | 193 |

품목분류 유의사항

I. 이용상 유의사항

II. 산업별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1. 중분류별 품목의 특기사항

2. 중분류별 수량단위 해설

I. 이용상 유의사항

1. 품목분류표의 내용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광공업부문 각 사업체의 산업을 지정하고, 생산 및 출하제품에 대하여 통일된 분류를 부여하기 위해 체계화한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5차개정, 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 71호)」 중 광업 및 제조업의 각급 세분 업종별로 계열품목을 분류한 것이다.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산업”

- | | |
|---------------------|-------------------------|
|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 ☆ 2. 광업 |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 ☆ 3. 제조업 |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5. 건설업 | 0. 분류불능산업 |

2. 본 분류표의 산업 및 품목수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품목분류 |
|-----|-----|-----|-----|------|-------|
| 광업 | 3 | 3 | 10 | 25 | 92 |
| 제조업 | 9 | 28 | 105 | 522 | 3,077 |
| 계 | 12 | 31 | 115 | 547 | 3,169 |

3. 분류기준

본 분류는

- 1)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
- 2) 제품의 특성
- 3) 제품의 용도
- 4) 생산과정, 기술 및 조직 등에 따라 분류되었다.

4. 분류체계의 구조

1) 산업분류

본 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중분류(2자리), 소분류(3자리), 세분류(4자리), 세세분류(5자리)의 5 단계 분류체계이며, 분류기호는 10진분류법을 사용하였다.

2) 품목분류

각 세세분류마다 3자리의 숫자(111~999)를 부여하여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동일세세분류내에서 729종까지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각 분류단계에서는 1~9까지 부호를 사용하여 각 분류를 9개 항목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분류에 사용된 부호중 “ 0 ”의 부호는 “더이상 분류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 9 ”의 부호는 “기타 또는 잔여항목”을 의미한다.

5. 용 도

본 「산업 및 품목분류표」는 조사표 I (공장용)의 17항 「연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과 18항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란의 품목분류(8자리)부호를 기입하고, 수량단위를 지정, 기입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구분 작성한 것이다.

6. 분류요령

1) 조사표에 품목분류부호를 기입할 때에는, 우선 제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중분류산업(2자리)를 결정한다.

2) 이어, 제품의 특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 세세분류까지 확인이 되면, 해당 세세분류부호(5자리)에 이어 품목부호(3단위 숫자)를 기입한다.

3) 또한, 수량은 품목분류표상의 지정단위에 맞게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체 사용단위와 조사지정단위가 상이할 경우에는 조사지정단위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품목분류표에 부록으로 환산표 첨부).

4) 지정단위가 「※」표인 것은 수량조사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
 되 착오분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미 조사된 수량은 삭제하지 말
 고 그대로 둔다.

5) 품목분류 예시

(조사표 발췌)

| 산업 및 품목분류 | | 품 목 명 | ★ | 단 위 | 수 량 | 금 액 |
|-----------|------|-------|---|---------------------|------------------------|------|
| 산업분류 | 품목번호 | | | | | |
| 313 | 1111 | 육송소할제 | | m ² 才 | 33 9,900 | 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품목분류표 발췌)

| 분류부호 | 수량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3111 | | 일반제재업 1 m ² = 300 才 |
| 1 | | 소할제 |
| 111 | m ² | 육송소할제 |
| 112 | m ² | 미송소할제 |

7. 기 타

1)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명 및 품목분류번호 참고시 유의사항

가. 17항의 품목란은 사업체명부의 것을 참고로 하여 조사를 하면
 용이하다.

나.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명칭은 실제로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
 품(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이는 사업체에서 '생산품목을 변

경하는 등과 같은 이유때문으로(사양품목대신 신규개발품목이나 고신장 및 장려품목으로 대체)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며 품목번호는 반드시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대조 확인후 기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체명부상의 품목분류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 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금번 조사에서는 품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조사표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 품목으로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 품목명칭을 기입한다.

라. 매월 조사하는 사업체(사업체명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체)는 월별 조사내용과 연별 조사내용이 근접하는 것이 일반적 인 바 내검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조사표 I (17항)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품의 수가 많은 대기업체는 17항의 란이 부족하므로 타조사 표의 17항 양식을 이용한다.

나. 품목명칭을 기입할 때에는 포괄적인 명칭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예 : 목재, 식품류, 기계류, 가전제품 등)

다. 산업 및 품목분류상 동일한 제품(품목)을 필요이상 세분하지 말아야 한다(크기별로 나누는 경우 등).

라.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하지 않고 기타 품목만으로 묶어 분류하거나 또한 기타 품목의 출하액이 출하액 합계액에 비해 과다 하게 분류해서는 안된다(5% 이내가 타당).

마. 수량단위의 환산은 개별단위를 환산한 후 총물량을 파악한다.

바. 수량단위를 환산하여 수정할 때는 출하량, 수출량, 재고량도 동시에 수정한다.

사.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가 ‘천배수(千倍數)’인 것에 유의한다. <예> kg→Mg, l→kl, m²→천 m², 매→천매, 개→천개

아.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분류가 ‘임가공’으로 지정된 품목은 18항의 「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에만 사용하고 17항의 「제품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임가공산업 및 품목

3119 식료품 임가공업, 3422 상업인쇄업,

3213 섬유표백·염색 및 임가공업, 34231100 제책업,

34239900 광고수입, 38143100 금속열처리업, 38144100 도금업,

38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열처리·표면처리업

3) 보안품목의 품목분류

국가안보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5개품목)은 세분하지 말고 품목 분류번호와 명칭은 [보기]와 같이 위장품목의 번호와 명칭에 따라 위장기입하여 특수품목이 조사표상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보기 : 조사요령서 p13 : 방위산업사업체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참조]

4) 품목 색인표 사용방법

가. 이 표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기재된 전 조사대상품목을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그러나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준으로 배열하였고, 기타 품목 등은 제외하였다.

[보기] 승용차스

중형승용차 자동차스

중형승용차스

다. 색인표에서 품목을 찾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의 분류내용을 확인한 후 기입한다.

라. 색인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품목분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에 따른다.

II. 산업별 품목분류시 유의사항

1. 중분류별 품목의 특기사항

대분류 2. 광업

중분류 21~29. 광업

1. 제련하지 않은 원광을 분류한다.
2. 혼합광석의 경우 함유량이 가장 많은 광석에 분류한다.
3. 광업에 있어서는 매월 실시하는 월간조사(동태)와는 달리 기준품위로 환산치 않고 채굴한 광석상태의 물량을 조사한다.
4. 광산에서 자체 제련시설을 갖추고 자가 제련하는 경우에는 중분류 36(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7(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5. 29020(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은 그 성분을 함유한 광물 및 광물질을 발굴하는 업(業)을 말하므로 화학제품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6. 소금에는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과 이것을 식용으로 하기 위한 정제염, 화학원료로 쓰이는 화학용 소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들은 각각 29040100(천일염), 31212300(정제소금) 및 35299135(공업염)에 각각 분류한다.
7. 활석분, 납석분, 석회분, 석고분, 장식분, 규석분 등과 같이 광석을 마쇄하여 제품화한 것은 36999(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

대분류 3 .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1. 임가공도축업 (31191), 임가공곡물도정 및 제분업 (31192), 임가공식품냉동업 (31193), 임가공착유 (31194), 기타임가공 (31199)은 대개 수수료를 받고 가공처리하므로 가공임만 파악한다.
2. 아이스크림 (31123100)에는 젓 (우유등)을 주원료로 제조된 것만 포함하고 우유를 기저로 하지않는 얼음과자 (아이스바, 하드, 아이스콘등)는 빙과 (31174100)로 조사한다.
3. 31152 (식물성유지 제조업)과 31153 (식용유 정제업)은 동일 명칭이더라도 기름만 추출하는 경우는 31152, 추출하는 활동과 연관적으로, 또는 구입한 기름을 더 가공, 정제 및 경화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기름은 31153에 각각 분류한다.
4. 음료품 (주류, 청량음료)는 단위가 *kl*이므로 사업체에서 상자 (C / S)나 본 (병), Can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환산해야 한다.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 제조업

1. 섬유는 사용원재료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므로 모, 면, 인조 섬유, 견, 마 등의 구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혼방은 그 비율에 따라 구분하되 혼방제품 (사 · 직물)의 품목번호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하는 섬유의 제품에 분류한다.

2. 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야아드(yd)를 사용하는데 yd는 길이의 단위이므로 폭(inch)을 파악하여 넓이를 구하여 m^2 로 단위 환산해야 한다.

3. 혼방사와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

가. 면과 인조섬유(화학섬유)의 혼방

① 면과 1종의 타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 비율은 50:50으로 하며, 50:50과 같이 동율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② 면과 2종 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동율일 때는 혼방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이는 가격순)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모와 화섬의 혼방

① 기준비율은 60(화섬):40(모)으로 하고, 기준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예: 혼방소모사(32113215), 혼방소모직물(32122211)]

② 모와 2종 이상의 타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율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미만일 경우에 한함.

다. 견과 화섬의 혼방

① 기준 준량비율을 30[견]:70(화섬)으로 하고 동율일 때는 견을 채택한다. [예: 견혼방직물(32123200)]

② 견과 2종 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

울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단, 견이 3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울일 때는 견을 채택한다.

라. 2종이상의 화섬혼방

등분율 이상을 점한 섬유명에 따라 분류하되 동울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으로 분류한다.

4. 품목구분

가. 톱·스리버, 로빙(32114111)등은 32로, Staple fiber, Tow는 35142, 35143으로 각각 분류한다.

나. 인견사, 비스코스사등은 재생섬유 방적사(32114212)로, 레이온, 인견직물 등은 재생섬유직물(32123511)로 분류한다.

다. 면내의, 모내의, 모양말, 면양말, 면장갑, 모장갑, 웨타와 같이 편직된 의복은 3215(편조업)에, 구입한 직물이나 가죽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단 봉제한 기성복은 3222(의복제조업)에 분류한다.

라. 편직장갑(모장갑, 면장갑, 인조섬유장갑 등)은 32154에, 편직되지 않은 각종 직물, 가죽 모피등으로 제조된 장갑은 32228에 분류하고, 완전히 고무로 된 장갑은 35593로, 경기용장갑(권투글러브, 야구글러브 등)은 39032116, 39032117로 분류한다.

마. (담배)필터는 39094에 분류한다.

바. 섬유리본, 섬유테이프 등은 32125100(세 폭직물)에 포함되나, 반창고, 밴드등의 의료용은 외피용약(35224118)에 분류한다.

[322] 의복 제조업, 신발 제외

1. 코트, 양복, 양장복, 셔츠, 기타 정장복은 마춤복(3221)과 기성복(3222)에 따라 각각 분류가 다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의복은 용도에 따라 남자용, 여자용, 소아용에 따라 분류가 다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 의복 제외

1. 가죽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본 산업 및 품목분류표의 지정단위와의 환산관계는 아래와 같다.
 - 사방 10인치 1평 ≒ 0.0645㎡
1매 ≒ 30 ~ 40 평, 1매 ≒ 3.7㎡ (40평)
 - 사방 8인치 1평 ≒ 0.0413㎡, 1매 ≒ 30 ~ 40 평
1매 ≒ 3.3㎡ (30평)

[324]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 신발 제외

1. 32401의 구두 및 단화등 가죽신 제조업은 봉제를 위주로 한 것이고 32402의 특수용 신발제조업은 작업화, 등산화, 경기용신발등을 말한다.
2. 갑피가 가죽 또는 직물로 되었으나,창이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고 고무신 제조 사업체에서 만든 경우는 35591(고무신 제조업)에 분류한다.
3. 운동화는 고무신 생산라인과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이므로 35591에 분류되고, 플라스틱신발은 35607에 분류한다.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포함

1. 33111 (제재업)은 원재료와 제재 형태에 따라 육송, 미송, 침엽수, 나왕, 활엽수와 소할재, 각재, 판재로 분류되므로 유의한다.
2. 수량단위는 m^3 인바, 사업체에는 才(사이)로 거래되고 있는 바,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지정단위인 m^3 로 환산 기입한다.
즉, 1才 \approx 0.0034 m^3 1 m^3 = 300才
3. 가구관련 제품은 사용한 원재료에 따라 일반 목재가구는 33201에 금속제가구는 38121에 플라스틱가구는 35604에 분류한다.
4. 가구 관련제품은 제품의 성질에 따라 구분되므로 구체적 명칭(의자, 책상, 서가, 장식장, 장농, 화장대, 식탁, 상, 찬장, 침대, 캐비닛, 신발장, 문갑등)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 34119111 (골판지원지)는 라이너지(A원지, B원지 또는 K원지)와 중심원지(S원지)를 포함하며, 34193116 (골판지)는 골판지원지에서 만들어진 원단이며, 34121100 골판지 상자는 골판지로 만든 것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분류한다.
2. 34193113 (도포 또는 침착지)는 접착지, 에나멜지, 투사지등을 포함하며, 전자복사지인 감광지(인화지)는 35296113에 분류한다.
3.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의 거래단위인 연, 롤, 권 등으로 조사되는 예가 많으므로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1연 = 500매

$$1 \text{ 연 (kg)} = 500 \text{ (매)} \times \text{종이 1매 중량 (kg)}$$

서적출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제품출하로 조사하고 인쇄소에서는 상업인쇄업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1. 플라스틱물질 (35114)은 석유화학제품 (35111 ~ 113)을 분해, 가공한 것이며, 356의 플라스틱제품은 플라스틱물질 (각종수지)을 재료로 하여 가공한 것임을 유의하여 분류한다.
2. 재생섬유 (35142), 합성섬유 (35143)는 중분류의 32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료이므로 분류에 유의한다.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 페인트는 수성 (35212)과 유성 (35211)으로 구분 조사한다.
2. 유기계면활성제 (35233 111)에는 DOP, BOA, DBP, DBA 등 많은 종류가 있으니 전부 포함한다.
3. 의약품은 용도별 (신경, 기관, 소화계통 등)로 구분 분류되므로 명칭을 사업체 명칭으로 쓰지 말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353] 석유 정제업

1. 석유 1 바렐 ≒ 158.984 ℓ
2. 경유 (35300216)에는 DF - 1, DPO도 포함 분류한다.
3. 중유 (35300217)에는 H. G. O., I. F. O, Bunker A, B, L, R. F. O 도 모두 포함한다.
4. 석유 아스팔트 (35403111)에는 석유 피치도 포함 분류한다.
5. 윤활유와 구리스는 정제된 것 (35300)과 정제된 것을 가공한 것 (35402)으로 구분 분류한다.

[355] 고무제품 제조업

1. 35591의 운동화는 갑피의 사용원재료에 따라 직물운동화, 가죽운동화, 기타 운동화로 구분한다.(나이키, 프로스펙스, 아식스, 월드컵, 타이거 상표의 신발을 포함한다.)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35114 플라스틱물질(각종수지)과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물질을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플라스틱 제품의 수량단위는 중량단위 %으로 조사한다.
3. 플라스틱 제품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므로 구체적 명칭을 기입한다.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1. 포함되는 품목은 도자기, 유리, 시멘트, 석제품등이 분류된다.
2. 위생도기는 싱크,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욕조로 세분되고 금속제 위생용품은 38193에 분류된다.
3. 비금속광물(석회석, 활석)을 채광하여 분쇄처리하는 것은 36995에 분류하고 채광활동자체는 2903에 분류한다.
4. 석재를 채취하는 것은 29011에 분류하고 석재를 채취하여 가공하는 것은 36994에 분류한다.

중분류 37. 제 1차 금속산업

1. 중분류 37에는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규격, 성분(탄소 함유량) 등 재질에 따라 보통강, 합금강, 고탄소강으로 품목분류번호가 세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2. 철판 및 철강(봉강, 형강, 박판, 대강)은 열처리에 따라 열간압

연업(37121)과 냉간압연업(37122)으로 구분된다.

3. 강관(37123), 표면처리강관(37192)은 생산공정에 따라 달리 분리되므로 유의한다.
4. 형강과 봉강은 직경의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된다.
5. 3712(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제조업)에서 유의할 것은 직접 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쇠못과 와이어로프를 제조하면 37124 및 37129로 타사업체에서 철강선을 구입하여 쇠못과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면 38196으로 분류한다.

중분류 38.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1]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1. 381 소분류는 조립금속제품이므로 전기나 동력을 이용한 기계나 장비는 제외된다.
2. 금속제품에서 식탁용품(38111100) (수저, 저, 국자, 포크, 주걱 등)은 세분할 필요가 없으나, 주방용품(38142, 38192) (숟, 냄비, 시루, 주전자, 식기 등)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며, 주방용품은 알루미늄제, 스텐레스제, 법랑제 등으로 구분 분류한다.
3. 보일러는 산업용은 38134에, 가정용은 38194에 분류한다.
4. 밸브(38198)는 재질(주강, 단강, 청동등)에 따라 구분한다.

[382]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1. 기계는 용도별(농업용, 금속절삭, 금속성형, 금속처리, 수지식 동력공구, 목공기계, 호환용절삭구, 금형, 건설 및 광산, 식료품, 고무 및 프라스틱, 인쇄 및 제본, 유리 및 요업)로 구분되므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품목조사시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도록 한다.
2. 기계의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이거나 부분품은 해당 산업분류

의 기타 부품에 분류한다.

3. 기계제품은 단위당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분류한다.
4.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장비(38251), 프로그램매체(38256)으로 구분되며 자동처리장비는 중앙기억장치(CPU),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 입출력장치등으로 세분되며 퍼스날컴퓨터는 중앙기억장치에 분류하고 주변장치는 해당 품목에 구분 분류한다.

[38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 전동기와 발전기는 직류와 교류로 구분되며, 전자용 소형모터는 38349에 분류한다.
2. 모니터(컴퓨터용)는 자동자료처리장비가 아닌 음향 및 영상기 제조업(38321)으로 분류한다.
3. 음향 및 영상기기 및 유선통신장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분류한다.
 - TV수상기-흑백TV수상기, 칼라TV수상기, 컴퓨터용수상기(모니터), 프로젝션TV수상기
 - 라디오-일반라디오, 카라디오, 시계라디오
 - 전축-튜너, 테크, 레코드플레이어, 스피커시스템, 이퀄라이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뮤직센터, 앰프셋트
 - 전화기-일반전화기(버튼식, 다이알식 포함), 무선전화기(코드레스 전화기), 자동차용전화기(카폰)
 - 전화교환기-자동식전화기(수동식 포함), 전자식전화교환기
4. 전자부품은 전자관(38341), 반도체(38342), 축전기(38343), 저항기(38344), 기타(38349)에 분류하고 단위에 유의하며, 축전기와 저항기는 가변과 고정으로 분류한다.

5. 냉장고, 선풍기 전기세탁기, 접시세척기 등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된다.
6. 음반, 비디오 및 카세트 테이프는 38326에 분류하고 테이프생지는 35296에 분류하고, 녹음 및 녹화만 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단위는 천 m 로 조사한다. [표준규격은 60분용=300ft($\approx 102m$), 90분용=450ft($\approx 153m$), 120분용=600ft($\approx 205m$)]

[384] 운수장비 제조업

1. 내연기관(엔진)은 기계용(38211-38219), 선박용(38411100), 자동차용(38432100)으로 구분한다.
2. 자동차제품(38431)은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야 한다.
 - ① 승용차-소형승용차(1400CC이하), 중형승용차(1900CC이하), 대형승용차(1901CC이상), 지프형승용차
 - ② 버 스-소형버스(25인승미만), 일반버스(25인승이상), 고속형버스(고속형관광버스 포함)
 - ③ 트럭-소형트럭(4ton미만), 중형트럭(4ton이상~8ton미만), 대형트럭(8ton이상)
3. 선박은 강선(38412)과 목선(38413)으로 구분되며 철강화물선은 유조선(111)과 석탄, 곡물, 광물, 목재등 다목적 화물선과 바지선, 컨테이너선, 자동차 전용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112) 및 화학제품운반선, 액화천연가스운반선, LPG운반선, 냉동선을 포함한 특수화물선(119)으로 구분되며, 오물수거선, 기상관측선, 경비선, 소방선, 군함 등은 기타 특수선박(900)에 분류한다.

[385] 의료, 광학, 전문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 의료용기구는 세분되어 있으므로 포괄 기입하지 않는다.
2. 시계는 일반시계(38531), 전자시계(38532), 시계부품(38533)으로 산업이 구분되며, 이것은 다시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로 분류한다.

중분류 39. 기타 제조업

여기에 포함되는 품목은 장신구, 악기류, 운동용품, 인형 및 장난감, 모조장식 및 장식품, 가발, 사무용품 및 회화용품의 필기구, 라이터, 파스너, 단추, 우산, 비 및 솔, 간판 및 광고물등이 분류된다.

2. 중분류별 수량단위 해설

(1) 중분류별 주요품목의 수량단위

(2. 광업)

- 무연탄, 철광석, 석회석, 소금→ $\%$
- 모래, 자갈→ m^3

(31. 음식료품)

- 식료품, 곡물 및 기타(인삼, 커피, 두부, 당류, 사료)→ kg , $\%$
- 유지(기름), 주류, 음료수→ kl

(32. 섬유, 의복)

- 방직(絲)→ kg , $\%$ ○ 방직(직물) 및 가죽→(천) m^2
- 의복→천족(양말), 천매(내·외의), (천)조(장갑), 착(의복)

(33. 목재 및 가구)

- 제재→ m^3 ○ 가구→개

(34. 종이 및 인쇄출판)

- 펠프 및 종이→ $\%$ ○ 인쇄물→천권(서적), 천부(신문)

(35. 화학, 석유, 석탄 및 플라스틱)

- 산업용 화합물, 플라스틱제품, 연탄→ kg , $\%$
- 유류 및 페인트→ kl

(36. 비금속 광물)

- 도기→개 ○ 유리→상자 ○ 벽돌, 블록→천매
- 시멘트, 내화물, 유리병, 석제품→㎏

(37. 1차금속)

- 철금속 (371) →㎏ ○ 비철금속 (372) →kg, ㎏

(38. 기계 및 장비)

- 식기, 수공구→천개 ○ 기계→대 ○ 전자제품→천대, 천개
- 나사 및 철선, 베어링, 금형, 밸브→㎏ ○ 선박→G/T

(39. 기타 제조업)

- 귀금속→※ ○ 악기→대 ○ 사무용품→천개, 천타

(2) 주요단위 환산방법

① m²로 환산 품목 (1yd = 0.9144 m, 1 inch = 0.0254 m)

1) 직물...길이 (yd) × 폭 (inch) × 0.232 (=0.9144 × 0.0254) = m²

- 36 inch 1yd = 0.8361 m²
- 44 inch 1yd = 1.0219 m²

2) 가죽...① 사방 10 inch 1평 ≒ 0.0645 m²

- 1매 ≒ 30 ~ 40 평 ○ 1매 ≒ 3.7 m² (40 평)

② 사방 8 inch 1평 ≒ 0.0413 m²

- 1매 ≒ 30 ~ 40 평 ○ 1매 ≒ 3.3 m² (30 평)

② 음료등의 갯수를 용량으로 환산 (C/S →kl)

○ 개별(本)용량(ml) × C/S 당 本수 × C/S 갯수 = ml → kl

③ 목재... 1才 (사이) ≒ 0.0034 m³ ∴ 1 m³ = 300 才

④ 종이... 1연 = 500 매 ∴ 1연 (kg) = 500 매 × 종이의 1매중량 (kg)

⑤ 연탄... 갯수를 ㎏로 하면 22공탄은 278 장, 25공탄은 208 장,

31공탄은 133 장, 49공탄은 80 장이 1톤(㎏)이다.

⑥ ○ 1바렐(B) = 158.984 ℓ ○ 1드럼(D) = 225 ℓ

⑦ ○ 1표 = 60 kg (생사) ○ 1치즈 = 1.5 kg (면훈방사)

○ 1고리 = 160 kg ≒ 400L/B (순면사) ○ 1S/F ≒ 0.0929 m² (쇠가죽)

○ 1PSC(필) = 9.31 m² (순본견직물)

⑧ 내화벽돌 (1 ㎏ = 330 매)

⑨ 주요단위 해설

- EA(each) = 개, 대
- PCS(pieces) = 필 (직물) = 개
- C/S(cases) = 상자
- $\frac{D}{M}$ (drum) $\approx 225 \ell$
- B(Barrel) $\approx 158.984 \ell$
- $1 \text{ kl} = 1,000 \ell = 100,000 \text{ ml}$
- 본(本) = 날개, 병, 개비(담배)
- $\frac{L}{B}$ (pound) $\approx 0.454 \text{ kg}$
- yd(s)(yards) $\approx 0.9144 \text{ m}$
- $\frac{M}{T}$ (Metric ton) = $1,000 \text{ kg}$
- $\frac{G}{T}$ (Gross ton) = 100 f^3
- 족(足) = 쥘레, 착 = 벌

산업 및 품목분류표

(광업 및 제조업부문)

대분류 2. 광 업

| 중분류 | 산 업 명 | 소분류 | 산 업 명 (업 종) | 비 고 | | |
|-----|---------|-----|----------------|------|-------|-----|
| | | | | 세분류수 | 세세분류수 | 품목수 |
| 21 | 석 탄 | 210 | 석 탄 | 3 | 3 | 3 |
| 23 | 금 속 | 230 | 금 속 | 2 | 8 | 29 |
| 29 | 기 타 광 업 | 290 | 기 타 광 업 | 5 | 14 | 60 |
| | 계 | | | 10 | 25 | 92 |

중분류 21. 석 탄 광 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210 | | 석탄 광업 | | 2102 | | 갈탄 광업 |
| | 2101 | | 무연탄 광업 | | 21020 | | 갈탄 광업 |
| | 21010 | | 무연탄 광업 | | 100 | ‰ | 갈탄 연성갈탄과 경성갈탄을 포함 |
| | 100 | ‰ | 무연탄 접착제 없이 응집한 것은 포함 하나, 접착제가 가미된 연탄은 35401에 분류 | | 21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 광업 |
| | | | | | 2109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 광업 |
| | | | | | 1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역청탄 등) |

중분류 23. 금 속 광 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230 | | 금속 광업 | 23026 | | 몰리브덴 광업 |
| 2301 | | 철광업 | 100 | kg | 몰리브덴광석 |
| 23010 | | 철광업 | 230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
| 111 | % | 적철광석 | 1 | | 철합금광석 |
| 112 | % | 자철광석 | 111 | % | 크로뮴광석 |
| 113 | % | 갈철광석 | 112 | % | 니켈광석 |
| 119 | * | 기타 철광석 | 113 | % | 코발트광석 |
| 2302 | | 비철금속 광업 | 114 | % | 콜럼븀(오니븀) |
| 23021 | | 텅스텐 광업 | 119 | * | 기타 철합금광석 바나듐, 황화바나듐은 여기에 분류 |
| 111 | % | 흑중석(텅스텐) | 2 | | 방사성 및 희토류광석 |
| 112 | % | 회중석(텅스텐) | 211 | * | 우라늄 및 라듐광석 |
| 119 | * | 기타 중석(텅스텐) | 212 | * | 토륨 및 희토류광석 |
| 23022 | | 망간 광업 | 9 | | 기타 비철금속광석 |
| 100 | % | 망간광 | 911 | % | 알루미늄광석 |
| 23023 | | 금은 광업 | 912 | % | 주석광, 산화주석광석 |
| 111 | kg | 금광석 | 913 | % | 창연광석 |
| 112 | kg | 은광석 | 914 | % | 수은 |
| 113 | * | 천연 백금금속 및 백금광석 | 915 | % | 티타늄 |
| 23024 | | 동 광업 | 916 | % | 안티모니 |
| 100 | % | 동광석 | 9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광석 베릴륨, 세슘, 제라늄, 가륨, 루 라이트 정광은 여기에 분류 |
| 23025 | | 연·아연 광업 | | | |
| 100 | % | 연광석 방연광(황화연), 백연광(탄산 연), 황산연광, 기타연광 | | | |
| 200 | % | 아연광석 섬아연광(황화아연), 홍아연광 (산화아연), 탄산아연광(탄산아 연), 기타아연광 아연광에서 추출한 금, 은, 동, 제라늄 및 기타금속의 정광은 제외 | | | |

중분류 29. 기 타 광 업

| 분 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290 | | 기타 광업 | 411 | ※ | 철 산화물 안료 |
| 2901 | | 토사석 채취업 | 412 | ※ | 황토, 시엔나, 암버 및 유색철암 |
| 29011 | | 건설용석채 채취업 | 413 | ※ | 반다이크브라운, 베로나 흑 및 사 이플러스흑 |
| 111 | ※ | 대리석 | 9 | | 기타 화학 및 비료원료용광물 |
| 112 | ※ | 화강암 | 911 | ※ | 천연 황산바름(중정석) 및 천연 탄 산바름 |
| 113 | ※ | 천연 슬레이트 가공슬레이트 제품은 36994, 36931에 분류. | 912 | ※ | 형석 및 기타 불소함유 광물 |
| 119 | ※ | 기타 건설용 석재 | 913 | ※ | 리튬광 |
| 29012 | | 쇄석 채취업 | 914 | ※ | 스트론튬광 |
| 100 | ※ | 쇄 석 | 915 | ※ | 비소광 |
| 29013 | |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916 | ※ | 명반석 및 천연명반 |
| 111 | m ³ | 모 래 | 917 | ※ | 초 석 |
| 112 | m ³ | 자 갈 | 918 | ※ | 인광석 |
| 29019 | | 달리분류되지않은 토사석 채취업 | 9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
| 111 | ※ | 점 토 | 2903 | | 석회석, 요업 및 내화광물 광업 |
| 119 | ※ | 기타 토사석 | 29031 | | 석회석 광업 |
| 2902 | | 화학 및 비료원료용광물 광업 | 100 | ※ | 석회석 |
| 29020 | | 화학 및 비료원료용광물 광업 | 29032 | | 요업 및 내화광물 광업 |
| 1 | | 질소, 칼리, 인산광물 | 111 | ※ | 고령토(백토 포함) |
| 111 | ※ | 천연질산나트륨 | 112 | ※ | 마전토 |
| 112 | ※ | 인산염암 | 113 | ※ | 장 석 |
| 113 | ※ | 칼리함유 조광물 | 114 | ※ | 규 석 |
| 114 | ※ | 구아노-미가공 | 115 | ※ | 마그네사이트 |
| 2 | | 천연 및 회수유광 | 116 | ※ | 납 석 |
| 211 | kg | 유 황 | 117 | ※ | 벤토나이트 |
| 212 | ※ | 황철광 | 119 | ※ | 기타 요업 및 내화광물 |
| 3 | | 소오다 및 붕산염 광물 | 29033 | | 산업용 모래 채취업 |
| 311 | ※ | 미가공 천연 붕산염 광물 | 100 | m ³ | 산업용 모래(규사 포함) 건설용 이외 유리제조, 금속, 청정, 주형 및 연마용에 사용되는 모래 |
| 312 | ※ | 미가공 천연 황산나트륨 | | | |
| 313 | ※ | 미가공 천연 탄산나트륨 | | | |
| 4 | | 천연 광물 안료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2904 | | 소금 채취업 | 221 | ※ | 해표석, 홍옥, 호박 |
| 29040 | | 소금 채취업 | 9 | | 기타 광물 |
| 100 | ㎥ | 천일염 | 911 | ㎥ | 토 탄 |
| 200 | kg | 암 염 | 912 | ㎥ | 운 모 |
| 29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 913 | ※ | 천연역청 및 광물왁스 천연아스팔트, 천연광물왁스 |
| 29091 | | 흑연 광업 | 914 | ㎥ | 규조토 |
| 111 | ㎥ | 인상 흑연 | 915 | ㎥ | 지 석 |
| 112 | ㎥ | 토상 흑연 | 916 | ㎥ | 백운석 |
| 29092 | | 활석 광업 | 917 | ㎥ | 석 영 |
| 100 | ㎥ | 활 석 | 918 | ㎥ | 방해석 |
| 29093 | | 석고 광업 | 9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물 |
| 100 | ㎥ | 석 고 천연석고(천연수산화 탄산칼슘), 경석고(천연무수황산칼슘) 포함. 석회질 설화석고 채취(건축석재용 및 조각용)는 2901에 분류 | | | |
| 29094 | | 석면 광업 | | | |
| 100 | ㎥ | 석 면 | | | |
| 290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업 | | | |
| 100 | ㎥ | 천연 연마제 천연연마석, 코런덤가루, 금강사, 연마가넷, 트리폴리, 로턴스톤등 포함. 웅집 연마석은 3699에 분류 | | | |
| 2 | | 천연보석원석 | | | |
| 211 | ※ | 수정(자수정, 연수정등) | | | |
| 219 | ※ | 기타보석원석 산호천연진주 및 양식진주는 어업(중분류 13)에 해당되므로 제외 | | | |

대분류 3. 제 조 업

| 중분류 | 산 업 명 | 소분류 | 산 업 명 (업 종) | 비 고 | | | |
|-----|--------------------------------|---------|-----------------|--------------------|-------|-------|-----|
| | | | | 세분류수 | 세세분류수 | 품목수 | |
| 31 | 음 식 료 품 및 담 배 | 311-312 | 식 료 품 | 17 | 67 | 305 | |
| | | | 313 | 음 료 품 | 12 | 52 | 254 |
| | | | 314 | 담 배 | 4 | 13 | 45 |
| | | | | | 1 | 2 | 6 |
| 32 | 섬 유, 의 복 및 가 족 | 321-324 | 섬 유 | 14 | 71 | 321 | |
| | | | 321 | 의 복 | 8 | 43 | 213 |
| | | | 322 | 의 복 | 2 | 13 | 70 |
| | | | 323 | 가 족, 대 용 가 족 및 모 피 | 3 | 10 | 25 |
| | | | 324 | 신 발 | 3 | 10 | 25 |
| 33 | 나 무 및 나 무 제 품 | 331-332 | 나 무 및 나 무 와 콜 크 | 4 | 25 | 105 | |
| | | | 331 | 가 구 및 장 차 물 | 3 | 18 | 72 |
| | | | 332 | | 1 | 7 | 33 |
| 34 | 종 이, 종 이 제 품 및 인 쇄 출 판 | 341-342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 6 | 33 | 110 | |
| | | | 341 | 인 쇄 및 출 판 | 3 | 21 | 77 |
| | | | 342 | | 3 | 12 | 33 |
| 35 | 화 학 물 과 화 학, 석 유, 고 무 및 프 라 스틱 | 351-356 | 산 업 용 화 합 물 | 15 | 72 | 601 | |
| | | | 351 | 기 타 화 학 제 품 | 6 | 24 | 311 |
| | | | 352 | 석 유 정 제 업 | 4 | 27 | 153 |
| | | | 353 | 기 타 석 유 및 석 탄 제 품 | 1 | 1 | 17 |
| | | | 354 | 고 구 제 품 | 1 | 4 | 29 |
| | | | 355 | 기 타 프 라 스틱 제 품 | 2 | 7 | 50 |
| | | | 356 | | 1 | 9 | 41 |
| 36 | 비 금 속 광 물 제 품 | 361-369 | 도 기, 자 기 및 토 기 | 7 | 38 | 132 | |
| | | | 361 | 유 리 및 유 리 제 품 | 1 | 7 | 18 |
| | | | 362 | 기 타 비 금 속 광 물 제 품 | 1 | 8 | 36 |
| | | | 369 | | 5 | 23 | 78 |
| 37 | 제 1 차 금 속 | 371-372 | 제 1 차 철 강 | 9 | 33 | 221 | |
| | | | 371 | 제 1 차 비 철 금 속 | 4 | 17 | 138 |
| | | | 372 | | 5 | 16 | 83 |
| 38 | 조 립 금 속 제 품, 기 계 및 장 비 | 381-385 | 조 립 금 속 제 품 | 27 | 151 | 1,134 | |
| | | | 381 | 기 계 | 5 | 31 | 198 |
| | | | 382 | 전 기 기 계 · 기 구 | 7 | 43 | 475 |
| | | | 383 | 운 수 장 비 | 5 | 33 | 229 |
| | | | 384 | 과 학, 측 정 및 광 학 제 품 | 6 | 17 | 94 |
| | | | 385 | | 4 | 27 | 138 |
| 39 | 기 타 | | | 6 | 32 | 148 | |
| | 계 | | | 105 | 522 | 3,077 | |

중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11-312 식료품 제조업 | | | 31122 연유 및 분유 제조업 | | |
| 3111 육지동물고기 가공 저장업 | | | (젓을 농축, 응축, 건조하여 연유·분유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100 kg 연유 200 kg 분유 300 kg 이유식(우유기저)-(곡분기저이유 식은 31162100에 분류) 400 ※ 유장 500 ※ 유당(카세인 및 락토스) 900 ※ 기타분말식품(버터, 밀크, 크림 및 기타 농축물등) | | |
| 31111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업 | | | | | |
| 100 | kg | 쇠고기 통조림, 돼지고기 통조림 등 축산물 통조림(번데기 통조림 포함) | | | |
| 31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저장업 | | | | | |
| 1 | | 조제 및 저장고기 | | | |
| 111 | kg | 베이콘 | 31123 아이스크림 제조업 | | |
| 112 | kg | 햄 | 100 | kg | 아이스크림 |
| 113 | kg | 소시지 | 900 | ※ | 기타 유사냉동 디저트 (젓을 주원료로한 사베트, 멜로린, 파레이트 등) |
| 114 | ※ | 가축자공고기(조제 및 저장가공한 것)소금친것, 건조한것, 훈제한 것 및 인간소비에 적합한 가금, 염조류, 고기포함 | 31124 시유 및 발효유 제조업 | | |
| 115 | kg | 도살고기(포장육포함, 단, 임가공 및 구입한 도살고기 포장육은 제외) | 100 | ㎖ | 시유(처리우유) |
| 119 | ※ | 기타 조제 및 저장고기 | 200 | ㎖ | 유산균발효유 |
| 2 | | 식용동물지방 | 900 | ※ | 기타 액상우유제품 및 우유가공제품 |
| 211 | kg | 동물지방(정제하지 않은것) | 3113 과실 및 채소 가공업 | | |
| 212 | kg | 라아드 및 기타 용출돼지 지방 | 31131 과실, 채소통조림식품 제조업 | | |
| 213 | kg | 용출 가금 및 기타 지방 | 111 | ㎖ | 과실통조림(넥타 포함) |
| 300 | ※ | 고기엑스, 고기수윤(고기분말)및 고기즙스 | 112 | ㎖ | 채소통조림(양송이통조림 포함) |
| 400 | ※ | 비식용 고기제품(가공한 것) | 119 | ※ | 기타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 |
| 3112 낙농품 제조업 | | | 31132 과실,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 | |
| 31121 버터 및 치즈 제조업 | | | 111 | ㎖ | 김치 |
| (젓을 원료로 버터 및 치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112 | ㎖ | 단무지 |
| | | | 100 | kg | 버터 |
| | | | 200 | kg | 치이즈 |
| | | | 119 | ※ | 기타 반찬용 과실, 채소절임식품 |
| | | | 31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 및 채소 | |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 | 가공업 |
| | 1 | | 건조 또는 탈수과실 |
| | 111 | kg | 감귤류 과실 |
| | 112 | ※ | 열대과실(바나나, 야자, 파인에 플, 망고 등) |
| | 113 | ※ | 건포도 |
| | 114 | ※ | 꽃감 |
| | 119 | ※ | 기타 건조과실 |
| | 200 | ※ | 건조채소 |
| | 3 | | 냉동과실 및 채소 |
| | 311 | ※ | 냉동과실 |
| | 312 | ※ | 냉동채소 |
| | 313 | ※ | 냉동쥬스(즙) |
| | 400 | ※ | 채소 수율 |
| | 500 | ※ | 껍질 및 기타가공부스러기 |
| | 900 | ※ | 기타 가공저장한 과실 및 채소 |
| | 3114 | | 수산물 처리 가공업 |
| | 31141 | | 수산물 통조림식품 제조업 |
| | 111 | kg | 꽂치통조림 |
| | 112 | kg | 고등어통조림 |
| | 113 | kg | 참치통조림 |
| | 114 | kg | 굴통조림 |
| | 115 | kg | 조개류통조림(굴통조림 제외) |
| | 119 | ※ | 기타 해산물통조림(바다동물고기 통조림 포함) |
| | 31142 | |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 |
| | 100 | ㎥ | 냉동수산물 |
| | 31143 | | 한천 제조업 |
| | 100 | kg | 한천(우무) |
| | 31144 | | 어육연제품 제조업 |
| | 100 | ※ | 어육연제품(피렛트상태의 것) 어묵, 저민 살코기, 어육소시 지등 포함. |
| | 31145 | | 수산물건제품 제조업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100 | ※ | 어개류(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오징어포, 어포 건조조갯살 등 포함 |
| | 200 | ※ | 해조류(건조, 염장건조, 훈제한 것) |
| | 31146 | | 수산물염장품 제조업 |
| | 111 | ※ | 젓갈류 |
| | 119 | ※ | 기타 수산물염장품 |
| | 311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산물 처리 가공업 |
| | 111 | ※ | 고래고기 |
| | 119 | ※ | 기타 식용수산물제품 |
| | 900 | ※ | 기타 수산물처리가공제품 맛김, 수산물엑스, 수유포(생 선분말), 소오스포함. |
| | 3115 | | 동식물유지 제조업 |
| | 31151 | | 동물성유지 제조업 |
| | 1 | | 물고기 및 바다동물기름 |
| | 111 | ※ | 물고기지방 |
| | 112 | ※ | 물고기간유 |
| | 113 | ※ | 수산물기름 |
| | 114 | ※ | 정제 고래기름 및 경랍 |
| | 121 | ※ | 유박(물고기) |
| | 2 | | 비식용동물기름(정제된 식용동물 기름은 31153에 분류) |
| | 211 | kg | 텔로우 오일 및 스티어린 |
| | 212 | kg | 정제올그리스(라놀린) 및 올그리 스 추출제품 |
| | 221 | ※ | 유박(동물) |
| | 222 | ㎥ | 우지(쇠기름) |
| | 300 | ※ |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동물기름(인조데그라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400 | ※ | 스 포함) 경화동물기름 | 115 | kl | | 채종유(유채기름) |
| | 500 | ※ | 지방산 및 지방물질 처리찌꺼기 | 116 | kl | | 옥수수유(옥배유) |
| | 31152 | | 식물성유지 제조업 | 117 | kl | | 낙화생유(땅콩기름) |
| | | | (식용유는 31153에 분류) | 119 | ※ | | 기타 식용식물성기름 |
| | 1 | | 비휘발성 식물성 기름 | 121 | ※ | | 유박(콩깻묵 제외) |
| 111 | kl | | 대두유(콩기름) | 122 | ㄱ | | 콩깻묵(대두박) |
| 112 | kl | | 면실유(면화씨 기름) | 123 | ㄱ | | 탈지강 |
| 113 | kl | | 올리브유 | 2 | | | 마아가린 및 기타조제 경화유 |
| 114 | kl | | 해바라기유 | 211 | kg | | 마아가린 |
| 115 | kl | | 아마유 | 212 | kg | | 모조라아드 |
| 116 | kl | | 종려유 | 213 | kg | | 쇼트닝(쇼팅) |
| 117 | kl | | 채종류(유채기름) | 219 | ※ | | 기타조제 식용지방(경화유) |
| 121 | kl | | 야자유 | 3116 | | | 곡물 가공업 |
| 122 | kl | | 피마자유 | 31161 | | | 도정 및 제분업 |
| 123 | kl | | 미강유 | | | | (임가공은 31192에 분류) |
| 124 | kl | | 동백유 | 1 | | | 도정제품 |
| 125 | kl | | 옥수수유(옥배유) | 111 | ㄱ | | 쌀 |
| 126 | kl | | 대마유 | 112 | ㄱ | | 보리쌀 |
| 127 | kl | | 낙화생유(땅콩기름) | 113 | ㄱ | | 밀쌀 |
| 129 | ※ | |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기름 | 114 | ㄱ | | 알맥 |
| 131 | ※ | | 유박(식물성 : 깻묵) | 119 | ※ | | 기타 도정 곡식제품 |
| 200 | ※ | | 면린터 | 129 | ※ | | 겨 |
| 300 | ※ | |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식물성기름 | 2 | | | 제분제품 |
| 400 | ※ | | 경화식물성기름 | 211 | ㄱ | | 밀가루 |
| 31153 | | | 식용유 정제업 | 212 | kg | | 곡물가루(밀가루, 콩가루 제외) |
| 1 | | | 식용 식물성 정제유 | 213 | kg | | 콩가루 |
| 111 | l | | 참기름 | 214 | kg | | 감자가루 |
| 112 | l | | 들기름 | 215 | kg | | 전분야채가루 |
| 113 | kl | | 혼합식물성기름 | 216 | ※ | | 과실가루 |
| 114 | kl | | 대두유(콩기름) | 217 | ※ | | 커피콩(껍질 벗긴것) |
| | | | | 219 | ※ | | 기타야채 및 과실가루 |
| | | | | 311 | ㄱ | | 소맥피(밀기울)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312 | ※ | 제분저꺼기(콩기울등) |
| | 31162 | | 혼합 조제분말 제조업 |
| | 100 | ※ | 곡물기저 혼합조제분말(만두피, 이유식, 떡고물, 인조쌀 등) |
| | 31163 | |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
| | 100 | ※ | 식사용 곡물조리식품(김밥, 도시락, 찻죽등) |
| | 3116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가공업 |
| | 100 | ※ | 곡물튀김(튀밥등) |
| | 200 | ※ | 사료용재료(줄기, 뿌리등의 분쇄물) |
| | 900 | ※ | 기타 곡물가공품 |
| | 3117 | | 빵, 과자 및 국수 제조업 |
| | 31171 | | 빵 및 떡 제조업 |
| | 111 | ※ | 빵 |
| | 113 | ※ | 케이크 |
| | 200 | ※ | 떡 |
| | 31172 | | 과자 제조업 |
| | 1 | | 건과자 |
| | 111 | kg | 비스킷 |
| | 112 | kg | 미과 |
| | 113 | kg | 건빵 |
| | 119 | ※ | 기타 건과자 |
| | 200 | ※ | 스낵류 |
| | 31173 | | 설탕과자 제조업 |
| | 100 | ※ | 코코아가공품 |
| | 200 | kg | 초코렛과자 |
| | 311 | kg | 설탕과자(코코아포함되지 않은것) 캔디류, 카라멜, 알사탕, 드롭프스등 |
| | 312 | ※ | 껌 |
| | 313 | ※ | 향미 또는 착색설탕, 시럽 및 당밀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400 | ※ | 설탕입힌 과일 |
| | 500 | ※ | 구운 건과 |
| | 31174 | | 빙과 제조업 |
| | 100 | ※ | 빙과(아이차, 쥬쥬바등 소프트성빙과, 하드류, 아이스케이크류) |
| | 31175 | | 국수 제조업 |
| | 1 | | 국수 |
| | 111 | kg | 밀국수 |
| | 112 | kg | 기타 유사국수(밀국수를 제외한 국수) |
| | 113 | kg | 당면 |
| | 114 | kg | 냉면 |
| | 3 | | 인스턴트면류 |
| | 311 | ※ | 라면 |
| | 319 | ※ | 기타 인스턴트면류(우동면, 짜장면등 포함) |
| | 3117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과자 및 국수 제조업 |
| | 100 | ※ | 웨이퍼 및 유사제품 |
| | 3118 | | 설탕 제조업 |
| | 31181 | | 원당 제조업 |
| | 31182 | | 설탕 정제업 |
| | 100 | ※ | 정당 |
| | 200 | ※ | 설탕시럽 |
| | 3118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 제조업 |
| | 100 | kg | 전화당 및 시럽 |
| | 3119 | | 식료품 임가공업 |
| | 31191 | | 임가공 도축업 |
| | 100 | ※ | 가축 및 가금도살품 및 부산물 |
| | 31192 | | 임가공 곡물도정 및 제분업 |
| | 100 | ※ | 곡물도정 및 제분제품(떡방아간 포함)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1193 | | 임가공 식품 냉동업 | 111 | kg | 혼합조미료(각종 다시다) |
| 100 | ※ | 냉동수산물 | 112 | kg | 마요네스 |
| 200 | ※ | 냉동농산물 | 113 | kg | 우스터·소오스 |
| 31194 | | 임가공 착유 및 유사처리업 | 114 | kg | 케찹 |
| 100 | ※ | 동물유지 | 115 | kg | 스프(분말, 액체 등 조제) |
| 200 | ※ | 식물성유지 | 116 | kg | 셀러드 드레싱 |
| 300 | ※ | 식용유 | 117 | kg | 카레 |
| 400 | ※ | 고추가루 등 양념가루 | 118 | kg | 조제겨자 |
| 900 | ※ | 기타 착유 및 유사처리제품 | 119 | ※ | 기타 혼합 및 조제 조미식품(김치 속, 빵속 등) |
| 311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 공업 | 200 | kg | 맛소금 |
| | | (튀김, 농수산물건조, 기타임가공) | 31214 | | 천연조미료 제조업 |
| 100 | ※ | 기타 임가공품 | 111 | kg | 고추가루 |
| 3121 |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12 | kg | 후추가루 |
| 31211 | | 장류 제조업 | 113 | kg | 겨자가루 |
| 111 | ㎧ | 간장 | 114 | kg | 카레가루 |
| 112 | ㎧ | 된장 | 119 | ※ | 기타 가루 |
| 113 | ㎧ | 고추장 | 31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 품 첨가물 제조업 |
| 114 | ㎧ | 춘장 | 111 | kg | 식품용색소(카라멜 포함) |
| 119 | ※ | 기타 장류 | 112 | ※ | 향미, 추출물(가향제) |
| 121 | kg | 매주 | 113 | ※ | 고기유연제 |
| 31212 | | 정제 및 발효 조미료 제조업 | 119 | ※ | 기타 조미식품 및 식품 첨가물 |
| 1 | | 발효조미료 | 3122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
| 111 | ㎧ | 글루타민산소다(미원, 미풍, 아이 미) | 31221 | | 얼음 제조업 |
| 112 | kg | 식용아미노산 | 100 | ㎧ | 얼음 |
| 119 | ※ | 기타 발효조미료 | 31222 | | 인삼식품 제조업 |
| 2 | | 식초 | 111 | kg | 백삼 |
| 211 | ㎧ | 양조식초 | 112 | kg | 홍삼 |
| 212 | ㎧ | 대용식초 | 113 | kg | 분말인삼 |
| 300 | kg | 정제소금 | 114 | kg | 인삼즙 |
| 31213 | | 혼합 및 조제 조미료 제조업 | 115 | kg | 인삼차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6 | kg | 인삼발효 음료 | 200 | kg | 인공 감미료(인조꿀 등) |
| 117 | kg | 정제인삼 | 31227 | | 커피 및 차 가공업 |
| 119 | ※ | 기타 인삼식품 인삼주는 31313에 분류, 약제용 으로 특별히 가공된 인삼제품 은 3522에 분류 | 1 | | 커피 |
| 31223 | | 맥아 제조업 | 111 | kg | 카페인 제거한 커피 |
| 111 | kg | 맥아 | 112 | kg | 균커피 |
| 112 | ※ | 맥아엑스 | 113 | kg | 분말 커피 |
| 31224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14 | ※ | 커피엑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커피 페이스트 포함) |
| 111 | kg | 두부 | 2 | | 가공차 및 차엑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 112 | kg | 유부 | 211 | ※ | 녹차 |
| 211 | ※ | 도토리 목 | 212 | ※ | 가공 마태차 |
| 212 | ※ | 매밀 목 | 213 | ※ | 울무차 |
| 219 | ※ | 기타 목 | 214 | ※ | 홍차 |
| 31225 | | 전분 제조업 | 215 | ※ | 차엑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 111 | ※ | 전분(녹말가루)-고구마, 옥수수, 감자, 전분등 포함 | 219 | ※ | 기타 가공차 |
| 112 | ※ | 이누린 | 300 | ※ | 균커피대용품 및 그 엑기스, 에센 스 또는 농축물 |
| 113 | ※ | 타피오카 및 사교 | 31228 | | 누룩 및 종국 제조업 |
| 114 | ※ | 글루텐 글루텐가루 | 1 | | 이스트 |
| 119 | ※ | 전분박(전분제조찌꺼기 포함) | 111 | kg | 누룩(곡자, 종국) |
| 31226 | | 당류 제조업 | 112 | kg | 배양 이스트 |
| 1 | | 당류 | 113 | kg | 제빵용 이스트 |
| 111 | kg | 포도당 | 119 | ※ | 기타 이스트제품 |
| 112 | kg | 물엿, 엿 | 2 | | 베이킹 파우더 및 유사양조 및 제 빵용 조제품 |
| 113 | kg | 과당 | 211 | kg | 베이킹 파우더 |
| 114 | kg | 말토우스 | 212 | kg | 반죽 개량제 |
| 115 | kg | 식용사카린 (의약품 사카린은 35119316에 분류) | 219 | ※ | 기타 양조 및 제빵용 첨가제 |
| 119 | ※ | 기타 당류(텍스트린은 35291에 분 류) | 312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
| | | | 100 | ※ | 계란 가공품 |
| | | | 200 | ※ | 겉질 벗긴 견과 |

| 분 류 번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류 번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11 | kg | 분말 주스 | 100 | kl | 인삼주 |
| 312 | kg | 커피 크리머 | 31314 | | 곡식 증류주 제조업 |
| 319 | ※ | 기타 분말식품 | 111 | kl | 고량주 |
| | | 식탁크림, 제리, 유아식품, 음 | 112 | kl | 위스키 |
| | | 료용 및 디저어트용 분말 | 113 | kl | 럼주 |
| 900 | ※ | 기타 식품 조제품(인조육 포함) | 119 | ※ | 기타 곡식 증류주 |
| 3123 | | 배합 사료 제조업 | 31315 | | 과실 증류주 제조업 |
| 31230 | | 배합 사료 제조업 | 111 | kl | 꼬냘 |
| 1 | | 가당 마초 및 조제사료 | 112 | kl | 브랜드 |
| 111 | ※ | 가당 마초 | 113 | kl | 진 |
| | | 짚, 겨, 과육등 영양이 낮은 하나 | 114 | kl | 보드카 |
| | | 이상의 재료에 당밀 또는 유사 당 | 119 | ※ | 기타 과실 증류주 |
| | |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것. 밀겨 또 | 313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주 및 합 |
| | | 는 유박에 당밀을 혼합것도 포함 | | | 성주 제조업 |
| 112 | ※ | 배합사료 | 100 | kl | 과실 합성주 |
| 113 | ※ | 보조사료 | 2 | | 기타 합성주 |
| | | 농가에서 생산된 사료에 영양의 균형 | 211 | kl | 합성 청주 |
| | | 을 맞추어 주기 위한 보조사료로서 | 212 | kl | 합성 맥주 |
| | | 비교적 한 가지의 영양이 높고 포 | 213 | kl | 오가피주 |
| | | 함되어 있어 배합사료와 다르다. | 214 | kl | 샴페인 |
| 114 | ※ | 사료제조용 조제품 | 219 | ※ | 기타 합성주 |
| 115 | ※ | 어분 | 300 | ※ | 증류주 부산물 |
| 211 | kg | 애완동물 사료 | 3132 | | 발효주 제조업 |
| 212 | ※ | 애완동물용 기호식품(개껌등) | 31321 |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 300 | kg | 물고기 양식용 사료 | 111 | kl | 탁주(막걸리) |
| 313 | | 음료품 제조업 | 112 | kl | 약주 |
| 3131 |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200 | ※ | 주요(술찌꺼기) |
| 31311 | | 주정 제조업 | 31322 | | 청주 제조업 |
| 100 | kl | 주정(에틸알콜) | 100 | kl | 청주 |
| 31312 | | 소주 제조업 | 31323 | | 과실 발효주 제조업 |
| 100 | kl | 소주 | 1 | | 포도주 |
| 31313 | | 인삼주 제조업 | 111 | kl | 포도주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 | 보통 포도주, 디저트, 탄산 및 향미 포도주 포함 | 200 | ℓ | 구근 조제음료 |
| 112 | ℓ | 포도즙 | 314 | | 담배 제조업 |
| 9 | | 기타 과일 발효주 | 3140 | | 담배 제조업 |
| 911 | ℓ | 사과주 | 31401 | | 담배 재건조업 |
| 912 | ℓ | 딸기주 | 100 | kg | 재건조 잎담배 |
| 913 | ℓ | 매실주 | 31402 | | 담배제품 제조업 |
| 914 | ℓ | 배주 | 111 | 천본 | 필터 담배 |
| 919 | ※ | 기타 과일 발효주 | 112 | 천본 | 필터 없는 담배 |
| 313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제조업 | 200 | kg | 각연 |
| 100 | ※ | 기타 발효주 | 911 | ※ | 여송연 |
| 200 | ※ | 양조 부산물 | 9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담배 제품(담 배용 필터는 39094에 분류, 담배 용지(권연지)는 34199에 분류) |
| 3133 | | 맥주 제조업 | | | |
| 31330 | | 맥주 제조업 | | | |
| 100 | ℓ | 맥주 | | | |
| 200 | ※ | 양조 부산물 | | | |
| 3134 | |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 | |
| 31341 | | 청량음료 제조업 | | | |
| 111 | ℓ | 사이다 | | | |
| 112 | ℓ | 콜라 | | | |
| 113 | ℓ | 쥬스(즙은 31139313, 분말쥬스는 31229311에 분류) | | | |
| 114 | ℓ | 천연 광천수 및 천연수 | | | |
| 119 | ※ | 기타의 청량음료(과실향음료 및 탄산과실향음료등을 가미한 음 료) | | | |
| 211 | ℓ | 콜라 원액 | | | |
| 212 | ℓ | 오렌지 원액 | | | |
| 219 | ※ | 기타 원액 | | | |
| 313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 | |
| 100 | ℓ | 곡분음료(두유 포함) | | | |

중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321 | | 섬유 제조업 | | 214 | kg | 혼방 방모사 |
| | 3211 | | 제사 및 방적업 | | 215 | kg | 혼방 소모사 |
| | 32111 | | 제사업 | | 216 | kg | 혼방 수모사 |
| | 111 | kg | 생사(1표=60kg) | | 32114 | | 인조섬유 방적업 |
| | 112 | kg | 부잠사(양견, 비수, 생피저, 페니, 박면, 출각견) | | | | (주로 합성 및 재생섬유를 구입하여 방적 또는 방사하여 인조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 | 113 | kg | 옥사 | 1 | | | 인조섬유(단섬유) : 카드, 콤팩 또는 |
| | 114 | kg | 야잠사 | | | | 기타 방적 가공한 것 |
| | 32112 | | 면 방적업 | 111 | ㎍ | | 합성섬유 : 카드 또는 콤팩한 것 툽, 스리버, 로빙, 폴리에스터,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비닐유도체 |
| | 1 | | 면섬유 및 면화씨 | 112 | ㎍ | | 재생섬유 : 카드 또는 콤팩한 것 레이온, 아세테이트, 프로테인 섬유, 톱, 스리버, 로빙 등 |
| | 111 | kg | 조면(씨 및 불순물을 제거한 것) | 2 | | | 인조섬유방적사 |
| | 112 | kg | 소면 및 정소면(랩, 슬라이버, 로빙으로 전환한 슬라이버를 포함) | 211 | ㎍ | | 합성섬유방적사(S/T사, 엑스란, 카시미론사, T/S사, 아크릴사 등) |
| | 113 | ※ | 면부스러기 | 212 | ㎍ | | 재생섬유방적사(인견사, 비스코스사 등) |
| | 121 | kg | 면화씨 | 213 | ㎍ | | 혼방 합성섬유 방적사 |
| | 2 | | 면사 | 214 | ㎍ | | 혼방 재생섬유 방적사 |
| | 211 | kg | 순면사(1고리=160kg≒400L/B) | 215 | ㎍ | | 반합성섬유 방적사(아세테이트사) |
| | 212 | kg | 면혼방사(1치즈≒1.5kg) | 32115 | | | 견 방적업 |
| | 32113 | | 모 방적업 | | 111 | kg | 견방적사(견수방사, 견주방사 포함) 노일견 또는 부잠사로 방적한 견방적사 |
| | 111 | kg | 양모 및 수모 양모, 수모, 양모부스러기, 쇼티 또는 기타 동물털, Slubbing, 카드스리버, 톱로빙 포함) | | 112 | kg | 견혼방사 |
| | 112 | ※ | 방적 양모부스러기 | 32116 | | | 마 방적업 |
| | 121 | ※ | 울그리스-미가공 라노린, 울그리스오레인, 울그리스 스티어린은 31151에 분류 | 1 | | | 마섬유, 방적준비 가공한 것 |
| | 2 | | 모방적사 | | | | |
| | 211 | kg | 순방모사 | | | | |
| | 212 | kg | 순소모사 | | | | |
| | 213 | kg | 수모 방적사 |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1 | kg | 아마 | 111 | kg | 금속화사 |
| 112 | kg | 황마 | 112 | kg | 셔닐사 |
| 113 | kg | 모시(저마) | 113 | kg | 짐프사 |
| 114 | kg | 대마 | 200 | kg | 유리사 |
| 115 | kg | 아바카(마닐라삼) | 300 | kg | 종이사 |
| 116 | kg | 사이살마 | 400 | ※ | 모조켓것 건 또는 인조섬유로 만든 모조 켓것 |
| 119 | ※ | 기타 마섬유 | | | |
| 121 | ※ | 마섬유 부스러기 | | | |
| 2 | | 마 방적사 | | | |
| 211 | kg | 아마사 | 3212 | | 직조업 |
| 212 | kg | 모시사(저마사) | 32121 | | 면직물 제조업 |
| 213 | kg | 황마사 | 111 | 천 ^{m²} | 면거즈 |
| 214 | kg | 대마사 | 112 | 천 ^{m²} | 순면직물 조포(광목, 내광목), 세포(당 목) 옥양목, 브로오드, 포프린, 캠브릭, 개버딘(레인코드용 천), 드릴(면복지, Jean), 범포 (덕) 등 포함. |
| 215 | kg | 아바카사 | 113 | 매 | 캔버스 |
| 216 | kg | 사이살마사 | 119 | ※ | 기타 면직물 |
| 219 | ※ | 기타 마방적사 | 200 | 천 ^{m²} | 혼방 면직물 |
| 32117 | | 면사 제조업 | 32122 | | 모직물 제조업 |
| 1 | | 재봉사 | 111 | 천 ^{m²} | 순소모직물 |
| 111 | kg | 면연사 | 112 | 천 ^{m²} | 순방모직물 |
| 112 | kg | 견연사 | 113 | 천 ^{m²} | 모파일 및 셔닐직물 |
| 113 | kg | 모연사 | 114 | 천 ^{m²} | 수모직물 |
| 114 | kg | 인조섬유연사 | 115 | 천 ^{m²} | 말털직물 |
| 119 | ※ | 기타재봉사 | 211 | 천 ^{m²} | 혼방 소모직물 |
| 2 | | 편물사 | 212 | 천 ^{m²} | 혼방 방모직물 |
| 211 | kg | 면연사 | 32123 | | 견 및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
| 212 | kg | 모연사 | 1 | | 견직물 |
| 213 | kg | 인조섬유연사 | 111 | 천 ^{m²} | 순본견직물(양단, 공단, 호박단) 홀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 |
| 219 | ※ | 기타 편물사 | | | |
| 300 | kg | 자수사 | | | |
| 400 | kg | 바느질실 | | | |
| 900 | ※ | 기타 연사 | | | |
| 321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사 및 방적업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2 | 천m ² | 리원단, 쓰무기원단 등 [1PCS (필)=9.31m ²] 노일견직물(방문직, 광목단, 경호 단등) | 114 | kg | 타월 |
| 113 | 천m ² | 견과일 및 셔닐직물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직물 |
| 200 | 천m ² | 견혼방직물 | 3213 | |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
| 3 | | 합성섬유직물 | 32131 | |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
| 311 | 천m ² | 합성섬유직물 데트론, 나일론, 아크릭지, 식 탁린넨, 캔버스, 낙하산포 등 | 1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면섬유 및 면사 |
| 312 | 천m ² | 합성섬유 파일 및 셔닐직물 (엑스 란, 캐시미론) | 2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모섬유 및 모방적사 |
| 400 | 천m ² | 혼방합성 섬유직물(T/C지등) | 3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견섬유 및 견방적사 |
| 5 | | 재생섬유직물 | 4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마섬유 및 마방적사 |
| 511 | 천m ² | 재생섬유직물 (레이온, 인견직물등) | 5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인조섬유 및 인조섬유방적사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 합성섬 유 방적사 및 재생섬유방적사) |
| 512 | 천m ² | 재생섬유 파일 및 셔닐직물 | 32132 |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
| 600 | 천m ² | 혼방재생섬유직물 | 1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모직물 |
| 32124 | | 마직물 제조업 | 2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면직물 |
| 111 | 천m ² | 아마직물 | 3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견직물 |
| 112 | 천m ² | 모시직물 | 311 | ※ | 표백, 염색가공견직물(홀치기제품 제외) |
| 113 | 천m ² | 황마직물 | 312 | ※ | 홀치기제품(홀치기 원단은 3212, 3111에 분류) |
| 121 | 천m ² | 마파일 및 셔닐직물 | 4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마직물 |
| 129 | ※ | 기타 마직물 | 500 | ※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인조섬유직 물 |
| 32125 | | 세폭직물 제조업 | 32133 | | 나염 가공업 |
| 100 | ※ | 세폭직물 폭13cm 미만의 세폭직물(리본, 테이프, 고무사입직물, 대포등 포함) | | | 수나염, 기계나염 포함 |
| 321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 100 | ※ | 나염한 면직물 |
| 111 | 천m ² | 테리직물 | 200 | ※ | 나염한 모직물 |
| 112 | 천m ² | 파일 및 셔닐직물 | 300 | ※ | 나염한 견직물 |
| 113 | 천m ² | 갈포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400 | ※ | 나염한 마직물 | 112 | ※ | 캠핑용품(배낭, 수통피 등) |
| 500 | ※ | 나염한 인조섬유직물 | 113 | 매 | 돛 |
| 321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포백, 염색 및 가공업 | 114 | 매 | 천막 |
| 100 | ※ | 각종 수염색직물 및 사 | 119 | ※ | 기타 캔버스제품 |
| 200 | ※ | 기타 염색가공한 직물제품 | 32144 | | 자수업 및 장식품 제조업 |
| 3214 | |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111 | ※ | 술장식 및 조립장식물 |
| 32141 | | 포대 제조업 | 112 | ※ | 자수제품(자수직물 포함) |
| 100 | 천개 | 직물포대 프라스틱원단을 재봉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포대 및 우편낭 포함 (단 가방성격을 갖는 직물용 백은 32332에 분류한다). | 200 | ※ | 상업장식 |
| 32142 |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프라스틱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 32145 | | 커어튼 및 휘장 제조업 |
| 111 | ※ | 런넨 침대포, 베개포, 베개케이스, 장침케이스, 매트리스카바, 모기장 등 | 111 | ※ | 커어튼 |
| 112 | m ² | 담요 | 112 | m ² | 직물벽지(갈포벽지 포함) |
| 113 | ※ | 이불 | 113 | 매 | 국기 |
| 114 | ※ | 느슨한 가구카바 자동차시트카바, 쿠션카바 등 | 114 | 매 | 페난트 |
| 115 | ※ | 베개 및 유사제품 베개, 장침, 쿠션(방석), 솜, 털이불 등 | 119 | ※ | 기타 휘장 및 유사제품(휘장, 스킵카바, 벽가리개 등) |
| 119 | ※ | 기타 침구 및 관련제품 | 321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32143 | | 캔버스제품 제조업 | 100 | ※ | 공업용 직물제품(직물콘베어벨트 스크린, 여과포등) |
| 111 | 개 | 텐트 직물 또는 프라스틱물질 봉제 제품 | 9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세탁용백, 행주보, 책상보, 나프킨, 식탁보, 낙하산 등) |
| | | | 3215 | | 편조업 |
| | | | 32151 | | 양말 편조업 |
| | | | 100 | 천족 | 여자용 스타킹 |
| | | | 2 | | 기타 양말 |
| | | | 211 | 천족 | 면양말 |
| | | | 212 | 천족 | 모양말 |
| | | | 213 | 천족 | 인조섬유양말 |
| | | | 219 | ※ | 기타 섬유양말 |
| | | | 32152 | | 내의 편조업 (직접 편직활동을 한후 내의를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 제조하는 산업 활동(예, 편직 잠옷, 내의 등) | 412 | 장 | 스카프 |
| 111 | 천매 | 면내의 | 413 | 개 | 모자 |
| 112 | 천매 | 모내의 | 419 | ※ | 기타 편조 악세서리 |
| 113 | 천매 | 인조섬유 내의 | 3216 | | 용단 및 자리 제조업 |
| 119 | ※ | 기타 섬유 내의 | 32161 | | 용단 제조업 |
| 32153 | | 외의 편조업 | 100 | m ² | 카펫트(용단, 양탄자) |
| 100 | 천매 | 편직외의(쉐타, 편직트레이닝복 등) | 32162 | | 자리 제조업 |
| 32154 | | 장갑 편조업 | 111 | ※ | 뿔자리 |
| 111 | 천조 | 면장갑 | 112 | ※ | 프라스틱자리 |
| 112 | 천조 | 모장갑 | 119 | ※ | 기타 자리제품 |
| 113 | 천조 | 인조섬유 장갑 | 3217 | | 끈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 119 | ※ | 기타 섬유장갑 | 32171 | | 끈 및 로우프 제조업 |
| 32155 | | 원단 편조업 | 1 | | 끈 |
| 111 | kg | 모편직조(모편직물) | 111 | ※ | 식물성 섬유 끈 |
| 112 | kg | 면편직조(면편직물) | 112 | ※ | 인조섬유 끈 |
| 113 | kg | 견 편조물(편직물) | 113 | ※ | 종이 끈 |
| 114 | kg | 인조섬유 편조물(편직물) | 2 | | 로프 |
| 119 | ※ | 기타 섬유 편조물(편직물) | 211 | kg | 식물성 섬유로프 |
| 200 | ※ | 레이스 원단 | 212 | kg | 인조섬유 로프 |
| 32156 | | 레이스제품 제조업 | 213 | kg | 종이 로프 |
| 100 | ※ | 레이스편조제품 담요, 커튼, 침대보, 병덮개, 접시받침, 먼지털이, 타월 등 가 정용품 | 32172 | | 연승 및 어망 제조업 |
| 3215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 | 111 | kg | 연승 |
| 100 | ※ | 탄성(고무사)편조물 | 112 | kg | 어망 |
| 200 | ※ | 심지용 편조물 | 3217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끈 및 끈가공 품 제조업 |
| 300 | ※ | 편조 부스러기 | 100 | kg | 망 |
| 4 | | 편조 의복 악세서리 | | | 위장망, 안전망, 화물망, 무대 배경망, 쇼핑망, 운반용망 등 (운동용 망은 3903에 분류) |
| 411 | 장 | 머플러 | 900 | ※ | 기타 끈 제품 (줄사다리, 끈으로 만든 걸레 등)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품 제조업 |
| 32191 | | 제면업 |
| 1 | | 솜 |
| 111 | kg | 면솜 |
| 112 | kg | 인조섬유 솜 |
| 119 | ※ | 기타 솜 |
| 200 | ※ | 위딩 제품 및 그 충전물 |
| 32192 | |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
| 100 | ※ | 부직포 |
| 211 | m ² | 펠트 |
| 212 | ※ | 펠트 제품 |
| 32193 | | 타이어코드 및 타이어직물 제조업 |
| 111 | kg | 면타이어 코드사 |
| 112 | kg | 인조섬유 타이어 코드사 |
| 113 | ※ | 유리섬유 타이어 직물 |
| 114 | kg | 면타이어 직물 |
| 115 | kg | 인조섬유 타이어 직물 |
| 32194 | | 도포 또는 삼투직물 제조업 |
| 111 | ※ | 검 또는 전분성 물질 도포직물 (주로 책 외표지로 사용되는 것) |
| 112 | ※ | 투사포 |
| 113 | ※ | 회화용 캔버스 |
| 114 | ※ | 버크럼, 도자 보강재 |
| 115 | ※ | 유사 가죽 |
| 116 | ※ | 유포 |
| 117 | ※ | 왁스 또는 규산염 도포직물 |
| 118 | ※ | 접착섬유 테이프 |
| 211 | ※ | 직물기저 리놀륨 및 유사정포 마루덮개 |
| 212 | ※ | 타포런 |
| 219 | ※ | 기타도포 또는 삼투직물 |
| 32195 | | 고공품 제조업 |
| 111 | ※ | 가마니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2 | ※ | 새끼 |
| 119 | ※ | 기타 고공품 |
| 32196 | |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
| 111 | ※ | 붕대 |
| 112 | ※ | 탈지면 |
| 113 | ※ | 마스크 |
| 119 | ※ | 기타 위생용 섬유제품 |
| 321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섬유 제 품 제조업 |
| 1 | | 회수섬유 |
| 111 | ※ | 울쇼디 |
| 112 | ※ | 회수 면섬유 |
| 113 | ※ | 회수 견섬유 |
| 114 | ※ | 회수 마섬유 |
| 115 | ※ | 회수 인조섬유 |
| 116 | ※ | 섬유프록 및 밀넵 |
| 900 | ※ | 기타 섬유제품 |
| 322 | |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
| 3221 | | 마춤복 제조업 |
| 32211 | | 남자용 마춤양복 제조업 |
| 111 | 착 | 양복 |
| 112 | 착 | 코트 |
| 119 | ※ | 기타 마춤정장복 |
| 32212 | | 여자용 마춤양장외의 제조업 |
| 111 | 착 | 양장복(원피스, 투피스 등) |
| 112 | 착 | 코트 |
| 119 | ※ | 기타 마춤정장복 |
| 32213 | | 한복마춤 제조업 |
| 111 | 착 | 남자용 한복 |
| 112 | 착 | 여자용 한복 |
| 119 | ※ | 기타 전통 의복 |
| 32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춤복 제조업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 | | 셔츠 | 111 | 착 | 기성양장복(원피스, 투피스, 여성 캐주얼정장 등) |
| 111 | 매 | 와이셔츠 | 112 | 착 | 코트 |
| 112 | 매 | 티셔츠 | 113 | ※ | 브라우스 |
| 119 | ※ | 기타 셔츠 | 114 | 매 | 셔츠 |
| 200 | 착 | 하의 | 115 | 착 | 드레스 |
| 300 | 착 | 작업복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자용 기성외 의 |
| 400 | ※ | 브라우스 및 드레스 | 32224 | |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
| 900 | ※ | 기타 마춤복 | 111 | ※ | 드레스, 브라우스 및 셔츠 |
| 3222 | | 기성복 제조업 | 112 | 착 | 코트 및 양복 |
| 32221 | |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 119 | ※ | 기타 소아용외의 |
| 111 | 착 | 양복 | 32225 | | 내의 제조업 |
| 112 | 착 | 코트 | | | (구입한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 및 봉제하여 내의 및 기타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 119 | ※ | 기타 기성 정장복 | 1 | | 여자용 및 소아용 내의 |
| 32222 | |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 업 | 111 | ※ | 브레지어, 거들, 콜셋 및 관련의복 |
| 1 | | 셔츠 | 112 | ※ | 잠옷 및 내의 |
| 111 | 매 | 와이셔츠 | 119 | ※ | 기타여자 및 소아용내의 |
| 112 | 매 | 티셔츠 | 200 | ※ | 남자용내의 및 잠옷 |
| 113 | 매 | 정복 셔츠 | 32226 | | 가족 및 모피의복 제조업 |
| 119 | ※ | 기타 셔츠 | 111 | 착 | 남자용 가족의복 |
| 121 | ※ | 셔츠 부품 | 112 | 착 | 여자용 가족의복 |
| 200 | 착 | 하의 | 113 | 착 | 인조 가족의복 |
| 300 | 착 | 작업복 | 211 | 착 | 남자용 모피의복 |
| 400 | 착 | 보통외의 점퍼자켓, 반코트, 남성캐주얼 웨어 더블코트, 헌팅코트 및 자 켓, 점퍼 등 | 212 | 착 | 여자용 모피의복 |
| 500 | 착 | 경기복 | 213 | 착 | 인조 모피의복 |
| 600 | 착 | 수영복 | 32227 | | 모자 제조업 |
| 9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셔츠, 기성복 및 관련기성복 | 1 | | 모자 보디 |
| 32223 | |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업 | 111 | ※ | 펠트모자 보디 |
| | | | 112 | ※ | 쥘은모자 보디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2 | | 모자 | 112 | m ² | 말가죽 |
| 211 | 개 | 펠트 모자 | 113 | m ² | 돼지가죽 |
| 212 | 개 | 엮은 모자 | 211 | m ² | 양가죽 |
| 213 | 개 | 직물봉제 모자 | 212 | m ² | 염소가죽 |
| 219 | ※ | 기타 모자(비닐모자, 밀짚모자, 갓 포함) | 311 | m ² | 무두질(세무)손질가죽 |
| 300 | ※ | 모자에 부착하는 악세사리 | 312 | m ² | 파치먼트손질가죽 |
| 32228 | | 장갑 제조업 | 400 | m ² | 페이턴트 및 금속화가죽 |
| 111 | 조 | 직물제 장갑 | 5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파충류, 수산동물 및 물고기 가죽 포함) |
| 112 | 조 | 가죽 장갑 | 600 | ※ | 소모한 무두질 겹질 |
| 113 | 조 | 모피 장갑 | 32312 | | 재생 및 인조가죽 제조업 |
| 114 | 조 | 인조 가죽장갑 | 100 | m ² | 재생가죽 |
| 322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제조업 | 200 | m ² | 인조가죽 |
| 1 | | 기타 의복 | 3232 | | 모피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111 | 착 | 한복 | 32321 | | 원모피 처리업 |
| 112 | 착 | 종교복, 학사복 및 기타 유사 의복 | 111 | m ² | 잔털동물 손질 모피 소, 말, 양, 염소, 노루, 사슴, 낙타, 개 등 |
| 113 | 착 | 방수복 | 112 | ※ | 기타 손질 모피 물개, 멧크 등 |
| 114 | 착 | 위생복 | 32322 | | 인조모피 제조업 |
| 115 | 착 | 방열복(소방용등) | 100 | m ² | 인조모피 |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 | 32323 | | 모피제품 제조업 |
| 2 | | 의복 악세사리 | 100 | ※ | 모피제품(의복은 32226에 분류) |
| 211 | 개 | 타이 및 유사 남자용 목도리 | 3233 | |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 신 발 및 의복 제외 |
| 212 | 개 | 쇼울 및 유사 여자용 목도리 | 32331 | |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
| 213 | ※ | 벨트 | 111 | ※ | 콘베이어벨트 고무제 콘베이어벨트는 355에 분류 프라스틱제 콘베이어벨트는 356 에 분류 |
| 219 | ※ | 기타의복 악세사리 직물제 시계줄, 바지멜빵, 손수 건 포함 | | | |
| 323 | |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 업, 가발과 의복 제외 | | | |
| 3231 | | 가죽 제조업 | | | |
| 32311 | | 원피 가공업 | | | |
| 111 | m ² | 쇠가죽(1 S/F≒0.0929m ²)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2 | ※ | 기계용 가죽제품 | 119 | ※ | 기타 특수재료 신발 |
| 119 | ※ | 기타 산업용 가죽제품 | 32404 | |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제조업 |
| 32332 | | 가방 제조업 | 100 | ※ |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
| 100 | 개 | 가방 | 324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외 |
| 32333 | | 핸드백 제조업 | 100 | ※ | 각반 및 유사 제품 |
| 100 | 개 | 핸드백 | | | |
| 200 | 개 | 지갑 | | | |
| 32334 | | 가죽케이스 제조업 | | | |
| 100 | 개 | 가죽케이스 | | | |
| 323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 가죽제품 제조업 | | | |
| 100 | 개 | 마구(말, 자전거의 안장) | | | |
| 900 | ※ | 기타 가죽제품 | | | |
| 324 | |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및 프라스 틱 신발제외 | | | |
| 3240 | | 신발 제조업, 성형고무 및 프라스 틱 신발제외 | | | |
| 32401 | | 가죽신 제조업 | | | |
| 1 | | 단화 | | | |
| 111 | 족 | 남자용 단화 | | | |
| 112 | 족 | 여자용 단화 | | | |
| 113 | 족 | 캐주얼화(남.여용) | | | |
| 114 | 족 | 아동화 | | | |
| 200 | 족 | 가죽장화(부츠, 반상화, 군화포 함) | | | |
| 32402 | | 특수용 신발 제조업 | | | |
| 111 | 족 | 작업화 | | | |
| 112 | 족 | 등산화 | | | |
| 113 | 족 | 경기용 신발 | | | |
| 119 | ※ | 기타 특수용 신발 | | | |
| 32403 | |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 | | |
| 111 | 족 | 슬리퍼(실내화) | | | |

중분류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31 | |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13 | ※ | 건물 구조재 기둥, 서까래, 지주 등 |
| 3311 | | 제재업 및 목재 가공업 | 114 | ※ | 목재 건물-조립 조립식 건물, 오두막, 차고, 격 납고, 가축우리, 토끼장, 벌통, 개집 등 |
| 33111 | | 일반 제재업(1㎡≒300才) | 115 | 개 | 문(창문 포함) |
| 1 | | 소할재 | 33113 | | 박판 제조업 |
| 111 | ㎡ | 육송 소할재 | 111 | ㎡ | 무늬목 박판 |
| 112 | ㎡ | 미송 소할재 | 112 | ㎡ |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 제조용 박판 |
| 113 | ㎡ | 기타 침엽수 소할재 | 113 | ㎡ | 합판제조용 박판 |
| 114 | ㎡ | 라왕 소할재 | 119 | ※ | 기타 박판(박판 상태의 칩우드, 우 드 서어빙 포함) |
| 115 | ㎡ | 기타 활엽수 소할재 | 33114 | |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
| 2 | | 각재 | 111 | ㎡ | 보통 합판 |
| 211 | ㎡ | 육송 각재 | 112 | ㎡ | 미장 합판(가공합판) |
| 212 | ㎡ | 미송 각재 | 113 | ㎡ | 블록보드, 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
| 213 | ㎡ | 기타 침엽수 각재 | 114 | ㎡ | 세포형 나무판재 |
| 214 | ㎡ | 라왕 각재 | 33115 | |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제조업 |
| 215 | ㎡ | 기타 활엽수 각재 | 111 | ㎡ | 개량 목재 삼투(침척), 조밀화 또는 두가 지 공정으로 밀도나 강도를 증 가시킨 나무 |
| 3 | | 판재 | 112 | ㎡ | 재생목재(파아티클보드, 칩보드, 하드보드) |
| 311 | ㎡ | 육송 판재 | 113 | ㎡ | 화장 및 표면처리 목재 |
| 312 | ㎡ | 미송 판재 | 119 | ※ | 기타 개량 및 재생 목재 |
| 313 | ㎡ | 기타 침엽수 판재 | 331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업 및 목 재 가공업 |
| 314 | ㎡ | 라왕 판재 | 111 | ※ | 펄프제조용 우드칩 |
| 315 | ㎡ | 기타 활엽수 판재 | 112 | ※ | 울, 목분 및 나무토막 우드울은 고급나무 스리버로 구 |
| 4 | | 마루 판재 | | | |
| 411 | ㎡ | 침엽수 마루 판재 | | | |
| 412 | ㎡ | 활엽수 마루 판재 | | | |
| 900 | ※ | 기타 제재품 및 부산물 | | | |
| 33112 | | 목재건구 제조업 | | | |
| 111 | ※ | 목재 구슬선 쇄설이 | | | |
| 112 | ※ | 건물 부착물 서트, 계단, 문틀, 현관, 창살세 공, 난간, 장부마루, 블록 등 조 립한 마루판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3 | ※ | 성되었으며 영킨 덩어리 형태로 꼬여져 있다. 스리버는 일정 규격 및 두께와 비교적 길이가 일정한 것이다. 목분은 대패밥, 톱밥 및 기타 부 스러기 나무를 마쇄하여 얻거나 톱밥을 채질하여 얻는다. 인발목, 성냥개비, 나무못 또는 신 발용핀 인발목은 성냥개비, 나무못 등 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얇고 둥 근 나무조각이다. | 112 | ※ | 약제품 상자 |
| 114 | 본 | 침목 | 119 | ※ | 기타 절목상자(성냥갑 등) |
| 114 | ※ | 포장블록 및 통널 | 33124 | | 목함 제조업 |
| 116 | ※ | 나무지방 타일 | 111 | ※ | 여행용 케 |
| 200 | ※ | 나무 부스러기 | 112 | ※ | 기구 케이스 칼, 총, 제도기구, 악기, 과학기 구용 케이스 |
| 3312 | |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 119 | ※ | 기타 목함 |
| 33121 | | 통 제조업 | 33125 | | 등세공용기 제조업 |
| 111 | 개 | 액체용 통 | 111 | ※ | 산업용 바구니 등, 대, 버들, 고리버들, 갈대, 칩우드, 인발목, 식물성 섬유겹 질, 모노필, 종이띠 등으로 엮어 만든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쓰 이는 용기, 물고기 및 과일바구니, 빵배달용 바구니, 세탁물 취 급용 바구니 등 |
| 112 | 개 | 고체용 통 | 112 | ※ | 개인 또는 가정용 바구니 |
| 113 | ※ | 통 부품 | 113 | ※ | 등세공 반제품 |
| 33122 | | 목재 화물상자 제조업 | 331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
| 111 | ※ | 포장 상자 | 111 | ※ | 부채틀(부채는 39099로 분류) |
| 112 | ※ | 드럼 및 바렐 | 112 | ※ | 채 |
| 113 | ※ | 펠리트 및 스키드 포장상자를 올리고 싣고 운반하 는데 용이하게 설계된 장치로서 통상 포크리프트 트럭에 사용된 다.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등세공품 |
| 119 | ※ | 기타 화물용기 | 33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 |
| 33123 | | 절목상자 제조업 | 33191 | |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
| 111 | ※ | 도시락 상자 | 100 | ※ | 콜크 및 콜크제품 |
| | | | 33192 | | 위생 및 가정용 목제품 제조업 |
| | | | 111 | ※ | 위생 및 식탁용 목제품 스폰, 포크, 위생저, 이쑤시개 등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2 | ※ | 주방 및 가정용 목제품 밥주걱, 도마, 조림식기, 양념 통, 국수봉, 세탁판, 옷걸이, 접 시, 컵 등 | 33201 | |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
| 33193 |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111 | 개 | 의자 |
| 111 | ※ | 그림틀, 거울틀, 사진틀 및 유사제 품 | 112 | 개 | 책상 |
| 112 | ※ | 장식용 나무제품 소형 가정용품 약상자, 화장용 품상자, 장식성 옷걸이, 동물모 형, 재떨이조상, 나무조명부착 물 등 | 113 | 개 | 서가 |
| 33194 | |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 114 | 개 | 장식장 |
| 111 | ※ | 목재도구 나무도구, 도구몸체, 도구손잡 이 및 유사제품, 망치, 포크, 삽 등의 몸체, 총대 등 | 115 | 개 | 장롱 |
| 112 | ※ | 실꾸리 | 116 | 개 | 화장대 |
| 119 | ※ | 기타 목재도구 및 기구 사다리, 용적측정구, 목수작업 대 주형대턴, 멩에 등 | 117 | 개 | 식탁 |
| 33195 | | 목관 제조업 | 118 | 개 | 상 |
| 100 | ※ | 관 시체 화장 및 매장에 사용되는 목관 | 121 | 개 | 찬장 |
| 331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 | 122 | 개 | 침대 |
| 100 | ※ | 나무신 | 123 | 개 | 캐비닛 |
| 900 | ※ |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 124 | 개 | 신발장 |
| 332 | |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제 제외 | 125 | 개 | 옷걸이대 |
| 3320 | |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제 제외 | 126 | 개 | 요람 |
| | | | 127 | 개 | 문갑 |
| | | | 128 | 개 | 싱크대 |
| | | | 129 | ※ | 기타 가구 |
| | | | 200 | ※ | 공공건물용 가구 교회가구, 학교가구, 법정가구, 도서관가구, 실험 및 과학용가 구, 공원벤취, 휴대용 의자 등 |
| | | | 33202 | |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
| | | | 111 | ※ | 가정용 내장가구(소파, 의자등) |
| | | | 112 | ※ | 공공건물용 내장가구 |
| | | | 200 | ※ | 이중용도 가구 |
| | | | 300 | ※ | 차량용 내장가구 |
| | | | 400 | ※ | 매트리스 및 쿠션 |
| | | | 33203 | | 나전철기 가구 제조업 |
| | | | 111 | 개 | 나전철기제 장롱 |
| | | | 112 | 개 | 나전철기제 문갑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3 | | 개 | 나전칠기제 화장대 | | | | |
| 119 | | ※ | 기타 나전칠기제 가구 (장식용 나전칠기제품은 39051 에 분류) | | | | |
| 33204 | | | 등가구 제조업 | | | | |
| 100 | | ※ | 등가구 등, 대, 버들, 갈대 등의 재료로 만든 가구 | | | | |
| 33205 | | | 가정용장비 장치 캐비닛 제조업 | | | | |
| 100 | | 개 | 목재 가정기기용 캐비닛(T.V. 전 축, 재봉틀등의 캐비닛) | | | | |
| 33206 | | |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
| 100 | | ※ | 상점장치물 | | | | |
| 200 | | ※ | 작업장 장치물 | | | | |
| 3320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 물 제조업 | | | | |
| 100 | | ※ | 차양 | | | | |
| 900 |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 물 | | | | |

중분류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41 |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13 | ※ | 광물성지(석면지) |
| 3411 |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19 | ※ | 기타 건축용지 |
| 34111 | | 펄프 제조업 | 34116 | | 한지 및 수제지 제조업 |
| 100 | ㎥ | 기계펄프(쇄목펄프, 정제쇄목펄프) | 111 | 천매 | 창호지 |
| 2 | | 화학펄프 | 112 | ※ | 서예지 |
| 211 | ㎥ | 화학 및 반화학펄프 | 113 | ※ | 화선지 |
| 212 | ㎥ | 황산 및 소오다펄프 | 114 | m ² | 장판용 한지 |
| 213 | ㎥ | 비목재펄프 짚펄프, 바가스펄프, 대펄프, 갈대펄프, 닝마펄프, 린터펄프 등 | 119 | ※ | 기타 한지 |
| 214 | ㎥ | 아황산펄프 | 34117 | | 상자용판지 제조업 |
| 300 | ㎥ | 식물성섬유펄프(2차섬유펄프) | 111 | ㎥ | 마닐라 판지 |
| 34112 | | 신문용지 제조업 | 113 | ㎥ | 고형표백판지(식품포장용) |
| 100 | ㎥ | 신문용지 | 119 | ※ | 기타 상자용 판지(접을 수 없는 화물상자용, 가방제조용판지 포함) |
| 34113 | |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신문용지제외 | 341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111 | ㎥ | 백상지(모조지) | 111 | ㎥ | 골판지원지 |
| 112 | ㎥ | 갱지 | 112 | ※ | 식물성 파치먼트 및 그라신지 |
| 113 | ㎥ | 중질지 | 113 | ※ | 위생용원지(나프킨원지, 화장지원지, 티슈원지 등) |
| 114 | ㎥ | 아트지 | 114 | ㎥ | 특수박엽지 카본원지, 스텐실(등사)원지, 절연지, 차봉지원지, 옷본원지 등 |
| 115 | ㎥ | 그라비아용지 | 115 | ※ | 아황산포장지 |
| 116 | ㎥ | 지폐용지 | 119 | ※ | 기타 기계종이 가스킷원지, 지형원지, 여과지, 마분지등 |
| 117 | ㎥ | 인디아지 | 3412 | |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
| 118 | ㎥ | 제표카드용지 | 34121 | | 골판지상자 제조업 |
| 119 | ※ | 기타 인쇄 및 필기용지 | 100 | 천m ² | 골판지 상자 |
| 34114 | | 크라프트지 제조업 | 34122 | | 종이포대 제조업 |
| 100 | ㎥ | 크라프트지 | 111 | 천매 | 크라프트지포대 |
| 34115 | | 건축용지 제조업 | | | |
| 111 | m ² | 파이버보드 | | | |
| 112 | ※ | 종이펠트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2 | ※ | 백 | 111 | kg | 화장지 |
| 34123 | | 판지상자 제조업 | 112 | kg | 나프킨지 |
| 100 | ※ | 판지상자 | 113 | kg | 생리대 |
| 34124 | | 위생용식품용기 제조업 | 114 | kg | 종이거저귀 |
| 111 | 천개 | 종이컵 | 115 | kg | 종이타월 |
| 112 | 천개 | 액체우유 및 음료용기 | 119 | ※ | 기타 위생용종이제품 |
| 119 | ※ | 기타 위생용 식품용기 | 34193 | | 적층 및 표면처리지 제조업 |
| 34125 | | 경화섬유포장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11 | ※ | 복합지 접착제로 여러겹의 종이를 붙여 만든 판지로서 속에 직물, 금속망, 플라스틱등으로 보강하기도 한다. |
| 100 | ※ | 파이버상자 선적용, 진열, 판매용 및 저장용 용기 | 112 | ※ | 금속박지(알미늄, 은박지 등) |
| 200 | ※ | 캔 및 드럼 | 113 | ※ | 도포 또는 침착지 인화지는 352에 분류 |
| 341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 114 | ※ | 채색 또는 인쇄지 인쇄지는 포장인쇄등의 주된 목적에 단순한 부수적인 인쇄에 한한다. |
| 100 | ※ | 기타 종이 및 판지용기 실구리, 박스화일, 편지함 및 유사제품, 서류캐비닛, 저장함, 유사고형 및 내구성상자 | 115 | ※ | 양각 또는 천공지 종이를 만든 후 가공한 것 |
| 34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116 | 천㎡ | 골판지(원지는 34119111에) |
| 34191 | | 벽지 제조업 | 119 | ※ | 기타 적층 및 표면처리지 |
| 111 | ㎡ | 벽지 | 34194 | | 문구용지 제조업 |
| 112 | ※ | 링크러스타 매우 무게가 있는 종이 재료에 아마유 및 충전제의 건성 혼합·도포하여 만든 것으로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하도록 양각디자인 인쇄 또는 기타장식이 되어있다. | 111 | 백매 | 각종 봉투 |
| 113 | ※ | 창 투명지 | 112 | 백매 | 원고지 |
| 34192 | |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업, 용기제조 | 113 | 백매 | 편지지 |
| | | | 900 | ※ | 기타 문구용지 |
| | | | 34195 | | 압형 펄프제품 제조업 |
| | | | 111 | ※ | 여과 부록 |
| | | | 119 | ※ | 기타 압형펄프제품 혼용지는 34193, 혼용지로 탈,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 가면, 조상 및 공예품을 제조하는 활동은 3909에 분류 | 112 | 천권 | 장부책 |
| 34196 | | 사무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 113 | 천권 | 일기책 |
| 111 | ※ | 컴퓨터용지 | 114 | 천권 | 앨범 |
| 112 | ※ | 전신 및 텔레타이프 라이터지 | 115 | 천권 | 스케치북 |
| 113 | ※ | 천공용 카드 | 116 | 천권 | 바인더 |
| 114 | ※ | 자동기록지(모노타이프용 자동기록지, 모노타이프지 등) | 119 | ※ | 기타노트, 장부 및 유사제품 |
| 119 | ※ | 기타 사무기계 용지 카아본지 및 복사지는 39092에 분류 일반타자용지는 34194에 분류 | 34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 제조업 |
| 341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100 | ※ | 약보 |
| 111 | ※ | 담배용지 (원지상태의 것은 34119/114로 분류) | 200 | ※ | 지도 지도, 수도, 차도 |
| 112 | ※ | 셀로판지 | 300 | ※ | 어린이 그림 |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제품 | 4 | | 기타발간물 |
| 342 | |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 411 | ※ | 연하장 |
| 3421 | | 신문발행, 출판 및 인쇄물 제조업 | 412 | ※ | 장식포스터 및 회화 복사물 |
| 34211 | | 신문 발행업 | 4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간물 |
| 111 | 천부 | 일간신문 | 5 | | 우표류 |
| 112 | 천부 | 비일간신문 | 511 | ※ | 우표, 수입인지, 봉합엽서 및 엽서 |
| 34212 | | 정기간행물 발행업 | 519 | ※ | 기타 우표류 |
| 100 | 천권 | 정기간행물 주간잡지와 일간전문지 포함 | 611 | ※ | 화폐 |
| 34213 | | 서적 출판업 | 612 | ※ | 주식, 채권 및 유사 권리증서 수표책, 신용장, 여행자수표, 배당쿠폰, 주문서 등 |
| 111 | 천권 | 서적 | 900 | ※ | 기타인쇄물 달력, 전사물, 서식, 종이 라 벨, 놀이용카드(포카, 화투), 극장표, 열차표등 |
| 112 | ※ | 팜프렛 5page이상 48page이하의 서적 | 3422 | | 상업 인쇄업 |
| 34214 | | 사무용 인쇄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34221 | | 일반 인쇄업(임가공) |
| 111 | 천권 | 노트 | 100 | ※ | 일반인쇄물 |
| | | | 34222 | | 경인쇄업(압가공) |
| | | | 100 | ※ | 경인쇄물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42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 인쇄업 (임가공) | | | |
| 100 | ※ | 기타 상업인쇄물 | | | |
| 3423 | | 인쇄관련산업 | | | |
| 34231 | | 제책업(임가공) | | | |
| 100 | ※ | 제본 | | | |
| 34232 | | 사진 제판업 | | | |
| 111 | ※ | 조판 및 연판 | | | |
| 112 | ※ | 옵셋 인쇄판 | | | |
| 113 | ※ | 사진판 | | | |
| 119 | ※ | 기타 사진원판 | | | |
| 34233 | | 식자 및 사진 제판업 | | | |
| 100 | ※ | 활판식자 및 관련제판 | | | |
| 200 | ※ | 식각제판 | | | |
| 342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관련사업 | | | |
| 100 | ※ | 기타 제판 및 조판 | | | |
| 900 | ※ | 기타 인쇄관련 서어비스업(광고수 입 포함) | | | |

중분류 35. 화합물 석유·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51 | |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131 | ※ | 아크릴로 니트릴 |
| 3511 | |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 139 | ※ | 기타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품 |
| 35111 | |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업 | 35113 | |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
| 111 | ※ | 에틸렌 | 111 | ※ | 스티렌모노머 |
| 112 | ※ | 프로필렌 | 112 | ※ | 알킬벤젠 |
| 113 | ※ | 포화비환식 탄화수소(탄소원자 5 이상인 핵산, 헵탄, 옥탄, 데칸 등) | 113 | ※ | T. D. I.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
| 114 | ※ | 부타디엔(폴리에틸렌탄화수소) | 114 | ※ | D. M. T |
| 121 | ※ | 벤젠 | 115 | ※ | 페놀 |
| 122 | ※ | 톨루엔=메틸벤젠 | 116 | ※ | 사이클로hex산 |
| 123 | ※ | 혼합크실렌(크실렌=디메틸벤젠) | 121 | ※ | 무수마레인산 |
| 124 | ※ | 올소크실렌 | 122 | ※ | 무수프탈산 |
| 125 | ※ | 파라크실렌 | 123 | ※ | O. T. S. A. (사카린원료) |
| 131 | ※ | 메탄올 | 124 | ※ | 테레프탈산(T. P. A.) |
| 139 | ※ | 기타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 125 | ※ | 아니린 |
| 35112 | | 지방족계 석유화학유도품 제조업 | 126 | ※ | 카프로락탐 |
| 111 | ※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127 | ※ | 멜라민(수지는 35114123) |
| 112 | ※ | 4 염화탄소(소화기액포함) | 129 | ※ | 기타 방향족계 석유화학유도품 |
| 113 | ※ | 클로로메탄(염화메틸, 클로로메틸) | 35114 | |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114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111 | ※ | 페놀수지(페놀은 35113115) |
| 115 | ※ | 염화비닐모노머(V. C. M.) | 112 | ※ | 요소수지 |
| 116 | ※ | 트리클로로디(클로로페닐)메탄 | 113 | ※ | 알키드수지 |
| 121 | ※ | 부틸알콜 | 114 | ※ | 불포화성폴리에스터 |
| 122 | ※ | 에틸렌글리콜=에탄다이올 | 115 | ※ | 폴리우레탄 |
| 123 | ※ | 에타날(아세트알데히드) | 116 | ※ | 에폭시드수지 |
| 124 | ※ | 초산 | 117 | ※ | 실리콘수지 |
| 125 | ※ | 초산메틸, 에틸 및 부틸 | 118 | ※ | 폴리아미드 및 슈퍼폴리아미드수지 |
| 126 | ※ | 2 에틸 헥실알콜 | 121 | ※ | 선형폴리에스터수지 |
| 127 | ※ | 폴리프로필렌글리콜(P. P. G.) | 122 | ※ | 폴리에틸수지 |
| 128 | ※ | 프로필렌글리콜(P. G) | 123 | ※ | 멜라민수지(멜라민은 35113127) |
| | | | 124 | ※ | 아미노수지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31 | ※ | 고밀도 폴리에틸렌(프라스틱 필름 은 35601에 분류) | 119 | ※ | 기타 검 및 나무화학물 |
| 132 | ※ | 저밀도 폴리에틸렌 | 351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기화학물 제 조업 |
| 133 | ※ | 폴리프로필렌(P.P) | 111 | ※ | 포르말린=메타날(포름알데히드) |
| 134 | ※ | 폴리스티렌(P.S) | 112 | ※ | 의산(개미산) |
| 135 | ※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수지) | 113 | ※ | 스테아린산 |
| 136 | ※ | 폴리염화비닐(P.V.C) | 114 | ※ | 구연산 |
| 137 | ※ | 폴리초산비닐 | 115 | ※ | 수산 |
| 149 | ※ | 기타 프라스틱물질 | 116 | ※ | 주석산 |
| 35115 | | 합성고무 제조업 | 117 | ※ | 아세틸살리실산 |
| 111 | ※ | 스티렌부타디엔고무라텍스(S.B. R-Latex) | 118 | ※ | 요소(요소비료로서의 요소화합물 은 35151 115에 분류) |
| 112 | ※ | 스티렌 부타디엔고무(S.B.R) | 211 | ※ | 에틸, 에틸알콜, 에틸페놀, 에틸 알콜 페놀, 알콜과산화물 및 그 들의 유도체 |
| 113 | ※ | 폴리부타디엔(B.R) | 212 | ※ | 에폭시드, 에폭시알콜, 에폭시페 놀, 에폭시에텔 및 그 유도체 |
| 114 | ※ | 부틸고무(I.I.R.) | 213 | ※ | 아세탈, 헤미아세탈, 단일 또는 복 합산소 관능아세탈 및 그 유도 체 |
| 119 | ※ | 기타 합성고무 | 214 | ※ |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
| 200 | ※ | 팩티스 | 215 | ※ | 제 4 암모늄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
| 35116 | | 석탄화학제품 제조업 | 216 | ※ | 아미드관능화합물 |
| 111 | ※ | 나프탈렌 | 217 | ※ | 아미드 및 이민관능화합물 |
| 112 | ※ | 안트라센 | 312 | ※ | 테트라에틸엔 |
| 113 | ※ | 크레졸 | 313 | ※ | 락톤과 기타 락탐 |
| 114 | ※ | 크레오소트유 | 314 | ※ | 설폰아미드 |
| 119 | ※ | 기타 석탄화학제품 | 315 | ※ | 효소 |
| 35117 | |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 316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당에틸, 에 스터 및 그들의 염 |
| 111 | ※ | 터르펜틴정 | 319 | ※ | 기타 유기화합물 |
| 112 | ※ | 로진, 수지산 및 유도체 | 3512 | |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
| 113 | ※ | 로진정 및 로진오일 | | | |
| 114 | ※ | 피치 | | | |
| 115 | ※ | 숯 | | | |
| 116 | ※ | 톨오일 | | | |
| 117 | 천개 | 착화탄(번개탄)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5121 | | 무기산 제조업 | 318 | ※ | 과산화수소 |
| 111 | ※ | 불소 | 411 | ※ | 탄화칼슘(카바이트) |
| 112 | ※ | 취소 | 412 | ※ | 염소산칼륨 |
| 113 | ※ | 옥소 | 413 | ※ | 명반 |
| 114 | ※ | 유황 | 414 | ※ | 침강탄산마그네슘 |
| 115 | ※ | 셀레늄 | 415 | ※ | 침강탄산칼슘 |
| 116 | ※ | 텅텅 | 416 | ※ | 탄산칼슘 |
| 117 | ※ | 인 | 417 | ※ | 이산화망간 |
| 118 | ※ | 비소 | 418 | ※ | 수산화마그네슘 |
| 121 | ※ | 규소 | 511 | ※ | 불화수소산 |
| 122 | ※ | 붕소 | 512 | ※ | 염화마그네슘 |
| 123 | ※ | 수은 | 513 | ※ | 황산마그네슘 |
| 124 | ※ | 알카리금속원소 : 리튬, 나트륨, 칼륨 세슘 | 514 | ※ | 치아염소산칼슘 |
| 125 | ※ | 알카리토류금속원소 : 칼슘, 스트 론튬, 바륨등 | 515 | ※ | 과망간칼륨 |
| 126 | ※ | 희토류금속원소 : 세륨, 페르븀, 에르 | 516 | ※ | 황산제 1 철 |
| 127 | ※ | 이트륨 및 스칸듐 | 517 | ※ | 황산아연 |
| 211 | ※ | 황산 및 올레움(98% 기준) | 518 | ※ | 탄화규소 |
| 212 | ※ | 이산화유황 | 611 | ※ | 규산칼슘 |
| 213 | ※ | 질산 | 612 | ※ | 질산칼륨 |
| 214 | ※ | 5 산화인 및 인산 | 613 | ※ | 염화칼슘(염화석회) |
| 215 | ※ | 클로로셀폰산 및 황질산 | 614 | ※ | 수산화암모늄 |
| 311 | ※ | 이류화탄소 | 900 | ※ | 기타무기산화합물(화학원소) |
| 312 | ※ | 산화 및 과산화아연 | 35122 | | 가성소다 및 관련제조업 |
| 313 | ※ | 산화티타늄, 이산화티타늄 | 111 | ※ |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 100%기 준) |
| 314 | ※ | 암모니아 | 112 | ※ | 수산화칼리=가성칼리(가소제) |
| 315 | ※ | 산화알루미늄, 과산화알루미늄, 인조코런덤 | 113 | ※ | 탄산나트륨=소다회=무수탄소다 |
| 316 | ※ | 황산알루미늄 | 114 | ※ | 탄산칼리(탄산칼륨) |
| 317 | ※ | 황산동 | 115 | ※ | 중탄산나트륨(중조), 과산화나트륨 |
| | | | 116 | ※ | 염소 |
| | | | 117 | ※ | 염산(35%기준)(염화수소산) |
| | | | 118 | ※ | 시아나화나트륨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211 | | ※ | 규산나트륨(규산소다) | 211 | | ※ | 단백질물질 |
| 212 | | ※ | 이크롬산소다 | 212 | | ※ | 인조흑연 |
| 213 | | ※ | 염소산소다 | 213 | | ※ | 활성탄소 및 기타 활성광물질 |
| 214 | | ※ | 황산나트륨(망초) | 214 | | ※ | 동물블랙 |
| 215 | | ※ | 아황산나트륨(무수망초) | 215 | | ※ | 합성귀석 및 반귀석 |
| 216 | | ※ | 황화나트륨 | 216 | | ※ | 조제금속탄화물 및 해감금속탄화물 |
| 217 | | ※ | 인산나트륨(인산소다) | 217 | | ※ | 배양크리스탈 |
| 218 | | ※ | 질산나트륨 | 218 | | ※ | 화이트 카본(유기, 무기 포함) |
| 311 | | ※ | 황화수소나트륨 | 219 | | ※ | 기타 무기화합물 |
| 312 | | ※ | 붕산나트륨 | | | | |
| 900 | | ※ | 기타 가성소다제품 | | | | |
| 35123 | | | 산업용가스 제조업 | 3513 | | | 염료, 안료 및 유연제 제조업 |
| 111 | m ³ | | 산소(1ℓ = 1,429 g) | 35131 | | | 염료 제조업 |
| 112 | m ³ | | 질소 | 111 | | ※ | 직접염료 |
| 113 | m ³ | | 희소가스 : 네온, 아르곤, 크립톤 및 제논 | 112 | | ※ | 산성염료 |
| 114 | m ³ | | 액체공기 | 113 | | ※ | 염기성염료 및 카치온염료 |
| 115 | kg | | 아세티렌가스 | 114 | | ※ | 매염염료 및 산성매염염료 |
| 116 | m ³ | | 크로로불화메탄 및 에탄 | 115 | | ※ | 황화염료 및 황화견염염료 |
| 117 | m ³ | | 혼합산업용가스 | 116 | | ※ | 건염염료 |
| 211 | m ³ | | 수소 | 117 | | ※ | 분산염료 |
| 212 | m ³ | | 헬륨 | 118 | | ※ | 천연람 |
| 213 | m ³ | | 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 121 | | ※ | 무생염료(아조염료) |
| 214 | m ³ | | 일산화탄소 | 122 | | ※ | 반응성염료 |
| 215 | m ³ | | 산화질소 및 산화질산 | 123 | | ※ | 유기용제 용해염료 |
| 219 | | ※ | 기타 산업용가스 | 124 | | ※ | 형광백염료 |
| 3512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합제품 제조업 | 125 | | ※ | 유기합성 유기염료 |
| 111 | | ※ | 핵분열성 화학원소 및 동위원소 | 126 | | ※ | 컬러레이크 |
| 112 | | ※ | 방사성화학원소 및 동위원소 | 129 | | ※ | 기타합성유기염료 |
| 113 | | ※ | 핵분열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동위원소화합물 | 35132 | | | 안료 및 착색제 제조업 |
| | | | | 1 | | | 무기안료 |
| | | | | 111 | | ※ | 연산화물 적연 및 황연 |
| | | | | 112 | | ※ | 광물성 블랙(흑색안료) |
| | | | | 113 | | ※ | 색토 |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번 | 류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4 | | ※ | 티타늄화이트(산화티탄백색안료) | 112 | | ※ |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가소성 유 도체 |
| 115 | | ※ | 프레이션안블루(감청) | 113 | | ※ | 재생섬유소,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및 섬유 제 1 차제품 |
| 116 | | ※ | 울트라마린(군청) | 35142 | | | 재생섬유 제조업 |
| 117 | | ※ | 아연회(백색안료) | 1 | | | 재생장섬유 |
| 118 | | ※ | 산화철(적색안료) | 111 | | ※ | 비스코스레이온 |
| 119 | | ※ | 기타무기안료 및 착색제 | 112 | | ※ | 동암모니움레이온 |
| 2 | | | 유기안료 | 113 | | ※ | 아세테이트섬유 |
| 211 | | ※ | 레이크계안료 | 114 | | ※ | 카세인섬유 |
| 212 | | ※ | 아조계안료 | 115 | | ※ | 알긴산섬유 |
| 213 | | ※ | 푸타로시아닌블루계안료 | 119 | | ※ | 기타 재생장섬유 |
| 214 | | ※ | 푸타로시아닌그린계안료 | 200 | | ※ | 모노필 및 스트립(인조짚) |
| 219 | | ※ | 기타유기안료 및 착색제 | 3 | | | 재생단섬유 |
| 3 | | | 조제안료 | 311 | | ※ | 비스코스레이온 |
| 311 | | ※ | 조제무기안료 | 312 | | ※ | 동암모니움레이온 |
| 312 | | ※ | 조제유기안료 | 313 | | ※ | 아세테이트섬유 |
| 313 | | ※ | 조제유백제 | 314 | | ※ | 카세인섬유 |
| 314 | | ※ | 조제범랑유약 | 315 | | ※ | 알긴산섬유 |
| 315 | | ※ | 조제라스터 | 319 | | ※ | 기타 재생단섬유 |
| 316 | | ※ | 마스타벳치 | 4 | | | 재생장섬유토우(인조섬유제조용) |
| 319 | | ※ | 기타조제안료 및 관련제품 | 411 | | ※ | 비스코스레이온 |
| 35133 | | | 염색 및 유연제엑스와 합성유연제 제조업 | 412 | | ※ | 동암모니움레이온 |
| 111 | | ※ | 식물성 색소질 | 413 | | ※ | 아세테이트섬유 |
| 112 | | ※ | 동물성 색소질 | 414 | | ※ | 카세인섬유 |
| 113 | | ※ | 식물성 탄닌엑스 | 415 | | ※ | 알긴산섬유 |
| 114 | | ※ | 탄닌산 및 유도체 | 419 | | ※ | 기타 재생장섬유토우 |
| 115 | | ※ | 합성유기 및 무기유연제 | 35143 | | | 합성섬유 제조업 |
| 3514 | | | 화학섬유 제조업 | 1 | | | 합성장섬유 |
| 35141 | | |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 체 제조업 | 111 | | ※ | 수퍼폴리아미드섬유(나이론섬유) |
| 111 | | ※ | 가소하지 않은 섬유소의 화학유도 체 | 112 | | ※ | 수퍼폴리우레탄섬유 |
| | | | | 113 | | ※ | 수퍼폴리에스터섬유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4 | ※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섬유 | 114 | ※ | 칼슘시안아미드 |
| 115 | ※ | 폴리비닐아크릴섬유 | 115 | ※ | 요소(순수요소는 35119 118에 분류) |
| 116 | ※ | 염화폴리비닐섬유 | 116 | ※ | 질산칼슘 |
| 117 | ※ | 폴리비닐알콜섬유 | 117 | ※ | 염화암모늄(염안) |
| 118 | ※ | 폴리텐계섬유 | 119 | ※ | 혼합질소질비료 및 기타 질소질 비료(석회질소 포함) |
| 119 | ※ | 기타 합성장섬유 | 35152 | | 인산질비료 제조업 |
| 200 | ※ | 모노필 및 스트립(인조짚) | 111 | ※ | 순수인산비료 |
| 3 | | 합성단섬유 | 112 | ※ | 용성인비 |
| 311 | ※ | 수퍼폴리아미드섬유(나이론) | 113 | ※ | 소성인비 |
| 312 | ※ | 수퍼폴리우레탄섬유 | 119 | ※ | 기타 인산질비료(과린산석회) |
| 313 | ※ | 수퍼폴리에스터섬유 | 121 | ※ | 용과린 |
| 314 | ※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섬유 | 122 | ※ | 혼합인산질비료 |
| 315 | ※ | 폴리비닐아크릴섬유 | 35153 | | 칼리질비료 제조업 |
| 316 | ※ | 염화폴리비닐섬유 | 111 | ※ | 황산칼리 |
| 317 | ※ | 폴리비닐알콜섬유 | 112 | ※ | 염화칼리 |
| 318 | ※ | 폴리텐계섬유 | 119 | ※ | 혼합칼리질비료 및 기타 칼리질 비료(유산고토비료 포함) |
| 319 | ※ | 기타 합성단섬유 | 35154 | | 복합비료 제조업 |
| 4 | | 합성장섬유투우 | 100 | ※ | 복합비료 |
| 411 | ※ | 수퍼폴리아미드섬유(나이론) | 3515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비료 제조업 |
| 412 | ※ | 수퍼폴리우레탄섬유 | 100 | ※ | 유기질비료(배합토 포함) |
| 413 | ※ | 수퍼폴리에스터섬유 | 900 | ※ | 기타 화학비료 |
| 414 | ※ | 폴리비닐아스테이트섬유 | 3516 | | 농약 제조업 |
| 415 | ※ | 폴리비닐아크릴섬유 | 35160 | | 농약 제조업 |
| 416 | ※ | 염화폴리비닐섬유 | 111 | ※ | 살충제(과린, 모기용은 35224 119) |
| 417 | ※ | 폴리비닐알콜섬유 | 112 | ※ | 살균제 |
| 418 | ※ | 폴리텐계섬유 | 113 | ※ | 제초제 |
| 419 | ※ | 기타 합성장섬유투우 | 114 | ※ | 살서제(취약) |
| 3515 | | 화학비료 제조업 | 115 | ※ | 성장조절제(성장억제, 촉진제) |
| 35151 | | 질소질비료 제조업 | 119 | ※ | 기타 농약(가정용 살균, 살충, 소 |
| 111 | ※ | 순수황산암모늄(유안) | | | |
| 112 | ※ | 황질산암모늄 | | | |
| 113 | ※ | 질산암모늄(질안)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 | 독제는 35229) | | | |
| 352 |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112 | ※ | 홀몬 |
| 3521 | | 도료 제조업 | 113 | ※ | 그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
| 35211 | | 유성 및 수지도료 제조업 | 114 | ※ | 식물성 알카로이드 및 그 유도체 |
| 111 | ㎧ | 바니쉬 | 35223 | | 항생의약품 제조업 |
| 112 | ㎧ | 에나멜 | 111 | ※ | 페니시린 |
| 113 | ㎧ |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 112 | ※ | 스트렙토마이신 |
| 119 | ※ | 기타 유성도료 | 113 | ※ | 크로르테트라사이클린 |
| 35212 | | 수성도료 제조업 | 114 | ※ | 액티노마이신 |
| 111 | ㎧ | 수성페인트 | 115 | ※ | 가나마이신 |
| 112 | ※ | 디스토퍼 및 유사제품 | 116 | ※ | 세팔로스포린계 유도체 |
| 35213 | | 섬유소유도체도료 제조업 | 119 | ※ | 기타 항생제 |
| 100 | ㎧ | 래커(락카) | 35224 | | 의약품 제조업 |
| 35214 | | 옷칠 제조업 | 111 | ※ | 신경계용약 |
| 100 | ㎏ | 옷칠 | 112 | ※ | 기관계용약(순환 및 감각) |
| 200 | ㎏ | 카슈 | 113 | ※ | 소화기관계용약 |
| 35215 | | 도료관련제품 제조업 | 114 | ※ | 홀몬제 |
| 111 | ㎧ | 조제 건조제 | 115 | ※ | 비타민제 |
| 112 | ㎧ | 발광도료 | 116 | ※ | 항암염제 |
| 113 | ㎧ | 신너(복합솔벤트) | 117 | ※ | 자양강장변질제 |
| 114 | ※ | 도료용 복합화장제 | 118 | ※ | 외피용약 |
| 35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 제조업 | 119 | ※ | 기타 의약품 |
| 100 | ※ | 아미유에 넣은 안료 및 스탬핑포일 | 35225 | | 동물 약제품 제조업 |
| 3522 | | 의약품 제조업 | 111 | ※ | 신경계용약 |
| 35221 | |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 112 | ※ | 기관계용약 |
| 111 | ※ | 항혈청 및 미생물백신 | 113 | ※ | 대사성약 |
| 112 | ※ | 톡신, 미생물배양물 및 유사제품 | 114 | ※ | 항병원성약 |
| 113 | ※ | 유기요법신 또는 기타기관 | 115 | ※ | 항생물질 제제 |
| 114 | ※ | 유기요법엑스 및 기타 동물물질 | 116 | ※ | 생물학적 제제 |
| 119 | ※ | 기타 생물학적제제 | 119 | ※ | 기타 동물약품제 |
| 35222 | |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 352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
| 111 | ※ | 비타민 및 프로비타민 | 100 | ※ | 한의약품 |
| | | | 200 | ※ | 공중위생 및 가정용약제(소독, 살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900 | ※ | 균, 살충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의약품 |
| 3523 | |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 제조업 |
| 35231 | | 비누 제조업 |
| 111 | ※ | 세탁비누 |
| 112 | ※ | 화장비누 |
| 113 | ※ | 소독비누 |
| 114 | ※ | 공업용비누 |
| 115 | ※ | 액체비누 |
| 119 | ※ | 기타비누 |
| 35232 | | 합성세제 제조업 |
| 111 | ※ | 연성세제제조업 |
| 112 | ※ | 경성세제제조업 |
| 200 | ※ | 세척분 및 페이스트 |
| 35233 |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111 | ※ | 유기계면활성제 |
| 112 | ※ | 조제계면활성제(세제는 제외) |
| 119 | ※ | 기타 계면활성제 |
| 35234 | | 치약 제조업 |
| 111 | ※ | 치약 |
| 112 | ※ | 치분 |
| 35235 | | 화장품 제조업 |
| 1 | | 기초화장품 |
| 111 | ※ | 화장수(밀크 및 스킨로션 포함) |
| 112 | ※ | 크림(콜드, 영양, 크린싱, 바니싱, 표백등) |
| 119 | ※ | 기타 기초화장품(맛사지오일 및 팩류등) |
| 2 | | 색조화장품 |
| 211 | ※ | 립스틱 |
| 212 | ※ | 분(콤팩트 포함)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213 | ※ | 화운데이션 |
| 219 | ※ | 기타 색조화장품(불연지등) |
| 3 | | 모발화장품 |
| 311 | ※ | 샴푸 |
| 312 | ※ | 린스 |
| 313 | ※ | 머리기름(포마드 포함) |
| 314 | ※ | 염색약 |
| 319 | ※ | 기타 모발화장품(헤어크림, 리퀴드류, 퍼머넌트로션등) |
| 4 | | 기타 화장품 |
| 411 | ※ | 메니큐어 |
| 412 | ※ | 메니큐어제거제 |
| 413 | ※ | 눈화장품(아이라인, 펜슬, 샴도우, 마스크라등) |
| 414 | ※ | 일소방지용 화장품(선스크린 및 크림등) |
| 415 | ※ | 향수제품 |
| 419 | ※ | 기타화장품 |
| 352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 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 제조업 |
| 111 | ※ | 글리세롤 및 글리세롤라이 글리세린 |
| 112 | kg | 구강세척제 |
| 113 | kg | 방취제 |
| 119 | ※ | 기타 구강세척제, 방취제 및 관련 제품 |
| 35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
| 35291 | | 접착제 및 제라틴 제조업 |
| 111 | ※ | 제라틴 |
| 112 | ※ | 공업용 접착제 |
| 113 | ※ | 텍스트린 및 가성용 또는 하소한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4 | ㄱ | 전분 아교 | 211 | kg | 현상제 |
| 35292 | |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 212 | kg | 정착제 |
| 1 | | 산업용 화약, 폭약 및 꽃불제품 | 213 | kg | 증강제 및 감도제 |
| 111 | ㄱ | 흑색화약 | 214 | kg | 조색제 |
| 112 | ㄱ | 다이나마이트 | 215 | kg | 세정제 |
| 113 | ㄱ | 초안폭약 | 216 | kg | 감광유제 |
| 114 | ㄱ | 초유폭약 | 217 | kg | 섬광제 |
| 115 | ㄱ | 기타 조제폭약 | 219 | ※ | 기타 사진용 화학제품 |
| 116 | km | 도화선 | 35297 | | 잉크 제조업 |
| 117 | km | 도폭선 | 111 | ㄱ | 인쇄잉크 |
| 118 | 천개 | 뇌관 | 112 | ㄱ | 보통필기 및 제도잉크 |
| 2 | | 무기용 화약 및 폭약등 | 119 | ※ | 기타잉크 |
| 200 | ※ | 무기용 화약(무연화약, 혼성추진 약등) | 35298 |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35293 | | 성냥 제조업 | 111 | kg | 식품용 향료 |
| 100 | 천갑 | 성냥 | 112 | kg | 레지노이드 |
| 35294 | | 카본블랙 제조업 | 113 | kg | 테르펜 부산물 |
| 100 | ㄱ | 카본블랙 | 114 | kg | 수정중류물 |
| 35295 | |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제조업 | 115 | kg | 방향유 |
| 111 | ㄱ | 동물성왁스 | 119 | ※ | 기타 향료 혼합물 |
| 112 | ㄱ | 식물성왁스 | 352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
| 113 | ㄱ | 인조왁스 | 111 | kg | 용제 및 기타 용접용 보조제 |
| 114 | ㄱ | 합성왁스 | 112 | kg | 녹방지 화합물(이온교환제포함) |
| 115 | ㄱ | 조제왁스 | 113 | kg | 부동제 |
| 116 | ㄱ | 광택제 | 114 | kg | 탄소 |
| 119 | ※ | 기타 특수세척제 | 115 | kg | 소화기용 조제품 및 충전물 |
| 35296 | | 사진용 화학물 제조업 | 116 | kg | 고체 및 반고체 연료 |
| 111 | ※ | 사진원판 및 필름(평면상의 것) | 117 | kg | 안티노크세제 및 광물유첨가제 |
| 112 | ※ | 롤상필름(영화, 사진, 녹음용 포 함) | 118 | kg | 양초 |
| 113 | ※ | 감광지(인화지 포함) | 121 | kg | 양초피치 |
| | | | 122 | kg | 주물접합제 |
| | | | 123 | kg | 클리크로디페닐 및 크로로파라핀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24 | kg | 방수액 | 311 | kl | 프로판가스 |
| 125 | kg | 복합접촉 반응제 | 312 | kl | 부탄가스 |
| 126 | kg | 복합 경화제 | 319 | ※ | 기타 액화 석유가스 |
| 127 | kg | 산화 방지제 | 4 | | 석유역청 및 석유코크스 |
| 128 | kg | 항산침가제(시멘트용) | 411 | kl | 석유역청(아스팔트) |
| 129 | kg | P.V.C안정제(열안정제) | 412 | ㎥ | 석유코크스 |
| 131 | kg | 잉크지우개 및 스텐실 교정액 | 419 | ※ | 기타 석유잔여물 |
| 132 | kg | 술 정화제 | 500 | kl | 정제구리스 - 구리스는 35402 |
| 133 | kg | 수화 실리카겔 | 600 | kl | 정제윤활유(윤활기유) - 윤활유 는 35402 |
| 134 | kg | 방청제 | 354 |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 135 | kg | 공업염 | 3540 | |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 136 | ※ | 금속표면 산용액처리 조제품 | 35401 | | 연탄 제조업 |
| 137 | ※ | 조제고무 가속제 | 111 | ㎥ | 연탄(㎥ = 22공탄 278장, 25공탄 208장, 31공탄 133장) |
| 138 | ※ | 조제광택제, 드레싱 및 매연제 | 112 | ㎥ | 조개탄(마세크탄) |
| 141 | ※ | 방염제 | 35402 | | 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업 |
| 14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화학제품 | 111 | kl | 구리스(정제구리스는 35300) |
| 353 | | 석유 정제업 | 112 | kl | 윤활유(윤활기유는 35300) |
| 3530 | | 석유 정제업 | 113 | kl | 변압기용 기름 |
| 35300 | | 석유 정제업 | 114 | kl | 절삭제 |
| 100 | kl | 조유=부분정제원유 | 115 | kl | 세척유 |
| 2 | | 정제유 | 116 | kl | 주형방출유 |
| 211 | kl | 젯트유(항공기용 가솔린 포함) | 117 | kl | 유압브레이크유 |
| 212 | kl | 휘발유 | 119 | ※ | 기타 비윤활유 |
| 213 | kl | 나프타(납사) | 35403 | | 아스팔트 및 기타 포장재료 제조업 |
| 214 | kl | 등유(석유 포함) | 111 | ※ | 아스팔트(역청질 혼합물) |
| 215 | kl | 솔벤트(백정) | 112 | ※ | 타르메카담 |
| 216 | kl | 경유 | 113 | ※ | 타르침책 루핑벨트 |
| 217 | kl | 중유(방카A, B유 포함) | 114 | ㎥ | 아스콘 |
| 218 | kl | 방카C유 | 115 | ※ | 루핑보드 |
| 219 | ※ | 기타 정제유 | 116 | ※ | 아스팔트 토치 |
| 3 | | 액화석유가스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9 | ※ | 기타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품 |
| 354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 111 | ※ | 석유제리 |
| 112 | ※ | 구두약 |
| 113 | ※ | 갈탄왁스 및 기타 광물왁스 |
| 114 | ㎧ | 액체연료(라이터용) |
| 119 | ※ | 기타 왁스 |
| 211 | ※ | 석탄코크스 |
| 212 | ※ | 광물타르 |
| 213 | ※ | 암모니아성 가스용액 및 소모한 산화물 |
| 214 | ※ | 분류카본 |
| 311 | ※ | 콜탈기름 |
| 312 | ※ | 콜탈피치 |
| 313 | ※ | 콜탈피치코크스 |
| 355 | | 고무제품 제조업 |
| 3551 | | 타이어 및 튜브산업 |
| 35511 |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1 | | 타이어 |
| 111 | 천본 | 자동차용 타이어 |
| 112 | 천본 |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
| 113 | 천본 | 자전거용 타이어 |
| 119 | ※ | 기타 공기타이어 |
| 2 | | 튜브 |
| 211 | 천본 | 자동차용 튜브 |
| 212 | 천본 | 모터사이클용 튜브 |
| 213 | 천본 | 자전거용 튜브 |
| 219 | ※ | 기타 공기타이어 튜브 |
| 3 | | 큐션타이어 |
| 311 | 천본 | 차량용 큐션 또는 솔리드고무 타이 어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19 | ※ | 기타 큐션 또는 솔리드고무타이어 부품 |
| 4 | | |
| 411 | 천개 | 타이어케이스 |
| 412 | ※ | 호환성 타이어 바닥 |
| 419 | ※ | 기타 타이어부품 |
| 35512 | | 타이어 재생업 |
| 100 | 본 | 재생공기타이어 |
| 355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제조 업 |
| 35591 | | 고무신 제조업 |
| 111 | 천족 | 고무신 |
| 112 | 천족 | 고무장화 및 우화 |
| 113 | 천족 | 운동화 |
| 200 | ※ | 운동화 부품 |
| 35592 | |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
| 1 | | 비경화 가황고무제품 |
| 111 | ※ | 가황고무사 및 코드 |
| 112 | ※ | 비경화 가황고무 제 1 차제품(판, 봉, 띠, 프로파일 형태) |
| 113 | ㎧ | 비경화 가황고무의 관(고무호스) |
| 114 | ※ | 고무벨트(콘베이어, V형, 평형포 합) |
| 115 | ※ | 고무직물 |
| 116 | ※ | 고무스폰지 |
| 119 | ※ | 기타 비경화 가황고무제품(구입하 여 2 차 가공하는 제품은 35599) |
| 200 | ※ | 재생고무 |
| 35593 | | 위생고무제품 제조업 |
| 111 | ※ | 관장기 |
| 112 | ※ | 고무주머니(산소주머니, 얼음주머 니등) |
| 113 | ※ | 침적기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4 | ※ | 젓꼭지 |
| 115 | 천개 | 피임용 기구 (고무제품) |
| 116 | ※ | 고무의복 |
| 117 | ※ | 고무장갑 |
| 118 | ※ | 고무모자 |
| 119 | ※ |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
| 35594 | |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업 |
| 100 | ※ |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에보나이트 및 벨카나이트 제 1 차 제품 및 동제품 |
| 355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1 | | 비가황 고무제품 |
| 111 | ※ | 판 및 띠 |
| 112 | ※ | 고무혼방직물(튜브, 호스, 타이어 제조용) |
| 113 | ※ | 고무가루 혼합물 |
| 114 | ※ | 마스터베츠 |
| 115 | ※ | 복합천연 또는 합성고무라텍스 |
| 116 | ※ | 비가황용액 또는 분산제 |
| 117 | ※ | 비가황고무관 |
| 118 | ※ | 비가황프로파일 |
| 119 | ※ | 기타 비가황고무제품 |
| 211 | ※ | 고무제 장갑, 인형 |
| 212 | ※ | 고무보트, 부교 및 부유물 |
| 213 | ※ | 비경화 고무의 부스러기 |
| 2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풍선, 고무공, 공기매트리스, 고무베개등) |
| 356 | |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56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35601 | | 제 1 차 플라스틱 제조업 |
| 1 | | 플라스틱 필름 |
| 111 | ※ | 폴리염화비닐(PVC)필름 |
| 112 | ※ | 폴리에틸렌(PE)필름 |
| 113 | ※ | 폴리프로필렌(PP)필름 |
| 114 | ※ | 폴리스티렌(PS)필름 |
| 115 | ※ | 폴리에스티(PET)필름 |
| 119 | ※ | 기타 플라스틱 필름 |
| 2 | | 플라스틱 1 차성형제품 |
| 211 | ※ | 플라스틱 레저 |
| 212 | ※ | 플라스틱 장판 |
| 213 | ※ | 플라스틱 관(파이프) |
| 214 | ※ | 플라스틱 봉 및 프로파일 |
| 215 | ※ | 플라스틱 괴 |
| 216 | ※ | 플라스틱 콘베이어벨트 |
| 217 | ※ | 비닐벽지 |
| 218 | ※ | 재생플라스틱원료(분상, 모모아) |
| 221 | ※ | 플라스틱샷시바(플라스틱샷시문 및 창틀 포함) |
| 229 | ※ | 기타 플라스틱 1 차성형제품 |
| 35602 | |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
| 111 | ※ |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폴 등) |
| 112 | ※ | 산업용 발포성형제품(연질, 경질 포함) |
| 113 | ※ | 플라스틱 스폰지 |
| 35603 | |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 111 | ※ | 플라스틱 기계류부품(내구성, 특 수보강제 첨가)-엔지니어링 프 라스틱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9 | ※ | 기타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FRP) | 900 | ※ | 기타 플라스틱 단순가공품 |
| 35604 | |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356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111 | ※ | 플라스틱 전기전자기계부품 | 100 | ※ | 플라스틱 코팅 및 나이제이팅(식 품포장지 등) |
| 112 | ※ |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 200 | ※ | 플라스틱 의복 |
| 113 | ※ | 플라스틱제 가정기기용 캐비닛(T. V, 전축, 재봉틀, 캐비닛등) | 300 | ※ | 플라스틱 인형 및 장난감 |
| 114 | ※ | 플라스틱 가구 | 9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 |
| 119 | ※ | 기타 플라스틱 산업용기계부품(순 수플라스틱류) | | | |
| 35605 | |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 111 | ※ | 플라스틱 식탁 및 주방용품(식기, 접시, 컵, 칼, 수저등) | | | |
| 112 | ※ | 플라스틱 위생 및 화장용품(세면 기, 목욕통, 비누갑, 쓰레기통 등) | | | |
| 113 | ※ | 플라스틱 단추 | | | |
| 114 | ※ | 플라스틱 장식용품 | | | |
| 119 | ※ | 기타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 | | |
| 35606 | | 플라스틱 성형포장용기 제조업 | | | |
| 111 | ※ | 플라스틱 콘테이너박스(맥주, 콜 라병박스 등) | | | |
| 112 | ※ | 플라스틱 어상자 | | | |
| 113 | ※ | 플라스틱 병, 통, 유사용기 | | | |
| 119 | ※ | 기타 플라스틱 포장용기 | | | |
| 35607 | |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 | | |
| 111 | ※ | 플라스틱 신발 | | | |
| 112 | ※ | 플라스틱 신발부품 | | | |
| 35608 | | 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 | | |
| 100 | ※ | 플라스틱 포대 및 백(압단 또는 접 합한 것 : 봉제한 것은 32141100 에 분류) | | | |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61 | |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3620 |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3610 | |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36201 | | 1차 유리 제조업 |
| 36101 | | 토기 제조업 | 111 | ※ | 유리판 |
| 100 | ※ | 토기제품 | 112 | ※ | 유리괴, 유리구 및 유리봉 |
| 36102 | | 가정용 도자기제품 제조업 | 113 | 상자 | 보통판유리(2mm 9.29㎡기준, 밝은 유리를 말한다) |
| 111 | 천개 | 가정용 도자식기 | 114 | 상자 | 무늬판유리(2mm 9.29㎡기준) (형판유리, 망입판유리, 열선흡 수 유리등 색이 들어있는 유리 를 말한다) |
| 112 | ※ | 가정용 자기제품 | 36202 | | 1차유리 가공품 제조업 |
| 36103 | | 위생도기 제조업 | 111 | ※ | 만곡, 식각 또는 유사가공유리 |
| 111 | 개 | 싱크 | 112 | ※ | 적층 단열유리 (여러겹의 판유리를 공기층으로 분리하고 주위를 금속 또는 인 조수지로 봉하여 만든것) |
| 112 | 개 | 세면기 | 113 | ※ | 거울판 및 유리 |
| 113 | 개 | 대변기 | 114 | ※ | 유리관가공의 유리병(절단 및 열 처리 가공한 것; 압출, 사출 및 기타 성형한 유리병은 36204에 분류) |
| 114 | 개 | 소변기 | 2 | | 안전유리 |
| 115 | 개 | 욕조(프라스틱제품은 35605에) | 211 | 상자 | 강화유리(2mm 9.29㎡기준, 충격에 유리가 작은 단편으로 되도록 강화한 유리) |
| 119 | ※ | 기타 위생도기제품 상기제품은 통상 상수도와 연결 되어 건물에 영구히 고정된 비 품을 말한다. | 212 | 상자 | 적층유리(2mm 9.29㎡기준, 충격시 유리가 조각으로 나지않도록한 유리) |
| 36104 | | 전기·전자용도기제품 제조업 | 900 | ※ | 기타 1차 유리가공품 |
| 111 | 천개 | 고압애자(750~7,000V미만) | 36203 | |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112 | 천개 | 저압애자(750V 미만) | 111 | ※ | 유리건설재료 |
| 113 | 천개 | 특고압애자(7,000V이상) | | | |
| 114 | 천개 | 애관 | | | |
| 119 | ※ | 기타의 도기절연체 및 절연부착물 | | | |
| 36105 | | 이화학 및 산업용 도기제품 제조업 | | | |
| 111 | ※ | 도기포장용기 | | | |
| 119 | ※ | 기타 도기이화학 및 산업용용기 | | | |
| 36106 | |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 | | |
| 100 | ※ | 도기장식품(도기완구 포함) | | | |
| 361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 제조업 | | | |
| 100 | ※ | 기타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 | | | |
| 362 |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2 | ※ | 다세포성유리 (다세포성 또는 기포유리의 블 록, 판, 슬라브등으로 빛, 열 및 소리단절용에 쓰인다) | 36207 | |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 제조업 |
| 2 | | 전구, 전자관 및 유사 유리구 | 111 | ※ | 유리섬유 |
| 211 | 천개 | 부라운관용유리(부착물이 침 부 되어 있는 것은 T.V 브라운관 반제품 (38341115)으로 분류) | 112 | ※ | 유리섬유제품(유리직물 및 직물제 품 유리방사는 제외) |
| 212 | kℓ | 보온병속유리 | 3620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
| 213 | ※ | 전구용유리 (백열전구는 38392111에 분류) | 100 | ※ | 유리구슬, 모조전주, 모조키석 및 유사제품 |
| 214 | ※ | 시계유리 | 900 | ※ | 기타 유리제품 |
| 219 | ※ | 기타 전자관용유리 | 369 |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300 | ※ | 이화학, 위생 및 약제용 유리제품 | 3691 | |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
| 900 | ※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 36911 | | 벽돌 제조업 |
| 36204 |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 | 콘크리트벽돌은 36934112에 분류 |
| 111 | ※ | 유리술병 | 111 | 천매 | 오지벽돌 |
| 112 | ※ | 유리음료수병 | 112 | 천매 | 보통벽돌(점토제품) |
| 113 | ※ | 유리식료품병 | 36912 | | 기와 제조업 |
| 114 | ※ | 유리약병 | 100 | 천매 | 기와 |
| 115 | ※ | 유리화장품병 | 36913 | | 벽타일 제조업 |
| 119 | ※ | 기타 포장용 유리용기 | 111 | 천㎡ | 타일 |
| 36205 | | 광학유리 제조업 | 112 | ※ | 판석 |
| 111 | ※ | 광택유리 및 생지 (미가공 광학유리, 생지 및 요 소) | 369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
| 112 | ※ | 비광학유리 - 교정안경렌즈 생지 | 100 | ※ | 기타 구조점토제품 |
| 36206 |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3692 | |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
| 111 | 천개 | 유리식기 | 36921 | | 시멘트 제조업 |
| 112 | ※ | 유리주방용품(유리식기제외) | 111 | ※ | 보통시멘트 |
| 113 | ※ | 유리문구용품(유리제떨이 포함) | 112 | ※ | 백색시멘트 |
| 114 | ※ | 장식용유리제품(조명부착물 포함) | 113 | ※ | 고로시멘트 |
| | | | 114 | ※ | 알루미나시멘트 |
| | | | 115 | ※ | 팽창시멘트 |
| | | | 116 | ※ | 지열시멘트 |
| | | | 119 | ※ | 기타 특수시멘트(치과용시멘트는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200 | 천% | 3851에 분류) 시멘트크링커 |
| 36922 | | 석회 제조업 |
| 111 | % | 생석회 |
| 112 | % | 소석회 |
| 113 | % | 수경성석회 |
| 36923 | | 프라스터 제조업 |
| 100 | % | 프라스터(석고) |
| 3693 |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 36931 | | 건축용 섬유시멘트제품 및 유사제 품 제조업 |
| 1 | | 석면, 시멘트제품 또는 셀룰로오 스 시멘트제품 |
| 111 | 천m ² | 석면슬레이트(천연슬레이트는 29011에 분류) |
| 112 | ※ | 기타 판 및 타일 |
| 113 | ※ | 주형제품(둥, 향아리, 파이프, 도 관, 굴뚝등) |
| 2 | | 유사건축재료 |
| 211 | ※ | 식물성 건물재료 |
| 212 | ※ | 프라스터 판 및 타일 |
| 219 | ※ | 기타 프라스터제품 |
| 36932 | | 레미콘 제조업 |
| 100 | 천m ³ | 레미콘 |
| 36933 | | 기포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 100 | ※ | 기포콘크리트제품(다공질) |
| 36934 | | 콘크리트 기와, 벽돌 및 브록 제조 업 |
| 111 | 천매 | 콘크리트 기와 |
| 112 | 천매 | 콘크리트 벽돌 |
| 113 | 천매 | 콘크리트 브록 |
| 114 | 천매 | 콘크리트 판석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9 | ※ | 기타 콘크리트벽돌, 기와, 브록 및 인관제품 |
| 36935 | |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 제품 제조업 |
| 1 | |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
| 111 | ※ | 벽면 |
| 112 | ※ | 문틀 |
| 113 | ※ | 조립위생용기 |
| 119 | ※ | 기타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
| 2 | | 철강보강 콘크리트 제품 |
| 211 | 본 | 흙관 |
| 212 | 본 | 콘크리트 전주 |
| 213 | 본 | 콘크리트 침목 |
| 214 | 본 | 콘크리트 파일 |
| 219 | ※ | 기타 콘크리트 철강보강 제품(하 수구맨홀, 빔, 봉등) |
| 369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 111 | 본 | 콘크리트 관(철강보강하지 않은 것) |
| 119 | ※ | 기타 콘크리트제품(화분, 장식품, 생활용품등) |
| 3694 | | 내화물 제조업 |
| 36941 | | 내화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111 | % | 내화용 벽돌 |
| 112 | % | 내화용 블록 |
| 113 | % | 내화용 타일 |
| 114 | % | 내화용 판 |
| 119 | ※ | 기타 내화 벽돌 및 유사제품 |
| 36942 | | 내화도가니 제조업 |
| 100 | % | 내화도가니(흑연, 탄소, 기타 도 가니)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6943 | | 내화물용 원료 제조업 | 114 | ㎏ | 규석분 |
| 100 | ㎏ | 내화물용 원료(고령질사모트, 마그네시아크링카, 물라이트등) | 115 | ㎏ | 흑연분 |
| 369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화물 제조업 | 119 | ※ | 기타 비금속광물분쇄제품 |
| 111 | ㎏ | 몰탈 | 369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12 | ㎏ | 내화용 시멘트 | 111 | ※ | 가공운모 및 제품 |
| 119 | ※ | 기타 부정형 내화물 | 112 | ※ | 인조보석(원재료상태의 것) |
| 36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성광물제품 제조업 | 113 | ※ | 흑연제품(내화물은 제외) |
| 36991 | | 석면제품 제조업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 품 |
| 111 | ※ | 석면혼합물 | 200 | ※ | 토사석 가공처리서비스 |
| 112 | kg | 방적석면(석면사 및 직물) | | | |
| 119 | ※ | 기타 석면제품 | | | |
| 36992 | | 암면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 |
| 111 | kg | 암면(석면 제외) | | | |
| 112 | ※ | 암면제품 | | | |
| 119 | ※ | 기타 광물성 절연제품 | | | |
| 36993 | | 연마재 제조업 | | | |
| 111 | ㎏ | 연마휠 | | | |
| 112 | ※ | 저석 | | | |
| 113 | m ² | 연마지 및 포 | | | |
| 119 | ※ | 기타 연마재 | | | |
| 36994 | | 석제품 제조업 | | | |
| 111 | ㎏ | 기념비석 | | | |
| 112 | ㎏ | 건물석 | | | |
| 113 | ㎏ | 포장석 | | | |
| 114 | ㎏ | 가공판석 | | | |
| 119 | ※ | 기타 석제품 | | | |
| 36995 | |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 | | |
| 111 | ㎏ | 석필 | | | |
| 112 | ㎏ | 환석분 | | | |
| 113 | ㎏ | 장석분 | | | |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산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71 | | 철강산업 | 323 | ㎍ | 블룸-합금강 |
| 3711 | | 제철 및 제강업 | 331 | ㎍ | 빌렛-보통강 |
| 37111 | | 제철업 | 332 | ㎍ | 빌렛-고탄소강 |
| 111 | ㎍ | 제강용 선철 | 333 | ㎍ | 빌렛-합금강 |
| 112 | ㎍ | 주물용 선철 | 341 | ㎍ | 쉬이트바-보통강 |
| 37112 | | 합금철강 제조업 | 342 | ㎍ | 쉬이트바-고탄소강 |
| 111 | ㎍ | 망간철 | 343 | ㎍ | 쉬이트바-합금강 |
| 112 | ㎍ | 규소철 | 371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
| 113 | ㎍ | 크롬철 | 111 | ㎍ | 해면철 |
| 114 | ㎍ | 몰리브덴늄철 | 112 | ㎍ | 철강분 |
| 115 | ㎍ | 니켈철 | 119 | ※ | 슬래그, 드로스, 스킨링 및 유사재료 |
| 116 | ㎍ | 규소-망간철 | 3712 | |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 제조업 |
| 117 | ㎍ | 티타늄철 | 37121 | | 열간 압연업 |
| 118 | ㎍ | 텅스텐철 | 111 | ㎍ | 대형봉강-보통강(직경100mm이상) |
| 119 | ㎍ | 기타 합금철 | 112 | ㎍ | 중형봉강-보통강(직경50~100mm미만) |
| 200 | ㎍ | 경철 | 113 | ㎍ | 소형봉강-보통강(직경50mm미만) |
| 37113 | | 제강업 | 121 | ㎍ | 봉강-고탄소강 |
| 111 | ㎍ | 강괴-보통 압연용 강괴 | 122 | ㎍ | 봉강-합금강 |
| 112 | ㎍ | 강괴-고탄소강 압연용 강괴 | 131 | ㎍ | 이형철근 |
| 113 | ㎍ | 강괴-합금강 압연용 강괴 | 132 | ㎍ | 원형철근 |
| 121 | ㎍ | 강괴-보통 단조용 강괴 | 211 | ㎍ | 대형형강-보통강(1면의 폭 100mm 이상) |
| 122 | ㎍ | 강괴-고탄소강 단조용 강괴 | 212 | ㎍ | 중형형강-보통강(1면의 폭 50~100mm) |
| 123 | ㎍ | 강괴-합금강 단조용 강괴 | 213 | ㎍ | 소형형강-보통강(1면의 폭 50mm 미만) |
| 211 | ㎍ | 주강, 주입강-보통강 | 221 | ㎍ | 형강-고탄소강 |
| 212 | ㎍ | 주강, 주입강-고탄소강 | 222 | ㎍ | 형강-합금강 |
| 213 | ㎍ | 주강, 주입강-합금강 | 231 | ㎍ | 강시판 |
| 219 | ㎍ | 블록, 펌프 및 철강의 깨진 조각 | | | |
| 311 | ㎍ | 슬라브-보통강 | | | |
| 312 | ㎍ | 슬라브-고탄소강 | | | |
| 313 | ㎍ | 슬라브-합금강 | | | |
| 321 | ㎍ | 블룸-보통강 | | | |
| 322 | ㎍ | 블룸-고탄소강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232 | ㄱ | 간이 강시판 | 512 | ㄱ | 냉연광폭대강-고탄소강 |
| 311 | ㄱ | 후판-보통강(두께4.75mm이상) | 513 | ㄱ | 냉연광폭대강-합금강 |
| 312 | ㄱ | 후판-고탄소강 | 611 | ㄱ | 냉연협폭대강-보통강 |
| 313 | ㄱ | 후판-합금강 | 612 | ㄱ | 냉연협폭대강-고탄소강 |
| 321 | ㄱ | 중판-보통강(두께3.0~4.75mm) | 613 | ㄱ | 냉연협폭대강-합금강 |
| 322 | ㄱ | 중판-고탄소강 | 37123 | | 강관 제조업 |
| 323 | ㄱ | 중판-합금강 | 111 | ㄱ | 무계목강관 |
| 331 | ㄱ | 열연박판-보통강(두께3.0mm미만) | 112 | ㄱ | 전기용접강관 |
| 332 | ㄱ | 열연박판-고탄소강 | 113 | ㄱ | 단접강관 |
| 333 | ㄱ | 열연박판-합금강 | 114 | ㄱ | 아크용접강관 |
| 411 | ㄱ | 열연전기 강판 | 115 | ㄱ | 리벳트관 |
| 511 | ㄱ | 열연광폭대강-보통강(폭500mm이상) | 116 | ㄱ | 관 부착물 |
| 512 | ㄱ | 열연광폭대강-고탄소강 | 37124 | | 철강 연신업 |
| 513 | ㄱ | 열연광폭대강-합금강 | 111 | ㄱ | 선재-보통강 |
| 611 | ㄱ | 열연협폭대강-보통강(폭500mm미만) | 112 | ㄱ | 선재-고탄소강 |
| 612 | ㄱ | 열연협폭대강 - 고탄소강 | 113 | ㄱ | 선재-합금강 |
| 613 | ㄱ | 열연협폭대강-합금강 | 211 | ㄱ | 흑철선 |
| 711 | ㄱ | 중케조(30kg/m이상) | 212 | ㄱ | 아연도철선 |
| 712 | ㄱ | 경케조(30kg/m미만) | 213 | ㄱ | 경강선 |
| 713 | ㄱ | 케조자재 | 214 | ㄱ | PC강선 |
| 37122 | | 냉간 압연업 | 215 | ㄱ | 피아노선 |
| 111 | ㄱ | 냉연박판-보통강 | 216 | ㄱ | 스텐레스선 |
| 112 | ㄱ | 냉연박판-고탄소강 | 311 | ㄱ | 울타리 철선 |
| 113 | ㄱ | 냉연박판-합금강 | 312 | ㄱ | 쇠못(직접 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쇠못을 제조하는 경우) |
| 211 | ㄱ | 유니버설판-보통강 | 313 | ㄱ | 스파이크 및 리베트 |
| 212 | ㄱ | 유니버설판-고탄소강 | 314 | ㄱ | 스프링 생지 |
| 213 | ㄱ | 유니버설판-합금강 | 315 | ㄱ | 와이어로프(직접 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하는 경우) |
| 311 | ㄱ | 스텐레스 강판 | 371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 제조업 |
| 411 | ㄱ | 냉연전기 강판 | | | |
| 511 | ㄱ | 냉연광폭대강-보통강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00 | ※ | 철강선 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
| 3713 | | 주조업 |
| 37131 | | 주철강관 제조업 |
| 111 | ※ | 직관 |
| 112 | ※ | 원심주조 회주철관 |
| 113 | ※ | 원심주조 구상흑연주철관 |
| 114 | ※ | 사형주철관 |
| 121 | ※ | 이형관 |
| 37132 | | 선철(회)주물 제조업 |
| 100 | ※ | 회주물(탄소함량3.4% 이상) |
| 37133 | | 강주물 제조업 |
| 111 | ※ | 강주물 |
| 112 | ※ | 합금강주물 |
| 37134 | | 가단주철 제조업 |
| 111 | ※ | 가단주물(망간0.2%~0.5%함유) |
| 112 | ※ | 구상흑연주물(다량의 마그네슘 함유) |
| 371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조업 |
| 1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물 |
| 37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산업 |
| 37191 | | 단조업 |
| 111 | ※ | 단조물-보통강 |
| 112 | ※ | 단조물-고탄소강 |
| 113 | ※ | 단조물-합금강 |
| 37192 | | 표면처리강 제조업 |
| 111 | ※ | 석도강판-전기도금 |
| 112 | ※ | 석도강판-열지도금 |
| 211 | ※ | 아연도강판-전기도금 |
| 212 | ※ | 아연도강판-열지도금 |
| 213 | ※ | 아연도강판-착색도금 |
| 311 | ※ | 철강판-알루미늄도금 |
| 312 | ※ | 철강판-크롬도금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13 | ※ | 철강판-니켈도금 |
| 314 | ※ | 철강판-동도금 |
| 315 | ※ | 철강판-연도금 |
| 316 | ※ | 철강판-인조산화 |
| 319 | ※ | 달리 분류되지않은 금속도금 철 강판 |
| 411 | ※ | 철강판-페인트도포 |
| 412 | ※ | 철강판-인조수지도포 |
| 419 | ※ | 기타 비금속도금 철강판 |
| 511 | ※ | 골판(도금하지 않은것) |
| 512 | ※ | 표면처리강판 |
| 519 | ※ | 기타 가공 철강판 |
| 37199 | |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 |
| 111 | ※ | 철강 분쇄물 |
| 119 | ※ | 달리 분류되지않은 철강제품 |
| 372 | | 비철금속산업 |
| 3721 |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37211 | |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111 | ※ | 동매트 |
| 112 | ※ | 브리스타동(조동) |
| 113 | ※ | 시멘트 동(침전동) |
| 114 | ※ | 정련동(전기동) |
| 119 | ※ | 동쇼트 및 기타 동 1차제품 |
| 37212 | |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100 | ※ | 미가공 알루미늄(알루미늄괴) |
| 37213 | |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100 | ※ | 미가공연(연괴) |
| 37214 | |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100 | ※ | 미가공아연(아연괴) |
| 37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1 차 제련 및 정련업 |
| 111 | ※ | 미가공니켈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211 | ㎥ | 미가공주석 | 211 | kg |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 311 | ㎥ | 미가공중석 | 212 | kg | 베릴륨 |
| 411 | kg | 은(은괴) | 213 | kg | 몰리브덴 |
| 511 | kg | 금(금괴) | 214 | kg | 탄타륨 및 탄타륨 합금 |
| 611 | kg | 백금 및 백금관련 금속 | 215 | kg | U235로 수축한 우라늄 및 토륨과 합금 |
| 900 | ※ | 달리 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제 1 차 제련 및 정련제품 | 219 | ※ | 기타 비철금속 제련제품 |
| 3722 | | 비철금속 제 2차 제련 및 정련업 | 319 | ※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잔여물 |
| 37221 | | 동 2차 제련 및 정련업 | 3723 | |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
| 111 | ※ | 동마스터 합금(신주, 도금 등) | 37231 | | 신동품 제조업 |
| 112 | ※ | 동 정련제 및 잔여물 | 111 | ㎥ | 동봉 및 형강 |
| 37222 | | 알루미늄 제 2차 제련 및 정련업 | 112 | ㎥ | 동선 |
| 111 | ㎥ | 알루미늄 합금(양은, 양백 포함) | 113 | ㎥ | 동판 및 띠 |
| 112 | ※ | 알루미늄 정련 잔여물 | 114 | ㎥ | 동판 및 증공봉 |
| 37223 | | 연 제 2차 제련 및 정련업 | 115 | ㎥ | 동관 부착물 |
| 111 | ㎥ | 미가공 연 합금 | 116 | ㎥ | 동분 및 편 |
| 112 | ※ | 연제련 잔여물 | 37232 | |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
| 37224 | | 아연 제 2차 제련 및 정련업 | 111 | ㎥ | 알루미늄 봉 |
| 111 | ㎥ | 아연합금 | 112 | ㎥ | 알루미늄 선 |
| 112 | ㎥ | 아연분 | 113 | ㎥ | 알루미늄판, 띠 및 박 |
| 113 | ※ | 아연제련 잔여물 | 114 | ㎥ | 알루미늄판 및 증공봉 |
| 372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 2 차 제련 및 정련업 | 115 | ㎥ | 알루미늄 부착물 |
| 111 | kg | 니켈합금 | 116 | ㎥ | 알루미늄 샷시바(알루미늄 샷시바 를 구입하여 문·창틀등을 제조 할때는 38131112로 분류) |
| 112 | ※ | 니켈정련 잔여물 | 119 | ㎥ | 알루미늄분 및 편 |
| 113 | ※ | 니켈매트, 니켈스페이스 및 기타 중간제품 | 372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
| 121 | kg | 주석제련 잔여물 | 111 | ㎥ | 니켈봉, 형강 및 선 |
| 131 | ※ | 중석정련 잔여물 | 112 | ㎥ | 니켈판 및 띠, 분, 편 |
| 141 | kg | 은 입힌 금속 | 113 | ㎥ | 니켈판 및 팔 부착물 |
| 151 | kg | 금 입힌 금속 | 211 | ㎥ | 연봉, 형강 및 선 |
| 161 | kg | 백금 입힌 금속 | | | |

| 분 류 번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류 번 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212 | ※ | 연관, 띠, 분 및 편 | 700 | ※ | 텅스텐 제조제품 |
| 213 | ※ | 연관 및 관 부착물 | | | |
| 311 | ※ | 아연봉, 형강 및 선 | | | |
| 312 | ※ | 아연관, 띠, 분 및 편 | | | |
| 313 | ※ | 아연관 및 광 부착물 | | | |
| 411 | kg | 주석봉, 형강 및 선 | | | |
| 412 | kg | 주석관, 띠, 분 및 편 | | | |
| 413 | kg | 주석관 및 관 부착물 | | | |
| 511 | ※ | 중석봉, 형강 및 선 | | | |
| 512 | ※ | 중석관, 띠 및 분 | | | |
| 900 | ※ | 기타 비철금속압연 및 압출제품 | | | |
| 3724 | | 비철금속 주조 및 단조업 | | | |
| 37241 | | 비철금속 주조업 | | | |
| 111 | kg | 동주물 | | | |
| 112 | kg | 알루미늄주물 | | | |
| 119 | ※ | 기타 비철금속 주물제품 | | | |
| 37242 | | 비철금속 단조업 | | | |
| 111 | kg | 동단조물 | | | |
| 112 | kg | 알루미늄 단조물 | | | |
| 119 | ※ | 기타 비철금속 단조제품 | | | |
| 37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산업 | | | |
| 3729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산업 | | | |
| 111 | ※ | 동 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품 | | | |
| 112 | ※ | 동못 및 유사제품 | | | |
| 211 | ※ | 알루미늄 케이블, 로프 및 유사제 품 | | | |
| 212 | ※ | 알루미늄 못 및 유사제품 | | | |
| 311 | kg | 니켈 전기도금 양극봉 | | | |
| 312 | kg | 니켈 못 및 유사제품 | | | |
| 400 | ※ | 연금속 제조제품 | | | |
| 500 | ※ | 아연금속 제조제품 | | | |
| 600 | ※ | 주석금속 제조제품 | | |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분류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81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 121 | 천개 | 해머 |
| | | | 122 | 천개 | 드릴 |
| 3811 | |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 123 | 천개 | 태핑 및 나사공구 |
| 38111 | |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 129 | ※ | 기타 수공구 |
| 100 | ※ | 금속제 식탁용품 수저, 나이프, 포크, 식탁용 칼, 기타 금속제 식탁용품 (귀금속 도금제품은 39010에 분류) | 38114 | |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
| 38112 | | 날붙이 제조업 | 111 | 천개 | 삽 |
| 111 | 천개 | 주방용 칼(식탁용제외) | 112 | 천개 | 곡괭이 및 괭이 |
| 112 | 천개 | 주머니 칼(포켓 나이프) | 119 | ※ | 기타 농업용 수공구 (호미, 포크, 도끼, 작두, 낫, 전지기등) |
| 113 | 천개 | 칼날(문방구용 칼날 포함) | 38115 | |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 제조업 |
| 114 | 천개 | 가위 | 111 | 대 | 분쇄기 및 마쇄기 |
| 115 | ※ | 면도칼 | 112 | 대 | 추출기 및 압축기 |
| 116 | 천개 | 이발기 | 113 | 대 | 비터 및 믹서 |
| 117 | 천개 | 손톱깎기 | 114 | ※ | 민서, 세절기 및 컷터 |
| 118 | 천개 | 안전면도날(비전기식 : 전기식은 38335에 분류) | 115 | ※ | 봉합용 기구 |
| 119 | ※ | 기타 날붙이(공예용 조각칼, 연필 깎기용 칼, 군용칼, 칼집등) | 119 | ※ | 기타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 |
| 38113 | |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은 제외 | 121 | ※ | 가정용 식품 가공기기의 칼날 |
| 111 | 천개 | 프라이어, 팬저, 핀서, 양철가위 및 유사제품 | 38116 | | 톱 및 톱날 제조업 |
| 112 | 개 | 천공편치 | 111 | 천개 | 톱-나무용 |
| 113 | 천개 | 파이프 절단기 | 112 | 천개 | 톱-금속용 |
| 114 | 천개 | 스패너 및 렌치 | 113 | 천개 | 톱-석재용 |
| 115 | 천개 | 줄칼 | 114 | 천개 | 톱-시계 및 보석가공용 |
| 116 | 천개 | 유리칼 | 119 | ※ | 기타 톱 |
| 117 | 천개 | 모루 | 121 | 천개 | 톱날 |
| 118 | 천개 | 바이스 및 크램프 | 122 | 천개 | 체인 톱 |
| | | | 38117 | | 일반철물 제조업 |
| | | | 111 | ※ | 건물용 철물(문, 창문, 섯터등의 부착물) |
| | | | 112 | ※ | 가구용 철물 |
| | | | 113 | ※ | 차량용 철물 |
| | | | 114 | ※ | 가방부착용 철물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9 | ※ | 기타 철물 | 117 | 대 | 금속침대 |
| 381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붙이, 수공 구 및 철물 제조업 | 118 | ※ | 기타 금속제가구 및 부속품 |
| 1 | | 가정용 공구성격의 기기 | 119 | ※ | 금속가구 부품(가구용 철물은 38117) |
| 111 | 천개 | 다리미-비전기식 전기다리미는 38334913에 분류 | 38122 | | 금속 장치물 제조업 |
| 112 | 천개 | 연탄집게 | 111 | ※ | 금속제 사무실 및 상점장치물 (금속제장치용 캐비닛, 보관함 및 유사 철판비품, 금속제 칸막 이, 선반, 계산대등) |
| 119 | ※ | 기타 가정용 수공구성격의 기기 (인두, 병 또는 강통따개, 구두 솔 포함) | 112 | ※ | 금속제 조명장치 부착물 |
| 2 | | 소형 기계장치 | 113 | ※ | 금속제 그림틀 및 사진틀 |
| 211 | 개 | 이동식 풀무 | 114 | ※ | 금속제 공공용 장치물(공중전화 대, 휴지통) |
| 212 | 개 | 그라인더 | 119 | ※ | 기타 금속장치물 및 부품 |
| 213 | 개 | 토오치 램프 | 3813 |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 214 | 개 | 수동식가스 용접기 | 38131 | |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15 | 개 | 소형 잭 | 1 | | 금속제 문, 샷시, 틀, 형 및 장식 물 (알루미늄샷시바는 37232에 분 류) |
| 216 | 개 | 납땀인두(수 동식, 전열식 포함) | 111 | ※ | 문-건물용 |
| 217 | 개 | 구리스 주입기 | 112 | ※ | 샷시문 및 창틀 |
| 218 | 개 | 스프링조작 스테이플링 피스틀 | 113 | ※ | 샷터-건물용 |
| 221 | 개 | 카트리지 조작 리벳터 | 114 | ※ | 철제 수문 |
| 222 | 개 | 수동식 벽돌 및 브로크 제조기 | 119 | ※ | 기타의 철문 및 관련제품 |
| 229 | ※ | 기타 소형 기계장치 | 38132 | | 건축용 장식 금속공작물 제조업 |
| 300 | 개 | 호환성 공구(수공구용) | 100 | ※ | 건축용 장식금속 공작물 (울타리, 말뚝, 발코니, 베 란 다, 쇠살대계단 난간 및 화재비 상구 및 유사장식품) |
| 400 | 천개 | 자물쇠 및 열쇠 | 38133 | |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업 |
| 3812 | |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 100 | ※ | 구조용 금속판제품 |
| 38121 | | 금속가구 제조업 | | | |
| 111 | 개 | 금속제 캐비닛 | | | |
| 112 | 천개 | 금속제 책상 | | | |
| 113 | 천개 | 금속제 의자 | | | |
| 114 | 천개 | 금속제 서가 | | | |
| 115 | ※ | 캠핑가구 | | | |
| 116 | ※ | 정원가구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 | (금속지붕, 물흡통, 환기용 철판제품(덕트 포함), 채광장, 이차고등 철조립제품) | 211 | 개 |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
| 38134 | |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12 | 개 |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기계장치 부착된 것) |
| | | (난방용 온수보일러, 저압증기보일러 및 관련제품은 38194에 분류) | 381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 1 | | 동력 및 선박용 보일러(산업용) | 100 | ※ | 철도궤도 및 부착물 |
| 111 | 대 | 증기발생 보일러 | 3814 | | 금속압단제조,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
| 112 | 대 | 대형 온수보일러(슈퍼히터워터형) | 38141 |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2 | | 기타 보일러 및 관련제품 | 100 | ※ | 분말야금제품 |
| 211 | ※ | 핵 반응기 | 38142 | | 금속압단제품 제조업(조립제품은 38192로) |
| 212 | 대 | 열 교환기 | 1 | | 알루미늄제 가정용 제품 |
| 213 | 대 | 먼지 추출기 | 111 | 천개 | 숯 |
| 214 | 대 | 사이클론 | 112 | 천개 | 남비 |
| 215 | 대 | 가스 세정기 또는 흡수탑 | 113 | 천개 | 주전자 |
| 216 | 대 | 액체 및 가스여과용 정치식 장치 | 114 | 천개 | 도시락 |
| 217 | 대 | 집진장치 | 115 | 천개 | 식기 |
| 2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일러 및 관련제품 | 116 | 천개 | 커피포트(비전기식) |
| 300 | ※ | 보일러실 보조장치 | 119 | ※ | 기타 알루미늄 가정용제품 |
| 38135 | | 금속구조제 제조업 | 2 | | 스텐레스제 가정용제품 |
| 111 | ※ | 조립금속의 건물 | 211 | 천개 | 숯 |
| 112 | ※ | 육상금속구조물(교량, 굴뚝, 철탑 등) | 212 | 천개 | 남비 |
| 113 | ※ | 해상금속구조물(파이프라인, 자켓, 모우들 포함) | 213 | 천개 | 주전자 |
| 200 | ※ | 금속구조물 부품 | 214 | 천개 | 도시락 |
| 38136 | | 금속탱크 및 용기 제조업 | 215 | 천개 | 식기 |
| 100 | 개 | 압축, 액화가스 저장 및 운반용 용기 | 216 | 천개 | 커피포트(비전기식) |
| 2 | | 탱크 및 유사금속용기 | 219 | ※ | 기타 스텐레스 가정용제품 |
| | | | 3 | | 산업용 제품 |
| | | | 311 | 천개 | 병마개 |
| | | | 312 | ※ | 자동차 부분품 |
| | | | 313 | ※ | 기계부분품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14 | ※ | 각종 부착물(압단제품) |
| 319 | ※ | 기타 산업용품 및 관련업 |
| 38143 | | 금속열처리업 |
| 100 | ※ | 금속열처리업 |
| 38144 | | 도금업 |
| 100 | ※ | 도금업 |
| 381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열처리표면처리업 |
| 100 | ※ | 금속전해 연마업 |
| 200 | ※ | 금속표면정리 및 인쇄업 |
| 300 | ※ | 기타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금속식각, 조각, 나사눈금내기 등) |
| 38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 |
| 38191 | |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
| 1 | | 금속 캔 |
| 111 | 천개 | 통조림관(식관을 말함) |
| 112 | 천개 | 미술관(잡관을 말함) |
| 119 | ※ | 기타의 금속 캔 |
| 2 | | 수송용 금속 바렐, 드럼, 케크 및 <u>페일</u> |
| 211 | 천개 | 드럼관 |
| 212 | 개 | 컨테이너(수출상품의 보관 및 운반 용등으로 사용) |
| 219 | ※ | 기타의 금속 바렐, 드럼, 케크 및 페일 |
| 300 | ※ | 연성관(치약, 연고등의 튜우브) |
| 900 | ※ | 기타 금속 포장용기 |
| 38192 | | 금속가정용품 제조업(조립제품만 해당, 압단제품은 38142로) |
| 1 | | 법랑제 가정용품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1 | 천개 | 법랑제 냄비 |
| 112 | 천개 | 법랑제 프라이팬 |
| 113 | 천개 | 법랑제 스텐팬 |
| 114 | 천개 | 법랑제 식기 |
| 119 | ※ | 기타 법랑제 가정용집기 |
| 2 | | 금속 가정용품 |
| 211 | 천개 | 보온병 |
| 212 | 천개 | 보온 도시락 |
| 213 | 대 | 쌀통 |
| 214 | ※ | 식품저장용기(가정용) |
| 215 | ※ | 철선조립품(석쇠, 튀김틀 등) |
| 219 | ※ | 기타 금속가정용 조립제품 |
| 38193 | | 금속제 위생용품 제조업 |
| 1 | | 법랑제 위생용품 |
| 111 | 천개 | 싱크 |
| 112 | 천개 | 목욕통(욕조) |
| 113 | 천개 | 세면기 |
| 119 | ※ | 기타 법랑제 위생용품 |
| 2 | | 스텐레스제 위생용품 |
| 211 | 천개 | 싱크 |
| 212 | 천개 | 목욕통 |
| 219 | ※ | 기타 스텐레스제 위생용품 |
| 300 | ※ | 기타 금속제 위생용품(알루미늄제 등) |
| 900 | ※ | 연관 부착물 및 장식물 스프링클러, 수세식 프레쉬발 브, 샤워어스틀롯드, 잔디호스 노즐 등 |
| 38194 | | 난방용구 제조업 |
| 1 | | 난방용 보일러 및 관련장비 |
| 111 | 대 | 기름 보일러 |
| 112 | 대 | 구공탄 보일러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3 | 대 | 기타 보일러(가스, 크레놀탄등) | 200 | ※ | 금고 부품 |
| 114 | 대 | 방열기(라디에타), (연소기 부착은 제외) | 38198 | | 발브 및 파이프 가공품 제조업 |
| 119 | ※ | 보일러 부품(관련제품) | 1 | | 일반용 발브(고온고압용 및 자동 조절발브 제외) |
| 2 | | 난로 및 기타 난방기 | 111 | ※ | 스텐레스제 발브 |
| 211 | 대 | 석탄난로 | 112 | ※ | 주강제 발브 |
| 212 | 대 | 석유난로(석유콘로는 38265) | 113 | ※ | 단강제 발브 |
| 213 | 대 | 가스난로(가스레인지는 38265) | 114 | ※ | 주철제 발브 |
| 214 | 대 | 방열기(연소기 부착된 것) | 115 | ※ | 청동제 발브 |
| 215 | 대 | 바너 | 2 | | 특수발브 |
| 216 | 대 | 히터 | 211 | ※ | 고온고압용 발브 |
| 219 | ※ | 기타 난로 및 부품 | 212 | ※ | 자동조절용 발브 |
| 38195 | | 나사제품 제조업 | 219 | ※ | 기타 발브(급배수용 수도꼭지등) |
| 111 | ※ | 볼트 및 너트 | 300 | ※ | 금속관 이음쇠 |
| 112 | ※ | 나사못 | 381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
| 113 | ※ | 리베트 | 1 | | 스프링(선스프링 제외) |
| 114 | ※ | 와셔 및 산업용 파스너 | 111 | ※ | 코일(나선형)스프링(자동차 및 철 도차량용) |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사제품 | 112 | ※ | 잎(판상)스프링(자동차 및 철도차 량용) |
| 38196 | | 철선제품 | 119 | ※ | 기타 스프링(와형 및 봉스프링 포 함) |
| 111 | ※ | 망(철망) | 2 | | 체인 및 그 부품 |
| 112 | ※ | 선 스프링 | 211 | ※ | 연계체인 |
| 113 | ※ | 와이어 로프 (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하는 경우) | 219 | ※ | 기타 체인 |
| 114 | ※ | 쇠못(철정) (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쇠못을 제조하는 경우) | 9 | | 기타 조립금속제품 |
| 115 | ※ | 철조망 | 911 | 개 | 등 |
| 119 | ※ | 기타 비금속의 선제품 | 912 | ※ | 용접봉 |
| 38197 | | 금고 제조업 | 9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조명부착물, 서류부착물, 종이 크립, 유사 비철금속의 문구용품, |
| 100 | 개 | 금고(어린이저금통은 38199에 분 류)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 | 모조장신구슬, 비철금속의 거울, 장식못, 말발굽, 통띠, 울타리 지주 등 | 211 | 대 | 탈곡기(인력 및 동력식 포함) |
| 382 | |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 212 | 대 | 청정, 체질 및 선별용 기계 |
| 3821 | |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 219 | ※ | 기타 수확용 기계 |
| 38211 | | 내연기관 제조업 | 3 | | 자체 추진식 농업용 기계, 분무기 및 트랙터 제외 |
| 100 | 대 | 내연기관(압축 및 불꽃점화기관) 자동차용은 38432, 선박용은 38411, 기관차용은 38423, 항공 기는 38452에 분류 | 311 | 대 | 경운기 |
| 38212 | |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 312 | 대 | 농업용 트랙터 |
| 100 | 대 | 증기기관 | 313 | 대 | 이앙기 |
| 200 | 대 | 증기터어빈 | 314 | 대 | 바인다 |
| 300 | 대 | 가스터어빈(항공기용 제외 : 38452) | 315 | 대 | 콤바인 |
| 400 | 대 | 수력터어빈 | 319 | ※ | 기타 자체 추진식 농업용 기계 기타 농업용 기계 |
| 382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어 빈 제조업 | 4 | | |
| | | (운수 장비 동력용 기관은 384에 분류) | 411 | 대 | 농업용 동력분무기(산업용 분무기 는 38299100에, 인력분무기는 38114119에 분류) |
| 111 | 대 |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 기관 | 412 | 개 | 탈수장치 |
| 112 | 대 | 스프링 및 추조작 모우터 | 413 | 대 | 농장콘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
| 119 | ※ | 기타 기관 및 부품 | 414 | 대 | 마초가공용 기계 및 기기 |
| 3822 |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15 | 대 | 제송기(새끼틀), 입직기(가마니 틀)포함. |
| 38220 |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16 | 대 | 과실 및 기타 선별기 (달걀선별기는 제외) |
| 1 | | 경작용 기계, 비추진식 | 417 | 대 | 예취기 및 채초기 |
| 111 | 개 | 쟁기 | 418 | 대 | 착유기(우유채취용) |
| 112 | 개 | 씨래 | 4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용 기계 및 장비 |
| 113 | 개 | 식부기 | 6 | | 동물에 관련한 농업용 기계. |
| | | 파종기, 이식기 등 포함 | 611 | 대 | 가금 부화기 |
| 119 | ※ | 기타 경작용 기계 | 612 | 대 | 가금 사육기(병아리 사육용) |
| 2 | | 비추진식 수확, 탈곡 및 관련기계 | 613 | 대 | 달걀 세척기(달걀선별기 포함) |
| | | | 614 | 대 | 기타 가금사육기 |
| | | | 621 | 대 | 꿀벌 사육기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622 | 대 | 사료 및 곡물건조기 | 141 | 대 | 수치제어연삭기(NC연삭기) |
| 623 | 대 | 사료 절단기 | 142 | 대 | 수치제어보링기(NC보링기) |
| 629 | ※ | 기타 동물 농업용 기계 | 143 | 대 | 수치제어기어커팅기(NC기어커팅 기) |
| 700 | ※ | 농업용 기계날 및 칼 | 144 | 대 | 수치제어드릴링기(NC드릴링기) |
| 900 | ※ |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장비 부품 | 145 | 대 | 수치제어평삭기(NC평삭기) |
| 3823 | |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 제조업 | 146 | 대 | 기타 수치제어(NC)금속절삭기계 |
| 38231 | |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 147 | ※ | 기타 금속절삭기계 |
| 1 | | 일반목적용 금속절삭기계 | 149 | ※ | 기타 금속절삭기계부품 |
| 111 | 대 | 수치제어선반(NC선반) | 38232 | |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 112 | 대 | 자동선반 | 1 | | 금속성형기계공구 |
| 113 | 대 | 보통선반 | 111 | 대 | 단조기 및 스탬핑기 |
| 114 | 대 | 입선반 | 112 | 대 | 액압 금속가공프레스 |
| 115 | 대 | 기타선반(터릿, 탁상선반등) | 113 | 대 | 기타 금속가공프레스(크랭크, 인 력, 공기압프레스) |
| 121 | 대 | 형삭기 | 114 | 대 | 압출기 |
| 122 | 대 | 평삭기 | 115 | 대 | 에어 햄머 |
| 123 | 대 | 랩핑기 | 116 | 대 | 굴곡기 |
| 124 | 대 | 태핑기 | 117 | 대 | 성형기 |
| 125 | 대 | 밀링기(NC밀링은 제외) | 118 | 대 | 전단기 |
| 126 | 대 | 브로칭기 | 121 | 대 | 편칭기 |
| 127 | 대 | 기계톱 | 122 | 대 | 신선기 |
| 128 | 대 | 연삭기 | 123 | 대 | 인발기 |
| 129 | 대 | 호닝기 | 124 | 대 | 나사전조기 |
| 131 | 대 | 보링기 | 125 | 대 | 수치제어(NC)금속가공기계 |
| 132 | 대 | 드릴링기 | 126 | ※ | 기타 금속가공기계 |
| 133 | 대 | 기어 커팅기 | 129 | ※ | 기타 금속가공기계부품 |
| 134 | 대 | 리밍기 | 2 | | 압연기 및 롤 |
| 135 | 대 | 전기 또는 전자식 가공기계 및 초 음파 가공기계(방전가공기 포 함) | 211 | 대 | 압연기(선재, 판재, 관압연기 포 함) |
| 136 | 대 | 스크류 커팅기 | 212 | ※ | 압연기롤(주조 및 단조제 롤 포함) |
| 137 | 대 | 수치제어 밀링기(NC밀링기) | | | |
| 138 | 대 | 머시닝센터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8233 | | 금속처리용 기계 제조업 | 117 | 대 | 선반 및 축성형기 |
| 111 | 대 | 주조기 | 118 | 대 | 샌드 페이퍼링기 |
| 112 | 대 | 가스용접 장치 | 121 | 대 | 베니어 접합 프레스 |
| 113 | 대 | 금속 세척기 | 122 | 대 | 만능나무 공작기계 |
| 114 | 대 | 금속 열처리 | 123 | 대 | 마루세공 나무제조기 |
| 115 | 대 | 금속 표면처리기(도금, 도장장치 등) | 124 | 대 | 목공 밀링기 |
| 119 | ※ | 기타 금속처리용 기계 및 부품 | 125 | 대 | 수치제어(NC)목공기계 |
| 38234 | |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제조업 | 129 | ※ | 기타 일반목적 목공기계 및 부품 |
| 111 | 대 | 드릴링기 | 2 | | 특수산업용 목공기계 |
| 112 | 대 | 태핑기 | 211 | 대 | 통제조기 |
| 113 | 대 | 리밍기 | 212 | 대 | 연필제조기 |
| 114 | 대 | 착암기 | 213 | 대 | 등제품 제조기 |
| 115 | 대 | 어스호러 | 219 | ※ | 기타 특수산업용 목공기계 및 부품 |
| 116 | 대 | 연삭기 | 38236 | | 호환용 절삭구 제조업 |
| 117 | 대 | 샌더 | 111 | 개 | 금속공작용 절삭구 |
| 118 | 대 | 광택기 | 112 | 개 | 나무공작용 절삭구 |
| 121 | 대 | 톱(동력식 금속절단용) | 119 | ※ | 기타재료 공작용 절삭구 및 부품 |
| 122 | 대 | 해머(동력식) | 38237 | |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123 | 대 | 철판절단기 | 111 | ※ | 프레스형 금형(금속성형용) |
| 124 | 대 | 압축공기식 그리스 피스톨 | 112 | ※ | 프라스틱사출용 금형 |
| 125 | 대 | 드라이버(동력식) | 113 | ※ | 다이캐스팅 금형 |
| 126 | 대 | 바이브레이타(진동기) | 114 | ※ | FRP용 금형 |
| 129 | ※ | 기타 수지식 동력구동공구 및 부품 | 115 | ※ | 주단조용 금형 |
| 38235 | | 목공기계 제조업 | 119 | ※ | 기타 용도의 금형(유리, 고무, 광물성등)및 부품 |
| 1 | | 일반목적 목공기계 | 382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
| 111 | 대 | 박피기 | 100 | ※ | 복합금속 공작기계 공구 |
| 112 | 대 | 기계톱 | 300 | ※ | 기계공 정밀측정기 |
| 113 | 대 | 세절기 | 900 | ※ | 기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의 부속품 |
| 114 | 대 | 박절기 | | | |
| 115 | 대 | 대패기 및 장부기 | | | |
| 116 | 대 | 드릴링기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824 | |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 419 | ※ | 트랙터 부품 |
| 38241 | |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 511 | 대 | 불도저 |
| 1 | | 고체광물 채취 가공용 기계 및 장비 | 519 | ※ | 불도저 부품 |
| 111 | 대 | 천공기 | 38242 | | 섬유용 기계 제조업 |
| 112 | 대 | 채탄기계 | 1 | | 섬유방직 준비 가공기계 |
| 113 | 대 | 파쇄기 | 111 | 대 | 인조섬유 방사기 |
| 114 | 대 | 선광기 | 112 | 대 | 조방기 |
| 115 | 대 | 선별기 | 113 | 대 | 조면기 |
| 116 | 대 | 마쇄기 | 114 | 대 | 혼타면기 |
| 117 | 대 | 교반 혼합기 | 115 | 대 | 방직준비기계(세모기, 해모기, 카 아드기) |
| 119 | ※ | 기타의 고체광물 개선 채취가공 장 비 및 부품 | 116 | 대 | 코망기 |
| 200 | ※ | 유전용 기계, 장비 및 부품 | 117 | 대 | 연조기 |
| 3 | | 건설용 기계 및 장비 | 118 | 대 | 연사기 |
| 311 | 개 | 동력 쇼벨 | 119 | ※ | 기타 섬유용 기계 |
| 313 | 대 | 드레그라인 | 2 | | 방직기 |
| 314 | 대 | 크레인(물품취급장비는 38293117) | 211 | 대 | 면방직기 |
| 315 | 대 | 스크레퍼 | 212 | 대 | 모방직기 |
| 316 | 대 | 그레이더 | 213 | 대 | 견방직기 |
| 317 | 대 | 로더 | 214 | 대 | 정방기 |
| 318 | 대 | 램핑기 | 219 | ※ | 기타 방직기계 |
| 321 | 대 | 굴착기(엑스카베이터)=포크레인 | 3 | | 직기 |
| 322 | 대 | 도로포장기 | 311 | 대 | 면직기 |
| 323 | 대 | 콘크리트 믹서 | 312 | 대 | 견직기 |
| 324 | 대 | 트럭트랙터 및 웨곤 | 313 | 대 | 모직기 |
| 329 | ※ | 기타 건설장비 및 부품 | 319 | ※ | 기타 직기 |
| 330 | 대 | 인양장비 | 4 | | 편물기 |
| 341 | 대 | 원치(트럭에 장치한 원치는 제외) | 411 | 대 | 횡편직기 |
| 342 | ※ | 건설장비 부착물 | 412 | 대 | 환편직기 |
| 4 | | 트랙터 및 불도저 | 413 | 대 | 가정용 편물기 |
| 411 | 대 | 트랙터(농업용은 38220800에) | 414 | 대 | 종편직기 |
| | | | 419 | ※ | 기타 편직기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214 | 대 | 천공기 | 111 | 대 | 판유리 제조기 |
| 215 | 대 | 봉투제조기 | 112 | 대 | 병제조기 |
| 216 | 대 | 종이포대 제조기 | 113 | 대 | 유리판 제조용기계 |
| 217 | 대 | 종이상자 제조기 | 114 | 대 | 유리섬유 제조용기계 |
| 221 | 대 | 종이 주형제품 제조기 | 115 | 대 | 전구제조기 |
| 229 | ※ | 기타 펄프, 종이 또는 판지전화용 기계 및 부품 | 119 | ※ | 기타 유리제조용 기계 및 부품 |
| 38247 |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2 | | 비금속광물 응집 또는 성형용 기계 |
| 1 | |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 211 | 대 | 프레스기 벽돌,타일,브로크 등의 제조기 (수동식 제외) |
| 111 | 대 | 평압 및 원통압식 인쇄기 (윤전인쇄기 포함) | 212 | 대 | 압출기 |
| 114 | 대 | 석판인쇄기(활판 포함) | 214 | 대 | 관제조용 원심분리 성형기 |
| 115 | 대 | 옵셋인쇄기 | 215 | 대 | 연탄제조기 |
| 116 | 대 | 그라비아인쇄기 | 219 | ※ | 기타 비금속광물 응집 또는 성형용 기계 및 부품 |
| 117 | 대 | 특수인쇄기 | 3 | | 비금속광물 공작용 기계 공구 |
| 118 | 대 | 인쇄보조기 | 311 | ※ | 톱 및 절단기계 |
| 119 | ※ | 기타 인쇄기 및 부품 | 312 | 대 | 열단기 |
| 2 | | 활자주조, 활자식자 및 인쇄판 제 조용 기계 | 313 | 대 | 연마기 |
| 211 | 대 | 활자주조기 | 314 | 대 | 드릴링기 |
| 216 | 대 | 식자용 장비 | 315 | 대 | 조각용 기계 |
| 218 | 대 | 스테레오 제판 주조용 기계 | 316 | 대 | 그라인딩휠용 기계 |
| 219 | ※ | 기타 활자주조, 식자, 인쇄판제조 용 기계 및 부품 | 319 | ※ | 기타 비금속광물 공작용 기계공구 및 부품 |
| 3 | | 제본기계 | 382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기 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
| 311 | 대 | 책 재봉기 | 111 | 대 | 성냥 침책기 |
| 312 | 대 | 절지기 | 112 | 대 | 용접 전극봉 도포용 기계 |
| 313 | 대 | 집적 및 철책용 기계 | 113 | 대 | 사진 감광유제 도포용 기계 |
| 314 | 대 | 표지 제조기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 기 계 및 부품 |
| 319 | ※ | 기타 제본기계 및 부품 | | | |
| 38248 | |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 | | |
| 1 | | 유리제조용 기계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825 | |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 111 | 대 | 전동식 타자기(자동식타자기 제외) |
| 38251 | | 자동 자료처리장비 제조업 | 112 | 대 | 수동식타자기 |
| 111 | 대 | 중앙자료처리 장치(CPU) 중형, 소형, 초소형, 개인용, 사무실용 포함 | 113 | 대 | 자동식타자기(워드프로세싱 포함) |
| 112 | 대 | 보조기억장치(FDD5 ¼ 포함) | 119 | ※ | 타자기부품 |
| 113 | 대 | 입출력장치-프린트기, 카드리더기 포함 | 38256 | |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 |
| 114 | 대 | 터미널(TERMINAL)-단말장치 | 111 | 개 | 컴퓨터프로그램수록 테이프 |
| 115 | 대 | 전송장치(Modem등) | 112 | 개 | 컴퓨터프로그램수록 디스크 |
| 119 | ※ | 기타 자료처리장비 및 컴퓨터 전용 부품 | 113 | 개 | 컴퓨터프로그램수록 칩 |
| 38252 | | 계산기 제조업 | 119 | ※ | 기타 컴퓨터프로그램 매체 |
| 111 | 대 | 휴대용 전자계산기 | 3825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계산 회계 용기계 제조업 |
| 112 | 대 | 탁상용 전자계산기 | 111 | 개 | 연필깎기 |
| 113 | 대 | 금전등록기 | 112 | 대 | 편집분류기 |
| 114 | 대 | 표 발행기(계산장치 부착) | 113 | 대 | 편치기 |
| 119 | ※ | 기타 계산장치 | 114 | 대 | 동전 및 화폐분류, 계산, 포장기 |
| 121 | ※ | 계산기 부품 | 115 | 대 | 스테플링기 |
| 38253 | | 등사 및 복사기 제조업 | 1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용 기계 및 부품 |
| 111 | 대 | 등사기 및 복사기(사진복사기, 전 자복사기는 38525에 분류) | 3826 | | 서어비스 산업용기계 제조업 |
| 112 | 대 | 주소 자동 인쇄기 | 38261 | | 자동판매기 제조업 |
| 38254 | | 저울 제조업, 정밀저울 제외 | 111 | 대 | 자동판매기(음식료품) |
| 111 | 개 | 저울-산업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 저울 | 112 | 대 | 자동발행기 및 동전교환기 |
| 112 | 개 | 저울-상업용 | 119 | ※ | 자동판매기 관련 부품 |
| 113 | 개 | 저울-가정용 (목욕실 저울, 체중기, 유인용 저울등) | 38262 | | 상업용 세탁기 제조업 |
| 119 | ※ | 저울의 부품 | 111 | 대 | 상업용 세탁기(가정용은 38333에) |
| 38255 | | 타자기 제조업 | 119 | ※ | 상업용 세탁기 부품 |
| | | | 38263 | | 산업용 냉동장비 제조업 |
| | | | 111 | 대 | 산업 및 상업용 냉장고(가정용은 38331에 분류) |
| | | | 112 | 대 | 제빙기 |
| | | | 113 | 대 | 차량 냉동장비 |
| | | | 114 | 대 | 냉동제습기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5 | 대 | 산업용 냉동장비 | 118 | 대 | 정수기(가정형 포함) |
| 116 | 대 | 냉동진열장 | 119 | 대 | 차량세차기 |
| 119 | ※ | 기타 냉동장비 및 부품 | 200 | ※ | 기타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 및 부품 |
| 38264 | |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 38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제외 |
| 111 | 대 | 룸 에어컨디셔너(윈도우형 에어컨) | 38291 |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112 | 대 | 차량 공기조절기 | 111 | 대 | 공업용 펌프 |
| 113 | 대 | 자장 공기조절기(패케이지형 에어컨) | 112 | 대 |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펌프(계량용 펌프) |
| 114 | 대 | 대형 냉풍기 | 113 | 대 | 가정용 펌프(수동식 제외) |
| 115 | 대 | 냉각탑 | 114 | 대 | 수동펌프 |
| 119 | ※ | 기타 공기조절기 및 부품 | 115 | 대 | 양수기 |
| 38265 | | 상업용 조리 및 식품가공기기 제조업 | 116 | 대 | 공기펌프 |
| 111 | 대 | 상업용 조리장비 및 식품온열장비 | 117 | 대 | 진공펌프 |
| 112 | 대 | 가스레인지 | 118 | 대 | 공기압축기(컴프레샤) |
| 113 | 대 | 석유콘로 | 119 | ※ | 기타의 펌프와 공기압축기 및 부품 |
| 114 | 대 | 상업용 접시 세척기(가정용은 38339) | 38292 | | 송풍기 및 환풍기 제조업 |
| 115 | 대 | 상업용 전기 및 전자레인지(가정용은 38334) | 111 | 대 | 블로우어형 송풍기 |
| 116 | 대 | 상업용 믹서기(가정용은 38339) | 112 | 대 | 팬형 송풍기 |
| 119 | ※ | 기타 상업용 조리장비 및 부품 | 113 | 개 | 환풍기 |
| 3826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어비스 산업용 기계 제조업 | 114 | 대 | 공기청정기 및 집진장비 |
| 111 | 대 | 상업용 마루 세척 및 광택기 | 115 | 대 | 공기여과기 |
| 112 | 대 | 카펫트 청소기 | 116 | 대 | 에어커어튼장치 |
| 113 | 대 | 먼지 추출기 | 119 | ※ | 기타 송풍기, 환풍기 및 그 부품 |
| 114 | 대 | 쓰레기 처리기 및 청소기 | 38293 | |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제외 |
| 115 | 대 | 하수정화 장비 | 111 | 대 | 활차 |
| 116 | 대 | 대기정화장비 | 112 | 대 | 책 : 손으로 움직이는 기중기 |
| 117 | 대 | 수영장물 조절기 | 113 | 대 | 리프트 : 호이스트 |
| | | | 114 | 대 | 텔레페릭 및 푸니쿨라 |
| | | | 115 | 대 | 화차 경사기 |
| | | | 116 | 대 | 적하기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7 | 대 | 크레인(건설용 장비는 38241314) | 112 | 대 | 적용형 로봇 |
| 122 | 대 | 에스컬레이터 | 113 | 대 | 지능형 로봇 |
| 123 | 대 | 엘리베이터(승객용, 화물용, 주차 용, 병원용 포함) | 119 | ※ | 로봇 부품 |
| 124 | 대 | 콘베이어 | 38297 | |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베 어링 포함 |
| 125 | 대 | 스키 리프트 | 1 | |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
| 126 | 대 | 화차 전철대 | 111 | ※ | 베어링 하우스 및 플레인샤프트 베 어링(강구 및 강방 포함) |
| 129 | ※ | 기타 재료취급장비 및 부품 | 112 | 개 | 트랜스 및 손 샤프트(변속기) |
| 38294 | |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 113 | 개 |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
| 1 | 대 | 산업용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및 적하기 | 114 | 개 | 감샤프트 |
| 111 | 대 | 산업용 수동트럭 및 산업용 트레일 러 | 115 | 개 | 기어 및 기어링 |
| 112 | 대 | 소형 트랙터 | 116 | 개 | 감속기 |
| 113 | 대 | 프레트홈 트럭 | 117 | 개 | 클러치 |
| 114 | 대 | 포크 리프트(지게차) | 119 | ※ | 기타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및 부품 |
| 119 | ※ | 기타 산업용 트럭 및 부품 | 2 | | 볼, 플러 및 니들플러 베어링 |
| 38295 | | 재봉기 제조업 | 211 | ※ | 볼 베어링 |
| 1 | | 가정용 재봉기 | 212 | ※ | 니들 베어링 |
| 111 | 대 | 손틀 | 213 | ※ | 메달 베어링 |
| 112 | 대 | 발틀 | 214 | ※ | 테이퍼 베어링 |
| 113 | 대 | 재봉기-전기식 | 219 | ※ | 기타 베어링 |
| 2 | | 산업용 재봉기 | 221 | ※ | 베어링 부품 |
| 211 | 대 | 재봉기-직물용 | 38298 | | 무기 제조업 |
| 212 | 대 | 재봉기-가죽용 | 100 | ※ | 총포(권총, 소총, 대포, 고사포)총 탄,포탄, 폭발물 발사기, 장갑차 등 관련 장비 및 부품 |
| 213 | 대 | 재봉기-포대봉합용 | 200 | ※ | 수렵용 및 경기용총(공기총 포함) |
| 219 | ※ | 재봉기-기타산업용(제책용은 38247) | 382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전기 제외) |
| 300 | ※ | 재봉기용 부품(바늘 및 캐비넬은 제외) | 100 | 대 | 동력분무기(산업용) 농업용 동력 분무기는 38220411 에 분류 |
| 38296 | | 산업용 로봇제조업 | | | |
| 111 | 대 | 교시형 로봇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2 | | 금속용해 또는 처리로 | 914 | 개 | 로울러 |
| 211 | 대 | 금속용해 및 정련전기로 | 918 | ※ | 상수도용 장비 및 부품 |
| 212 | 대 | 금속열처리 및 가공전기로 | ● 919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용 장비 및 부품 |
| 213 | 대 | 용공로 : 비전기식 | 383 |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 214 | 대 | 용선로 : 비전기식 | 3831 | | 전기 산업용 기계 및 장치제조업 |
| 215 | 대 | 토마스 및 베세머 전로 | 38311 | |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 기계 제조업 |
| 216 | ※ | 기타 비전기식 금속제련로 | 1 | | 발전기 세트 |
| 217 | ※ | 비전기식 금속열처리 및 금속가공로 | 111 | 대 | 원동기(발전기 세트) |
| 3 | | 산업용로(9식품조리용로 제외) | 112 | 대 | 회전변환기 |
| 311 | 대 | 전기로 | 119 | ※ | 기타 발전기 세트 및 부품 |
| 312 | 대 | 비전기로 | 2 | | 전동기 및 발전기(전자용 소형 모 터는 38349123에 분류) |
| 4 | | 로연소기 및 급탄기 | 211 | 대 | 전동기-직류 |
| 411 | 대 | 로연소기(기계식) | 212 | 대 | 전동기-교류 |
| 412 | 대 | 급탄기 | 217 | 대 | 발전기-직류생산 |
| 413 | 대 | 재 방출기 | 218 | 대 | 발전기-교류생산 |
| 414 | 대 | 기계식 화상 | 219 | ※ | 회전전기장비의 부품 |
| 415 | ※ | 가스 발생기 (발생로 가스, 수성가스, 아세 치렌가스 발생용) | 38312 | | 변압기 제조업 |
| 5 | | 기화기(氣火器), 피스톤, 피스톤 | 111 | 대 | 송배전 변압기 |
| | | 링 및 밸브(내연기관용) | 112 | 대 | 발전 변압기 |
| 511 | 대 | 기화기(카뷰레타) | 113 | ※ | 전력조절기, 승압기, 리액터 및 유 사장치 |
| 512 | 천개 | 피스톤 | 114 | 대 | 신형변압기(등안전기 제외) |
| 513 | 천개 | 피스톤링 | 115 | 개 | 등안전기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 가스 등의 등안전기 |
| 514 | 천개 | 밸브 및 밸브하우징 | 119 | ※ | 기타 변압기 및 부품 |
| 6 | | 소화기 및 소화장비 | 38313 | | 개폐장치 및 보호장비제조업 |
| 611 | 대 | 소화기 | 111 | 대 | 배전판-고압 (발전·송전용, 산업용) |
| 612 | ※ | 소화장비 및 소화용 스프링클러 | 112 | 대 | 배전판-저압(조명 및 거주지용) |
| 9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 | | |
| 911 | ※ | 늘이터용 장비 | | | |
| 912 | 대 | 상수도용 여과기 | | | |
| 913 | 대 | 상수도용 정수기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3 | 대 | 전력회로차단기-고압용 | 211 | 대 | 고압축전기(전자기용 축전기는 38343으로 분류) |
| 114 | 대 | 전력회로차단기-저압용 | 212 | 대 | 저압축전기(" ") |
| 115 | 대 | 누전차단기 | 900 | ※ | 기타 전기산업용 장치 및 부품 |
| 116 | ※ | 퓨즈 | 3832 | |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
| 119 | ※ | 기타의 개폐장치, 안전장치 및 부품 | 38321 | | 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
| 38314 | | 산업용 전기제어상비 제조업 | 1 | | 텔레비전수상기(모니터)및 그부품 |
| 111 | 대 | 전기제어장비, 산업용 드라이브 (AC 및 DC)전동기제어장비 및 관련 장비 | 111 | 대 |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
| 112 | 대 | 모터 스타터(자기스타터) | 112 | 대 |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 |
| 113 | 대 | 전기자기브레이크, 크러치, 연계 기 및 관련장비 | 113 | 대 | 콤비네이션 텔레비전 수상기 |
| 114 | 대 | 산업용 전자통제장비 | 114 | 대 | 컴퓨터용 수상기(모니터) |
| 119 | ※ | 기타 산업용 통제장비 및 부품 | 115 | 대 | 프로젝션 텔레비전 수상기 |
| 38315 | | 전기용접기 제조업 | 116 | 대 | 영상녹화재생기(V.T.R)-가정용 |
| 111 | 개 | 아크 용접장치 | 117 | 천개 | 칼라 T.V 튜너 |
| 112 | 개 | 저항 용접기 | 118 | 천개 | 흑백 T.V 튜너 |
| 119 | ※ | 전기용접기 부품 | 119 | ※ | 기타 T.V 반제품 및 구성품 |
| 38316 | |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 2 | | 라디오 수신기, 녹음기 및 그 부품 |
| 111 | 대 | 발전 및 전동기 시동기(motor- Starter) | 211 | 천대 | 일반 라디오(AM, FM, 스테레오, 헤드폰라디오) |
| 112 | 개 | 스파크 프러그 (글로우 프러그 포함) | 212 | 천대 | 시계라디오(디지털라디오) |
| 113 | ※ | 점화코일, 마그네트, 디스트리뷰 터, 저압조절기 및 기타 점화장 비 | 213 | 천대 | 카라디오 |
| 119 | ※ | 기타 내연기관용 전장품 및 부품 | 214 | 대 | 녹음기(카세트라디오포함) |
| 383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 계 및 장치제조업 | 215 | 대 | 녹음재생기(카트리지 포함) |
| 100 | 대 | 정류기 및 정류장치 | 216 | 천개 | AM, FM 튜너 |
| 2 | | 축전기(산업용) | 219 | ※ | 기타 라디오, 녹음기의 반제품 및 구성품 |
| | | | 3 | | 전축 및 소리발생장비 및 그 부품 |
| | | | 311 | 대 | 소형 전축(뮤직센터 포함)-컴포넌 트시스템은 세분조사 |
| | | | 312 | 대 | 전축용 매트(테크메카니즘은 38349)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13 | 대 | 레코드 플레이어(컴팩트 제외) | 311 | 대 | 인터넷 |
| 314 | 대 | 스피커시스템 | 312 | 대 | 인터넷폰 |
| 315 | 대 | 전축용 튜너 | 313 | 대 | 어학실습기 |
| 316 | 대 | 전축용 앰프셋트 | 900 | ※ | 기타 유선통신기기 및 그 부품 |
| 317 | 대 | 이퀄라이저 | 38323 | |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
| 318 | 대 | 컴팩트디스크 (CD) 플레이어 | 1 |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장치 및 폐쇄 |
| 319 | ※ | 기타 반제품 및 그 부품 | | | <u>회로 텔레비전 조직</u> |
| 4 | | 마이크로프로류 | 111 | 대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국 장비-소리 |
| 411 | 천개 | 마이크로폰 | 112 | 대 | 텔레비전방송국 장치-시각 |
| 412 | 천개 | 헤드폰 | 113 | 대 | 라디오, TV 방송 송신기 및 관련장비 |
| 413 | 천개 | 이어폰 | 114 | 대 | 폐쇄회로 TV조직(감시용 모니터 TV 조직) |
| 419 | ※ | 기타 유사제품 및 부품 | 115 | 대 | TV카메라 |
| 9 | | 기타 구성품 | 116 | 대 | 모니터 TV(방송용) |
| 911 | 천개 | 확성기(스피커) | 117 | 대 | 방송용 VTR(방송용녹화 장비) |
| 912 | 천개 | 방송용 증폭기(P.A 앰프) | 119 | ※ | 기타 방송장치 및 부품 |
| 913 | 천개 | 데크메카니즘 | 2 | | 일반통신장비, 무선전화 및 무선 |
| 919 | ※ | 기타 음향 및 영상기기의 부품 | | | <u>전신</u> |
| 38322 | | 유선통신장비제조업 | 211 | 대 | 무선송수신기 |
| 1 | | <u>전화기 및 교환기</u> | 212 | 대 | CB 트랜시버(일반용) |
| 111 | 대 | 전화기(다이알, 버튼식등) | 213 | 대 | 일반용 워키토키 |
| 112 | 대 | 무선전화기(코드레스식) | 214 | 대 | 항해용 방향탐지기(레이다 제외) |
| 113 | 대 | 자동차용 전화기(카폰) | 219 | ※ |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부품 |
| 114 | 회선 | 자동식 전화교환기(수동식 포함) | 900 | ※ | 군수용 무선통신 장비 |
| 115 | 회선 | 전자식 전화교환기 | 38324 |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2 | | <u>방송용 및 인쇄전신기기</u> | 111 | 대 | 상호 통신장비(전화 및 전신연합 된 것 제외) |
| 211 | 대 | 방송장치(나선 및 동축케이블 반 송장치등) | 112 | 대 | 전기 교통 통제장비-도로, 철도, 수로, 항구 또는 공항 |
| 212 | 대 | 텔레폰레코더 | 113 | 대 | 전기 소리 또는 시각 신호장치:경보장치 |
| 213 | 대 | 텔레타이프 | | | |
| 214 | 대 | 텔레프린터 | | | |
| 215 | 대 | 모사 전송기기(팩시밀리) | | | |
| 3 | | <u>기타 유선 통신기기</u>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9 | ※ | 기타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와 부품 | 38331 | | 전기냉장고 제조업 |
| 38325 |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의료 장치 제조업 | 111 | 대 | 냉장고-가정용(상업용은 38263에 분류) |
| 1 | | 방사선 장치 | 119 | ※ | 냉장고 부품 |
| 111 | 대 | X-선장치(진단 및 요법용) | 38332 | | 선풍기 제조업 |
| 112 | 대 | X-선장치(산업용) | 100 | 대 | 선풍기(가정용) |
| 113 | 대 | 방사선 이용장치 | 200 | 대 | 제습기-가정용 |
| 114 | 대 | X-선관 및 기타 X-선 발생장치 | 300 | 대 | 연탄가스 배출기 |
| 119 | ※ | 기타 X-선 장치용 부품 | 400 | 대 | 환풍기-가정용(산업용은 38292) |
| 2 | | 전기의료 장치 | 900 | ※ | 기타 가정용 선풍기 반제품 및 부품 |
| 211 | 대 | 전기 진단장치 | 38333 | | 전기세탁기 제조업 |
| 212 | 대 | 전기요법(치료)장치 | 111 | 대 | 전기 세탁기-가정용 |
| 219 | ※ | 기타 전기의료장치 및 부품 | 112 | 대 | 탈수기 |
| 38326 | |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 (녹음된 원판을 가지고 상업용 음반 및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를 대량 복제 생산하는 산업활동 음반 및 테이프의 생지제조는 35296에 분류) | 119 | ※ |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 부품 |
| 111 | 천매 | 음반(레코드판)-콤팩트디스크제의 | 38334 | |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
| 112 | 천매 | 콤팩트디스크(CD) | 1 | | 가정용 전열기구 |
| 113 | 천km | 카세트테이프 | 111 | 대 | 전기레인지 및 오븐(저항형)-가정용 |
| 114 | 천km | 비디오 테이프 | 112 | 대 | 전자레인지 및 오븐(고주파, 적외선 마그네트론의 것)-가정용 |
| 200 | ※ | 기타 관련제품 및 부품 (영화 및 방송용은 제외) | 2 | | 전기 탕비기(물끓이는 기계) 및 전 |
| 383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 211 | 대 | 전기탕비기(물끓이는 기계) |
| 111 | ※ | 무선 조정 자동문 개폐기 | 212 | 대 | 전기난방 및 토양가열장치 |
| 119 | ※ | 기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및 부품 | 213 | 대 | 전기 커피포트 |
| 3833 | |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 214 | 대 | 전기열저항기=전기풍로 |
| | | | 3 | | 가정용 식품가공 전기기기 |
| | | | 311 | 개 | 전기밥솥 |
| | | | 312 | 개 | 전기 보온밥통 |
| | | | 313 | 개 | 전기 프라이팬 |
| | | | 319 | ※ | 기타의 가정용 식품가공 기기 및 부품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9 | | 기타 가정용 전열기구 | 115 | 천개 | T.V 브라운관 반제품 |
| 911 | 대 | 전기조리기(전기렌지 및 오븐제외) | 119 | ※ |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품 |
| 912 | 개 | 전기담요 및 히팅패드(전기장판 포함) | 38342 | |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
| 913 | 개 | 전기 다리미 | 111 | 천개 | 트랜지스터(TR) |
| 914 | 대 | 눈 및 얼음 용해기-전기 | 112 | 천개 | 다이오드 |
| 915 | 대 | 온장고 | 113 | 천개 | 반도체 집적회로(IC) |
| 916 | 대 | 의류건조기 | 114 | 천개 | 고밀도 집적회로(LSI) |
| 917 | 대 | 순간온수기(가스·전기용) | 115 | 천개 |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
| 919 | ※ | 기타 가정용 전열기구 및 부품 | 119 | ※ | 기타 반도체와 소자 및 부품 |
| 38335 | |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 38343 | | 전자기기용 축전기 제조업 |
| 111 | 개 | 면도기(전기모터자장) | 111 | 천개 | 고정축전기(콘덴샤) |
| 112 | 개 | 조발기(전기모터자장) | 112 | 천개 | 가변축전기(콘덴샤) |
| 113 | 개 | 드라이어 | 119 | ※ | 기타 축전기 및 부품 |
| 114 | 개 | 안마기 | 38344 | | 전자기기용 저항기 제조업 |
| 119 | ※ | 기타 전기화장 및 이·미용기구 및 부품 | 111 | 천개 | 고정저항기 |
| 383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구 제조업 | 112 | 천개 | 가변저항기 |
| 111 | 대 | 진공소채기 | 119 | ※ | 기타 저항기 및 부품 |
| 112 | 대 | 접시세척기-가정용 | 38345 |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 제조업 |
| 113 | 개 | 가습기(습도조절기) | 111 | 천개 | 변성기(트랜스포머) |
| 114 | 개 | 전기 믹서 | 112 | 천개 | 전자코일 |
| 115 | 개 | 살균소독기 | 119 | ※ | 기타 전자유도자 기기 및 부품 |
| 116 | 개 | 식품마쇄기(전기용) | 383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119 | ※ | 기타 가정용 대형기기 및 부품 | 111 | 천개 | 인쇄회로기판(PCB판) |
| 3834 | |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112 | 천개 | 음성증폭기 |
| 38341 | | 전자관 제조업 | 113 | 천개 | 기억소자 |
| 111 | 천개 | 흑백TV용 브라운관 | 114 | 천개 | 마그네틱헤드 |
| 112 | 천개 | 친연색TV용 브라운관 | 115 | ※ | 마그네틱와이어 |
| 113 | 천개 | 표시관(계산기, 시계 사용) | 116 | ※ | 전자용 전원연결품(플러그 및 잭 스위치 등) |
| 114 | 천개 | 방전관 | 117 | 천개 | 동박 적층판(PCB원판)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21 | 천개 | 웨어이트코아 | 113 | 개 | 불활성 전지 |
| 122 | 천개 | 웨어이트마그네트 | 114 | 개 | 농축전지 |
| 123 | 천개 | 소형모터(전자용) | 119 | ※ | 기타 일차전지 및 부품 |
| 124 | 천개 | 수정 진동자 | 38395 | |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
| 125 | 천개 | 안테나(TV용, 통신용등) | 111 | ※ | 백열등 및 조명부착물-실내 |
| 900 | ※ | 기타 전자부품 | 112 | ※ | 형광등 및 조명부착물 |
| 38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 기기 제조업 | 113 | ※ | 가로 및 공지조명 부착물 (탐조등, 서포트라이트 및 비 콘). |
| 38391 |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114 | 개 | 휴대용 전기بات데리 및 마그네트등 (휴대용 전등포함)-차량용 제외 |
| 111 | ※ | 통신선 및 케이블 | 119 | ※ | 기타 조명부착물 및 조명장치와 부품 2 |
| 112 | ※ | 전력선 및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은 38521200으로 분류) | 211 | 개 | 실드-빔 램프 (차량에 부착되도록 설계한 진 공 혹은 가스입 램프) |
| 113 | ※ | 마그네트선 및 케이블 | 219 | ※ | 기타의 차량용 전기조명 장비 및 신호장비 |
| 119 | ※ | 기타의 절연선 및 케이블 | 38396 | |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제조업 |
| 38392 | | 전구 제조업 | 1 | | 배전장치 |
| 1 | | 전구 | 111 | 천개 | 소켓트 |
| 111 | 천개 | 백열전구 | 112 | 천개 | 콘센트 |
| 112 | 개 | 방전구 | 113 | 천개 | 프러그 |
| 113 | 천개 | 형광전구 | 114 | 천개 | 스위치-배전장치 |
| 114 | 개 | 자외선 및 적외선 전구 | 115 | 천개 | 형광등 스타터 |
| 115 | 개 | 아아크등 및 전구 | 119 | ※ | 기타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
| 116 | 개 | 전기로 점화하는 사진 섬광구 | 2 | | 전기도관 조인트 및 부착물(금속제) |
| 117 | 천개 | 서크라인 | 211 | ※ | 전기도관, 조인트-절연금속제 |
| 118 | 천개 | 장식용 전구 | 212 | ※ |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비 절연 |
| 119 | ※ | 기타의 전구 및 부품 | 300 | ※ | 절연코드 및 코드셋트(전기연결장 치) |
| 38393 | | 축전지 제조업 | | | |
| 111 | 개 | 축전지 | | | |
| 119 | ※ | 축전지 부품 | | | |
| 38394 | | 건전지 제조업 | | | |
| 111 | 천개 | 건전지 | | | |
| 112 | 개 | 습전지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400 | ※ | 애자 및 절연부착물 유리, 도기,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외 | 400 | ㄱ | 여객선(페리 포함) |
| 383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5 | | 어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 |
| 1 | | 전기용 탄소제품 | 511 | ㄱ | 어선(공장트롤러 포함) |
| 111 | ※ | 카본 브러쉬 | 512 | ㄱ | 공장선 |
| 112 | ※ | 카본 전극봉 | 900 | ※ | 기타 특수선박(조명선, 해난구조 선, 준설선, 기중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 경비선, 군함, 잠 수함등) |
| 119 | ※ | 기타 카본제품 | 38413 | | 목선 건조 및 수선업 |
| 121 | ※ | 카본 제조과정 부스러기 | 100 | ㄱ | 여객선 |
| 2 | | 기타 전기기계 장비 및 부품 | 200 | ㄱ | 화물선 |
| 211 | ※ | 전기벨, 부저, 도어차임 및 유사장 치 | 300 | ㄱ | 어선 |
| 212 | ※ | 차량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및 기타 전기장치 | 900 | ※ | 기타 목선 |
| 900 | ※ | 기타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 38414 | | 보트 건조 및 수선업 |
| 384 | | 운수장비 제조업 | 1 | | 보트(고무보트는 35599215에분류) |
| 3841 | | 선박 건조 및 수선업 | 111 | 대 | 동력보트 |
| 38411 | | 선박용기관 및 부품 제조업 | 112 | 대 | 돛 배 |
| 100 | 대 | 선박용 내연기관 | 119 | 대 | 기타 보트 |
| 900 | ※ | 선박용 기관 부품 | 38415 | | 선박 해체업 |
| 38412 | | 강선건조 및 수선업 | 100 | ※ | 선박 해체업 |
| 1 | | 화물선 | 384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 건조 및 수선업 |
| 111 | ㄱ | 철강 유조선 | 1 | | 부선 도크 및 부유구조물 |
| 112 | ㄱ | 일반화물선(다목적화물선, 콘테이 너선, 자동차권용선, 바지선 포함) | 111 | ㄱ | 부선 도크 및 기타 비추진식 선박 |
| 119 | ㄱ | 특수 화물운반선(화학 및 가스운 반선, 냉동선 포함) | 112 | ㄱ | 부유 구조물 |
| 200 | ㄱ | 예인선 | 2 | | 선박(장선 및 목선 제외) |
| 300 | ㄱ | 쇄빙선, 케이블선, 탐색선 및 기타 비상업용 선박(어선, 여객선은 제외) | 211 | ㄱ | 합성수지선 |
| | | | 212 | ㄱ | 콘크리트선 |
| | | | 213 | ㄱ | 경금속선 |
| | | | 219 | ※ | 기타 선박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842. | | 철도장비 제조업 | 119 | ※ | 기타 기계추진 레일차량(철도로반 보수 및 정비용 철도차량 포함) |
| 38421 | | 기관차 제조업 | 3843 | | 자동차 제조업 |
| 1 | | 기관차-철도용 | 38431 | | 자동차 제조업, 부품 제외 |
| 112 | 대 | 전기기관차-철도용 | 1 | | 승용차 |
| 113 | 대 | 디젤 및 디젤전기기관차-철도용 | 111 | 대 | 소형승용차(1400cc이하) |
| 114 | 대 | 진동차 | 112 | 대 | 중형승용차(1900cc이하) |
| 119 | ※ | 기타 철도용 기관차 | 113 | 대 | 대형승용차(1901cc이상) |
| 2 | | 기관차-철도용 이외 | 114 | 대 | 지프형승용차 |
| 211 | 대 | 광산기관차-지하 | 2 | | 버스 |
| 212 | 대 | 산업용 기관차 | 211 | 대 | 소형버스(25인승 미만) |
| 900 | ※ | 기관차 부품 | 212 | 대 | 일반버스(25인승 이상) |
| 38422 | | 철도객화차 제조업 | 213 | 대 | 고속형버스(고속관광버스 포함) |
| 1 | | 여객차(기관차 제외) | 3 | | 트럭 |
| 111 | 량 | 여객차 및 수하물차 | 311 | 대 | 소형트럭(4ton미만) |
| 112 | 량 | 병원차, 죄수차, 검사차 및 기타 특수목적 차량 | 312 | 대 | 중형트럭(4ton이상~8ton미만) |
| 200 | 량 | 화차 | 313 | 대 | 대형트럭(8ton이상) |
| | | 무개차(콘도라), 평저차, 유개차, 유조차, 냉장차 등 | 400 | 대 | 특수차 |
| 900 | ※ | 기타 차량 | | | (경찰용특장차, 소방차, 콘크리트 믹서차, 구난차, 위생차, 병원차, 방송차, 은행차, 장의차, 급수차, 유조차, 냉동 및 냉장차 등을 포함) |
| 38423 | |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 500 | 대 | 트럭트랙터 |
| 100 | 대 | 피스톤 발브 증기기관-기관차용 | 6 | | 차체 |
| 200 | 대 | 내연 추진기관-철도기관차용 | 611 | 대 | 승용차 차체 |
| 300 | 개 | 차륜 | 612 | 대 | 버스 차체 |
| 911 | 개 | 완충기 | 613 | 대 |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차체 |
| 919 | ※ | 기타 철도차량 부품 | 619 | ※ | 기타 차체 |
| 384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도장비 제조업 | 38432 |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1 | | 기계추진 철도차량, 트롤리버스- | 111 | 대 | 자동차용 내연기관 |
| | | 여객 화물 또는 정비목적 | | | |
| 111 | 대 | 전기추진차량 : 트롤리버스 포함 | | | |
| 112 | 대 | 레일카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9 | ※ | 기관용 부품 | 111 | 대 | 모우터사이클(이륜 및 삼륜) |
| 2 | | 기관 부착된 샷시 | | | 51cc 이상 |
| 211 | ※ | 승용차 샷시 | 112 | 대 | 모우터스쿠터 |
| 219 | ※ | 기타 차량용 샷시 | 113 | 대 | 오토사이클 |
| 500 | 대 | 로드레일 및 유사콘테이너(저장 및 운반콘테이너는 38136으로) | | | (페달 부착된 것) 50cc 이하 |
| 600 | ※ | 차체 부품 | 200 | 대 | 골프차, 눈차(스노우 모빌) 및 기타 특수 목적차 |
| 9 | | 기타 차량 부품 | 3 | | 모우터 및 부품 |
| 911 | ※ | 동력전달장치 및 그 부품 | 311 | ※ | 모우터사이클용 기관 |
| 912 | ※ | 배기조직 및 그 부품 | 312 | ※ | 모우터사이클 부품 |
| 913 | ※ | 연료계통조직 및 그 부품 | 3845 | |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
| 914 | ※ | 제동장치 및 그 부품 | 38451 | |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부품 제외) |
| 915 | ※ | 조향장치 및 그 부품 | 100 | ※ | 항공기(헬리콥터 포함) |
| 916 | ※ | 현가장치 및 그 부품(차축은 제외) | 38452 | | 항공기 부품 제조업 |
| 921 | 개 | 휠, 자동차륜 | 100 | ※ | 항공기 부품 |
| 922 | 개 | 자동차 차축 | 38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
| 923 | 대 | 자동차용 방열기 | 38490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
| 929 | ※ | 기타 자동차 부품 | 100 | 대 | 동물 견인 차량, 비동력(우마차) |
| 3844 | | 모우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 200 | 대 | 손수레 및 기타 비동력 차량 |
| 38441 | | 자전거 제조업 | 9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및 부품 |
| 1 | | 자전거 | 385 | |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 111 | 대 | 일륜거 | 3851 | |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
| 112 | 대 | 이륜거 (보통 자전거) | 38511 | | 의료용기구 제조업 |
| 113 | 대 | 삼륜거(어린이용 세발자전거는 39042100에 분류) | 100 | ※ | 의료용 가구 |
| 114 | 대 | 사륜거 | | | 수술대, 의자, 맛사지용 테이블, 침대 등. |
| 2 | | 자전거 부품 | 38512 | |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 제조업 |
| 211 | 개 | 자전거 차체 | | | |
| 212 | 개 | 자전거 립 | | | |
| 219 | ※ | 기타 자전거 부품 | | | |
| 38442 | | 모우터사이클 제조업 | | | |
| 1 | | 모우터사이클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1 | ※ | 진단용 기구(눈검사 기구는 제외) 세분 | 100 | ※ | 생물학적 해부모형, 해부도, 해부 표본 |
| 112 | ※ | 환자처치, 수술, 해부 및 시체검사 용 기계기구 | | | (교육 및 전시용등) |
| 113 | ※ | 외과 및 내과 치료용 기구 일반기구, 일반날붙이, 여러가 지 바늘(침 포함), 기타 제품 | 200 | ※ | 피임용품(고무제품 제외) |
| 114 | ※ | 수의용 기구 | 300 | ※ | 반창고, 약솜(약품처리된 상태의 것) 등 외과 드레싱 |
| 900 | ※ | 기타 의료처치, 진단기구 및 부품 | 900 | ※ | 기타 의료용품 및 부품 |
| 38513 | |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 3852 | |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
| 111 | ※ | 기계요법 기기 | 38521 | | 광섬유 제조업 |
| 112 | ※ | 산소요법 및 기타 호흡기기 (가스마스크) | 100 | ※ | 광섬유 |
| 113 | ※ | 심리학적 검사용 기구 | 200 | ※ | 광섬유 케이블 |
| 900 | ※ | 기타 기계요법, 관련기구 및 부품 | 900 | ※ | 기타 부속품 |
| 38514 | | 치과 전용장비 및 용품 제조업 | 38522. | | 광학요소 제조업 |
| 111 | ※ | 치과용 수도구 | 1 | | 광학요소(안경렌즈 제외) 장치하 지 않은 것. |
| 112 | ※ | 치과용 시멘트 | 111 | 개 | 프리즘 |
| 113 | ※ | 치과 비품 | 112 | 천개 | 렌즈(안경용 제외) |
| 114 | ※ | 치과 드릴엔진 | 113 | 개 | 광학요소 거울 |
| 115 | ※ | 인조치아 | 114 | 개 | 색채필터 및 간섭필터 |
| 119 | ※ | 기타치과용 의료기구 및 부품 | 119 | ※ | 기타 장치하지 않은 광학요소 |
| 38515 | |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 2 | | 광학요소 장치한 것 |
| 111 | ※ | 교정용기구 | 211 | ※ | 대물렌즈, 필터, 거리측정기 등 (사진기 및 관련장비용) |
| 112 | ※ | 부목 및 기타 골절기기 | 219 | ※ | 기타 광학요소(사진기 및 관련장 비용 이외의 것) |
| 113 | ※ | 인조사지, 코등(치아, 눈은 제외) | 300 | 천개 | 안경렌즈(콘택트렌즈 포함) |
| 114 | ※ | 신체보정용기기(걸합보정구, 보청기) | 38523 | | 사진기 제조업 |
| 115 | ※ | 인공장기 | 111 | 대 | 카메라(일반 목적용) |
| 119 | ※ | 정형외과용품 부품 | 112 | 대 | 비디오카메라(VTR 카메라) |
| 3851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기구 및 용품제조업 | 119 | ※ | 기타특수카메라 |
| | | | 121 | ※ | 카메라 부품 |
| | | | 122 | 개 | 사진 설팅장치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23 | 개 | 노출계(사진용) | 385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 용품 제조업 |
| 38524 | |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 100 | ※ | 눈검사기구 : 시력검사장치 및 눈 의 장애진단, 시력결핍 측정용 특수기구 |
| 111 | 대 | 영화촬영기(16mm초과하는 것) | 200 | ※ | 인조눈 |
| 112 | 대 | 영화촬영기(16mm이하) | 9 | | 기타 실험, 과학, 산업용 광학기구 |
| 113 | 대 | 영사기(16mm이하) | 911 | ※ | 광학측정 및 검사기구 |
| 114 | 대 | 영사기(16mm 초과하는 것) | 912 | ※ | 물리, 화학분석용 광학기구 |
| 115 | 대 | 영화녹음기(광전기식) | 913 | ※ | 거리측정기 광학폭탄 및 총기조준기 등 |
| 116 | ※ | 부품 | 914 | 개 | 쌍안경 |
| 38525 | | 사진 복사장치 제조업 | 919 | ※ | 기타 광학기구 |
| 111 | 대 | 사진 복사장치 | 3853 | | 시계 제조업 |
| 112 | 대 | 전자 복사기 | 38531 | | 일반 시계 제조업 |
| 900 | ※ | 사진 복사장치 및 전자 복사기 부품 | 111 | 천개 | 일반 손목시계(기계식) |
| 38526 | | 사진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 112 | 천개 | 일반 벽시계(기계식) |
| 100 | ※ | 사진 및 영사실 장비 환등기, 사진 확대 및 축소기, 필름현상기, 절 단기, 영화 확대 및 축소기, 필름현상 탱크, 특수 건조기, 영사 스크린 등 | 113 | 천개 | 일반 탁상시계(기계식) |
| 38527 | |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 119 | ※ | 기타 일반시계(타임크록 및 스톱 워치등 포함) |
| 1 | | 망원경 및 기타 원거리 현상관측용 기구 | 38532 | | 전기 전자시계 제조업 |
| 111 | 대 | 굴절망원경(천문기구 제외) | 111 | 천개 | 전자 손목시계 |
| 112 | 대 | 천문기구 | 112 | 천개 | 전자 벽시계 |
| 200 | 대 | 복합광학 현미경 | 113 | 천개 | 전자 탁상시계 |
| 300 | 대 | 전자 및 양자현미경, 회절장치 광 선대신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광 학현미경과 구별 | 119 | ※ | 기타 전기전자시계(타임크록 및 스톱워치등 포함) |
| 38528 | | 안경 제조업 | 38533 | | 시계부품 제조업 |
| 111 | 천개 | 안경테 | 111 | 천개 | 시계기동부 |
| 112 | 천개 | 교정용 안경 | 112 | 천개 | 휴대용 시계케이스 |
| 113 | 천개 | 선그라스 | 113 | 천개 | 큰시계 케이스 |
| 119 | ※ | 기타 안경 및 부품 | 114 | ※ | 기동부품, 속도조정, 장치대동 |
| | | | 115 | ※ | 시계반제품(일부부품 결합)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9 | ※ | 기타 시계부품 | 214 | 개 | 진동, 팽창, 충격검사기(지진계와 진동계는 제외) |
| 3854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215 | 대 | 내연기관, 차량브레이크, 펌프, 속도계 등 검사용 시험대 |
| 38541 | | 측량기구 제조업 | 219 | ※ | 기타 측정 및 검사기구 |
| 111 | 대 | 경위의 | 38544 | |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112 | 대 | 전경의(토지측량용) | 100 | ※ | 천문, 수로 및 지구물리학 기구 풍속, 풍향계, 태양계, 유속계, 간만기록계, 지진계 등 |
| 113 | 대 | 수평의 | 211 | ※ | 습도계 및 사이크로 미터 액화밀도 및 비중측정계, 기압 계, 습도계 등 |
| 114 | 대 | 시준의=조준의 | 212 | 천개 | 온도계(체온계 포함) |
| 115 | 개 | 광학자 | 300 | ※ | 물리 및 화학분석용 기구 |
| 116 | 개 | 판도매터 | 38545 | |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
| 117 | 개 | 경사계(경사각 등을 측정함) | 111 | 대 | 가스 공급계기 |
| 118 | 개 | 측량용 평판, 렌드체인 | 112 | 대 | 액체 공급계기(수도미터 제외) |
| 121 | 대 | 항공사진용 기구 및 장치 | 113 | 대 | 수도미터 |
| 129 | ※ | 기타 측량기구 | 119 | ※ | 기타 가스 및 액체용 적산계기와 부품 |
| 38542 | |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 38546 | |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
| 111 | ※ | 도안 및 제도기구 | 111 | 대 | 계산장치 회전계산기, 생산계산기, 시 간계, 보수계, 택시미터등 |
| 112 | ※ | 수학적 계산기구 | 112 | 개 | 속도계 및 타코메터 (항공기용 타코메터는 제외) |
| 113 | ※ | 측면기, 측정봉, 분도기 및 유사제 품(비전기식) | 113 | 개 | 스트로 보스코프 |
| 38543 | |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 119 | ※ | 기타 관련기기 및 부품 |
| 1 | | 산업재료 시험용 기계 및 기기 | 38547 |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 조업 |
| 111 | 대 | 금속시험기계 및 기기 장력, 강도, 연성 시험기등 압 축 또는 충격용 기구 | 111 | 대 | 적산 전력계 |
| 112 | 대 | 섬유시험기계 및 기기 | 112 | ※ | 전자 계측기 |
| 113 | 대 | 종이, 판지, 리놀륨, 연성프라스 틱 또는 연성고무 시험용 기기 | | | |
| 119 | ※ | 기타 재료 시험용 기계 및 기기 | | | |
| 2 | | 기타 측정 및 검사기구 | | | |
| 211 | 개 | 평형기 | | | |
| 212 | 개 | 압력계=동력계 | | | |
| 213 | 개 | 시계 또는 시계부품 검사기구 | | |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13 | ※ | 오실로스코우프 및 오실로그래프 | | | |
| 114 | ※ | 전자 및 전기 회로시험, 검사분석 기구 또는 장치 | | | |
| 115 | ※ | 방사성검사 또는 측정용기구 | | | |
| 119 | ※ | 기타 전자시험 및 분석기구 및 부 품 | | | |
| 38548 | |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 | |
| 111 | ※ | 산업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 | | |
| 112 | ※ | 산업환경 자동통제기 | | | |
| 113 | 대 | 압력계기-산업공정용 | | | |
| 114 | 대 | 수평계기 | | | |
| 115 | 대 | 가습장치·가습조절기-산업용 | | | |
| 116 | 개 | 가스 및 액체분석기구 | | | |
| 117 | 개 | 온도 조절기구 | | | |
| 119 | ※ | 기타 관련기구 및 부품 | | | |
| 385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방비 제조업 | | | |
| 1 | | <u>항행 항해용기구</u> | | | |
| 111 | ※ | 항공기 항해용기구(나침반 제외) | | | |
| 112 | ※ | 항해용기구 | | | |
| 113 | 개 | 나침반 | | | |
| 2 | | <u>항공기 기관계기</u> | | | |
| 211 | ※ | 항공기 기관계기 | | | |
| 212 | ※ | 기체장비용 계기 | | | |
| 300 | 개 | 정밀저울(감도5cm g 미만) | | | |
| 900 | ※ |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 비 및 부품 | | | |

중분류 39. 기 타 제 조 업

| 분 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 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390 | | 기타제조업 | | | |
| 3901 | |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 39010 | |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 1 | | 귀석 및 반귀석, 가공한 것, 장치 <u>하지 않은 것</u> | | | |
| 111 | ※ | 다이아몬드-장식용 | | | |
| 112 | ※ | 장신구용 귀석 및 반귀석 | | | |
| 113 | ※ | 기구, 다이, 시계 또는 기타 장치 용 보석 | 313 | ※ | 시계부착물 |
| 114 | ※ | 장신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진 주 | 319 | ※ | 기타의 백금 또는 순금의 장신구 남자용(카프랑크, 프레스, 스루 드 단추, 타이핀 및 크립, 시계 줄) 학교뱃지, 군계급장, 메달, 십자가, 염주, 담배케이스, 안 경케이스, 바클, 머리핀, 빗 등 |
| 115 | ※ | 귀석 또는 반귀석의 가루 | 4 | | 입힌 귀금속 또는 은합금의 장신구 |
| 116 | ※ | 자개가공 및 제품 | 411 | ※ | 반지 |
| 2 | | 귀석, 진주 또는 반귀석제품 | 412 | ※ | 여성용 장신구 |
| 211 | ※ | 개인장식 소재품 반지, 팔찌, 목걸이(순수한 장 식용), 단추, 옷핀, 라이클릴 및 핀, 시계줄, 담배케이스, 안경 케이스, 립스틱홀더(휴대용)등 | 413 | ※ | 시계 부착물 |
| 219 | ※ | 기타의 귀석, 진주 또는 반귀석 제 품 빗, 브러쉬, 거울, 합(휴대용보 다 큰 것), 칼, 포크(손잡이 장 식 실내 장식용), 지팡이, 우 산, 핸드백의 부품 | 419 | ※ | 기타의 귀금속 또는 은합금의 장신 구 |
| 3 | | 백금 또는 순금의 장신구 | 5 | | 귀금속, 입힌 귀금속 또는 도금 귀 금속의 프래트웨어 |
| 311 | ※ | 반지(보석 결합된 것 포함) | 511 | ※ | 귀금속의 프래트웨어 칼, 조각용세트, 스푼, 포크, 국 자 등 식품 취급용 제품 |
| 312 | ※ | 여성용 장신구(반지 제외) 팔찌, 브로찌, 귀걸이, 목걸이, 핀, 크립, 시계줄, 벨트 및 | 512 | ※ | 도금 귀금속의 프래트웨어 |
| | | | 6 | | 귀금속 입힌 귀금속, 도금 귀금속 의 홀로우 웨어 |
| | | | 611 | ※ | 귀금속 홀로우 웨어 |
| | | | 612 | ※ | 도금 귀금속의 홀로우 웨어 접시, 쟁반, 국주발, 소스병, 설 탕 그릇, 커피포트, 티포트, 찻 잔, 술잔, decanter, 병마개 및 유사 식탁용품 |
| | | | 700 | ※ | 동전(모든 금속의 것) |
| | | | 800 | ※ | 장신구 재단물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9 | | 기타 금은세공품 | 39024 | | 관악기 제조업 |
| 911 | ※ | 귀금속 또는 압연 귀금속의 제품 화장제품, 사무실장비, 직연용 구, 교회장식용품, 가정용제품 등 | 111 | ※ | 목관악기 플루트, 반슈리스, 피콜로, 피 리오보에, 리코더, 바수-운, 콘 트라-바수운, 클라리넷, 섹스 폰, 사로스폰, 크롬혼 등 |
| 912 | ※ | 도금 귀금속제품 | 112 | ※ | 금관악기 트럼펫, 크라리온, 코르넷, 트 럼본, 소우서폰, 나팔 |
| 919 | ※ | 귀금속의 찌꺼기 | 119 | ※ | 기타 관악기 하모니카, 배그파이프, 브리턴 파이프, 뮤제트 |
| 3902 | | 악기제조업 | 121 | ※ | 관악기 부품 |
| 39021 | | 현건반악기 제조업 | 39025 | | 타악기 제조업 |
| 111 | 대 | 피아노 | 111 | ※ | 드럼 및 유사악기 드럼, 오케스트라, 팀파니, 케 롤드럼, 탬버린타브, 팀버린, 타블라스, 콩가, 봉고, 흠-흠 |
| 119 | ※ | 기타 현 건반악기 | 119 | ※ | 기타의 타악기 심발, 종, 트라이앵글, 징글링 조, 리벤, 마라카스, 클레이브, 우드 블럭킬러폰, 바림바, 메탈 로폰 및 사론, 셀레스타, 플렉사 톤, 유태하아프 |
| 200 | ※ | 현 건반악기 부품 | 121 | ※ | 타악기 부품 |
| 39022 | | 건반 관악기 제조업 | 39026 | | 전자악기 제조업 |
| 111 | 대 | 올겐 파이프 및 리드올겐 유사악기 포함 | 111 | 대 | 전자 건반악기 전자피아노, 전자올겐, 전자아 코디온 |
| 112 | 개 | 하모니움 | 112 | 대 | 전자 현악기 전기기타, 베이스기타 |
| 113 | 개 | 휴대용 건반관악기 아코디온, 콘서티나, 반도니온 등 | 119 | ※ | 기타 전자악기 (전자 타악기 포함) |
| 119 | ※ | 건반 관악기 부품 | | | |
| 39023 | | 현악기 제조업 | | | |
| 111 | ※ | 활로 켜는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비올라첼로, 베이스비올라, 더블베이스 등 | | | |
| 112 | ※ | 뜯는 현악기 만도린, 후레, 만도라, lyre, 벤 조, 우크레레 등 | | | |
| 113 | 대 | 기타 (guitar) | | | |
| 119 | ※ | 기타 현악기 에올리언, 하프, 덤바이올린, 허리-거리 등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39027 | | 국악기 제조업 | 119 | ※ | 기타의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
| 100 | ※ | 국악기 가야금, 거문고, 장고, 북, 팽과 리, 징, 바라, 피리, 대금, 아쟁 등 | 39033 | | 낚시장비 제조업 |
| 3902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악기 제조업 | 111 | 천개 | 낚시대 |
| 100 | ※ | 기타 악기 오케스트리온, 바렐올겐, 톱악 기 등 | 112 | 천개 | 릴 |
| 200 | ※ | 악기용 현 기타, 전기기타, 첼로, 밴조, 바 이올린 등의 선 | 119 | ※ | 기타의 낚시장비(낚시바늘, 부찌, 줄 등) |
| 3903 |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903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
| 39031 | |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 제조 업 | 100 | ※ | 트랙 및 필드 장비 뿔, 장대, 높이뛰기 및 장대높 이뛰기, 낙하판, 허들, 자벨린, 스타링블럭, 계주바톤 등 |
| 111 | ※ | 체조장비 및 기계식 훈련기 | 200 | ※ | 골프장비 골프클럽, 샤프트, 골프공, 마커 및 와이퍼, 인조잔디, 플라스틱볼 은 356, 골프백은 323에 분류 |
| 112 | ※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 300 | ※ | 동계경기장비 스케이트(로울러 스케이트 제 외) 설상화, 스키, 봅슬라이 및 토토보간, 아이스요트, 스노우 모 빌, 동물견인 썰매는 384에 분류 |
| 119 | ※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 411 | ※ | 당구장비 당구대, 큐, 큐팁, 큐패드, 큐레 스트, 브리지, 볼랙크, 아운터, 볼 |
| 39032 | |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 412 | ※ | 볼링 및 유사장비 기계식핀, 세팅기, 핀포스터, 셔플보드판 |
| 111 | 천개 | 라켓(테니스라켓 제외) | 9 | | 기타 경기용품 |
| 112 | 개 | 테니스라켓 | 911 | ※ | 수렵용품 |
| 113 | ※ | 배트, 스틱 및 맬릿 스키 및 골프스틱 제외 | 912 | ※ | 수중용 경기용품 다이빙보드 및 스페이지, 워터 |
| 114 | 천개 | 공-대형(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공 등) | | | |
| 115 | 천개 | 공-소형(야구, 테니스, 탁구공 등) 골프공은 39039에 분류 | | | |
| 116 | ※ | 공-완구용(어린이 놀이용공 등) | | | |
| 117 | 개 | 야구장갑(완구용 제외) | | | |
| 118 | ※ | 기타 글러브 및 경기용 보호물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919 | ※ | 스키, 호흡용 마스크 기타의 경기용품 팬싱용 무기, 투사용 칼, 로올러 스케이트, 탁구대, 등산용일음 도끼 등 |
| 3904 |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39041 | | 인형 제조업 |
| 100 | ※ | 인형(봉제완구 및 조립, 사람 및 동물모양 또는 가상형태) |
| 900 | ※ | 인형 악세사리와 부품 |
| 39042 | | 승용장난감 제조업 |
| 100 | ※ | 승용물 장난감(어린이용)-탈수 있 는 것 (세발자전거, 보행기, 유모차, 스쿠터, 족담식 자동차 등. 어린이용 2륜자전거는 38441112에 분류) |
| 900 | ※ | 승용장난감 부품 |
| 39043 | | 장난감 제조업, 인형 및 승용제외 |
| 100 | ※ | 장난감(인형 및 승용장난감 제외) 과학용장난감, 동력식장난감, 장난감무기, 장난감집 및 모형, 조립용 장난감, 장난감 악기 등 |
| 900 | ※ | 장난감 부품(인형 및 승용장난감 부품 제외) |
| 39044 | | 오락용품 및 기계 장비 제조업 |
| 100 | 대 | 테이블용 게임장비(전자오락기계) |
| 200 | ※ | 판게임용 장비(장기, 바둑, 체스 등) |
| 900 | ※ | 기타 오락용품과 기계장비 및 부품 |
| 3904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00 | ※ | 축제용품 및 악세사리 (카니발 및 유희용품, 크리스마 스 장식품등의 축제용품) |
| 900 | ※ | 기타 오락, 축제용품 및 부품 |
| 3905 | |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 |
| 39051 | | 장식용칠기 제조업 |
| 100 | ※ | 장식용 칠기(칠기가구제조업은 33203에 분류) |
| 39052 | | 모조장식품 제조업, 칠기 제외 |
| 100 | ※ | 가정용 공예장식품 |
| 200 | ※ | 의복장신구(몸치장용, 모조장식 품) |
| 300 | ※ | 동식물 및 광물성재료의 조각제품 (상아, 패류, 산호 등) |
| 900 | ※ | 기타 보조장식품 |
| 39053 | |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
| 111 | ※ | 표구제품 |
| 119 | ※ | 표구부속품 |
| 39054 | | 조화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100 | ※ | 인조꽃(조화) 및 유사제품 |
| 39055 | | 가발제조업 |
| 111 | ※ | 인조 및 동물털 표백, 염색, 웨이브 등 가공한 것 |
| 112 | 천개 | 가발 |
| 113 | 천조 | 가늌셋 |
| 114 | kg | 정인모(가공된 것) |
| 115 | kg | 인모(가공되지 않은것) |
| 119 | ※ | 기타 모발제품 가수염, 가속눈셋 등 |
| 3905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 |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분류 번호 | 단 위 | 산 업 및 품 목 명 |
|----------|--------|--|----------|--------|---|
| 100 | ※ | 기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상패, 감사패, 트로피, 대형실 내장식용 메달 등) | 114 | ※ | 양산살대 |
| 3909 | | 기타 제조업 | 119 | ※ | 우산 및 양산의 부품 |
| 39091 |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200 | 천개 | 지팡이 |
| 111 | ※ | 펜, 펜홀더, 펜촉, 철필, 펜대, 펜 촉 | 39093 | | 비 및 솔 제조업 |
| 112 | 천개 | 만년필 | 111 | kg | 정돈모 |
| 113 | 천개 | 볼펜 | | | 폐지털 및 기타 스텝크, 다람쥐 등, 솔 제조용 털로 가공된 것 |
| 114 | 천타 | 연필 | 112 | ※ | 걸레 |
| 115 | ※ | 크레용, 파스텔 | | | 주로 섬유재료 또는 기타 흡수 성 섬유나 천연 또는 인조 스폰 지의 걸레 |
| 116 | 개 | 스탬프 | 113 | ※ | 비 및 솔 |
| 117 | ※ | 타자기용 리본 및 잉크패드 | 114 | ※ | 페인트 브러쉬, 페인트 로울러 사 무용 브러쉬, 붓 등 포함 |
| 118 | kg | 복사지 | 115 | ※ | 기계 부품솔 |
| 121 | ※ | 그림물감 | | | 도로청소기용 솔, 방적 및 직조 기용 솔, 전기가정기기용 솔, 기 계에 부착하도록 된 걸레도 포 함 |
| 122 | 천타 | 펠트 또는 포러스팁의 펜과 마이커 (싸인펜, 프러스펜, 컬러켄, 매 직펜 포함) | 116 | ※ | 개인 위생용 솔 |
| 123 | 천개 | 기계식 연필(샤프) | | | 헤어브러쉬, 옷솔, 구두솔, 빗 솔, 손톱솔, 면도솔, 동물용 솔 |
| 124 | 천개 | 붓 | 117 | 천개 | 치솔 |
| 125 | 천개 | 지우개 | 119 | ※ | 기타의 비 및 솔 |
| 126 | 천개 | 필통 | | | 인쇄기 및 타이프라이터용 솔 방비, 스파킹 프러그 청소용 솔, 수세미, 철선솔, 깃털, 먼지털 이 및 분침 포함 |
| 127 | 개 | 흑판 | 39094 | | 라이터 및 흡연용품 제조업 |
| 128 | 천개 | 분필(제도용 및 당구용 포함) | 111 | 천개 | 라이터(영구용) |
| 131 | 천개 | 삼각자 및 기타 자 | 112 | 천개 | 라이터(1회용) |
| 132 | 천개 | 인장(도장) | 113 | 천개 | 흡연용 파이프(담배대 포함) |
| 133 | 천개 | 인주 | | | |
| 900 | ※ | 기타의 사무 및 회화용품 | | | |
| 39092 | |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 | |
| 111 | 천개 | 철제우산 | | | |
| 112 | 천개 | 양산 | | | |
| 113 | 천개 | 비닐우산 | | | |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분류 번호 | 단위 | 산업 및 품목명 |
|----------|----|---|----------|----|----------|
| 115 | kg | 담배용 필터 | | | |
| 119 | ※ | 라이터 및 흡연용품의 부품 | | | |
| 39095 | | 파스너(지퍼)제조업 | | | |
| 100 | km | 파스너(지퍼) | | | |
| 900 | ※ | 파스너 부속품 | | | |
| 39096 | | 단추 제조업 | | | |
| 100 | ※ | 단추, 커프링크스(고무 및 프라스 틱제 압출 성형 단추는 35594와 35605에 분류) | | | |
| 39097 |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 |
| 100 | ※ | 간판 및 광고진열물 | | | |
| 39099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 | | |
| 111 | ※ | 바늘 및 핀 | | | |
| 112 | ※ | 부채 및 합죽선 | | | |
| 113 | ※ | 빗 | | | |
| 114 | ※ | 버클 및 뱃지 | | | |
| 115 | ※ | 활동적인 진열물 | | | |
| 116 | ※ | 마네킹 | | | |
| 90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품 | | | |

부 록

1. 품 목 색 인 표
2. 도 량 형 단 위 환 산 표
3.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품목 및 세율

품 목 색 인 표

부록 1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가공용기계 | | | 콩가루 | kg | 31161 213 |
| 고체광물가공용 | 대 | 38241 111 ~ 200 | 감자가루 | kg | 31161 214 |
| 식료품가공용 | 대 | 38243 111 ~ 929 | 전분야채가루 | kg | 31161 215 |
| 프라스틱가공용 | ※ | 38245 119 | 과실가루 | ※ | 31161 216 |
| 고무가공용 | ※ | 38245 119 | 커피콩(접질 벗긴것) | ※ | 31161 217 |
| 가죽가공용 | ※ | 38242 913 | 기타 야채 및 과실가루 | ※ | 31161 219 |
| 가공운모 및 그 제품 | ※ | 36999 111 | 겨자가루 | kg | 31214 113 |
| 가공관석 | ※ | 36994 114 | 후추가루 | kg | 31214 112 |
| 가구 | | | 고추가루 | kg | 31214 111 |
| 금속제가구 | 천개 | 38121 111 ~ 119 | 카레가루 | kg | 31214 114 |
| 목재가구 | 개 | 33201 111 ~ 200 | 녹말가루(전분) | kg | 31225 111 |
| 내장가구 | ※ | 33202 111 ~ 400 | 글루텐 및 글루텐가루 | kg | 31225 114 |
| 나전칠기가구 | 개 | 33203 111 ~ 119 | 가름정광 | ※ | 23029 919 |
| 등가구 | ※ | 33204 100 | 가마니 | ※ | 32195 111 |
| 프라스틱가구 | ※ | 35604 114 | 가마니틀 | 대 | 38221 415 |
| 가구용철물 | ※ | 38117 112 | 가발 | 천개 | 39055 112 |
| 가금 부화기 | 대 | 38220 611 | 가방(금속제 제외) | 개 | 32332 100 |
| 가금 사육기(병아리사육용) | 대 | 38220 612 | 가방(금속제) | 개 | 38122 113 |
| 가금 사육기(기타 가금 사육용) | 대 | 38220 619 | 가방 부착용 철물 | ※ | 38117 114 |
| 가나마이신 | ※ | 35223 115 | 가변 저항기(전자기기용) | 천개 | 38344 112 |
| 가눈섭 | 천조 | 39055 113 | 가변 축전기 | 천개 | 38343 112 |
| 가단주물 | ※ | 37134 111 | 가소제(가성칼리 = 수산화칼리) | ※ | 35122 112 |
| 가당마초 | ※ | 31230 111 | 가솔린 | | |
| 가루 | | | 항공기용 가솔린 | ℓ | 35300 211 |
| 밀가루 | ※ | 31161 211 | 모터가솔린 = 휘발유 | ℓ | 35300 212 |
| 곡물가루(옥분포함) | kg | 31161 212 | 가성칼리(가소제) | ※ | 35122 112 |
| | | | 가성소오다(수산화나트륨) | ※ | 35122 111 |
| | | | 가스 | | |
| | | | 프로판가스 | ℓ | 35300 311 |
| | | | 부탄가스 | ℓ | 35300 312 |
| | | | 기타 액화 석유가스 | ※ | 35300 319 |
| | | | 산소(오존포함) | m³ | 35123 111 |
| | | | 질소 | m³ | 35123 112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최소가스 | m ³ | 35123 113 | 가정용 저울 | 개 | 38254 113 |
| 액체공기 | m ³ | 35123 114 | 가정용 집기 | ※ | 38142 111 ~ 219 |
| 아세틸렌가스 | kg | 35123 115 | 가정용 펌프 (수동식 제외) | 대 | 38291 113 |
| 클로로불화메탄 및 에탄 | m ³ | 35123 116 | 가정용 편물기 | 대 | 38242 413 |
| 혼합산업용가스 | m ³ | 35123 117 | 가정용 토기 제품 | ※ | 36101 100 |
| 수소 | m ³ | 35123 211 | 가죽 | | |
| 헬륨 | m ³ | 35123 212 | 쇠가죽 | m ² | 32311 111 |
| 이산화탄소 | m ³ | 35123 213 | 말가죽 | m ² | 32311 112 |
| 일산화탄소 | m ³ | 35123 214 | 돼지가죽 | m ² | 32311 113 |
| 산화질소 및 산화질산 | m ³ | 35123 215 | 양가죽 | m ² | 32311 211 |
| 기타 산업용가스 | ※ | 35123 219 | 염소가죽 | m ² | 32311 212 |
| 가스 공급제기 | 대 | 38545 111 | 세무 손질가죽 | m ² | 32311 311 |
| 가스 난로 | 대 | 38194 213 | 파치먼트 손질가죽 | m ² | 32311 312 |
| 가스 레인지 | 대 | 38265 112 | 재생가죽 | m ² | 32312 100 |
| 가스 마스크 | ※ | 38513 112 | 인조가죽 | m ² | 32312 200 |
| 가스 및 액체 분석기구 | 개 | 38548 116 | 가죽 가공기계 | 대 | 38242 913 |
| 가스 발생기 | ※ | 38299 415 | 가죽 운동화 (갑피가 순수가죽) | 천족 | 35591 114 |
| 가스 분리 플랜트 | 대 | 38244 111 | 기타 운동화 (갑피가 기타 | 천족 | 35591 115 |
| 가스 세정기 또는 흡수탑 | 대 | 38134 215 | 재료로 된것) | | |
| 가스연료 불꽃점화기관 | 대 | 38211 100 | 가죽용 재봉기 | 대 | 38295 212 |
| 가스 용접장치 | 대 | 38233 112 | 가죽의복 | | |
| 가스터빈 (항공기용은 38490 에 | 대 | 38212 300 | 남자용 가죽의복 | 착 | 32226 111 |
| 분류) | | | 여자용 가죽의복 | 착 | 32226 112 |
| 가습기(가정용) | 개 | 38339 113 | 인조 가죽의복 | 착 | 32226 113 |
| 가습장치(산업용) | 대 | 38548 115 | 가죽장갑 | 조 | 32228 112 |
| 가아제 | ※ | 32196 119 | 가죽장화 | 족 | 32401 200 |
| 가야금 | ※ | 39027 100 | 가죽케이스 | 개 | 32334 111 |
| 가위 (보통가위) | 한개 | 38112 114 | 가황고무사 및 코드 | ※ | 35592 111 |
| 가위 (양철가위) | 천개 | 38113 111 | 각반 및 유사제품 | ※ | 32409 100 |
| 가위 (전지용가위) | ※ | 38114 119 | 각연 | kg | 31402 200 |
| 가정기기용 캐비넷 (목재) | 개 | 33205 100 | 각종 봉투 | 백매 | 34194 111 |
| 가정기기용 캐비넷 (프라스틱재) | ※ | 35604 113 | 간만기록계 | ※ | 38544 100 |
| 가정용 내장가구 | ※ | 33202 111 | 간이 강시판 | ㎡ | 37121 232 |
| 가정용 냉장고 (전기냉장고) | 대 | 38331 111 | 간장 | kg | 31211 111 |
| 가정용 도자 식기 | 천개 | 36102 111 | 간판 및 광고 진열물 | ※ | 39097 100 |
| 가정용 자기 제품 | ※ | 36102 112 | 갈철광 | ㎡ | 23010 113 |
| | | | 갈탄 | ㎡ | 21020 100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갈탄왁스 및 기타 광물왁스 | ㄱ | 35409 113 | 경기 | ㄱ | 34113 112 |
| 갈포 | kg | 32129 114 | 저들 | ※ | 32225 111 |
| 갈포벽지 | m ² | 32145 112 | 거리 측정기(광학, 목탄 및 총기 조준기 등) | ※ | 38529 913 |
| 감광유제 | kg | 35296 216 | 저문고 | ※ | 39027 100 |
| 감광저울 | 개 | 38549 300 | 저울판 및 유리 | ※ | 36202 113 |
| 감광지(인화지 포함) | ※ | 35296 113 | 저질은 알루미늄 주물 | kg | 37241 112 |
| 감귤류 과실(가공한것) | kg | 31139 111 | 건물 구조재(목재) | ※ | 33112 113 |
| 감도계 | kg | 35296 213 | 건물 부착물(목재) | ※ | 33112 112 |
| 감속기 | 개 | 38297 116 | 건물석 | ※ | 36994 112 |
| 감자가루 | kg | 31161 214 | 건물용 문(철계) | ㄱ | 38131 111 |
| 강관(주철관 제외) | | | 건물용 문(콘크리트계) | ※ | 36935 112 |
| 무게 목관 | ㄱ | 37123 111 | 건물용 샷시(알루미늄 샷시바 는 37232 에 분류) | ㄱ | 38131 112 |
| 전기용접 강관 | ㄱ | 37123 112 | 건물용 샷터 | ㄱ | 38131 113 |
| 단접 강관 | ㄱ | 37123 113 | 건반악기 | | |
| 아크용접 강관 | ㄱ | 37123 114 | 피아노(전자피아노 제외) | 대 | 39021 111 |
| 리벳트 강관 | ㄱ | 37123 115 | 울건(전자울건 제외) | 대 | 39022 111 |
| 강괴 | | | 하모니움 | 개 | 39022 112 |
| 보통 단조용 강괴 | ㄱ | 37113 121 | 휴대용 건반관악기 | 개 | 39022 113 |
| 고탄소강 단조용 강괴 | ㄱ | 37113 122 | 기타 현건반악기 | ※ | 39021 119 |
| 합금강 단조용 강괴 | ㄱ | 37113 123 | 전자피아노 | 대 | 39026 111 |
| 보통 압연용 강괴 | ㄱ | 37113 111 | 전자울건 | 대 | 39026 111 |
| 고탄소강 압연용 강괴 | ㄱ | 37113 112 | 전자아코디온 | 대 | 39026 111 |
| 합금강 압연용 강괴 | ㄱ | 37113 113 | 현건반악기부품 | ※ | 39021 200 |
| 강시판 | ㄱ | 37121 231 | 건반관악기부품 | ※ | 39022 119 |
| 강구·강방 | ※ | 38297 111 | 전빵 | kg | 31172 113 |
| 강관(표면처리강관은 37192 에 분류) | ㄱ | 37121 311 | 전염 열료 | ㄱ | 35131 116 |
| 강화유리 | 상자 | 36202 211 | 전전지 | 천개 | 38394 111 |
| 강통따개 | ※ | 38119 119 | 전조야채 | ※ | 31139 200 |
| 개량목재 | m ³ | 33115 111 | 건축용 및 장식용 금속제품 | ※ | 38132 100 |
| 개버딘 | 천m ² | 32121 112 | 건축용지 | m ² | 34115 111 |
| 개인 위생용술(웃술, 구두술, 치 술, 면도술) | ※ | 39093 116 | 전포도 | ※ | 31139 113 |
| 개인장식 소재품 | ※ | 39010 211 | 절레 | ※ | 39093 112 |
| 개인 또는 가정용 바구니 | ※ | 33125 112 | | |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검 또는 전분성 물질 또는 도포직물 | ※ | 32194 111 | 경철 | ※ | 37112 200 |
| 검사기 | 대 | 38220 613 | 경랍 | ※ | 31151 114 |
| 검사차 및 기타 특수 목적 차량(철도차량) | 량 | 38422 112 | 경호단 | 천㎡ | 32123 112 |
| 검 | ※ | 31173 312 |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 ※ | 35594 100 |
| 검질 및 가공부스러기(과실, 채소) | ※ | 31139 500 | 경화 동물기름 | ※ | 31151 400 |
| 게임 장비 | ※ | 39044 900 | 경화 식물성기름 | ※ | 31152 400 |
| 겨 | ※ | 31161 129 | 경화 파이버 보드 제조기 | 대 | 38246 122 |
| 저자가루 | kg | 31214 113 | 제급장 | ※ | 39010 319 |
| (검질벗긴) 견과 | ※ | 31229 200 | 제기류 | | |
| 견방적기 | 대 | 38242 213 | 측량기계기구 | 대·개 | 38541 111 |
| 견방적사 | kg | 32115 112 | | | ~ 129 |
| 견연사 | kg | 32117 112 | 도안 및 제도기구 | ※ | 38542 111 |
| 견인 제어장비, 산업용 드라이 브, 전동기 제어장비 및 관 련장비 | 대 | 38314 111 | | | ~ 113 |
| 견직기 | 대 | 38242 312 | 검사 및 시험용기구 | 대·개 | 38543 111 |
| 견직물(노일 견직물 제외) | 千㎡ | 32123 111 | | | ~ 219 |
| 견과일 및 서닐직물 | 千㎡ | 32123 113 | 이화학 및 과학용기구 | 개·※ | 38544 100 |
| 견(황)편직물 | kg | 32155 113 | | | ~ 300 |
| 견혼방사 | kg | 32115 112 | 전기공급계기 | 대 | 38547 111 |
| 견혼방직물 | 천㎡ | 32123 200 | | | ~ 119 |
| 결합보정구 | ※ | 38515 114 | 가스 또는 액체공급계기 | 대 | 38545 111 |
| 경강선 | ※ | 37124 213 | | | ~ 112 |
| 경케초(30 kg/㎡미만) | ※ | 37121 712 | 항공, 항해용기구 | 개 | 38549 111 |
| 경금속선(선박) | kg | 38419 213 | | | ~ 900 |
| 경기북 | 착 | 32222 500 | 제량형펌프 | 대 | 38291 112 |
| 경기용 및 유사신발 | 족 | 32402 113 | 제면활성제 | | |
| 경사제(경사자 등을 측정함) | 개 | 38541 117 | 유기제면활성제 | ※ | 35233 111 |
| 경성 합성세제 | ※ | 35232 112 | 조제제면활성제 | ※ | 35233 112 |
| 경운기 | 대 | 38220 311 | 기타제면활성제 | ※ | 35233 119 |
| 경유 | ℓ | 35300 216 | 제면활성 조제품(세제 제외) | ※ | 35233 112 |
| 경위의 | 대 | 38541 111 | 제산기 | | |
| | | | 전자제산기 | 대 | 38252 111 |
| | | | 회계기 | 대 | 38252 112 |
| | | | 금전등록기 | 대 | 38252 113 |
| | | | 기타 제산장치 결합기 | ※ | 38252 119 |
| | | | 제산기 부품 | ※ | 38252 121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계산장치(메터기) | 대 | 38546 111 | 고압 축전기-산업용 | 대 | 38319 211 |
| 계수 표시 방전판(표시판) | 개 | 38341 114 | 고정 저항기(전자기기용) | 千개 | 38344 111 |
| 고기 가공용 기계 | 대 | 38243 914 | 고정 축전기(콘덴서)-전지부품용 | 千개 | 38343 111 |
| 고기엑스, 고기수율 및 고기쥬스 | ※ | 31119 300 | 고체광물 채취 및 개선용 기계 | 대 | 38241 111 |
| 고기연화제(고기유연제) | ※ | 31219 113 | 장비 | | ~ 119 |
| 고기통조림(돈육, 우육 등) | kg | 31111 100 | 고체 및 반고체 연료 | kg | 35299 116 |
| 고등어통조림 | kg | 31141 112 | 고체용 통 | 개 | 33121 112 |
| 고래고기 | ※ | 31149 111 | 고추가루 | kg | 31214 111 |
| 고량주 | ℓ | 31314 111 | 고추장 | ℓ | 31211 113 |
| 고령토 | ℓ | 29032 111 | 고탄소강 선재 | ℓ | 37124 112 |
| 고로 시멘트 | ℓ | 36921 113 | 고탄소강 슬라브 | ℓ | 37113 312 |
| 고로용 블록(벽돌) | ℓ | 36941 112 | 교낙 | ℓ | 31315 111 |
| 고무(경화고무) | ※ | 35594 100 | 곡괭이 및 쟁이 | 개 | 38114 112 |
| 고무(합성고무) | ℓ | 35115 111~200 | 곡물가루(옥분포함) | kg | 31161 212 |
| 고무(산업용 기공제품) | km·※ | 35592 111~200 | 곡물건조기 | 대 | 38220 622 |
| 고무 가공 기계 | 대 | 38245 111 | 곡물 계분하기 전 가공기 | 대 | 38243 214 |
| 고무가루 혼합물 | ※ | 35599 113 | 곡식튀김 조제식품 | ※ | 31169 100 |
| 고무공 | ※ | 35599 219 | 곡자 | kg | 31228 111 |
| 고무모자 | ※ | 35593 118 | 곤로(석유) | 대 | 38265 113 |
| 고무밴드 | ※ | 35592 119 | 골판 | ℓ | 37192 511 |
| 고무벨트 | ※ | 35592 114 | 골판지 | 천㎡ | 34193 116 |
| 고무보트, 부교 및 부유물 | ※ | 35599 212 | 골판지 상자 | 천㎡ | 34121 100 |
| 고무신 | 千족 | 35591 111 | 골판지 원지 | ℓ | 34119 111 |
| 고무스폰지 | ※ | 35592 116 | 골판지 제조기 | 대 | 38246 121 |
| 고무신 제조기 | 대 | 38245 113 | 골프장비 | ※ | 39039 200 |
| 고무의복 | ※ | 35593 116 | 골프차 | 대 | 38442 200 |
| 고무장갑 | ※ | 35593 117 | 공 | | |
| 고무장화 및 우화 | 千족 | 35591 112 | 대형공(축구, 농구, 배구공등) | 천개 | 39032 114 |
| 고무제 장난감 인형 | ※ | 35599 211 | 소형공(야구, 테니스, 탁구공 등) | 천개 | 39032 115 |
| 고무주머니 | ※ | 35593 112 | 완구용공 | ※ | 39032 116 |
| 고무직물 | ※ | 35592 115 | 공공건물용가구 | ※ | 33201 200 |
| 고무호스 | km | 35592 113 | 공기매트레스 및 베개쿠션 | ※ | 35599 213 |
| 고무 혼합직물 | ※ | 35599 112 | 공기 압축기(컴프레서) | 대 | 38291 118 |
| 고밀도 집적회로(LSI) | 천개 | 38342 114 | 공기 여과기 | 대 | 38292 115 |
| 고압애자(750V~7,000V미만) | 천개 | 36104 111 | | |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공기 조절기(차량) | 대 | 38264 112 | 초코렛과자 | kg | 31173 200 |
| 공기조절기(자장) | 대 | 38264 113 | 설탕과자(코코아 포함되지 않 은 것) | kg | 31173 311 |
| 공기청정기 및 집진장치 | 대 | 38292 114 | 캔디류(카라멜, 알사탕, 드류 프스 등) | kg | 31173 311 |
| 공기총(수렴용) | ※ | 39039 912 | 설탕 입힌 과실 | ※ | 31173 400 |
| 공기 펌프 | 대 | 38291 116 | 군견과 | ※ | 31173 500 |
| 공단 | 천㎡ | 32123 111 | 관(목관-시체 매장용) | ※ | 33195 100 |
| 공업용 비누 | ㎏ | 35231 114 | 관(콘크리트관) | 본 | 36939 111 |
| 공업용염(소금) | kg | 35299 135 | 관악기 | | |
| 공업용 집착제 | ㎏ | 35291 112 | 목관악기 | ※ | 39024 111 |
| 공업용 직물세탁 | ※ | 32149 100 | 금관악기 | ※ | 39024 112 |
| 공업용 펌프 | 대 | 38291 111 | 기타 관악기 | ※ | 39024 119 |
| (만능나무)공작기계 | 대 | 38235 122 | 관악기 부품 | ※ | 39024 121 |
| (복합금속)공작기계공구 | ※ | 38239 100 | 관장기 | ※ | 35593 111 |
| 공장선 | ㉔ | 38412 512 | 관 제조용 원심분리 성형기 | 대 | 38248 214 |
| 공채(노트) | 천권 | 34214 111 | 광고수입(신문사 및 출판사) | ※ | 34239 900 |
| 풍치통조림 | kg | 31141 111 | 광목 | 천㎡ | 32121 112 |
| 꽃감 | ※ | 31139 114 | 광목단 | 천㎡ | 32123 112 |
| 과당 | kg | 31226 113 | 광물성 블랙 | ㎏ | 35132 112 |
| 과망간칼륨 | ㎏ | 35121 515 | 광물유 첨가제 | kg | 35299 117 |
| 과린산석회 | ※ | 35152 119 | 광물 타르 | ㎏ | 35409 212 |
| 과산화 나트륨 | ㎏ | 35122 115 | 광산 기관차(지하) | 대 | 38421 211 |
| 과산화 수소 | ㎏ | 35121 318 | 광섬유 | ※ | 38521 100 |
| 과산화 아연 | ㎏ | 35121 312 | 광섬유케이블 | ※ | 38521 200 |
| 과산화 알루미늄 | ㎏ | 35121 315 | 광진기 | 대 | 38349 900 |
| 과실 및 기타 선별기 | 대 | 38220 416 | 광택기(수지식 동력) | 대 | 38234 118 |
| 과실 및 야채 가공용기계 | 대 | 38243 916 | 광택유리 및 생지 | ※ | 36205 111 |
| 과실류스 가공용 프레스, 파쇄 기 및 기타 기계 | 대 | 38243 918 | 광택제 | ㎏ | 35295 116 |
| 과실가루 | ※ | 31161 216 | 광택대강 | | |
| 과실통조림 | ㎏ | 31131 111 | 열연광택대강(보통강) | ㎏ | 37121 511 |
| 과자 | | | 열연광택대강(고탄소강) | ㎏ | 37121 512 |
| 비스킷(크래커, 쿠키포함) | kg | 31172 111 | 열연광택대강(합금강) | ㎏ | 37121 513 |
| 미과 | kg | 31172 112 | 냉연광택대강(보통강) | ㎏ | 37122 511 |
| 건빵 | kg | 31172 113 | 냉연광택대강(고탄소강) | ㎏ | 37122 512 |
| 기타 건과자 | ※ | 31172 119 | | | |
| 스낵류 | ※ | 31172 200 | |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냉연광폭대강(합금강) | ㎍ | 37122 513 | 국수 제조기 | 대 | 38243 912 |
| 광학자 | 개 | 38541 115 | 국악기 | ※ | 39027 100 |
| 광학요소 거울 | 개 | 38522 113 | 국자 | ※ | 38111 100 |
| 관 부착물 | ㎍ | 37123 116 | 국자(귀금속 또는 도금제품) | ※ | 39010 511 |
| 광학측정 및 검사기구 | ※ | 38529 911 | 국주발(도금, 귀금속제) | ※ | 39010 612 |
| 뽕가리 | ※ | 39027 100 | 군견과 | ※ | 31173 500 |
| 공예(가정용) | ※ | 39052 100 | 군용칼(칼집 포함) | ※ | 38112 119 |
| 교반 혼합기 | 대 | 38241 117 | 군장 | ※ | 39010 319 |
| 교정용 기구(정형외과용) | ※ | 38515 111 | 군커피 | ㎏ | 31227 112 |
| 교정용 안경 | 千개 | 38528 112 | 군커피 대용품 및 그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 | 31227 300 |
| 구강 세척제 | ㎏ | 35239 112 | 군함 | ㉜ | 38412 900 |
| 구난차 | 대 | 38431 400 | 군화 | 족 | 32401 200 |
| 구두 | | | 굴죽(콘크리트) | ※ | 36939 111 |
| 남자용 단화 | 족 | 32401 111 | 굴죽(철제) | ※ | 38135 119 |
| 여자용 단화 | 족 | 32401 112 | 굴곡기(금속성형용) | 대 | 38232 116 |
| 학생화 | 족 | 32401 113 | 굴절 망원경(천문기구 제외 38527 112 로 분류) | 대 | 38527 111 |
| 아동화 | 족 | 32401 114 | 굴착기(엑스카베이터 = 포크레인) | 대 | 38241 321 |
| 구두손 | ※ | 38119 119 | 굴통조림 | ㎏ | 31141 114 |
| 구두솔 | ※ | 39093 116 | 굴벌사육기 | 대 | 38220 621 |
| 구두약 | ㎍ | 35409 112 | 권연지 | ㎍ | 34199 111 |
| 구리→동(銅)참조 | | | 제조 | | |
| 구리스(정제구리스를 가공한것) | ㎔ | 35402 111 | 중제조(30 ㎏ / m 이상) | ㎍ | 37121 711 |
| 정제구리스 | ㎔ | 35300 500 | 경제조(30 ㎏ / m 미만) | ㎍ | 37121 712 |
| 구상 흑연주물 | ㎍ | 37134 112 | 제조자재 | ㎍ | 37121 713 |
| 구서제(취약) | ㎏ | 35160 114 | 귀질이(여성용 장신구) | ※ | 39010 312 |
| 구아노-미가공 | ㎍ | 29020 114 | 귀금속 또는 압연 귀금속의 제품 | ※ | 39010 911 |
| 구연산 | ㎍ | 35119 114 | 귀금속의 찌꺼기 | ※ | 39010 919 |
| 구조물 및 구조물 부품 | ※ | 38135 119 | 귀금속의 프래트 웨어(기물을 말함) | ※ | 39010 511 |
| 국기 | 개 | 32145 113 | 귀금속의 홀로우 웨어(") | ※ | 39010 611 |
| 구조물 부품 | ※ | 38135 200 | 귀석 또는 반귀석의 가루 | ※ | 39010 115 |
| 국수 | | | 귀석 및 반귀석(장신구용 다 | ※ | 39010 112 |
| 밀국수 | ㎏ | 31175 111 | | | |
| 메밀국수 | ㎏ | 31175 112 | | | |
| 당면 | ㎏ | 31175 113 | | | |
| 기타 국수 | ㎏ | 31175 112 | | |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이아몬드 제외 : 39010 111 에 분류) | | | 금고 | 개 | 38197 100 |
| 규산 나트륨 | ㄱ | 35122 211 | 금고부품 | ※ | 38197 200 |
| 규산 칼슘 | ㄱ | 35121 611 | 금관악기 | | |
| 규석 | ㄱ | 29032 114 | 트럼펫 | ※ | 39024 112 |
| 규석분 | ㄱ | 36995 114 | 트럼본, 나팔 | ※ | 39024 112 |
| 규소 | ㄱ | 35121 121 | 기타 금관악기 | ※ | 39024 112 |
| 규소철 | ㄱ | 37112 112 | 금광석 | ㄱ | 23023 111 |
| 규조토 | ㄱ | 29099 914 | 금속구조물 | | |
| 균질기, 조사기, 저온살균기, 응 축기 및 관련 우유 가공 기기 | 대 | 38243 112 | 육상금속구조물 | ㄱ | 38135 112 |
| 그네 | ※ | 39099 900 | 해상금속구조물 | ㄱ | 38135 113 |
| 그라인더 | 개 | 38119 212 | 금속관 이음쇠 | ㄱ | 38198 300 |
| 그라인딩 휠용 기계 | 대 | 38248 316 | 금속공작용 절삭구 | 개 | 38236 111 |
| 그라비아 용지 | ㄱ | 34113 115 | 금속공작 프레스(유압식) | 대 | 38232 112 |
| 그라비아 인쇄기 | 대 | 38247 116 | 금속공작 프레스(일반 목적용) | 대 | 38232 113 |
| 그레이더 | 대 | 38241 316 | 금속박지(은박지 포함) | ㄱ | 34193 112 |
| 그리코시드 및 유도체 | ※ | 35222 113 | 금속서류 캐비닛, 랙 및 케 이스 | ※ | 38122 111 |
| 그림틀(목재) | ※ | 33193 111 | 금속성형기 | 대 | 38232 117 |
| 그림틀(금속제) | ※ | 38122 113 | 금속 세척기 | 대 | 38233 113 |
| 끈 | | | 금속 시험기계 및 기기(장력 강도, 연성 시험기 등) | 대 | 38543 111 |
| 식물성 섬유끈 | ※ | 32171 111 | 금속 실내 장식물 | ※ | 39059 100 |
| 인조 섬유끈 | ※ | 32171 112 | 금속압단제품 | 천개 | 38142 111 |
| 종이끈 | ※ | 32171 113 | | | ~ 319 |
| 글러브 | 개 | 39032 117 | 금속 열처리기 | 대 | 38233 114 |
| 글루타민산 소다 | ㄱ | 31212 111 | 금속 열처리업 | ※ | 38143 100 |
| 글루텐 및 글루텐가루 | ㄱ | 31225 114 | 금속 열처리 및 가공 전기로 | 대 | 38299 212 |
| 글리세린 | ㄱ | 35239 111 | 금속용 톱 | 개 | 38116 112 |
| 글리세롤 | ㄱ | 35239 111 | 금속용해 및 정련 전기로 | 대 | 38299 211 |
| 글리세롤라이 | ㄱ | 35239 111 | 금속절삭기계(전기, 전자식 초 음파) | 대 | 38231 135 |
| 급탕기 | 대 | 38299 412 | 금속계 공공장치물(전화대, 휴 지통) | ※ | 38122 114 |
| 금(금괴) | ㄱ | 37219 511 | 금속계 서가 | 천개 | 38121 114 |
| | | | 금속계 식탁용품 | ※ | 38111 100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금속의자 | 천개 | 38121 113 | 수지식 동력공구 | 대 | 38234 111 |
| 금속제 각종 간판 및 유사철 판(대형 아취 및 구조물 제외 : 38135 119 로 분류) | ※ | 38122 111 | 목공기계 | 대 | 38235 111 |
| 금속제 베네티안 채양 | ※ | 38122 119 | 회환용절삭구 | 대 | 38236 111 |
| 금속제 사진틀 및 그림틀 | ※ | 38122 113 | 기타 금속 공작 및 목공 기계 | ※ | 38239 100 |
| 금속제 장식금속 공작물 | ※ | 38132 100 | 건설 및 광산용기계 | 대 | 38241 111 |
| 금속제 조명장치 부착물 | ※ | 38122 112 | 섬유용 기계 | 대 | 38242 111 |
| 금속제 사무실 및 상점 장치물 | ※ | 38122 111 | 식료품가공기계 | 대 | 38243 111 |
| 금속제 책상 | 천개 | 38121 112 | 화학 및 석유정제산업용 기계 | 대 | 38244 111 |
| 금속제 캐비닛 | 개 | 38121 111 |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용 기계 | 대 | 38245 111 |
| 금속침대 | 대 | 38121 117 | 종이산업용기계 | 대 | 38246 111 |
| 금속판제품 | ※ | 38133 100 | 인쇄 및 제본용기계 | 대 | 38247 111 |
| 금속표면 처리업 및 인쇄업 | ※ | 38149 200 | 유리 및 요업용기계 | 대 | 38248 111 |
| 금속표면 처리기 | 대 | 38233 115 | 기타 산업용기계(목공 및 금속공작기계 제외) | 대 | 38249 111 |
| 금속표면산용액처리 조제품 | ※ | 35299 136 | 서비스산업용기계 | 대 | 38261 |
| 금속화사 | ㎏ | 32119 111 | 검사 및 시험용기계 | 대·개 | 38543 111 |
| 금입힌 금속 | ㎏ | 37229 151 | 기계공구 부착품 | ※ | 38239 900 |
| 금전등록기 | 대 | 38252 113 | 기계공 정밀 측정기 | ※ | 38239 300 |
| 금형 | | | 기계 나무펠프 | ※ | 34111 100 |
| 프레스형금형 | ※ | 38237 111 | 기계부품 솔 | ※ | 39093 115 |
| 플라스틱 사출용금형 | ※ | 38237 112 | 기계식 연필(샤프) | 천개 | 39091 123 |
| 다이캐스팅금형 | ※ | 38237 113 | | | |
| FRP용금형 | ※ | 38237 114 | | | |
| 주단조용금형 | ※ | 38237 115 | | | |
| 기타용도(유리, 고무, 광물성)금형 | ※ | 38237 119 | | | |
| 기계 | | | | | |
| 농업용 기계 | 대 | 38220 111 | | | |
| | | ~ 900 | | | |
| 금속절삭기계 | 대 | 38231 111 | | | |
| | | ~ 139 | | | |
| 금속성형기계 | 대 | 38232 111 | | | |
| | | ~ 212 | | | |
| 금속처리용기계 | 대 | 38233 111 | | | |
| | | ~ 119 | | |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기계식 화상 | 대 | 38299 414 | 경화동물기름(마아가린제외) | ※ | 31151 400 |
| 기계용 가죽제품 | ※ | 32331 112 | 동물기름(식용) | | |
| 기계요법기기 | ※ | 38513 111 | 동물지방 (미정제) | kg | 31119 211 |
| 기계톱(금속절삭) | 대 | 38231 127 | 라아드 및 기타 정제 돼 | kg | 31119 212 |
| 기계톱(목공기계) | 대 | 38235 112 | 지지방 | | |
| 기관제동약 | ※ | 35224 112 | 정제가금지방 | kg | 31119 213 |
| 기관용 부품(자동차용) | ※ | 38432 119 | 식물기름(식용) | | |
| 기관차 | | | 참기름 | kl | 31153 111 |
| 전기 기관차(철도용) | 대 | 38421 112 | 들기름 | kl | 31153 112 |
| 디젤 기관차(철도용) | 대 | 38421 113 | 혼합식물성기름 | kl | 31153 113 |
| 광산 기관차(지하) | 대 | 38421 211 | 콩기름(대두유) | kl | 31153 114 |
| 산업용 기관차 | 대 | 38421 212 | 유채기름(채종유) | kl | 31153 115 |
| 전동차 | 대 | 38421 114 | 옥수수기름(옥배유) | kl | 31153 116 |
| 기관차 부품 | ※ | 38421 900 | 낙화생유(땅콩기름) | kl | 31153 117 |
| 기구, 다이, 시계 또는 기타 | ※ | 39010 113 | 기타 식용식물성기름 | ※ | 31153 119 |
| 장식용 보석 | | | 유박 | ※ | 31153 121 |
| 기구 및 비행선 | ※ | 38490 900 | 콩깻묵 | ㎥ | 31153 122 |
| 기구케이스 | ※ | 33124 112 | 탈지강 | ㎥ | 31153 123 |
| 기념비석 | ㎥ | 36994 111 | 마아가린 | kg | 31153 211 |
| 기름 | | | 모조라아드 | kg | 31153 212 |
| 물고기 및 바다동물기름 | | | 쇼트닝(쇼팅) | kg | 31153 213 |
| 물고기 지방 | ※ | 31151 111 | 기타 조제 식용기름 | ※ | 31153 219 |
| 물고기 간유 | ※ | 31151 112 | 식물기름(비식용) | | |
| 수산동물기름 | ※ | 31151 113 | 대두유(콩기름) | kl | 31152 111 |
| 정제 고래기름 및 경랍 | ※ | 31151 114 | 면화씨기름(면실류) | kl | 31152 112 |
| 유박(물고기 기름) | ※ | 31151 121 | 올리브기름 | kl | 31152 113 |
| 동물기름(비식용) | | | 해바라기씨기름 | kl | 31152 114 |
| 펠로우 오일 및 스티어린 | kg | 31151 211 | 아마유 | kl | 31152 115 |
| 정제 울그리스(라노닌) 및 | kg | 31151 212 | 유채기름(채종유) | kl | 31152 117 |
| 울그리스 추출제품 | | | 종려기름 | kl | 31152 116 |
| 유박(동물기름) | ※ | 31151 221 | 야자기름 | kl | 31152 121 |
| 쇠기름(우지) | ㎥ | 31151 222 | 피마자기름 | kl | 31152 122 |
|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 ※ | 31151 300 | 미강유 | kl | 31152 123 |
| 취주 또는 중합 동물기름 | | | 농백기름 | kl | 31152 124 |
| | | | 대마유 | kl | 31152 126 |

(7)~(12)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낙화생유 | ℓ | 31152 127 | 나사 | | |
| 옥수수기름 | ℓ | 31152 125 | 볼트 및 너트 | ℥ | 38195 111 |
|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기름 | ※ | 31152 129 | 나사못 | ℥ | 38195 112 |
| 유박 | ※ | 31152 131 | 리베트 | ℥ | 38195 113 |
| 면린터 | ※ | 31152 200 | 와셔 및 산업용 파스너 | ℥ | 38195 114 |
| 보일드, 산화, 탈수, 황화, 취주 또는 중합식물성 기름 | ※ | 31152 300 | 나사공구 | 천개 | 38113 123 |
| 경화식물성기름 | ※ | 31152 400 | 나사못 | ℥ | 38195 112 |
| 기어 및 기어링 | ℥ | 38297 115 | 나사전조기 | 대 | 38232 124 |
| 기어 박스 및 기타 변속장치 | 대 | 38297 119 | 나선형 스프링(차량 및 철도용) | ℥ | 38199 111 |
| 기어 컷팅기(NC 제외) | 대 | 38231 133 | 나염기 | 대 | 38242 712 |
| 기억소자 | 천개 | 38349 113 | 나이론 섬유 | | |
| 기와(점토제품) | 천매 | 36912 100 | 합성 장섬유 | ℥ | 35143 111 |
| 기와(콘크리트 기와) | 천매 | 36934 111 | 합성 단섬유 | ℥ | 35143 311 |
| 기체 및 기체부품 | ※ | 38490 900 | 합성 장섬유 투우 | ℥ | 35143 411 |
| 기체 장비용제기 | ※ | 38549 212 | 나이프(칼-식탁용) | ※ | 38111 100 |
| 기타(guitar) | 대 | 39023 113 | 나이프(칼-주방용, 포켓용) | 천개 | 38112 < 111 112 |
| 기타(전기기타) | 대 | 39026 112 | 나침반 | 개 | 38549 113 |
| 기포콘크리트 제품 | ※ | 36939 119 | 나트륨 | ℥ | 35121 124 |
| 기화기(카보네타) | 대 | 38299 511 | 나팔 | ※ | 39024 112 |
| 김 | ※ | 31145 200 | 나프타 | ℓ | 35300 213 |
| 나무 공작용 절삭구 | 개 | 38236 112 | 나프킨지 | ℥ | 34192 112 |
| 나무도시락 | ※ | 33123 111 | 나프타렌 | ℥ | 35116 111 |
| 나무 못 | ※ | 33119 113 | 낙하산 | 개 | 32149 919 |
| 나무 부스러기 | ※ | 33119 200 | 낙화생유(망종기름, 식용) | ℓ | 31153 117 |
| 나무신 | ※ | 33199 100 | 낙화생유(비식용) | ℓ | 31152 127 |
| 나무용 톱 | 천개 | 38116 111 | 납시대 | 천개 | 39033 111 |
| 나무의자 | 천개 | 33201 111 | 난로 | | |
| 나무제조기(마루세공) | 대 | 38235 123 | 석탄난로 | 대 | 38194 211 |
| 나무 지붕타일 | ※ | 33119 116 | 석유난로 | 대 | 38194 212 |
| 나무처리용 기계 | ※ | 38235 111 219 | 가스난로 | 대 | 38194 213 |
| 나무화학 및 반화학 펄프 | ℥ | 34111 211 | 기타난로 | ※ | 38194 219 |
| | | | 남비(알루미늄제) | 천개 | 38142 112 |
| | | | 남비(스텐레스제) | 천개 | 38142 212 |
| | | | 남비(법랑제 가정용) | 천개 | 38192 111 |
| | | | 남양(라왕) 각재 | ℥ | 33111 214 |

(ㄴ)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남양(리왕) 소할재 | ㎍ | 33111 114 | 내화 시멘트 | ㎍ | 36949 112 |
| 남양(리왕) 관재 | ㎍ | 33111 314 | 내화용 벽돌 | ㎍ | 36941 111 |
| 남자용 단화 | 족 | 32401 111 | 베타 | ㎍ | 31131 111 |
| 남맹인두(수동식) | 개 | 38119 216 | 냉각탑 | 대 | 38264 115 |
| 남석 | ㎍ | 29032 116 | 냉동 과일 | ※ | 31139 311 |
| 낫 | ※ | 38114 119 | 냉동 물고기 | ㎍ | 31142 100 |
| 낫트 | ㎍ | 38195 111 | 냉동 야채 | ※ | 31139 312 |
| 내광목 | 千㎍ | 32121 112 | 냉동 계습기 | 대 | 38263 114 |
| 내연기관(불꽃점화 및 액체점화기관) | | | 냉동 쥬스(즙) | ※ | 31139 313 |
| 원동기용(농업 및 일반기계) | 대 | 38211 100 | 냉동 진열장 | 대 | 38236 116 |
| 자동차용 | 대 | 38432 111 | 냉동해산물 | ㎍ | 31142 100 |
| 선박용 | 대 | 38411 100 | 냉면 | ㎍ | 31175 114 |
| 항공기용 | 대 | 38452 100 | 냉면 광폭대강(보통강) | ㎍ | 37122 511 |
| 기관차용 | 대 | 38423 200 | 냉면 광폭대강(고탄소강) | ㎍ | 37122 512 |
| 내연기관 검사용 시험대 | 대 | 38543 215 | 냉면 광폭대강(합금강) | ㎍ | 37122 513 |
| 내연 추진기관-철도기관차 | 대 | 38423 200 | 냉면박판(보통강) | ㎍ | 37122 111 |
| 내연 피스톤기관(항공기용) | ※ | 38490 900 | 냉면박판(고탄소강) | ㎍ | 37122 112 |
| 내연 피스톤기관 부품(항공기용) | ※ | 38490 900 | 냉면박판(합금강) | ㎍ | 37122 113 |
| 내의 | | | 냉면 전기강판 | ㎍ | 37122 411 |
| 면 내의(편직한 것) | 千매 | 32152 111 | 냉면협폭대강(보통강) | ㎍ | 37122 611 |
| 모 내의(편직한 것) | 千매 | 32152 112 | 냉면협폭대강(고탄소강) | ㎍ | 37122 612 |
| 인조섬유 내의(편직한 것) | 千매 | 32152 113 | 냉면협폭대강(합금강) | ㎍ | 37122 613 |
| 기타 섬유 내의(편직한 것) | 千매 | 32152 119 | 냉장고 | | |
| 내의 및 잠옷(봉제한 것, 남자용) | ※ | 32225 200 | 상업용 냉장고(산업용 포함) | 대 | 38263 111 |
| 내의 및 잠옷(봉제한 것, 여자 및 유아용) | ※ | 32225 111 | 가정용 냉장고(전기 냉장고) | 대 | 38331 111 |
| 내장가구 | | | 냉장고 부품 | ※ | 38331 119 |
| 가정용 내장가구 | ※ | 33202 111 | 냉풍기(대형) | 대 | 38264 114 |
| 사무실, 공공건물용내장가구 | ※ | 33202 112 | 베온 | ㎍ | 35123 113 |
| 차량용 내장가구 | ※ | 33202 300 | 베타이 | 개 | 32229 211 |
| 내화 도가니 | ㎍ | 36942 100 | 노일 전직물 | 千㎍ | 32123 112 |
| | | | 노출계(사진용) | 개 | 38523 123 |
| | | | 노트 | 千권 | 34214 111 |
| | | | 녹말가루(전분) | ㎍ | 31225 111 |
| | | | 녹말지, 화합물 | ㎍ | 35299 112 |
| | | | 녹음기(카세트 포함) | 대 | 38321 214 |

(L)~(E)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녹음재생기(카트리지 포함) | 대 | 38321 215 | 니켈 얼로이(합금) | kg | 37229 111 |
| 녹음된 자기 테이프(상업용) | 천km | 38326 112 | 니켈 천기도금 양극봉) | kg | 37290 311 |
| 녹화재생기(VTR) | 대 | 38321 115 | 니켈 정련 잔여물 | ※ | 37229 112 |
| 녹차 | ※ | 31227 211 | 니켈 철 | kg | 37112 115 |
| 뇌관 | | | 니켈관, 편 | kg | 37239 112 |
| 공업뇌관, 신호내관 | 千개 | 35292 118 | 다리미(비전기식) | 천개 | 38119 111 |
| 전기뇌관 | 千개 | 35292 118 | 다리미(전기식) | 개 | 38334 913 |
| 놀이터용 장비 | ※ | 38299 911 | 다시마 | ※ | 31145 200 |
| 농업용 기계날 및 칼 | ※ | 38220 700 | 다세포성 유리 | ※ | 36203 112 |
| 농업용 트랙터 | 대 | 38220 800 | 다이너마이트 | kg | 35292 112 |
| 농장 콘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 대 | 38220 413 | 다이 장식용 보석 | ※ | 39010 113 |
| 농축전지 | 개 | 38394 114 | 다이아몬드(장식용) | ※ | 39010 111 |
| 누룩 | kg | 31228 111 | 다이얼(시계) 및 킴 | ※ | 38533 119 |
| 누전차단기 | 대 | 38313 115 | 다이오드 | 천개 | 38342 112 |
| 눈검사 기구(시력검사 장치 및 눈의 장애진단, 시력 결핍 측 정용 특수기구) | ※ | 38529 100 | 다이컷터 | 대 | 38246 213 |
| 눈 및 얼음 용해기-전기 | 대 | 38334 914 | 단백질 물질 | ※ | 35129 211 |
| 눈차 | 대 | 38442 200 | 단열용 벽돌 | kg | 36941 111 |
| 느슨한 가구카바 | ※ | 32142 114 | 단접 강관 | kg | 37123 113 |
| 니들롤러 베어링 | kg | 38297 212 | 단조기 및 스템핑기 | 대 | 38232 111 |
| 니들워크 태피스트리(바느질 제품의 수놓은 천 및 용단) | ※ | 32144 112 | 단조물 | | |
| 니켈(미가공) | kg | 37219 111 | 보통강 단조물 | kg | 37191 111 |
| 니켈(합금) | kg | 37229 111 | 고탄소강 단조물 | kg | 37191 112 |
| 니켈관 및 관부착물 | kg | 37239 113 | 합금강 단조물 | kg | 37191 113 |
| 니켈광 | kg | 23029 112 | 단추(커크스크링) | ※ | 39096 100 |
| 니켈도금 철강관 | kg | 37192 313 | 단판 | ㎡ | 33113 111 |
| 니켈띠 | kg | 37239 112 | | | ~ 119 |
| 니켈매트 | ※ | 37229 113 | 단화 | | |
| 니켈못 및 유사제품 | kg | 37290 312 | 남자용 단화 | 족 | 32401 111 |
| 니켈봉 및 형강 | kg | 37239 111 | 여자용 단화 | 족 | 32401 112 |
| 니켈분 | kg | 37239 112 | 달걀 세척기(달걀선별기포함) | 대 | 38220 613 |
| 니켈 스페이스 | ※ | 37229 113 | 딸기주(발효주) | kl | 31323 912 |
| | | | 담배 | | |
| | | | 재건조 앞담배 | kg | 31401 100 |

(ㄷ)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필터담배 | 千本 | 31402 111 | 대마씨 기름 | ℓ | 31152 126 |
| 필터없는 담배 | 千本 | 31402 112 | 대물렌즈, 필터, 거리 측정기 | ※ | 38522 211 |
| 작연 | ㎏ | 31402 200 | 등(사진기 및 관련 장비) | | |
| 여충연 | ※ | 31402 911 | 대변기(도기제품) | 개 | 36103 113 |
| 기타 담배제품 | ※ | 31402 919 | 대용식초 | ℓ | 31212 212 |
| 담배가공기 | 대 | 38243 924 | 대패기 및 장부기 | 대 | 38235 115 |
| 담배 케이스(개인 장식용) | ※ | 39010 211 | 더블베이스 | ※ | 39023 111 |
| 담배 필터 | ㎏ | 39094 115 | 더스터 | 대 | 38246 111 |
| 담요 | ㎡ | 32142 112 | 덕(Duck, 범포) | ㎡ | 32121 112 |
| 당구 장비 | ※ | 39039 411 | 덕트(환기통) | ※ | 38133 100 |
| 당류 | 千㎡ | 32121 112 | 떡 | ※ | 31171 200 |
| 당면 | ㎏ | 31175 113 | 데칸(탄화수소종류) | ※ | 35111 113 |
| 대강 | | | 데크(전축용) | 대 | 38321 312 |
| 광폭대강 | | | 데크메카니즘 | 천개 | 38321 913 |
| 열연광폭대강(보통강) | ㎡ | 37121 511 | 도가니(내화) | ㎡ | 36942 100 |
| 열연광폭대강(고탄소강) | ㎡ | 37121 512 | 도기 장식품(도기 완구 포함) | ※ | 36106 100 |
| 열연광폭대강(합금강) | ㎡ | 37121 513 | 도기 포장용기 | ※ | 36105 111 |
| 냉연광폭대강(보통강) | ㎡ | 37122 511 | 도끼 | ※ | 38114 119 |
| 냉연광폭대강(고탄소강) | ㎡ | 37122 512 | 도금귀금속의 프래트 웨어 | ※ | 39010 512 |
| 냉연광폭대강(합금강) | ㎡ | 37122 513 | 도금귀금속의 홀로우 웨어 | ※ | 39010 612 |
| 협폭대강 | | | 도금 귀금속제품 | ※ | 39010 912 |
| 열연협폭대강(보통강) | ㎡ | 37121 611 | 도금업(임가공) | ※ | 38144 100 |
| 열연협폭대강(고탄소강) | ㎡ | 37121 612 | 도금열처리업 | ※ | 38143 100 |
| 열연협폭대강(합금강) | ㎡ | 37121 613 | 도금 철강판 | | |
| 냉연협폭대강(보통강) | ㎡ | 37122 611 | 알루미늄 도금 철강판 | ㎡ | 37192 311 |
| 냉연협폭대강(고탄소강) | ㎡ | 37122 612 | 크롬 도금 철강판 | ㎡ | 37192 312 |
| 냉연협폭대강(합금강) | ㎡ | 37122 613 | 니켈 도금 철강판 | ㎡ | 37192 313 |
| 대금 | ※ | 39027 100 | 구리 도금 철강판 | ㎡ | 37192 314 |
| 대기정화장비 | 대 | 38269 116 | 연 도금 철강판 | ㎡ | 37192 315 |
| 대두유(비식용) | ℓ | 31152 111 | 인조산화 철강판 | ㎡ | 37192 316 |
| 대두유(콩기름, 식용) | ℓ | 31153 114 | 도금(비금속) 철강판 | | |
| 대리석 | ※ | 29011 111 | 페인트 도포 철강판 | ㎡ | 37192 411 |
| 대리석(인조) | ※ | 36994 119 | 인조수지 도포 철강판 | ㎡ | 37192 412 |
| 대마 | ㎏ | 32116 114 | 기타 비금속 도금 철강판 | ※ | 37192 419 |
| 대마사 | ㎏ | 32116 214 | | | |

(ㄷ)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도너츠(빵) | ※ | 31171 119 | 동력 전달체인 | ※ | 38297 119 |
| 도로포장기 | 대 | 38241 322 | 동력 탈곡기 | 대 | 38220 213 |
| 도로용 복합 확장계 | ※ | 35215 114 | 동 로프 | ※ | 37290 111 |
| 도비 및 제 커드 | ※ | 38242 612 | 동 마스터 얼로이(합금) | ※ | 37221 111 |
| 도살고기(포장유포함, 단 입가공 및 구입한 도살고기 포장육은제외) | kg | 31119 115 | 동 매트 | ※ | 37211 111 |
| 도시락(알루미늄계) | 천개 | 38142 114 | 동물 견인차량(비동력) | 대 | 38490 100 |
| 도시락(스테인레스계) | 천개 | 38142 214 | 동물 농업용 기타 기계 | ※ | 38220 629 |
| 도시락(목재) | ※ | 33123 111 | 동물 불액 | ※ | 35129 214 |
| 보온도시락 | 천개 | 38192 212 | 동물성 왁스 | ※ | 35295 111 |
| 도안 및 제도기구 | ※ | 38542 111 | 동물용 약품제 | ※ | 35225 111 ~ 119 |
| 도어차임 및 유사장치 | ※ | 38399 211 | 동물지방(정제하지 않은것) | kg | 31119 211 |
| 도자식기(가정용) | 千개 | 36102 111 | 동뿔 | ※ | 37290 112 |
| 도장 | 千개 | 39091 132 | 동박칙충판(P.C.B원판) | 개 | 38349 117 |
| 도토리 목 | ※ | 31224 211 | 동백기름 | kg | 31152 124 |
| 도로 또는 칩책지 | ※ | 34193 113 | 동분 및 편 | ※ | 37231 116 |
| 도록선 | ※ | 35292 117 | 동봉 및 형강 | ※ | 37231 111 |
| 도화선 | ※ | 35292 116 | 동선 | ※ | 37231 112 |
| 돛자리 | ※ | 32162 111 | 동 쇼트 | ※ | 37211 119 |
| 동(구리) | | | 동암모니움 레이온 (재생장섬유) | ※ | 35142 112 |
| 시멘트 동 | ※ | 37211 113 | 동암모니움 레이온 (재생단섬유) | ※ | 35142 312 |
| 브리스터 동 | ※ | 37211 112 | 동암모니움 레이온 (재생장섬유 투우) | ※ | 35142 412 |
| 정련 동 | ※ | 37211 114 | 동전(모든 금속의 것) | ※ | 39010 700 |
| 동관 부착물 | ※ | 37231 115 | 동전교환기 | 대 | 38261 112 |
| 동관 및 중공봉 | ※ | 37231 114 | 동전분류, 계산, 포장기 | 대 | 38259 114 |
| 동광석 | ※ | 23024 106 | 동주물(거칠은) | ※ | 37241 111 |
| 동계 경기장비(스케이트, 스키) | ※ | 39039 300 | 동 케이블 | ※ | 37290 111 |
| 동 도금 철강관 | ※ | 37192 314 | 동관 | ※ | 37231 113 |
| 동단조물 | kg | 37242 111 | 동형강 | ※ | 37231 111 |
| 동 띠 | ※ | 37231 113 | 돛 | 대 | 32143 113 |
| 동력계 | 개 | 38543 212 | 돛배 | 대 | 38414 112 |
| 동력 보트 | 대 | 38414 111 | 된장 | ※ | 31211 112 |
| 동력 쇼벨 | 개 | 38241 311 | | | |
| 동력 전달용 발브(공기 또는 유압식) | 개 | 38198 112 | | | |

(드)~(르)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돼지가죽 | ㎡ | 32311 113 | 디젤 및 디젤전기기관차 | 대 | 38421 113 |
| 두부 | kg | 31224 111 | (철도용) | | |
| 킴블 | ※ | 39039 100 | 디크로로 메탄(염화메틸렌) | ℥ | 35112 111 |
| 드라이버(동력식) | 대 | 38234 125 | 라듐광석 | ※ | 23029 211 |
| 드라이 아이스 | ㎡ | 35123 213 | 라디에타(방열기) | | |
| 드라이어 | 개 | 38335 113 | 연소기 부착 안된 것 | 대 | 38194 113 |
| 드럼판 | 천개 | 38191 211 | 연소기 부착된 것 | 대 | 38194 214 |
| 드럼 및 바렐 | ※ | 33122 112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 대 | 38323 111 |
| 드럼 및 유사악기 | ※ | 39025 111 | 장비 - 소리 | | |
| 드레스(여자용 기성복) | 착 | 32223 115 | 라디오 및 TV방송 송신기 | 대 | 38323 113 |
| 드레스(소년용 기성복) | ※ | 32224 111 | 및 관련장비 | | |
| 드로스 | ※ | 37119 119 | 라디오 수신기 | | |
| 드레그라인 | 대 | 38241 313 | 일반 라디오 | 대 | 38321 211 |
| 드롭스(설탕과자에 포함) | kg | 31173 311 | 시계 라디오 | 대 | 38321 212 |
| 드릴(면복지, Jean) | 천㎡ | 32121 112 | 카라디오 | 대 | 38321 213 |
| 드릴(drill) | 천개 | 38113 122 | 라디오 샤프: 앰프 및 튜너 | ※ | 38321 219 |
| 드릴링기 | | | 라디오, 녹음기부품 | ※ | 38321 219 |
| 금속 절삭 드릴링기 | 대 | 38231 132 | 라디오, TV 및 기타 음향장 | ※ | 38321 919 |
| 수지식 동력공구 드릴링기 | 대 | 38234 111 | 치의 부품 | | |
| 목공기계 드릴링기 | 대 | 38235 116 | 라면 | ℥ | 31175 311 |
| 비금속광물공작용 드릴링기 | 대 | 38248 314 | 라민보드 | ㎡ | 33114 113 |
| 틀기름(식용) | ℓ | 31153 112 | 라아드 및 기타 정제 돼지지방 | kg | 31119 212 |
| 등(석유등, 가스등) | 개 | 38199 911 | 라왕 작재 | ㎡ | 33111 214 |
| 등 가구 | ※ | 33204 100 | 라왕 소할재 | ㎡ | 33111 114 |
| 등사기 및 복사기 | 대 | 38253 111 | 라왕 판재 | ㎡ | 33111 314 |
| 등사원지 | ℥ | 34119 114 | 라이클릴 | ※ | 39010 211 |
| 등산화 | 족 | 32402 112 | 라이터(연구용) | 천개 | 39094 111 |
| 등세공 반제품 | ※ | 33125 113 | 라이터(일회용) | 천개 | 39094 112 |
| 등안전기 | 개 | 38312 115 | 라이터용 액체연료 | ℥ | 35409 114 |
| 등유(Kerosene) | ℥ | 35300 214 | 라켓 | 천개 | 39032 111 |
| 등제품 제조기 | 대 | 38235 213 | 테니스라켓 | 개 | 39032 112 |
| 디메틸 벤젠 | ℥ | 35111 123 | 락톤 | ℥ | 35119 313 |
| 디스탬버 및 유사제품 | ※ | 35212 112 | 락탐 | ℥ | 35119 313 |
| D. M. T | ℥ | 35113 114 | 래그컷터 더스터, 세척기 및 | 대 | 38246 111 |
| 디젤기관(선박용) | 대 | 38411 100 | 파쇄기 | | |

(ㄹ)~(ㅍ)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래커(락카) | ㎏ | 35213 100 | 루핑보드 | ※ | 35403 115 |
| 랜드채인 | 개 | 38541 118 | 롤링기 | 대 | 38246 118 |
| 램핑기 | 대 | 38231 123 | 롬에어콘디셔너 | 대 | 38264 111 |
| 럼주 | ㎏ | 31314 113 | 리놀륨 시험용기기 | 대 | 38543 113 |
| 레이콘 | 천㎡ | 36932 100 | 리듬 | ※ | 35121 124 |
| 레이다 탐지 검사 및 취득조직 | ※ | 38329 119 | 리듬광 | ※ | 29020 913 |
| 레이저(가스)-전기, 전자제의 | 대 | 38265 112 | 리밍기 | | |
| 레이카(철도장비) | 대 | 38429 112 | 금속절삭 리밍기 | 대 | 38231 134 |
| 레이노이드 | ㎏ | 35298 112 | 수지식 동력공구 리밍기 | 대 | 38234 113 |
| 레이크드 플레이어(턴테이블) | 대 | 38321 313 | 리베트 | ※ | 37124 313 |
| 렌즈 | | | 리베트(나사제품) | ※ | 38195 113 |
| 광학렌즈(장치한 것) | ※ | 38522 211 | 리벳트판 | ※ | 37123 115 |
| 광학렌즈(장치하지 않은 것) | 개 | 38522 112 | 리본 | ※ | 32125 100 |
|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 천개 | 38522 300 | 리액터 | ※ | 38312 113 |
| 렌치 | 천개 | 38113 114 | 리프트(호이스트) | 대 | 38293 113 |
| 로더(파이크, 원목싣기 운반) | 대 | 38241 317 | 리봉(타이프 라이터용 및 유 | ※ | 39091 117 |
| 로드레일 및 유사 콘테이너 | 대 | 38432 500 | 사리봉) | | |
| 로버트(교시형) | 대 | 38296 111 | 린넨 | ※ | 32142 111 |
| 로버트(적응형) | 대 | 38296 112 | 린스 | ㎏ | 35235 312 |
| 로버트(지능형) | 대 | 38296 113 | 링크 러스타 | ※ | 34191 112 |
| 로울러 | 개 | 38299 914 | 릴 | 천개 | 39033 112 |
| 로진, 수지산 및 유도체 | ※ | 35117 112 | 립스틱 | ㎏ | 35235 211 |
| 로진오일 | ※ | 35117 113 | 립스틱 홀더(휴대용) | ※ | 39010 211 |
| 로진정 | ※ | 35117 113 | 링 | 천개 | 38242 614 |
| 로켓트기관 및 부품 | ※ | 38490 900 | 마그네사이트 | ※ | 29032 115 |
| 로프 | | |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 | 37229 211 |
| 식물성 섬유 로프 | ㎏ | 32171 211 | 마그네트 선 및 케이블 | ※ | 38391 113 |
| 인조섬유 로프 | ㎏ | 32171 212 | 마그네틱 와이어 | ※ | 38349 115 |
| 종이 로프 | ㎏ | 32171 213 | 마그네틱 헤드 | 천개 | 38349 114 |
| 철강 로프 | ※ | 37129 100 | 마네킹 | ※ | 39099 116 |
| 동 로프 | ※ | 37290 111 | 마닐라삼 | ㎏ | 32116 115 |
| 알루미늄 로프 | ※ | 37290 211 | 마닐라 판지 | ※ | 34117 111 |
| 로프제조기 | 대 | 38242 915 | 마루세공 나무제조기 | 대 | 38235 123 |
| 루라이트 정광 | ※ | 23029 919 | 마루판재 | | |
| | | | 침엽수판재 | ㎡ | 33111 411 |

(口)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활엽수관재 | ㎡ | 33111 412 | 망(철조망) | ㎡ | 38196 115 |
| 마방적사 | kg | 32116 211 | 망간광 | ㎡ | 23022 100 |
| | | ~ 219 | 망간 규소철 | ㎡ | 37112 116 |
| 마섬유 | kg | 32116 111 | 망간철 | ㎡ | 37112 111 |
| | | ~ 119 | 망제조기 | 대 | 38242 511 |
| 마섬유부스러기 | ※ | 32116 121 | 망초(황산나트륨) | ㎡ | 35122 214 |
| 마쇄기(광산장비) | 대 | 38241 116 | 망치 | 천개 | 38113 121 |
| 마쇄기(식품용) | 대 | 38115 111 | 매염염료 및 산성매염 염료 | ㎡ | 35131 114 |
| 마스크 | ※ | 32196 113 | 매염제 | ※ | 35299 138 |
| 마스터 베즈 | ※ | 35599 114 | 매트레스 및 쿠션 | ※ | 33202 400 |
| 마아가린 | kg | 31153 211 | 매실주(발효주) | ℓ | 31323 913 |
| 마요네즈 | kg | 31213 112 | 맥아(엿가름) | kg | 31223 111 |
| 마이크로 버스 | 대 | 38431 213 | 맥아엑스 | ※ | 31223 112 |
| 마이크로 서킷트-전자 | ※ | 38349 900 | 맥주 | ℓ | 31330 100 |
| 마이크로폰 | 천개 | 38321 411 | 맥주(합성) | ℓ | 31319 212 |
| 마천토 | ※ | 29032 112 | 멜릿(게임장비) | ※ | 39032 113 |
| 마직물 | 千㎡ | 32124 111 | 머리기름 | kg | 35235 313 |
| | | ~ 129 | 머리 염색약 | ※ | 35235 314 |
| 마초가공용 기계 및 기기 | 대 | 38220 414 | 머리인두 | ※ | 38119 119 |
|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유사 제품 | kg | 31175 112 | 머리핀(순금 또는 백금 장식구) | ※ | 39010 319 |
| 마태차(가공) | ※ | 31227 212 | 머시닝센터 | 대 | 38231 138 |
| 마파일 및 셔닐직물 | 千㎡ | 32124 121 | 먼지추출기(보일러 관련제품) | 대 | 38134 213 |
| 만곡, 식자 또는 유사 가공 유리 | ※ | 36202 111 | 먼지추출기(화학 산업용기계) | 대 | 38244 916 |
| 만년필 | 千개 | 39091 112 | 먼지추출기(일반 서비스용) | 대 | 38269 113 |
| 만능 나무공작 기계공구 | 대 | 38235 122 | 머플러 | 장 | 32159 411 |
| 만도라 | ※ | 39023 112 | 메니큐어 | ※ | 35235 411 |
| 만도린 | ※ | 39023 112 | 메니큐어 제거제 | ※ | 35235 412 |
| 말가죽 | ㎡ | 32311 112 | 메달 | ※ | 39010 319 |
| 말털직물 | 천㎡ | 32122 115 | 메라민 | ㎡ | 35113 127 |
| 말토우스 | kg | 31226 114 | 메라민 수지 | ㎡ | 35114 123 |
| 맛소금 | kg | 31213 200 | 메밀국수 | kg | 31175 112 |
| 망(어망제외) | kg | 32179 100 | 메밀 묵 | ※ | 31224 212 |
| 망(철망) | ㎡ | 38196 111 | 메주 | kg | 31211 121 |
| | | | 메타날 | ㎡ | 35119 111 |
| | | | 메탄올 | ㎡ | 35111 131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메탈베어링 | 개 | 38297 213 | 명반석 및 천천명반 | ※ | 29020 916 |
| 면 | | | 모기장 | ※ | 32142 111 |
| 조면 | kg | 32112 111 | 모내의(편직한 것) | 千매 | 32152 112 |
| 소면 및 정소면 | kg | 32112 112 | 모내의(봉제한 것, 남자용) | ※ | 32225 200 |
| 면 부스러기 | ※ | 32112 113 | 모내의(봉제한 것, 유아 및 | ※ | 32225 111 |
| 면화씨 | kg | 32112 121 | 여자용) | | ~ 119 |
| 면저즈 | 千㎡ | 32121 111 | 모노마 | | |
| 면내의(편직한 것) | 千매 | 32152 111 | 스티렌 모노마 | 개 | 35113 111 |
| 면내의(봉제한 것, 남자용) | ※ | 32225 200 | 염화비닐모노마 | 개 | 35112 115 |
| 면내의(봉제한 것, 유아 및 | ※ | 32225 111 | 모노필(재생 장섬유) | 개 | 35142 200 |
| 여자용) | | ~ 119 | 모노필(합성 장섬유) | 개 | 35143 200 |
| 면도기(전기모터 자장) | 개 | 38335 111 | 모니터 TV(방송용) | 대 | 38323 116 |
| 면도칼 | ※ | 38112 115 | 모래 | | |
| 면도솔 | ※ | 39093 116 | 보통 모래(건설용) | ㎡ | 29013 111 |
| 면린터 | ※ | 31152 200 | 산업용 모래(유리제조용) | ㎡ | 29033 100 |
| 면부지(Jean) | 千㎡ | 32121 112 | 모루 | 개 | 38113 117 |
| 면사 | | | 모모아 | 개 | 35601 218 |
| 순면사 | kg | 32112 211 | 모방적사 | kg | 32113 211 |
| 혼반면사 | kg | 32112 212 | | | ~ 216 |
| 면솜 | kg | 32191 111 | 모발제품(기타) | ※ | 39055 119 |
| 면양말 | 천족 | 32151 211 | 모시 | kg | 32116 113 |
| 면연사(재봉사) | kg | 32117 111 | 모시사 | kg | 32116 212 |
| 면연사(편물사) | kg | 32117 211 | 모시직물 | 千㎡ | 32124 112 |
| 면장갑(편직한 것) | 천조 | 32154 111 | 모양말 | 천족 | 32151 212 |
| 면직기 | 대 | 38242 311 | 모연사(재봉사) | kg | 32117 113 |
| 면직물 | 千㎡ | 32121 111 | 모연사(편물사) | kg | 32117 212 |
| | | ~ 200 | 모자 | | |
| 면 타이어 직물 | kg | 32193 114 | 펠트모자 | 개 | 32227 211 |
| 면 타이어 코드사 | kg | 32193 111 | 엮은모자 | 개 | 32227 212 |
| 면(황) 편직물 | kg | 32155 112 | 여자모자 | 개 | 32227 213 |
| 면혼방사 | kg | 32112 212 | 기타모자 | ※ | 32227 219 |
| 면화씨 | kg | 32112 121 | 모자(편직한 것) | 개 | 32159 413 |
| 면 혼방직물 | 千㎡ | 32121 200 | 모자(교무제품) | ※ | 35593 118 |
| 면화씨 기름(면실유) | kg | 31152 112 | 모자 보강재 | ※ | 32194 114 |
| 명반 | 개 | 35121 413 | | | |

(口)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모자에 부착하는 악세사리 | ※ | 32227 300 | 목걸이 | ※ | 39010 211 |
| 모장갑(편직한 것) | 千조 | 32154 112 | 목공밀링기 | 대 | 38235 124 |
| 모조라아드 | kg | 31153 212 | 목관악기 | | |
| 모조지(백상지) | ※ | 34113 111 | 플루트 | ※ | 39024 111 |
| 모조장신구 | ※ | 39052 200 | 피콜로 | ※ | 39024 111 |
| 모조 진주(귀석) | ※ | 36209 100 | 피리 | ※ | 39024 111 |
| 모조켓겅 | ※ | 32119 400 | 클라리넷 | ※ | 39024 111 |
| 모직기 | 대 | 38242 313 | 섹스폰 | ※ | 39024 111 |
| 모직물 | 千㎡ | 32122 111 | 기타 목관악기 | ※ | 39024 111 |
| | | ~ 212 | 목기 | ※ | 33192 111 |
| 모터 | | | | | ~ 112 |
| 소형모터 | 개 | 38349 123 | 목분 | ※ | 33119 112 |
| 모터(전동기) | 대 | 38311 111 | 목욕통(욕조 - 도기계품) | 개 | 36103 115 |
| 모터 가솔린(휘발유) | ㎝ | 35300 212 | 목욕통 | | |
| 모터 싸이클 부품 | ※ | 38442 312 | 법랑계 위생용품 | 천개 | 38193 112 |
| 모터 싸이클용 기관 | ※ | 38442 311 | 스텐레스계 위생용품 | 천개 | 38193 212 |
| 모터 싸이클용 타이어 | 千본 | 35511 112 | 목재 | ㎡ | 33111 111 |
| 모터 싸이클용 튜브 | 千본 | 35511 212 | | | ~ 900 |
| 모터 스타터 | 대 | 38314 112 | 목재건물-조립 | ※ | 33112 114 |
| 모파일 및 셔닐직물 | 천㎡ | 32122 113 | 목재 구슬선 쇠실이 | ※ | 33112 111 |
| 모(황) 편직물 | kg | 32155 111 | 목재도구 | ※ | 33194 111 |
| 모포(담요) | ㎡ | 32142 112 | 폴리브데늄 | kg | 37229 213 |
| 모피 | | | 폴리브데늄광(수연광) | kg | 23026 100 |
| 간털동물 손질 모피 | ㎡ | 32321 111 | 폴리브데늄 철 | ※ | 37112 114 |
| 기타 손질 모피 | ※ | 32321 112 | 물탈 | ※ | 36949 111 |
| 인조 모피 | ㎡ | 32322 100 | 못 | | |
| 모피장갑 | 조 | 32228 113 | 쇠못(산업용) | ※ | 37124 312 |
| 모피제품(모피의복은 32226 에 분류) | ※ | 32323 100 | 동못 | ※ | 37290 112 |
| 모피 의복 | | | 알루미늄 못 | ※ | 37290 212 |
| 남자용 모피의복 | 착 | 32226 211 | 니켈못 및 유사제품 | ※ | 37290 312 |
| 여자용 모피의복 | 착 | 32226 212 | 쇠못(철정) | ※ | 38196 114 |
| 인조 모피의복 | 착 | 32226 213 | 무계목강판 | ※ | 37123 111 |
| 모 혼방직물 | 千㎡ | 32122 211 | 무기 | ※ | 38298 100 |
| | | ~ 212 | 무늬판유리 | 상자 | 36201 114 |
| | | | 무생염료 | ※ | 35131 121 |
| | | | 무수마레인산 | ※ | 35113 121 |

(口)~(日)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무수망초 | % | 35122 215 | 미가공 알루미늄과 | % | 37212 100 |
| 무선통신장비 | 대·※ | 38323 111 | 미가공 연 합금 | % | 37223 111 |
| 무스프탈산 | % | 35113 122 | 미가공 연(연피) | % | 37213 100 |
| 무연탄(연탄은 35401 111 에 분류) | % | 21010 100 | 미가공 주석 | % | 37219 211 |
| 무기용화약 | ※ | 35292 200 | 미가공 중석 | % | 37219 311 |
| 무인 비행기 | 대 | 38490 900 | 미강유 | ℓ | 31152 123 |
| 목 | | | 미과 | kg | 31172 112 |
| 도토리목 | ※ | 31224 211 | 미생물 백신 | ※ | 35221 111 |
| 메밀목 | ※ | 31224 212 | 미송 각재 | m ² | 33111 212 |
| 기타 목 | ※ | 31224 219 | 미송 소할재 | m ² | 33111 112 |
| 문(건물용 금속제) | % | 38131 111 | 미송 판재 | m ² | 33111 312 |
| 문(창문 포함) | 개 | 33112 115 | 미술관(잡관을 말함) | 千개 | 38191 112 |
| 문구용품(유리제품) | ※ | 36206 113 | 미역 | ※ | 31145 200 |
| 물감 | ※ | 39091 121 | 미장합판(가공합판) | m ² | 33114 112 |
| 물고기(냉동 물고기) | % | 31142 100 | 믹서 | | |
| 물고기 가공용 기계 | 대 | 38243 915 | 식품가공용 전기믹서 | 개 | 38334 311 |
| 물고기 간유 | ※ | 31151 112 | 상업용 믹서기 | 대 | 38265 116 |
| 물고기(건조, 염장 또는 훈제 한 것) | ※ | 31145 100 | 콘크리트 믹서 | 대 | 38241 323 |
| 물고기 목 | ※ | 31144 100 | 민서, 세절기 및 컷터 | ※ | 38115 114 |
| 물고기 소시지 | ※ | 31144 100 | 밀가루 | % | 31161 211 |
| 물고기 소오스 | ※ | 31144 100 | 밀가루망 | % | 31171 111 |
| 물고기 스물 | ※ | 31144 100 | 밀국수 | kg | 31175 111 |
| 물고기 엑스 | ※ | 31144 100 | 밀링기(금속 절삭) | 대 | 38231 125 |
| 물고기 지방 | ※ | 31151 111 | 밀링기(목공) | 대 | 38235 124 |
| 물라이트 및 특수성형 내화제 | % | 36943 100 | 밀크로손 | kg | 35235 111 |
| 물리 및 화학분석용 기구 | ※ | 38544 300 | 밀쌀 | % | 31161 113 |
| 물리, 화학분석용 광학기구 | ※ | 38529 912 | 밍크 | ※ | 32321 112 |
| 물엿 | kg | 31226 112 | 바너 | 대 | 38194 215 |
| 물조절기(수영장) | 대 | 38269 117 | 바느질 실 | kg | 32117 400 |
| 물통 | ※ | 38142 119 | 바늘 및 핀 | ※ | 39099 111 |
| 뮤직센터 | 대 | 38321 315 | 바니쉬 | ℓ | 35211 111 |
| 미가공 니켈 | % | 37219 111 | 바둑판 및 바둑좌 | ※ | 39044 200 |
| 미가공 아연 | % | 37214 100 | 바아지 | % | 38412 800 |
| | | | 바이브레이타 | 대 | 38234 126 |
| | | | 바이올린 | ※ | 39023 111 |

(나)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분 | kg | 35235 212 | 브레이크 및 부품 | ※ | 38432 914 |
| 분급기 | 대 | 38243 216 | 브래지어 | ※ | 32225 111 |
| 분도기 | ※ | 38542 113 | 브로드 | 천㎡ | 32121 112 |
| 분류 및 정류장치 | 대 | 38244 918 | 블록 제조기 | 개 | 38119 222 |
| 분말인삼(인삼차 제외) | kg | 31222 113 | 브리스터 등 | ※ | 37211 112 |
| 분말쥬스 | kg | 31229 311 | V.C.M(염화 비닐 모노머) | ※ | 35112 115 |
| 분말커피 | kg | 31227 113 | V.T.R(영상녹화 재생기) | 대 | 38321 115 |
| 분무기(농업용) | 대 | 38220 411 | 블록(고로용 블록) | ※ | 36941 112 |
| 분무기(산업용) - 동력 | 대 | 38299 100 | 블록(콘크리트 블록) | 千매 | 36934 113 |
| 분산염료 | ※ | 35131 117 | 블록보드 | ㎡ | 33114 113 |
| 분상 | ※ | 35601 218 | 블룸(보통강) | ※ | 37113 321 |
| | | | 블룸(고탄소강) | ※ | 37113 322 |
| 분유 | kg | 31122 200 | 블룸(합금강) | ※ | 37113 323 |
| 분필 | 千개 | 39091 128 | 비가황 고무관 | ※ | 35599 117 |
| 분꽃 점화기관 | 대 | 38432 111 | 비가황 분산제 | ※ | 35599 116 |
| 분도저 | 대 | 38241 511 | 비가황 용액 | ※ | 35599 116 |
| 분도저 부품 | ※ | 38241 519 | 비가황 프로파일 | ※ | 35599 118 |
| 분소 | ※ | 35121 111 | 비광학 유리, 고정안경 렌즈 - | ※ | 36205 112 |
| 불포화상 폴리에스터 | ※ | 35114 114 | 생지 | | |
| 불화수소산 | ※ | 35121 511 | 비경화 가황 고무의 관 | km | 35592 113 |
| 불활성전지 | 개 | 38394 113 | 비경화 가황고무 제1차제품 | ※ | 35592 112 |
| 붓 | 천개 | 39091 124 | 비경화 고무의 부스러기 | ※ | 35599 213 |
| 붕대 | ※ | 32196 111 | 비누 | ※ | 35231 111 ~ 119 |
| 붕산나트륨 | ※ | 35122 312 | 비누절단 또는 성형기 | 대 | 38244 911 |
| 붕소 | ※ | 35121 122 | 비닐우산 | 개 | 39092 113 |
| 브라우저(여자용) | ※ | 32223 113 | 비닐벽지 | ※ | 35601 217 |
| 브라우저(소아용) | ※ | 32224 111 | 비디오카메라 | 대 | 38523 112 |
| 브라운관 | 대 | 38341 111 | 비디오 테이프 | 천 km | 38326 113 |
| | | ~ 114 | 녹음 테이프 | 천 km | 35296 112 |
| 칼라용 TV브라운관 | 천개 | 38341 112 | 비료 | | |
| 흑백용 TV브라운관 | 천개 | 38341 111 | 순수황산암모늄(유안) | ※ | 35151 111 |
| 브라운관용 슈티(부착물이 있는 것은 T.V브라운관 반제품으로 분류) | 천개 | 36203 211 | 황철산암모늄 | ※ | 35151 112 |
| 브랜디 | ℓ | 31315 112 | 질산암모늄(질안) | ※ | 35151 113 |
| | | | 칼슘시아나미드 | ※ | 35151 114 |

(나)~(사)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요소비료 | ㄱ | 35151 115 | 비올라 셀로 | ※ | 39023 111 |
| 질산칼슘 | ㄱ | 35151 116 | 비일간 신문 | 千부 | 34211 112 |
| 염화암모늄(염안) | ㄱ | 35151 117 | 비전기로 | 대 | 38299 312 |
| 혼합질소비료 및 기타 질소질비료(석회질소포함) | ※ | 35151 119 | 비중 측정계 | ※ | 38544 211 |
| 순수인산비료 | ㄱ | 35152 111 | 비타민제 | ※ | 35224 115 |
| 용성인비 | ㄱ | 35152 112 | 비터 및 믹서 | 대 | 38115 113 |
| 소성인비 | ㄱ | 35152 113 | 비콘 | ※ | 38395 113 |
| 기타 인산질 비료 | ※ | 35152 119 | 비행기 | | |
| 파린산석회 | ※ | 35152 119 | 항공기(헬리콥터 포함) | ※ | 38451 100 |
| 용과린 | ㄱ | 35152 121 | 헬리콥터(전투용 포함) | ※ | 38490 900 |
| 혼합인산질비료 | ㄱ | 35152 122 | 무인 비행기 | ※ | 38490 900 |
| 황산카리 | ㄱ | 35153 111 | 기타 비행기 | ※ | 38490 900 |
| 염화카리 | ㄱ | 35153 112 | 빌렛(보통강) | ㄱ | 37113 331 |
| 혼합카리질 비료 및 기타 카리질 비료(유산고토 비 료 포함) | ※ | 35153 119 | 빌렛(고탄소강) | ㄱ | 37113 332 |
| 복합비료 | ㄱ | 35154 100 | 빌렛(합금강) | ㄱ | 37113 333 |
| 유기질비료(화학처리한 것) | ※ | 35159 900 | 빙과(아이스 케이크) | ㄱ | 31174 100 |
| 기타화학 비료 | ㄱ | 35159 100 | 사과주 | ㄷ | 31323 911 |
| 비료, 농약, 살충제의 제조기계 | 대 | 38244 116 | 사료 | | |
| 비상업용 선박 | ㄱ | 38412 300 | 배합사료 | ㄱ | 31230 112 |
| 비석 | ㄱ | 36994 111 | 보조사료 | ㄱ | 31230 113 |
| 비소 | ㄱ | 35121 118 | 사료제조용 조제품 | ※ | 31230 114 |
| 비소광 | ※ | 29020 915 | 애완동물 사료 | ㄱ | 31230 211 |
| 비 및 솔 | ※ | 39093 113 | 사료건조기 | 대 | 38220 622 |
| 비스켓(크래커, 쿠키 포함) | ㄱ | 31172 111 | 사료용 재료(분쇄한 줄기, 뿌 리등) | ※ | 31169 200 |
| 비스코스 레이온(재생 장섬유) | ㄱ | 35142 111 | 사료절단기 | 대 | 38220 623 |
| 비스코스 레이온(재생 단섬유) | ㄱ | 35142 311 | 사료저 | 대 | 38441 114 |
| 비스코스 레이온(재생 장섬유 토우) | ㄱ | 35142 411 | 사무실 및 공공건물용 내장 가구 | ※ | 33202 112 |
| 비식용 고기제품(가공한 것) | ※ | 31119 400 | 사암(쇄석) | ㄱ | 29012 100 |
| 비식용 동물기름 | ㄱ | 31151 211 | 사육기 | | |
| | | ~ 222 | 가금사육기(병아리 사육용) | 대 | 38220 612 |
| 비올라 | ※ | 39023 111 | 기타 가금사육기 | 대 | 38220 619 |
| | | | 꿀벌사육기 | 대 | 38220 621 |
| | | | 사이다 | ㄷ | 31341 111 |

(나)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사이살마 | kg | 32116 116 | (전자개폐기) 스위치 회로 | | |
| 사이살마사 | kg | 32116 216 | 차단기 | | |
| 사이크로미터 | ※ | 38544 211 | 산업용 바구니 | ※ | 33125 111 |
| 사이크로 핵산 | ※ | 35111 115 | 산업용 수동트럭 및 산업용 | 대 | 38294 111 |
| 사이크론 | 대 | 38134 214 | 트레일러 | | |
| 사이프러스 흡 | ※ | 29020 413 | 산업용 저울 | 개 | 38254 111 |
| 사진감광유계 도포용 기계 | 대 | 38249 113 | 산업용 전자 통계장비 | 대 | 38314 114 |
| 사진 및 영사실 장비 | ※ | 38526 100 | 산업용 파스너 | ※ | 38195 114 |
| 사진 모사전송기(팩시밀리) | 대 | 38322 215 | 산화 및 과산화 아연 | kg | 35121 312 |
| 사진 복사장치(전자 복사기 포함) | 대 | 38525 111 | 산화 방지제 | kg | 35299 127 |
| 사진 복사장치 부품 | ※ | 38525 900 | 산화 알루미늄 | ※ | 35121 315 |
| 사진 섬광구(전기로 점화하는 것) | 개 | 38392 116 | 산화 질산 | m ² | 35123 215 |
| 사진 섬광장치 | 개 | 38523 122 | 산화 질소 | m ² | 35123 215 |
| 사진 원판 및 필름 | ※ | 35296 111 | 산화철 | ※ | 35132 118 |
| 사진틀(금속제) - 카메라 제외 | ※ | 38122 113 | 산화 티타늄 | ※ | 35121 313 |
| 사진틀(목제) | ※ | 33193 111 | 살균기(식료품 가공기계) | 대 | 38243 112 |
| 사진판(인쇄판) | ※ | 34232 113 | 살균소독기(가정용) | 개 | 38339 115 |
| 사카린 | | | 살균장치 | 대 | 38244 923 |
| 식용사카린 | kg | 31226 115 | 살균제 | ※ | 35160 112 |
| 의약품 사카린 | kg | 35119 316 | 살서제(취약) | ※ | 35160 114 |
| 사형 주철관 | ※ | 37131 114 | 살수차 | 대 | 38431 400 |
| 사프렌슬 | 천개 | 39091 123 | 살충제 | ※ | 35160 111 |
| 싸이펜 | 천타 | 39091 122 | 쌀 | kg | 31161 111 |
| 산소(오존포함) | m ² | 35123 111 | 쌀통 | 대 | 38192 213 |
| 산소관능의 아미노화합물 | ※ | 35119 214 | 삼각자 | 천개 | 39091 131 |
| 산소요법 및 기타 호흡기기 | ※ | 38513 112 | 삼륜거 | 대 | 38441 113 |
| 산성 매염 염료 | ※ | 35131 114 | 삼 | 천개 | 38114 111 |
| 산성 백토 | ※ | 29032 111 | 상(나무제품) | 개 | 33201 118 |
| 산성 염료 | ※ | 35131 112 | 상(프라스틱제) | ※ | 35605 119 |
| 산업용 기관차 | 대 | 38421 212 | 상(금속제) | ※ | 38121 118 |
| 산업용 냉동장비 | 대 | 38263 115 | 상수도용 여과기 | 대 | 38299 912 |
| 산업용 모래 | m ² | 29033 100 | 상수도용 장비 및 부품 | ※ | 38299 918 |
| 산업용 및 가정용 폐쇄안전 | 대 | 38313 114 | 상수도용 정수기 | 대 | 38299 913 |
| | | | 상업용 냉장고 | 대 | 38263 111 |
| | | | 상업용 마루세척기 및 광택기 | 대 | 38269 111 |

(八)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상업용 세탁기 | 대 | 38262 111 | 샤시문 | ㉔ | 38131 112 |
| 상업용 저울 | 개 | 38254 112 | 알루미늄 샤시바 | ㉔ | 37232 116 |
| 상업용 조리장비 | 대 | 38265 111 | 샤시(차량용) | ※ | 38432 211 |
| 상업 인쇄업(임가공) | ※ | 34221~ | 샷시문 및 창틀 | ㉔ | 38131 112 |
| 상업 장식 | ※ | 34229 | 샤프연필 | 개 | 39091 123 |
| 상자 | | 32144 200 | 삼푸 | ㄱ | 35235 311 |
| 골판지 상자 | 천㎡ | 34121 100 | 샷터(건물용) | ㉔ | 38131 113 |
| 판 지 상자 | ※ | 34123 100 | 샷틀(=북) | 천개 | 38242 623 |
| 파이버 상자 | ※ | 34125 100 | 서가(목재) | 천개 | 33201 113 |
| 상자 | | | 서가(금속제) | 천개 | 38121 114 |
| 결 목상자 | ※ | 33123 111 | 서예지 | ※ | 34116 112 |
| 포장상자 | ※ | ~ 119 | 서적 | 千권 | 34213 111 |
| 상사형 자료처리 장비 및 하이 | 대 | 38251 112 | 서크라인 | 千개 | 38392 117 |
| 브리드기 | | | 색래 | 개 | 38220 112 |
| 상점 장치물(목재) | ※ | 33206 100 | 석고(클라스터) | ㉔ | 36923 100 |
| 상점 장치물(금속제) | ※ | 38122 112 | 석고(천연석고) | ㉔ | 29093 100 |
| 상호 통신장비(전화 및 전신 | 대 | 38324 111 | 석도·강판 | | |
| 연합된 것 제외) | | | 전기도금 석도강판 | ㉔ | 37192 111 |
| 쌀 | ㉔ | 31161 111 | 열지도금 석도강판 | ㉔ | 37192 112 |
| 쌍안경 | 개 | 38529 914 | 석면 | ㉔ | 29094 100 |
| 삼페인 | ㄱ | 31319 214 | 석면 또는 기타물질 기저 마 | ※ | 36991 119 |
| 새끼 | ※ | 32195 112 | 찰재료 | | |
| 새끼틀 | 대 | 38220 415 | 석면 혼합물 | ※ | 36991 111 |
| 새장 | ※ | 38196 119 | 석영 | ㉔ | 29099 917 |
| 색소질 | | | 석유 | ㄱ | 35300 214 |
| 식물성 색소질 | ※ | 35133 111 | 석유콘로 | 대 | 38265 113 |
| 동물성 색소질 | ※ | 35133 112 | 석유난로(콘로제외) | 대 | 38194 212 |
| 색채 필터 및 간섭필터 | 개 | 38522 114 | 석유역청(아스팔트) | ㄱ | 35300 411 |
| 색도 | ㉔ | 35132 113 | 석유정제기 및 장비 | 대 | 38244 200 |
| 샌더 | 대 | 38234 117 | 석유제리 | ㉔ | 35409 111 |
| 샌드 페이퍼링기 | 대 | 38235 118 | 석유 코크스 | ㉔ | 35300 412 |
| 셀러드 드레싱 | ㄱ | 31213 116 | 석유화학 플랜트 | 대 | 38244 115 |
| 생물학적 해부모형(해부도, 해부 | ※ | 38519 100 | 석재용 톱 | 천개 | 38116 113 |
| 표본) | | | 석탄난로 | 대 | 38194 211 |
| 생리대 | ㄱ | 34192 113 | 석탄 코크스 | ㉔ | 35409 211 |
| 생사 | ㄱ | 32111 111 | 석판 인쇄기(활판 포함) | 대 | 38247 114 |
| 생석회 | ㉔ | 36922 111 | 석필 | ㉔ | 36945 111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석회 | | | 기타선박 | | |
| 생석회 | % | 36922 111 | 부선도트 및 기타 비추진식 | % | 38419 111 |
| 소석회 | % | 36922 112 | 선박 | | |
| 수경성 석회 | % | 36922 113 | 부유구조물 | ※ | 38419 112 |
| 석회석 | % | 29031 100 | 합성수지선 | % | 38419 211 |
| 석회질소 | ※ | 35151 119 | 콘크리트선 | % | 38419 212 |
| 선광기 | 대 | 38241 114 | 경금속선 | % | 38419 213 |
| 선그라스 | 千개 | 38528 113 | 선박용 디젤기관 | 대 | 38411 100 |
| 선박 | | | 선박용 소옥기관 | 대 | 38411 100 |
| 강선 | | | 선박해체업 | ※ | 38415 100 |
| 유조선 | % | 38412 111 | 선반(船盤) (금속제) | ※ | 38122 111 |
| 일반화물선(다목적선, 콘테이 너선, 자동차운반선 바지선) | % | 38412 112 | 선반 | | |
| 특수 화물운반선(화학 및 가스운반선, 냉동선) | % | 38412 119 | 수치제어선반(NC 선반) | 대 | 38231 111 |
| 예인선 | % | 38412 200 | 보통선반 | 대 | 38231 113 |
| 쇄빙선, 캐이블선, 탐색선 및 기타 비상업용 선박 | % | 38412 300 | 자동선반 | 대 | 38231 112 |
| 여객선(페리포함) | % | 38412 400 | 입선반 | 대 | 38231 114 |
| 어선(공장트롤러 포함) | % | 38412 511 | 기타선반(터릿, 탁상선반등) | 대 | 38231 115 |
| 공강선 | % | 38412 512 | 선박 및 축 성형기(목공기계) | 대 | 38235 117 |
| 기타특수선박 | ※ | 38412 900 | 선별기(광산장비) | 대 | 38241 115 |
| (조명선 해난구조선 준설선 기중 기선 소방선 기상관측선 경비선 군함 잠수함등) | | | 선별기(달걀선별기 제외 38209613 | 대 | 38229 416 |
| 목선 | | | 선 스프링 | % | 38196 112 |
| 여객선 | % | 38413 100 | 선재(보통강) | % | 37124 111 |
| 화물선 | % | 38413 200 | 선재(고탄소강) | % | 37124 112 |
| 어선 | % | 38413 300 | 선재(합금강) | % | 37124 113 |
| 기타목선 | ※ | 38413 900 | 선철 | | |
| 보트 | | | 제강용 선철 | % | 37111 111 |
| 동력보트 | 대 | 38414 111 | 주물용 선철 | % | 37111 112 |
| 돛배 | 대 | 38414 112 | 선풍기-가정용 | 대 | 38332 100 |
| 기타보트 | 대 | 38414 119 | 선형 폴리에스터수지 | % | 35114 121 |
| 고무보트 | ※ | 35599 215 | 설탕과자(캔디류) | kg | 31173 311 |
| | | | 설탕과자 제조기 | 대 | 38243 913 |
| | | | 설탕그릇(도금귀금속제) | ※ | 39010 612 |
| | | | 설탕시럽 | ※ | 31182 200 |
| | | | 설탕입힌 과일 | ※ | 31173 400 |
| | | | 설탕 제조 또는 정제기 | 대 | 38243 917 |

(나)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섬광계 | kg | 35296 217 | 센더 | 대 | 38234 117 |
| 섬아연광 | kg | 23025 200 | 셀러드드레싱 | kg | 31213 116 |
| 섬유 기계용 가죽제품 | ※ | 32331 112 | 셀레늄 | kg | 35121 115 |
| 섬유 시험기계 및 기기 | 대 | 38543 112 | 셀루로우즈, 펄프, 종이제조용 기계 및 부품 | ※ | 38246 129 |
| 섬유 완성용 기계 및 장비 | 대 | 38242 912 | 셀로판지 | kg | 34199 112 |
| 섬유용 기계 | ※ | 38242 111 | 서닐사 | kg | 32119 112 |
| 섬유프록 및 릴법 | ※ | 32199 116 | 셔츠(여자용) | 매 | 32223 114 |
| 성냥(가정용 덕용 대형기준) | kg | 35293 100 | 셔츠부품 | ※ | 32222 121 |
| 성냥개비 | ※ | 33119 113 | 소금 | | |
| 성냥 칩책기 | 대 | 38249 111 | 천일염 | kg | 29040 100 |
| 성장조절제 | kg | 35160 115 | 맛소금 | kg | 31213 200 |
| 성형기(금속) | 대 | 38232 117 | 정제소금 | kg | 31212 300 |
| 성형 프레스 | 대 | 38245 112 | 소다회 | kg | 35122 113 |
| 세단 | 대 | 38431 113 | 소독비누 | kg | 35231 113 |
| 세륨 | kg | 35121 126 | 소액피 | kg | 31161 311 |
| 세면기(위생 도기계품) | 개 | 36103 112 | 소면 및 정소면 | kg | 32112 112 |
| 세면기(법랑제 위생제품) | 개 | 38193 113 | 소모직물(혼방) | 천㎡ | 32122 211 |
| 세무 손질 가죽 | ㎡ | 32311 311 | 소모직물(순) | 천㎡ | 32122 111 |
| 세모기 | 대 | 38242 115 | 소모한 무두질 접질 | ※ | 32311 600 |
| 세수대야(법랑제) | 천개 | 38193 113 | 소방차 | 대 | 38431 400 |
| 세수대야(프라스틱제) | ※ | 35605 119 | 소변기 | 개 | 36103 114 |
| 세척기(야채 및 과일세척기 삭과기 고기세척기) | ※ | 38115 114 | 소석회 | kg | 36922 112 |
| 세척기(목공기계) | 대 | 38235 113 | 소성인비 | kg | 35152 113 |
| 세정제 | kg | 35296 215 | 소스병(도금 귀금속계) | ※ | 39010 612 |
| 세척기(금속) | 대 | 38233 113 | 소시지(육류) | kg | 31119 113 |
| 세척기(달걀) | 대 | 38220 614 | 소시지(물고기) | ※ | 31144 100 |
| 세척기(종이) | 대 | 38246 111 | 소주 | ℓ | 31312 100 |
| 세탁기 | | | 소켓트 | 천개 | 38396 111 |
| 상업용 세탁기 | 대 | 38262 111 | 소화기(消火器) | 대 | 38299 611 |
| 전기 세탁기(가정용) | 대 | 38333 111 | 소화장비 및 소화용 스프링 | ※ | 38299 612 |
| 세탁기(전기)부품 | ※ | 38333 119 | 쿨러 | | |
| 세포(당류) | 천㎡ | 32121 112 | 소화기(小火器) 및 중화기 (重火器) | ※ | 38299 919 |
| 세포형 나무판재 | ㎡ | 33114 114 | 소화기액 | kg | 35112 112 |
| 세족직물 | ※ | 32125 100 | | | |
| 섹스콘(목관약기) | ※ | 39024 111 | | | |

(나)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소화기용 조세콤 및 충전물 | kg | 35299 115 | 수경석회 | ㄱ | 36922 113 |
| 소형모터(전자용) | 개 | 38349 123 | 수도미터 | 대 | 38545 113 |
| 속도계 검사용 시험대 | 대 | 38543 215 | 수동식 가스용접기 | 개 | 38119 214 |
| 속도계 및 타코미터 | 개 | 38546 112 | 수동식 납땜 인두(전열식포함)포함 | 개 | 38119 216 |
| 손목시계 | 개 | 38531 111 | 수동식 벽돌 및 브록크 제 조기 | 개 | 38119 222 |
| 손수건 | ※ | 32229 219 | 수동식 전화 교환기 | 회선 | 38322 113 |
| 손수레 및 기타 비동력차량 | 대 | 38490 200 | 수동식 타자기 | 대 | 38255 112 |
| 손톱깎기 | 천개 | 38112 117 | 수동펌프 | 대 | 38291 114 |
| 손틀 | 대 | 38295 111 | 수력터빈 | 대 | 38212 400 |
| 솔(옷솔, 구두솔, 치솔, 면도 솔 등) | ※ | 39093 113 ~ 119 | 수렵 및 경기용 총(공기총 포함) | ※ | 38298 200 |
| 솔벤트 | | | 수모 및 양모 | kg | 32113 111 |
| 복합솔벤트 | ㄹ | 35215 113 | 수모직물 | 천㎡ | 32122 114 |
| 백성솔벤트 | ㄹ | 35300 215 | 수모방적사 | kg | 32113 213 |
| 솜 | | | 수문(철재) | 개 | 38131 114 |
| 면솜 | kg | 32191 111 | 수산 | ㄱ | 35119 115 |
| 인조섬유 솜 | kg | 32191 112 | 수산물 기름 | ※ | 31151 113 |
| 가락 솜 | ※ | 32191 119 | 수산화 나트륨(가성소다) | ㄱ | 35122 111 |
| 송풍기 | | | 수산화 마그네슘 | ㄱ | 35121 418 |
| 블로우어형 송풍기 | 대 | 38292 111 | 수산화 암모니움 | ㄱ | 35121 614 |
| 팬형 송풍기 | 대 | 38292 112 | 수산화칼리(가성칼리) | ㄱ | 35122 112 |
| 솔(알루미늄제) | 천개 | 38142 111 | 수성 증류물 | kg | 35298 114 |
| 솔(스텐레스제) | 천개 | 38142 211 | 수소 | ㎡ | 35123 211 |
| 쇄목펠프 | ㄱ | 34111 100 | 수연광(몰리브덴광) | kg | 23026 100 |
| 쇄빙선, 케이블선 | G/T | 38412 300 | 수염색직물 및 사 | ※ | 32139 100 |
| 쇄석 | ㄱ | 29012 100 | 수염복 | 착 | 32222 600 |
| 쇠가죽 | ㎡ | 32311 111 | 수은 | ㄱ | 23029 914 |
| 쇠고기·통조림 | kg | 31111 100 | 수은증기터빈 | 대 | 38212 200 |
| 쇠기름(우지) | ㄱ | 31151 222 | 수의용 기구 | ※ | 38512 114 |
| 쇠못(직접생산한 철강선을 더 가공하여 쇠못을 제조) | ㄱ | 37124 312 | 수저(스푼) | ※ | 38111 100 |
| 쇠못(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 하여 쇠못을 제조) | ㄱ | 38196 114 | 수정진동자 | 개 | 38349 124 |
| 쇠스랑(갈퀴) | ※ | 38114 119 | 수중용 경기용품 | ※ | 39039 913 |
| 쇼울 및 유사 여자용 목도리 | 개 | 32229 212 | 수지 | ㄱ | 35114 111 |
| 쇼트닝(쇼-팅) | kg | 31153 213 | 수지산 및 유도체 | ※ | ~ 149 35117 112 |
| 수건(타월) | kg | 32149 911 | | | |

(八)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
| 수차 | ※ | 38219 119 | 수학적 계산기구 | ※ | 38542 112 |
| 수치제어 (NC) 기계 | | | 수화실리카겔 | kg | 35299 133 |
| 수치제어 밀링기 | 대 | 38231 137 | 수확 탈곡결합기(자체추진식) | 대 | 38220 315 |
| 수치제어 선반 | 대 | 38231 111 | 순간온수기(가스·전기용) | 대 | 38334 917 |
| 수치제어 연삭기 | 대 | 38231 141 | 순 면사 | kg | 32112 211 |
| 수치제어 보링기 | 대 | 38231 142 | 순 면직물 | 천 ^m | 32121 112 |
| 수치제어 기어커팅기 | 대 | 38231 143 | 순 방도사 | kg | 32113 211 |
| 수치제어 드릴링기 | 대 | 38231 144 | 순 방모직물 | 천 ^m | 32122 112 |
| 수치제어 평삭기 | 대 | 38231 145 | 순 본견직물 | 천 ^m | 32123 111 |
| 기타 수치제어 금속절삭기계 | 대 | 38231 146 | 순 소모사 | kg | 32113 212 |
| 수치제어 금속가공기계 | 대 | 38231 125 | 순 소모직물 | 천 ^m | 32122 111 |
| 수치제어 목공기계 | 대 | 38235 125 | 순수 인산비료 | ㄱ | 35152 111 |
| 수통과 | ※ | 32143 112 | 순수 황산 암모늄(유안) | ㄱ | 35151 111 |
| 수퍼폴리아미드 섬유(합성 장섬유) | ㄱ | 35143 111 | 순회도서 및 쇼룸차 술 | 대 | 38431 400 |
| 수퍼폴리아미드 섬유(합성 단섬유) | ㄱ | 35143 311 | 소주 | kl | 31312 100 |
| 수퍼폴리아미드 섬유(합성 장섬유 토우) | ㄱ | 35143 411 | 인삼주 | kl | 31313 100 |
| 수퍼폴리아미드 수지 | ㄱ | 35114 118 | 고량주 | kl | 31314 111 |
| 수퍼폴리에스터 섬유(합성 장섬유) | ㄱ | 35143 113 | 위스키 | kl | 31314 112 |
| 수퍼폴리에스터 섬유(합성 단섬유) | ㄱ | 35143 313 | 럼주 | kl | 31314 113 |
| 수퍼폴리에스터 섬유(합성 장 섬유 토우) | ㄱ | 35143 413 | 기타 곡식증류주 | ※ | 31314 119 |
| 수퍼폴리우레탄섬유(합성 장섬유) | ㄱ | 35143 112 | 교약 | kl | 31315 111 |
| 수퍼폴리우레탄섬유(합성 단섬유) | ㄱ | 35143 312 | 브랜디 | kl | 31315 112 |
| 수퍼폴리우레탄섬유(합성 장 섬유 토우) | ㄱ | 35143 412 | 진 | kl | 31315 113 |
| 수퍼히터워터 보일러 | 대 | 38134 112 | 보드카 | kl | 31315 114 |
| 수명 | 대 | 38541 113 | 기타 과일증류주 | ※ | 31315 119 |
| 수명계기 | 대 | 38548 114 | 사과주(발효주) | kl | 31323 911 |
| 수하물차(철도차량) | 량 | 38422 111 | 딸기주(발효주) | kl | 31323 912 |
| | | | 매실주(") | kl | 31323 913 |
| | | | 배주(") | kl | 31323 914 |
| | | | 기타 과일 발효주 | ※ | 31323 919 |
| | | | 과실 합성주 | kl | 31319 100 |
| | | | 합성 청주 | kl | 31319 211 |
| | | | 합성 맥주 | kl | 31319 212 |
| | | | 오가피주 | kl | 31319 213 |

(人)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삼베인 | ㎏ | 31319 214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라텍스 | ※ | 35115 111 |
| 기타 합성주 | ※ | 31319 219 | (S.B.R) | | |
| 약주 | ㎏ | 31321 112 | 스테레오제관 주조용 기계 | 대 | 38247 218 |
| 탁주 | ㎏ | 31321 111 | 스메아린산 | ※ | 35119 113 |
| 청주 | ㎏ | 31322 100 | 스메폴링기 | 대 | 38259 115 |
| 포도주 | ㎏ | 31323 111 | 스텐레스강관 | ※ | 37122 311 |
| 기타 발효주 | ※ | 31329 100 | 스텐레스선 | ※ | 37124 216 |
| 맥주 | ㎏ | 31330 100 | 스텐실 교정액 | ㎏ | 35299 131 |
| 술잔(도금 귀금속제) | ※ | 39010 612 | 스텐실 원지(등사원지) | ※ | 34119 114 |
| 술장식 및 조립 장식물 | ※ | 32144 111 | 스류팬(법랑계 저는 기구) | 천개 | 38192 113 |
| 술 경화제 | ㎏ | 35299 132 | 스트렙토마이신 | ※ | 35223 112 |
| 술(연료용은 제외: 12200 121) | ※ | 35117 115 | 스트로 보스코프 | 개 | 38546 113 |
| 쉬이트바(보통강) | ※ | 37113 341 | 스트론튬 | ※ | 35121 125 |
| 쉬이트바(고탄소강) | ※ | 37113 342 | 스트론튬광 | ※ | 29020 914 |
| 쉬이트바(합금강) | ※ | 37113 343 | 스트립(재생 장섬유) | ※ | 35142 200 |
| 스넥류 | ※ | 31172 200 | 스트립(합성 장섬유) | ※ | 35143 200 |
| 스레트 | 천㎡ | 36931 111 | 스티어린 | ㎏ | 31151 211 |
| 스리터 릴러 | 대 | 38246 212 | 스티렌모노바 | ※ | 35113 111 |
| 스윗치 기어 조립품 | ※ | 38313 119 |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라텍스 | ※ | 35115 111 |
| 스윗치 - 배전장치 | 천개 | 38396 114 |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 ※ | 35115 112 |
| 스치로물 | ※ | 35602 111 | 스틱(계입장비) | ※ | 39032 112 |
| 스카프 | 장 | 32159 412 | 스파게티, 마카로니 및 유사 제품 | ※ | 31175 200 |
| 스칸듐 및 이트륨 | ※ | 35121 127 | 스파이크(육상용 신발) | 족 | 32402 113 |
| 스케이트 | ※ | 39039 300 | 스파이크 및 리베트 | ※ | 37124 313 |
| 스케치북 | 천권 | 34214 115 | 스파이크 프러그(글로우 프러 그 포함) | 개 | 38316 112 |
| 스켈링 | ※ | 37119 119 | 스패너 및 렌치 | 천개 | 38113 114 |
| 스크래퍼 | 대 | 38241 315 | 스포트라이트 | ※ | 38395 113 |
| 스크류 커팅기 | 대 | 38231 136 | 스폰지 | ※ | 35592 116 |
| 스키 | ※ | 39039 300 | 스푼(귀금속 또는 도금제품) | ※ | 39010 511 |
| 스키 리프트 | 대 | 38293 125 | 스푼(금속제) | ※ | 38111 100 |
| 스킨로손 및 밀크로손 | ㎏ | 35235 111 | 스프(분말, 액체등 조제) | ㎏ | 31213 115 |
| 스타킹(여자용) | 천족 | 32151 100 | 스프링 | | |
| 스탬프 | 개 | 39091 116 | 선스프링 | ㎏ | 38196 112 |
| 스탬핑기 및 단조기 | 대 | 38232 111 | | | |

(나)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나선형스프링(차량용) | 매 | 38199 111 | 전기전자시계 | | |
| 앞스프링(차량용) | 매 | 38199 112 | 손목시계 | 천개 | 38532 111 |
| 기타스프링 | ※ | 38199 119 | 벽시계 | 천개 | 38532 112 |
| 스프링 및 추조작모터 | 대 | 38219 112 | 탁상시계 | 천개 | 38532 113 |
| 스프링 생지 | ※ | 37124 314 | 기타시계(타임크록 및 기 | ※ | 38532 119 |
| 스프링 조작 스테이플링 | 개 | 38119 218 | 타의 시간경과를 기록하 | | |
| 미스틀 | | | 는 장치) | | |
| 스프링쿨러(소화용) | ※ | 38299 612 | 시계 기동부 | 천개 | 38533 111 |
| 스피커 시스템 | 대 | 38321 314 | 시계 기동부품(속도 조정장치 | ※ | 38533 114 |
| 스피커 | 개 | 38321 911 | 대 등) | | |
| 스핀들 | 개 | 38242 611 | 시계 또는 시계부품 검사기구 | 천개 | 38543 213 |
| 슬라브-보통강(강반제품) | ※ | 37113 311 | 시계 및 보석공용 료 | 천개 | 38116 114 |
| 슬라브-고탄소강(강반제품) | ※ | 37113 312 | 시계 보석 | ※ | 39010 113 |
| 슬라브-합금강(강반제품) | ※ | 37113 313 | 시계 부착물(백금 또는 순금 | ※ | 39010 313 |
| 슬래그 | ※ | 37119 119 | 의 장신구) | | |
| 슬리퍼(실내화) | 족 | 32403 111 | 시계유리 | ※ | 36203 214 |
| 습도계 및 사이크로미터 | ※ | 38544 211 | 시계줄(직물제) | ※ | 32229 219 |
| 습전지 | 개 | 38394 112 | 시계줄(가죽제) | ※ | 32339 900 |
| 승압기 | ※ | 38312 113 | 시계줄(금속제) | ※ | 38533 119 |
| 승용장난감 | ※ | 39042 100 | 시계줄(여성용 장신구) | ※ | 39010 312 |
| 승용차 | | | 시계추 | ※ | 38533 119 |
| 소형승용차(1400 cc 이하) | 대 | 38431 111 | 시계케이스(휴대용) | 천개 | 38533 112 |
| 중형승용차(1900 cc 이하) | 대 | 38431 112 | 시계케이스(큰 시계용) | 천개 | 38533 113 |
| 대형승용차(1901cc 이하) | 대 | 38431 113 | 시동기 | 대 | 38316 111 |
| 지프형승용차 | 대 | 38431 114 | 시루(토기제) | ※ | 36101 100 |
| 승용차 샴시 | ※ | 38432 211 | 시루(알루미늄제 가정용 집기) | ※ | 38142 119 |
| 승용차 차체부품 | ※ | 38432 600 | 시리콘수지 | ※ | 35114 117 |
| 쓰무기 원단 | 천개 | 32123 111 | 시멘트 | | |
| 시계 | | | 내화시멘트 | ※ | 36949 112 |
| 일반시계 | | | 보통시멘트 | ※ | 36921 111 |
| 손목시계 | 천개 | 38531 111 | 백색시멘트 | ※ | 36921 112 |
| 벽시계 | 천개 | 38531 112 | 고로시멘트 | ※ | 36921 113 |
| 탁상시계 | 천개 | 38531 113 | 알루미나시멘트 | ※ | 36921 114 |
| 기타시계 | ※ | 38531 119 | 팽창시멘트 | ※ | 36921 115 |
| | | | 저열시멘트 | ※ | 36921 116 |

(人)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시멘트동(침전동) | ㄱ | 37211 113 | 식탁용칼 | kg | 38111 100 |
| 시멘트 크링커 | 천ㄱ | 36921 200 | 식용품향료 | kg | 35298 111 |
| 시보리 원단 | 천ㄱ | 32123 111 | 식용품색소 | kg | 31219 111 |
| 시안화나트륨 | ㄱ | 35122 118 | 신 | | |
| 시유(처리우유) | ㄱ | 31124 100 | 가죽신(단화, 학생화, 군화, 가죽장화등) | 족 | 32401 111 ~ 200 |
| 시준의 | 대 | 38541 114 | 목수신(작업화, 등산화, 경기 용 및 슬리퍼 등) | 족 | 32402 111 ~ 119 |
| CB 트랜시버 | 대 | 38323 212 | 나무신 | ※ | 33199 100 |
| 식작 또는 유사 가공유리 | ※ | 36202 111 | 고무신(운동화, 고무신, 고무 장화등) | 천족 | 35591 111 ~ 200 |
| 식관 | 천개 | 38191 111 | 프라스틱신 | ㄱ | 35607 111 |
| 식기(가정용 도자식기) | 천개 | 36102 111 | 신너 | ㄱ | 35215 113 |
| 식기(유리제품) | 천개 | 36206 111 | 신문 | | |
| 식기(법랑제) | 천개 | 38192 114 | 일간신문 | 천부 | 34211 111 |
| 식기(알루미늄) | 천개 | 38142 115 | 비일간신문 | 천부 | 34211 112 |
| 식기(스텐레스) | 천개 | 38142 215 | 신문용지 | ㄱ | 34112 100 |
| 식료품 가공기계 | ※ | 38243 111 ~ 929 |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기 | 대 | 38242 914 |
| 식물성 색소질 | ※ | 35133 111 | 신발용 편(나무제품) | ※ | 33119 113 |
| 식물성 섬유끈 | ※ | 32171 111 | 신발장 | 개 | 33201 124 |
| 식물성 섬유 로프 | kg | 32171 211 | 신발 재단물 및 부속품 | ※ | 32404 100 |
| 식물성 섬유 펄프 | ㄱ | 34111 300 | 신선기(금속성형) | 대 | 38232 122 |
| 식물성 알카로이드 | ※ | 35222 114 | 신체보정용기기(결합보정구, 보청기) | ※ | 38515 114 |
| 식물성 알카로이드 유도제 | ※ | 35222 114 | 식품마쇄기 | 개 | 38339 116 |
| 식물성 왁스 | ㄱ | 35295 112 | 신형 변압기 | 대 | 38312 114 |
| 식물성 탄닌엑스 | ※ | 35133 113 | 실 | | |
| 식물성 파치먼트 및 그라신지 | ※ | 34119 112 | 생사 | kg | 32111 111 |
| 식루기 | 개 | 38220 113 | 부잠사 | kg | 32111 112 |
| 식방 | ㄱ | 31171 111 | 옥사 | kg | 32111 113 |
| 식용 사카린 | kg | 31226 115 | 야잠사 | kg | 32111 114 |
| 식용 아미노산 | kg | 31212 112 | 순면사 | kg | 32112 211 |
| 식자용 장비 | 대 | 38247 216 | 혼방면사 | kg | 32112 212 |
| 식초 | | | 순방모사 | kg | 32113 211 |
| 양조식초 | ㄱ | 31212 211 | 순소모사 | kg | 32113 212 |
| 대용식초 | ㄱ | 31212 212 | | | |
| 식탁(목재) | 개 | 33201 117 | | | |
| 식탁용품(금속제) | ※ | 38111 100 | | | |

(入)~(○)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수모방적사 | kg | 32113 213 | 싱크(요업제품) | 개 | 36103 111 |
| 혼방방모사 | kg | 32113 214 | 싱크(법랑제 위생제품) | 천개 | 38193 111 |
| 혼방소모사 | kg | 32113 215 | 싱크(스텐레스제 위생용품) | 천개 | 38193 211 |
| 혼방 수모사 | kg | 32113 216 | 싱크대(목제) | 천개 | 33201 128 |
| 합성섬유방적사 | ㄱ | 32114 211 | 아교 | ㄱ | 35291 114 |
| 재생섬유방적사 | ㄱ | 32114 212 | 아니린 | ㄱ | 35113 125 |
| 반합성섬유방적사 | ㄱ | 32114 215 | 이동식물무 | 개 | 38199 211 |
| 혼합합성섬유방적사 | ㄱ | 32114 213 | 아동화 | 족 | 32401 114 |
| 혼방재생섬유방적사 | ㄱ | 32114 214 | 아르곤 | ㎥ | 35123 113 |
| 견방적사 | kg | 32115 111 | 아마 | kg | 32116 111 |
| 견혼방사 | kg | 32115 112 | 아마사 | kg | 32116 211 |
| 아마사 | kg | 32116 211 | 아마유 | ㄷ | 31152 115 |
| 모시사 | kg | 32116 212 | 아마직물 | 천㎥ | 32124 111 |
| 황마사 | kg | 32116 213 | 아미노 수지 | ㄱ | 35114 124 |
| 대마사 | kg | 32116 214 | 아미드 관능화합물 | ㄱ | 35119 216 |
| 아바카사 | kg | 32116 215 | 아미유에 넣은 안료 및 스텝 | ※ | 35219 100 |
| 사이살마사 | kg | 32116 216 | 핑크오일 | | |
| 기타 마방적사 | ※ | 32116 219 | 아바카 | kg | 32116 115 |
| 재봉사 | kg | 32117 111 | 아바카사 | kg | 32116 215 |
| | | ~ 119 | 아세달 및 유도체 | ※ | 35119 213 |
| 견물사 | kg | 32117 211 | 아세테이트사 | ㄱ | 32114 215 |
| | | ~ 219 | 아세테이트 섬유(재생 장섬유) | ㄱ | 35142 113 |
| 자수사 | kg | 32117 306 | 아세테이트 섬유(재생 단섬유) | ㄱ | 35142 313 |
| 금속화사 | kg | 32119 111 | 아세테이트 섬유(재생 장섬유 | ㄱ | 35142 413 |
| 셔닐사 | kg | 32119 112 | 토우) | | |
| 킴프사 | kg | 32119 113 | 아바튼(버니큐어제제) | ※ | 35235 412 |
| 유리사 | kg | 32119 200 | 아세티렌 가스 | kg | 35123 115 |
| 종이사 | kg | 32119 300 | 아세틸 살리실산 | ㄱ | 35119 117 |
| 실내화(슬리퍼) | 족 | 32403 111 | 아스팔트(석유역청) | ㄷ | 35300 411 |
| 실드 빔 램프 | 개 | 38395 211 | 아스콘 | ㄱ | 35403 114 |
| 실구터 | ※ | 33194 112 | 아스팔트 토치 | ※ | 35403 116 |
| 실발(타악기) | ※ | 39025 119 | 아아크 등 | 개 | 38392 115 |
| 심지용 편조물 | ※ | 32159 200 | 아연판 및 부착물 | ㄱ | 37239 313 |
| 심자가(백금 또는 순금의 장 | ※ | 39010 312 | 아연광 | ㄱ | 23025 200 |
| 신구 남자용은 제외) | | | 아연피(미가공 아연) | ㄱ | 37214 100 |
| | | | 아연금속 제조제품 | ※ | 37290 500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
| 아연도 강판 | | | 관악기 | 대·※ | 39024 111 |
| 전기도금 아연도 강판 | ※ | 37192 211 | | | ~ 121 |
| 열지도금 아연도 강판 | ※ | 37192 212 | 타악기 | 대·※ | 39025 111 |
| 착색도금 아연도 강판 | ※ | 37192 213 | | | ~ 121 |
| 아연도 철선 | ※ | 37124 212 | 전자악기 | 대·※ | 39026 111 |
| 아연봉 형강 | ※ | 37239 311 | | | ~ 119 |
| 아연분 | ※ | 37239 312 | 국악기 | ※ | 39027 100 |
| 아연분(가공제품) | ※ | 37224 112 | 기타악기 | ※ | 39029 100 |
| 아연선 | ※ | 37239 311 | 악기현 | ※ | 39029 200 |
| 아연 열로이(합금) | ※ | 37224 111 | 악보 | ※ | 34219 100 |
| 아연제조 잔여물 | ※ | 37224 113 | 안경(선그라스는 제외) | 천개 | 38528 112 |
| 아연회 | ※ | 35132 117 | 안경렌즈(콘택트렌즈 포함) | 천개 | 38522 300 |
| 아연관 및 편 | ※ | 37239 312 | 안경케이스 | ※ | 39010 211 |
| 아연 띠 | ※ | 37239 312 | 안경에 | 천개 | 38528 111 |
| 아이스케이프(빙과) | ※ | 31174 100 | 안료 | | |
| 아이스크림 | kg | 31123 100 | 조제무기안료 | ※ | 35132 311 |
| 아이스크림 제조기 | 대 | 38243 115 | 조제유기안료 | ※ | 35132 312 |
| I.C 회로(ISI 회로) | 천개 | 38342 113 | 조제유백제 | ※ | 35132 313 |
| 아코디온 | 개 | 39022 113 | 조제법랑 유약 | ※ | 35132 314 |
| 아코디온(전자) | 대 | 39026 111 | 조제타스터 | ※ | 35132 315 |
| 아크릴사 | ※ | 32114 211 | 레이크제안료 | ※ | 35132 211 |
| 아크릴로 니트릴 | ※ | 35112 131 | 아조제안료 | ※ | 35132 212 |
|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스 | ※ | 35114 135 | 푸타로시아닌블루제안료 | ※ | 35132 213 |
| 티켄(ABS) | | | 푸타로시아닌그린제안료 | ※ | 35132 214 |
| 아크 용접강판 | ※ | 37123 114 | 기타크제안료 및 관련제품 | ※ | 35132 319 |
| 아크 용접장치 | 개 | 38315 111 | 안마기 | 개 | 38335 114 |
| 아트지 | ※ | 34113 114 | 안전유리(강화유리) | 상자 | 36202 211 |
| 아황산 나트륨(아황산소다) | ※ | 35122 215 | 안전유리(적층유리) | 상자 | 36202 212 |
| 아황산칼슘 | ※ | 34111 214 | 안테나(전자용) | 천개 | 38349 125 |
| 아황산 포장지 | ※ | 34119 115 | 안트라센 | ※ | 35116 112 |
| 악기 | | | 안티노크제제 및 광물유첨가제 | kg | 35299 117 |
| 전반악기 | 대·※ | 39021 111 | 안티모니 | ※ | 23029 916 |
| | | ~ 39022 11 | 알긴산 섬유(재생 장섬유) | ※ | 35142 115 |
| 현악기 | 대·※ | 39023 111 | 알긴산 섬유(재생 단섬유) | ※ | 35142 315 |
| | | ~ 119 | 알긴산 섬유(재생 장섬유 토우) | ※ | 35142 415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알루미늄 시멘트 | ㄱ | 36921 114 | 암모니아합성 유니트 | 대 | 38244 112 |
| 알루미늄판 및 중공봉 | ㄱ | 37232 114 | 압연 | ㄱ | 29040 200 |
| 알루미늄 부착물 | ㄱ | 37232 115 | 압력제기(산업 공정용) | 대 | 38548 113 |
| 알루미늄량(알루미늄은 372) | ㄱ | 23029 911 | 압력제 | 개 | 38543 212 |
| 알루미늄 피(미가공알루미늄) | ㄱ | 37212 100 | 압맥 | ㄱ | 31161 114 |
| 알루미늄 도금 철강판 | ㄱ | 37192 311 | 압맥기 | 대 | 38243 213 |
| 알루미늄 로프 및 유사제품 | ※ | 37290 211 | 압연기 | 대 | 38232 211 |
| 알루미늄 못 및 유사제품 | ㄱ | 37290 212 | 압연기틀 | ㄱ | 38232 212 |
| 알루미늄 박지 | ㄱ | 34193 112 | 압축공기식 그리스 피스톨 | 대 | 38234 124 |
| 알루미늄봉 및 형강 | ㄱ | 37232 111 |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기관 | 대 | 38219 111 |
| 알루미늄분 및 편 | ㄱ | 37232 119 | 압축, 액화가스저장 및 운반용 용기 | 개 | 38136 100 |
| 알루미늄선 | ㄱ | 37232 112 | 압축점화기관(자동차용) | 대 | 38432 111 |
| 알루미늄 사시바 | ㄱ | 37232 116 | 압축점화기관(선박용) | 대 | 38411 100 |
| 알루미늄 주물(거칠은) | ㄱ | 37241 112 | 압출기(금속성형) | 대 | 38232 114 |
| 알루미늄 정련 잔여물 | ※ | 37222 112 | 압출기(인조섬유) | 대 | 38244 912 |
| 알루미늄 케이블 및 유사제품 | ※ | 37290 211 | 압출기(유리 및 요업용) | 대 | 38248 212 |
| 알루미늄 판, 띠 및 박 | ㄱ | 37232 113 | 액관 | 천개 | 36104 114 |
| 알루미늄 합금 | ㄱ | 37222 111 | 액완동물 사료 | ㄱ | 31230 211 |
| 알사탕 | ㄱ | 31173 311 | 액완동물 기초식품 | ※ | 31230 212 |
| 알카로이드(식물성) | ※ | 35222 114 | 애자 | | |
| 알카리 금속원소 | | | 고압애자 (750v-7,000v미만) | 천개 | 36104 111 |
| 리튬 | ㄱ | 35121 124 | 저압애자 (750 v미만) | 천개 | 36104 112 |
| 나트륨 | ㄱ | 35121 124 | 특고압 애자 (7,000v이상) | 천개 | 36104 113 |
| 칼륨 | ㄱ | 35121 124 | 애자 및 절연 착물(유리 도 기, 성형 고무 또는 프라 스틱 제외) | ※ | 38396 400 |
| 세슘 | ㄱ | 35121 124 | 액스란 | ㄱ | 32114 211 |
| 갈카리토류 금속원소 | | | 액체 공급계기(수도미터 제외) | 대 | 38545 112 |
| 칼슘 | ㄱ | 35121 125 | 액체공기 | ㄱ | 35123 114 |
| 스트론튬 | ㄱ | 35121 125 | 액체커누 | ㄱ | 35231 115 |
| 바륨 | ㄱ | 35121 125 | 액체연료(라이터용) | ㄱ | 35409 114 |
| 알콜산화물 및 유도체 | ※ | 35119 211 | 액체연료 불꽃점화기관(일반기제) | 대 | 38211 100 |
| 알킬벤젠 | ㄱ | 35113 112 | 액체용 통 | 개 | 33121 111 |
| 암연 | ㄱ | 36992 111 | 액체우유 및 음료용기(종이재) | 천개 | 34124 112 |
| 암면제품 | ※ | 36992 112 | | | |
| 암모니아 | ㄱ | 35121 314 | | | |
| 암모니아성 가스용액 | ※ | 35409 213 | | |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액화일도 및 비중측정계 | ※ | 38544 211 | 양초피치 | kg | 35299 121 |
| 액화식유가스 | ℓ | 35300 311 ~ 319 | 양탄자 | ㎡ | 32161 100 |
| NC-수치제어 참조 | | | 어린이 그림 | ※ | 34219 300 |
| 앨범 | 천권 | 34214 114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 ※ | 39031 112 |
| 앵브란스 | 대 | 38431 400 | 어린이 저금통 | ※ | 38199 919 |
| 앰프렛트(전축용) | 개 | 38321 316 | 어망 | kg | 32172 112 |
| 야구장갑 | 개 | 39032 117 | 어분 | ※ | 31230 115 |
| 야자기름 | ℓ | 31152 121 | 어선(공장트롤러 포함; 강선) | G/T | 38412 511 |
| 야잠사 | kg | 32111 114 | 어선(목선) | G/T | 38413 300 |
| 야채 수물 | ※ | 31139 400 | 어스호러 | 대 | 38234 115 |
| 야채통조림 | kg | 31131 112 | 어육연제품 | ※ | 31144 100 |
| 약주 | ℓ | 31321 112 | 어학실습기 | 대 | 38322 313 |
| 양가죽 | ㎡ | 32311 211 | 얼음 | ※ | 31221 109 |
| 양과 또는 천공지 | ※ | 34193 115 | 얼음용해기(전기) | 대 | 38334 914 |
| 양단 | 천㎡ | 32123 111 | 에나멜 | ℓ | 35211 112 |
| 양말 | | | ABS 수지 | ※ | 35114 135 |
| 면양말 | 천족 | 32151 211 | 에스컬레이터 | 대 | 38293 122 |
| 모양말 | 천족 | 32151 212 | 에어해머 라텍스 | 대 | 38232 115 |
| 인조섬유 양말 | 천족 | 32151 213 | S. B. R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 ※ | 35115 112 |
| 기타섬유 양말 | 천족 | 32151 219 | S/T 사 | ※ | 32114 211 |
| 양모 및 수모 | kg | 32113 111 | 에스파르토의 오프너, 디스터, 파쇄기 및 절단기 | 대 | 38246 113 |
| 양복(주문복, 남자용) | 착 | 32211 111 | T. P. A | ※ | 35113 124 |
| 양복(기상복, 남자용) | 착 | 32221 111 | 에타날 | ※ | 35112 123 |
| 양복(여자용, 주문복) | 착 | 32212 111 | 에탄더울 | ※ | 35112 122 |
| 양복(여자, 기상복) | 착 | 32223 111 | 에티렌의 중합제품(폴리에틸 렌) | ※ | 35114 131 |
| 양복(소아용, 기상복) | 착 | 32224 112 | 에틸렌글리콜 | ※ | 35112 122 |
| 양산 | 개 | 39092 112 | 에틸렌 | ※ | 35111 111 |
| 양산살대 | ※ | 39092 114 | 에틸 및 유도체 | ※ | 35119 211 |
| 양송이 통조림 | ※ | 31131 112 | 에틸알콜 및 유도체 | ※ | 35119 211 |
| 양수기 | 대 | 38291 115 | 에틸알콜페놀 및 유도체 | ※ | 35119 211 |
| 양조 및 증류용 기계 | 대 | 38243 921 | 에폭시드 및 유도체 | ※ | 35119 212 |
| 양조 부산물 | ※ | 31329 200 | 에폭시드 수지 | ※ | 35114 116 |
| 양조 식초 | ℓ | 31212 211 | 에폭시 알콜 및 유도체 | ※ | 35119 212 |
| 양철가위 | ※ | 38113 111 | | | |
| 양초 | kg | 35299 118 | |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에폭시 에델 및 유도체 | ※ | 35119 212 | 연금속 제조제품 | ※ | 37290 400 |
| 에폭시 페놀 및 유도체 | ※ | 35119 212 | 연도금 철강판 | ※ | 37192 315 |
| X-선 장치(진단 및 요법 용) | 대 | 38325 111 | 연마기 | 대 | 38248 313 |
| X-선 장치(산업용) | 대 | 38325 112 | 연마지 및 포 | ㎏ | 36993 113 |
| X-선관 및 X-선 발생장치 | 대 | 38325 114 | 연마휠 | ※ | 36993 111 |
| 엑티노 마이신 | ※ | 35223 114 | 연봉 및 형강선 | ※ | 37239 211 |
| 엘리베이터 | 대 | 38293 123 | 연사 | | |
| 예취기 | 대 | 38220 417 | 면연사(재봉사) | ㎏ | 32117 111 |
| 여객선(페리포함; 강선) | G/T | 38412 400 | 면연사(편물사) | ㎏ | 32117 211 |
| 여객선(목선) | G/T | 38413 100 | 견연사(재봉사) | ㎏ | 32117 112 |
| 여객차(철도차량) | 량 | 38422 111 | 모연사(재봉사) | ㎏ | 32117 113 |
| 여과기(상수도용) | 대 | 38299 912 | 모연사(편물사) | ㎏ | 32117 212 |
| 여과부록 | ※ | 34195 111 | 인조섬유 연사(재봉사) | ㎏ | 32117 114 |
| 여과프레스 | 대 | 38244 915 | 인조섬유 연사(편물사) | ㎏ | 32117 213 |
| 여성용 장신구(백금 또는 순 금의 장신구)(입힌 귀금속 또는 은합금의 장신구) | ※ | 39010 312 | 기타 재봉사 | ※ | 32117 119 |
| 여성용 장신구 | ※ | 39010 412 | 기타 편물사 | ※ | 32117 219 |
| 여송연 | ※ | 31402 911 | 자수사 | ㎏ | 32117 300 |
| 직물봉재모자 | 개 | 32227 213 | 바느질실 | ㎏ | 32117 400 |
| 여자의의(편직) | 천매 | 32153 200 | 기타 연사 | ※ | 32117 900 |
| 여자의의(마블류, 봉제) | 착 | 32222 111 | 연사기 | 대 | 38242 118 |
| | | ~ 119 | 연삭기(금속 절삭용) | 대 | 38231 128 |
| 여자의의(기성복, 봉제) | 착 | 32223 111 | 연삭기(수지식 동력공구) | 대 | 38234 116 |
| | | ~ 119 | 연산화물(저연 및 황연) | ※ | 35132 111 |
| 여자용 단화 | 족 | 32401 112 | 연성판(금속 포장용기) | ※ | 38191 300 |
| 여자용 스타킹 | 천족 | 32151 100 | 연성코드 및 피스처선 | ※ | 38391 119 |
| 여자용 한복 | 착 | 32213 112 | 연성프라스틱 및 연성고무 시험용기기 | 대 | 38543 113 |
| 여행용 케 | ※ | 33124 111 | 연성합성세계 | ※ | 35232 111 |
| 역청질 혼합물 | ※ | 35403 111 | 연소기(기계식) | 대 | 38299 411 |
| 연계조직 및 부품 | ※ | 38432 913 | 연승 | ㎏ | 32172 111 |
| 연계체인 | ㎏ | 38199 211 | 연 엘로이(합금) | ※ | 37223 111 |
| 연관 및 관부착물 | ※ | 37231 115 | 연유 | ㎏ | 31122 100 |
| 연광 | ※ | 23025 100 | 연제련 잔여물 | ※ | 37223 112 |
| 연괴(미가공연) | ※ | 37213 100 | 연조기 | 대 | 38242 117 |
| | | | 연탄 | | |
| | | | 연탄 | ※ | 35401 111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조개탄 | ㄱ | 35401 112 | 반응성염료 | ㄱ | 35131 122 |
| 연탄가스 배출기 | 대 | 38332 300 | 유기용제 용해염료 | ㄱ | 35131 123 |
| 연탄제조기 | 대 | 38248 215 | 형광백염료 | ㄱ | 35131 124 |
| 연탄집게 | 천개 | 38119 112 | 유기합성 유기염료 | ㄱ | 35131 125 |
| 연관, 띠, 분 및 편 | ㄱ | 37239 212 | 기타 합성유기염료 | ※ | 35131 129 |
| 연관(샤프연필) | 천개 | 39091 123 | 컬러레이크 | ㄱ | 35131 131 |
| 연필 | 천타 | 39091 114 | 염산 | ㄱ | 35122 117 |
| 연필깎기 | 개 | 38259 111 | 염색기 | 대 | 38242 711 |
| 연필제조기 | 대 | 38235 212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모직물 | ※ | 32132 100 |
| 연하장 | ※ | 34219 411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면직물 | ※ | 32132 200 |
| 열교환기 | 대 | 38134 212 | 염색표백 또는 기타 가공한 | ※ | 32132 311 |
| 열단기 | 대 | 38248 312 | 전직물(홀치기제품 32132 312) | | |
| 열대과실 | ※ | 31139 112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 ※ | 32132 400 |
| 열쇠 | 천개 | 38119 400 | 마직물 | | |
| 열연광폭대강(보통강) | ㄱ | 37121 511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 ※ | 32132 500 |
| 열연광폭대강(고탄소강) | ㄱ | 37121 512 | 인조섬유직물 | | |
| 열연광폭대강(합금강) | ㄱ | 37121 513 | 염색 또는 기타 가공한 | ※ | 32131 100 |
| 열연박판(보통강) | ㄱ | 37121 331 | 섬유 및 사 | | ~ 500 |
| 열연박판(고탄소강) | ㄱ | 37121 332 | 염색 가공한 직물제품 | ※ | 32139 200 |
| 열연박판(합금강) | ㄱ | 37121 333 | 염소(Cl) | ㄱ | 35122 116 |
| 열연전기 강판 | ㄱ | 37121 411 | 염소가죽 | ㄱ | 32311 212 |
| 열지도금 석도강판 | ㄱ | 37192 112 | 염소산 소다 | ㄱ | 35122 213 |
| 열지도금 아연도 강판 | ㄱ | 37192 212 | 염소산 칼륨 | ㄱ | 35121 412 |
| 열처리기(금속) | 대 | 38233 114 | 염주(여성용 장신구) | ※ | 39010 312 |
| 염기성 염료 | ㄱ | 35131 113 | 염화메틸 | ㄱ | 35112 113 |
| 염료 | | | 염화메틸렌 | ㄱ | 35112 111 |
| 직접염료 | ㄱ | 35131 111 | 염화칼슘(염화석회) | ㄱ | 35121 613 |
| 산성염료 | ㄱ | 35131 112 | 염화 비닐모노머(V.C.M) | ㄱ | 35112 115 |
| 염기성 염료 및 카치온염료 | ㄱ | 35131 113 | 염화암모늄(염안) | ㄱ | 35151 117 |
| 배염염료 및 산성배염염료 | ㄱ | 35131 114 | 염화칼리 | ㄱ | 35153 112 |
| 황화염료 및 황화전염염료 | ㄱ | 35131 115 | 염화폴리비닐 섬유(합성장 섬유) | ㄱ | 35143 116 |
| 전염염료 | ㄱ | 35131 116 | 염화폴리비닐 섬유(합성단 섬유) | ㄱ | 35143 316 |
| 분산염료 | ㄱ | 35131 117 | | | |
| 천연랍 | ㄱ | 35131 118 | | | |
| 무생염료(아조염료) | ㄱ | 35131 121 | |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영화폴리비닐 섬유(합성장 섬유 토우) | % | 35143 416 | 운도계 | 천개 | 38544 212 |
| 옛(불옛) | kg | 31226 112 | 운도조절기구 | 개 | 38548 117 |
| 옛기름(맥아) | kg | 31223 111 | 운장고 | 대 | 38334 915 |
| 영사기(16mm이하) | 대 | 38524 113 | 울개 | 대 | 39022 111 |
| 영사기(16mm초과하는 것) | 대 | 38524 114 | 울개(전자) | 대 | 39026 111 |
| 영상녹화재생기(VTR) | 대 | 38321 115 | 울리브 기름 | ℓ | 31152 113 |
| 영화녹음기(광전기식) | 대 | 38524 115 | 울소크실렌 | % | 35111 124 |
| 영화촬영기(16mm초과 하는 것) | 대 | 38524 111 | 움셋 인쇄기 | 대 | 38247 115 |
| 영화촬영기(16mm이하) | 대 | 38524 112 | 움셋 인쇄판 | ※ | 34232 112 |
| 엷은 모자 | 개 | 32227 212 | 옷(의복) | | |
| 엷은 모자보디 | ※ | 32227 112 | 옷(지분, 가죽제) | 착 | 32211 111 ~ 32229 219 |
| 게어커어튼 장치 | 대 | 38292 116 | 옷(프라스틱제) | ※ | 35609 200 |
| 제인신 | G/T | 38412 200 | 옷(고무제품) | ※ | 35593 116 |
| 예취기 | 대 | 38220 417 | 옷걸이대(목제) | 개 | 33201 125 |
| 오가피주 | ℓ | 31319 213 | 옷걸이대(금속제) | ※ | 38121 118 |
| 오니름(물럼름) | % | 23029 114 | 옷솔 | ※ | 39093 116 |
| 오렌지원액 | ℓ | 31341 212 | 와셔 및 산업용 파스너 | % | 38195 114 |
| 오산화인 및 인산 | % | 35121 214 | 와이셔츠(아춤) | 매 | 32219 111 |
| 오일 바니쉬 | ℓ | 35211 111 | 와이셔츠(키싱) | 매 | 32222 111 |
| 오존 | m ³ | 35123 111 | 와이어 로프(직접생산한 철강선 을 더 가공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 | % | 37124 315 |
| 오지벽돌 | 천매 | 36911 111 | 와이어 로프(철강선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와이어로프를 제조) | % | 38196 113 |
| 오토바이 | 대 | 38442 111 | 와스 | | |
| 모터싸이클 | 대 | 38442 111 | 동물성왁스 | % | 35295 111 |
| 모터스크버 | 대 | 38442 112 | 식물성왁스 | % | 35295 112 |
| 오토사이클 | 대 | 38442 113 | 인조 왁스 | % | 35295 113 |
| O.T.S.A(사카린원료) | % | 35113 123 | 합성 왁스 | % | 35295 114 |
| 옥배유(식용) | ℓ | 31153 116 | 조제 왁스 | % | 35295 115 |
| 옥분 | kg | 31161 212 | 파라핀왁스(구두약) | % | 35409 112 |
| 옥사 | kg | 32111 113 | 기타 특수세척제 | ※ | 35295 119 |
| 옥소 | % | 35121 113 | 갈탄왁스 및 기타 광물왁스 | % | 35409 113 |
| 옥수수 기름(비식용) | ℓ | 31152 125 | 왁스 또는 규산염 도포지물 | ※ | 32194 117 |
| 옥수수 기름(식용) | ℓ | 31153 116 | 완충기 | 개 | 38423 911 |
| 옥양목 | 천m ² | 32121 112 | 완구 | ※ | 39041 100 ~ 39049 900 |
| 옥탄 | % | 35111 113 | 외의(봉제한 외의는 322에 분류) | | |

(0)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편직외의(웨어, 편직트레이닝복등) | 천매 | 32153 100 | 우드칩 가공기 | 대 | 38246 114 |
| 남자용 외의(봉제, 마춤복) | 매 | 32211 111 | 우라늄 및 라듐광 | ※ | 23029 211 |
| | | ~ 119 | 우마차 | 대 | 38490 100 |
| 남자용 외의(봉제, 기성복) | 착 | 32221 111 | 우산 | | |
| | | -32222 90 | 철제우산 | 천개 | 39092 111 |
| | | | 비닐우산 | 천개 | 39092 113 |
| 여자용 외의(봉제, 마춤복) | 착 | 32212 111 | 우산 및 양산의 부품 | ※ | 39092 119 |
| | | ~ 119 | 우유 | | |
| 여자용 외의(봉제, 기성복) | 착 | 32223 111 | 처리우유 | ※ | 31124 100 |
| | | ~ 119 | 기타 액상 우유제품 | ※ | 31124 900 |
| | | | 연유 | ㎏ | 31122 100 |
| 유아용 외의(봉제, 기성복) | 착 | 32224 111 | 분유 | ㎏ | 31122 200 |
| | | ~ 119 | 우스터 소오스 | ㎏ | 31213 113 |
| 요람 | 개 | 33201 126 | 운전대 기어 및 부품 | ※ | 38432 915 |
| 요소(화학적으로 순수한 요소) | ※ | 35119 118 | 우주차량 | 대 | 38490 900 |
| 요소(질소질 비료) | ※ | 35151 115 | 우주캡슐 및 인공위성(통신 | 대 | 38490 900 |
| 요소수지 | ※ | 35114 112 | 위성은 제외) | | |
| 육조(목욕탕) | 개 | 36103 115 | 우지(소기름) | ※ | 31151 222 |
| 용기 | | | 우표, 수입인지, 봉합열시 및 | ※ | 34219 511 |
| 대형용기(본태이너) | 개 | 38136 100 | 엽서 | | |
| | | -219 | 운동화 | 천족 | 35591 113 |
| 소형용기(가정용식품저장) | ※ | 38192 214 | 운동화부품 | ※ | 35591 200 |
| 포장용 유리용기 | ※·※ | 36204 111 | 운모 | ※ | 29099 912 |
| | | ~ 119 | 운모(가공운모 및 그 제품) | ※ | 36999 111 |
| 프라스틱 용기 | ※·※ | 35606 111 | 운모편암 | ※ | 29012 100 |
| | | ~ 119 | 울그리스-미가공 | ※ | 32113 121 |
| 종이용기(컵, 우유통) | 천개·※ | 34124 111 | 울그리스(라노린) 및 울그리스 | ㎏ | 31151 212 |
| | | ~ 119 | 추출제품(정제) | | |
| 용과린 | ※ | 35152 121 | 울쇼디 | ※ | 32199 111 |
| 용광로 (비전기식) | 대 | 38299 213 | 울타리 철선 | ※ | 37124 311 |
| 용선로 (비전기식) | 대 | 38299 214 | 울트라마린; 균청 | ※ | 35132 116 |
| 용성인비 | ※ | 35152 112 | 위딩제품 및 그 충전물 | ※ | 32191 200 |
| 용용산화 알루미늄 | ※ | 35121 315 | 위키토키(군용제외) | 대 | 38323 213 |
| 용집기(수동가스) | 개 | 38119 214 | 원교지 | 백매 | 34194 112 |
| 용집봉 | ※ | 38199 912 | 원등기 | 대 | 38311 111 |
| 용접 전극봉, 도포용 기계 | 대 | 38249 112 | | | |
| 용제 및 기타 용접봉 보조제 | ㎏ | 35299 111 | | | |
| 용해칼프 | ※ | 34111 213 | | | |
| 우드서이킹 | ※ | 33119 112 | |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원심분리기 | 대 | 38241 914 | 운할유 | | |
| 원심구조 구상흑연 주철관 | ㄱ | 37131 113 | 정제운할유 (운할기유) | ㄷ | 35300 600 |
| 원심구조 회주철관 | ㄱ | 37131 112 | 운할유 | ㄷ | 35402 112 |
| 원유(부분정제정유 = 조유) | ㄷ | 35300 100 | 정제구리스 | ㄷ | 35300 400 |
| 페이퍼 및 유사제품 | ※ | 31179 100 | 구리스 | ㄷ | 35402 111 |
| 위생복 | 착 | 32229 114 | 번압기용 기름 | ㄷ | 35402 113 |
| 위생용 식품용기 | ※ | 34124 119 | 절삭유 | ㄷ | 35402 114 |
| 위생용 원지 | ※ | 34119 113 | 세척유 | ㄷ | 35402 115 |
| 위스키 | ㄷ | 31314 112 | 주형방출유 | ㄷ | 35402 116 |
| 윈도우형에어콘 | 대 | 38264 111 | 유압 브레이크유 | ㄷ | 35402 117 |
| 윈치(트리에 장치한 것은 제외) | 대 | 38241 341 | 기타 비운할유 | ※ | 35402 119 |
| 유기계면활성제 (합성세제용) | ㄱ | 35233 111 | 기름(콜탈증류제품) | ※ | 35409 311 |
| 유기질 비료 | ㄱ | 35153 100 | 유리 | | |
| 유기요법선 또는 기타 기관 | ※ | 35221 113 | 보통 판유리 | 상자 | 36201 113 |
| 유기요법 액스 및 기타 동 | ※ | 35221 114 | 무늬판 유리 | 상자 | 36201 114 |
| 물물질 | | | 안쪽 식각 또는 유사 가 | ※ | 36202 111 |
| 유기용세 용해염료 | ㄱ | 35131 123 | 공유리 | | |
| 유기합성 유기염료 | ㄱ | 35131 125 | 적층 단열유리 | ※ | 36202 112 |
| 유니버설팬(보통강) | ㄱ | 37122 211 | 시계유리 | ※ | 36203 214 |
| 유니버설판 (고탄소강) | ㄱ | 37122 212 | 강화유리(안전유리) | 상자 | 36202 211 |
| 유니버설판 (합금강) | ㄱ | 37122 213 | 적층유리(안전유리) | 상자 | 36202 212 |
| 유당 | ※ | 31122 500 | 다세포성 유리 | ※ | 36203 112 |
| 유류 | | | 유리건설재료 | ※ | 36203 111 |
| 연료유 | | | 유리관 | ㄱ | 36201 111 |
| 조유 (=부분정제원유) | ㄷ | 35300 100 | 유리관 가공의 유리병 | ※ | 36202 114 |
| 항공기용 가솔린 | ㄷ | 35300 211 | 유리관 제조용 기계 | 대 | 38248 113 |
| 젯트유 | ㄷ | 35300 211 | 유리괴 유리구 및 유리봉 | ※ | 36201 112 |
| 모터가솔린 = 휘발유 | ㄷ | 35300 212 | 유리구슬, 모조진수, 모조거석 및 유사제품 | ※ | 36209 100 |
| 나프사 | ㄷ | 35300 213 | 유리 문구용품 | ※ | 36206 113 |
| 농유(석유포함) | ㄷ | 35300 214 | 유리병 | | |
| 솔벤트(배정) | ㄷ | 35300 215 | 유리술병 | ㄱ | 36204 111 |
| 경유 | ㄷ | 35300 216 | 유리음료수병 | ㄱ | 36204 112 |
| 중유(방카 A, B유포함) | ㄷ | 35300 217 | 유리식료품병 | ㄱ | 36204 113 |
| 방카 C유 | ㄷ | 35300 218 | 유리약병 | ㄱ | 36204 114 |
| | | | 유리화장품병 | ㄱ | 36204 115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
| 기타 유리병 | ※ | 36204 119 | 울무차 | ※ | 31227 213 |
| 유리사 | kg | 32119 200 | 운활유 | | |
| 유리섬유 | ※ | 36207 111 | 정제운활유 | kg | 35300 600 |
| 유리섬유 타이어직물 | ※ | 32193 113 | 운활 유(정제운활유를가공한것) | kg | 35402 112 |
| 유리섬유 제조용기계 | 대 | 38248 114 | 웅단 | 천㎡ | 32161 100 |
| 유리섬유제품 | ※ | 36207 112 | 은(은괴) | kg | 37219 411 |
| 유리식기 | 천개 | 36206 111 | 은광석 | kg | 23023 112 |
| 유리 주방용품 | ※ | 36206 112 | 은박지 | ※ | 34193 112 |
| 유리칼 | 천개 | 38113 116 | 은입힌 금속 | kg | 37229 141 |
| 유박(물고기 기름) | ※ | 31151 121 | 은행차 | 대 | 38431 400 |
| 유박(동물기름, 소기름제외) | ※ | 31151 221 | 음극선 TV영상관(브라운관) | 대 | 38341 112 |
| 유박(비식용, 식물성유지) | ※ | 31152 131 | -칼라 | | |
| 유박(식용유, 콩겉묵 제외) | ※ | 31153 121 | 음극선 TV영상관(브라운관) | 대 | 38341 111 |
| 유부 | kg | 31224 112 | -흑백 | | |
| 유사가죽 | ※ | 32194 115 | 음반(녹음·녹화된것) | 천매 | 38326 111 |
| 유산고토비료 | ※ | 35153 119 | 음성증폭기 | 천개 | 38349 112 |
| 유산균 발효유(요쿠르트등) | ※ | 31124 200 | 응축기 | 대 | 38243 112 |
| 유색철암 | ※ | 29020 412 | 외과 및 내과치료용 기구 | ※ | 38511 111 |
| 유선통신장비 | 대·※ | 38322 111 | 의료용 기구 | ※ | 38511 111 |
| 유축계 | ※ | 38544 100 | | | ~ 119 |
| 유안 | ※ | 35151 111 | 의류건조기 | 대 | 38334 916 |
| 유아용외의 | 천매 | 32153 300 | 의복(옷) | | |
| 유압 브레이크유 | kg | 35402 117 | 의복(직물·가죽제) | 착 | 32211 111 |
| 유연탄(원료탄) | ※ | 21090 200 | | | ~ 32229 219 |
| 유장(Whey) | ※ | 31122 400 | 의복(프라스틱제) | ※ | 35609 200 |
| 유전용 기계, 장비 및 부품 | ※ | 38241 200 | 의복(고무제품) | ※ | 35593 116 |
| 유조선(자체추진) | G/T | 38412 111 | 의복 장신구 | ※ | 39052 200 |
| 유채기름(채종유, 비식용) | kg | 31152 117 | 의약용 사카린 | ※ | 35119 316 |
| 유채기름(식용) | kg | 31153 115 | 의약품 | ※ | 35221~ 35229 |
| 유포 | ※ | 32194 116 | 의자 | | |
| 유황(광물) | kg | 29020 211 | 의자(목제) | 개 | 33201 111 |
| 유황(화학원소) | ※ | 35121 114 | 의자(금속제) | 천개 | 36121 113 |
| 육송자재 | ㎡ | 33111 211 | 이누린 | ※ | 31225 112 |
| 육송 소할재 | ㎡ | 33111 111 | 이동식 홀무 | 개 | 38119 211 |
| 육송 판재 | ㎡ | 33111 311 | 이동 방사선차 | 대 | 38431 400 |
| 윤건인쇄기 | 대 | 38247 111 | |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이불거(보통 자전거) | 대 | 38441 112 | 는 신발용 편 | | |
| 이미드 관능화합물 | ㄱ | 35119 216 | 인산 및 5산화인 | ㄱ | 35121 214 |
| 이발기 | 천개 | 38112 116 | 인산나트륨(인산소다) | ㄱ | 35122 217 |
| 이불 | ※ | 32142 113 | 인산염암 | ㄱ | 29020 112 |
| 이산화망간 | ㄱ | 35121 417 | 인삼제품(백삼, 홍삼, 인삼즙, 인삼차, 인삼발효음료, 분말 인삼 등) | ※ | 31222 111 ~ 119 |
| 이산화유황 | ㄱ | 35121 212 | 인삼주 | ㄱ | 31313 100 |
| 이산화탄소 | ㄹ | 35123 213 | 인삼차(액상 또는 분말형태) | ㄱ | 31222 115 |
| 이산화 티타늄 | ㄱ | 35121 313 | 인삼추연 | ㄱ | 29091 111 |
| 이스트 | | | 인쇄기 | | |
| 누룩 | ㄱ | 31228 111 | 경압 및 원동압식 인쇄기 | 대 | 38247 111 |
| 곡자 | ㄱ | 31228 111 | 석판 인쇄기(활판포함) | 대 | 38247 114 |
| 배양이스트 | ㄱ | 31228 112 | 움짇 인쇄기 | 대 | 38247 115 |
| 제빵용 이스트 | ㄱ | 31228 113 | 그라비아 인쇄기 | 대 | 38247 116 |
| 이앙기 | 대 | 38220 313 | 특수인쇄기 | 대 | 38247 117 |
| 이어폰 | 천개 | 38321 413 | 윤전인쇄기 | 대 | 38247 111 |
| 익은 교환계 | ㄱ | 35299 112 | 인쇄보조기 | 대 | 38247 118 |
| 2-에틸 헥실 알콜 | ㄱ | 35112 126 | 인쇄잉크 | ㄱ | 35297 111 |
| 이유식(우유기저) | ㄱ | 31122 300 | 인쇄회로기판 | 매 | 38349 111 |
| 이유식(곡물기저) | ※ | 31162 100 | 인스턴트면류(기타) | ㄱ | 31175 112 |
| 이중용도 가구 | ※ | 33202 200 | 인장(도장) | 천개 | 39091 132 |
| 이크롬산 소다 | ㄱ | 35122 212 | 인조가죽 | ㄹ | 32312 200 |
| 이퀄라이저 | 대 | 38321 317 | 인조가죽 의복 | 착 | 32226 113 |
| 이트륨 및 스칸듐 | ㄱ | 35121 127 | 인조가죽 장갑 | 조 | 32228 114 |
| 이형관 | ㄱ | 37131 121 | 인조꽃 | ※ | 39054 111 |
| 이화학, 위생 및 약용 유리 제품 | ※ | 36203 300 | 인조눈(사람용) | ※ | 38529 200 |
| 인 | ㄱ | 35121 117 | 인조눈(장난감용) | ※ | 36209 200 |
| 인공감미료 | ㄱ | 31226 200 | 인조모피 | ㄹ | 32322 100 |
| 인공장기 | ※ | 38515 115 | 인조모피 의복 | 착 | 32226 213 |
| 인광석 | ㄱ | 29020 918 | 인조 및 동물털 | ※ | 39055 111 |
| (머리)인두 | ※ | 38119 119 | 인조보석 | ※ | 36999 112 |
| 인디아저 | ㄱ | 34113 117 | 인조빙 | ㄱ | 31221 100 |
| 인력탈곡기 | 대 | 38220 212 | 인조사지(치아 또는 눈은 제외) | ※ | 38515 113 |
| 인모(가공하지 않은 것) | ㄱ | 39055 115 | 인조산화 철강판 | ㄱ | 37192 316 |
| 인발기(급속성형) | 대 | 38232 123 | | | |
| 인발목, 성냥개비, 나무못 등 | ※ | 33119 113 | | |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인조섬유 끈 | ※ | 32171 112 | 인쇄잉크 | ㎖ | 35297 111 |
| 인조섬유 내의(편직한 것) | 천매 | 32152 113 | 보통필기 및 제도잉크 | ㎖ | 35297 112 |
| 인조섬유 내의(봉제한 것, 남자용) | ※ | 32225 200 | 기타 잉크 | ※ | 35297 119 |
| 인조섬유 내의(봉제한 것, 유아 및 여아용) | ※ | 32225 111 ~ 119 | 잉크지우개 및 스텐실교정액 | ㎏ | 35299 131 |
| 인조섬유 보프 | ㎏ | 32171 212 | 일 스프링 (차량용) | 매 | 38199 112 |
| 인조섬유 방적사 | ㎖ | 32114 211 ~ 215 | 자갈 | ㎡ | 29012 112 |
| 인조섬유 솜 | ㎏ | 32191 112 | 지개 가공 및 제품 | ※ | 39010 116 |
| 인조섬유 양말 | 천족 | 32151 213 | 자기제품 (가정용) | ※ | 36102 112 |
| 인조섬유용 방사기 | 대 | 38242 111 | 자동차료처리 조직부품 | ※ | 38251 119 |
| 인조섬유 장갑(편직한 것) | 천조 | 32154 113 | 자동식타자기(워드프로세싱 포함) | 대 | 38255 113 |
| 인조섬유 직물 | ㎡ | 32123 311 ~ 600 | 자동전화 교환기 | 회선 | 38322 113 |
| 인조섬유(황)편직물 | ㎏ | 32155 114 | 자동조절 발브 | ㎖ | 38198 212 |
| 인조섬유 타이어직물 | ㎏ | 32193 115 | 자동차 (승용차, 버스, 트럭) | 대 | 38431 111 ~ 500 |
| 인조섬유 타이어 코드사 | ㎏ | 32193 112 | 자동차부품 | | |
| 인조치아 | ※ | 38514 115 | 동력전달장치 및 그 부품 | ※ | 38432 911 |
| 인조코런덤 | ㎖ | 35121 315 | 배기조직 및 그부품 | ※ | 38432 912 |
| 인조 및 동물털 | ※ | 39055 111 | 연료계통조직 및 그부품 | ※ | 38432 913 |
| 인조흑연 | ※ | 35129 212 | 브레이크 및 그부품 | ※ | 38432 914 |
| 인주 | 천개 | 39091 133 | 조향장치 및 그부품 | ※ | 38432 915 |
| 인터검 | 대 | 38322 311 | 현가장치 및 그부품 | ※ | 38432 916 |
| 인터폰 | 대 | 38322 312 | 자동차 륜(휠) | 개 | 38432 921 |
| 인형(사립형태) | ※ | 39041 100 | 자동차용 공기타이어 | 천본 | 35511 111 |
| 인화지(감광지) | ※ | 35296 113 | 자동차용 방열기 | 대 | 38432 923 |
| 인형부품 및 악세사리 | ※ | 39041 900 | 자동차용 피스톤 | 개 | 38299 512 |
| 일간신문 | 천부 | 34211 111 | 자동차용 튜브 | 천본 | 35511 211 |
| 일기책 | 천권 | 34214 113 |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제조기 | 대 | 38245 114 |
| 일문거 | 대 | 38441 111 | 자동차축 | 개 | 38432 922 |
| 일반화물선(자체추진 강선) | G/T | 38412 112 | 자동차판매기 (음식료품) | 대 | 38261 111 |
| 일산화탄소 | ㎡ | 35123 214 | 자물쇠 및 열쇠 | 천개 | 38119 400 |
| 입사기(금속 절삭용) | 대 | 38231 139 | 자석 (마그네트) | ※ | 38141 100 |
| 입사기(가마니틀) | 대 | 38220 415 | 자수기 | 대 | 38242 513 |
| 잉크 | | | 자수사 | ㎏ | 32117 300 |
| | | | 자수업 | | |
| | | | 술장식 및 조립 장식물 | ※ | 32144 111 |
| | | | 자수제품 | ※ | 32144 112 |
| | | | 자수직물 | ※ | 32144 112 |
| | | | 상업장식 | ※ | 32144 200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자외선 및 적외선등 | 개 | 38392 114 | 인조섬유장갑(편직된 것) | 천조 | 32154 113 |
| 자양강장 변질제(드링크류포 합) | ※ | 35224 117 | 기타섬유장갑(편직된 것) | 천조 | 32154 119 |
| 자장 공기조절기 | 대 | 38264 113 | 직물제장갑(봉제한 것) | 조 | 32228 111 |
| 자전거 | | | 가죽장갑 | 조 | 32228 112 |
| 일륜거 | 대 | 38441 111 | 모피장갑 | 조 | 32228 113 |
| 이륜거 | 대 | 38441 112 | 인조가죽장갑 | 조 | 32228 114 |
| 삼륜거 | 대 | 38441 113 | 야구장갑 | 개 | 39032 116 |
| 사륜거 | 대 | 38441 114 | 장고(국악기) | ※ | 39027 100 |
| 자전거 부품 | | | 장기관 및 장기짜 | ※ | 39044 200 |
| 자전거림 | 개 | 38441 212 | 장난감(승용) | ※ | 39042 100 |
| 자전거 안장 | 개 | 32339 100 | 장난감(프라스틱, 금속제) | ※ | 39043 100 |
| 자전거 타이어 | 천본 | 35511 113 | 장난감(봉제) | ※ | 39041 100 ~ 39049900 |
| 자전거용 튜브 | 천본 | 35511 213 | 장동 | 개 | 33201 115 |
| 자전거 차체 | 개 | 38441 211 | 장부기(목공기계) | 대 | 38235 115 |
| 기타 자전거 부품 | ※ | 38441 219 | 장부채 | 천권 | 34214 112 |
| 자철광 | ※ | 23010 112 | 장석 | ※ | 29032 113 |
| 작두 | ※ | 38114 119 | 장석분 | ※ | 36995 113 |
| 작업복 | 착 | 32219 300 | 장식용 나무제품 | ※ | 33193 111 ~ 112 |
| 작업장 장치물 | ※ | 33206 200 | 장식용 유리제품 | ※ | 36206 114 |
| 작업화 | 족 | 32402 111 | 장식용 전구 | 천개 | 38392 118 |
| 잠바 | 착 | 32222 400 | 장식장 | 개 | 33201 114 |
| 잠사 | | | 장식 포스터 및 회화복사물 | ※ | 34219 412 |
| 생사 | kg | 32111 111 | 장신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 공한 진주 | ※ | 39010 114 |
| 부잠사 | kg | 32111 112 | 장신구용 귀석 및 반귀석 (다이아몬드 제외) | ※ | 39010 112 |
| 옥사 | kg | 32111 113 | 장신구 재단물 | ※ | 39010 800 |
| 야잠사 | kg | 32111 114 | 장지문(나무제품) | 개 | 33112 115 |
| 잠수함 | G/T | 38412 900 | 장치물 | | |
| 잠옷(봉제한 것, 남자용) | ※ | 32225 200 | 상점장치물(목제) | ※ | 33206 100 |
| 잠옷(봉제한 것, 여자 및 유 아용) | ※ | 32225 112 | 상점 장치물(금속제) | ※ | 38122 112 |
| 잡관(미술관) | 천개 | 38191 112 | 작업장 장치물 | ※ | 33206 200 |
| 잡지 | 천권 | 34212 100 | 장판용 한지 | ㎡ | 34116 114 |
| 장갑 | | | 재건조 일담배 | kg | 31401 100 |
| 면장갑(편직된 것) | 천조 | 32154 111 | 재 방출기 | 대 | 38299 413 |
| 모장갑(편직된 것) | 천조 | 32154 112 | | |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재봉기 | | | 쟁반(스텐레스제) | ※ | 38142 219 |
| 책 재봉기 | 대 | 38247 311 | 쟁반(알루미늄제) | ※ | 38142 119 |
| 손틀 | 대 | 38295 111 | 쟁반(도금 귀금속제) | ※ | 39010 612 |
| 발틀 | 대 | 38295 112 | 자켓(봉제한 것) | 착 | 32222 400 |
| 전기식 재봉기 | 대 | 38295 113 | 저마 | kg | 32116 113 |
| 직물용 재봉기 | 대 | 38295 211 | 저마사 | kg | 32116 212 |
| 가죽용재봉기 | 대 | 38295 212 | 저마직물 | 천㎡ | 32124 112 |
| 포대봉합 재봉기 | 대 | 38295 213 | 저석 | ※ | 36993 112 |
| 기타 산업용 재봉기 | ※ | 38295 219 | 저압애자(750 V 미만) | 천개 | 36104 112 |
| 재봉기용 부품(바늘 및 캐비닛은 제외) | ※ | 38295 300 | 저압 축전지 | 대 | 38319 212 |
| 재봉사 | | | 저열 시멘트 | ※ | 36921 116 |
| 면연사 | kg | 32117 111 | 저온 살균기 | 대 | 38243 112 |
| 견연사 | kg | 32117 112 | 저울 | | |
| 모연사 | kg | 32117 113 | 산업용 저울 | 개 | 38254 111 |
| 인조섬유 연사 | kg | 32117 114 | 상업용 저울 | 개 | 38254 112 |
| 기타 재봉사 | ※ | 32117 119 | 가정용 저울 | 개 | 38254 113 |
| 재생가죽 | ㎡ | 32312 100 | 정밀저울(감도 5cmg 미만) | 개 | 38549 300 |
| 재생고무 | ※ | 35592 200 | 저울부품 | ※ | 38254 119 |
| 재생 공기타이어 | 본 | 35512 100 | 저항용접기 | 개 | 38315 112 |
| 재생목재 | ㎡ | 33115 112 | 적산전력제 | 대 | 38547 111 |
| 재생섬유 | ※ | 32114 112 | 적철광 | ※ | 23010 111 |
| 재생섬유 방적사 | ※ | 32114 212 | 적층 단열유리 | ※ | 36202 112 |
| 재생섬유 및 섬유소의 가소성 유도제 | ※ | 35141 112 | 적층유리 | 상자 | 36202 212 |
| 재생섬유소,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및 섬유제 1차제품 | ※ | 35141 113 | 적하기 | 대 | 38293 116 |
| 재생섬유 직물 | 천㎡ | 32123 511 | 경위의(토지 측량용) | 대 | 38541 111 |
| 재생섬유과일 및 셔닐직물 | 천㎡ | 32123 512 | 전구(백열전구) | 천개 | 38392 111 |
| 재생프라스틱원료(분상, 모모아) | ※ | 35601 218 | 전구용 유리 | ※ | 36203 213 |
| 재털이(금속제) | 개 | 38142 119 | 전구 제조기 | 대 | 38248 115 |
| 재털이(유리제품) | ※ | 36205 113 | 전기 강판 | | |
| 책(손으로 움직이는 기중기) | 대 | 38293 112 | 열연 전기강판 | ※ | 37121 411 |
| 책(소형:라이터 교환용) | 개 | 38119 215 | 냉연 전기강판 | ※ | 37122 411 |
| 책쿼드 장치용 기계 | ※ | 38242 613 | 전기교통 통제장비-도로, 철도, 수로, 항구 또는 공항 | 대 | 38324 112 |
| 쟁기 | 개 | 38220 111 | 전기정보장치 | 대 | 38324 113 |
| | | | 전기기관차(철도용) | 대 | 38421 112 |
| | | | 전기기타 | 대 | 39026 112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
| 전기난방 및 토열가열장치 | 대 | 38334 212 | 전기 추진차량(철도장비) | 대 | 38429 111 |
| 전기냉장고 | 대 | 38331 111 | 전기 커피포트 | 대 | 38334 213 |
| 전기뇌관 | 천개 | 35292 118 | 전기 프라이팬 | 개 | 38334 313 |
| 전기다리미 | 개 | 38334 913 | 전기 탕비기(물 끓이는 기계) | 대 | 38334 211 |
| 전기담요 및 히팅패드 | 개 | 38334 912 | 전기풍로 | 대 | 38334 214 |
|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비설연) | ※ | 38396 212 | 전기화덕(가정용) | 개 | 38334 111 |
| 전기도관, 조인트(절연금속계) | ※ | 38396 211 | 전기후라이팬 | 개 | 38334 314 |
| 전기도금 석도장판 | ※ | 37192 111 | 전단기(금속) | 개 | 38232 118 |
| 전기도금 아연도 강판 | ※ | 37192 211 | 전동기(교류) | 대 | 38311 212 |
| 전기동 | ※ | 37211 114 | 전동기(직류) | 대 | 38311 211 |
| 전기 또는 전자시계(손목시계) | 천개 | 38532 111 | 전동기 스타터 | 대 | 38316 111 |
| 전기 또는 전자시계(벽시계) | 천개 | 38532 112 | 전동식 타자기(자동식타자기제외) | 대 | 38255 111 |
| 전기레인지 및 오븐 | 개 | 38334 111 | 전동차 | 대 | 38421 114 |
| 전기로 | 대 | 38299 311 | 전력선 및 케이블 | ※ | 38391 112 |
| 전기택서 | 개 | 38339 114 | 전력조절기, 승압기, 리액터및 유사장치 | ※ | 38312 113 |
| 전기밥솥 | 개 | 38334 311 | 전력회로 차단기(교압) | 대 | 38313 113 |
| 전기벨 | ※ | 38399 211 | 전력회로 차단기(저압) | 대 | 38313 114 |
| 전기보온밥통 | 개 | 38334 312 | 전분(녹말가루) | ※ | 31225 111 |
| 전기세탁기(가정용) | 대 | 38333 111 | 전분박 | ※ | 31225 119 |
| 전기세탁기 부품 | ※ | 38333 119 | 전분 야채가루 | ※ | 31161 215 |
| 전기소리 또는 시각 신호장치, 경보장치 | 대 | 38324 113 | 전분제조 찌꺼기 | ※ | 31225 121 |
| 전기식 재봉기 | 대 | 38295 113 | 전신장치(텔레타이프) | 대 | 38322 213 |
| 전기 연결장치 | ※ | 38396 300 | 전자계산기(휴대용) | 대 | 38252 111 |
| 전기 열저항기(전기풍로) | 대 | 38334 214 | 전자계산기(탁상용) | 대 | 38252 112 |
| 전기요법(치료)장치 | 대 | 38325 212 | 전자관(CRT) | 대 | |
| 전기 용접장판 | ※ | 37123 112 | 흑백TV브라운관 | 천개 | 38341 111 |
| 전기 용접기 부품 | ※ | 38315 119 | 칼라TV브라운관 | 천개 | 38341 112 |
| 전기자기 브레이크, 크러치, 연 계기 및 관련장비 | 대 | 38314 113 | 표시판 | 천개 | 38341 113 |
| 전기장판 | 개 | 38334 912 | 방전관 | 천개 | 38341 114 |
| 전기조리기기(전기렌치 및 오븐제외) | 대 | 38334 911 | 전자로(가정용) | 개 | 38334 112 |
| 전기 진단장치 | 대 | 38325 211 | 전자 및 양자현미경, 회절장칩(광학현미경 제외) | 대 | 38527 300 |
| | | | 전자 및 전기회로 시험, 검사, 분석기구 또는 장치 | ※ | 38547 114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전자복사기 | 대 | 38525 112 | 무선전화기(코드레스) | 대 | 38322 112 |
| 전자레인지(전기렌지)-상업용 | 대 | 38265 115 | 자동차용 전화기(카폰) | 대 | 38322 113 |
| 전자레인지 및 오븐(가정용) | 개 | 38334 112 | 전화대(공중용) | ※ | 38122 114 |
| 전자식 전자교환기 | 회선 | 38322 115 | 전화당 및 시럽 | kg | 31189 100 |
| 전자 건반악기 | 대 | 39026 111 | 전해연마업(금속) | ※ | 38149 100 |
| 전자 현악기 | 대 | 39026 112 | 전해조 | 대 | 38244 913 |
| 기타 전자악기 | ※ | 39026 119 | 절단기 | ※ | 38115 114 |
| 전자 아코디온 | 대 | 39026 111 | 절목상자 | ※ | 33123 111 ~ 119 |
| 전자오락기계(테이블용 게임 장비) | 대 | 39044 100 | 절삭구(금속 공작용) | 개 | 38236 111 |
| 전자울겐 | 대 | 39026 111 | 절삭구(나무 공작용) | 개 | 38236 112 |
| 전자자(보온밥통) | 개 | 38334 313 | 절삭구(기타 재료 공작용) | ※ | 38236 119 |
| 전자측정기 | ※ | 38547 112 | 절삭계 | 센 | 35402 114 |
| 전자코일 | 천개 | 38345 112 | 절연지 | ※ | 34119 114 |
| 전자탐지, 검사, 확인 및 추적 조직(레이다 제외) | ※ | 38329 119 | 절지기 | 대 | 38247 312 |
| 전자피아노 | 대 | 39026 111 | 접적기 | ※ | 35593 113 |
| 전자 현악기 | 대 | 39026 112 | 점토 | ※ | 29019 111 |
| 전주(콘크리트) | 본 | 36935 212 | 점화코일, 마그네트, 디스트리뷰 터, 저압조절기 및 기타 점 화장비 | ※ | 38316 113 |
| 전지기(전지용가위) | ※ | 38114 119 | 접시(도금 귀금속계) | ※ | 39010 612 |
| 전축 및 소리발생장비 | | | 접시 세척기(가정용) | 대 | 38339 112 |
| 소형 전축(뮤직센타 포함) | 대 | 38321 311 | 접시 세척기(상업용) | 대 | 38265 114 |
| 전축용 데크 | 대 | 38321 312 | 접착계 | ※ | 36291 111 ~ 114 |
| 레코드플레이어(턴 테이블) | 대 | 38321 313 | 접착섬유테이프 | ※ | 32194 118 |
| 뮤직센타 | 대 | 38321 311 | 정기 간행물 | 천권 | 34212 100 |
| 스피커시스템 | 대 | 38321 314 | 정당 | ※ | 31182 100 |
| 튜너(전축용) | 대 | 38321 315 | 정돈모 | kg | 39093 111 |
| 전축용 앰프셋트 | 대 | 38321 116 | 정련동 | ※ | 37211 114 |
| 이퀄라이저 | 대 | 38321 117 | 정류기 및 정류장치 | 대 | 38319 100 |
|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 대 | 38321 118 | 정맥기 | 대 | 38243 212 |
| 전화교환기(자동식) | 회선 | 38322 114 | 정미기 | 대 | 38243 211 |
| 전화교환기(전자식) | 회선 | 38322 115 | 정밀 저울(감광저울) | 개 | 38549 300 |
| 전화기셋트(다이알, 버튼식) | 대 | 38322 111 | 정밀 측정기(기계공) | ※ | 38239 300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정방기 (섬유용) | 대 | 38242 214 | 조각제품 | ※ | 39052 300 |
| 정복 셔츠 | 매 | 32222 113 | 조개류 동조림 (굴동조림 제외) | kg | 31141 115 |
| 정소면 | kg | 32112 112 | 조개탄 | ※ | 35401 112 |
| 정수기 (가정용) | 대 | 38269 118 | 조동 | ※ | 37211 112 |
| 정수기 (상수도용) | 대 | 38299 913 | 조립금속의 건물 | ※ | 38135 111 |
| 정원가구 (금속계) | ※ | 38121 116 | 조면 | kg | 32112 111 |
| 정인모 (가공된 것) | kg | 39055 114 | 조면기 | 대 | 38242 113 |
| 정제 가금지방 | kg | 31119 213 | 조명장치 (금속계) | ※ | 38122 112 |
| 정제 소금 | kg | 31212 300 | 조발기, 전기모터 자장 | 개 | 38335 112 |
| 정제 울그리스 (라노린) 및 울 그리스 추출제품 | kg | 31151 212 | 조방기 | 대 | 38242 112 |
| 정제 쇠목펠트 | ※ | 34111 100 | 조사기 | 대 | 38243 112 |
| 정착제 | kg | 35296 212 | 조색제 | kg | 35296 214 |
| 정화제 (술) | kg | 35299 132 | 조유 (=부분 정제원유) | ℓ | 35300 100 |
| 정제 고래기름 및 경랍 | ※ | 31151 114 | 조제 건조제 | ℓ | 35215 111 |
| 젓꼭지 | ※ | 35593 114 | 조제 거자 | kg | 31213 118 |
| 제강용 선철 | ※ | 37111 111 | 조제 고무 가속제 | ※ | 35299 137 |
| 제논 | ㎏ | 35123 113 | 조제 광택제, 드레싱 | ※ | 35299 138 |
| 제라틴 | ※ | 35291 111 | 조제금속 탄화불 | ※ | 35129 216 |
| 제분업 (임가공) | ※ | 34231 106 | 조제 라스터 | ※ | 35132 315 |
| 제분기 | 대 | 38243 215 | 조제법량 유약 | ※ | 35132 314 |
| 제분짜꺼기 | ※ | 31161 312 | 조제 무기, 유기안료 | ※ | 35132 311 ~ 312 |
| 제빙기 | 대 | 38263 112 | 조제 왁스 | ※ | 35295 115 |
| 제빵용 기계 | 대 | 38243 911 | 조제 유백제 | ※ | 35132 313 |
| 제빵용 이스트 | kg | 31228 113 | 조준의 | 대 | 38541 114 |
| 제습기 | 대 | 38332 200 | 조판 및 연판 | ※ | 34232 111 |
| 제습기 (새끼틀) | 대 | 38220 415 | 조포 (광목, 내광목) | 천㎡ | 32121 112 |
| 제재목 | ㎏ | 33111 111 | 조화 (인조꽃) | ※ | 39054 100 |
| | | ~ 900 | 종 (악기) | ※ | 39025 119 |
| 제조기 | 대 | 38220 417 | 종광 | 천개 | 38242 622 |
| 제조제 | ※ | 35160 113 | 종려기름 | ℓ | 31152 116 |
| 제표 카드용지 | ※ | 34113 118 | (비철금속의) 종 및 벨 | ※ | 38199 919 |
| 젯트유 | ℓ | 35300 211 | 타포린 | ※ | 32194 212 |
| 조각용 기계 | 대 | 38248 315 | 기타 도포 또는 삼투적물 | ※ | 32194 219 |
| | | | 종이 끈 | ※ | 32171 113 |
| | | | 종이도포 및 칩책기 | 대 | 38246 116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종이 로프 | kg | 32171 213 | 주식 채권 및 유사권리 증서 | ※ | 34219 612 |
| 종이 부스러기 | ※ | 34199 200 |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컴프 | 대 | 38291 112 |
| 종이사 | kg | 32119 300 | 주전자(알루미늄제) | 천개 | 38142 113 |
| 종이상자 제조기 | 대 | 38246 217 | 주전자(스텐레스제) | 천개 | 38142 213 |
| 종이시험용기기 | 대 | 38543 113 | 주정 | ℓ | 31311 100 |
| 종이 재단기 | 대 | 38246 211 | 주조기 | 대 | 38233 111 |
| 종이주형제품 제조기 | 대 | 38246 221 | 주철관 | | |
| 종이컵 | 천개 | 34124 111 | 직관 | ※ | 37131 111 |
| 종이포대 제조기 | 대 | 38246 216 | 원심주조 회주철관 | ※ | 37131 112 |
| 종 편직기 | 대 | 38242 414 | 원심구상흑연 주철관 | ※ | 37131 113 |
| 최수차(철도차량) | 량 | 38422 112 | 사형 주철관 | ※ | 37131 114 |
| 주강, 주입강(보통강) | ※ | 37113 211 | 이형관 | ※ | 37131 121 |
| 주강, 주입강(고탄소강) | ※ | 37113 212 | 주덕 및 상업지구 환경감시용 통계기 | ※ | 38548 112 |
| 주강, 주입강(합금강) | ※ | 37113 213 | 주형(금형) | ※ | 38237 111 |
| 주물 | | | | | ~ 119 |
| 회주물 | ※ | 37132 100 | 주형 방출유 | ℓ | 35402 116 |
| 가단주물 | ※ | 37134 111 | 주형 제품 | ※ | 36993 113 |
| 구상흑연주물 | ※ | 37134 112 | 줄칼 | 천개 | 38113 115 |
| 합금주물 | ※ | 37133 112 | 중계조(30kg/m이상) | ※ | 37121 711 |
| 주물용 선철 | ※ | 37111 112 | 중석 | | |
| 주물 집합제 | kg | 35299 122 | 흑중석 | ※ | 23021 111 |
| 주방용 관 | 천개 | 38112 111 | 회중석 | ※ | 23021 112 |
| 주방용품(유리제품) | ※ | 36206 112 | 기타 중석광 | ※ | 23021 119 |
| 주사위 | ※ | 39099 900 | (미가공) 중석 및 중석합금 | ※ | 37219 311 |
| 주석관 및 관부착물 | kg | 37239 413 | 중석봉, 형강, 선 | ※ | 37239 511 |
| 주석광(산화주석광) | ※ | 23029 912 | 중석 정련 잔여물 | ※ | 37229 131 |
| 주석 금속 제조제품 | ※ | 37290 600 | 중석 제조제품 | ※ | 37290 700 |
| 주석(미가공) | ※ | 37219 211 | 중석판, 띠 및 분 | ※ | 37239 512 |
| 주석봉, 형강 및 선 | kg | 37239 411 | 중유 | ℓ | 35300 217 |
| 주석채련 잔여물 | kg | 37229 121 | 중조 | kg | 35122 115 |
| 주석관 띠 | kg | 37239 412 | 중질지 | ※ | 34113 113 |
| 주석관 분 | kg | 37239 412 | 중탄산 나트륨(중조) | ※ | 35122 115 |
| 주석산 | ※ | 35119 116 | 중판(보통강) | ※ | 37121 321 |
| 주석관 편 | kg | 37239 412 | 중판(고탄소강) | ※ | 37121 322 |
| 주소 자동인쇄기 | 대 | 38253 112 | | | |

(스)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중판 (합금강) | ※ | 37121 323 | 인조섬유직물 (견직물 포함) | 천㎡ | 32123 111. ~ 600 |
| 중화기 (重火器) | ※ | 38299 919 | 마직물 | 천㎡ | 32124 111 ~ 129 |
| 중형증용차 | 대 | 38431 112 | 세목직물 | ※ | 32125 100 |
| 중형트럭 | 대 | 38431 312 | 기타 광목적물 | ※ | 32129 111 ~ 119 |
| 슈스 | ㎝ | 31341 113 | 고무직물 | ※ | 35592 115 |
| 취약 | ※ | 35160 114 | 직물기저 리놀륨 및 유사경표 면 마루덮개 | ※ | 32194 211 |
| 취덮 | ※ | 38196 119 | 직물제 시제줄 | ※ | 32229 219 |
| 증강제 및 감도제 | ㎏ | 35296 213 | 직물운동화 (갑피가 직물인것) | 천족 | 35591 113 |
| 증기기관 | 대 | 38212 100 | 직물제 장갑 | 조 | 32228 111 |
| 증기발생 보일러 | 대 | 38134 111 | 직물 포대 | 개 | 32141 100 |
| 증기 터빈 | 대 | 38212 200 | 직접 염료 | ※ | 35131 111 |
| 증발 및 건조장치 | 대 | 38244 921 | 진 (Jean) | 천㎡ | 32121 112 |
| 증폭기 | | | 진 (과실 증류주) | ㎝ | 31315 113 |
| 방송용 증폭기 (P.A.앰프) | 천개 | 38321 912 | 진공청소기 (가정용) | 대 | 38339 111 |
| 음성 증폭기 | 천개 | 38349 112 | 진공청소기 (산업용) | 대 | 38269 116 |
| 지갑 | 개 | 32333 200 | 진공펌프 | 대 | 38291 117 |
| 지계차 | 대 | 38294 114 | 진단용 기구 (눈점사기구 제외) | ※ | 38512 111 |
| 지그 및 부착물 | ※ | 38239 900 | 진동 검사기 | 개 | 38543 214 |
| 지도 | ※ | 34219 200 | 진로차 | 대 | 38431 400 |
| 지방산 및 지방물질 처리짜꺼기 | ※ | 31151 500 | 질산 | ※ | 35121 213 |
| 지석 | ※ | 29099 915 | 질산 암모늄 (질안) | ※ | 35151 113 |
| 지우개 | 천개 | 39091 125 | 질산 칼륨 | ※ | 35151 116 |
| 지진계 | ※ | 38544 100 | 짐프사 | ㎏ | 32119 113 |
| 지팡이 | 천개 | 39092 200 | 짐핑기 | 대 | 38242 514 |
| 지퍼 (파스너) | ㎝ | 39095 100 | 집적 및 철책용 기계 | 대 | 38247 313 |
| 지폐공지 | ※ | 34113 116 | 집적회로 (전자) | 천개 | 38342 113 |
| 지프 (Jeep) | 대 | 38431 114 | 초고밀도 집적회로 | 천개 | 38342 114 |
| 직관 | ※ | 37131 111 | 집진장치 | 대 | 38244 924 |
| 직물 | | | 징 (국악기) | ※ | 39027 100 |
| 번직물 | 천㎡ | 32121 111 ~ 200 | 질차 | 대 | 38431 114 |
| 모직물 | 천㎡ | 32122 111 ~ 212 | 필름 | 대 | 38244 922 |
| | | | 차량 공기조절기 | 대 | 38264 112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차량 냉동장비 | 대 | 38263 113 | 착화탄 | 천개 | 35117 117 |
| 차량 브레이크 검사용 시험대 | 대 | 38543 215 | 찬장 | 개 | 33201 121 |
| 차량 세차기 | 대 | 38269 119 | 참기름 | ℓ | 31153 111 |
| 차량용 내장가구 | ※ | 33202 300 | 참치통조림 (다량어) | ㎏ | 31141 113 |
| 차량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및 기타 전기장치 | ※ | 38399 212 | 차간 (도금 귀금속 제품) | ※ | 39010 612 |
| 차량용 전기 조명 및 신호장 비 | ※ | 38392 219 | 창연광 | ※ | 23029 913 |
| 차륜 (철도 차량용) | 개 | 38423 300 | 창투명지 | ※ | 34191 113 |
| 차륜 (자동차용) | 개 | 38432 921 | 창틀 | ※ | 38131 112 |
| 차 및 커피 가공기 | 대 | 38243 923 | 창호지 | 천매 | 34116 111 |
| 차봉지 원지 | ※ | 34119 114 | 채색 또는 인쇄지 | ※ | 34193 114 |
| 차아염소산 칼슘 | ※ | 35121 514 | 채소 통조림 | ※ | 31131 112 |
| 차액기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 | 31227 215 | 채종유 (유채기름, 비식용) | ℓ | 31152 117 |
| 차체 | | | 채종유 (식용) | ℓ | 31153 115 |
| 승용차 차체 | 대 | 38431 611 | 채탄기계 | 대 | 38241 112 |
| 버스 차체 | 대 | 38431 612 | 책상 (목제) | 개 | 33201 112 |
|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 일러 차체 | 대 | 38431 613 | 책상 (금속제) | 천개 | 38121 112 |
| 기타 차체 | ※ | 38431 619 | 책상보 | ※ | 32149 900 |
| 차체부품 | ※ | 38432 600 | 책 재봉기 | 대 | 38247 311 |
| 착륙기어 | 개 | 38490 900 | 처리우유 | ※ | 31124 100 |
| 착색도금 아연도 강판 | ※ | 37192 213 | 척 | | |
| 착색제 | | | 선반척 | ※ | 38231 139 |
| 연산화물 | ※ | 35132 111 | 밀링척 | ※ | 38231 139 |
| 광물성 블랙 색토 | ※ | 35132 112 | 드릴척 | ※ | 38231 139 |
| 티타늄 화이트 | ※ | 35132 113 | 천공기 (광산용) | 대 | 38241 111 |
| 프러시안 블루 (감청) | ※ | 35132 114 | 천공기 | 대 | 38246 214 |
| 울트라마린 (군청) | ※ | 35132 115 | 천공편치 | 개 | 38113 112 |
| 아연화 | ※ | 35132 116 | 천막 (방수로) | 매 | 32143 114 |
| 기타 무기 착색제 | ※ | 35132 117 | 천문기구 | 대 | 38527 112 |
| 착암기 | 대 | 38234 114 | 천문, 수로 및 지구 물리학기구 | ※ | 38544 100 |
| 착유기 (우유채취용) | 대 | 38220 418 | 천연랍 | ※ | 35131 118 |
| 착유기 (동·식물성기름추출용) | 대 | 38243 922 | 천연명반 | ※ | 29020 916 |
| | | | 천연빙정석 (형석에 포함) | ※ | 29020 912 |
| | | | 천연 백금금속 및 백금광 | ※ | 23023 113 |
| | | | 천연 봉산염 광물 (미가공) | ※ | 29020 311 |

(㉜)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천연색 TV | 대 | 38321 112 | 망(철망) | ㄱ | 38196 111 |
| 천연 슬레이트(제품은 36993 111분류) | ※ | 29011 113 | 선 스프링 | ㄱ | 38196 112 |
| 천연 역청 및 광돌왁스 | ※ | 29099 913 | 와이어 로우프 | ㄱ | 38196 113 |
| 천연 연마제 | ㄱ | 29099 100 | 쇠못(철정) | ㄱ | 38196 114 |
| 천연 질산나트륨 | ㄱ | 29020 111 | 기타비금속의 선제품(새장, 취뿔등) | ※ | 38196 119 |
| 천연 탄산나트륨(미가공) | ※ | 29020 313 | 철선조립품(석쇠, 뒤김틀 등) | ※ | 38192 215 |
| 천연황산나트륨(미가공) | ※ | 29020 312 | 철계 굴뚝 | ㄱ | 38135 112 |
| 천연 황산바름(중정식) 및 천 연탄산바름 | ※ | 29020 911 | 철계 교량 | ㄱ | 38135 112 |
| 천일염 | ㄱ | 29040 100 | 철계수문 | ㄱ | 38131 114 |
| 철강로프(와이어로프) | ㄱ | 37124 315 | 철계우산 | 천개 | 39092 111 |
| 철강로프 | ㄱ | 38196 113 | 철조망 | ㄱ | 38196 115 |
| 철강분 | ㄱ | 37119 112 | 철탑 | ㄱ | 38135 112 |
| 철강 | | | 철관 절단기 | 대 | 38234 123 |
| 적철광 | ㄱ | 23010 111 | 철관제품 | ※ | 38133 100 |
| 자철광 | ㄱ | 23010 112 | 청소기(카펫트) | 대 | 38269 112 |
| 갈철광 | ㄱ | 23010 113 | 청소차 | 대 | 38431 400 |
| 기타철광 | ※ | 23010 119 | 청정체질 및 선별용 기계 | 대 | 38220 213 |
| 철근 | | | 청주 | ㄷ | 31322 100 |
| 이형철근 | ㄱ | 37121 131 | 청주(합성 청주) | ㄷ | 31319 211 |
| 원형철근 | ㄱ | 37121 132 | 체온계 | 개 | 38544 212 |
| 철도궤도 및 부착물 | ※ | 38139 100 | 체인(연계) | ㄱ | 38199 211 |
| 철도차량부품 | ※ | 38423 919 | 체인틀 | 천개 | 38116 122 |
| 철물 | | | 체조 장비 | ※ | 39031 111 |
| 건물용 철물 | ※ | 38117 111 | 초고밀도집적회로(VLSI) | 천개 | 38342 115 |
| 가구용 철물 | ※ | 38117 112 | 초산(Acetic Acid) | ㄱ | 35112 124 |
| 차량용 철물 | ※ | 38117 113 | 초산메틸 에틸, 부틸 | ㄱ | 35112 125 |
| 가방부착용 철물 | ※ | 38117 114 | 초유복약 | ㄱ | 35292 114 |
| 기타 철물 | ※ | 38117 119 | 초석 | ㄱ | 29020 917 |
| 각종 부착물(압단제품) | ※ | 38142 314 | 초안복약 | ㄱ | 35292 113 |
| 철 산화물 | ※ | 29020 411 | 초인종 | ※ | 38199 915 |
| 철선(울타리) | ㄱ | 37124 311 | 초저기 | 대 | 38246 115 |
| 철선제품 | | | 초코렛과자 | ㄱ | 31173 200 |
| | | | 총(경기용, 수렵용) | ※ | 38298 200 |

(㉔)~(㉕)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추출기 및 프레스기 | 대 | 38115 112 | 침착지 | ㉔ | 34193 113 |
| 축성형기 | 대 | 38235 117 | 침보드 | ㉔ | 33115 112 |
| 축음기 판 | 천매 | 38326 111 | 카드 (크리스마스용 등) | ※ | 34219 411 |
| 축전기 (콘덴샤) | | | 놀이용 카드 (포카, 화투등) | ※ | 34219 900 |
| 고압 축전기 (일반산업용) | 대 | 38319 211 | 카드기 | 대 | 38242 115 |
| 저압 축전기 (") | 대 | 38319 212 | 카드 조립기 | ※ | 38242 615 |
| 가변 축전기 (전자부품용) | 천개 | 38343 112 | 카라멜 | ㉔ | 31173 311 |
| 고정 축전기 (전자부품용) | 천개 | 38343 111 | 카레가루 | ㉔ | 31214 114 |
| 축전지 | 개 | 38393 111 | 카렌저기 | 대 | 38244 917 |
| 축계용 제품 | ※ | 39049 100 | 카리함유 조광물 | ㉔ | 29026 113 |
| 춘장 | ㉔ | 31211 114 | 카메라 (일반 목적용) | 대 | 38523 111 |
| 충력 검사기 | 개 | 38543 214 | 카메라 (VTR) | 대 | 38523 112 |
| 취소 | ㉔ | 35121 112 | 카메라 (특수 목적용) | ※ | 38523 119 |
| 취수연 | ㉔ | 23026 100 | 카메라부품 | ※ | 38523 121 |
| 측량용 경관, 렌드체인 | 개 | 38541 118 | 카바 (느슨한 가구카바: 자동차 | ※ | 32142 114 |
| 측면기 (비전기식) | ※ | 38542 113 | 시트카바, 쿠션카바 등) | | |
| 측면봉 (비전기식) | ※ | 38542 113 | 카본 브러쉬 | ※ | 38399 111 |
| 치과 드릴엔진 | ※ | 38514 114 | 카본 블랙 | ㉔ | 35294 100 |
| 치과비품 | ※ | 38514 113 | 카본 전극봉 | ※ | 38399 112 |
| 치과용 수도구 | ※ | 38514 111 | 카본 제조과정 부스러기 | ※ | 38399 121 |
| 치분 | ㉔ | 35234 112 | 카세인 섬유 (재생 장섬유) | ㉔ | 35142 114 |
| 치솔 | 천개 | 39093 117 | 카세인 섬유 (재생 단섬유) | ㉔ | 35142 314 |
| 치약 | ㉔ | 35234 111 | 카세인 섬유 (재생 장섬유 토 | ㉔ | 35142 414 |
| 치오라이트 (형석에 포함) | ㉔ | 29020 912 | 우) | | |
| 치즈 | ㉔ | 31121 200 | 카스테라 | ※ | 31171 115 |
| 치즈 제조기 | 대 | 38243 114 | 카시미론사 | ㉔ | 32114 211 |
| 철기 | ※ | 39051 100 | 카드리지 조작 리벳터 | 개 | 38119 22 |
| 침강탄산 마그네슘 | ㉔ | 35121 414 | 카세트 테이프 | 천㉔ | 38326 1 |
| 침강탄산 칼슘 | ㉔ | 35121 415 | 비디오 테이프 | 천㉔ | 38326 113 |
| 침대 (금속대) | 대 | 38121 117 | 카세트 | ㉔ | 32161 100 |
| 침대 (목재) | 개 | 33201 122 | 카폰 (자동차용 전화기) | 대 | 38322 113 |
| 침목 (목재) | 본 | 33119 114 | 카프로락탐 | ㉔ | 35113 126 |
| 침목 (콘크리트) | 본 | 36935 213 | 칸막이 (금속계) | ※ | 38122 111 |
| 침전동 | ㉔ | 37211 113 | 칼 | |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식탁용 칼 | ※ | 38111 100 | 컴퓨터 | | |
| 주방용 칼 | 천개 | 38112 111 | 중앙자료처리장치 (cpu) | 대 | 38251 111 |
| 포켓용 칼 | 천개 | 38112 112 | 보조기억장치 | 대 | 38251 112 |
| 군용 칼(칼집 포함) | ※ | 38112 119 | 입출력장치 | 대 | 38251 113 |
| 줄칼 | 천개 | 38113 115 | 터미널(단말장치) | 대 | 38251 114 |
| 유리칼 | 천개 | 38113 116 | 전송장치 | 대 | 38251 115 |
| 칼(귀석제품) | ※ | 39010 219 | 컴퓨터부속품 | ※ | 38251 119 |
| 칼(귀금속 또는 도금한 것) | ※ | 39010 511 | 컴퓨터테이프 | 개 | 38256 111 |
| 칼날(문방구용 칼날포함) | ※ | 38112 113 | 컴퓨터디스크 | 개 | 38256 112 |
| 칼뿔 | ㎍ | 35121 124 | 컴퓨터 칩 | 개 | 38256 113 |
| 칼슘 | ㎍ | 35121 125 | 컴퓨터 기타 프로그램매체 | ※ | 38256 119 |
| 칼샤프트 | 개 | 38297 114 | 컴퓨터용수상기(모니터) | 대 | 38321 114 |
| 카브레타(기화기) | 대 | 38299 511 | 킷아웃 스위치 | 개 | 38313 114 |
| 캐비딘(라인코트용 천) | 천㎡ | 32121 112 | 케미슈즈 | ㎍ | 35607 111 |
| 캐비닐(금속제) | 천개 | 38121 111 | 캐주얼화(남·여용) | 족 | 32401 113 |
| 캐비닐(목제) | 개 | 33201 123 | 케이블 | | |
| 캔디류(설탕 과자) | ㎏ | 31173 311 | 철강 케이블 | ㎍ | 37129 100 |
| 캔버스 | 매 | 32121 113 | 동 케이블 | ㎍ | 37290 111 |
| 캔버스(회화용) | ※ | 32194 113 | 알루미늄 케이블 | ㎍ | 37290 211 |
| 캠브릭(면직물) | 천㎡ | 32121 112 | 통신선 및 케이블 | ㎍ | 38391 111 |
| 캠핑가구 | ※ | 38121 115 | 전력선 및 케이블 | ㎍ | 38391 112 |
| 캠핑용품 | ※ | 32143 112 | 마그네트선 및 케이블 | ㎍ | 38391 113 |
| 커피 | ※ | 32145 111 | 기타의 절연선 및 케이블 | ※ | 38391 119 |
| 커피(카페인 제거한) | ㎏ | 31227 111 | 케이블선 | G/T | 38412 300 |
| 커피(분말) | ㎏ | 31227 113 | 케이스 | | |
| 커피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 ※ | 31227 114 | 가죽케이스(휴대용) | 개 | 32334 111 |
| 커피 여과로 | ※ | 32149 919 | 기타 가죽케이스 | ※ | 32334 119 |
| 커피 크리머 | ㎏ | 31229 312 | 목재기구케이스 | ※ | 33124 112 |
| 커피포트(알루미늄제비전기식) | 천개 | 38142 116 | 금속제케이스 | ※ | 38122 113 |
| 커피포트(스테인레스제비전기식) | 천개 | 38142 216 | 프라스틱케이스 | ㎍ | 35604 113 |
| 커피 포트(전기식) | 대 | 38334 213 | 시계케이스(휴대용) | 천개 | 38533 112 |
| 커피 포트(도금 귀금속제품) | ※ | 39010 612 | 시계케이스(큰시계용) | 천개 | 38533 113 |
| 컬러 레이코 | ㎍ | 35131 131 | 타이어케이스 | 천개 | 35511 411 |
| | | | 레이크 | ※ | 31171 113 |
| | | | 케찰 | ㎏ | 31213 114 |
| | | | 코드레스폰(무선전화기) | 대 | 38322 112 |
| | | | 코팅기 | 대 | 38242 116 |

(7)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코알트 광석 | ㄱ | 23029 113 | 콘크리트 관석 | 천매 | 36934 114 |
| 코일 (나선형) 스프링 | ㄱ | 38199 111 | 컨테이너 (수출상품의 보관 및 운반용) | 대 | 38191 212 |
| 코일 | 천개 | 38345 112 | 로드레일 및 유사컨테이너 (차량) | 대 | 38432 500 |
| 코코아 가공품 | ※ | 31173 100 | 콜라 | ㄷ | 31341 112 |
| 코코스 | | | 콜라원액 | ㄷ | 31341 211 |
| 석유코코스 | ㄱ | 35300 412 | 콜리폼 (오니폼) | ㄱ | 23029 114 |
| 석탄코코스 | ㄱ | 35409 211 | 콜셋 | ※ | 32225 111 |
| 코코스로 (운반, 분리, 수집의 복합제) | 대 | 38244 300 | 콜크 및 콜크제품 | ※ | 33191 100 |
| 코트 (주문복, 남자용) | 착 | 32211 112 | 콤팩 | ※ | 38242 618 |
| 코트 (기성복, 남자용) | 착 | 32221 112 | 콤바인 | 대 | 38220 315 |
| 코트 (마춤, 여자용) | 착 | 32212 112 | 컴팩트디스크 (CD) | 천매 | 38326 112 |
| 코트 (기성복, 여자용) | 착 | 32223 112 |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 | 대 | 38321 318 |
| 코트걸이 (세워놓는 급속제) | ※ | 38122 119 | 컴퓨터 (컴퓨터 참조) | 대 | 38251 111 ~ 119 |
| 코트 및 양복 (소아용, 기성복) | 착 | 32224 112 | 콩가루 | kg | 31161 213 |
| 콘덴사 (가변 축전기) - 전자기기용 | 천개 | 38343 112 | 콩기름 (식용) | ㄷ | 31153 114 |
| 콘덴사 (고정 축전기) - 전자기기용 | 천개 | 38343 111 | 콩기름 (비식용) | ㄷ | 31152 111 |
| 콘베이어 | 대 | 38293 124 | 콩깻묵 | ㄱ | 31153 122 |
| 콘베이어벨트 (가죽 및 직물제) | ※ | 32331 111 | 쿠키 | kg | 31172 111 |
| 콘베이어벨트 (고무제품) | ※ | 35592 114 | 큐 | ※ | 39039 411 |
| 콘베이어벨트 (프라스틱 제품) | ㄱ | 35601 116 | 큐레스트 | ※ | 39039 411 |
| 콘서트나 | 개 | 39022 113 | 큐립 | ※ | 39039 411 |
| 콘센트 | 천개 | 38396 112 | 큐패드 | ※ | 39039 411 |
| 콘크리트 관 | 본 | 36939 111 | 크라리넷 | ※ | 39024 111 |
| 콘크리트 기와 | 천매 | 36934 111 | 크라프트지 | ㄱ | 34114 100 |
| 콘크리트 믹서 | 대 | 38241 323 | 크라프트지 포대 | 천매 | 34122 111 |
| 콘크리트 선 (船) | ㄱ | 38419 212 | 크랙카 | kg | 31172 111 |
| 콘크리트 벽돌 | 천매 | 36934 112 |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 개 | 38297 113 |
| 콘크리트 블록 | 천매 | 36934 113 | 클러치 | 개 | 38297 117 |
| 콘크리트 장식제품 | ※ | 36939 119 | 크레오소트유 | ㄱ | 35116 114 |
| 콘크리트 전주 | 본 | 36935 212 | 크레용 | ※ | 39091 115 |
| 콘크리트 침목 | 본 | 36935 213 | 크레인 (건설용 장비) | 대 | 38241 31 |
| 콘크리트 파일 | 본 | 36935 214 | 크레인 (재료취급용) | 대 | 38293 117 |
| | | | 크레졸 | ㄱ | 35116 113 |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 번호 |
|-----------------|-----|--------------------|------------------------------|-----|-----------|
| 크레핑기 | 대 | 38246 117 | 기타 공기 타이어 | ※ | 35511 119 |
| 크랩프 | 천개 | 38113 118 | 타이어 부품 | | |
| 크리머 (키피크리머) | kg | 31229 312 | 타이어 케이스 | 천개 | 35511 411 |
| 크실렌 | | | 호환성 타이어 바닥 | ※ | 35511 412 |
| 혼합크실렌 | ㎍ | 35111 123 | 기타 타이어 부품 | ※ | 35511 419 |
| 울소크실렌 | ㎍ | 35111 124 | 타이어 코드사 | | |
| 파라크실렌 | ㎍ | 35111 125 | 면 타이어 코드사 | kg | 32193 111 |
| 크림빵 | ※ | 31171 119 | 인조섬유 타이어 코드사 | kg | 32193 112 |
| 클럼블 (오너블) | ㎍ | 23029 114 | 타이프 라이터용 및 유사리본 | ※ | 39091 1 7 |
| 클로로 메탄 (크로로 메틸) | ㎍ | 35112 113 | 타일 | 천㎡ | 36913 111 |
| 클로로 불화메탄 | ㎍ | 35123 116 | 타일코록 및 기타 시간 경과 를 기록하는 장치 | ※ | 38531 119 |
| 클로로 설펜산 | ㎍ | 35121 215 | 타자기 | | |
| 클로로 테트라 사이클린 | ※ | 35223 113 | 전동식 타자기 | 대 | 38255 111 |
| 클로로 페닐메탄 | ㎍ | 35112 116 | 표준 비전기식 타자기 | 대 | 38255 113 |
| 크로뮴광석 | ㎍ | 23029 111 | 표준사무용 타자기 | 대 | 38255 112 |
| 크롬 도금 철강판 | ㎍ | 37192 312 | 특수 타자기 | 대 | 38255 115 |
| 크롬철 | ㎍ | 37112 113 | 휴대용 타자기 | 대 | 38255 114 |
| 크리프톤 | ㎍ | 35123 113 | 타자기 부품 | ※ | 38255 119 |
| 크림 (화장품) | kg | 35235 112 | 타코미터 (항공기용 제외) | 개 | 38546 112 |
| 크림 분리기 | 대 | 38243 111 | 타피오카 및 사코 | ㎍ | 31225 113 |
| 큰시계용 케이스 (부품포함) | 천개 | 38533 113 | 탁상시계 (일반시계) | 천개 | 38531 113 |
| 키실렌 (크실렌 참조) | ㎍ | 35111 123 ~ 125 | 탁상시계 (전기, 전자) | 천개 | 38532 113 |
| 타르메카담 | ※ | 35403 112 | 탁주 | ㎍ | 31321 111 |
| 타르 침착 루핑벨트 | ※ | 35403 113 | 탄닌산 및 유도체 | ※ | 35133 114 |
| 타악기 | | | 탄산 나트륨 | ㎍ | 35122 113 |
| 드럼 및 유사악기 | ※ | 39025 111 | 탄산 아연광 | ㎍ | 23025 200 |
| 기타의 타악기 | ※ | 39025 119 | 탄산지 | ㎍ | 34119 114 |
| 타악기 부품 | ※ | 39025 121 | 탄산 카리 (탄산칼륨) | ㎍ | 35122 114 |
| 타월 (직접 직조한것) | kg | 32129 114 | 탄산칼슘 | ㎍ | 35121 416 |
| 타이 및 유사 남자용 목도리 | 개 | 32229 211 | 탄성 편직물 | ※ | 32159 100 |
| 타이어 | | | 탄타륨 및 탄타륨 합금 | kg | 37229 214 |
| 자동차용 공기 타이어 | 천본 | 35511 111 | 탄화규소 | ㎍ | 35121 518 |
| 모터 싸이클용 타이어 | 천본 | 35511 112 | 탄화수소 (포화비환식) | ㎍ | 35111 113 |
| 자전거용 타이어 | 천본 | 35511 113 | 탈목기 | 대 | 38220 211 |

(E)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탈수기 | 대 | 38333 112 | 테트라에틸렌 | ㎥ | 35119 312 |
| 탈수장치 | 개 | 38220 412 | 멘트 | 개 | 32143 111 |
| 탈지분유 | ㎏ | 31122 200 | 텔레비전 방송국장치 - 시각 | 대 | 38323 112 |
| 탐색선 | ㎥ | 38412 300 | 텔레비전 수상기 - 흑백 | 대 | 38321 111 |
| 탐조등 | ※ | 38395 113 | 텔레비전 수상기 - 천연색 | 대 | 38321 112 |
| 탈지강 | ㎥ | 31153 123 | 텔레비전 수상기 - 복합제 | 대 | 38321 113 |
| 태양계 | ※ | 38544 100 | 텔레비전 수상기 - 프로젝션 | 대 | 38321 114 |
| 태핑기 (금속절삭) | 대 | 38231 124 | (45 인치 이상) | | |
| 태핑기 (수지식 동력공구) | 대 | 38234 112 | 텔레페릭 및 푸니쿨라 | 대 | 38293 114 |
| 태핑 및 나사공구 | 천개 | 38113 123 | 텔레프린터 (유선통신) | 대 | 38322 214 |
| 택시 | 대 | 38431 111 | 텔레타이프 (유선통신) | 대 | 38322 213 |
| 택시미터 | 대 | 38546 111 | 텔레폰 레코더 (유선통신) | 대 | 38322 212 |
| 텔로우 오일 | ㎏ | 31151 211 | 모사전송기기 (팩시밀리) | 대 | 38322 215 |
| 템핑기 | 대 | 38241 318 | 토기제품 | ※ | 36101 100 |
| 탱크 및 유사 금속용기 | 개 | 38136 211 | 토름 및 회토류광 | ※ | 23029 212 |
| 터르 펜틴정 | ※ | 35117 111 | 토마스 및 베세머 전로 | 대 | 38299 215 |
| 터보 제트 | 대 | 38490 900 | 토마스 슬래그 | ※ | 37119 119 |
| 터보 - 팬기관 - 램제트 | 대 | 38490 900 | 토상흑연 | ㎥ | 29091 112 |
| 터보 - 프로펠라 및 터보 - 샤프트 기관 | 대 | 38490 900 | 토사석 가공처리 서비스 | ※ | 36999 200 |
| 터빈기관의 부품 | ※ | 38490 900 | 토오치 램프 | 개 | 38119 213 |
| 팅스텐 제조제품 | ※ | 37290 700 | 토탄 (토탄 및 토탄연탄) | ㎥ | 29099 911 |
| 팅스텐 철 | ㎥ | 37112 118 | 투신, 미생물 배양물 | ※ | 35221 112 |
| 테레프탈산 (T.P.A) | ㎥ | 35113 124 | 틀루엔 | ㎥ | 35111 122 |
| 테리직물 | 천㎡ | 32129 111 | 틀오일 | ※ | 35117 116 |
| 테이블 (금속제) | ※ | 38121 118 | 톱 | | |
| 테이프 | | | 나무용 톱 | 천개 | 38116 111 |
| 녹음 테이프 (카세트) | ㎞ | 38326 112 | 금속용 톱 | 천개 | 38116 112 |
| 비디오 테이프 | ㎞ | 38326 113 | 석재용 톱 | 천개 | 38116 113 |
| 직물제 테이프 | ※ | 32125 100 | 시계 및 보석공용 톱 | 천개 | 38116 114 |
| 약용 테이프 (반창고등) | ※ | 38519 300 | 체인 톱 | 천개 | 38116 122 |
| 접착용 테이프 (사무용) | ※ | 39091 900 | 기계 톱 (금속절삭) | 대 | 38231 127 |
| 비닐테이프 | ※ | 35114 142 | 동력식 금속 절단용 톱 | 대 | 38234 121 |
| 색종이테이프 | ※ | 34193 114 | 기계 톱 (목공기계) | 대 | 38235 112 |

(ㄷ)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톱 및 절단기계 (비금속 광물 공작용) | ※ | 38248 311 | 기타 공기타이어 튜우브 | ※ | 35511 219 |
| 톱날 | 천개 | 38116 121 | 튜우브 제조기 | 대 | 38245 114 |
| 통 | | | 튜퍼 | ※ | 29031 100 |
| 액체용 통 (목재) | 개 | 33121 111 | 트라이 앵글 | ※ | 39025 119 |
| 고체용 통 (목재) | 개 | 33121 112 | 트랙 장비 | | |
| 쌀 씻는 통 (금속제) | ※ | 38142 119 | 웍틀 | ※ | 39039 100 |
| 물통 (금속제) | ※ | 38142 119 | 장대 | ※ | 39039 100 |
| 통 부품 | ※ | 33121 113 | 허들 및 기타 트랙장비 | ※ | 39039 100 |
| 통신선 및 케이블 | ※ | 38391 111 | 트랙터 (농업용) | 대 | 38220 312 |
| 통계장비 (계달 및 레바) | ※ | 38432 914 | 트랙터 (트럭트랙터 - 자동차) | 대 | 38431 500 |
| 통 제조기 | 대 | 38235 211 | 트랙터 (건설 및 광산용 기계) | 대 | 38241 411 |
| 통조림 | | |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장비부품 | ※ | 38220 900 |
| 조개류 통조림 (굴 제외) | kg | 31141 115 | 트랙터 부품 (건설 및 광산용 트랙터) | ※ | 38241 419 |
| 쇠고기, 돼지고기 통조림 | kg | 31111 100 | 트랜스밋콘 샤프트 | 개 | 38297 112 |
| 과실 통조림 | ※ | 31131 111 | 트랜스포머 (변성기) | 천개 | 38345 111 |
| 굴 통조림 | kg | 31141 114 | 트랜지스터 (TR) | 천개 | 38342 111 |
| 야채 통조림 (채소통조림) | ※ | 31131 112 | 트랜지스터 라디오 | 대 | 38321 211 |
| 기타 과실 및 야채통조림 | ※ | 31131 119 | 트러 | | |
| 콩치 통조림 | kg | 31141 111 | 소형트럭 (4 ton 미만) | 대 | 38431 311 |
| 고등어 통조림 | kg | 31141 112 | 중형트럭 (4 ~ 8 ton 미만) | 대 | 38431 312 |
| 참치 통조림 | kg | 31141 113 | 대형트럭 (8 ton 이상) | 대 | 38431 313 |
| 기타 해산물 통조림 | ※ | 31141 119 | 특수차 | 대 | 38431 400 |
| 통조림관 (식관을 말함) | 천개 | 38191 111 | 트럭트랙터 | 대 | 38431 500 |
| 투사포 | ※ | 32194 112 | 트럭 - 트랙터 및 웨곤 | 대 | 38241 324 |
| 블 레이스 제조기 | 대 | 38242 512 | 트럭,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차체 | 대 | 38431 613 |
| 튜너 | | | 프레트홈 트럭 | 대 | 38294 113 |
| 천연색 TV 튜너 | 천개 | 38321 116 | 트럼본 | ※ | 39024 112 |
| 흑백 TV 튜너 | 천개 | 38321 117 | 트럼펫 | ※ | 39024 112 |
| AM, FM 튜너 | 천개 | 38321 216 | 트레스 | ※ | 29031 100 |
| 전속용 튜너 | 대 | 38321 315 | 트롤리버스 (철도장비) | 대 | 38429 111 |
| 튜우브 | | | 트리클로로 디메탄 | ※ | 35112 116 |
| 자동차용 튜우브 | 천본 | 35511 211 | 트리클로로 에티렌 | ※ | 35112 114 |
| 모터사이클용 튜우브 | 천본 | 35511 212 | 특고압 액자 | 천개 | 36104 113 |
| 자전거용 튜우브 | 천본 | 35511 213 | | | |

(E)~(K)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특수 박엽지 | % | 34119 114 | 파이어 보드 | ㎡ | 34115 111 |
| 특수 인쇄기 | 대 | 38247 117 | 파이어 상자 | ※ | 34125 100 |
| 특수자동차 | 대 | 38431 400 | 파이프자동 조절용 금속발브 | 개 | 38198 212 |
| 특수 재료 신발(실내화제외) | ※ | 32403 119 | 파이프 컷터(절단기) | 천개 | 38113 113 |
| 특수 카메라 | ※ | 38523 119 | 파일(콘크리트) | 본 | 36935 214 |
| TV | | | 파치먼트 손질가죽 | ㎡ | 32311 312 |
| 흑백TV | 대 | 38321 111 | 판게임장비 | ※ | 39044 200 |
| 천연색TV | 대 | 38321 112 | 판, 띠, 필름, 박(중합, 공중합 제품) | ※ | 35601 ~ 35609 |
| 복합TV(흑백및 천연색) | 대 | 38321 113 | 판석(타일제품) | ※ | 36913 112 |
| 프로젝션 칼라TV | 대 | 38321 114 | 판석(콘크리트) | 천매 | 36934 114 |
| TV라디오 및 기타 TV | 대 | 38321 113 | 판석(가공) | % | 36994 114 |
| 복합체 | | | 판유리 | 상자 | 36201 113 |
| TV사시-조립용 키트 | 套 | 38321 119 | 판유리 제조기 | 대 | 38248 ~ 114 111 |
| TV카메라 | 대 | 38323 115 | 판지 상자 | ※ | 34123 100 |
| T-셔츠(편직한것, 남자용) | 천매 | 32153 100 | 판지 시험용기기 | 대 | 38543 113 |
| T-셔츠(편직한것, 여자용) | 천매 | 32153 200 | 판토메터 | 개 | 38541 116 |
| T-셔츠(편직한것, 유아용) | 천매 | 32153 300 | 팔찌(개인 장식품) | ※ | 39010 211 |
| T-셔츠(봉제한것, 마춤복) | 매 | 32219 112 | 팜프렛 | ※ | 34213 112 |
| T-셔츠(봉제, 남자기성복) | 매 | 32222 112 |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 | 대 | 38322 215 |
| T-셔츠(봉제, 여자기성복) | 매 | 32223 114 | 팩티스 | ※ | 35115 200 |
| T/C지 | 천매 | 32123 311 | 팽창 검사기 | 개 | 38543 214 |
| T.D.I | % | 35113 113 | 팽창 시멘트 | % | 36921 115 |
| 티타늄 | % | 23029 915 | 퍼스날 컴퓨터 | 대 | 38251 100 |
| 티타늄 철 | % | 37112 117 | 펀치(천공)-수동 | 대 | 38113 112 |
| 티타늄 화이트 | % | 35132 114 | 펀치기-기계식(사무용) | 대 | 38259 113 |
| 티포트(도금, 귀금속 제품) | ※ | 39010 612 | 펀칭기(금속성형) | 대 | 38232 121 |
| 파라크실렌 | % | 35111 125 | 펄스 제트 | 대 | 38490 900 |
| 파쇄기 및 마쇄기(식품용) | 대 | 38115 111 | 펄프 | | |
| 마쇄기(전기용) | 대 | 38339 116 | 기계펄프(쇄목펄프, 정제 쇄목펄프) | % | 34111 100 |
| 파쇄기(광산장비) | 대 | 38241 113 | 화학 및 반화학 펄프 | % | 34111 211 |
| 파쇄기(종이 산업용) | 대 | 38246 111 | 황산 및 소다펄프 | % | 34111 212 |
| 파스너(지퍼) | ㎝ | 39095 100 | 용해펄프 | % | 34111 213 |
| 파스텔 | ※ | 39091 115 | 아황산펄프 | % | 34111 214 |
| 파아티클 보오드 | ㎡ | 33115 112 | | | |
| 파이 | ※ | 31171 119 | | | |

(코)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식물성 섬유 펄프 | ㎏ | 34111 300 | 인조섬유연사 | ㎏ | 32117 213 |
| 펄프제조용 우드칩 | ※ | 33119 111 | 기타 편물사 | ※ | 32117 219 |
| 펄프 | | | 편지 분류기 | 대 | 38259 112 |
| 공업용 펄프 | 대 | 38291 111 | 편지지 | 백매 | 34194 113 |
| 주유소용 측정 및 분배펌프 | 대 | 38291 112 | 편지함 (금속제품) | ※ | 38142 119 |
| 가정용 펄프 (수동식 제외) | 대 | 38291 113 | 편직 가정용품 | ※ | 32156 100 |
| 수동 펄프 | 대 | 38291 114 | 편직기 (편물기) | | |
| 양수기 | 대 | 38291 115 | 황 편직기 | 대 | 38242 411 |
| 공기펌프 | 대 | 38291 116 | 환 편직기 | 대 | 38242 412 |
| 진공펌프 | 대 | 38291 117 | 가정용 편물기 | 대 | 38242 413 |
| 펌프검사용 시험대 | 대 | 38543 215 | 종 편직기 | 대 | 38242 414 |
| 페넨트 | 매 | 32145 114 | 기타 편직기 | ※ | 38242 419 |
| 페놀 | ㎏ | 35113 115 | 편직내의 | | |
| 페놀수지 | ㎏ | 35114 111 | 면내의 | 천매 | 32152 111 |
| 페리 (철강어객선) | ㄱ | 38412 400 | 모내의 | 천매 | 32152 112 |
| 페이턴트 및 금속화 가죽 | ㎡ | 32311 400 | 인조섬유내의 | 천매 | 32152 113 |
| 페인트 | | | 기타섬유내의 | ※ | 32152 119 |
| 합성수지 페인트 | ℓ | 35211 113 | 편직 부서리기 | ※ | 32159 300 |
| 수성 페인트 | ℓ | 35212 111 | 편직 외의 | | |
| 페인트 제조용기계 | 대 | 38244 925 | 남자용 의의 | 천매 | 32153 100 |
| 페인터 브러쉬, 페인트 로울러 | ※ | 39093 114 | 여자용 의의 | 천매 | 32153 200 |
| 패케이지 형 에어컨 | 대 | 38264 113 | 유아용 의의 | 천매 | 32153 300 |
| 펜, 기계식 연필, 페올더, 펜촉 | ※ | 39091 111 | 편직장갑 | | |
| 철필 샤프, 펜대, 펜촉 | | | 면장갑 | 천조 | 32154 111 |
| 펠리트 및 스킨드 | ※ | 33122 113 | 모장갑 | 천조 | 32154 112 |
| 펠트 | ㎡ | 32192 211 | 인조섬유장갑 | 천조 | 32154 113 |
| 펠트모자 | 개 | 32227 211 | 기타섬유장갑 | ※ | 32154 119 |
| 펠트모자보디 | ※ | 32227 111 | 편직물 | | |
| 펠트 제조용 기계 | 대 | 38242 911 | 모 편직물 | ㎏ | 32155 111 |
| 펠트 제품 | ※ | 32192 212 | 면 편직물 | ㎏ | 32155 112 |
| 편마암 | ㎏ | 29012 100 | 견 편직물 | ㎏ | 32155 113 |
| 편물기 (편직기참조) | 대 | 38242 411 ~ 413 | 인조섬유 편직물 | ㎏ | 32155 114 |
| 편물사 | | | 기타섬유 편직물 | ※ | 32155 119 |
| 면연사 | ㎏ | 32117 211 | 탄성 편직물 | ※ | 32159 100 |
| 모연사 | ㎏ | 32117 212 | 심지용 편직물 | ※ | 32159 200 |
| | | | 경삭기 | 대 | 38231 122 |

(丑)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경스프링 | 매 | 38199 112 | 헵탄 | ㎖ | 35111 113 |
| 봉스프링 | ㉔ | 38199 119 | 옥탄 | ㎖ | 35111 113 |
| 정압 및 원동감식 인쇄기 | 대 | 38247 111 | 데칸 | ㎖ | 35111 113 |
| 평형기 | 개 | 38543 211 | 폭발물 제조용 플랜트 | 대 | 38244 114 |
| 폐쇄안전스위치(산업 및 가정용) | 대 | 38313 114 | 폭약 | | |
| 폐쇄회로 TV조직 | 대 | 38323 114 | 다이너 마이트 | ㎖ | 35292 112 |
| 포대 | | | 초안 폭약 | ㎖ | 35292 113 |
| 크라프트지 포대 | 천매 | 34122 111 | 초유 폭약 | ㎖ | 35292 114 |
| 직물포대(가죽, 봉제한 프라 스틱포대 포함) | 천개 | 32141 100 | 기타 조제폭약 | ㎖ | 35292 115 |
| 프라스틱 포대(봉제한것 제외) | ㎖ | 35606 100 | 폴리부타디엔(B.R) | ㎖ | 35115 113 |
| 포대봉합 재봉기 | 대 | 38295 213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섬유 (합성 장섬유) | ㎖ | 35143 114 |
| 포도당 | ㎏ | 31226 111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섬유 (합성 단섬유) | ㎖ | 35143 314 |
| 포도주 | ℓ | 31323 111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섬유 (합성 장섬유투우) | ㎖ | 35143 414 |
| 포도즙 | ℓ | 31323 112 | 폴리비닐 아크릴섬유 | ㎖ | 35143 115 |
|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 ㎖ | 35119 111 | (합성 장섬유) | ㎖ | 35143 315 |
| 포오크(귀금속 또는 도금계) | ※ | 39010 511 | 폴리비닐 아크릴섬유 (합성 단섬유) | ㎖ | 35143 415 |
| 포오크(금속식탁용품) | ※ | 38111 100 | 폴리비닐 아크릴섬유 (합성 장섬유투우) | ㎖ | 35143 117 |
| 포오크(손잡이 장식, 실내 장 식용) | ※ | 39010 219 | 폴리비닐 알콜섬유 (합성 장섬유) | ㎖ | 35143 317 |
| 포장기(도로) | 대 | 38241 322 | 폴리비닐 알콜섬유 (합성 단섬유) | ㎖ | 35143 417 |
| 포장 및 충전기(식품가공용) | 대 | 38243 925 | 폴리비닐 알콜섬유 (합성 장섬유투우) | ㎖ | 35114 118 |
| 포장블록 및 통널 | ※ | 33119 115 | 폴리에틸 수지 | ㎖ | 35114 122 |
| 포장상자 | ※ | 33122 111 | 폴리에스테르 필름 | ㎖ | 35601 115 |
| 포장석 | ※ | 36994 113 | 폴리에틸렌포대(봉제품) | 개 | 32141 100 |
| 포장용기(도기) | ※ | 36105 111 | 폴리에틸렌(P.E) | | |
| 포조라나 | ㎖ | 29031 100 | 고밀도 폴리에틸렌 | ㎖ | 35114 131 |
| 포켈나이프 | 천개 | 38112 112 | | | |
| 포크(식탁용) | ※ | 38111 100 | | | |
| 포크, 갈퀴, 쇠스랑 | ※ | 38114 119 | | | |
| 포크레인(굴착기) | 대 | 38241 321 | | | |
| 포크리프트(지게차) | 대 | 38294 114 | | | |
| 포프린 | 천㎏ | 32121 112 | | | |
| 포화비환식 탄화수소 핵산 | ㎖ | 35111 113 | | | |

(표)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저밀도 폴리에틸렌 | ㎏ | 35114 132 | 프라스틱 자동차부품 | ㎏ | 35604 112 |
| 폴리에틸렌 필름 | ㎏ | 35601 112 | 프라스틱 장관 | ㎏ | 35601 212 |
| 폴리 염화 비닐 (PVC) | ㎏ | 35114 136 | 프라스틱 장식용품 | ㎏ | 35605 114 |
| 폴리 염화 비닐 필름 | ㎏ | 35601 111 | 프라스틱 기계류부품 | ㎏ | 35603 111 |
| 폴리 우레탄 | ㎏ | 35114 115 | 프라스틱 전기전자부품 | ㎏ | 35604 111 |
| 폴리스티렌 (P.S) | ㎏ | 35114 134 | 프라스틱 단추 | ㎏ | 35605 113 |
| 폴리스티렌 필름 | ㎏ | 35601 114 | 프라스틱 레저 | ㎏ | 35601 211 |
| 폴리초산 비닐 | ㎏ | 35114 137 | 프라스틱 발코 성형제품 | ㎏ | 35602 112 |
| 폴리테제섬유 (합성 장섬유) | ㎏ | 35143 118 | 프라스틱 봉 | ㎏ | 35601 214 |
| 폴리테제섬유 (합성 단섬유) | ㎏ | 35143 318 | 프라스틱어 상자 | ㎏ | 35606 112 |
| 폴리테제섬유 (합성 장섬유 도우) | ㎏ | 35143 418 | 프라스틱 스폰지 | ㎏ | 35602 113 |
| 폴리프로필렌 (P.P) | ㎏ | 35114 133 | 프라스틱 식기 | ㎏ | 35605 111 |
| 폴리프로필렌 필름 | ㎏ | 35601 113 | 프라스틱 신발 | ㎏ | 35607 111 |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P.G) | ㎏ | 35112 127 | 프라스틱 신발부품 | ㎏ | 35607 112 |
| 표구제품 | ※ | 39053 111 | 프라스틱 용기 | ㎏ | 35606 113 |
| 표면처리강판 | ㎏ | 37192 111 ~519 | 프라스틱 위생 및 화장용품 | ㎏ | 35605 112 |
| 표면처리강판 | ㎏ | 37192 512 | 프라스틱 의복 | ※ | 35609 200 |
| 표발행기 (계산장치부착) | 대 | 38252 114 | 프라스틱 인형 및 장난감 | ※ | 35609 300 |
| 표백기 | 대 | 38242 713 | 프라스틱 자리 | ※ | 32162 112 |
| 표시관 (전자관) | 천개 | 38341 113 | 프라스틱 조리 | ※ | 35605 111 |
| 표지 제조기 | 대 | 38247 314 | 프라스틱 콘베이어벨트 | ㎏ | 35601 216 |
| 풍속 풍향계 | ※ | 38544 100 | 프라스틱 포대 | ㎏ | 35608 100 |
| 풍 차 | ※ | 38219 119 | 프라스틱 필름 (필름참조) | ㎏ | 35601 111 ~119 |
| 퓨 즈 | ㎏ | 38313 116 | 프라이어 펜서, 양철가위 및 유사제품 | 천개 | 38113 111 |
| 프라스터 | ㎏ | 36923 100 | 프라이어팬 (범람제) | 천개 | 38192 112 |
| 프라스티관 및 터일 | ㎏ | 36931 212 | 프라이어팬 (전 기) | 개 | 38334 314 |
| 프라스틱 가구 | ㎏ | 35604 114 | 프라이어팬 (알루미늄제) | ※ | 38142 119 |
| 프라스틱 가공 기계 | ※ | 38245 119 | 프라이어팬 (스텐레스제) | ※ | 38142 219 |
| 프라스틱 가정장치 케이블 | ㎏ | 35605 113 | 프레트홈 트리 | 대 | 38294 113 |
| 프라스틱 피 | ㎏ | 35601 112 | 프러시안 블루 (안료) | ㎏ | 35132 115 |
| 프라스틱 관 | ㎏ | 35601 213 | 프로펠러, 헬리콥터 및 사이로 | 개 | 38490 900 |
| | | | 프레인 로터 | | |
| | | | 프레스기 | | |

(교)~(ㅎ)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금속공작 프레스(액양식) | 대 | 38232 112 | 픽스처선 | ※ | 38391 119 |
| 금속공작 프레스(크랭크, 인력공 압프레스) | 대 | 38232 113 | 핀(머리핀 포함) | ※ | 39099 200 |
| 기타 금속공작 프레스 | ※ | 38232 119 | 핀(커금속 제품) | ※ | 39010 211 |
| 베니어 접합프레스 | 대 | 38235 121 | 편서 | 개 | 38113 111 |
| 과실쥬스 가공용 프레스 | 대 | 38243 918 | 필렛트(fillet) 고기 | ※ | 31144 100 |
| 여과 프레스 | 대 | 38244 915 | 필름 | | |
| 성형 프레스 | 대 | 38245 112 | 폴리염화비닐(P.V.C) 필름 | ㎥ | 35601 111 |
| 프레스기(벽돌, 타일, 브로크 등 제조기) | 대 | 38248 211 | 폴리에틸렌(P.E) 필름 | ㎥ | 35601 112 |
| 프로판가스 | 세 | 35300 311 | 폴리프로필렌(P.P) 필름 | ㎥ | 35601 113 |
| 프로필렌 | ㎥ | 35111 112 | 폴리스티렌(P.S) 필름 | ㎥ | 35601 114 |
| 프로필렌글리콜(P.G) | ㎥ | 35111 128 | 폴리에스터(P.E.T) 필름 | ㎥ | 35601 115 |
| 프리즘 | 개 | 38522 111 | 필터 | | |
| 플러그 | 천개 | 38396 113 | 담배 필터 | kg | 39094 115 |
| 플라스틱샤시바(플라스틱샤시문 및 창틀포함) | ㎥ | 35601 221 | 간접필터(장치하지 않은 것) | 개 | 38522 114 |
| 플루트(목관악기) | ※ | 39024 111 | 색채필터(장치하지 않은 것) | 개 | 38522 114 |
| 피리(국악기) | ※ | 39027 100 | 필터(장치한 것) | ※ | 38522 211 |
| 피리(목관악기) | ※ | 39024 111 | 필터담배 | 천본 | 31402 111 |
| 피마자 기름 | kg | 31152 122 | 필터없는 담배 | 천본 | 31402 112 |
| P.V.C(폴리염화비닐) | ㎥ | 35114 136 | 필통 | 천개 | 39091 126 |
| P.V.C안정제 | kg | 35299 129 | 하드(빙과류) | ㎥ | 31174 100 |
| P.C.B원판(동박적층판) | 천개 | 38349 117 | 하드보드(재생목재) | m | 33115 112 |
| P.C.B판(인쇄회로기판) | 천매 | 38349 111 | 하모니움 | 개 | 39022 112 |
| 피스톤 | 천개 | 38299 512 | 하오리원단 | 천m | 32123 111 |
| 피스톤 링 | 천개 | 38299 513 | 하의(남자용 기성) | 착 | 32222 200 |
| 피스톤 발브 증기기관(기관 차용) | 대 | 38423 100 | 하의(마춤복) | 착 | 32219 200 |
| P.C강선 | ㎥ | 37124 214 | 하수정화장비 | 대 | 38269 115 |
| 피아노 | 대 | 39021 111 | 한복 | 착 | 32213 111 119 |
| 피아노(전자) | 대 | 39026 111 | 한천(무우) | kg | 31143 100 |
| 피아노선 | ㎥ | 37124 215 | 합금강 선재 | ㎥ | 37124 113 |
| P.E포대(봉제품) | 개 | 32141 100 | 합금강 슬라브 | ㎥ | 37113 313 |
| 피임용기구(고무제품) | 천개 | 35593 115 | 합금주물 | ㎥ | 37133 112 |
| 피임용품(고무용품제외) | ※ | 38519 200 | 합성고무 | | |
| 피치 | ※ | 35117 114 |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라텍스 (S.B.R Latex) | ㎥ | 35115 111 |
| 피콜로(목관악기) | ※ | 39024 111 |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S.B.R) | ㎥ | 35115 112 |

(ㅎ)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폴리부타디엔(B R) | ㎏ | 35115 114 | 해머 (동력식) | 대 | 38234 122 |
| 합성고무 라텍스 | ※ | 35599 115 | 해머 (에어해머) | 대 | 38232 115 |
| 합성키석 | ※ | 35129 215 | 해면철 | ㎏ | 37119 111 |
| 합성맥주 | ℓ | 31319 212 | 해모기 | 대 | 38242 115 |
| 합성만귀석 | ※ | 35129 215 | 해바라기씨 기름 | ℓ | 31152 114 |
| 합성섬유 | ㎏ | 32114 111 | 배조류 (건조 또는 소금친것) | ※ | 31145 200 |
| 합성섬유 방적사 | ㎏ | 32114 211 | 채표석, 홍늑, 도박 | ※ | 29099 221 |
| 합성섬유 직물 | 천㎡ | 32123 311 | 핵 반응기 | ※ | 38134 211 |
| 합성섬유 파일 및 셔닐 직물 | 천㎡ | 32123 312 | 핵 분열성 동위원소 | ※ | 35129 111 |
| 합성세제 (경성) | ㎏ | 35232 112 | 핵 분열성 화학원소 | ※ | 35129 113 |
| 합성세제 (연성) | ㎏ | 35232 111 | 핵산 | ㎏ | 35111 113 |
| 합성수지선 | ㎏ | 38419 211 | 핸드백 | 개 | 32333 100 |
| 합성수지, 프라스틱 및 인조수 | 대 | 38244 113 | 햄 | ㎏ | 31119 112 |
| 지 제조용 플랜트 | | | 햄주보 | ※ | 32149 900 |
| 합성왁스 | ㎏ | 35295 114 | 향미 또는 착색설탕 시럽및 | ※ | 31173 313 |
| 합성청주 | ℓ | 31319 211 | 당밀 | | |
| 합판 | ㎡ | 33114 111 | 향수제품 | ※ | 35235 415 |
| 합판 (미장) | ㎡ | 33114 112 | 허들 | ※ | 39039 100 |
| 항공기 (전투기 포함) | 대 | 38451 100 | 현탕코트 | 착 | 32222 400 |
| 항공기 부품 | ※ | 38490 900 | 체더 | ※ | 38349 900 |
| 항공기 기관제기 | ※ | 38549 211 | 헤드폰 | 개 | 38321 412 |
| 항공기용 가솔린 | ℓ | 35300 211 | 헬륨 | ㎡ | 35123 212 |
| 항공 항해용 기구 (나침반 제외) | ※ | 38549 111 | 헬리콥터 (전투용 포함) | 대 | 38490 900 |
| 항공사진용 기구 및 장치 | 대 | 38541 121 | 헬탄 | ㎏ | 35111 200 |
| 항산 시멘트용 첨가제 | ㎏ | 35299 128 | 현 (약기공) | ※ | 39029 200 |
| 항생제 | ※ | 35223 111 | 현 건반악기 부품 | ※ | 39021 200 |
| | | ~ 119 | 현금 등록기 | 대 | 38252 113 |
| 항해용 기구 | ※ | 38549 112 | 현무암 | ㎏ | 29012 100 |
| (선박 : 나침반 제외) | | | 현미경 | | |
| 항원청 및 미생물 백신 | ※ | 35221 111 | 복합광합 현미경 | 대 | 38527 200 |
| 해감금속 탄화물 | | | 전자 및 양자 현미경, 회절장치 | 대 | 38527 300 |
| 팅스비 | ※ | 35129 216 | 현상제 | ㎏ | 35296 211 |
| 물리브레늄 | ※ | 35129 216 | 현악기 | | |
| 바나듐 | ※ | 35129 216 | 듣는 현악기 | | |
| 해머 (수공구용) | 천개 | 38113 121 | 만도린 | ※ | 39023 112 |

(ㅎ)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후레 | ※ | 39023 112 | 호환성 공구 (수공구용) | 개 | 38119 300 |
| 만도라 | ※ | 39023 112 | 호환성 타이어 바닥 | ※ | 35511 412 |
| 전자현악기 | | | 호환용 절삭구 | | |
| 전자기타 | 대 | 39026 112 | 금속 공작용 절삭구 | 개 | 38236 111 |
| 베이스기타 | 대 | 39026 112 | 나무 공작용 절삭구 | 개 | 38236 112 |
| 활로 켜는 현악기 | | | 기타 재료 공작용 절삭구 | ※ | 38236 119 |
| 바이올린 | ※ | 39023 111 | 및 부품 | | |
| 비올라 | ※ | 39023 111 | 혼방사 | | |
| 비올라첼로 | ※ | 39023 111 | 혼방면사 | kg | 32112 212 |
| 베이스 비올라 | ※ | 39023 111 | 혼방소모사 | kg | 32113 215 |
| 더블 베이스 | ※ | 39023 111 | 혼방방모사 | kg | 32113 214 |
| 기타 현악기 | ※ | 39023 119 | 혼방수모사 | kg | 32113 216 |
| 협곡대강 | | | 혼방합성섬유 방적사 | ※ | 32114 213 |
| 열연협곡대강 (보통강) | ※ | 37121 611 | 혼방재생섬유 방적사 | ※ | 32114 214 |
| 열연협곡대강 (고탄소강) | ※ | 37121 612 | 혼방직물 | | |
| 열연협곡대강 (합금강) | ※ | 37121 613 | 혼방면직물 | 천㎡ | 32121 200 |
| 냉연협곡대강 (보통강) | ※ | 37122 611 | 혼방소모직물 | 천㎡ | 32122 211 |
| 냉연협곡대강 (고탄소강) | ※ | 37122 612 | 혼방견직물 | 천㎡ | 32123 200 |
| 냉연협곡대강 (합금강) | ※ | 37122 613 | 혼방방모직물 | 천㎡ | 32122 212 |
| 형강 | | | 혼방합성섬유직물 | 천㎡ | 32123 400 |
| 형강 (대형, 보통강) | ※ | 37121 211 | 혼방재생섬유직물 | 천㎡ | 32123 600 |
| 형강 (중형, 보통강) | ※ | 37121 212 | 혼성추진약 | ※ | 35292 219 |
| 형강 (소형, 보통강) | ※ | 37121 213 | 혼타면기 | 대 | 38242 114 |
| 형강 (고탄소강) | ※ | 37121 221 | 혼합가루 (목물기저) | ※ | 31162 100 |
| 형강 (합금강) | ※ | 37121 222 | 혼합식물성기름 | kl | 31153 113 |
| 형광등 스타터 | 천개 | 38396 115 | 혼합 산업용 가스 | ㎥ | 35123 117 |
| 형광등 및 조명 부착물 | ※ | 38395 112 | 혼합 인산질 비료 | ※ | 35152 122 |
| 형광전기 또는 램프 | 천개 | 38392 113 | 혼합 조미료 | kg | 31213 111 |
| 형삭기 | 대 | 38231 121 | 혼합 질소질비료 | ※ | 35151 119 |
| 형석 및 기타 불소 함유광물 | ※ | 29020 912 | 혼합 카리질비료 | ※ | 35153 119 |
| 호닝기 | 대 | 38231 129 | 혼합 크실렌 | ※ | 35111 123 |
| 호미 | 개 | 38114 113 | 홀몬제 | ※ | 35224 114 |
| 호박 (보석 원석) | ※ | 29099 221 | 홀치기 원단 (순본견) | 천㎡ | 32123 111 |
| 호박단 | 천㎡ | 32123 111 | 홀치기 제품 | ※ | 32132 312 |
| 호스 (고무호스) | km | 35592 113 | 홍옥 (보석 원석) | ※ | 29099 221 |
| 호이스트 | 대 | 38293 113 | 홍아연광 | ※ | 23025 200 |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홍차 | ※ | 31227 214 | 환풍기 (가정용) | 대 | 38332 400 |
| 화강암 | ※ | 29011 112 | 활석 | ※ | 29092 100 |
| 화물선 (강선) | ※ | 38412 112 | 활석 분 | ※ | 36995 112 |
| 화물선 (목선) | ※ | 38413 200 | 활성광물질 | ※ | 35129 213 |
| 화물자동차 (트럭) | | | 활성탄소 | ※ | 35129 213 |
| 대형트럭 (8 톤이상) | 대 | 38431 313 | 활자주조기 | 대 | 38247 211 |
| 중형트럭 (4 톤~8 톤미만) | 대 | 38421 312 | 활차 | 대 | 38293 111 |
| 소형트럭 (1 톤~4 톤미만) | 대 | 38431 311 | 활동적인 진열물 | ※ | 39099 115 |
| 화약 | | | 활판 인쇄기 | 대 | 38247 114 |
| 산업용화약 | | | 황동광 | ※ | 23024 100 |
| 흑색화약 | ※ | 35292 111 | 황마 | kg | 32116 112 |
| 다이아마이트 | ※ | 35292 112 | 황마사 | kg | 32116 213 |
| 초안폭약 | ※ | 35292 113 | 황마직물 | 천 m | 32124 113 |
| 초유폭약 | ※ | 35292 114 | 황산나트륨 | ※ | 35122 214 |
| 기타 조제폭약 | ※ | 35292 115 | 황산동 | ※ | 35121 317 |
| 도화선 | kg | 35292 116 | 황산 마그네슘 | ※ | 35121 513 |
| 도폭선 | kg | 35292 117 | 황산 및 소다펄프 | ※ | 34111 212 |
| 뇌관 | 천개 | 35292 118 | 황산 및 올레움 | ※ | 35121 211 |
| 무기용 화약 | | | 황산 아연 | ※ | 35121 517 |
| 무기용 화약 | ※ | 35292 219 | 황산 알루미늄 | ※ | 35121 316 |
| 화이트 카본 (백카본) | ※ | 35129 218 | 황산 연광 | ※ | 23025 100 |
| 화운대이션 | kg | 35235 213 | 황산 제 1 철 | ※ | 35121 516 |
| 화장대 | 개 | 33261 116 | 황산 카리 | ※ | 35153 111 |
| 화장비누 | ※ | 35231 112 | 황철산 암모늄 | ※ | 35151 112 |
| 화장수 (밀크로손 및 스킨로손) | kg | 35235 111 | 황철광 | ※ | 29020 212 |
| 화장지 | kg | 34192 111 | 황토, 시엔나, 암버 및 유색 혈암 | ※ | 29020 412 |
| 화장품 | kg | 35235 111 ~ 419 | 황화 건염 연료 | ※ | 35131 115 |
| 화차 (철도차량) | 량 | 38422 200 | 황화 나트륨 | ※ | 35122 216 |
| 화차 경사기 | 대 | 38293 115 | 황화 수소나트륨 | ※ | 35122 311 |
| 화차 전철대 | 대 | 38293 126 | 황화 열료 | ※ | 35131 115 |
| 화폐 (동전제외) | ※ | 34219 611 | 회계기 | ※ | 38252 119 |
| 화대경 | ※ | 38529 919 | 회수 전섬유 | ※ | 32199 113 |
| 화성기 (스피커) | 천개 | 38321 911 | 회수 마섬유 | ※ | 32199 114 |
| 환권직기 | 대 | 38242 412 | 회수 면섬유 | ※ | 32199 112 |
| 환풍기 (산업용) | 대 | 38292 113 | | | |

(ㅎ)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품 목 명 | 단 위 | 분류번호 |
|------------------|-----|-----------|-------------------|-----|-----------|
| 회수 인조섬유 | ※ | 32199 115 | 흑판 | 개 | 39091 127 |
| 회전 변환기 | 대 | 38311 112 | 흡수탑 | 대 | 38134 215 |
| 회주물 | ※ | 37132 100 | 회소가스 | | |
| 회중석 | ※ | 23021 112 | 배온 | m | 35123 113 |
| 회화용 캔버스 | ※ | 32194 113 | 아르곤 | m | 35123 113 |
| 회편지기 | 대 | 38242 411 | 크리프톤 | m | 35123 113 |
| 효소 | ※ | 35119 315 | 제논 및 기타 회소가스 | m | 35123 113 |
| 후레 (철악기) | ※ | 39023 112 | 회토류광석 | ※ | 23029 212 |
| 후추가루 | kg | 31214 112 | 회토류 금속원소 | ※ | 35121 126 |
| 후관 | | | 히타 (방열기) - 연소기 부착 | 대 | 38194 216 |
| 후관 (보통강) | ※ | 37121 311 | 히타 (연소기부착 안된것) | 대 | 38194 114 |
| 후관 (고탄소강) | ※ | 37121 312 | 히타 (자동차용 방열기) | 대 | 38432 923 |
| 후관 (합금강) | ※ | 37121 313 | | | |
| 위동광 | ※ | 23024 100 | | | |
| 위발유 | ℓ | 35300 212 | | | |
| 휠, 자동차용 | 개 | 38432 921 | | | |
| 휠터 (담배) | kg | 39094 115 | | | |
| 웨어라이트 마그네트 | 千개 | 38349 122 | | | |
| 웨어라이트코아 | 千개 | 38349 121 | | | |
| 휴대용 가죽 케이스 | 개 | 32334 111 | | | |
| 휴대용 무선통신 장비 : 아마 | ※ | 38323 219 | | | |
| 휴어 무선통신 장비 | | | | | |
| 휴대용 전기 밧데리 및 마 | 개 | 38395 114 | | | |
| 그네네트등 (차량용 제외) | | | | | |
| 흑판 | 본 | 36934 211 | | | |
| 흑색화약 | ※ | 35292 111 | | | |
| 흑연 | | | | | |
| 인상흑연 | ※ | 29091 111 | | | |
| 토상흑연 | ※ | 29091 112 | | | |
| 흑연가루 | ※ | 36995 115 | | | |
| 흑연 또는 분류 카본기저 내 | ※ | 36995 113 | | | |
| 화물 | | | | | |
| 흑중석 | ※ | 23021 111 | | | |
| 흑철선 | ※ | 37124 211 | | | |

<부록 2>

도량형 단위 환산 표

<길 이>

| 구 분 | 자 (尺) | 정 (町) | 리 (里) | 미 터 (m) | 인 치 (in) | 피 이 트 (ft) | 야 야 드 (yd) | 마 일 |
|--------------|----------|----------|----------|----------|----------|------------|------------|----------|
| 1 자 (尺) | 1 | 0.00277 | 0.000077 | 0.30303 | 11.9305 | 0.99421 | 0.331403 | 0.000188 |
| 1 정 (町) | 360 | 1 | 0.02777 | 109.091 | 4294.99 | 357.916 | 119.304 | 0.067784 |
| 1 리 (里) | 12.960 | 36 | 1 | 3927.27 | 154.619 | 12884.9 | 4295.02 | 2.44033 |
| 1 미 터 (m) | 3.3 | 0.009166 | 0.000254 | 1 | 39.3707 | 3.28089 | 1.09363 | 0.000621 |
| 1 인 치 (in) | 0.083818 | 0.000232 | 0.000006 | 0.025399 | 1 | 0.08333 | 0.02777 | 0.000015 |
| 1 피 이 트 (ft) | 1.00582 | 0.002793 | 0.00007 | 0.304788 | 12 | 1 | 0.33333 | 0.000189 |
| 1 야 야 드 (yd) | 3.01746 | 0.008381 | 0.000232 | 0.914383 | 36 | 3 | 1 | 0.000568 |
| 1 마 일 | 5310.73 | 14.752 | 0.409779 | 1609.31 | 63.360 | 5280 | 1760 | 1 |

<넓 이>

| 구 분 | 제 곱 자 (平方尺) | 평 (坪) | 제 곱 미 터 (m ²) | 제 곱 인 치 (in ²) | 제 곱 피 이 트 (ft ²) | 제 곱 야 야 드 (yd ²) |
|--------------------------------|-------------|-----------|---------------------------|----------------------------|------------------------------|------------------------------|
| 1 제 곱 자 (平方尺) | 1 | 0.02777 | 0.09182 | 142.33 | 0.98842 | 0.10982 |
| 1 평 (坪) | 36 | 1 | 3.3058 | 5123.9 | 35.583 | 3.9536 |
| 1 제 곱 미 터 (m ²) | 10.89 | 0.3025 | 1 | 1550.0 | 10.763 | 1.1959 |
| 1 제 곱 인 치 (in ²) | 0.007025 | 0.0001951 | 0.0006451 | 1 | 0.006944 | 0.0007716 |
| 1 제 곱 피 이 트 (ft ²) | 1.0117 | 0.02810 | 0.09290 | 144 | 1 | 0.11111 |
| 1 제 곱 야 야 드 (yd ²) | 9.1054 | 0.25292 | 0.83612 | 1.296 | 9 | 1 |

<무 계>

| 구 분 | 돈(匁) | 관(貫) | 근(斤) | 그램(℥) | 온스(OZ) | 파운드(Lb) | 톤(ton) |
|-----------|---------|----------|----------|---------|----------|----------|----------|
| 1 돈(匁) | 1 | 0.001 | 0.00625 | 3.75 | 0.132777 | 0.008267 | 0.000004 |
| 1 관(貫) | 1000 | 1 | 6.25 | 3.750 | 132.277 | 8.2672 | 0.00375 |
| 1 근(斤) | 160 | 0.16 | 1 | 600 | 21.1647 | 1.32279 | 0.0006 |
| 1 그램(℥) | 0.26666 | 0.000266 | 0.001666 | 1 | 0.035273 | 0.002204 | 0.000001 |
| 1 온스(OZ) | 7.55984 | 0.007559 | 0.047249 | 28.3495 | 1 | 0.0625 | 0.000028 |
| 1 파운드(Lb) | 120.958 | 0.120958 | 0.755988 | 453.592 | 16 | 1 | 0.00045 |
| 1 톤(ton) | 266666 | 266.666 | 1666.6 | 1000000 | 35.273 | 2224.59 | 1 |

<부 피>

| 구 분 | 홉(合) | 되(升) | 말(斗) | 섬(石) | 입방미터(m ³) | 리터(ℓ) | 갈롱(英) | 갈롱(美) |
|-------------------------|---------|---------|---------|----------|-----------------------|---------|----------|----------|
| 1 홉(合) | 1 | 0.1 | 0.01 | 0.001 | 0.00018 | 0.18039 | 0.039682 | 0.047656 |
| 1 되(升) | 10 | 1 | 0.1 | 0.01 | 0.001803 | 1.8039 | 0.396805 | 0.476567 |
| 1 말(斗) | 100 | 10 | 1 | 0.1 | 0.018039 | 18.039 | 3.96808 | 4.76567 |
| 1 섬(石) | 1000 | 100 | 10 | 1 | 0.18039 | 180.39 | 39.6808 | 47.6567 |
| 1 입방미터(m ³) | 5543.52 | 554.352 | 55.4352 | 5.54352 | 1 | 1000 | 219.972 | 264.1866 |
| 1 리터(ℓ) | 5.54352 | 0.55435 | 0.05543 | 0.00554 | 0.001 | 1 | 0.219971 | 0.264186 |
| 1 갈롱(英) | 25.2006 | 2.52006 | 0.2520 | 0.0252 | 0.004545 | 4.54596 | 1 | 1.201 |
| 1 갈롱(美) | 20.9833 | 2.09833 | 0.20983 | 0.020983 | 0.003785 | 3.78543 | 0.832639 | 1 |

<부록 3 >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과세대상품목 및 세율

1.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1) 제 1종 제 1류 물품판매자

(2) 제 1종 제 2류 또는 제 4종 물품제조 반출자

(3)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제 3호 이외의 관세납부의무자

(5) 과세장소의 경영자

| 종별 | 유별 | 과 세 물 품 명 | 세 율 |
|------|------|---|--------------------|
| 제 1종 | 제 1류 |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외),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100 % |
| | | 2. 귀금속 제품 | 30 % |
| | 제 2류 | 1. 모피와 동제품 (토모피 제품 및 생모피 제외) | 100 % |
| | | 2.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100 % |
| | | 3. 당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 100 % |
| 제 2종 | 제 4류 | 4. 가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에 한함) | 15 % |
| | | 5. 특수화장품 | 20 % |
| 제 2종 | | 1.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 | 40 % |
| | | 2. 냉장고와 냉동고 (전기, 가스, 유류식을 말한다) | 40%(대형) 28%(소형) |
| | | 3. 전기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포함) | 40 % |
| | | 4.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관련제품 | |

| 종별 | 유별 | 과 세 물 품 명 | 세 율 |
|----|----|----------------------------|--------------------|
| | | 가. 칼라 TV | 40%(대형) 28%(소형) |
| | | 나. 흑백 TV | 5% |
| | | 다. 동관련제품 | 40% |
| | | 5. 전기 음향기 | |
| | | 가. 소형음성녹음, 재생의 것 (휴대용) | 10% |
| | | 나. 축음기 및 스테레오 제품 | 25% |
| | | 6.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 28% |
| | | 7. 승용자동차 (정원 8인이하의 사람수승용) | |
| | | 가. 사륜구동의 지이프형 | 10% |
| | | 나. 배기량 1500cc 이하 | 15% |
| | | 다. 배기량 1500cc 초과~2000cc 이하 | 20% |
| | | 라. 6기통 이상으로 2000cc 이하 | 30% |
| | | 마.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자동차 | 40% |
| | | 8. 모터보트와 요트 | 대형(60%) 기타(40%) |
| | | 9. 피아노 | |
| | | 가. 그랜드 피아노 | 30% |
| | | 나. 일반 피아노, 전자올젠 | 20% |
| | | 10. 고급시계 | 30% |
| | | 11. TV 영상, 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 40% |
| | | 12. 영사기와 촬영기,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 | 40% |
| | | 13. TV 영상 투사기 및 동스크린 | 40% |
| | | 14. 크리스탈 유리제품 | 20% |

| 종별 | 유별 | 과 세 물 품 명 | 세 율 |
|----------------------|--------|----------------------------|------------|
| 제 3 종 | | 1. 커피와 코코아 | 40 % |
| | | 가. 커피와 코코아 | 40 % |
| | | 나. 카카오 마가스 | 20 % |
| | | 2. 당류 (사탕, 전분당) | 20%(카카오마스) |
| | | 가. 사 탕 | 30 % |
| | | 나. 전분당 | 10 % |
| | | 3. 청량 음료 | 20 % |
| | | 4. 기호 음료 | 25 % |
| | |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 10 % |
| | | 5. 자양강식품 (인삼, 녹용, 로얄제리등) | 20 % |
| | | 6. 천연과실음료 (과채류의것 포함) | 10 % |
| | | 제 4 류 | 제 1 |
| 가. 소모사와 동직물 | 20 % | | |
| 나. 방모사와 동직물 | 10 % | | |
| 2. 융단 (카펫트와 섬유메트 포함) | | | |
| 가. 모제품 | 40 % | | |
| 나. 기 타 | 20 % | | |
| 제 2 류 | 제 2 | 1. 휘발유와 동유사 대체유류 (가솔린엔진연료) | 100 % |
| | | 2. 경 유 | 10 % |
| | | 3. 액화석유가스 | 10 % |

2. 주 세

| 품 명 | 세 율 | 비 고 |
|------------------|-------|-------------------------------|
| 주 정 (95 % 기 준) | | 세금은 <i>kl</i> 당 49,875 원 |
| 합 성 청 주 | 65 % | |
| 합 성 맥 주 | 100 % | |
| 인 삼 주 | 100 % | (주류 80 % 이상 사용) (상기 외) |
| 기 타 제 재 주 | 40 % | |
| 탁 주 | 100 % | |
| 약 주 | 40 % | |
| 맥 주 | 10 % | |
| 청 주 | 60 % | |
| 과 실 주 | 150 % | |
| 명 약 주 (법 주) | 120 % | |
| 기 타 양 조 주 | 25 % | |
| 소 주 | 100 % | |
| 고 량 주 | 110 % | |
| 위 스 키 | 35 % | |
| 브 랜 디 | 110 % | |
| 기 타 증 류 주 | 200 % | |
| | 150 % | |
| | 80 % | |

3. 방위세

특별소비세액의 30 %, 주세액의 10 %

4. 교육세

제조담배공급가액 및 주세액의 10 %

| 종별 | 유별 | 과 세 물 품 명 | 세 율 |
|-------------|----------------------|----------------------------|------------|
| 3 | 제 | 1. 커피와 코코아 | 40 % |
| | | 가. 커피와 코코아 | 40 % |
| | | 나. 카카오 마가스 | 20 % |
| | | 2. 당류 (사탕, 전분당) | 20%(카카오마스) |
| | | 가. 사 탕 | 30 % |
| | | 나. 전분당 | 10 % |
| | 중 | 3. 청량 음료 | 20 % |
| | | 4. 기호 음료 | 25 % |
| | |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 10 % |
| | | 5. 자양강식품 (인삼, 녹용, 로얄제리 등) | 20 % |
| | | 6. 천연과실음료 (과채류의것 포함) | 10 % |
| | | 4 | 제 |
| 가. 소모사와 동직물 | 20 % | | |
| 나. 방모사와 동직물 | 10 % | | |
| 류 | 2. 용단 (카페트와 섬유메트 포함) | | |
| | 가. 모제품 | | 40 % |
| | 나. 기 타 | | 20 % |
| 중 | 제 | 1. 휘발유와 동유사 대체유류 (가솔린엔진연료) | 100 % |
| | 2 | 2. 경 유 | 10 % |
| | 류 | 3. 액화석유가스 | 10 % |

2. 주 세

| 품 명 | 세 율 | 비 고 |
|------------------|-------|-------------------------------|
| 주 정 (95 % 기 준) | | 세금은 <i>kl</i> 당 49,875 원 |
| 합 성 청 주 | 65 % | |
| 합 성 맥 주 | 100 % | |
| 인 삼 주 | 100 % | (주류 80 % 이상 사용) (상기 외) |
| 기 타 제 재 주 | 40 % | |
| 탁 주 | 40 % | |
| 약 주 | 10 % | |
| 맥 주 | 60 % | |
| 청 주 | 150 % | |
| 과 실 주 | 120 % | |
| 명 약 주 (법 주) | 25 % | |
| 기 타 양 조 주 | 100 % | |
| 소 주 | 110 % | |
| 고 량 주 | 35 % | |
| 위 스 키 | 110 % | |
| 브 랜 디 | 200 % | |
| 기 타 증 류 주 | 150 % | |
| | 80 % | |

3. 방위세

특별소비세액의 30 %, 주세액의 10 %

4. 교육세

제조담배공급가액 및 주세액의 10 %

산업 및 품목분류표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용)

1988년 3월 25일 인쇄
1988년 3월 30일 발행

발행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편집 산업통계과
인쇄 일지 사
(503-6971~5)

조사표작성요령

I. 일반적 유의사항

- ★표란은 동·읍·면에서 기입하고 ★★표란은 당원에서 기입합니다.
- 본 조사표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직접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만, 본사와 연락등으로 5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최소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본 조사표는 각 사업체(공장, 사업소)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사 또는 주된 사업체에서 일괄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각각의 공장별로 구분 작성하여 공장소재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사표상 어느 한 항목에 부득이 타공장 분이 포함 작성되었다면 적요란에 그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 결산마감일이 12월이 아닌 사업체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조사함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결산자료에 의거 작성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란에 사유를 기입 하십시오.
- 모든 수치는 단위에 유의하여 정수로 기입하고 단위 미만은 4사5입하거나 유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 17항 품목별 출하내역은 본조사 사항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히 유의하여 「산업 및 품목분류표」 책자의 분류 기준에 타당한지 조사담당자와 재검토하여 정확히 분류기입하여 주십시오.
- 조사항목별 연관관계에 유의하여 작성하고 기입누락이 없도록 하며 조사표 사본을 비치하여 사후 질의조회등에 대비하여 주십시오.

II. 항목별 유의사항

6항 경영조직

-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 기타 법인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7항 자본금 또는 출자금

- 회사법인에 한하여 기입하며 87년말 현재 법인의 납입자본금을 기입한다.

8항 부지 및 건물면적

- 제조업체의 업무용을 말하며 임차사용분도 포함한다. (광업과 임대분은 제외)
- 사택, 기숙사, 운동장등 복리후생시설이 생산공장과 같은 장소에 있을 때는 포함조사하고 별도의 장소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 ②건물 밀면적...부지와 접한 건물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건물 연면적...전체건물의 연건물 면적을 말한다.

11항 종업원수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정규 작업시간의 1/3 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
- 피고용자 : 상용, 임시, 일고종업원과 단기 병가자, 휴가자를 포함하며 외국인, 장기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 사무 및 기타종업원 : 현장작업 종사자가 아닌 기술적, 전문적, 서기업무에 종사하는자와 사업체 임직원(간부, 이사) 및 기타 잡무에 종사하는 자등을 말한다.
- 12월말 현재의 종업원은 남·여로 구분 기입한다.
-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업원수 = 각 월말 종업원수 누계 ÷ 조업월수

- 일고(日雇) 종업원은 연인원으로 기입되기 쉬우므로 연인원일 경우에는 그달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월평균 종업원수를 산입한다.
- 12월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12월말 현재 종업원수를 기입하지 않고 △ 표시를 한다. (월평균은 기입)

12항 연간급여액

- 1987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된 것을 1987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87년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한 미지급금은 포함한다.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상여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 세금공제 이전의 금액을 기입한다.

13항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 ① 제품출하액 : ○ 직접생산 또는 위탁생산하여 매출한것(매출원가+매출이익)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이송품, 반출품, 타계정대체액등)가 있을 경우에 포함하고, 상품매출액은 ⑤항에 기입한다.
○ 제품출하액에 간접세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주세,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품목 생산업체 특히 유의)
- ② 폐품판매액 : 생산과정상의 불량품, 폐품의 판매액을 말한다. (단, 계정상 부산물로 처리되어 있더라도 본 조사에서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①제품출하액에 포함한다)
- ③ 수탁제조 수입액 : 광공업체로부터의 임가공료 수입액, 인쇄출판업의 경우에 광고수입액 등을 포함한다. 다만, 비 광공업체(무역업, 판매업등)로부터 임가공일 경우에는 제품출하로 간주하여 기입한다.
- ④ 수리수입액 : 제품의 출하와 관련한 수리수입과 타인소유의 산업용기계, 장치(선박, 산업용보일러, 산업용장비등)를 수리하여 준 댓가로 받은 수입액을 기입한다.
- ⑤ 상품매출액 : 제조부문 이외의 수입상품이나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상품의 매출액을 말한다.
- ⑥ 상품매출원가 : 연간 총 구입상품중에서 상품재고분을 제외하고 판매된 상품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 ⑦ 임대수입액 : 건물 및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취입료를 말하며 토지분배 대한 임대수입은 제외한다.

14항 연간주요생산비

1987년 1년간 실제생산에 소요된 영업비용(제조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중에서 명시된 해당비목만 기입한다.

- ① 재료비(부재료비, 보조재료비 포함) : 계정과목의 설정형태에 관계없이 실제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비를 기입한다.
- ② 연료비 : 석유, 석탄 등의 동력 및 난방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기입한다.
- ③ 전력비 : 구입사용 전력비를 말하며 자가발전에 소요된 연료(석탄·유류등) 비용은 ②연료비에 해당된다.
- ④ 용수비 :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서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기입한다.
- ⑤ 위탁생산비(외주가공비) : 위탁생산을 위하여 임가공(하청)업체에 지급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단, 재료비는 ①재료비에 포함)
- ⑥ 수리유지비(수선비) : 유형고정자산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기입한다.

15항 내국소비세액

- 발생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특별소비세, 주세와 이들에 부가된 부가세(방위세, 교육세)도 포함 기입한다.

- 부가가치세환급액인 경우와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수치앞에 “△” 표시를 한다.

16항 재고액

- 재고액 평가는 생산자 제조원가에 의한다.
- 작업을 위해 외부에 보관 중인 것도 포함한다.

17항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품목별 제품은 「산업 및 품목분류표」 책자에 의하여 품목을 정확히 구분한 다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착오조사가 되기 쉽다.
- 출하액(매출원가+매출이익)이 큰 품목순으로 기입하되 품목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세분하지 않도록 하며 수량단위는 「산업 및 품목분류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 외국어나 특수품명등 품목분류가 모호한 것은 품목설명을 병기한다.
- 수출액은 자기명의 수출, 위탁수출, 비 광공업체로부터 수탁받은 제품의 수출 또는 기타 약정에 의한 수출등의 직접 수출액을 기입하며 내국 신용장(로칼 L/C)에 의해서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나 반제품은 수출로 기입하지 않는다.
- 총 출하액은 내수와 수출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국가안보상 보안이 요구되는 품목은 조사표에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분류번호를 사업체 담당자(응답자)가 직접 기입한다.
- 품목분류시 기타품목은 가급적이면 총출하액 합계액의 5%미만이 되도록 세분한다.
- 본 란의 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을 첨부하여 연장 기입한다.

18항 수탁제조(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본 항목은 13항③의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본 항목을 기입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 요령은 17항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의 분류요령에 준한다.

20항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미상각잔액)은 1987. 12. 31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 감가상각액은 당해 회계기간중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입한다.
- 임대 해준 것은 포함하고 임차사용중인 것은 제외한다.
- 토지의 취득은 중고취득란에 기입한다.
- 연간 신규취득액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액 및 설치비를 말하며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 기존자산의 수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 연간처분 및 손해액은 매각, 양도 및 채해등에 의한 처분 및 손해액을 말한다.
- 본 조사항목에 건설(시설)가계정, 미착기계정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01)+(02)-(03)-(04) ≤ (05)

21항 동일기업내 타공장명 및 소재지

- 본 공장분만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제외란에 각각 “○” 표시하고, 타공장을 합산하였을 경우에는 합산란에 각각 “○” 표시한다.
- 본사(본점)에서 공장과는 별도로 직접 타사업체에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출하액을 별도로 구분 기입한다.

| |
|---------|
| 시 · 도 명 |
| |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
조사결과의 내용심사 총괄표

| | | | |
|-------------|--------|--------|-------------|
| 확 인 자 | 담 당 | 계 장 | 담 당 관 |
| | | | |

(매 중 매)

조 사 표 [I]

(단위 : 개, 명, 백만원)

| 행정구역분류번호 구 · 시 · 군 명 | 연 도 | 사업체수 | 11항 종업원수 (월평균) | 12항 급여액 (합계) | 13항 출하액 (합계) | 14항 주요생산비 (합계) | 생 산 액 | 부가가치 | 16항 재고증감액 (완제품, 반· 제품 합계) | 20항 유형고정자산 연말총액 (합계) | 부가가치율 | 증 감 요 인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산액, 부가가치, 재고증감액 및 부가가치율의 산식은 다음에 의함.
- ① 생산액 = 출하액 + 완·반제품연말재고액 - 완·반제품 연초재고액
 - ② 부가가치 = 생산액 - 생산비
 - ③ 재고증감액 = 연말재고액(완제품, 반·제품) - 연초재고액(완제품, 반·제품)
 - ④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생산액 × 100

- ⑤ 비전년증감율 = (87년수치 ÷ 86년수치 × 100) - 100
2. 연도란의 ※는 비전년증감율임.
3. 부가가치율 및 비전년 증감율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4사5입함.
4. 증감요인란에는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나열 기입하여야 함.
5. 구·시·군별로 기입하고 최종 하단란에는 시·도의 총합계를 기입함.

('88 서식 10)